

연구보고 95-5

大典會通 研究

— 兵典編 —

研究擔當者 李鍾日 研究委員

한국법제연구원

·軍令·標信·密符·諸船 기타에 관한 解説을 곁들였습니다. 이 冊의 執筆者인 當 研究院의 前任研究委員이며, 企劃運營室長인 文學博士 李鍾日을 平素 꾸준히 指導하여 주신 李佑成·宋俊浩 先生 등 元老學者들에게 敬意를 表합니다.

1996년 12월 일

韓國法制研究院長
法學博士 朴松圭

發刊辭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1993년부터 조선시대의 종합법적인 大典會通의 研究에 착수하여 同年末에는 吏典, 1994년말에는 戶典과 禮典에 대한 譯註와 解説을 겸한 研究書를 出刊한 바 있으며 今年에도 同研究의 계속사업으로 兵典에 대한 譯註 및 解説書를 出刊하게 되었다.

古法典에 대한 國譯事業은 吏典과 戶典 및 禮典에 대한 研究書의 발간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法制處에서 1962년 10월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인 經國大典을 譯註한 이래 30여 년 간 많은 古法典과 古法制 資料를 國譯한 바 있다. 이러한 국역사업은 1990년 7월 한국법제연구원의 발족과 더불어 본 연구원의 사업으로 계승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1993년 5월,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위 經國大典 法制處 譯註本을 대폭 修正하여 발간하고 이어서 大典會通研究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전통사회의 우리 先祖들은 大典會通을 萬世久遠之謨라 하여 영구히 변하지 않을 大經大法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리하여 근대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慣行慣習으로 남아서 우리의 法意識을 지배하여 왔고 또한 立法의 指針이 되거나 判例의 기초가 되어 그 規範性을 유지하고 있었다.

大典會通의 兵典은 조선왕조 500년 간을 지탱해 온 軍事組織과 武官

職 및 軍士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고 중요한 交通·통신수단이었던 驛路·驛馬와 烽燧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으며 侍衛·教閱·番上·留防·給保·復戶·免役·城堡·兵船·軍器 기타 軍事와 兵役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冊은 본 연구원 연구위원인 문학박사 李鍾日이 譯註와 解説을 맡아서 하였으며 공동연구자인 선임연구원 鄭肯植의 도움으로 出刊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평소 지도편달하여 주신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朴秉濠 교수·前 成均館大學校 大學院長 李佑成 博士(現 學術院 會員)·前 全北大學校 교수 宋俊浩 先生과 특히 이번 兵典研究에 있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前 東國大學校 總長 鄭在覺 先生 및 同副總長이었던 南都泳 博士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표한다.

1995년 12월 31일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白南辰

일러두기

- 이 책은 大典會通 兵典을 譯註하고 아울러 軍事組織과 그 運營에 관한 중요문제를 다룬 研究書이다.
- 譯註의 底本은 國立中央圖書館 所藏의 高宗 2年(1865) 刊行의 木版本이다.
- 翻譯에 있어서는 直譯을 원칙으로 하되 直譯만으로 原文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意譯을 하였다. 意譯을 하면서 原文의 用語를 알기 쉽게 풀어 쓸 때에도 괄호 또는 註釋으로 原文의 內容을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
- 번역을 통하여 原文의 의미가 變質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뜻으로 전달되기 쉬운 경우 및 法條文 內容의 沿革과 制定 및 改正過程을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註를 달았고, 註가 길어질 때에는 解說篇을 만들어 뒤로 돌렸다.
- 原典의 本文은 굵은 활자로 하고 原註는 작은 활자로 하였으며 原細註는 原註보다 더 작은 활자로 하되 〈 〉 안에 넣었다.
- 註釋과 解說은 朝鮮왕조실록·비변사등록 기타의 原史料를 일일이 찾아 대조해 보면서 既成의 研究成果를 참고하였으며 특히 해설은 軍營·武官·軍士·保人·軍令·軍器·軍船 기타 軍事와 兵役에 관한 중요사항을 항목별로 서술하였다.

目次

第1部 大典會通 兵典 譯註

大典會通 卷之四(兵典)

兵典目錄

京官職	13
雜職	64
外官職	65
土官職	93
京衙前	95
伴 倘	98
外衙前	99
軍官	100
驛馬	102
草料	106
試取	107
番次都目	148
軍士給仕	171
諸道兵船	177
武科	184
告身	187
褒貶	188
入直	189
擲奸	195
行巡	196
啓省記	205
門開閉	208
侍衛	210
疊鼓	214
疊鐘	215
符信	218

教閱	227
屬衛	232
名簿	233
番上	234
留防	237
給保	240
成籍	243
軍士還屬	247
復戶	248
免役	250
給假	252
救恤	253
城堡	253
軍器	255
兵船	259
烽燧	261
廐牧	264
積芻	270
護船	270
迎送	271
路引	273
驛路	273
改火	274
禁火	275
雜類	279
用刑	283
雜令	286

第2部 兵典 解説

第1章 軍營	293
1. 訓練都監斗 禁衛營	293
2. 御營廳	296
3. 摠戎廳	298
4. 守禦廳	299

5. 管理營 303
 6. 鎮撫營 303

第2章 武官職과 武科 및 기타 官職 304

7. 外官職(節度使·虞候·評事) 304
 8. 統制使 306
 9. 邊將 307
 10. 邊地守令 308
 11. 巡將 309
 12. 團練使 310
 13. 點馬御史 311
 14. 武科式年 312
 15. 土官職 314
 16. 影職 317

第3章 軍士·赴防과 保人 등 318

17. 親騎衛 318
 18. 別武士 320
 19. 吹螺赤 321
 20. 補充隊 322
 21. 雜色軍 324
 22. 東伍軍 327
 23. 赴防 340
 24. 保人 344
 25. 坊民 358

第4章 軍令·標信·軍船 기타 359

26. 警守所 359
 27. 軍令 360
 28. 標信 361
 29. 密符 363
 30. 諸船(戰船·防船·兵船) 364
 31. 龜船 365

第1部

大典會通 兵典 譯註

大典會通 卷四

仁政殿編輯

兵典¹⁾ 原 屬衙門은 五衛·訓練院·司僕寺·軍器寺·典設司·世

子翊衛司·續 世孫衛從司 등이다.

【京官職】原 官職을 옮기고 官階를 더하는(올리는) 것은 吏曹의 경우와 같다. 中樞府의 官員 1인, 訓練院의 正 및 主簿 이상 1인과 都摠府의 部將 이외에는 근무일수가 만료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官職을 옮길 수 있다.

○ 무릇 遞兒職²⁾을 받은 자는 소속 衛와 部를 稱하고 衛에 所屬되지 아니한 자도 역시 衛와 部를 稱하며, 遞兒職이 아닌 자는 단지 衛만 칭한다.³⁾

1) 兵典은 周禮의 六官 중 夏官에 해당하며 唐六典 이래의 역대 중국의 法典의 한 篇名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국초의 《經濟六典》 이래 사용된 篇名으로서 經國大典(原), 續大典(續), 大典通編(增)과 大典會通(補)에 이르기까지 서울과 지방의 武班에 관한 官階·官職과 諸官廳, 驛馬·試取·兵船·屬衛·給保·成籍·復戶·免役·軍器 기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遞兒職에 관해서는 《大典會通研究》(한국법제연구원, 1993) 吏典·解說편에 상세한 설명이 있다. 다만 文·蔭·武 당상관 이상 및 三司(홍문관·사헌부·사간원)·春坊(세자시강원) 기타의 淸宦이 實職을 떠날 때에 중1품은 上護軍, 정2품은 大護軍, 중2품은 護軍, 정3품은 副護軍의 淸宦직에 임명하고 또 당하관은 司果·司正·司猛·司勇 등의 淸宦직에 각각 임명하여 다음 보직을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祿俸을 준다. 淸宦직은 이와 같이 淸顯의 官職者가 官職을 떠나 대기상태(無職事)인 경우뿐만 아니라 試官·御史 등 임시관직자 또는 기술관료 등에게 녹봉을 주기 위해서도 임명한다.

3) 여기서 淸宦직이 아닌 자라는 해석에 관하여 淸宦직 중9품에도 미달인 자라는 해석(천관우)

〔續〕經國大典의 兼司僕과 內禁衛 등 官廳은 이
번에 禁軍廳으로 합친다.

○ 議政(정승)이 兵曹判書를 겸직하였으면 비록
정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중요한
관직(고위직)임용이나 긴요한 직위에 補任하는
것에 관해서는 문의하여야 한다.

○ 君으로 封하면서 武班의 관직을 임명할 경우
에는 封君과 동시에 임금의 結재를 받는다. 〔補〕
宗正卿도 같다.

〔增〕江邊七邑⁴⁾ 出身者⁵⁾ 중에서 매년초에 관찰사
가 3인을 골라 추천하면 이를 임금에게 아뢰어
수석으로 추천된 사람은 정규인사(都政) 때에
內三廳(禁軍廳)의 實職⁶⁾으로 임용하고 그 밑의
두 사람은 禁衛營과 御營廳의 哨官으로 나누어

과 兼司僕가 아닌 正職 受職者라는 해석(민현구)이 있다(민현구 외 4인, 《역주 經國大典》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530).

4) 江邊七邑이란 압록강 연변의 의주·강계·초산·창성·삭주·위원·벽동 등을 말한다.

5) 出身者는 文武科擧에 합격한 후 아직 임관되지 않은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文科及第 出身
者를 의미한다.

6) 實職은 虛職에 대한 것으로서 실제 職務(職事)가 있는 官職이다. 예컨대 果川 縣監으로 5인
을 동시에 임명할 경우에도 1인만이 實職者이고 나머지 4인은 虛職(借卿)者이다. 이를 假職이
라고도 하는데 虛職(影職) 중에는 假職뿐만 아니라 外見上으로도 實職과 구별할 수 있는 散
官職도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實職과 대칭적인 散職을 想定하여 影職·檢校職·老人職 및 散
官職 등을 모두 散職에 포함시킨다(《大典會通研究》 앞의 책 吏典 해설편 참조 및 李成茂,
《朝鮮初期 兩班研究》, 一潮閣, 1981, pp.151~156).

임명한다.

○ 名望 있는 武班 집안 사람이지만 雜岐로서 官階를 받은(加資) 경우에는 사람을 살렸거나 범을 잡은 것과 같은 부류 중앙과 지방의 將帥職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觀武才⁷⁾나 別試에 있어서의 활쏘기 때 잘 쏘아 다시 官階를 올려 받게 될 것 같으면 세척되어 이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 納粟帖⁸⁾으로 官階를 줄 경우에는 實職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補] 空名帖⁹⁾도 이와 같다.

○ 參上官인 武兼宣傳官¹⁰⁾과 守門將 [補] 部將 은

- 7) 觀武才는 특별한 王命이 있을 때에 한하여 시행하는 武人에 대한 과거시험으로 初試와 覆試 및 殿試가 있으며 嘉善大夫 이상인 武官이나 禁軍別將·扈衛別將·禁軍將·五衛將·內乘·別軍職·兵曹의 堂上軍官·五軍門의 中軍 이하 諸將校·宣傳官 기타 法定人員들에게는 初試를 면제한다. 觀武才는 《續大典》에 처음 등재된 것이나 中宗 28년 5월 獄事로 觀武才의 실시를 停止한다는 實錄의 記事가 있었고(《中宗實錄》 卷74-42 中宗 28년 5월 己未), 中宗 37년에 觀武才 시행여부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祖宗朝未聞有之 不知創於何時」(《위의 책》 卷 99-10, 中宗 37년 8월 記事)라 한 점에서 中宗代에 비롯된 듯하다. 그 후에도 觀武才에 관한 實錄記事가 이어져 있다(《明宗實錄》 卷22-48, 卷24-29, 《光海君日記》 卷57-31, 《肅宗實錄》 卷64-21, 《正祖實錄》 卷43-19 기타). 그러나 武科의 하나로서 正式으로 試取하게 된 것은 孝宗 4년일 것이다(《萬機要覽》 軍政篇 3, 御營廳 試藝 觀武才). 初試에서는 여러 무술기에 중 응시자의 職分에 따라 한 두 가지 또는 몇 가지 기예를 시험보여 뽑은 후 覆試에서는 初試에서 합격한 무술기예로서 임금의 親臨下에 시험보여서 閑良인 합격자는 殿試에 곧 바로 응시하도록 하고 武科出身 이상자인 경우에는 柳葉箭 3발 맞춘 경우에 4점을 주어서 守舍이나 邊將으로 임명하고 기타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官階를 올려주거나 論賞한다(《大典會通》 兵典, 試取).
- 8) 納粟帖이란 농사의 흉작이나 전쟁·내란 등으로 인한 굶주림(기근)의 해결책으로 일정한 양의 곡식을 바친 자에게 벼슬(官階·官職)을 주는 것을 말한다. 納粟補官의 유래와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朴容淑〈朝鮮王朝의 納粟補官考〉, 《부산대학교 논문집》 19輯, 人文社會科學篇(1975) 및 李鍾日, 〈朝鮮後期 官階·官職의 除拜陞遷考〉, 《政策論叢》 卷1(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6) 참조.
- 9) 空名帖은 위 納粟補官時의 임명장인데 이름을 공란으로 하여 각 지방에 배부하면 각 지방관이 이 곡식이나 금품을 받고 이름을 써넣어 교부하는 것으로서 조선후기에 특히 성행하였다(박용숙 및 이종일의 앞의 글 참조).
- 10) 參上官이란 당하 정3품 이하 중6품까지의 官僚를 말하며 武兼이란 文兼의 대칭되는 용

六品인 實職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전에 곧바로 都事나 判官 등 官職에 임용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임금의 특별한 지시로 추천되는 사람(不次別薦人)은 이에 구애되지 아니한다.

○ 訓練院正은 在職月數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堂上官으로 추천(승진임용)될 수 있으나 守令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수령으로 임명한 후에 비로소 추천된다. 비록 수령을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虞候를 거쳤으면 官階승진(陞資)에 지장이 없다.

○ 副正으로는 參上宣傳官·經歷·僉正·기타 四品을 거친 사람을 두루 추천한다. [補] 參下宣傳官·監察을 거친 사람도 추천한다.

○ 禁軍將·忠翊將·忠壯將·五衛將 등의 관직에는 解由¹¹⁾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補] 摠管·宣傳官·文兼宣傳官·武兼宣傳官·守門將·內乘¹²⁾·營將·中軍 등의 관직에도 같다.

어로서 선전관을 겸한 武官이란 뜻이다.

11) 解由에 관해서는 《大典會通研究》 戶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 pp.50~55 참조.

12) 內乘은 고려 후기 王宮에서 쓰는 馬匹을 관장하기 위하여 司僕寺와는 별도로 설치하였던 기관이다. 조선시대는 태종 때 內司僕寺의 설치, 세조 때 兼司僕의 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馬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국대전에서는 內乘 3명을 두어 密侍·陪從·輦轂·御馬의 점검과 養育·調習 등을 맡게 하였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600). 內乘 1인은 司僕寺正이 겸하고 나머지도 모두 兼官으로 되어 있다(《성종실록》 권189-3, 성종 17년 3월 戊申). 兼司僕은 入直·侍衛 기타 군사적 기능을 맡는 정예의 騎兵部隊員이나(南都泳, 《朝鮮初期의 兼司僕에 대하여》,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79, pp.34~35) 그 身分上의 제한은 엄격하지 않아서 서열 등도 임용되었지만 內乘은 淸班인 近侍之職으로서 뚜렷한 양반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臺諫들의 주장과 비록 신분이 낮지만 3품인 司僕(임금의 乳母인 奉保夫人의 아들이라서 賤人出身)을 임명하고자 하는 임금(성종) 간에 다툼이 있었다(《성종실록》 권189-1~3, 성종 17

○ 처음 벼슬하는 사람은 出身과 閑良¹³⁾을 막론하고 宣薦이면 禁軍을 거치고 守·部薦¹⁴⁾이면 騎士¹⁵⁾를 거쳐서 지방의 守·部薦에 있어서 특별히 취재시험으로 벼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구애되지 아니한다. 소정의 근무일수가 지난 후라야 모두 6개월을 기한으로 한다. [補] 守門將과 部將으로 추천될 騎士가 減罷된 후에는 禁軍으로서 말을 바쳐서 6개월 기한이 지나야 한다. 비로소 임용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 각 營門에서 계속 근무하여 만 45개월이 된 후 비로소 부지런히 근무(勤續)한 것을 보고하여 武官겸직인 宣傳官(중앙관직과 지방관직으로 추천) 宣傳官으로 추천된 禁軍(중앙관직으로 추천)과 各番禁軍¹⁶⁾은 전의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정기인사이동(都目) 때마다 각 2인씩 ○ 駕前別抄와 駕後禁軍¹⁷⁾도 都目 때마다 3인씩을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윤번으로 추천 ○ 別軍職¹⁸⁾·壯勇衛¹⁹⁾ 및 內禁衛·羽

년 3월 병오·정미·무신·기유).

- 13) 閑良은 幼學에 대칭되는 말로서 幼學이 文科及第나 生員·進士시험 합격 전, 또는 任官前인 士族(일부 庶族 포함)의 호칭인데 반하여 閑良은 武科及第前 또는 任官前인 武班(조선후기에는 일부 士族과 다수 庶族 포함)의 호칭이다.
- 14) 무과급제자를 신분에 따라 대체로 士族이면 宣薦을 하였고 庶族(中庶人 이하)이면 守部薦을 하였다. 宣薦이란 무과급제자를 선전관 임용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말하고 守部薦이란 守門將 또는 部將 임용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 15) 騎士는 금위영 및 어영청에 소속된 軍官이다.
- 16) 各番禁軍이란 各番(보통 6番)으로 나누어 임금의 호위를 맡은 禁軍(侍衛軍)을 말한다(鄭在覺 外 3인, 《國譯 大典會通》, 高大出版部, 1960, p.360).
- 17) 駕前別抄는 임금의 가마 앞에서 호위하는 侍衛軍이고 駕後禁軍은 임금의 가마 뒤에서 호위하는 侍衛軍이다(同上).
- 18) 別軍職은 別軍職廳의 軍官職으로서 임금에 대한 侍衛와 간신을 잡아 내는 경찰사무도 맡았다. 別軍職廳은 효종이 봉림대군 시절 심양에 불모로 갔을 때의 호위군이었던 8장사를 궁중에 두고 만들었던 친위병조직으로 그 후 인원수가 늘어났다.
- 19) 壯勇衛는 五衛 중 忠武衛(後衛)에 소속된 군대로서 일부 良人과 다수 賤人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조 5년에 처음 설치될 때에는 奴軍이었으나 성종 6년에 壯勇隊를 壯勇衛로 개칭하면서 良人도 入屬시켰다. 定員 600명으로 5交代로 6개월간 복무시켰으며, 종6품 이하의 체아

林衛·兼司僕의 正·領²⁰⁾인 禁軍과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각 哨官 및 좌·우捕盜軍官과 훈련원의 習讀官²¹⁾·權知²²⁾ 訓練院奉事·參軍의 去官者²³⁾와 경기감영·강화부·통어영의 教鍊官·哨官 등은 윤번으로, 義州騎撥²⁴⁾과 西北別付料軍官²⁵⁾ 및 평안병영의 欄後士²⁶⁾와 取才시험의 수석합격자 및 훈련원의 判官·主簿는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部將·守門將도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都目 때마다 각 1인씩 ○ 병조의 教鍊官 및 堂上軍官과 훈련도감의 知穀官 및 旗牌官과 금위영·어영청의 教鍊官 및 旗牌官 등은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一都目에서는 각 2인씩 다음 一都目에서는 각 1인씩 ○ 수어청의 교련관 및 기패관은 근무일수를 통산하고 三營²⁷⁾都提調의 軍官도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윤번으로, 또 三營의 別軍官도 윤번으로 都目 때마다 각 1인씩 ○ 正 및 領인 禁軍은 전의 근무일수를 통산하고 權知 훈련원參軍·수어청哨官·총융청哨官·教鍊官·북한산성의 軍官·抄上禁軍²⁸⁾(평안도와 함경도의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윤번으로)·남한산성의 哨官과 教鍊官은 윤번으로 각 一都

직 15자리가 있었고 去官 후 중6품의 實職을 주었다(千寬宇, 《近世朝鮮史研究》, 一潮閣, 1981, pp.98~99). 그러나 正祖 때 신설된 壯勇衛는 국양호위를 전담한 部隊로서 同王 8년 慶科인 武科及第者 2000여 명을 흡수하여 강력한 친위부대가 되었으며 후일 主力軍으로서의 壯勇營으로 발전하였다(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韓國軍制史》 조선후기편, 陸本, 1977, pp.198~219).

20) 正과 領은 禁軍의 편성단위의 長으로서 領은 10인을 거느렸고 正은 3領(33인)을 거느렸다(정재각 외 3인, 앞의 책, p.361).

21) 習讀官 중에는 士族子弟로서 年少聰敏한 자를 뽑아서 체아직을 주어서 醫術을 익히도록 한 醫書習讀官(《세조실록》 권12-4~5, 세조 4년 3월 정미, 《같은 책》 권 27-16, 세조 8년 2월 기묘)이 典醫監에 있었고, 그 외에 司譯院과 觀象監 등에도 漢學習讀官·天文習讀官 등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兵書를 습득시키는 훈련원의 習讀官만을 의미하는데 訓練習讀官은 일정기간을 근속하면 훈련원 主簿로 임명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차지 않아도 內禁衛의 경력이 있으면 主簿로 임명될 수 있었다(《成宗實錄》 卷168-3, 성종 15년 7월 戊子).

22) 權知는 임시직으로 지금의 試補와 비슷하다. 訓練院에는 權知奉事와 權知參軍이 있다.

23) 去官者는 일정한 기간(임기)이 차서 관직을 떠나 다른 관직에 임용되는 자이다.

24) 騎撥은 步撥의 대칭으로서 騎馬로서 文書·荷物 등을 전달하거나 운송하는 일을 맡는다. 驛站마다 人馬가 준비되어 있어 긴급한 연락·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정재각 외 3인, 앞의 책, p.361).

25) 西北別付料軍官은 經常費(정규예산)가 아닌 다른 費目(別付料)으로부터 급료를 받는 평안도(때로는 황해도 포함)와 함경도의 軍官을 말한다(同上).

26) 欄後士는 部隊의 後尾를 경비하는 各兵營의 一軍職이다(《校註 大典會通》, 조선총독부 중추원, p.450).

27) 三營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三軍門을 말하며 三營門이라고도 한다(정재각 외 3인, 앞의 책, p.361).

28) 抄上禁軍이란 지방에서 선발되어 서울로 보내진 禁軍이다.

目씩 건너서 1인씩 ○ 호위청軍官 및 훈련원의 兼習讀官과 개성부의 把摠
 이하인 將官 및 수원부의 把摠 이하인 將官은 각 二都目씩 건너서 1인씩 ○
 喬桐의 將官은 三都目を 건너서 1인씩 ○ 三軍門의 別武士 각 1인과 事知禁
 軍²⁹⁾ 및 能麼兒廳의 兼郎廳(郎官)과 남양·양주·과주·장단의 將官 각 1인
 씩 간간이 收用하고³⁰⁾ 補 훈련원의 判官과 主簿는 두루 올려서(通融) 都目
 때마다 1인씩, 武兼宣傳官은 都目 때마다 2인씩, 部將과 守門將은 두루 올려
 서(通融) 都目 때마다 1인씩 ○ 駕前別抄와 駕後禁軍은 각 一都目에서는 1
 인씩, 一都目에서는 2인씩, 내금위·겸사복·우림위는 都目 때마다 각 2인
 씩, 正 및 領인 禁軍은 都目 때마다 1인씩, 또 전의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一
 都目を 건너서 1인씩, 權付禁軍³¹⁾은 都目 때마다 1인씩 ○ 병조의 堂上軍官
 과 教鍊官은 都目 때마다 각 1인씩 ○ 훈련도감의 哨官·知敎官·旗牌官·
 別武士 등은 都目 때마다 각 1인씩 ○ 금위영의 哨官은 都目 때마다 1인씩,
 교련관과 기괘관은 두루 올려서(通融) 一都目에는 1인씩 다음 一都目에는 2
 인씩, 騎士도 一都目に 1인씩, 다음 一都目に 2인씩, 別武士는 都目 때마다
 1인씩 ○ 어영청의 哨官은 도목 때마다 1인씩, 교련관과 기괘관은 두루 올
 려서 一都目에는 1인씩 다음 一都目에는 2인씩, 騎士도 一都目에는 1인씩
 다음 一都目에는 2인씩, 別武士는 都目 때마다 1인씩 ○ 三營都提調의 軍官
 은 두루 올려서 1인씩 간간이 收用하고 別軍官은 윤번으로 都目 때마다 1인
 씩 ○ 事知禁軍은 1인씩 간간이 收用 ○ 左·右捕盜軍官은 都目 때마다 각
 1인씩 ○ 扈衛廳軍官은 二都目を 건너서 1인씩 ○ 충융청의 哨官과 教鍊官
 은 각각 一都目を 건너서 1인씩 ○ 訓練院習讀官은 都目 때마다 1인씩, 兼
 習讀官은 二都目を 건너서 1인씩 去官시켜서, 主簿는 都目 때마다 1인씩, 權
 知 參軍 및 奉事는 두루 올려서 都目 때마다 1인씩 ○ 평안도와 함경도(서
 북)의 抄上禁軍은 두루 올려서 一都目 건너서 1인씩 ○ 서북의 別付料軍官
 은 都目 때마다 각 1인씩으로 하되 淸南別付料軍官과 南關³²⁾별부료군관을
 윤번으로 하여 都目 때마다 1인씩 ○ 남한산성에 있는 수어청의 哨官과 教
 鍊官은 두루 올려서 都目 때마다 1인씩, 남한산성의 초관과 교련관은 두루
 올려서 一都目を 건너서 1인씩 ○ 북한산성의 把摠 및 초관과 교련관은 두

29) 事知禁軍이란 일을 많이 알고 익숙하여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禁軍이다.

30) 間間收用이란 특별한 인재 혹은 공로가 있는 자를 吏曹·兵曹 또는 각 관찰사가 추천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관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그때그때 등용하는 것을 말한다(정재각 외 3인, 앞의 책, p.36).

31) 權付禁軍은 임시로 임명한 禁軍이다.

32) 淸南은 평안도의 청천강 이남을 말하고 南關은 함경도의 마천령 이남을 말한다.

루 올려서 一都目を 건너서 1인씩 ○ 수원부의 지구관과 교련관은 두루 올리고, 守堞軍官³³⁾과 別驍士 및 禁軍의 正·領은 윤번으로 하되 위 지구관 및 교련관과 더불어 윤번으로 도목때마다 1인씩 ○ 강화부의 파총 및 초관과 교련관은 두루 올려서 도목때마다 1인씩 ○ 개성부의 파총 이하 將官은 두루 올려서 二都目を 건너서 1인씩 ○ 경기監營의 초관과 교련관은 두루 올려서 도목 때마다 1인씩, 경기水營의 초관과 기패관도 두루 올려서 도목 때마다 1인씩 ○ 양주의 초관과 교련관은 두루 올려서 1인을 간간이 수용 ○ 파주의 초관과 교련관은 두루 올려서 1인을 간간이 수용 ○ 영종도의 파총 및 초관과 교련관은 두루 올려서 1인을 간간이 수용 ○ 장단의 초관과 지구관은 윤번으로 1인을 간간이 수용 ○ 남양의 초관과 교련관을 윤번으로 하되 죽산의 초관과 지구관도 윤번으로 하여 남양의 將官과 더불어 윤번으로 1인씩 간간이 수용 ○ 의주의 騎撥將官은 도목때마다 1인씩을 소정의 근무 월수 만료 후(45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보고해 오면 수용 ○ 평안병영의 欄後士는 도목때마다 1인씩을 시험으로 뽑아서 보고해 오면 수용 ○ 평안도에서 특별히 천거할 사람(關西別薦)을 매년초에 시험으로 뽑아서 관찰사가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하여 調用(골라 씀) ○ 동래부의 守設門將은 二都目を 건너서 1인씩 ○ 景慕宮의 植木牌將은 보고해 오는 대로 수용 ○ 舟橋司의 監官³⁴⁾은 보고해 오는 대로 수용 ○ 康世爵³⁵⁾과 胡斗弼³⁶⁾의 후손을 도목때마다 각 1인씩 특별히 골라서 任用 ○ 西北別付料軍官은 1인씩, 淸南別付料軍官과 南關別付料軍官은 윤번으로 1인씩을 도목 때마다 시험으로 뽑아서 서북도의 희망자가 없는 곳의 邊將으로 임명하여 보내고 西別付料軍官·北別付料軍官·淸南別付料軍官·남관별부료군관·남관별부료군관 중에서 도목 때마다 각 1인씩 정상이 가련한 자를 골라 자리가 나는 대로 임명하여 보낸다(差送한다). 邊將으로 추천하여 임명한다.

補 ○ 병조의 당상관 및 承旨가 摠管에 임명되

33) 守堞軍官은 城丁軍과 함께 水原城을 지키는 예비 守城軍으로서 총융청 소관의 在家軍官 50인, 수원부 소관의 防營除番軍官 290인, 討捕除番軍官 459인 등 약 800인으로 구성되었다(陸士 한국군사연구실, 《앞의 책》 p.290).

34) 舟橋監官은 임금의 거동시에 舟橋의 架設을 감독하였던 軍官이다.

35) 康世爵은 明의 遺臣으로서 그 祖上들은 대대로 將臣이었고 三代가 淸과의 전투에서 戰死하였으며 明이 망한 뒤에는 그 자손이 會寧부근에서 살았다.

36) 胡斗弼은 중국 山東에서 함경북도로 귀화한 胡克己의 손자로서 孝宗 때 화양동에 있는 萬東廟를 守護하고 祿을 받았다.

면 병조의 당상관 및 승지의 관직을 해임하고
총관이 병조의 당상관 및 승지에 임명되면 총관
의 관직을 해임한다.

【西班牙官階】³⁷⁾ 原

正一品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이상의 官階는 東班과 같다

正三品 折衝將軍 이상은 堂上官이다

正三品 禦侮將軍

從三品 建功將軍 保功將軍

正四品 振威將軍 昭威將軍

從四品 定略將軍 宣略將軍

正五品 果毅校尉 忠毅校尉

37) 高麗時代에도 武散階가 있었으나 歸化人에게 수여하는 등 달리 활용하였고 武官에게는 文散階를 주었는데(旗田巍, 〈高麗の武散階〉,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pp.384~385, 1972), 朝鮮 太祖 元年 7월 丁未 新官制公布 때 武散階는 명실공히 武班의 官階로 되었다. 이 때 制定公布된 武散階는 다음과 같다. 西班 정3품 折衝將軍·果毅將軍, 중3품 保義將軍·保功將軍, 정4품 威勇將軍·威毅將軍, 중4품 宣節將軍·宣略將軍, 정5품 忠毅校尉·顯毅校尉, 중5품 顯信校尉·彰信校尉, 정6품 敦勇校尉·進勇校尉, 중6품 承義校尉·修義校尉, 정7품 敦勇副尉, 중7품 進勇副尉, 정8품 承義副尉, 중8품 修義副尉(《대조실록》 권1-49, 태조 원년 7월 정미). 위 官階는 世祖 12년 正月 官制改革 때 일부 명칭이 바뀌어 法制化된 후 큰 변동없이 大典會通 兵典까지 이르게 된 것이며, 세조 12년 정월에 折衝將軍이 당상관으로 승격되었다(《세조실록》 권38-7, 세조 12년 정월 무오).

從五品 顯信校尉 彰信校尉
 正六品 敦勇校尉 進勇校尉
 從六品 勵節校尉 秉節校尉
 正七品 迪順副尉
 從七品 奮順副尉
 正八品 承義副尉
 從八品 修義副尉
 正九品 效力副尉
 從九品 展力副尉

【正一品 衙門】(官廳)

【中樞府】³⁸⁾ 原 관장하는 직무는 없고, 所任이 없는
 문무당상관을 우대하기 위한 관청이다. 續 議政이 遞

38) 中樞府는 직무와 소임이 없는 문무당상관을 우대하기 위한 관청으로 되었으나 고려시대에는 王命出納·兵機·軍政·宿衛·警備 등 중요한 일을 맡은 實權있는 機關이었다. 조선은 건국초 고려의 官制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여 中樞院을 설치하였으나, 태조 2년에 종래 이성계의 私兵 中心인 親軍左·右衛를 합쳐서 고려의 二軍六衛를 十衛로 개편하고 이들의 감독기관인 三軍都 摠制府를 義興三軍府로 개편하여 軍權을 모두 여기에 집중시키자 중추원의 권한은 매우 약화 되었다. 定宗 2년에 私兵이 혁파되고 官制改革할 때 중추원과 義興三軍府를 합쳐서 三軍府로 하였다가 태종 원년에 承樞府로 개칭하여 軍令權과 王命出納權을 장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태종 5년의 官制改革 때 承樞府는 兵曹에 併合되고 王命出納의 임무는 신설된 承政院에서 맡게 되었다. 그 후 세종 14년에 새로이 중추원을 설치하여 宿衛와 警備 등의 일을 맡게 하였다가 세조 12년에 중추원을 中樞府로 개칭하여 소임이 없는 기관으로 되었다. 그러나 所掌이 없다는 중추부의 당상관 일부는 巡將으로서 行巡의 임무를 맡는다던가 觀察使나 兵馬節度使로 兼任되는 수도 있었다(閔賢九 외 4인, 《譯註 經國大典》 註釋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p.533~534).

職(면직)되면 西班(중추부)으로 보내어 領事와 判事의 定員數가 비록 찼더라도 모두 判事로 임명(付職)한다. ○ 知事와 同知事 및 僉知事 등의 자리에 醫官·譯官이 왕명을 받아 임명되는 경우에는 30개월을 기한(임기)으로 하여 遞職(면직)한다. ○ 동지사와 첨지사의 자리에 老人職³⁹⁾으로서 資級(官階)을 올려 임명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기한으로 한다. [增] 大臣⁴⁰⁾ 이외에는 領事로 임명될 수 없고 冢宰와 宗伯 및 司馬⁴¹⁾를 거치지 아니한 사람은 判事に 임명될 수 없다. ○ 老人職인 資憲大夫의 경우에는 文官·蔭官·武官을 막론하고 4품의 實職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은 知事に 임명될 수 없다. [補] 백세 이상의 사람은 同知事に 定員外로 자리를 더 만들어 단일 후보로 추천하여 임명한다(加設單付). ○ 知事·同知事·僉知事が 定員外로 加設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임명된 자는 1개월이 지나면 해임(減下)된다. ○ 雲臺官⁴²⁾과 醫官 및 譯官은 함께 임용후보자로 천거한다.

領事 1인 정1품 判事 2인 종1품 知事 6인 정2품 同知事 8인 종2품 [原] 7인 [續] 1인을 더 두어 衛將의 遞兒職으로 한다. 僉知事 8인 정3품 [續] 3인은 衛將의 체아직으로 한다. 經歷 1인 종4품. 都事 3인 종5품 [原] 1인 [補] 2인을 더 둔다.

【宣惠廳】 [續] 大同米·布·錢의 出納事務를 관장한

다. ⁴³⁾ 경기청은 선조 무신년(광해 즉위년 1608)에 만들어졌고 강원청은 인조 갑자년(1624)에 만들어졌으며 湖西廳은 효종 임진년(1652)에, 湖南廳은 효종 정유년(1657)에, 嶺南廳은 숙종 정사년(1677)에 각각 만들어졌다.

39) 老人職에 관해서는 大典會通 吏典에 규정이 있다.

40) 大臣은 相臣이라고도 하는데 <國朝人物考>(서울대 출판부, 1978, 影印本) 上の 相臣편을 보면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지낸 사람만 수록되어 있으므로 大臣이란 바로 이들 3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1) 冢宰는 이조판서, 宗伯은 예조판서, 司馬는 병조판서의 별칭이다.

42) 雲臺官은 天文學·地理學·命課學(占卜術) 등을 전공한 기술관료이다.

43) 大同米布錢에 관해서는 <대전회통연구> 戶典·禮典編(한국법제연구원 1994, 12) 해설부 문 참조.

常平廳은 조선국초에 만들어졌으며 賑恤廳⁴⁴⁾은 처음에는 備邊司에서 맡아서 관리하다가 병인년(1626)에 (상평청과 합쳐) 선혜청에 이속되었다. ○ 都提調는 현직三公(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겸하고 提調 2인은 2품 이상이 겸하며 1인은 戶曹判書가 의례히 겸한다. [補] 원래 東班(文班)관청에 속하였으나 고종 을축년(1865)에 西班(武班)관청으로 옮겼다(移錄).

都提調 3인 정1품 **提調 3인** 종2품 이상 **郎廳 5인** 종6품으로 하되 그중 4인은 蔭官으로서 4품 이상을 거친 자를 임용하고 1인은 간혹 문과급제자인 관료(文臣)로서 임명한다. ○ 낭청은 영남·경기청을 兼察하고 호남·강원청을 兼察하며 호서·해서청(詳定廳)을 兼察하고 진흥·상평청을 兼察한다. [增] 英宗 경오년(1750)에 均役廳⁴⁵⁾을 설치하여 郎官 1인을 더 두고 상평청과 진흥청을 겸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濬川司】 [增] 都城(서울) 안의 개천과 도랑(川渠)을 濬渫(바닥을 쳐서 깊게 함)하여 소통시키는 일을 관장한다. 英宗 경진년(1760)에 창설되었다. 都提調는 현직 議政이 겸직하고 提調는 6인으로 하되 兵曹判書·漢城判尹·訓練大將·禁衛大將·御營大將이 겸직하며 1인은 비변사 당상관을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명한다. [補] 비변사를 의정부에 합친다. ○ 원래 東班관청에 속하였으나 고종 을축년(1865)에 西班관청으로 옮겼다. ○ **【舟橋司】** 正宗 경술년(1790)에 창설되

44) 賑恤廳은 仁祖 4년(1626), 종래의 救荒廳을 改稱한 飢民 구제기관으로서, 常平廳과 합쳐서 宣惠廳에 소속시켰다. 진흥청은 주로 서울 이외의 지방을 구제하였고, 백성을 진흥할 때에는 진흥청이라 하였으나, 진흥이 끝나면 常平廳이라 하였다(李弘植《國史大事典》上, 韓國出版社, 1982, p.181). 진흥·상평청은 영조 26년(1750) 균역청의 설치로 균역청 郎官의 관리 하에 두게 되었다가 균역청이 영조 29년 선혜청에 합병됨으로서 다시 선혜청 소속이 되었다.

45) 均役廳은 영조 26년(1750)에 설치되어 均役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균역청은 영조 29년(1753) 선혜청에 합병되었다. 균역법은 종래 平民의 부담으로 되어 있던 兵役義務(身役)의 이행수단으로서의 良布 2필은 너무 과중하였으므로 이를 半減하고 그대신 재정상의 부족분을 漁·鹽·船稅와 選武軍官布 및 結作의 징수로서 보충하기로 하였다(이홍직, 위의 책, p.218).

어 濬川司에 부속하여 舟橋 및 兩湖(호남과 호서)의 漕運 등의 일을 관장하며 都提調·提調·都廳 등은 모두 준천사의 해당직이 의례히 겸직한다. ○ 임금이 거동(行幸)하여 강을 건널 때에 舟師大將은 서울에 남아 있는 將臣 중에서 후보자를 갖추어 임명하도록 하고 渡江의 일을 전담시켜 거행하도록 한다.

都提調 3인 정1품 提調 6인 종2품 이상 都廳 1인 정3품 당상관으로 하되 어영청의 千摠이 겸직한다. [補]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別將과 千摠 중에서 겸직한다. 郎廳 3인 정7품으로 하되 동·서·남 三道 參軍⁴⁶⁾이 겸직한다.

【正二品 衙門】

【五衛都摠府】⁴⁷⁾ [原] 五衛의 軍務를 맡아서 다스린

- 46) 서울 주위에 있는 森林과 土石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역을 동·서·남·북의 四道로 나누어 四山の 參軍으로 하여금 監視하게 하였는데, 여기서는 그중 동·서·남도의 參軍을 가리킨다 (정재각 외 3인, 앞의 책, p.371).
- 47) 五衛都摠府는 조선전기의 중앙군사조직의 중추인 五衛의 軍務를 총괄하던 최고의 軍令機關이었으나(閔賢九 외 4인, 앞의 책, p.535), 중종 이후 비변사의 설치와 특히 조선 후기 五軍營 내지 三軍門의 신설 등으로 5衛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도성경비를 맡는 閑職으로 되자 五衛都摠府는 거의 기능이 상실되어 명목상으로만 남아 있다가 고종 19년(1882) 軍制改革 때 폐지되었다. 본래 조선의 軍制는 고려 공양왕 때 개편된 三軍都摠制府를 계승하였으나, 태조 2년(1393)에 義興三軍府로 개편함과 동시에 重房을 혁파하였고(《태조실록》 권4-7, 태조 2년 9월 丙辰), 定宗 2년(1400) 私兵이 혁파된 후 義興三軍府는 軍機와 宿衛를 관장하는 中樞府를 합속시켜 三軍府라 하였으며(軍事發令權은 의정이 있음), 그 후 三軍府는 承樞府로 개편되었다가 太宗 5년 六曹의 승격으로 兵曹에 병합되어 병조에 의한 單一軍政(軍令)體系가 수립되었다. 태종 9년에 三軍鎮撫所를 신설(《태종실록》 권18-11, 태종 9년 8월 庚戌)하여 병조와 兩立된 軍政(軍令)體系를 유지해 오다가 태종 14년 6曹直啓制의 확립으로 사실상 병조의 감독 하에 들어갔으며, 세조 3년에 中央軍 조직이 五衛로 개편되자 三軍鎮撫所는 五衛鎮撫所로 되고, 세조 12년 官制改革 때 五衛都摠府로 개칭되어(《세조실록》 권38-7, 세조 12년 정월 무오) 그대로 경국대전에 실렸다. 五衛는 고려의 중앙군인 二軍六衛를 계승하여 이성계의 親兵을 바탕으로 한 義興親軍左右衛를 합쳐서 태조 원년 7월의 義興親軍十衛(《태조실록》 권1-49, 태조원년 7월 정미)를 창설한 이후 몇 차례의 개편을 거쳐 문종 원년에 五司로 개편한 것으로서(《增補文獻備考》 권226-4, 職官考 13) 세조 3년에 五司를 五衛로 하였는데 문종

다. 都總管과 副總管은 모두 10인으로 하여 다른 관원으로서 겸직시키되 1주년이 되면 서로 교체한다. 오위의 여러 장수(諸將)도 이와 같다. ○ 당하관으로는 행정능력(吏才)이 있고 군무에 숙련된 자를 取才⁴⁸⁾시험으로 임명하되 겸직으로 한다. 部將도 이와 같다. 增 五衛의 將에 임명된 자(將任)는 總管을 겸직할 수 없다. 補 도총관·부총관이 비록 승진 또는 강등으로 다른 관직에 임명될 경우에도 도총관을 결원으로 할 수 없다. ○ 上輔國崇祿大夫와 輔國崇祿大夫는 임금의 특별한 명령 없이는 도총관으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 당하관은 선전관 임용후보자로 추천(宣薦)된 자 중에서 골라 임명한다.

都總管 5인 정2품 副總管 5인 종2품 經歷 6인 종4품
 原 4인 續 2인을 더 둔다. 都事 6인 종5품 原 4인 續 2인을 더
 둔다.

【正三品 衙門】 五衛 原 종2품 관청이었으나 續 강등하였다.

【五衛】 原 【義興衛】 中衛⁴⁹⁾이다. ○ 甲士⁵⁰⁾와 補充隊⁵¹⁾가 여기 속

원년 各衛(司) 밑에 5部를 두고 各部 밑에 4統을 두었으며, 또 統 밑에 旅(125인)·隊(25인)·伍(5인)가 있었다(《문종실록》 권8-16, 문종 원년 6월 병술 및 《세조실록》 권7-2, 세조 3년 3월 기사). 部將은 예하의 군사를 이끌고 入直하는 일을 맡았으며 자손에게 襲蔭의 혜택이 있었다.

48) 取才는 조선시대에 과거와 별도로 시행하였던 관리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이다. 취재시험은 守令·外教官·驛丞·渡丞 및 錄事·書吏 등 文班職官吏와 武班인 諸將과 軍士를 임용하는데 널리 이용되었다. 武班取才는 經國大典 兵典 試取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37). 原文의 「除取才兼用」을 번역함에 있어서 除를 민현구는 除授로 보았고, 정재각, 윤국일(평양) 및 조선총독부 등 다수설은 免除로 보았다. 조선시대의 武將임용시 取才시험이 일반적인 것 같았고(《성종실록》 권168-8, 성종 15년 7월 임인), 除의 用例도 除授로 쓰인 것이 많았다(같은 책, 권168-3, 성종 15년 7월 무자).

49) 中衛는 五衛陣法에 있어서의 中翼을 가리킨다. 五衛陣法은 고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세종 3년 변계량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문종 원년에 체계화되었고, 세조 3년에 中央軍事組織이 五衛陣法體制에 맞추어 개편되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39).

50) 甲士는 義興衛에 소속된 基幹兵種으로서 궁중호위를 맡은 內甲士와 수도방위를 맡은 外甲士

한다. ○ 서울의 중부와 개성부 및 경기도의 양주·광주·수원·장단 鎭管⁵²의 군사는 中部에 속하고 강원도의 강릉·원주·회양 진관의 군사는 左部에 속하며 충청도의 공주·홍주 진관의 군사는 右部에 속하고 충주·청주 진관의 군사는 前部에 속하며 황해도의 황주·해주 진관의 군사는 後部에 속한다. 【龍驤衛】 左衛이다. ○ 別侍衛⁵³와 隊卒⁵⁴이 여기 속한다. ○ 서

이외에 兩界甲士와 捉虎甲士가 따로 있었다. 甲士는 정종 2년에 甲士復立의 조치와 더불어 제도화되어 司直·副司直·司正·副司正 등의 祿을 받는 中間士官層으로서 조선전기에는 試取를 통하여 양반자제가 많이 入屬되었으나 후기에는 서얼들도 入屬하게 되었다. 甲士의 定員은 14,800인이었으나, 五交代로 6개월씩 근무하였으므로 실제 복무하고 있는 兵力은 2,960인이다. 그중에서 遞兪職을 받는 자가 종4품 이하 2,000인이며 나머지 인원은 流外의 軍士였다고 한다(천관우, 《近世朝鮮史研究》, 일조각, 1981, pp.95-96). 그러나 문종 원년 6월 당시의 番上 甲士의 元額이 1,500인이었는데 그 때 75인을 증원하였다(《문종실록》 권8-6, 문종 원년 6월 계유).

- 51) 補充隊는 義興衛에 소속된 부대로서 賤人 또는 身良役賤의 下層身分者가 免賤·從良의 前提로서의 兵役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만든 兵種이다. 당초 太宗 15년에 干尺의 무리와 各品 官員의 賤妾所生으로서 贖身할 자를 소속시켜서 立役 후에 從良시킬 목적으로 定員 3,000명의 보충군을 두었다. 그러나 보충군은 軍事的 機能 수행보다는 下層民의 身分向上의 역할을 맡았다. 이 보충군은 예종 원년에 보충대로 개칭되었고(《예종실록》 권5-8, 예종 원년 4월 기사), 그 入屬범위도 양반을 父로 하고 公·私賤을 母로 하는 賤妾子孫으로 限定되었으며 정원은 없고 4교대로 4개월씩 복무한 후 1,000일이 차면 종9품의 雜職을 받고 從良하게 된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40).
- 52) 鎭管은 조선시대의 주요 軍事基地인 巨鎭을 중심으로 하는 地域軍事組織 單位를 지칭한다. 조선 건국초의 地方軍組織은 西北 兩界의 주요 軍事 據點을 중심으로 하는 小地域 單位로 편성된 軍翼道體制와 南方 諸道の 沿海地域의 요새지에 치중한 營鎭軍體制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世祖 元년에 兩界의 軍翼道體制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주요 지역을 巨鎭으로 삼고 주변 여러 고을을 分屬시켰으며 세조 3년 부분적인 개정으로 軍翼道를 鎭管으로 고쳤다. 중심적인 고을 守令이 巨鎭의 兵馬僉節制使가 되어 그에게 分屬된 주변 고을의 守令(諸鎭의 兵馬同僉節制使 또는 兵馬節制都尉)을 군사적으로 명령·지휘하였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41 및 민현구, 《조선초기의 軍事制度와 政治》, 1983, pp.181~259).
- 53) 別侍衛는 五衛의 용양위에 소속된 조선시대의 중앙군을 이루는 주요 兵種이다. 別侍衛는 定宗 2년(1400)에 司樞·司衣 등 고려말 이래의 成衆愛馬를 혁파하고 그 대신 설치한 것인데 甲士보다 지위가 우월하였다. 또한 別侍衛는 大小의 朝賀 때 內禁衛 등과 함께 階上에 서도록 되어 있어 禁軍의 성격을 띄고 있었고, 試取에 의하여 선발되며 총원 1500인으로 五交代로 300인씩 6개월 간 복무하였는데 當番者 全員이 종4품 이하의 階下직을 받았으므로 保人은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였다(천관우, 앞의 책, pp.89~94).
- 54) 隊卒은 조선시대의 중앙군을 이루는 兵種으로서 五衛의 용양위에 소속되었다. 태종 15년에 差備軍으로 설치되었던 攝六十이 世祖代 이후 隊卒로 된 것으로 추정된다(천관우, 앞의 책, pp.103-105). 隊卒은 賤人 중 달리기와 힘(走·力)이 뛰어난 자를 試取하여 실제 役軍으로 종사시켰으며, 총인원이 3,000인데 5交代로 600인이 4개월 간 복무하

울의 동부와 경상도의 대구 진관의 군사는 中部에 속하고 경주 진관의 군사는 左部에 속하며 진주 진관의 군사는 右部에 속하고 김해 진관의 군사는 前部에 속하며 상주·안동 진관의 군사는 後部에 속한다. 【虎賁衛】 右衛이다. ○族親衛⁵⁵·親軍衛⁵⁶·彭排⁵⁷ 등이 여기 속한다. ○ 서울의 서부와 평안도의 안주 진관의 군사는 中部에 속하고 의주·귀성·삭주 진관의 군사 및 창성·창주·방산·인산 진의 군사는 左部에 속하며 성천진관의 군사는 右部에 속하고 영변·강계·벽동 진관의 군사 및 벽단·만포·고산리·위원·초산·영원 진의 군사는 前部에 속하며 평양 진관의 군사는 後部에 속한다. 【忠佐衛】 前衛이다. ○ 忠義衛⁵⁸·忠贊衛⁵⁹·破敵衛⁶⁰가 여기

였다. 隊卒은 一人이 一保를 지급받았고 종8품 이하의 잡직 체아직을 받을 수 있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42).

55) 族親衛는 조선시대 五衛의 虎賁衛에 속한 兵種으로서 王과 先王의 宗姓 袒免 이상 親(9촌·10촌 이내)과 異姓의 總麻 이상 親(외4촌 이내), 그리고 王后와 先后의 親庭의 總麻 이상 親(친8촌, 외4촌 이내) 및 世子嬪의 親庭의 期年 이상 親(친3촌 이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試取를 거치지 않고 入屬하며 일정한 복무를 마치면 官階를 받고 去官하였다. 정원은 없고 長番이며, 종5품 이하의 체아직을 받았는데 그 자리 수는 23인이었다(천관우, 앞의 책, pp.105~106).

56) 親軍衛는 조선시대 五衛의 虎賁衛에 속한 兵種으로서 中央軍을 이루는 군대의 하나였다. 조선 태조의 출신지인 永安道人으로 구성된 親軍衛가 在京侍衛의 兵種으로 확립된 것은 세조 14년이라 하며, 別侍衛와 비슷한 수준의 武藝로 試取하였고, 총원 40인이며 2교대로 20인이 1년간씩 복무하였고, 當番者 全員이 종4품 이하의 체아직을 받았으며 종3품으로 去官하였다(천관우, 앞의 책, pp.94~95).

57) 彭排는 조선시대 五衛의 虎賁衛에 속한 兵種으로서 중앙군을 이루는 군대의 하나였다. 彭排는 태종 15년에 만들어진 防牌라는 兵種이 개칭된 것인데, 이 兵種은 처음에는 선봉에 서는 精兵이었으나 점차 雜役に 동원되면서 質이 저하되어 세조 때에는 役軍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천관우, 앞의 책, pp.99~103). 彭排는 走와 力을 科目으로 試取하였으며 총원이 5,000인으로 5교대로 4개월씩 근무하였고, 保人 一保를 지급받았으며 종8품 이하의 雜職 체아직을 받았다. 彭排도 隊卒과 같이 賤人이 주로 入屬되었다고 한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43).

58) 忠義衛는 五衛의 忠佐衛에 소속된 양반의 특수병종으로 중앙군에 포함되었다. 세종 즉위년에 開國·定社·佐命의 三功臣의 子孫들을 入屬시키기 위하여 忠義衛가 처음 설치되었으며, 그들은 무시험으로 충원하여 分番 宿衛하도록 한 후 일정한 복무를 하고 去官하면 벼슬길에 나설 수 있었다(車文燮, 《朝鮮時代 軍制研究》, 단국대 출판부, 1973, pp.96~134). 그 定額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長番服務를 하였으며 이들을 위하여 《경국대전》에서는 종4품 이하의 체아직 53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종3품으로 去官하였다. 그러나 《속대전》에서는 체아직 수가 대폭 줄어들어서 5석만 남았다.

59) 忠贊衛는 五衛의 忠佐衛에 소속된 양반 또는 庶族의 특수 병종으로 중앙군에 포함되었다. 세조 2년에 原從功臣의 子孫을 入屬대상으로 하여 처음 설치하였는데 忠義衛에 비하여 약간

속한다. ○ 서울의 남부와 전라도의 전주 진관의 군사는 中部에 속하고 순천 진관의 군사는 左部에 속하며 나주 진관의 군사는 右部에 속하고 장흥·제주 진관의 군사는 前部에 속하며 남원 진관의 군사는 後部에 속한다.

【忠武衛】 後衛이다. ○ 忠順衛⁶¹⁾·正兵⁶²⁾·壯勇衛⁶³⁾가 여기 속한다. ○ 서울의 북부와 영안도(함경도)의 북청 진관의 군사는 中部에 속하고 갑산 진관의 군사 및 삼수·혜산진의 군사는 左部에 속하며 온성·경원·경

지위가 떨어졌으며 조선 후기에는 庶人·庶族들이 많이 入屬하였다. 역시 定員은 없고 5교대로 4개월 간 근무하였으며, 체아직은 종6품 이하 20자리가 있었고 종5품으로 去官하였다(차문섭, 앞의 책, pp.96~134).

- 60) 破敵衛는 五衛의 忠佐衛에 소속된 良人의 兵種으로서 중앙군에 포함되었다. 破敵衛는 세조 5년 步兵의 확충을 위하여 走·力과 弓術을 시험하여 良人 軍士를 선발(試取)하여 入屬시킨, 새로 만든 군대로서 入直과 行巡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破敵衛의 총원은 2,500인으로서 5교대에 의하여 500인이 4개월씩 복무하였으며, 체아직은 없었고 給保는 一保로서 去官 후 종5품 影職을 주었다. 正兵과 거의 비슷한 처우를 받았다(천관우, 앞의 책, pp.97~98).
- 61) 忠順衛는 五衛의 忠武衛에 소속된 양반의 특수 兵種으로서 중앙군에 포함되었다. 忠順衛는 세종 27년에 3품 이상의 고위관료들의 자손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600인을 試取하여 윤번으로 入直시키고 일정한 복무기간을 마치면 去官하여 관료로 진출할 수 있었다. 세조 때 혁파되었다가 예종 원년에 東班 6품 이상, 西班 4품 이상, 그리고 文·武科 출신, 生員·進士, 有蔭子孫 등 양반이 일반 良人과 함께 正兵에 소속되어 雜役に 종사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勵精衛를 설치하여 그들을 入屬시켰으며, 같은 해 勵精衛를 忠順衛로 개칭하였고, 또한 王과 王妃의 遠親이 入屬 대상자로 추가되었다(차문섭, 앞의 책, pp.96~134). 忠順衛에도 조선 후기에 이르면 양반의 庶子孫이 많이 入屬하게 되었다. 定員은 없고 7교대로 2개월씩 복무하며(《속대전》에서는 12교대) 종5품 影職으로 去官하였다. 給保와 체아직은 없었다.
- 62) 正兵은 조선시대의 良人 兵種으로서 서울에 番上하는 경우 五衛의 忠武衛에 속하였다. 숙종 6년 5월 병조판서 홍계희의 上書에 의하면 조선국초의 身役之法은 매우 엄하여 위로는 公卿之子로부터 밑으로는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入屬하였는데 有蔭者는 忠順衛·忠贊衛가 되고 無蔭者(良人)는 正兵·甲士가 된다고 하였다(《속중실록》 권9-33, 숙종 6년 5월 갑오). 조선 국초 이래로 良人들이 의무적으로 番上하는 兵種으로서 侍衛牌가 있었는데 이것이 세조 5년에 正兵으로 개칭되었으며 세조 10년에는 각 지방의 營·鎭軍이 正兵에 合屬되어 서울에 番上하는 正兵과 留防正兵이 구분되었다. 正兵은 國防軍의 主力으로서 成宗 3년에 番上하는 正兵의 총원은 42,500인이며 8교대로 2개월 간 복무하였으므로 매년 5,310인이 복무하였다. 番上하는 正兵은 甲士와 함께 宮城門을 지켰으며, 下番時에도 有事時에는 동원되어 出陣하거나 赴防하였다. 正兵은 騎正兵과 步正兵으로 구분되었고 給保는 騎正兵이 一保一丁, 步正兵이 一保였다. 체아직은 없었으며 종5품 影職으로 去官하였다. 또 平安道와 永安道の 正兵은 全員이 留防하였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p.545~546).
- 63) 壯勇衛는 五衛의 忠武衛에 속한 중앙군의 하나로서 세조 5년에 公私賤 가운데에서 木箭·走·力으로 試取하였으며 처음에 壯勇隊라 하다가 성종 6년 壯勇衛로 개칭되면서 賤人 뿐만 아니라 良人도 入屬하게 되었다. 정원은 600인으로 5교대에 의하여 6개월씩 120인이 복무하며, 종6품 이하의 체아직 15자리가 있었고 종6품 實職으로 去官하였다(앞의 주 19 참조).

홍진관의 군사 및 유원·미전·훈용진의 군사는 右部에 속하고 경성·부령·회령·중성진관의 군사 및 고령·동관진의 군사는 前部에 속하며 영흥·안변진관의 군사는 後部에 속한다.

續 이번에 五衛의 兵制를 모두 혁파하고 官名 만을 남겨 두되 將 및 部將은 番을 나누어 入直과 야간순찰 및 경계(巡更)를 하도록 하며, 護軍·司直·司果·司正·司猛·司勇 등은 軍衛遞兒로 하여 그 녹봉이 있는 자리(祿窠)를 줄여서 (절약되는 재원(米布)으로) 승진 또는 강등하여 온(來付한) 각종 관직자(各色人員)를 대우한다. **增** 軍職遞兒祿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4계절의 끝달에 올려 주거나 내려 주되 祿都目⁶⁴⁾에 관하여 임금의 결재를 받은 후에 녹봉을 받을 사람의 관직과 성명을 갖추어 기록해서 호조에 공문을 보낸다.

將 15인 **原** 종2품으로 他官이 겸직한다. **續** 정3품으로 하고 2인은 曹司五衛將⁶⁵⁾이라 칭한다. **增** 曹司五衛將은 문과급제자인 관료(文臣)로 임명한다. **補** 1인은 文官(文臣)으로, 1인은 文官·蔭官·武官을 두루 임명한다. ○ **原** 12인 **補** 3인을 더한다. **上護軍**⁶⁶⁾ **8인** 정3품 **原** 9인 **續** 1인을 줄인다. ○ 原祿遞兒⁶⁷⁾ 2인, 宣傳官 1인, 寫字官 1인, 製述官 1

64) 祿都目は 3월·6월·9월·12월의 4회에 걸쳐서 체아직의 녹봉을 증감하는 것을 말한다.

65) 五衛將은 衛將이라고도 하며 《경국대전》에서는 종2품이었으나 《속대전》에서는 정3품으로 되었다. 모두 他官이 겸직하였고 主任務는 궁궐에 入直하는 것인데 임금의 落點을 받아 입궐하여 근무하고 3일만에 교대하였으며 한번에 3인이 入直하여 東·南·西의 三所를 分定받아서 軍士를 나누어 거느렸다(《세조실록》 권7-12, 세조 5년 8월 갑자). 이들은 특정한 衛의 將이 아니라 五衛將의 직함을 따고 落點을 받아 入直할 때에 軍士를 領率하였던 것이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p.546~547).

66) 上護軍은 五衛에 속하는 正三品 堂下武班職이었다. 고려시대의 二軍·六衛의 지휘관은 上將軍이었는데(《高麗史》 권77-30, 志31, 百官2), 이것이 고려말에 上護軍으로 불렸다가 조선 건국초 十衛의 지휘관으로서 다시 上將軍으로 부활(《태조실록》 권1-49, 태조 원년 7월 정미)된 후 태조 3년 都尉使로 개칭되었다가(《태조실록》 권5-12, 태조 3년 2월 기해) 태종초 이후 上護軍으로 정착되었다(천관우, 앞의 책, pp.77~78). 上護軍은 조선전기에는 內禁衛·兼司僕 및 宣傳官으로 각각 한 자리씩 내주고 여섯 자리는 五衛에 전속되어 入直과 行巡을 맡았지만 조선후기 續大典 이후에는 한 자리가 줄어들고 나머지 8席도 原祿遞兒 2席, 宣傳官 1席, 寫字官 1席, 製述官 1席, 禁軍 3席 등으로 활용되었다(《大典會通研究》 史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3. 12, p.p.240~243).

67) 체아직은 보통 직무는 있으나 녹봉이 없는 자에게 명목상으로 武班職에 임명(軍啣遞兒)하여

인, 禁軍 3인, 등으로 한다. 大護軍⁶⁸⁾ 12인 중3품 [原] 14인 [續] 2
 인을 줄인다. ○ 原祿遞兒 2인, 親功臣 5인, 功臣嫡長 2인, 南虞候 1인, 宣
 傳官 1인, 寫字官 1인 등으로 한다. 護軍⁶⁹⁾ 4인 정4품 [原] 12인 [續]
 8인을 줄인다. ○모두 原祿遞兒로 한다. 副護軍⁷⁰⁾ 69인 중4품 [原]
 54인 [續] 22인을 더한다. [補] 7인을 줄인다. ○ 親功臣 5인, 承襲君⁷¹⁾ 1

(예외로 東班제아) 봉급을 주는 것인데, 조선중엽 이후 그 성격이 변하여 休職하는 관료, 즉
 現職을 떠난 文武官에게 계속해서 官職과 녹봉을 주기 위한 벼슬로 되었다. 이를 原祿제아라
 하며 직무 없는 자에게 녹봉을 주기 위하여 임명하는 벼슬로서는 元祿제아 이외에도 親功臣과
 그 嫡長子孫 등이 있다(同上).

- 68) 大護軍은 五衛에 속하는 중3품의 武班職이었다. 고려시대의 二軍·六衛의 副指揮官인 大將
 軍이 조선건국초 十衛의 부지휘관으로 승계되었다가 태조 3년 都尉僉事로 개칭된 후(《태조실
 록》 권5-12, 태조 3년 2월 기해) 태종 초에 大護軍으로 정착되었다(천관우, 앞의 책, pp.77
 ~78). 大護軍도 《속대전》 이후 전원이 元祿제아, 親功臣, 功臣嫡長, 南行의 虞候, 宣傳官,
 寫字官 등으로 無職 혹은 他有職者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벼슬자리로 되었다(同上).
- 69) 護軍은 五衛에 속한 정4품의 武班職이었다. 고려시대에는 二軍·六衛에 45領이 예속되어
 있었으며 各領은 1,000명의 軍士로 구성되어 있었고, 領의 지휘관이 정4품의 將軍이었다(李
 基白, 《高麗兵制史研究》, 일조각, 1968, pp.69~74). 공민왕 때 將軍을 護軍이라 개칭하였
 으나 조선건국초 중앙군인 十衛에 50領이 예속되고 領의 지휘관을 將軍이라 하였다. 태조 3년
 將軍을 司馬로 고쳤다가(《태조실록》 권5-13, 태조 3년 2월 기해) 태종 초에 護軍으로 다시
 改稱하였다. 그러나 護軍은 五衛體制의 確立으로 새로 생긴 部將에게 군사지휘권을 넘기고, 入
 直과 行巡을 맡아 大內의 護軍廳에서 숙직하였고, 그 외 宮城四門 밖에서의 숙직과 광화문의
 守護책임을 졌으며, 都城內外의 巡察體系 속에서 運領官이 되기도 하였다(민현구 외 4인, 앞
 의 책, p.548). 《經國大典》에서의 정원은 모두 12인이었다. 그러나 《續大典》에서는 4席
 만 남기고 모두 삭감하였으며, 4席도 모두 原祿遞兒職으로 하였다(同上).
- 70) 副護軍은 五衛에 속한 중4품 武班職이었다. 고려시대에는 副護軍에 해당되는 武官職이 없었
 으나 조선 세종 때 非定規職인 攝護軍이 등장하여 세조 3년 五衛體制가 확립될 때 정식 軍階
 級化하였다가 세조 12년 정월 副護軍으로 개칭하였다(《세조실록》 권38-7, 세조 12년 정월
 무오). 경국대전 상으로 副護軍의 정원은 54인이었으나 그중 宣傳官·兼司僕·內禁衛·功臣嫡
 長·別侍衛 등 제아직을 제외하면 護軍과 더불어 五衛에 전속되어 入直과 行巡에 종사한 인원
 은 25·6인에 불과하였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48). 그러나 《續大典》에서는 副護軍
 이 22인 증원되었고 《大典會通》에서 다시 7인을 減하여 모두 69인이 되었으나 親功臣, 承
 襲君, 功臣嫡長, 禁軍別將, 禁軍將, 扈衛別將, 선전관, 훈련도감 將官·軍兵, 금위영 將官, 어
 영청 將官, 충용청 將官, 내의원 의원, 寫字官, 捕盜軍官, 禁軍, 統制中軍 등의 제아직으로 모
 두 활용하였다(同上).
- 71) 承襲君이란 功臣嫡長子 중 父의 君號를 승계받은 者로서 예컨대 평양부원군 趙浚의 嫡長子
 趙大臨이가 父의 爵號인 평양 부원군을 襲封되었고 또 吉昌君 權近의 嫡次子 權跬가 吉昌君으
 로 襲封된 것 등이다(조선총독부, 《校註 大典會通》(앞의 책), p.460 및 《韓國系行譜》 地,

인, 功臣嫡長 2인, 禁軍別將 1인, 禁軍將 6인, 扈衛別將 3인, 宣傳官 1인, 訓練都監의 將官 8인 軍兵 2인, 禁衛營의 將官 6인, 御營廳의 將官 7인, 摠戎廳의 將官 3인, 內醫院의 醫員 4인, 寫字官 1인, 捕盜軍官 5인, 禁軍 13인, 統制中軍 1인 등으로 한다. 司直⁷²⁾ 11인 정5품 [原] 14인 [續] 3인을 줄인다. ○ 모두 原祿遞兒로 한다. 副司直⁷³⁾ 102인 중5품 [原] 123인 [續] 23인을 줄인다. [補] 2인을 더 둔다. ○ 原祿遞兒 17인, 承襲君 3인, 功臣嫡長 7인, 가족을 거느리지 아니하고 부임한 수령(未挈家守令⁷⁴⁾) 3인, 혼련도감의 將官 6인 軍兵 4인, 금위영의 將官 5인, 內醫院의 醫員 6인, 寫字官 1인, 司譯院의 譯官 7인, 觀象監의 述者⁷⁵⁾ 1인, 捕盜軍官 12인, 禁軍 30인 등으로 한다. 司果⁷⁶⁾ 21인 정6품 [原] 15인 [續] 6인을 더 둔다. ○ 모두 原祿遞兒로 한다. 部將⁷⁷⁾ 25인 중6품 [續] 25

p.1229).

72) 司直은 五衛에 속한 정5품 武班職이었다. 고려시대에는 領의 副指揮官으로 정5품의 中郎將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선국초 10衛 50領制下에서도 계승되었으며 태조 3년에 司直으로 개칭되었다(《태조실록》 권5-13, 태조 3년 2월 기해). 司直은 조선 전기에는 서울의 各門 중 일부의 把守 책임을 맡는 등 軍事的으로 중요한 구실을 맡았으나(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48), 조선후기 《속대전》 이후 모두 原祿 체아직으로 활용되었다.

73) 副司直은 五衛에 속한 중5품 武班職이었다. 고려시대 이래의 정6품의 郎將(200명 단위 隊의 지휘관)이 태조 3년에 副司直으로 개칭되었다(《태조실록》 권5-13, 태조 3년 2월 기해). 그러나 세조 12년의 官制改正 때에 副司直이 司果로 되고 世宗代 이래의 攝司直이 副司直으로 되었다(《세조실록》 권38-7, 세조 12년 정월 무오). 《경국대전》에서는 副司直이 123인이었으며, 대부분 宣傳官·兼司僕·內禁衛·別侍衛 및 甲士 등을 위하여 배당되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49). 《續大典》에서 23인이 줄어들고 《大典會通》에서 다시 2인이 증원되어 모두 102인이 되었으나 原祿遞兒 17인, 承襲君 3인, 功臣嫡長 7인, 未挈家 守令 3인, 訓練都監의 將官 6인, 軍兵 4인, 禁衛營의 將官 5인, 內醫院 醫員 6인, 寫字官 1인, 司譯院 譯官 7인, 觀象監 述者 1인, 捕盜軍官 12인, 禁軍 30인 등으로 모두 배당되었다(《大典會通 研究》 吏典編, 앞의 책, p.p.240~243).

74) 未挈家守令이란 國境地方의 守令으로서 家族을 帶同하지 않고 부임하는 者를 말한다.

75) 述者는 觀象監의 實務者로서 日蝕과 月蝕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정재각 외 3인, 앞의 책, p.366).

76) 司果는 五衛에 속한 정6품의 武班職이었다. 고려시대의 郎將이 그대로 조선건국초에 계승되었다가 태조 3년의 관제개혁 때 副司直으로 개칭하였던 것을 세조 12년의 관제개혁 때 司果라 하였다(주 73 참조). 《經國大典》에서는 15인이었으나, 《續大典》에서 6인을 증원하여 21인이 되었으며 모두 原祿 체아직으로 하였다. 그러나 《經國大典》에서는 체아직으로 배정하지 않고 15인 모두 5인씩 교대로 軍事的 任務를 수행하였다.

인 중에서 參外 14인, 南行參外⁷⁸⁾ 1인으로 한다. ○ 五衛가 혁파된 후에 內三廳⁷⁹⁾으로 옮겨 소속시켰다(移付). ○ 參外官이 8품의 녹봉을 받아 근무일수가 600일이 차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參外官 한 자리는 都目 때마다 禁軍 중에서 추천하여 取才시험에 합격한 자를 상신하여 임용한다. [補] 參外 11인, 南行參外 1인 등은 중9품으로 하고 근무일수가 720일이 차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副司果⁸⁰⁾ 183인 중6품 [原] 176인 [續] 1인을 더 둔다. [補] 6인을 더 둔다. ○ 原祿遞兒 35인, 親功臣 5인, 承襲君 2인, 功臣嫡長 7인, 훈련도감의 軍兵 6인, 금위영의 軍兵 1인, 내의원의 醫員 2인, 寫字官 1인, 吏文學官 1인, 사역원의 譯官 1인, 훈련원의 習讀官 7인, 畫員 2인, 典醫監의 習讀官 1인, 觀象監의 습독관 1인, 惠民署의 聰敏 1인, 治腫 1인, 守門將 1인, 捕盜軍官 18인, 禁軍 83인, 忠義衛 2인, 禁漏官 1인, 律學 1인, 永禧殿의 監 1인, 奎章閣의 監 2인 등으로 한다. 司正⁸¹⁾ 20

- 77) 部將은 五衛나 捕盜廳에 속한 중6품 이하 武班職으로서 <續大典>에 새로 등장한 것이다. 五衛의 部將의 정원은 25인이며 그중 參外官이 15인이다. 五衛의 部將은 五衛가 혁파된 후 內三廳으로 이속되었으며, 參外官은 8品祿을 받은 후 600일 간의 근무일수를 채우면 6품으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南行參外官은 중9품으로서 720일 간의 근무일수를 채워야 6품으로 승진하였다.
- 78) 南行參外는 蔭官인 7품 이하를 말한다. 南行은 南班이라고도 하는데, 父祖의 功勳이나 官職으로 인하여 벼슬하는 것을 의미한다.
- 79) 內三廳은 禁軍으로 經國大典에 있는 兼司僕과 內禁衛가 壬辰倭亂 후 復設되고 庶孽들로 구성된 羽林衛(<선조실록> 권140-21, 선조 34년 8월 기사)를 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禁軍廳이라고도 하였으며 거기 속한 軍士를 禁軍이라 하였고 그 신분은 士族의 후예였다(<광해군일기> 太白山本 권103, 광해 8년 5월 7일). 內三廳에 속한 軍士는 모두 700인으로서 7番으로 나누어 扈從과 入直을 하였으며 兵曹判書가 통솔하였다. 內三廳의 지휘관인 將은 효종 3년에 신설되었다(<효종실록> 권9-8, 효종 3년 8월 기미). 또한 효종 3년 당시의 禁軍은 600인이며(같은 실록 권9-8), 6番으로 나누어 陪從과 入直을 하였다. 禁軍廳(內三廳)은 영조 31년 龍虎營이라 개칭하였다.
- 80) 副司果는 五衛에 속한 중6품의 武班職이었다. 세종 때의 攝副司直이 세조 12년의 관제개혁 때 副司果로 개칭되었다(<세조실록> 권38-7, 세조 12년 정월 무오). 副司果는 經國大典에서는 모두 176인이었으나 甲士체아직 65석을 비롯하여 內禁衛·兼司僕·功臣嫡長·別侍衛 등에게 157석이 배당되었으므로 19석만이 軍務職이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49). 副司果의 정원은 <속대전>에서 1인, <대전회통>에서 6인이 증원되어 모두 183인이 되었다. 이들 자리는 원록체아 35석을 비롯하여 親功臣·承襲君·功臣嫡長·훈련도감 軍兵·금위영 軍兵·內醫院 醫員·寫字官·吏文學官·司譯院 譯官·訓練院 習讀官·畫員·典醫監 習讀官·觀象監 習讀官·惠民署의 聰敏과 治腫·守門將·捕盜軍官·禁軍(83인)·忠義衛·禁漏官·律學·永禧殿監·奎章閣監 등으로 배당하였다(<大典會通研究> 吏典編, 앞의 책, p.242).
- 81) 司正은 五衛에 속한 정7품의 武班職으로서 고려시대의 二軍·六衛에 속하였던 정7품의 武

인 정7품 原 5인 續 15인을 더한다. ○ 모두 原祿遞兒로 한다. 副司

正⁸²⁾ 250인 중7품 原 309인 續 60인을 줄인다. 補 1인을 더한다. ○ 原祿遞兒 33인, 承襲君 1인, 功臣嫡長 6인, 宣傳官 1인, 武臣兼宣傳官 11인, 훈련도감의 軍兵 6인, 금위영의 軍兵 1인, 내의원의 醫員 2인, 吏文學官 1인, 사역원의 譯官 2인, 관상감의 習讀官 3인, 禁漏官 1인, 훈련원의 習讀官 1인, 權知參軍 2인, 權知奉事 26인, 畫員 1인, 典醫監의 醫員 1인, 守門將 3인, 通禮院의 兼·假引儀 6인, 捕盜軍官 12인, 禁軍 115인, 五衛將 3인, 훈련원의 僉正 2인, 判官 4인, 主簿 6인 등으로 한다. 司猛⁸³⁾

15인 정8품 原 16인 續 1인을 줄인다. ○ 모두 원록체아로 한다.

副司猛⁸⁴⁾ 208인 중8품 原 483인 續 270인을 줄인다. 補 5인

官職인 別將이 조선건국초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가 태조 3년에 司正으로 개칭되었다. 司正은 經國大典에서는 5인이었으나 續大典에서 15인을 증원하여 20인이 되었는데 모두 원록체아직으로 활용하였다(同上).

82) 副司正은 五衛에 속한 중7품의 武班職으로서 세종 때의 攝司正이 세조 12년 개칭된 것이었다(《세조실록》 권38-7, 세조 12년 정월 무오). 副司正의 정원수는 《經國大典》에서는 309인이었으며 그 중 甲士 134인, 別侍衛 37인, 內禁衛 49인 등 288인이 체아직으로 배당되고, 나머지 약 20인이 五衛의 軍職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50). 그러나 그 인원수는 《續大典》에서 60인이 줄어들고 《大典會通》에서 1인이 증원되어 모두 250인이 되었으며 原祿遞兒職 33인을 비롯하여 承襲君·功臣嫡長·宣傳官·武臣兼 선전관·훈련도감 軍兵·금위영 軍兵·내의원 醫員·吏文學官·사역원 譯官·관상감 習讀·禁漏官·훈련원의 習讀·權知參軍·奉事와 畫員·전의감 醫員·守門將·통례원 兼·假引儀·捕盜軍官·禁軍(115인)·五衛將·훈련원 僉正·判官·主簿 등으로 모두 배당하였다(同上).

83) 司猛은 五衛에 속한 정8품의 武班職이었다. 고려시대의 二軍·六衛 소속의 정8품의 무반직인 散員을 조선건국초에 그대로 계승하였다가 태조 3년에 副司正으로 개칭하였다(《태조실록》, 권5-13, 태조 3년 2월 기해). 司猛은 세조 12년에 副司正을 개칭한 것으로서(《세조실록》 권38-7, 세조 12년 정월 무오), 《經國大典》에서의 정원은 16인으로 모두 五衛의 軍職이었으나(체아직은 없음) 《續大典》에서는 1인을 減하여 15인이 되었으며 전원을 원록체아직으로 하였다(同上).

84) 副司猛은 五衛에 속한 중8품의 武班職으로서 세종 때에 攝副司正을 세조 12년에(副司猛으로) 개칭한 것이다(《세조실록》 권38-7, 세조 12년 정월 무오). 副司猛의 정원수는 《經國大典》에서는 483인이었으나 甲士 222인을 비롯하여, 內禁衛·功臣嫡長·別侍衛·諸員 등의 체아직으로 404인을 배당하고 나머지 79인만이 五衛의 軍職으로 남았다. 《續大典》에서 그 정원수를 270인 줄였고, 大典會通에서 또 5인을 줄여서 208인만 남겨서 원록체아 27석을 비롯하여 宣傳官·武臣兼 宣傳官,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부임하는 守衛이나 邊將, 吏文學官과 譯官·훈련원의 權知·參軍·畫員·기로소의 藥房·통례원의 兼·假引儀·4개 府의 醫員·6曹의

을 줄인다. ○ 原祿遞兒 27인, 宣傳官 4인, 武臣兼宣傳官 8인, 未挈家守令·邊將 4인, 吏文學官 1인, 司譯院의 譯官 8인, 훈련원의 權知參軍 2인, 畫員 1인, 耆老所의 藥房 1인, 通禮院의 兼·假引儀 6인, 宗親부의 醫員 1인, 의정부의 醫員 1인, 中樞부의 醫員 1인, 中樞부의 醫員 1인, 6조의 醫員 1인, 製述官 1인, 觀象監의 習讀官 2인, 命課學教授 2인, 禁漏官 1인, 禁軍 132인, 忠義衛 3인 등으로 한다. 司勇⁸⁵⁾ 24인 정9품 [原] 42

인 [續] 18인을 줄인다. ○모두 原祿遞兒로 한다. 副司勇⁸⁶⁾ 460인

중9품 [原] 1939인 [續] 1358인을 줄인다. [補] 121인을 줄인다. ○原祿遞兒 105인, 功臣嫡長 20인, 武臣兼宣傳官 19인, 未挈家守令·邊將 21인, 사역원의 譯官 18인, 觀象監의 習讀官 4인, 훈련원의 習讀官 22인, 權知參軍 4인, 敎서관의 補字官 1인, 唱準⁸⁷⁾ 11인, 惠民署의 治腫 1인, 守門將 7인, 宗親부의 醫員 1인, 弓房司鑰 2인, 禁軍 224인 등으로 한다.

醫員·製述官·觀象監의 習讀官·命課學教授·禁漏官·禁軍(132인)·忠義衛 등으로 배당하였다(同上).

85) 司勇은 五衛에 속한 정9품의 武班職이었다. 고려시대의 二軍·六衛의 末端 지휘관으로 정9품의 尉와 流品外의 隊正이 있었는데, 조선건국초에 尉와 正이 정9품과 중9품으로 규정되었고, 태조 3년에 尉는 隊長, 正은 隊副로 개칭되었다(《태조실록》 권1-49 및 권 5-13). 그러나 조선건국초에 반포된 西班 官階에는 8품까지만 있고 9품이 없었으므로 隊長·隊副는 流外庶人之職이 되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50). 세종 18년에 정·중9품의 官階가 신설되고 정9품의 司勇이 別設되었다(《세종실록》 권73-35, 세종 18년 윤6월 계미). 司勇의 정원수는 《經國大典》에서는 42인이었으나 《續大典》에서는 18인이 줄어들어서 24인이 되었으며 모두 원록체아직이었다. 그러나 《경국대전》의 42인은 모두 서울의 치안을 맡는 등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였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51).

86) 副司勇은 五衛에 속한 중9품의 武班職이었다. 세종 18년에 司勇이 설치된 다음 그에 대한 攝職으로서 攝司勇이 중9품직으로 널리 임용되었다가 세조 12년에 副司勇으로 개칭되었다. 副司勇의 정원수는 《경국대전》에서는 1,939인으로 그중 1,515인이 甲士의 체아직으로 주어졌고 그 이외 別侍衛·內禁衛·功臣嫡長 등에게도 다수 배정되어 나머지 약 30인만이 五衛의 軍職이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51). 副司勇의 정원수는 《속대전》에서 1,358인을 줄였고 또 《대전회통》에서 121인을 줄여서 460인이 되었다. 副司勇 460인은 원록체아직 105인을 비롯하여 功臣嫡長·武臣兼 宣傳官·未挈家守令·邊將·譯官·習讀官·權知參軍·補字官·唱準·治腫·守門將·醫員·弓房·司鑰 등과 禁軍 224인의 체아직으로 배정되었다(《大典會通研究》 吏典編, 앞의 책, p.242).

87) 唱準은 校書館의 기술직으로서 글자를 唱讀하는 일을 맡았다.

【兼司僕將】⁸⁸⁾ 原 3인, 종2품. 他官으로 겸직한다. 續 정3품, 2인으로

하여 禁軍廳에 소속시킨다.

【內禁衛將】⁸⁹⁾ 原 3인, 종2품. 他官으로 겸직한다. 續 정3품으로 하여

禁軍廳에 소속시킨다. 補 2인으로 한다.

【羽林衛將】⁹⁰⁾ 續 2인, 정3품. 增 《경국대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88) 兼司僕將은 騎兵 중심의 親衛隊인 兼司僕의 지휘관으로서 《經國大典》에서는 他官이 겸직하는 종2품직 3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續大典》에서는 禁軍廳 소속의 정3품직으로 하였고 《大典會通》에서는 2인으로 하였다. 兼司僕은 고려시대의 尙乘承旨에 기원을 둔 內司僕寺에서 비롯되어 태종 9년에 처음으로 성립되고 그 후 세조 10년에 정비된 조직을 갖추었으며 주로 임금의 신변보호와 王宮 호위 및 親兵의 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南都泳, 〈朝鮮初期의 兼司僕에 대하여〉,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pp.155-180). 兼司僕의 任用에는 武才가 가장 중요시되었으므로 양반으로부터 서얼·良民 기타 賤人과 向化人도 포함되었고 특히 北界人을 우대하였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51).

89) 內禁衛將은 親衛隊인 內禁衛의 지휘관으로서 《經國大典》에서는 他官이 겸직하는 종2품직 3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續大典》에서는 禁軍廳 소속의 정3품직으로 하였고 《大典會通》에서는 2인으로 하였다. 內禁衛는 태종 7년, 宮中에서 入直·宿衛하는 임무를 띠었던 內上直을 개편하여 설치한 것인데,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아 西班의 集賢殿으로 비유되기도 하였다(車文燮, 〈鮮初의 內禁衛에 대하여〉, 《史學研究》 18, 1964). 內禁衛는 임금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入直·侍立·扈從을 하므로 그 試取에 있어서도 탁월한 武才 이외 임금의 信任이 중요하므로 「士族則有內禁衛, 庶孽則有羽林衛」(《선조실록》 권12-1, 선조 11년 정월 병진)라 하여 조선 중엽까지는 內禁衛는 모두 士族이었고 보통 양반의 有蔭子孫 중 業武者로 충당되었으나(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52), 조선후기의 業武者는 대체로 양반의 庶子孫이 많아졌으며(前間恭作, 〈庶孽考〉, 《朝鮮學報》 5輯, 1953, p.7), 특히 18세기 말기 이후로는 禁軍이 무식한 무뢰배로 충당되었고 심지어 무과급제자(武榜) 가운데에서조차 士族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정조실록》 권4-11, 정조 원년 7월 을유 및 같은 책, 권11-64, 정조 5년 4월 계축).

90) 羽林衛將은 성종 23년 4월 武才가 있는 妻子로서 설치한 侍衛部隊인 羽林衛의 지휘관으로서 3인을 두도록 하였다(《성종실록》 권264-7, 성종 23년 4월 무신). 같은 해 6월 병조판서 한치형은 羽林衛에게 護軍·司直·司果 등 高品の 差役을 주지 말고 副司勇인 差役 50席 均一로 하여 4기로 나누어 녹봉을 주자고 하였다(같은 책, 권266-24, 성종 23년 6월 정묘). 羽林衛는 燕山君 10년 8월 혁파되었다가(《연산군일기》 권55-12, 연산군 10년 8월 계유), 중종 원년 10월 復設되었다(《중종실록》 권1-33, 중종 원년 10월 을묘). 중종 2년 10

단지 《속대전》의 小註에만 보이는데 겸사복·내금위와 더불어 內將이라 并稱하며 함께 禁軍廳에 소속한다.

【訓練院】⁹¹⁾ 原 군사들의 재능(무술)을 시험하고 무예를 연마시키며 武經을 학습(習讀)시키는 일을 관장한다. 習讀官⁹²⁾은 30인이며 祿官·權知⁹³⁾와 더불어 兵要⁹⁴⁾·武經七書⁹⁵⁾·通鑑⁹⁶⁾·將鑑博議⁹⁷⁾·陣法⁹⁸⁾·兵將說⁹⁹⁾ 등을 학습(習讀)시키거

월 領事 朴元宗은 羽林衛가 內禁衛와 더불어 上護軍, 大護軍 등 너무 厚한 俸給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같은 책, 권4-33, 중종 2년 10월 임진). 중종 11년 5월 羽林衛·兼司僕·內禁衛 같은 禁軍은 모두 600인이라 하였다(같은 책, 권25-12, 중종 11년 5월 병신).

91) 訓練院은 조선시대의 武才시험과 武藝 연마 및 武經習讀 등을 맡았던 관청이다. 고려 공양왕 2년에 武科가 신설되고 2년 후 조선왕조가 건국되면서 訓練觀이 만들어져서 무예훈련과 兵書 및 戰陣 등의 敎習을 맡게 되었다(《태조실록》 권1-47, 태조 원년 7월 정미). 訓練觀은 태조 3년에 中軍軍候所를 흡수하였고, 태종 5년에는 兵曹의 屬衙門으로 되었으며 세조 12년에 訓練院으로 개칭되었다(《세조실록》 권38-5, 세조 12년 정월 무오).

92) 習讀官은 조선시대의 훈련원·사역원·관상감 및 典醫監 등에 두었던 官員으로서 각기 軍事·中國語·醫藥·天文學 등에 관한 서적을 習讀하는 것이 所任이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53). 습독관 중 일부는 俸給을 받았고 훈련원의 습독관은 內禁衛와 같은 衛官을 겸무하는 수도 있었으며 所定의 근무일수를 채우면 主簿 등으로도 임용되었다(《성종실록》 권168-3, 성종 15년 7월 무자).

93) 祿官은 無祿官에 대칭되는 官員이며 정식으로 俸給을 받는 官員이다. 祿官 중에서는 正職과 俸給이 있다. 權知는 임시직 또는 試補(見習生)를 의미한다.

94) 兵要是 《歷代兵要》를 말하는데 이 책은 全羅監司 李石亨 등이 편찬한 軍談集으로 中國古代로부터 조선 太祖代까지의 흥미있는 戰爭記事를 모은 책이다. 首陽大君의 序文이 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53 및 《朝鮮圖書解題》, 조선총독부, 1932, p.324). 《經國大典註解》 下, 後集 兵典에 의하면 최초의 편찬자는 세종 때 정인지 등으로 되어 있다.

95) 武經七書는 太公望·孫武·吳起·司馬穰苴·黃石公·尉繚子·李靖 등이 논술한 7種의 兵書를 말한다(《經國大典註解》 下 後集, 兵典).

96) 通鑑은 資治通鑑의 약칭이나 조선시대의 教材로 쓴 것은 그것을 간추린 少微通鑑(通鑑節要)이다. 通鑑의 原著者는 宋의 司馬光이며, 少微通鑑의 편찬자는 宋의 江贊이다. 그 내용은 東周 이래 五代까지의 中國歷史로서 교훈적인 것이 많다(《通鑑節要》 春坊藏板解題).

97) 將鑑博議는 中國 戰國時代의 孫武로부터 五代의 郭崇韜에 이르기까지의 歷代 名將에 대하여 材品의 高下, 器量의 大小, 智略의 長短을 論한 책인데 宋人戴溪가 지었고 10권으로 되어 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53).

98) 陣法은 文宗이 찬술하기 시작하여 세조가 계승하여 원년(1455)에 처음 刊行하여 小字陣書

나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히게 한다. 훈련원의 당상관은 병조 및 도총부의 당상관 각 1인과 함께 매월 講시험을 보여 점수(分數)를 매겨 두었다가 歲抄¹⁰⁰⁾ 때에 통산하여 우등자 3인 이내를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용하도록 한다. ○ 모두 武官¹⁰¹⁾으로 임하되, 正¹⁰²⁾은 당상관으로 올라가는 자리이고, 副正 이하 主簿 이상 1인은 文臣¹⁰³⁾(文官)으로 임용하며, 參軍 이하는 또 軍器寺의 直長 이하 4인이 겸직하여 차차 승진 또는 전보(遷轉¹⁰⁴⁾)시키는 데, 權知와 더불어 (관원들의) 협의(和會) 하에 1년 兩都目에서 3인을 去官(任官 및 退官)시킨다. [續] 正은 중앙과 지방의 3품관을 거친 후라야 임용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 參外官은 차례대로 임용하여 軍器寺에 나누어 소속시키되 參奉·副奉事·奉事·直長을 거치면 6품으로 승진시키고 또한 參軍을 거치면 直長으로 승진시키며 1년 兩都目에서 1인씩을 去官시킨다. ○ 權知의 질병이 만 30일이 된 경우 및 휴가(呈辭¹⁰⁵⁾)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實官職을 임명할 때에 한 차례 누락시키고, 그 기한이 1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두 차례 누락시키며, 2년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세 차례 누락시킨다. ○ 主簿 한 자리는 각 軍門의 哨官이 宣傳官으로 추천(宣薦)되어 6품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추천 임용하도록 한다. [增] 知事は 정2품이나 3배 수 후보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중2품인 자를 임금에게 품의하여 아울러 추천

라 하였고, 세조 4년에 다시 印刊하여 大字陣書라 하였으며 성종 23년에 이 둘을 加減調整하여 陣法이란 書名으로 간행하였다(許善道, 〈陣法考〉, 《歷史學報》 47, 1970, 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54).

- 99) 兵將說은 세조가 스스로 저술한 兵書로서 用兵과 將道에 관한 警句와 訓辭類를 모은 책이다. 세조 12년에 간행되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54).
- 100) 歲抄를 歲抄(年末)의 誤記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校註 大典會通》, 조선총독부, 1939, p.463, 권4, 兵典 京官職 訓練院)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렇게 자주 法典上에 誤字를 쓸 이유가 없으므로 歲抄는 都目政이 있는 때(예컨대 6월이나 12월)에 吏曹와 兵曹에서 임금에게 관원들의 성적을 적어(抄하여) 올리는 것 또는 軍兵들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 101) 武官은 널리 軍事에 종사하는 武班인 官員을 의미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入仕經路를 기준으로 하여 武科及第者와 거기에 準하는 取才入格者를 의미한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54).
- 102) 訓練院正은 通禮院 左通禮·奉常寺正·司僕寺正 등과 더불어 堂上官으로 올라가는 準職이다.
- 103) 文臣은 널리 東班官僚를 통칭하는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文科及第者인 官員을 의미한다.
- 104) 遷轉에 관하여 《經國大典註解》 後集 上 吏典에 「遷登也, 轉移也」라 하여 승진과 전보를 의미하고 있다.
- 105) 呈辭는 辭職願 또는 休暇願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後者를 의미한다(조선총독부, 《校註 大典會通》(앞의 책) p.463).

한다. ○ 正이 비록 중앙과 지방의 3품관을 지내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특별한 이유(임금의 특별명령)로 인하여 추천되어 차례에 구애되지 않고 임명될 경우에는 무방하다. ○ 權知 奉事¹⁰⁶)는 46인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승진임용하되, 都目 때마다 吏曹와 兵曹에서는 오래 근무한 자 각 1인씩을 승진 또는 전보시키고 훈련원의 수석 근무자 1인을 去官시켜서 主簿로 임명한다. ○ 정원의외로 더 둔(加設된) 僉正 한 자리 및 判官 한 자리와 主簿 세 자리는 각 軍門이 추천한 바 있는 哨官으로서 12개월의 근무기간이 차고 (武經 등의) 講讀과 陣法에 능통한 자를 3배수 후보자로 갖추어 (備三望) 兵曹에 보고하여 主簿로 추천 임용하도록 하며 추천이 없는 자를 섞어서 임금에게 올릴 수 없다. 判官으로는 主簿를 거친 사람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고 僉正으로는 判官을 거친 사람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되, 都目(6월·12월) 때마다 차례로 해임하거나 임용한다. 僉正으로는 宣薦人(선전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아니면 추천임용될 수 없다. ○ 主簿 세 자리 중 禁衛營과 御營廳 兩營에서 각각 都目 때마다 한 자리, 訓練都監에서 한 都目 건너 한 자리, 守御廳과 摠戎廳 兩營에서 각각 세 都目 건너서 한 자리를 차지하며, 이미 軍門의 본봉(元料¹⁰⁷)이 있으면 보수를 이증으로 받지는 못한다. 補 知事로는 文臣과 將臣을 두루 임용후보자로 갖추어(備擬) 추천한다. ○ 都正으로는 首將(大將)과 亞將(中軍)을 거친 사람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며, 兼都正으로는 將臣 이외는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 正으로는 守令이나 兵馬虞候를 거친 사람을 두루 추천(通擬)하되 宣傳官을 지내지 못한 사람은 비록 別薦(왕명에 의한 특별 추천)으로서도 추천할 수 없다. 임금이 關王廟¹⁰⁸에 친히 제사 지낼 때에는 文臣을 正으로 임명한다. ○ 정원의외로 더 둔(加設된) 主簿 한 자리에는 守禦廳의 出鎮(남한산성)과 訓練都監 및 摠戎廳 兩營에서 각각 한 都目씩 건너서 추천 임용한다. ○ 權知奉事 중 12자리를 줄여서 훈

106) 權知 奉事を 정재각 외3인 <國譯 大典會通>(앞의 책) p.369에서는 權知 및 奉事로 번역하였으나, 正職인 訓練院 奉事(종8품)가 2인으로 별도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임시직(試補)인 權知 奉事が 46인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訓練院權知란 대체로 權知 奉事 또는 權知參軍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107) 元料는 본래의 급료 즉 本俸을 의미한다. 官員의 보수를 녹봉이라 한 데 대하여 人吏나 軍士들의 보수는 放料라 하였다.

108) 關王廟는 동대문 밖 및 남대문 밖에 있는 關羽의 사당으로서, 임진왜란 때 陰助가 있었다고 하여 明將이 남대문 밖에 관우를 제사지내는 사당을 세웠는데, 그 후 우리나라에서 동대문 밖에서도 세웠다. 關王廟를 武廟라고도 하여 孔子의 사당인 文廟에 대칭적인 개념으로 불려왔는데 임진왜란 이전의 軍神으로는 蚩尤를 모셨다(<大典會通研究> 戶典·禮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193).

련원의 參上官職으로 만든다.

知事 1인 정2품, 다른 관원으로 겸직한다. 都正 2인 정3품, 1인

은 다른 관원으로 겸직한다. 正 1인 정3품. 副正 2인 종3품.

僉正 12인 종4품 [原] 2인 [續] 2인을 더 둔다. [補] 8인을 더 둔다.

判官 18인 종5품 [原] 2인 [續] 6인을 더 둔다. [補] 10인을 더 둔다.

主簿 38인 종6품 [原] 2인 [續] 16인을 더 둔다. [補] 20인을 더 둔

다. 參軍 2인 정7품. 奉事 2인 종8품.

【宣傳官廳】 [增] 形名¹⁰⁹⁾ · 啓螺¹¹⁰⁾ · 侍衛 · 왕명전달 ·

符信의 출납 등의 일을 관장한다. [續] 《경국대전》의 番次都目에서는 단지 8인이었으나 후에 正職으로하여 인원수를 늘이고 관청을 설치하였다. ○ 親功臣의 아들에게는 取才시험을 면제하여 준다. ○ 參上官을 전보할 때(調遷時)에는 일용 전에 지낸 적이 있는 관직의 본 품계에 따라 하도록 한다. ○ 參外官 두 자리는 武臣이 겸직하고 한 자리는 都目 때마다 禁軍 중에서 추천하여 취재시험에 합격한 자를 상신하여 임용한다. ○ 參外官은 모두 근무일수가 720일이 차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增] 堂上官 · 堂下官을 막론하고 네 자리는 오로지 왕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직책(承傳岐)으로 하여 6개월간 근무시킨 후 승진 또는 전보시키되 당상관이면 만약 邊地の 節制使 및 僉節制使와 防禦使¹¹¹⁾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109) 形名은 旗와 북으로서 兵士의 坐立과 進退를 號令하는 것을 말한다(정재각 외 3인, 앞의 책, p.370).

110) 啓螺는 임금의 거동(出駕)할 때 軍樂을 시작할 것을 王駕 앞에서 아뢰는 것(啓聞)을 말한다. 螺는 소라모양의 악기로서 軍樂의 首位에 있다(《校註大典會通》, 앞의 책, p.465).

111) 邊地 · 防禦使를 정재각 외 3인, 앞의 책, p.370에서는 邊地の 官職 또는 防禦使로 번역하였으나 여기서의 邊地는 邊地の 節制使와 僉節制使의 略稱으로 보아서 邊境地方의 僉使 등과 防禦使로 번역하였다. 즉 邊地僉使 등은 평안도의 滿浦鎮 · 高山里鎮 · 神光鎮

후(準朔 後) 즉시 변지의 절제사나 첨절제사 또는 방어사로 임명하고 이미 방어사를 거친 자는 즉시 水使로 추천한다. 參上官이면 6품으로 비롯하여 5품이 된 경우에는 곧바로 4품으로 추천하는 등으로 품계마다 一階를 더하며, 만약 지방의 3품 守衛이나 兵馬虞候를 이미 거쳤으면 곧 당상관직으로 임명한다. 參下官으로서 15개월이 찼으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 수석선전관은 간간이 文臣으로 임명하되 吏曹參議와 弘文館副提學의 임용후보자로 이미 통과한 사람(已通人)을 추천하여 임용하며 將臣을 추천할 경우에는 兵馬節度使와 水軍節度使를 거친 자도 역시 추천한다. [補] 文臣兼宣傳官으로는 玉堂과 翰林 및 注書¹¹²⁾로서 6품에 승진한 자를 추천하여 임명한다. ○ 武臣兼宣傳官으로는 宣薦¹¹³⁾된 자가 아니면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 당상관인 承傳岐로 승진추천하는 것을 이번에 폐지한다.

宣傳官 25인 [原] 8인 [續] 21인으로 하며, 그 안에서 1인은 정3품 堂上官으로 하고, 3인은 參上官으로 하되 품계를 정하지 아니하며, 17인은 종9품으로 하여 그 안에서 南行을 2인으로 한다. [增] 수석선전관 1인, 참서관 6인, 참하관 14인으로 하고 당상관 3인을 더 둔다. [補] 참서관 1인을 더 둔다. 文臣兼宣傳官 2인 종6품 [續] 5인 [增] 3인을 줄인다. 비록 다른 관직으로 옮겨도 여전히 선전관의 직함을 띤다. 武臣兼宣傳官 50인, 참서관은 38인이며 종6품으로 하고, 참하관은 12인이며 종9품으로 한다. [補] 참서관 40인, 참하관 10인으로 한다.

· 阿耳鎮·薪島鎮·義州鎮, 함경도의 惠山鎮·高嶺鎮·訓戎鎮·城津鎮 등 西北 국경지방의 兵馬 또는 水軍의 節制使(정3품)·僉節制使(종3품)와 황해도 的 백령鎮·초도鎮, 경상도의 부산포鎮·多大浦鎮의 水軍僉節制使(종3품) 및 전라도의 濟州鎮의 兵馬 및 水軍 節制使(방어사·제주목사 겸직) 등이라고 볼 수 있다. 防禦使는 兵馬 또는 水軍의 종2품 직으로서 경기·전라·강원·함경·평안도에 있으며 모두 주둔 지역 守衛를 겸직한다. 따라서 「邊地」 속에 邊境지방의 모든 관원(通政이나 折衝 등 堂上官階를 갖고 下位職에 있는 者 모두)을 포함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112) 玉堂은 홍문관의 副提學 이하의 관료를 의미하고, 翰林은 예문관의 參下官(좁게는 檢閱)을 의미하며, 注書는 승정원의 參下官을 의미한다.

113) 주 14 참조.

【正五品 衙門】

【世子翊衛司】¹¹⁴⁾ **原** 王世子를 陪從하여 護衛하는 일을 관장한다. **增** 入直은 1인이다. 講對¹¹⁵⁾에 수행하여 참석하는 參下官은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左·右翊衛 각 1인 정5품 左·右司禦 각 1인 종5품 左·右翊贊 각 1인 정6품 左·右衛率 각 1인 종6품 左·右副率 각 1인 정7품 左·右侍直 각 1인 정8품 左·右洗馬 각 1인 정9품.

【從六品 衙門】

【世孫衛從司】¹¹⁶⁾ **續** 王世孫을 陪從하여 護衛하는 일을 관장한다. **增** 入直은 1인이다. 講對에 수행하여 참석하는 參下官의 근무일수의 만료에 관한 것은 익위사의 경우와 같다.

114) 世子翊衛司는 王世子를 모시고 호위하는 일을 맡은 西班 官廳이다. 조선건국초에 世子官屬이 설치되어 世子에 대한 講學과 侍衛의 임무를 모두 맡았으나(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55), 태종 18년에 별도로 翊衛司를 설치하여 世子에 대한 侍衛를 전담시켰으며 左右翊衛·左右翊贊 등 官員(衛士)을 두었고, 衛士의 數를 3분의 1 加設하여 世子를 侍衛하도록 하였는데 衛士는 甲士에 可當한 者를 임용하되 功臣子弟나 宰相의 子弟를 敍用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권35-71, 태종 18년 6월 병술). 世子翊衛司의 官員(東宮衛士)들은 世子가 거동할 때 앞에서 인도하고 會講할 때에는 섬들 아래에서 侍立하도록 되어 있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56). 衛士들은 비록 武班에 속한 官員이지만 조선후기의 실제상 經述之士(文士)로 충당되었다.

115) 講對란 王世子 또는 王世孫을 위하여 經書를 강의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것을 말한다.

116) 世孫衛從司는 王世孫을 모시고 호위하는 일을 맡은 西班官廳이다. 그러한 기구는 조선 전기에도 있었을 것이나 法典上으로 등재되기는 《續大典》을 거쳐 《大典通編》에서였다. 官員(衛士)의 임무와 충원 대상자 등은 세자익위사의 관원과 같다고 하겠다.

左·右長史 각 1인 종6품 左·右從史 각 1인 종7품.

【守門將廳】 增 궁궐문을 守衛하는 일을 관장한다.

續 경국대전에서는 정하여진 관원이 없었고 서반(무반) 4품 이하인 자가 윤번으로 임명되어 궁궐문을 수비하였는데, 뒤에 正職으로 하여 관원을 두고 청을 설치하여 受點入直¹¹⁷⁾하게 하였다. ○ 다섯 자리에는 中庶許通人¹¹⁸⁾으로서 임명한다. ○ 한 자리는 都目 때마다 禁軍 중에서 取才시험에 합격한 자를 천거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 參外官이 근무일수를 450일 채우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增 參外官 두 자리는 금위영과 어영청 양 군영 騎士 중에서 천거된 사람이 있으면 오래 근무한 차례에 따라 상신하여 임명한다.

補 參外官의 근무일수는 720일이 되면 만료된다.

守門將 29인 參上官 5인 종6품, 參下官 18인 종9품. 續 23인 補 6인을 더하여 참상관 15인, 참하관 14인으로 한다.

【各殿守門將】 補 肇慶廟·慶基殿·濬源殿¹¹⁹⁾의 수문장은 해당 廟·殿의 소재지 道の 璿派(왕실계통의 후손인 전주이씨) 중에서 宣薦이나 部

117) 受點入直은 임금이 選定하는 자를 入直하도록 하는 것이다. 入直할 후보자 3인의 성명을 列記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면 임금은 入直시키기를 원하는 자의 성명 위에 墨點을 찍어서 입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18) 中庶許通人이란 中人과 庶人(서얼) 중에서 벼슬길에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된 사람을 말한다. 18세기 후기부터 서얼허통이 널리 행하여졌고, 또한 그들에게 벼슬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위정자의 노력이 컸으므로 이와 같이 서얼들을 위한 벼슬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었던 것이다. 中人也 대개 서얼들의 후손이었으므로 中庶人이라고 통칭되었던 것이다. 물론 조선 중엽 이전에는 서얼 아닌 士族 중에서도 기술직 관료가 있었지만 조선 후기의 기술관료는 거의 庶子孫이었다고 하겠다(이종일, <조선시대 서얼신분 변동사 연구>, 1987,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9) 肇慶廟는全州 李氏 始祖의 位牌奉安所이고, 慶基殿은全州 李氏 始祖와 조선 太祖의 초상화를 모신 곳이며 濬源殿은 조선 왕조의 발상지를 기념하는 殿閣으로서 조선 태조의 초상화를 奉安한 곳이다. 조경묘와 경기전은 전주에 있고 준원전은 함경도 永興에 있다.

薦¹²⁰⁾을 받은 사람 중 宗親府에서 윤번으로 임용후보자를 갖추어 병조에 이송하고 병조에서는 이를 직접 임금에게 보고한다. 華寧殿¹²¹⁾의 수문장은 수원의 哨官으로서 오래 근무한 자를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명하되 병조에서 단일후보자를 상신하며, 모두 30개월이 되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肇慶廟守門將 1인 종9품

慶基殿守門將 1인 종9품

濬源殿守門將 1인 종9품

華寧殿守門將 2인 종9품.

【軍營衙門】¹²²⁾ 續 增置한다 ○ 여러 將校¹²³⁾를 임명함에 있어서는

강등되었거나 파직된 사람이었음에 구애되지 아니한다. ○ 知穀官 이하는 오래 근무시키며 45개월내에는 승진 또는 전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여러 해 동안 근무경력이 있는 무과급제출신자로서 국경방위임무를 수행한(赴防) 후에 다시 해당 군문에 들어간 자는 前의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준다. ○ 教練官과 旗牌官은 무과급제출신자·前職者·閑良·行伍(병졸)임을 막론하고 射術·講書(병서강독)·陣法 등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시험하여 선발하며 禁軍이나 行伍의 定員 중에서 비록 무과급제출신자가 있더라도 그 출신자의 자리수에 계산하여 넣지 않도록 한다. 增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三營大將은 東·南關王廟의 당상관을 의례히 겸직한다. ○ 三營의 郎廳(郎官)을 從事官으로 고쳐 부른다. ○ 각군문의 別將·千摠·騎士將·扈衛別將은 內禁

120) 주 14참조.

121) 華寧殿은 正祖의 초상화를 모신 곳으로서 수원에 있다.

122) 軍營衙門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砲手중심의 三手兵의 훈련을 목적으로 조직한 訓練都監과 仁祖反正後 西人政權의 軍事力 強化 및 對後金 관계로 만들어졌던 御營廳(개성·서울), 摠戎廳(수원), 守禦廳(광주) 그리고 숙종 때 만든 禁衛營 등 5軍營을 말한다. 그 후 훈련도감을 가운데로 하고 어영청과 금위영을 兩翼으로 한 三軍門體制가 마련되었고 또 충용청과 수어청도 三營制(左·中·右營)로 통일되었다(육군사관학교 한국軍事연구실, 《한국군제사》, 근세조선 후기편, 1977, pp.3~174). 군영아문에 소속된 병력은 조선후기의 주된 군사력이었다.

123) 여러 將校는 여러 종류의 軍官을 의미하는데 각 군영에 속하는 軍官·권무군관·별군관·지구관·교련관·기패관·別武士 등을 말한다(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386).

衛將의 例에 의하여 一周年을 기한으로 하여 바꾸고 把摠은 二周年을 기한으로 하여 바꾼다. ○ 中軍 이하의 將官 및 從事官은 모두 해당 軍營에서 3배수 후보자를 갖추어 병조에 이송하고 병조에서 이를 임금에게 직접 보고한다. ○ 騎士別將은 전에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지냈던 사람을 임명하되, 비록 다른 軍門의 千摠이라도 구애하지 아니하고 임용후보자로 추천한다. 將3인(금위영·어영청의 騎士將 등 3인)은 當上관으로서 전에 營將을 지냈던 사람을 임명하며 禁軍將의 경력과 같은 것으로 시행한다. ○ 각군영의 교련관은 白徒¹²⁴로서 충원할 수는 없다. ○ 각도의 兼把摠 守令은 금위영과 어영청 兩營에서 각각 3자리의 임용후보자를 스스로 골라 추천임용한다. [補] 各軍營의 中軍은 嘉善大夫인 官階로 하며 훈련도감의 中軍으로는 亞將(각군영의 부지휘관)을 지낸 사람을 두루 추천한다. ○ 將官으로는 파직되었거나 퇴직(罷·散)된 것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추천임용하여 散料(녹봉 아닌 보수)를 대신 준다. ○ 훈련도감의 挾輦把摠과 금위영의 槍劍把摠은 만 24개월이 되면 資級(官階)을 올리고 挾輦·槍劍哨官과 어영청의 中哨哨官은 만 30개월이 되면 6품직으로 승진·전보시킨다. ○ 각군영의 把摠과 무관인 從事官은 모두 實職으로 하며 임기(瓜限)가 없다. ○ 局別將은 2주년이면 교체한다. ○ 騎士將의 경력을 禁軍將의 경력과 같이 보는 것을 이번에는 폐지한다.

【訓練都監】 [續] 宣祖朝의 임진왜란 후에 창설되었다. ○ 把摠은 당하 3품관 중에서 골라 임명하며 都目 때마다 이조와 兩鎗에서 승진 또는 전보 시킨다. ○ 哨官·知穀官·旗牌官은 근무일수가 600일이 차면 6품으로 승진시키며 다른 軍門에서도 같다. ○ 馬軍과 步軍의 軍兵 중에서 무과에 급제한 자로 부대를 만들어 別騎隊라 하고 左司의 前哨¹²⁵에 소속시키며 牧使와 府使를 지낸 적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哨官으로 임명하여 부대를 통솔하도록 한다. [增] 局別將은 堂上官이거나 嘉善大夫임을 막론하고 邊境지방의

124) 白徒는 軍事의 소양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管子》와 《漢書》에 그 用例가 있다(《校註大典會通》, 《앞의 책》 p.468).

125) 左前哨는 左司의 前哨(砲手哨)로 보았다. 훈련도감에는 大將과 副將인 中軍·千摠 밑에 把摠이 그 지휘관인 左司와 右司가 있고 司 밑에 砲手哨와 殺手哨 2哨 등 3개 哨가 있으며, 각 哨에는 3개隊, 각 隊에는 6개 伍가 있었다. 이러한 초기의 砲手중심의 훈련도감군은 砲手·射手·殺手의 三手兵으로 모양을 갖추었으나 여전히 砲手와 殺手 중심이 되었다(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앞의 책, pp.14~16).

節制使나 僉節制使·防禦使·堂上宣傳官 등을 지낸적이 있는 자를 두루 추천하며 임기가 만료되면 영전 또는 승진 임용한다(右職調用). 右職調用制는 지금은 폐지되었다. ○【糧餉廳】宣祖 26년 계사에 창설되었으며 훈련도감 소속 軍兵의 服色과 器械의 제조 및 수선 등의 일을 관장한다. 都提調는 1인으로 하고 훈련도감의 都提調가 겸직하며 提調는 3인으로 하고 호조판서·병조판서·훈련대장이 겸직하며, 從事官은 1인으로 하여 호조의 別營色郎¹²⁶⁾이 겸직한다.

都提調 1인 정1품 提調 2인 정2품 호조판서와 병조판서가 의례히 겸직한다. 大將 1인 종2품 中軍 1인 종2품 別將 2인 정3품 千摠 2인 정3품 局別將 3인 정3품, 병졸(행오)로서 무과급제한 자(출신자)들로 편성된 부대를 통솔한다. 把摠 6인 종4품 從事官 4인 종6품, 1인은 文官, 2인은 蔭官, 3인은 호조의 別營色郎官·병조의 武備司郎官·훈련도감의 把摠 등이 의례히 겸직한다. [補] 蔭官 2인을 減한다. 哨官 34인 종9품, 5인은 宣傳官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사람(宣薦人)으로 하고, 2인은 서북인(평안도와 함경도 사람)으로 하며, 그 나머지는 모두 경력이 있는 전직관료를 뽑아서 임명한다. [增] 2인은 知穀官의 체아직, [補] 그 중 1인은 欄後將¹²⁷⁾으로 고친다) 2인은 旗牌官의 체아직, 1인은 중국인(漢人) <즉 牙兵¹²⁸⁾의 哨官 [補] 혁파한다)으로 임명한다. [補] 2인은 取才시험에 합격하여 宣薦·部薦된 사람을 임명한다. ○ 壯勇營에서 옮겨온 馬軍(기마병)을 별도로 1哨로 하여 哨官을 설치한다. 知穀官 10,¹²⁹⁾

126) 別營色郎은 훈련도감소속 軍兵의 給料를 맡아 보는 戶曹內의 別營色이란 기구의 郎官을 말한다(정재각, <앞의 책> p.386).

127) 欄後將은 部隊의 後尾를 경비하는 각 兵營의 軍官이다(同上 p.375).

128) 牙는 大將旗를 의미하며, 牙兵이란 大將을 수행하는 軍兵이다(同上).

129) 哨官 이상은 몇 員으로 표시되어 있으나(몇인으로 번역) 知穀官·旗牌官 이하 局出身까지는 10, 20 등으로 숫자 표시만 되어 있다. 아마도 哨官 이상은 官員으로 취급하였으나 그 이하의 비록 官字가 붙어 있어도 官員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員을 쓰지 않은 듯 하다. 原文의 표기방식을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따라서 지구관 이하는 숫자표시만 하였고 필요한 곳에서는 “몇인” 대신 “몇명”으로 달리 표기하였다.

旗牌官 20 병졸(行伍) 중에서 取才시험으로 승진임용한다. [增] 1인은 壯勇衛¹³⁰⁾에서 선발한다. [補] 2인은 武藝別監에서 선발한다. ○ 壯勇衛는 지금은 폐지되었다. 別武士 68 병졸 중에서 승진임용한다. ○ 10명은 中軍에 속하고 20명은 左·右別將에게 分屬하며 4명은 左·右千摠에게 分屬한다. [增] 2명은 武藝別監에서, 1명은 壯勇衛에서 선발한다. [補] 장용위는 지금은 폐지되었다. 軍官 17 5명은 都提調에게 소속된다. [續] 15인으로 한다. [補] 2인을 더 한다. 別軍官 10, 勸武軍官 50, 局出身¹³¹⁾ 150 [增] 局出身 정원 중에서 武藝出身¹³²⁾ 30 자리를 할

130) 壯勇衛는 正祖 9年 7月 武藝出身을 고쳐서 호칭한 禁衛(국왕 호위) 部隊이다(《정조실록》 권20-13, 정조 9년 7월 기유). 壯勇衛는 조선전기에도 있었으나(주 19) 정조 때 신설된 것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즉 정조 8년 임금은 生父인 思悼世子를 莊獻世子로 尊號를 加上하면서 慶科를 보여 2000여명의 武科及第者를 배출하였는데 그 이듬해에 壯勇衛를 설치하여 그들을 다수 흡수하여 강력한 親衛部隊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처음 이 새로운 親衛部隊인 壯勇衛는 武藝出身(훈련도감내의 別技軍 중에서 우수한 자를 뽑은 武藝別監 가운데에서 武科及第한 者) 30명을 50명으로 하여 창설하였던 것이며(《정조실록》 권37-5, 정조 17년 정월 병오), 그 후 위와 같이 다수의 慶科出身者를 흡수하여 年次的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정조 17년의 壯勇營에서는 5개隊, 448명이 되었다. 이 해에 壯勇營은 內·外營으로 擴大되었고 위 5개 部隊는 內營의 在京中司로 편성되었다. 壯勇內營은 서울, 外營은 수원에 두었는데, 內營의 兵力規模는 종래 3哨에서 5司 25哨로 크게 확대되었고, 外營은 수원에 留守府를 두어서 水原留守가 壯勇外使의 職을 갖고 수원과 그 인근 각 고을의 약 2만명의 병력(城丁軍 8,620명 이외 多數兵力)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王權強化策으로 신설되었던 壯勇營은 정조의 別世와 어린 純祖의 즉위로 효과가 예상되더니 드디어 순조 2년에 폐지되었다(육군사관학교 한국軍事研究室, 앞의 책, pp.195~219).

131) 局出身은 병자호란 때 南漢山城에서 임금을 호위하였던 훈련도감의 軍士를 대우하기 위하여 武科를 실시하여 뽑은 자들로서 처음에는 1,384명으로서 7局으로 나누었는데 점차 사망자가 늘어나서 효종 때 5局, 4局으로 축소되었다가 현종 때 3局으로 고정되었다. 그 후 병자호란 때의 扈從軍士의 대부분이 死去한 다음에 局出身은 훈련도감 軍士중 兵卒(行伍)에서 武科에 급제한 자로 채워졌다. 숙종 을축년(11년)에 3局 150명의 인원 중 각 局的 10명씩 모두 30명의 자리는 壯勇衛의 武藝出身의 T/O로 삼았다가, 순조 임술년(2년) 壯勇營이 혁파되자 도루 위 3局으로 還屬되었다(육군사관학교, 한국軍事研究室, 《앞의 책》 p.201 및 《萬機要覽》 軍政編2, 訓練都監 軍摠 局出身條).

132) 武藝出身은 武藝別監 중의 武科及第者를 말하는데 《萬機要覽》 軍政編2, 訓練都監, 武藝別監條에 의하면 무예별감은 훈련도감내의 別技軍 중에서 뽑아서 3배수 후보자(備三望)로 하여 兵曹에 보내어 병조에서 임금에게 직접 보고(入啓)하여 落點을 받은(受點) 자들이며, 또 別技

에하여 한 관청을 별도로 설치하고 거기다가 20을 더하여 관청의 호칭을 壯勇이라 하였다. 取才規矩(채용시험 규칙)는 경국대전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補] 壯勇廳은 지금은 폐지되어 있다.

【禁衛營】¹³³⁾ [續] 肅宗 8년 임술에 훈련도감의 군사총수(軍摠)를 감액하여 訓練別隊(中部別隊)로 하고 訓練別隊와 병조의 精抄軍을 합하여 금위영을 설치하였다. [增] 英宗 30년 갑술에 어영청의 예와 같이 大將을 별도로 두었다.¹³⁴⁾

都提調 1인 정1품 提調 1인 정2품 [增] 병조판서가 의례히 겸직한다. 大將 1인 종2품 [續] 병조판서가 의례히 겸직한다. [增] 별도로 둔다. 中軍 1인 종2품 別將 1인 정3품 千摠 4인 정3품 騎士將 3인 [增] 정3품 把摠 5인 종4품 外方兼把摠 12인 종4품 聞慶·榮川·益山·任實·大興·鎭川·坡州·龍仁·遂安·金川·金化·金城 등 고을의 수령이 의례히 겸직한다. [增] 파주를 지금은 加平으로 옮긴다. 從事官 2인 종6품, 文·武官 각 1인으로 한다. 哨官 41인 종9품 [續] 45인으로 하되, 7인은 宣傳官으로 추천된 사람, 5인은 禁軍, 4인은 扈衛軍官, 2인은 西·北人 중에서 임명한다. [增] 4인을 줄이고, 7인은 宣傳官으로 추천된 禁軍, 4인은 禁軍 중에서 뽑으며, 3인은 騎士중 取才시험 합격자를 승진임용하고, 1인은 영남의 左別武士 都試¹³⁵⁾에서 수석

軍은 馬步軍 및 그 族屬 중에서 힘이 세고 무예가 있는 자를 별도로 뽑아서 무예를 연습시킨 군사를 말한다.

133) 解說篇 1. 訓練都監과 禁衛營 參照.

134) 숙종 8년 6월 禁衛營 節目規制가 講定되었으므로 금위영 대장을 당장 선임해야 할 것이나 마땅한 사람이 쉽지않으니 우선 병조판서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金壽恒의 건의에 따라 대장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숙종실록》 권13상-32, 숙종 8년 5월 을해), 영조 30년에 이르러 별도로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135) 嶺南의 左別武士 都試는 경상도의 무과급제 출신자를 상대로 監司가 매년 두 번 시험을 보여 수석합격자 1인을 임금에게 보고하여 哨官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의 시험에는 閑良(右別武士에 속함)도 시험보이며, 都試는 監司 뿐만 아니라 兵使나 중앙의 병조 및 훈련원의 당상관도 매년 春秋 2기에 武才를 試取한다(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386 및 오희

합격한 자, 4인은 扈衛軍官¹³⁶⁾, 2인은 西·北人, 20인은 전직관료와 閑散人¹³⁷⁾ <補 2인은 宣·部薦取才者¹³⁸⁾로 한다> 補 閑散人을 1명 추가한다. ○ 嶺南左別武士는 지금은 폐지되었다. 教鍊官 12 續 15 ○ 7명은 禁軍廳에 속한다. 增 3명을 줄인다. 旗牌官 10 續 12명 ○ 2명은 千擡에게 속하고, 5명은 禁軍 중에서 임명하며, 4명은 병졸 중에서 승진임용하고, 7명은 무과급제출신자들, 9명은 전직관료와 閑散人 중에서 임명한다. 增 2명을 줄인다. ○ 2명은 千擡에게 속하고, 3명은 禁軍 중에서 임명하며, 4명은 병졸 중에서 승진임용하고, 1명은 壯勇衛 중에서, 1명은 壯勇衛의 牌頭를 어영청과 윤번으로 임명하며, 11명은 전직관료와 閑散人 중에서 임명한다. 이상 속대전과 대전통편에 있어서의 인원수 배분은 教鍊官의 수와 합산한다.¹³⁹⁾ 어영청에 있어서도 같다. 補 2명은 武藝別監 중에서 임명하고, 병졸 중에서 임명하는 인원을 1명 더 하며, 閑散人 중에서 임명하는 인원을 1명 줄인다. ○ 壯勇衛는 지금은 폐지되었다. 別武士 30 續 15, 中軍에 속한다. 增 5명은 別騎衛, 1명은 壯勇衛 중에서 임명하고, 10명은 병졸 중에서 승진 임용하며, 14명은 전직관료와 閑散人 중에서 임명한다. 補 別騎衛에 1명을 더한다. ○ 壯勇衛는 지금은 폐지되었다. 軍官 5 都提調에 속한다. 別軍官 10, 勸武軍官 50, 騎士 150 增 宿衛를 혁파하고 騎士를 더 둔다.¹⁴⁰⁾ 別騎衛 32 增 모

북 <봉건관료기구 및 벼슬이름편람> 여강출판사, 1992, 북한발행일 1989 평양, p.86).

136) 扈衛軍官은 호위청에 소속된 軍官으로서 궁궐의 宿衛와 임금의 거동시에 호위하는 일을 한다.

137) 閑散人은 閑良과 散官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閑良은 武班家門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아직 벼슬이나 무과급제를 하지 못한 자이며, 文班의 未仕·未登科者인 幼學과 대칭된다. 또 散官은 官階만 갖고 있는 자이다.

138) 宣·部薦取才란 武士로서 宣傳官이나 部將으로 추천할 사람을 뽑는 取才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139) 旗牌官 定數(續大典 12명, 大典通編 10명)와 教鍊官 定數(속대전 15명, 대전통편 12명)를 합쳐서 禁軍出身·閑散人 등 분야별로 채용 인원수를 배분한다는 뜻이다.

140) 英祖 26년 경오에 鄉騎士의 上番宿衛하는 法制를 폐지하고 금위영의 騎士를 더둔다는 의미이다(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386). 鄉騎士의 番上은 숙종 10년 김석주의 건의로 황해도에서 200여명을 확보하여 16명씩 13번으로 나누어 행하였는데 이들을 別騎衛라 하였다(육군사관학교 軍事연구실, <앞의 책>, p.151).

두 本營 出身(금위영 군사로서 무과급제한 자)으로 한다.

【御營廳】¹⁴¹⁾ 續 仁祖 2년 갑자에 처음으로 御營使를 두었고 孝宗 3년

임진에 비로소 軍營을 설치하였으며 肅宗 32년 병술에 1營 5部制로 고쳤다.
○ 駕前別抄와 別武士는 駕後禁軍의 例에 의하여 오래 근속한 자를 골라서
임용한다. 增 別抄는 6개월 동안의 的中矢數(궁술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禁軍의 例에 따라 두 기간(6월과 12월)으로 나누어 병조에 공문을 보내어
遞兒祿을 받도록 한다.

都提調 1인 정1품 提調 1인 정2품, 병조판서가 의례히 겸직한다.
大將 1인 종2품 中軍 1인 종2품 別將 1인 정3품 續 2
인 增 1인을 줄인다. 千摠 5인 정3품 別後部千摠 1인 정3품
增 永宗僉使가 겸직한다. 騎士將 3인 增 정3품 把摠 5인 종4
품 外方兼把摠 10인 종4품, 軍威·居昌·淸安·藍浦·鎭安·古阜
·衿川·積城·長連·伊川 등 고을의 수령이 의례히 겸직한다. 補 衿川을
지금은 陽智로 옮긴다. 從事官 2인 종6품, 文·武官 각 1인으로 한
다. 哨官 41인 종9품 續 45인, 7인은 宣傳官으로 추천된 사람, 1인
은 禁軍, 1인은 別抄, 3인은 扈衛軍官, 2인은 西·北人으로 임용한다. 增
4인을 줄여서, 7인은 宣傳官으로 추천된 禁軍, 2인은 禁軍, 3인은 扈衛軍
官, 3인은 騎士, 2인은 別抄, 2인은 西·北人, 1인은 嶺南左別武士로서 都
試에서 수석합격한 자, 21인은 전직관료·閑散人 중에서 임용한다. 補 2인은
宣傳官이나 部將으로 추천할 取才시험 합격자를 임용한다) 補 閑散人 1인을 더한다.
○ 嶺南左別武士는 지금은 폐지되었다. 敎鍊官 12, 旗牌官 11
續 10, ○ 2명은 千摠에 속하고, 1명은 禁軍, 1명은 別抄 중에서 임명하

141) 解說篇 2. 御營廳 參照.

며, 4명은 병졸 중에서 승진임용 하고, 6명은 무과급제출신자, 8명은 전직 관료와 閑散人 중에서 임용한다. [增] 1명을 더 둔다. ○ 2명은 千摠에 속하고, 3명은 禁軍, 2명은 別抄, 5명은 병졸 중에서 승진임용하며, 5명은 무과급제출신자, 1명은 壯勇衛, 1명은 壯勇衛 牌頭를 禁衛營과 윤번으로 임명하고, 4명은 전직관리와 閑散人 중에서 임용한다. [補] 2명은 武藝別監을 임용한다. ○ 장용위는 지금은 폐지되었다. 別武士 30 [續] 22 ○ 10명은 中軍에 속한다. [增] 8명을 더한다. ○ 4명은 병졸로서 무과에 급제한 자, 8명은 병졸인 전직 관리를 임명하고, 17명은 병졸을 승진임용하며, 1명은 壯勇衛를 임명한다. [補] 1명은 武藝別監으로 임명한다. ○ 장용위는 지금은 폐지되었다. 軍官 38 [續] 40 ○ 5명은 都提調에 속한다. [增] 1명을 더 둔다. [補] 3명을 줄인다. 別軍官 10, 勸武軍官 50, 駕前別抄 52 [續] 50 임금의 거동시에 모시고 호위(侍衛)한다. [增] 2명을 더 둔다. 騎士 150 [增] 宿衛를 혁파하고 騎士를 더 둔다.

【摠戎廳】¹⁴²⁾ [續] 仁祖 2년 甲子에 창설하여 水原 등 鎭의 軍務를 통할(節制)한다. [增] 英宗 23년 丁卯에 經理廳을 혁파하여 북한산성의 管城將 이하를 摠戎廳에 소속시켰으며 동왕 26년 庚午에는 또 京畿兵使를 검직시켜 북한산성 내의 鍊戎臺에 出鎭시켰으나 동왕 36년 庚辰에는 出鎭制를 폐지하고 兵使검직제도 삭제하였다. ○ 管城將은 남한산성의 留營別將의 例에 따라 資級(官階)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골라 본청 스스로 임용제청(自辟)하되 還穀¹⁴³⁾을 모두 거두어들이기 전에는 승진 또는 전보 시키지 아

142) 解說篇 3. 摠戎廳 參照.

143) 還穀은 흉년 또는 춘궁기에 곡식을 빈민에게 빌려주고 풍년 또는 추수기에 이를 거두어들이는 구휼제도로서 還上 또는 還子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삼국시대(고구려)부터 있었다. 고려 때에는 국초부터 黑倉(義倉이라 개칭)을 각 州府에 설치하였으며, 성종 12년(993년)에는 常平倉을 兩京 12牧에 두어 진휼사업을 확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서 흉년에 대비하는 備荒과 貧民구호를 위한 양곡대여, 물가조절, 정부보유 양곡의 교환 및 각 관청의 財源확보 등의 목적으로 太祖때부터 義倉·社倉 등을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환곡이 무이자였으나 수수료, 손실보상 등 명목으로 연 10~20%의 이자를 받았다. 한편 세조 4년(1458)에는 흥

니하며 그 임기는 1주년으로 한다. [補] 水原에 軍營을 설치한 후 水原鎭의 軍務를 통할하는 것은 지금은 폐지되었다. ○ 憲宗 12년 丙午에 總衛營으로 改稱하였다가 동왕 15년 己酉에 옛 명칭을 회복하여 관청을 설치하였다. 使 1인 종2품 中軍 1인 종2품 千摠 2인 정3품 鎭營將 3인 정3품 [補] 前營將은 南陽府使, 中營將은 坡州牧使, 後營將은 長湍府使 등이 겸직한다. 把摠 2인 종4품 [續] 4인 [增] 2인을 줄인다. 哨官 10인 종9품 [續] 20인, 3인은 宣傳官으로 추천된 사람, 2인은 西·北人, 1인은 扈衛軍官, 1인은 禁軍, 1인은 水原哨官을 승진임용 한다. [增] 10인을 줄인다. 1인은 宣傳官으로 추천된 禁軍, 1인은 扈衛軍官, 1인은 禁軍, 1인은 水原哨官을 승진임용 하고, 1인은 북한산성의 鍊戎臺人, 5인은 閑散人과 무과급제출신자를 임용한다. 敎鍊官 15 [續] 12 ○ 1명은 禁軍, 1명은 水原執事를 승진임용 하고, 1명은 병졸 중에서 승진임용 하며, 4명은 무과급제출신자, 5명은 전직 관리와 閑散人 중에서 임용한다. [增] 3명을 더한다. ○ 1명은 禁軍을 임용하고, 1명은 수원과 파주의 執事를 운번으로 임명하며, 1명은 북한산성의 鍊戎臺人을 임용하고, 2명은 병졸 중에서 승진임용 하며, 1명은 壯勇衛, 9명은 전직 관리와 閑散人 중에서 임용한다. [補] 1명은 武藝別監을 임용한다. ○ 壯勇衛는 지금은 폐지되었다. 旗牌官 2 [補] 병졸 중에서 取才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용한다. 軍官 10 [續] 15 [增] 1명을 줄인다. [補] 4명을 줄인다. 本廳軍官 3 [補] 別付料 軍官 2 [補] 監官 2 [續] 5 [增] 3명을 줄인다. 水門部

년에 대비하여 상평창을 설치하였으나 인조 4년(1626)에 賑恤廳으로 통합하여 平時에는 常平廳으로 물가조절을 맡았고 흉년에는 진휼청으로 곡식의 대여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환곡은 義倉이 주체가 되고 社倉을 보조로 하여 정부 보유양곡과 군량미 등으로 운용하였으나 문제가 많았다. 특히 조선후기의 각 군영에서는 보유양곡을 대여, 그 이식으로 경비에 충당하면서 부정행위가 많아서 民亂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제도는 구한말을 거쳐서 왜정초기(1917)까지 지속되었다(李弘植, 《國史大事典》 下, 한국출판사, 1982, p.1775).

將 1, 閑良軍官 150 [續] 300 [增] 150명은 서울에, 150명은 水原에 둔다. [補] 水原 150명은 軍營 설치 후 옮겨갔다.

[增] 【北漢】 管城將 1인 정3품 把摠 1인 종4품 哨官 6인 종9품 敎鍊官 4, 旗牌官 5, 守堞軍官摠 2, 軍器監官 1, 所任軍官 3, 付料軍官 20, 城門部將 3 이상은 經理廳에서 옮겨 온 것이다.

【經理廳】 [續] 肅宗 37년 辛卯에 북한산성을 쌓고¹⁴⁴⁾ 동왕 38년 壬辰에

관청을 설치하여 山城의 사무를 관장시켰다. [增] 지금은 혁파되어 摠戎廳에 소속되었다.

都提調 1인 정1품, 영의정이 兼察한다. 提調 1인 종2품, 備邊司 堂上官이 겸직으로 임명된다. <北漢> 管城將 1인 정3품. <北漢> 把摠 1인 종4품. 郎廳 1인 종6품, 備邊司 郎廳이 겸직으로 임명된다. <北漢> 哨官 5인 종9품. 軍官

4.<北漢> 旗牌官 5. 軍官 11. 料射軍官 20. 各色軍官 3. 城門部將 3.

144) 북한산성 축조의 주장은 숙종 29년 정월 우의정 申瑬에 의하여 제기되어 同年 3월 五軍門의 物力을 동원하여 착수하였으나 한 달도 못되어 반대론이 많아서 중단되었지만, 異樣船의 출몰과 숙종의 집념으로 숙종 37년 4월 三軍門(訓·御·禁)의 財力이 동원되어 다시 築城을 시작하여 그 해 10월에 완공되었다(《숙종실록》 권50下-20, 숙종 37년 10월 갑술).

북한산성 축조 후 처음에는 축성에 참가하였던 三軍門에서 구역을 나누어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나 비축미가 5·60만석이나 되어(《같은 책》 권51-20, 숙종 38년 4월 임술) 이를 전담할 관청이 필요하였다. 이에 經理廳이 설치되었으며 大臣인 都提調 1인과 三軍門의 대장을 그 당상관으로 하여 提調를 의례히 겸직하도록 하였다(《숙종실록》 권52-22, 숙종 38년 10월 계축).

양곡관리는 처음에는 삼군문에서 파견된 監官(哨官 및 敎鍊官輩)이 맡았으나 숙종 40년 9월에는 嘉善武官인 別將을 두어 이를 專管하도록 하되 5·6萬石 이외 餘穀은 兪容淸 주관으로 蕩春臺 外倉에서 보관하도록 하였다(《같은 책》 권55-32, 숙종 40년 9월 계해). 經理廳은 영조 때 왕권강화를 위한 軍營體制의 재정비 과정에서 解消된다. 즉 經理廳은 영조 10년 정월에 그 혁파가 건의되어 그 후 畿營(兪容淸)에 소속되었으며(《영조실록》 권37-5, 영조 10년 정월 신사), 고종 28년(1891) 2월에 다시 설치되었다(《고종실록》 권28-10, 고종 28년 2월 27일).

【扈衛廳】¹⁴⁵⁾ 續 3개청이다. ○ 仁祖 원년 癸亥에 창설되어 扈衛를 관장한다. ○ 所任軍官은 각 3인으로 20개월의 근무 월수를 채우면 6품으로 승진시키며, 45개월간 근무하면 都目 때마다 3廳을 통하여 가장 오래 근무한 자 1인을 승진시켜 자리를 옮겨 준다. 增 正宗 원년 丁酉에 1廳으로 합쳐서 단지 軍官 350명이 番을 나누어 궁궐에 入直하도록 하였다. 補 오래 근무한 자의 승진 및 전보는 2都目 간격으로 한다.

大將 1인 정1품 續 3인, 현직및 전직 大臣과 國舅(임금의 장인) 중에서 겸직시킨다. 增 2인을 줄인다. 비록 大臣일지라도 勳臣과 戚臣이 아니면 겸직시키지 아니한다. 別將 3인 정3품 軍官 350 續 1050 增 700명을 줄인다. 所任軍官 3, 堂上別付料軍官 1

【龍虎營】 續 禁軍廳이다.¹⁴⁶⁾ ○ 경국대전 반포 후 兼司僕·內禁衛·羽林

145) 扈衛廳은 인조 원년 9월에 反正을 주동한 功臣들이 동원한 병력 중 私募兵을 官軍化하여 만든 군대이다. 호위청에는 大將 4인(金瑬·李貴·申景禎·李曙)과 당상관 2인(金自點·沈器遠)을 두어 대장은 각 100명씩, 당상관은 각 50명씩, 위 私募軍 중에서 뽑은 軍官을 거느리면서 임금을 호위하였고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給料을 주었다(《인조실록》 권3-18, 인조 원년 10월 임진). 이와 같이 호위청의 설치로 西人系 勳臣들의 私兵들이 正規軍化한 것으로 私兵들은 대개 勳臣 개인과 연고가 있는 자들(驛卒이나 奴子포함)이었으며 勳臣들은 그 후에도 武士들을 계속적으로 뽑아서 인조 2년 3월경에는 호위군관 T/O에 배나 되어 1,000명에 이르렀다(《위의 책》 권5-20, 인조 2년 3월 계유). 그러나 그들 정원 이외 軍官들은 국가로부터 祿俸을 받지 못하고 主將이 먹여살렸을 것이므로 私的인 유대가 더욱 튼튼할 수 밖에 없어 戶曹로 하여금 給料을 措置하도록 하였다(同上).

인조 2년 10월 어영군이 창설되자 창설자인 李貴는 어영군의 番上軍士의 통솔권을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軍官들(10명이 50명씩 통솔)에게 맡길 것을 건의하였고(《인조실록》 권7-19, 인조 2년 10월 임진), 총융군의 창설자 李曙도 同王 3년 정월에 자신의 軍官들을 경기 각읍에 보내어 군사들을 操鍊하도록 건의하였다(《같은 책》 권8-1, 인조 3년 정월 임자). 그러나 현종·숙종·영조대를 거쳐서 정조대에 이르면 호위대장이 3인(三廳)에서 1인으로 되고 軍관수도 대폭 줄어들어서 350여명이 되었다(《萬機要覽》 軍政篇 扈衛廳 및 《大典會通》 兵典, 扈衛廳).

146) 조선중엽까지의 국왕 친위병인 禁軍은 內禁衛·兼司僕·羽林衛 등 內三廳으로 분리되어 있

衛를 합하여 700명으로 1청을 만들어 7番으로 나누고 每番 三正·九領¹⁴⁷⁾이 兵力을 장악하여 扈衛·入直하였으며 병조판서가 이를 통솔하였다. ○ 宣傳官 取才시험 합격자인 무과출신자 40인과 部將 取才시험 합격자인 무과출신자 15인을 뽑아서 소속시킨다. ○ 禁軍은 비록 折衝將軍이나 嘉善大夫까지 승진하더라도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소속시킨다. ○ 7番의 軍士 내에서 駕後禁軍 50명을 선발하여 임금이 거동할 때에 侍衛하도록 한다. [增] 英宗 31년 乙亥에 禁軍廳을 龍虎營으로 改稱하였으나 別將은 종전대로 禁軍別將이라 칭하였다. ○ 火砲禁軍 27명 내에 10명은 龍虎營의 標下軍¹⁴⁸⁾ 중 무과출신자로 하고, 5명은 標下軍을 승진임용 하며, 6명은 軍器寺의 別破陣, 2명은 훈련도감의 別破陣, 2명은 금위영의 別破陣, 2명은 어영청의 別破陣을 임용한다. ○ 正宗 원년 丁酉에 內禁衛의 1번과 2번으로는 宣傳官으로

었다. 효종은 금군의 전투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600여명 전부를 騎兵化하도록 하고(《효종실록》 권9-8, 효종 3년 8월 입자), 그들을 종합적으로 통솔하기 위하여 三廳의 軍士를 左·右別將 두 사람에게 나누어 지휘하도록 하였다. 즉 629명의 금군을 6番으로 나누어 左別將(龍大將)은 1·2·3番을, 右別將(虎大將)은 4·5·6番을 통솔하여 임금의 거동시에 左右에서 호위하도록 하였다(《효종실록》 권8-10, 효종 3년 8월 무진 및 육군사관학교 軍事연구실, 앞의 책, p.130). 효종은 이어서 금군을 1,000명으로 늘렸으나 현종대에는 다시 700여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후 또다시 6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위의 책, 권14-21, 효종 6년 4월 계유 및 육군사관학교 軍事연구실, 앞의 책, p.130-131). 현종 5년 8월의 금군수는 672명으로 그 중 有馬者는 561명, 無馬者는 111명이었다(《현종개수실록》 권11-35, 현종 5년 8월 계미). 이에 현종은 금군을 700명으로 定額化 하고 이를 7番으로 나누었으며 別將 2인을 1인으로 하였다(《萬機要覽》 軍政篇, 龍虎營 設置沿革條). 숙종 8년 禁衛營이 창설되어 금군은 금위영의 騎馬隊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禁軍別將은 금위영의 中軍이 겸직하기도 하였다. 또 정조 때에 壯勇衛 설치로 금군은 6번제로 되었다가 순조초 장용영의 혁파로 다시 7번제로 되었지만 다시 순조 33년에 100명을 줄여서 6번제로 하였다(同上 및 《대전회통》 병전 龍虎營). 금군청은 영조 31년 乙亥에 용호영으로 개칭되었으나 별장의 명칭은 용호장으로 하지 않고 금군별장으로 하였다. 別將(1인)은 將(7인 또는 6인)을 통솔하였고 將은 正을 통솔하였으며, 正은 領을, 領은 軍士를 통솔하였다. 10인을 1領으로 하였고 3領을 1正으로 하였다. 堂上軍官은 현종 9년에 설치할 때에는 30인이었으며 금군 중에서 무과급제자의 進出路로 삼고자 하였으나 그 후 中庶人의 당상관 자리로 되었고, 그 인원수도 영조 30년에 15명이 되었으며 그 외 또 兵房 1인이 있어서 西·北別付料 軍官을 통솔하도록 하였다(同上).

147) 三正·九領이란 正3人(각 3領을 통솔)과 領9인(각 10인을 통솔) 등으로 여기서는 正과 領의 지휘관으로 볼 수 있으나(정재각 외 3인, 앞의 책, p.380), 말단 군사조직 단위(소대 및 분대)로 보아서 3正·9領이란 하급지휘자를 포함하여 약 100명의 군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148) 標下軍이란 각 軍營의 旗手·鼓手·軍牢 등 基幹要員으로서 각 營 大將의 手下親兵인 牙兵과 함께 각 本營에서 常勤하였다. 따라서 충용청과 어영청의 軍士는 원칙적으로 宮城宿衛의 임무가 없었으므로 都城入番兵은 아니었지만 위 兩廳의 標下軍은 牙兵과 더불어 도성내의 本廳에 常住하였던 것이다(육군사관학교 軍事연구실, 앞의 책, p.154).

추천된 사람을 入屬시키되 宣傳官으로 추천된 武弁 중 무과출신과 閑良을 取才시험으로 충원하여 6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관직에 임용추천 한다. 간혹 어떤 일로 인하여 면직되었으면 취재시험을 면제하고 곧바로 口傳¹⁴⁹⁾으로 임용하며 두번 재 지망자(重來者)는 3개월이 되어야 관직에 추천될 수 있고 세번째 지망(重重來)의 경우에는 월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口傳을 기다려 곧바로 관직에 추천될 수 있다. 1번과 2번의 將 2인으로는 防禦使 이상을 두루 올려서 임용후보자로 추천한다. ○ 正(소대장)과 領(분대장)은 30개월을 근속하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補] 純祖 33년 癸巳에 內禁衛 100명을 줄여서 지금은 6番으로 되었다. ○ 宣傳官 取才시험 합격자 정원에 5인을 더하고 部將 取才시험 합격자 정원에 15인을 더한다. ○ 火砲禁軍은 龍虎營의 標下軍인 무과출신자의 정원을 2명 減하였으므로 지금은 25명이 되었다. ○ 宣傳官 14인, 武兼 宣傳官 12, 部將 15인, 守門將 18인, 參軍 3인 등을 각 番에 나누어 소속시킨다. ○ 內禁衛의 1番將은 防禦使 이상자로서 임용후보자를 갖추어 추천하며, 그 외 각 番將은 守令이나 지방의 將帥職을 지낸 자로서 후보자를 갖추어 추천한다. ○ 正과 領이 근속하면 6품으로 승진하는 것이 지금은 폐지되었다.

別將 1인 중2품 將 6인 정3품, 兼司僕將 2인, 內禁衛將 3인, 羽林衛將 2인. [續] 7인이다. [補] 內禁衛將 1인을 줄인다. 堂上軍官 16 [增] 1인은 西·北別付料 軍官의 통솔자인 兵房으로 하되 防禦使를 지낸 사람을 임명하고, 7명은 閑散人, 8명은 禁軍을 임용한다. ○ 모두 병조판서에 屬하되 5명은 禁軍別將에게 分屬한다. 敎鍊官 14 [增] 4명은 禁軍, 8명은 閑散人, 2명은 병졸 중에서 승진임용한다. [補] 1명은 武藝別監을 임명하고 閑散人은 1명을 줄인다. 別付料軍官 120 [增] 西·北別付料軍官은 무과출신과 閑良을 반반씩 나누어 각각 40인을 시험으로 뽑아서 料¹⁵⁰⁾

149) 口傳이란 注擬(3배수로 임용후보자 추천)를 거치지 아니하고 문·무관료를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인 관료의 임명절차는 추천권을 가진 자가 吏曹(文班) 또는 兵曹(武班)를 거쳐서 3인의 임용후보자(三望)를 추천 上奏(注)하면 임금은 그 중 한 사람의 姓名 위에 점을 찍어(落点) 임명하는데 이러한 절차(注擬)를 거치지 아니하고 吏曹나 兵曹 단독으로 임용후보자 명단을 승정원에 直送하여 受点任命하는 것을 口傳政事라 한다(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387).

를 주는 10자리를 각각 두고서 매월의 활쏘기 시험에서 맞춘 화살수에 따라
 料를 준다. 邊地(국경지방)人이 아니면서 거기에 섞여서 몰래 입속된 자에게
 는 병조판서 및 해당 帥臣이 制書有違律¹⁵¹⁾을 시행한다. [補] 淸南과 南
 關¹⁵²⁾에 각각 20명을 더하여 맞춘 화살수에 따라 각각 5자리의 祿을 준다.

【捕盜廳】¹⁵³⁾ [續] 도적과 간악한 소인을 수색·체포
 하고 밤 시간(更)을 나누어 야간순찰하는 일을
 관장한다. 左·右 兩廳이 있으며, 경국대전 편찬 후에 창설되었다.

○ 大將이 摠管을 겸직하면 총관직을 바꾼다. ○ 軍官이 근속하면 승진 또는
 전보한다. [增] 임금의 능행시에 현직 兩 捕將이 수행하면 현직 또는 전직
 將臣으로서 서울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을 병조에서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
 시를 받아 임시로 직무를 취급하도록 한다. [補] 大將으로는 左尹이나 右尹

150) 料는 月 또는 日로서 계산하여 주는 보수로서 年間 지급액을 정하여 분기 또는 월로 나누
 어 주는 정규 流品內的 관료들의 祿俸과는 구별된다. 《經國大典 註解》上 後集 吏典 祿俸條에
 서 「米穀曰祿, 布帛曰俸」이라 하였다.

151) 制書有違律은 《大明律直解》 권3 吏律, 公式에 있는데 杖 100이하刑에 처하도록 하였다.

152) 주 32 참조 (淸南 등).

153) 捕盜廳은 일명 捕廳이라고도 하며 경국대전 편찬 이후에 도둑이나 민간범죄인을 잡기 위하
 여 두었다. 그 창설 연대는 명종 15년 이전으로 보이며(《명종실록》 권26-51, 명종 15년 8월
 계축), 捕盜將은 성종 5년 이전에도 있었다. 즉 성종 5년 3월, 임금이 도적이 많으므로 포도
 장을 다시 두라고 명령한 바 있으며(《성종실록》 권40-4, 성종 5년 3월 병신), 성종 21년 2
 월에 폐단이 있다고 하여 재차 혁파되었지만(《같은 책》 권237-6, 성종 21년 2월 신축), 성종
 24년 윤 5월에 5부에 각각 포도장과 文臣인 從事官 각 1명씩을 두도록 하였다(《같은 책》 권
 278-8, 성종 24년 윤5월 병신). 중종 11년 10월 이후의 실록기사에서는 포도장이 자주 보이
 는데 특히 중종 13년 12월 도난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포도장이 臺諫의 집까지 수색하여 말
 썩이 일어났다(《중종실록》 권35-5, 중종 13년 12월 경진). 포도장은 折衝將軍인 軍職人이 말
 고 간혹 庶孽도 그것을 맡고 있었으므로 중종 15년 3월 南袞은 6曹堂上官을 지낸 사람을 임
 명해야만 部將 이하가 복종한다고 하였다(《같은 책》 권38-45, 중종 15년 3월 갑오). 명종
 15년에는 포도청에 左右大將을 두고 있었음이 나타나 있는데(《명종실록》 권26-51, 명종 15
 년 8월 계축), 그것이 뒷날 《續大典》에 등재된 것이다. 조선후기 左捕廳은 중부 貞善坊에 있
 었고 右捕廳은 서부 瑞麟坊에 있었는데,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 때 좌·우포청을 폐합하
 여 警務廳을 신설하였다(이홍직, 《앞의 책》 p.1625). 또 명종 15년 12월에는 서울의 포도장
 과 같은 성격의 巡警使를 황해도와 강원도에 보낸적이 있다(《명종실록》 권26-69, 명종 15년
 12월 기사 및 을미).

을 지냈던 사람을 추천하여 임용한다.

各 大將 1인 종2품 各 從事官 3인 종6품, 각 1인은 도총부와 훈련원의 관원이 겸직한다. **增** 宣傳官도 역시 겸무한다. **補** 모두 實職으로 한다. 各 部將 4, 無料部將 26, 加設部將 12 三江¹⁵⁴)과 都城門 밖의 禁軍을 兩 捕廳에 나누어 소속시켜 譏察(비밀히 정탐) 하도록 한다.

【摠理營】¹⁵⁵⁾ **補** 水原府에 둔다. ○ 正宗 17년 癸丑에 府使를 留守로 승격시켜 壯勇外使를 겸직시켰고 純祖 2년 壬戌에 壯勇營이 혁파된 후 (壯勇外使를) 摠理使로 改稱하였다.

使 1인 정2품, 留守가 겸직한다. 中軍 1인 정3품, 華寧殿¹⁵⁶⁾의 衛將과 禿城의 守城將을 겸한다. 從事官 1인 判官이 겸직한다. 別驍將 2인 정3품 把摠 12인 종4품, 6인은 振威·龍仁·安山·果川·

154) 三江은 漢江의 지역별 칭호로서 좁은 의미의 한강인 남산 남쪽 한남동 일대의 강과 龍山江 즉 원효로 앞의 강 및 西江 즉 마포쪽 강을 合稱한 것으로 보인다(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387).

155) 摠理營은 壯勇外營을 대신하여 생긴 軍營이다. 즉 순조 2년 정월 영의정 沈煥之의 건의에 따라 壯勇營이 혁파되자 他軍營에서 移管된 병력은 대개 각 本營으로 돌아갔으나, 廣州의 守禦廳에서 이관된 군사(9哨)중 龍仁·安山·始興·果川 등 4哨의 병력은 수어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장용외영을 대신하여 생긴 총리영의 병력으로 되었다(《순조실록》 권4-5, 순조 2년 2월 무신). 壯勇外營은 정조 17년 정월에 壯勇營兵房을 壯勇內使로 승격시켜서 內營制를 확립하면서 그 外營으로 수원(華城)에 두었던 군영이다. 그 때 수원부사(정3품)를 留守(정2품)로 승격시켜서 그 밑에 判官을 두고, 종래 몇천명이었던 병력을 약 2만명으로 증원하였다. 즉 수원병력이 약 12,000명, 용인, 振威, 안산, 시흥, 과천 등 관내 병력이 모두 8,000~10,000명이었다(육군사관학교 軍事연구실, 앞의 책, pp.209~226). 그러므로 장용외영의 병력규모와 비교하면 총리영의 병력은 아주 미약하게 된 것이었다. 壯勇衛營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주 130 참조.

156) 華寧殿은 正祖의 초상화를 모신 곳으로서 수원에 있다.

始興 등 고을의 守令과 平薪僉使가 의례히 겸직하고, 6인은 軍務에 경력이 있는 전직 관리를 임명한다. 斥候將 1인 迎華道 察訪이 겸직한다. 哨官 25인 종9품 教鍊官 8, 知穀官 10, 別軍官 100, 守堞軍官 12, 別驍士 200.

【守禦廳】¹⁵⁷⁾ **續** 仁祖4년 丙寅에 남한산성을 改築하고 이어서 관청을 설치하여 廣州 등 鎭의 軍務를 지휘·관할(節制)하도록 하였다. **增** 肅宗 9년 癸亥에 守禦使의 호칭을 혁파하고 留守로서 남한산성에 出鎭하게 하였다가 동왕 16년 庚午에 京營을 다시 설치하여 守禦使의 호칭을 도루 稱하도록 하고 府尹이 副使를 겸직하도록 하였으나 동왕 21년 乙亥에 副使의 호칭을 혁파하고 종전대로 府尹을 칭하게 하였다. 英宗 26년 庚午에 또 京營을 혁파하여 남한산성에 出鎭하도록 하여 留守를 칭하게 하고 府尹을 혁파하여 經歷을 두었다. 동왕 35년 己卯에 도루 京營을 두고 守禦使를 다시 칭하게 하며 府尹도 도루 두었다. **補** 正宗 19년 乙卯에 京營을 혁파하여 남한산성에 出鎭하게 하고 留守를 칭하도록 하였다. ○ 원래에는 어영청 밑에 실려 있었으나 지금은 移錄되어 있다.

使 1인 중2품. 中軍 1인 중2품. 別將 2인 정3품. 千摠 1인 정3품 **續** 2인 **增** 1인을 줄인다. 把摠 3인 중4품. 從事官 중6품 **續** 1인 **增** 삭감한다. 哨官 12인 중9품 **續** 16인이었으며, 3인은 宣傳官으로 추천된 사람, 2인은 西北人, 1인은 禁軍, 1인은 山城人을 임용하였다. **增** 4인을 줄이고, 1인은 宣傳官으로 추천된 禁軍, 1인은 西北人, 1인은 禁軍, 5인은 전직관리 및 閑散人, 4인은 山城人을 임용한다. 教鍊官 7명 **續** 10명 ○ 1명은 禁軍, 1명은 병졸을 승진임용 하고, 3명은 무과급제 출신자, 5명은 전직관리와 閑散人을 임용한다. **增** 3명을 줄인다. ○ 1명은 禁軍, 1명은 병졸을 승진임용 하고, 1명은 壯勇衛, 4명은 무과급제출신자와 전직관리를 임용한다. 軍官 3명 **續** 15명 **增** 12명을 줄인다. 서울의 閑良軍官 283명 **增** 모두 삭감한다. ○ 〈南漢〉 守城將 1인, 廣州府尹이 의례히 겸직한다. 留營別將 1인 정3품. 城

157) 解説篇 4. 守禦廳 參照.

機別將 정3품 **續** 1인, **增** 삭감한다. 哨官 5인 중9품. 敎鍊官 10명. 旗牌官 60명. 軍官 43명. 勸武軍官 50명 **增** 廣州 境內의 士夫에게 入屬할 것을 권유하여 移屬시킨다. 軍官 250명 **續** 290명 **增** 40명을 줄인다. 付料軍官 27명 **續** 336명 **增** 309명을 줄인다.

使 1인 정2품 **補** 留守가 겸직한다. 中軍 1인 정3품 鎭營將 3인 정3품. 前營將은 廣州府 判官, 中營將은 楊州牧使, 後營將은 竹山府使가 겸직한다. 別將 2인 驪州牧使와 利川府使가 겸직한다.

把摠 2, 哨官 26, 敎鍊官 17, 旗牌官 19, 別軍官 9, 守堞軍官 61.

【管理營】¹⁵⁸⁾ **續** 開城府에 둔다. **增** 肅宗 37년 辛卯에 설치하였다.

使 1인 중2품, 留守가 겸직한다. 中軍 1인 정3품, 大興山城에 머물러서 지키도록(留鎭) 한다.

增 從事官 1인 經歷이 겸직한다. 別將 2, 千摠 3, 百摠 4, 把摠 6, 哨官 32, 敎鍊官 8, 旗牌官 36, 堂上軍官 50, 軍官 250.

【鎭撫營】¹⁵⁹⁾ **續** 江華府에 둔다. **增** 肅宗 26년 庚辰에 설치하여 正宗 3

년 己亥에 統禦營을 통합하였다. **補** 東王 13년 己酉에 統禦營을 분리하여 水營에 도루 소속시켰다.

158) 解說篇 5. 管理營 參照.

159) 解說篇 6. 鎭撫營 參照.

使 1인 중2품, 留守가 겸직한다. 中軍 1인 정3품 增 修城將을 겸한다. 鎭營將 5인 정3품, 前營將은 富平府使, 左營將은 通津府使, 中營將은 江華府의 中軍, 右營將은 豐德府使, 後營將은 延安府使가 겸직한다. 補 豐德府使의 겸직을 혁파하고 지금은 仁川府使가 겸직한다. 增 從事官 1인 經歷이 겸직한다. 千摠 4, 把摠 10, 哨官 63, 敎鍊官 10, 旗牌官 71, 軍官 15.

【散職】¹⁶⁰⁾

【別軍職廳】¹⁶¹⁾ 續 堂上官으로부터 9품까지이다. 孝宗朝에 潛邸軍官으로

서 瀋陽에서 鳳林大君(孝宗)을 모시고 있었던 8인을 별도로 치우하여 관청을 만들었는데 세상사람들이 八壯士라 불렀다. 그 후에 점점 增員하였으며 定額은 없다. ○ 都目 때마다 오래 근속한 사람 중 吏曹와 兵曹에서 각 1인씩 승진 또는 전보시킨다. ○ 堂上官 이상에게는 僉知事를 加設하여 의례히 付職(임명)하고, 參上官에게는 訓練主簿 이상을 加設하여 품계에 따라 의례히 付職하며, 參外官에게는 部將을 加設하여 의례히 付職하되 원래의 部將例에 따라 근무일수를 채우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兵使나 水使(閩帥)를 지내면 퇴직한다. 增 亞將(次將)을 지내면 퇴직한다. ○ 과거에 급제하면 6품으로 올려서 訓練院 主簿로 付職한다. ○ 士夫(양반)이면 품계에 따라 知事까지 오를 수 있으나 中庶人은 중추부의 同知事와 僉知事를 넘을 수가 없고,

160) 散職을 흔히 散官과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산관은 관직이 없고(退官者이든 未就官이든 불문) 官階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또 散官·散職을 職名만 있고 實務가 없는 관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를 散階·散料·散班이라고도 한다(오희복, 《봉건관료기구 및 벼슬이름편람》, 여강출판사, 1992.3, pp.155~156). 그러나 여기서의 散職은 別軍職廳, 內司僕寺, 능마아청 등의 관원으로서 일정한 직무는 있으나 임시직인 관원을 의미한 듯하다.

161) 주 18 참조(別軍職).

퇴직하여 散官이 되면 병조에서 호조로 공문을 보내어 散料(보수)를 주되, 解由(사무의 인계인수 및 책임해제) 여부는 상관 없다. [補] 參外官이 근무일수가 차면 大政(都目政事¹⁶²) 중 12월의 정기인사이동)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6품으로 승진시킨다. ○ 새로 임명할 때와 의례히 겸직하는 경우에는 병조에서 단일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아 付職한다(口傳單付).

○ 오래 근속한 자를 병조에서 승진 또는 전보하는 것을 지금은 폐지한다.

【內司僕寺】 [續] 궁내의 말에 관한 일과 임금의 탈

것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內乘 3인, 2인은 중2품에서 9품까지의 관직자가 두루 겸직하며, 1인은 司僕寺의 正이 의례히 겸직한다. 경국대전에서는 番次와 都目 항목의 兼司僕條 아래 註에 (內乘이) 있는데 지금은 인원수를 加減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內司僕寺를 만들었다. ○ 慶熙宮으로 임금이 옮길 때에는 1인을 더 임명(差出)한다. ○ 參外官의 근무일수가 600일이 차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補] 堂下官인 實職으로 임용(施行)한다.

【能麼兒廳】 [續] 여러 將官에 대한 兵書 考講(講讀

시험)과 勸課(과업을 권장)를 관장한다. 堂上官은 3인이며 그 중 1인은 訓練院 都正이 의례히 겸직한다. 郎廳(郎官)은 4인이며 그 중 2인은 훈련원 習讀官이 의례히 겸직한다. 參外官이 1350일의 근무일수를 채우면 講讀시험(考講)을 거쳐 6품으로 승진시킨다. [增] 英宗 41년 乙酉에 훈련원에 합쳐서 付職하고 3軍門(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의 中軍이 능마아청의 堂上官을 의례히 겸직한다. 郎廳 2인은 中庶人 중 나이가 30이 찬 사람을 임명(差出)한다. [補] 의례히 겸직하는 郎廳 1인(員)을 6품 자리

162) 都目政事는 都目政 또는 都目·都政이라고도 하며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실시하는데 현직관료들의 근무성적을 따져서 승진·퇴직 또는 전보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都目政事 중에서 12월에 시행하는 것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大政이라고 한다(오희복, 《앞의 책》 p.80 및 p.84).

로 하여서 전직 參外官이었던 사람을 골라서 임용한다.

【忠壯衛將】**續** 3인, 중2품 혹은 정3품을 임명하여 番次를 나누어서 入直하도록 한다.

【忠翊衛將】**續** 3인, 忠壯衛와 같다.

【空闕衛將】**續** 景福宮·慶德宮·昌慶宮의 假將은 각 3인으로 각 衛將과 같이 빈 궁궐에 入直한다. **增** 慶德宮을 지금은 慶熙宮이라 한다. ○ 空闕衛將의 假字를 제거하고 遞兒職으로 하여서 觀象監·司譯院·寫字官·畫員 중 堂上官 이상자를 두루 추천하여 임명한다.

【儀仗庫】**續** 각 殿의 儀仗을 관장한다. 郎廳이 2인이며 部將이 의례히 겸직한다.

【四山參軍】**增** **補** 중9품 四山の 소나무의 盜伐을 단속(禁松)하는 일을 관장한다. **續** 監役官은 4인으로 都城境內의 동서남북 지역을 나누어 맡으며, 蔭官으로서 처음 벼슬하여 遞兒軍職의 녹봉을 받고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增** 監役官을 혁파하고 參軍을 두어서 宣傳官으로 추천된 무과급제출신자를 골라서 임명하며, 동서남북으로 각 1인이 都城內外의 山을 나누어 맡도록 한다. 서쪽 지역(西道)은 훈련도감에 소속시키고 동쪽 지역(東道)은 어영청에 소속시키

며 남쪽 지역(南道)은 금위영에 소속시키고 북쪽 지역(北道)은 총융청에 소속시키되 각 본청의 哨官 중에서 宣傳官으로 추천된 사람을 겸직으로 임명하여 外山을 전담시키며, 모두 근무월수가 30개월이 차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雜職】¹⁶³⁾ 續 승문원의 諸員(여러 잡직 직원) 3인을 領(잡직 중9품)職으로 임명(除授)하고 교서관의 唱準이 책을 인쇄할 때와 도화서의 畫員이 궁궐에 들어가서 특별히 그림을 그릴 때에도 領職을 除授한다.

【雜職階】 原 정6품 奉任校尉·修任校尉, 중6품 顯功校尉·迪功校尉, 정7품 騰勇副尉, 중7품 宣勇副尉, 정8품 猛健副尉, 중8품 壯健副尉, 정9품 致力副尉, 중9품 勤力副尉.

【破陣軍】¹⁶⁴⁾ 原 勤事 중7품, 從事 중8품, 趨事 중9품. 增 지금
은 폐지되었다. 【隊卒】 【彭排】 隊長 정9품, 隊副 중9품.¹⁶⁵⁾

163) 雜職은 正職과는 별도로 각종 技能職 從事者(雜類)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직으로서 주로 良人(常民)이나 賤人이 임용되었다. 세종 12년에 工商賤隸인 雜類들의 관직으로 雜職을 설정하였으며, 세종 26년에는 雜職들의 官階를 별도로 만들었다(이재룡, <朝鮮初期 社會構造 研究>, 일조각, 1993, pp.22~24 및 <세종실록> 권105-15, 세종 26년 윤7월 임오). 雜職者는 체아록을 받으며 양인인 경우에는 正職의 官階를 받을 수 있으나 雜職에서 正職으로 임명할 때에는 1階를 낮추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57).

164) 破陣軍은 火砲匠이다(<經國大典 註解> 下 後集, 兵典). 성종 8년 火藥匠人의 처우개선책으로서 명칭을 軍으로 고쳐서 奉足 2명을 주었고 체아직으로도 임명하여 보수를 주었다. 破陣軍은 火砲사용의 특수부대로서 火砲軍 또는 銃筒衛의 後身으로 賤人이 대부분이었다. 破陣軍의 총인원수는 180명이며 6교대로 30명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수가 몇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58 및 <성종실록> 권54-2, 성종 6년 4월 경진 및 <중종실록> 권48-20, 중종 18년 5월 정유).

165) 隊長과 隊副는 조선시대 5衛의 주요 兵種인 隊卒과 彭排에게 주었던 雜職이다. 고려시대의 尉와 正이 太祖 3년에 각각 개칭된 것으로서 원래 10司의 各領에 소속되어 甲士의 手下步卒로서 군사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그 후 점차 勞役に 종사하게 되면서 별도의 兵種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태종 15년 6월에 隊長·隊副 중 壯實者 1,000명을 선발하여 防牌를 주어 윤번으로 侍衛하도록 하여 彭排(防牌가 改稱)라는 兵種이 생겼고, 동시에 攝隊長, 隊副 400명을 임명하여 녹봉을 주어 長番으로 立役시켰으며 그 결원은 婢妾子나 干尺으로 충원하였다(<태종실록> 권29-44·45, 태종 15년 6월 임오). 이것을 攝60이라 하였는데 防牌와

增 지금은 폐지되었다. 【禁軍】 續 正 21명 중8품, 領 63명 중9품.

補 正은 18명, 領은 54명으로 한다. 【各營軍士】

續 旗擻 정8품, 隊長 중8품, 隊副 중9품. 【騎步兵】 續 旅帥 중8품,

隊正 중9품. 【承文院諸員】 【校書館唱準】 【圖書署

畫員】 續 領 중9품.

【外官職】¹⁶⁶⁾ 原 節度使와 虞候 및 評事¹⁶⁷⁾는 근무
일수가 720일이 차면 바꾸고, 가족을 거느리지
아니한 僉節制使와 萬戶¹⁶⁸⁾는 900일이 되면 바
꾼다. 補 評事는 일주년, 營將·中軍·永宗僉使·黑山島別將·鳥嶺別將
·權管 등은 24개월, 초임(初仕)權管·監牧官·別將 등은 30개월로 한다.
○ 節度使의 鎭營을 主鎭¹⁶⁹⁾이라 칭하고 節制

攝⁶⁰⁾은 勞役に 종사하는 役軍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어 賤人들도 入屬하는 병종으로 되었으며
세종 26년에 西班의 雜職官階가 따로 만들어지면서 위 두 병종을 구성하는 隊長과 隊副는 각
각 西班의 雜職 정9품과 중9품을 받게되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p. 558~559 및
pp.542~543).

166) 外官職編은 各道の 兵馬節度使와 水軍節度使를 비롯하여 그 예하의 兵馬 및 水軍의 節制使
· 僉節制使· 同僉節制使와 萬戶에 관한 地方軍事組織體系(鎭管體制) 및 그 인원수를 규정한
항목이다.

167) 解説篇 7. 外官職(節度使·虞候·評事) 參照.

168) 僉節制使로는 兵馬僉節制使와 水軍僉節制使가 있으며, 鎭管體制上 巨鎭의 將이다. 萬戶도
兵馬萬戶(평안도와 함길도에만 있다)와 水軍萬戶가 있으며 諸鎭의 將이다. 兵馬僉節制使가 주
로 牧使나 府使 등 격이 높은 守衛이 겸직한데 반해서 水軍僉節制使와 萬戶는 대개 專任武班
職이다. 세종 21년 11월 경상좌도 都節制使(節度使) 李澄玉의 備邊策건의 속에서 沿邊守衛이
3품이면 僉節制使라 하고 4품이면 同僉節制使, 5·6품이면 節制判官으로 호칭하자고 하였다
(《세종실록》 권87-22, 세종 21년 11월 병인).

169) 主鎭으로는 兵馬節度使의 鎭營인 兵營과 水軍節度使의 鎭營인 水營이 있다. 主鎭에는 많은
留防兵과 兵船이 있었고, 관내 巨鎭을 지휘 감독하였으며, 巨鎭은 또한 諸鎭을 통솔하여 명령
계통이 확립되었다. 세조 4년경까지는 巨鎭將이 諸鎭將에 대하여 主將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使¹⁷⁰)와 僉節制使의 鎭營을 巨鎭¹⁷¹)이라 칭하며 同僉節制使¹⁷²)와 萬戶 및 都尉¹⁷³)가 주둔하는 곳을 諸鎭¹⁷⁴)이라 칭한다. ○ 僉節制使와 萬戶는 武藝를 시험한 자로서 임명한다. 무과에 급제한 자와 겸

巨鎭을 主鎭으로 부르기도 하였지만 뒤에는 兵營과 水營이 있는 곳만을 主鎭이라 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60 및 《세조실록》 권11-18, 세조 4년 2월 을묘).

170) 節制使로는 兵馬節制使와 水軍節制使가 있다. 병마절제사는 경국대전에서는 경주와 전주에 만 있어서 중2품인 府尹이 겸직하였으며(節制使는 정3품직), 續大典에서는 의주부에 신설함과(의주부윤 겸직) 동시에, 전주부에서는 削減(전라감사가 전주부윤을 겸직하였기 때문임)하였고, 大典通編에서는 廣州府에 신설하여 광주부윤이 겸직하였으나 大典會通에서 이를 삭감하였다(광주부윤이 留守로 승격하였기 때문임). 兵馬·水軍節制使는 경국대전 이후 줄곧 제주에 설치하여 제주목사가 겸직하였다. 여하간 절제사는 巨鎭중에서도 많은 병력이 필요한 국방상 요지인 몇몇 大邑에 두었던 巨鎭將으로서 하멜표류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천명의 병력동원이 가능하였다.

171) 巨鎭은 각도의 節度使 管下의 節制使 또는 僉節制使의 鎭營이다. 鎭管體制에 입각하여 전국의 중요한 군사거점을 巨鎭으로 삼아서 관내 諸鎭을 통할하도록 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60). 거진의 수는 육군(兵馬)의 경우 평안도와 함경도에 52개소(原:31개소), 나머지 6개도에 30개소(原:24개소)가 있었다. 수군의 경우는 함경도를 제외한 7개도에 28개소(原:12개소)의 거진이 있었다. 거진은 절도사의 主鎭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관내 諸鎭에 대하여 지휘권을 행사하였지만, 경국대전에 의하면 평안도와 함경도의 거진중 각 6개鎭은 獨鎭으로서 諸鎭이 딸리지 않았으며 모두 京職을 겸하였다. 그 이외의 巨鎭將은 모두 府尹, 牧使 또는 府使인 大邑守丞이 겸직하였으나 水軍의 경우에는 대개 專任武班職이었다. 그러나 대전통편에 의하면 위 12개 獨鎭將이 京職을 겸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

172) 同僉節制使는 兵馬同僉節制使와 水軍同僉節制使의 합칭으로(略稱同僉使) 諸鎭의 將이며 兵馬同僉使는 都護府使나 郡守 등 수령이 겸직하였으나 水軍同僉使는 專任武班職이다. 同僉節制使는 세종 21년 4품인 邊地수령을 그렇게 호칭하자는 건의가 있었고(주 168) 조선국초의 兵馬團練副使를 세조 4년 및 12년에 개칭한 것이다(《세조실록》 권11-19, 세조 4년 2월 을묘 및 권 38-6, 세조 12년 정월 무오). 水軍同僉節制使는 경국대전에서는 없었던 것을 속대전에서 신설하였다.

173) 都尉는 兵馬節制都尉의 약칭으로 諸鎭의 將이며 縣令과 縣監인 小邑의 수령이 겸직하였다(주 168). 조선국초의 兵馬團練判官이 세조 12년에 개칭된 것이다(《위의 책》 권38-6, 세조 12년 정월 무오).

174) 諸鎭은 鎭管體制下에서 巨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사조직의 下部 地域單位로서 同僉節制使·萬戶 및 都尉가 設鎭하던 곳이다. 육군(兵馬)의 경우는 거의 모두가 中小邑의 수령이 겸직하였지만, 수군의 경우에는 諸浦의 萬戶로서 專任武班職이었다. 諸鎭은 巨鎭의 지휘를 받아 관내 군사들을 장악하고 훈련시키면서 국방상 요지에는 留防兵을 常住시켜(正兵赴防) 방비하도록 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61 및 p.635).

사복 및 내금위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이미 僉節制使와 萬戶를 지낸 사람은 비록 守令(고을원)을 거치지 아니 하였더라도 官階를 올려 준다.

〔續〕 宣祖 때 경상도에 統制使¹⁷⁵⁾를 두어서 경상·충청·전라도의 水軍(舟師)을 통솔하도록 하였고 황해도에 兵馬節度使¹⁷⁶⁾를 두었다. ○ 仁祖 때에는 諸道에 鎭營將¹⁷⁷⁾을 두어 討捕使를 겸하도록 하였으며 경기·강원·함경·평안도에 防禦使¹⁷⁸⁾를 두어 守令과 邊將¹⁷⁹⁾으로서 겸직시켰

175) 解説篇 8. 統制使 参照.

176) 兵馬節度使는 조선시대 각도의 육군을 통할하던 사령관이다. 고려말 지방의 군사조직을 도별로 체계화하면서 都巡問使의 후신으로 都節制使를 파견하기 시작하였고, 조선대종 때 兵馬都節制使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병마도절제사는 세조 12년에 兵馬節度使로 개칭되었으며 성종 3년에는 각도의 관찰사가 이를 의례히 겸직하도록 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61). 그리하여 경기·강원도를 제외한 각도에서는 복수의 병마절도사(약칭 兵使)를 두어서, 兼兵使 이외 1인(전라·황해·평안도) 또는 2인(경상좌우도, 함경남북도)의 전임병마절도사 즉 單兵使가 있게되었다(황해도는 속대전에서 增置). 8인의 兼兵使의 鎭營을 監營이라 하였고 8인의 單兵使의 鎭營을 兵營이라 하였다. 병영은 水營과 더불어 主鎭으로서 그 幕下에 亞將인 虞候를 비롯하여 武官·軍官들과 많은 吏屬, 노비, 工匠들을 거느리는 한편 留防軍을 거느렸다. 兵使의 임기는 2년이었으며, 京官이 겸직하다가 성종 8년부터 實職으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영변·경성·북청 등 일부 서북지방의 대도호부사 또는 도호부사를 평안병사 또는 함경남·북병사가 겸하기도 하였지만 경성부사를 제외하고는 대전통편에서 모두 겸직이 폐지되었다. 兵使는 지방군의 무예훈련과 習陣, 무기의 제작과 정비, 군사들의 장비점검, 城堡 등 군사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관장하고, 下番의 京軍과 水軍까지 관장하여 捕虎·捕盜 및 內憂外患에 대처하도록 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62).

177) 鎭營將은 일명 營將이라고도 하는데 인조 때 설치된 정3품직이다. 진영장은 京官인 摠戎使·守禦使·鎭撫使 또는 각도의 兵馬節度使(兼兵使인 監司 포함)의 소속하에서 지방군대를 지휘·감독하였다. 京官인 鎭營將은 中軍이나 判官 또는 인근 지역 牧使·府使 등이 겸직하였으며, 각도의 진영장은 道内の 州府郡縣을 적당히 나누어 그곳의 府尹·牧使·府使·縣監 등이 겸직하였다. 각도의 鎭營은 원칙적으로 前後中左右의 5營으로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別中營·別前營 등으로 더 두었다. 현종때부터는 진영장이 討捕使를 겸하여 도적을 잡도록 하였다(이홍직, 《앞의 책》 下, p.1494).

고 경기도에 統禦使¹⁸⁰)를 두어 경기·황해·충청도의 수군을 통솔하도록 하였다. ○ 節度使로는 邊地守令¹⁸¹) 및 防禦使를 거친 사람을 두루 임용 후보자로 추천한다. ○ 節度使와 統制使는 각각 그 境內(관내)에서 印信과 兵符(龜 楮 寶)를 인계인수한다. ○ 資級(官階)을 올려서 營將에 임명된 자가 임기만료 전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不職) 체직이나 파직되었을 경우에

178) 防禦使는 조선후기의 속대전에 의하면 경기·강원·함경·평안도에 설치된 종2품의 무관직으로서 일정지역의 육군 또는 수군을 지휘하였으며 큰 고을의 수령 또는 邊將(僉使)이 겸직하였다. 물론 방어사라는 명칭은 조선중엽 이전에도 있었는데 명종 10년 10월 비변사에서啓하기를 금년 倭變時에 都巡察使와 방어사를 파견하였으나 방어사와 兵水使의 號令이 불일치하였다는 기사가 있고(《명종실록》 권19-28, 명종 10년 10월 기묘) 명종 13년 2월에도 邊事가 급하여 방어사를 파견하였다는 기사가 있다(《같은 책》 권24-11, 명종 13년 2월 계사). 선조 20년 8월의 실록기사에서는 방어사는 水使를 지휘하는 대장으로 되어 있었고(《선조실록》 권21-12, 선조 20년 8월 무오), 선조 26년 9월의 실록기사에서도 「防禦使는 助防將을 節制(통솔)하고, 助防將은 수령을 節制한다.」라고 하여 방어사는 수령을 지휘하는 助防將을 통솔하는 최고사령관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수령이 방어사를 겸직하여 감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었고(《현종개수실록》 권12-42, 현종 6년 2월 기미), 防禦營을 승격시켜서 水營(黃海水使)으로 하였다(《숙종실록》 권61-45, 숙종 44년 6월 경진)는 기사에 비추어 방어사가 비록 종2품관이었지만 정3품관인 水使 밑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사는 帥臣으로서 수령에 대한 지휘권이 있었으므로 수령겸직인 방어사가 자연히 그의 통솔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79) 解說篇 9. 邊將 參照.

180) 統禦使로는 水軍統禦使와 陸軍統禦使가 있는데, 水軍統禦營은 인조 11년에 설치하여 정조 2년 윤6월에 鎭撫營과 합쳤으며(《정조실록》 권5-63, 정조 2년 윤6월 신미) 同王 3년 3월에 다시 江華府와 합쳤다가(《같은 책》 권7-21, 정조 3년 3월 임진), 同王 13년에 다시 설치하여 本營을 경기도 喬桐府에 두고 경기·충청·황해 3도의 수군을 지휘하도록 하였다(《같은 책》 권27-26, 정조 13년 5월 임오). 三道水軍統禦使는 경기도 수군절도사 및 교동부사를 겸직하였으며 고종 30년에 폐지되었다(이홍직, 《앞의 책》 p.672). 육군통어사는 고종 25년에 설치하여 30년에 폐지하였는데, 충청·전라·경상 삼도의 육군을 통솔하였던 지휘관으로 충청병사가 이를 겸직하였다(同上 p.671).

181) 解說篇 10. 邊地守令 參照.

는 근무일수의 多少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올렸던 資級을 환수한다. 다른 죄로 파직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0개월 전이면 비록 병으로 체직되었더라도 역시 올렸던 資級을 환수한다. [增] 새롭게 資級이 (堂上官 階로) 올라간 營將이 소정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貶下(해임 또는 강등) 되었으면 비록 임금에게 올린 褒貶에 관한 문서가 開封되기 전에 移職되었을 때라도 역시 승진된 資級을 환수한다. ○ 營將과 邊將은 비록 죄를 지어 罷職되었을 때라도 친구관원이 對面하여 인계인수(面看交代)한다. 兼營將도 이와 같다. ○ 營將은 15개월이 되기 전에는 승진 또는 전보할 수가 없다. [增] 새롭게 당상관이 된 營將의 15개월은 임명일 자부터 계산하고 예전에 당상관으로 資級이 올라 있었던 營將은 10개월이 되기 전에는 승진 또는 전보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補] 새롭게 당상관이 된 營將은 10개월 후에는 邊地의 僉使로 추천될 수가 있으나 20개월이 되기 전에는 京官職으로 영전될 수가 없다. ○ 邊境지방의 僉使는 1주년 내에는 다른 관직으로 추천될 수 없다. ○ 강계·삼수·갑산의 邊將은 宣傳官으로 추천된 사람을 임명하며, 소정의 근무일수를 채우도록 한 후에 京官職으로 승진발령 한다. [增] 서·북 이외 각도의 兵使는 水使를 거친 사람을 임용 후보자로 하여 추천하고 南兵使¹⁸²⁾는

182) 南兵使는 함경남도 병마절도사를 의미하며 <경국대전> 吏典, 外官職에 의하면 北靑都護府使를 겸직한다.

일찍이 兵使를 거친 적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補] 黃海兵使도 이와 같다. 무과급제한 관료(武臣)가 承旨를 거쳤으면 비록 防禦使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곧바로 절도사의 후보자로 될 수 있다. 邊地의 僉使를 거치지 아니하였어도 변지첨사의 근무경력과 같은 것으로 인정(시행)하여 방어사에 곧바로 추천한다. ○ 京畿水使를 혁파하여 江華 鎭撫使 겸 統禦使로 하고 喬桐과 永宗 防禦使를 統禦營의 左右 海防將으로 한다. 正宗 3년 己亥 [補] 正宗 13년 己酉에 水使 겸 統禦使를 도루 두었다. ○ 邊地僉使 및 營將이 임기만료 전에 자리가 바뀌지기를 피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재임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고를 만나 소정근무 월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補] 邊地僉使가 15개월이 차서 교체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만 貶下(해임 또는 강등)되었거나 몸과 鎭의 일로 죄를 지어 파직된 경우에는 비록 임기가 만료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임금의 특명으로 임명되어 곧바로 교체된 자의 근무경력은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를 받아 시행한다. ○ 여러 道의 中軍은 모두 병조에서 임명(差出)하며, 경기도의 대흥·강화와 함흥·평양의 中軍의 근무경력은 營將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시행한다. ○ 당상관인 虞候는 비록 嘉善大夫로 官階가 올랐더라도 교체하지 아니한다.

補 統制使는 摠戎使의 예에 따라 지방 大將으로서 將壇에 오르는 것(外登壇)을 인정한다. 고종 2년 乙丑 ○ 統虞候를 統制中軍으로 개칭하여 兵使를 거친 적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하며 統禦營에도 中軍을 둔다. ○ 함경북도의 邊地僉使는 반드시 훈련원 正이나 혹은 將帥집(將家)子弟를 임명하여 보낸다. ○ 강원·황해도 中軍과 평안도의 兵虞候 및 함경남북도의 虞候, 上土·加里浦 僉使 등의 근무경력은 營將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하여 시행한다. ○ 지방관들이 서로 자리 바꾸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前의 근무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邊將이면 통산한다. ○ 兵使와 水使로서 謝恩肅拜¹⁸³⁾ 하기 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履歷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京畿】

兵馬節度使 1인 종2품 관찰사가 겸한다.

183) 肅拜는 궁중에 들어가서 뜰에서 4拜하는 것을 말한다. 문관 9품 이상과 무관 4품 이상의 관직에 임명된 자는 임명된 다음 날에 大殿·王妃殿 및 세자궁에 가서 謝恩肅拜한다. 지방관인 경우에는 下直人事로도 되는 것이다. 加階나 겸직발령을 받은 경우와 출장이나 휴가를 가거나 돌아왔을 때에는 임금(大殿)에게만 숙배를 한다(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404 및 《대전 회통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12, p.182, 禮典·朝儀).

防禦使 1인 종2품 [續] 새로 설치하여 ○ 파주牧使가 겸직한다. [續] 장단府使가 겸직한다. [增] 옮긴다. ○ 廣州府尹과 水原府使가 [續] 겸직한다. [補] 모두 삭감한다.

節制使 정3품 [增] 새로 설치하여 ○ 廣州鎮에 두었다. [原] 僉節制使였던 것을 [增] 승격시켰다가 [補] 혁파하였다.

僉節制使¹⁸⁴⁾ 10인 종3품 [原] 모두 守令이 겸직한다. 다른 여러 道에서도 같다. ○ 楊州鎮·長湍鎮·礪峴鎮·月串鎮·坡州鎮·喬桐鎮·驪州鎮·南陽鎮·白峙鎮·長串鎮 등에 둔다. 礪峴鎮은 [續] 추가된 곳이고, 月串鎮¹⁸⁵⁾은 [原] 水軍의 鎮이었던 것을 [續] 옮긴 곳이며, 坡州鎮은 [原] 同僉節制使를 두었던 것을 [增] 승격시킨 곳이다. 喬桐鎮은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이고, 驪州鎮은 [原] 同僉節制使를 두었던 것을 [補] 승격시킨 곳이며, 南陽鎮도 [原] 同僉節制使를 두었던 것을 [補] 승격시킨 곳이다. 白峙鎮은 [續] 黃州鎮에 속하였던 것을 [補] 옮겨서 승격시킨 곳이며, 長串鎮은 [補] 추가된 곳이다.

同僉節制使 16인 종4품 [原] 모두 守令이 겸직한다. 다른 여러 道에서도 같다. ○ 驪州鎮管에는 利川·楊根·竹山 등에 두는데, 利川은 [原] 廣州鎮에 속하였다가 [補] 옮긴 곳이고, 楊根도 [原] 廣州鎮에 속하였다가

184) 兵馬僉節制使는 兵馬節度使의 管下에 있던 종3품의 武官職으로 巨鎮의 將이다. 兩界의 京官兼任인 獨鎮의 병마첨절제사(약칭 첨사)를 제외하고는(京官兼職制는 대전통편에서는 폐지) 모두가 牧使나 都護府使 등이 겸직하였다. 각도의 수령이 軍職을 겸하는 제도는 태조 4년부터 인데 3품인 수령은 兵馬團練使를 兼帶하도록 하였고 4품인 수령은 副使, 5·6품인 수령은 判官을 각각 兼帶하도록 하였다(《태조실록》 권7-12, 태조 4년 4월 경인). 兵馬團練使와 그 副使는 세조 4년 2월에 각각 某道 某州鎮 병마첨절제사·병마동첨절제사로 호칭하도록 하였다(《세조실록》 권11-19, 세조 4년 2월 을묘). 이것은 세조 12년의 대폭적인 관제개혁 때 그 대로 법제화되었다(《위의 책》 권38-6, 세조 12년 정월 무오).

185) 月串鎮은 경기도 喬桐府에 있던 水軍의 巨鎮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3).

[補] 옮긴 곳이며, 竹山은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켜 廣州鎮에 소속시켰다가 [補] 옮긴 곳이다. ○ 南陽鎮管에는 富平·仁川·安山·安城·通津·金浦 등에 두는데, 富平은 [原] 水原鎮에 속하였다가 [補] 옮긴 곳이고, 仁川도 [原] 水原鎮에 속하였다가 옮긴 곳이며, 安山도 [原] 水原鎮에 속하였다가 [補] 옮긴 곳이고, 安城도 [原] 水原鎮에 속하였다가 [補] 옮긴 곳이며, 通津은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켜 水原鎮에 소속시켰다가 [補] 옮긴 곳이고, 金浦도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켜 水原鎮에 소속시켰다가 [補] 옮긴 곳이다. ○ 楊州鎮管에는 高陽·交河·加平·永平 등에 두는데, 交河는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이고, 加平도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이며, 永平도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補] 승격시킨 곳이다. ○ 長湍鎮管에는 朔寧·麻田에 둔다. ○ 月申鎮管에는 草芝梁에 두는데 [原] 水軍萬戶를 두었던 것을 兵馬소속으로 옮겨서 [增] 승격시킨 곳이다. ○ 豐德은 [補] 혁파한다.

萬戶¹⁸⁶⁾ 6인 중4품 [續] 새로 둔다. ○ 月申鎮管의 濟物梁에는 [原] 水軍萬戶를 두었으나 [續] 兵馬萬戶로 바꾸었다. ○ 寅火堡 萬戶는 [續] 추가된 것이고 龍津萬戶도 [續] 추가된 것이며 德津萬戶도 [續] 추가된 것이고 昇天堡 萬戶도 [補] 추가된 것이다. 井浦에는 [原] 水軍萬戶를 두었으나 [續] 혁파하였다가 [補] 다시 두어 兵馬萬戶로 바꾸었다.

節制都尉 12인 중6품 [原] 모두 守令이 겸직한다. 다른 여러 道에서

186) 兵馬萬戶는 조선전기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에만 있었으나 《속대전》에서 경기·황해도에도 새로 두었다. 兵馬萬戶도 水軍萬戶와 마찬가지로 중4품의 專任武官職이다(예외로 경국대전에 의하면 喬桐梁萬戶를 縣監이 겸직하였음). 萬戶는 고려후기 元나라의 兵制의 영향을 받아 설치하게 되었으며 千戶·百戶 등과 더불어 관할하던 民戶의 수를 나타내는 지방관으로서 공민왕 18년, 東北面과 西北面 여러 곳에 萬戶·千戶를 설치하였다(《高麗史》 권41-28, 世家 41, 공민왕 18년 11월 신미). 그리하여 조선전기에는 함경도와 평안도(특히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만 있게 되었던 것인데 그 후 경기도와 황해도에도 추가로 두게 되었다.

도 같다. ○ 驪州鎭管에는 砥平·陰竹·陽智·果川 등에 두는데, 砥平은 [原] 廣州鎭에 속하였다가 [補] 옮긴 곳이고, 陰竹도 [原] 廣州鎭에 속하였다가 [補] 옮긴 곳이며, 陽智도 [原] 廣州鎭에 속하였다가 [補] 옮긴 곳이고, 果川도 [原] 廣州鎭에 속하였다가 옮긴 곳이다. ○ 楊州鎭管에는 抱川과 積城에 둔다. ○ 南陽鎭管에는 振威·陽川·龍仁·始興·陽城 등에 두는데, 振威는 [原] 水原鎭에 속하였다가 [補] 옮긴 곳이고, 陽川도 [原] 水原鎭에 속하였다가 [補] 옮긴 곳이며, 龍仁도 [原] 水原鎭에 속하였다가 [補] 옮긴 곳이고, 始興도 [原] 水原鎭에 속하였다가 [補] 옮긴 곳이며, 陽城도 [原] 水原鎭에 속하였다가 [補] 옮긴 곳이다. ○ 長湍鎭管에는 漣川에 둔다. ○ 廣州·水原·驪州등 鎭에서는 [續] 모두 (判官인 節制都尉를) 삭감한다.

水軍統禦使 1인 종2품 [續] 새로 둔다. ○ 경기도의 水軍節度使(水使)가 겸직하였는데, [增] 水使를 혁파하여 江華留守가 겸직하였다가 [補] 水軍節度使를 도루 두어 겸직시켰다. **中軍 1인** 정3품 당상관이다. [補] 새로 둔다.

節度使¹⁸⁷⁾ 2인 정3품 ○ 觀察使가 겸직한다. [原] 2인으로 1인은 觀察使가 겸직하며, [續] 1인은 統禦使가 겸직하다가 [增] 삭감되었으나 [補]

187) 水軍節度使는 조선시대 각도의 수군을 지휘하던 정3품 堂上 武班職이었다. 고려말 海道元帥가 조선 건국초에 水軍都節制使로 계승되어 경기 좌·우도와 충청·경상·전라도에 두었는데 세종 2년 水軍都安撫處置使로 개칭되면서 그 관내에 都萬戶와 萬戶를 두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62). 그 후 세조 12년에 水軍都安撫處置使 都鎭撫를 水軍處候로, 都萬戶를 水軍僉節制使로 각각 개칭하였다(《세조실록》 권38-7, 세조 12년 정월 무오). 수군절도사는 호칭 변경 이전인 세종 29년부터 관내의 各浦에서는 下陸할 수 없고 兵船으로서만 왕래하면서 순찰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116-3, 세종 29년 4월 신축). 《경국대전》에 의하면 專任인 水軍節度使(水使)는 경기·충청도와 경상좌·우도, 전라좌·우도에 각 1인씩 두어서 모두 6인이었으나 《속대전》에서는 경기水使는 통역사 겸직이었고 경상우도수사는 통제사 겸직이었으며 황해수사가 추가되었다. 그외에 각도의 관찰사가 수사를 겸직하였고(兼水使) 함경도에서는 兵使(병마절도사)가 수사를 겸직하였다(兼水使). 수사는 水營을 설치하여 處候의 보좌를 받아서 많은 軍士와 兵船을 직접 거느렸으며 水營은 수군의 主鎭이었다.

도로 두었다.

防禦使 1인 종2품 續 새로 설치하여 ○ 永宗僉使가 겸직한다. ○ 喬桐府使가 겸직한다. 補 삭감한다.

僉節制使¹⁸⁸⁾ 3인 종3품 續 더 설치하여 ○ 永宗鎮 德積鎮 德浦鎮 등에 둔다.

同僉節制使 2인 종4품 續 새로 설치하여 ○ 德浦鎮管의 花梁과 注文島에 둔다.

萬戶¹⁸⁹⁾ 1인 종4품 ○ 德浦鎮管의 長峯島에 둔다. 續 더 둔다. ○ 永宗·草芝·濟物·喬桐 등지의 萬戶는 續 모두 삭감하고 井浦萬戶는 續 혁파한다.

巡營中軍¹⁹⁰⁾ 1인 정3품 당상관으로 하여 增 새로 둔다.

188) 水軍僉節制使는 조선시대 종3품의 武班職으로서 水軍의 巨鎮將이다. 수군첨절제사(僉使)는 관내 諸浦의 萬戶를 지휘하였다. 고려말에 海道元帥의 지휘하에 몇명의 都萬戶가 있었는데 이것이 조선 세조 12년에 水軍僉節使로 개칭되었으며(《세조실록》 권38-7, 세조 12년 정월 무오), 일부 지역에서는 세종 때부터 都萬戶를 僉使로 개칭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63).

189) 水軍萬戶는 조선시대 종4품의 지방 무반직으로서 各浦에 설치된 水軍諸鎮의 將이었다. 고려말 각道별로 都萬戶 밑에 萬戶·千戶 등의 將帥가 임명되었는데 조선국초에는 萬戶가 要害地別로 軍事단위를 이루어 수군운용의 중심이 되었다. 만호는 거의 무예에 의하여 등용된 專任 武班職이었지만 祿俸의 지급이 없어서 수군의 代立과 放軍收布 등의 不正으로 私利를 추구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64 및 이재룡 《朝鮮初期社會構造研究》 일조각, 1993, p.133).

190) 巡營中軍은 각도 觀察使의 軍事輔佐官인 副將으로서 정3품 당상 무반직이다.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는 《속대전》에 처음으로 등재되었고 기타 도에서는 《대전통편》에 모두 등재되었다. 절도사의 副將으로는 處候가 있으며, 水軍統禦使 및 統制使의 副將과 관찰사의 副將으로는 中軍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中軍이 處候보다 格이 높은 무관직인 것 같다. 다만 영조 48년 2월 대사간 洪良漢의 啓言에 의하면 黃海水營이 신설되었지만 處候가 설치되지 못하여 軍官으로서 中軍을 假稱하여 處候의 사무를 대행시키고 있음은 사리에 맞지 않으니 다른 水營의 例

鎭營將 4인 정3품 [續] 새로 둔다. ○ 前營將은 廣州府尹이 겸직하다가 [補] 삭감하였고, ○ 左營將은 南陽府使가 겸직하며, 中營將은 楊州牧使가 겸직한다. 別中營將은 水原府使가 겸직하다가 [補] 삭감하였고, 右營將은 長湍府使가 겸직하며, 後營將은 竹山府使가 겸직한다.

監牧官¹⁹¹⁾ 5인 종6품 [原] 牧場이 있는 곳의 守令이 겸직하였으며, 다른 여러 道에서도 같다. ○ [續] 江華에 두어 [增] 草芝僉使가 겸직하고, 水原·南陽·仁川에 두어 永宗僉使가 겸직하며, 長峯島에 두어 長峯島 萬戶가 겸직한다.

別將¹⁹²⁾ 8인 종9품 [續] 새로 둔다. ○ 文殊山城·臨津渡·三田渡·楊花渡·露梁渡·漢江渡 등에 두고, 長山에 [增] 추가로 두며, 船頭堡에도 [補] 추가로 둔다.

【忠清道】

兵馬節度使 2인 종2품, 1인은 觀察使가 겸한다. **虞候¹⁹³⁾ 1인** 종3

에 따라 虞候를 설치하자고 하였고(《영조실록》 권118-14, 영조 48년 2월 무진), 정조 5년 10월 임금의 하교에 의하면 「中軍은 主將의 亞將」인데도 부적격자가 임명되어 폐단이 있고 軍兵의 疾苦가 제대로 해소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정조실록》 권12-48, 정조 5년 10월 병신), 정조 18년 3월 黃海水使의 啓言에 의하면 中軍은 단순한 보좌관(編裨)에 불과하고 人微地輕(사람도 보잘것 없고 身分地位도 낮음)하니 虞候를 신설하여 경력이 있고 地望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황해도에도 水軍虞候를 두게 되었다(《同上》 권39-43, 정조 18년 3월 무신)고 한 점으로 보아서 中軍이 虞候보다 격이 낮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巡營이나 統營의 副將으로서의 中軍은 兵營이나 水營의 副將인 虞候보다는 지휘계통상으로 上部線에 있으므로 당연히 그 격도 높을 수 밖에 없다.

191) 監牧官은 조선시대 각도에 있는 목장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던 종6품 무반직으로서 목장 소재지의 수령이나 僉使 또는 萬戶가 겸직하였다. 監牧官은 세종 8년 4월 목장부근의 驛丞이나 鹽場官 중 6품이상자를 골라서 겸무시키다가(《세종실록》 권32-9, 세종 8년 4월 갑신) 그 후 수령과 만호 등이 監牧官을 겸하였다(《위의 책》 권106-26, 세종 26년 11월 기해). 감목관은 전국적으로 22인을 두었으나 조선후기에는 24인이 되었다(南都泳, 《朝鮮時代의 地方馬政組織에 대한 小考》, 《史學研究》 18, 1962).

192) 別將중에는 各營門의 堂上武官인 종2품 또는 정3품직도 있으나 여기서는 각 지방의 山城이나 나루·고개·보루·작은 섬 등에 두는 종9품의 무반직으로 속대전에 처음 등재되었다.

품.

僉節制使 3인 중3품, ○ 忠州鎮·清州鎮·洪州鎮 등에 둔다. ○ 公州鎮은 **續** 삭감한다.

同僉節制使 15인 중4품 ○ 忠州鎮管에는 淸風 丹陽 槐山 등에 두고, ○ 清州鎮管에는 天安 沃川 報恩 등에 두는데, 報恩은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補** 승격시킨 곳이다. ○ 公州鎮管에는 林川 韓山 등에 두고, ○ 洪州鎮管에는 舒川 瑞山 泰安 沔川 溫陽 大興 德山 등에 두는데, 大興은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이고, 德山도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補** 승격시킨 곳이다.

節制都尉 36인 중6품 ○ 忠州鎮管에는 延豐 陰城 永春 堤川 등에 두고, ○ 清州鎮管에는 稷山 木川 文義 懷仁 淸安 鎮川 永同 黃澗 青山 등에 둔다. ○ 公州鎮의 判官이 겸하고 公州鎮管의 全義 定山 恩津 懷德 鎮岑 連山 魯城 扶餘 石城 燕岐 등에 두며, ○ 洪州鎮管에는 平澤 鴻山 靑陽 庇仁 結城 藍浦 保寧 牙山 新昌 禮山 海美 唐津 등에 둔다. ○ 忠州·清州·洪州 등 鎮에서는 **續** (判官인 節制都尉를) 모두 삭감한다.

水軍節度使 2인 정3품 ○ 1인은 觀察使가 겸한다. **虞候 1인** 정4품.

僉節制使 4인 중3품 ○ 所斤浦鎮과 馬梁鎮에다가 平薪鎮을 **續** 더

193) 虞候로는 兵馬虞候와 水軍虞候가 있는데 전자는 각도의 병마절도사를 보좌하는 중3품의 外官인 무반직으로서 兵虞候 또는 亞將이라 하였다. 후자는 각도의 수군절도사를 보좌하는 정4품의 外官인 무반직으로서 水虞候라 하였다. 세조 12년의 관제개혁 때 종래 兵馬都節制使(절도사의 전신)의 막료로서의 都鎮撫가 병마우후로 개칭되었고, 水軍都安撫處置使 都鎮撫가 수군우후로 개칭되었다. 主鎮인 兵營 또는 水營의 제2인자인 우후의 직무는 절도사 유고시에 직무대행을 함은 물론이고 관내 各邑 또는 各浦鎮을 순행하면서 군사조직과 훈련·軍器 등을 살피고 上命下達과 軍糧·軍資의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65). 수군우후는 삼남지방에만 있었으나 정조 18년 3월 황해도에도 설치되었다(《정조실록》 권39-43, 정조 18년 3월 무신).

둔다. ○ 安興鎮을 [續] 더 두었는데 [增] 혁파하여 水營에 소속시켰다가 [補] 도루 둔 것이다.¹⁹⁴⁾

萬戶 1인 종4품 ○ 馬梁鎮管의 舒川浦에만 두고 ○ 唐津浦와 波知島에 서는 [續] 모두 혁파한다.

巡營中軍 1인 정3품 堂上官으로 하여 [增] 새로 설치한다.

鎮營將 5인 정3품 [續] 새로 설치하여 ○ 前營將은 洪川에 두고, 左營將은 海美縣監이 겸하며, 中營將은 淸州, 右營將은 公州, 後營將은 忠州에 둔다.

監牧官 종6품 ○ [續] 瑞山에 두어 平薪僉使가 겸하였는데 [補] 혁파한다.

別將 1인 종9품 [補] 새로 설치하여 ○ 元山에 둔다.

【慶尙道】

兵馬節度使 3인 종2품, 2인은 左道와 右道에 나누어 두고¹⁹⁵⁾, 1인은 觀察使가 겸한다. 虞候 2인 종3품, 좌도와 우도에 나누어 둔다.

節制使 1인 정3품 ○ 慶州鎮에 두며 좌도에 속한다.

僉節制使 7인 종3품 ○ 安東鎮과 東萊鎮에 두어 左道에 소속시킨다.

동래진은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이다. ○ 尙州鎮·晉州鎮·金海鎮·善山鎮·星州鎮에 두어 右道에 소속시킨다. 선산진은 [原] 同僉節制使를 두었던 것을 [增] 승격시킨 곳이고, 성주진도 [原] 同僉節制使를 두었던 것을 [補] 승격시킨 곳이다. ○ 大丘鎮은 [續] 삭감한다.

194) 所斤浦鎮은 충청도 태안군에 있던 수군의 巨鎮이며 馬梁鎮은 충청도 藍浦縣에 있던 수군의 巨鎮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19 및 권20). 또 平薪鎮과 安興鎮은 《속대전》에서 추가된 巨鎮으로서 충청도 서해안에 있는 浦口이다.

195) 경상도는 다른 道보다 땅이 넓고 인가와 物産이 많으며 군사적으로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비록 행정상으로는 單一道이지만 태종 7년 군사상으로는 두 개의 도로 나누어 낙동강 동쪽을 慶尙左道, 서쪽을 慶尙右道로 하였는데 그 후 分道와 合道를 거듭하다가 세종 18년에 分道로 확정되어 兵營과 水營을 각각 두개씩 두게 되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66).

同僉節制使 24인 종4품 ○ 慶州鎮管에는 蔚山 永川 興海에 두고
 ○ 安東鎮管에는 寧海 靑松 醴泉 榮川 豐基와 順興에 두는데, 순흥은 [續]
 추가된 곳이다. ○ 尙州鎮管에는 金山 ○ 晉州鎮管에는 陝川 草溪 咸陽 昆陽
 居昌 河東에 두는데, 거창은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승격시킨 곳이고,
 하동도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이다. ○ 金海鎮管에는
 昌原 咸安 巨濟에 두는데, 거제는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
 킨 곳이다. ○ 大丘鎮管에는 密陽 淸道 仁同 漆谷에 두며, 인동은 [原] 節制
 都尉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이고, 칠곡은 [增] 추가된 곳이다. ○
 東萊鎮管에는 梁山에 두며, 양산은 [原] 경주진관에 속하였다가 [補] 옮긴 곳
 이다.

節制都尉 39인 종6품 ○ 慶州鎮管에는 淸河 延日 長鬐 彦陽에 두고
 ○ 安東鎮管에는 義城 奉化 眞寶 軍威 比安 禮安 盈德 龍宮 英陽에 두는데,
 영양은 [續] 추가된 곳이다. ○ 尙州鎮管에는 開寧 知禮 高靈 聞慶 咸昌에
 두고 ○ 晉州鎮管에는 泗川 南海 三嘉 宜寧 山淸 安義 丹城에 두며 ○ 金海
 鎮管에는 漆原 鎭海 固城 熊川에 두고 ○ 大丘鎮의 判官이 겸직할 것을 [續]
 추가하며, 大丘鎮管에는 慶山 河陽 玄風 義興 新寧 靈山 昌寧 慈仁에 두는데,
 자인은 [續] 추가된 곳이다. ○ 東萊鎮管에는 機張에 두며, 기장은 [原] 경주
 진관에 속하였다가 [補] 옮긴 곳이다.
 ○ 慶州·安東·尙州·晉州·星州 등 鎭에서의 判官이 겸무하는 節制都尉를
 [續] 모두 삭감한다.

水軍統制使 1인 종2품 [續] 새로 둔다. 中軍 1인 종2품 [補] 새로
 둔다. 虞候 1인 정3 품 堂上官으로 하여 [續] 새로 두었다가 [補] 혁파
 한다.

節度使 3인 정3품, ○ 2인은 左道와 右道로 나누어 두고, 1인은 觀察
 使가 겸직하였는데 [續] 右道節度使는 統制使가 겸직한다. 虞候 1인 정

4품 ○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 두었는데 [續] 右道虞候는 統虞候가 겸직하다가 [補] 中軍으로 승격하였다.

僉節制使 4인 중3품 ○ 釜山浦鎮과 多大浦鎮에 두어 左道에 소속시킨다. 다대포진은 [原] 萬戶를 두었던 곳으로 [續] 同僉節制使로 승격시켰던 것을 [增] 다시 승격시킨 것이다. ○ 加德鎮과 彌助項鎮에 두어 右道에 소속시킨다. 가덕진은 [續] 추가된 곳이고, 미조항진도 [續] 추가된 곳이다.

同僉節制使 2인 중4품 [續] 새로 설치하였다. ○ 釜山浦鎮管에는 西生浦에 두며, 서생포는 [原] 萬戶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이고, ○ 加德鎮管에는 龜山浦에 둔다. ○ 彌助項鎮管의 赤梁은 [原] 萬戶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켰다가 [補] 혁파한 곳이다.

萬戶 15인 중4품 ○ 釜山浦鎮管에는 豆毛浦·開雲浦·包伊浦·西平浦 등에 두며, 개운포는 [原] 海雲을 [續] 개칭한 곳이고, 서평포는 [續] 추가한 곳이다. ○ 加德鎮管에는 天城浦·安骨浦·齊浦·助羅浦·玉浦·知世浦·加背梁 등에 두는데, 천성포는 [續] 추가된 곳이고, 안골포는 [原] 齊浦鎮管에 속한 것을 [增] 옮긴 곳이고, 제포는 [原] 僉節制使를 두었던 것을 [續] 강등시켜 彌助項鎮管에 속하게 하였다가 [增] 옮긴 곳이며, 조라포는 [原] 제포진관에 속한 것을 [增] 옮긴 곳이고, 玉浦도 [原] 제포진관에 속한 것을 [增] 옮긴 곳이며, 지세포도 [原] 제포진관에 속한 것을 [增] 옮긴 곳이고, 가배양은 [續] 추가된 곳이다. ○ 彌助項鎮管에는 平山浦·蛇梁·唐浦·永登浦 등에 두며, 평산포는 [原] 제포진관에 속한 것을 [增] 옮긴 곳이고, 사양도 [原] 제포진관에 속한 것을 [增] 옮긴 곳이며, 당포도 [原] 제포진관에 속한 것을 [增] 옮긴 곳이고, 영등포도 [原] 제포진관에 속한 것을 [增] 옮긴 곳이다. ○ 烏浦·鹽浦에서는 [續] 모두 혁파하고, 甘浦·漆浦·丑山浦에서도 [增] 모두 혁파하며, 齊浦(水軍僉使)의 중앙관직(京職) 겸직을 지금은 폐지한다.

巡營中軍 1인 정3품 당상관으로 하여 增 새로 둔다.

鎭營將 6인 정3품 續 새로 설치하여 ○ 前營將은 安東에, 左營將은 尙州에, 中營將은 大丘에 두고, 別中營將은 金海府使가 겸하며, 右營將은 晉州에, 後營將은 慶州에 둔다.

監牧官 3인 종6품 ○ 續 晉州·蔚山·東萊·多大浦의 僉使가 겸한다.

權管¹⁹⁶⁾ 2인 종9품 續 새로 설치하여 ○ 栗浦와 三千浦에 둔다.

○ 所非浦·尙州浦·曲浦 등에서는 增 모두 혁파한다.

別將 8인 종9품 續 새로 설치하여 ○ 長木浦·南村·金烏山城·禿用山城·鳥嶺山城·蟾津·架山山城·金井山城에 둔다. 가산산성은 補 추가된 곳이고, 금정산성도 補 추가된 곳이다. ○ 豐德浦는 增 혁파하고, 浦項·新門·舊所非浦·晴川 등도 補 모두 혁파한다.

196) 權管은 경상도와 함경도 및 평안도에만 있던 邊境지방의 작은 鎭堡의 종9품 守將이다. 세조 7년 4월 함길도 都體察使 具致寬의 보고에 의하면 權管으로는 나이가 젊고 武才가 있는 자가 임명되고 있음이 나타나 있으나(《세조실록》 권24-8, 세조 7년 4월 기사), 중종 11년 6월 羽林衛將 유희의 啓에 의하면 各堡의 權管을 잘 골라서 임명하지 않고 新屬內禁衛 따위로 임용하여 군사들이 모두 경멸하고 있으니 武科 출신자 중에서 官秩이 높고 명망이 있는 자를 萬戶와 權管으로 선발하여 임명해야 한다고 하여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중종실록》 권25-42, 중종 11년 6월 입자). 그 후 중종 17년 特進官 김극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沿邊諸郡에는 모두 鎭을 설치하여 큰 곳에는 僉使와 萬戶를 두고 작은 곳에는 權管을 두어서 그 防戍이 엄하다고 하였으며(《중종실록》 권44-23, 중종 17년 3월 입술), 중종 18년 12월 滿浦僉使 李誠彦의 상소에 의하면 대체로 무과출신자(武臣)의 初任職이 權管이어야 한다고 하고, 장수에게 그 임용권을 위임함을 반대하였다(《위의 책》 권49-55, 중종 18년 12월 정미). 중종 20년 윤12월에도 參贊官 이범은 邊方의 萬戶와 權管으로 무과출신자를 임명하여 보내면 그들은 앞날을 생각하여 불법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위의 책》 권56-16, 중종 20년 윤12월 무오). 그리고 명종 8년 윤3월에 知經筵事 李浚慶이 말하기를 僉使와 萬戶로서 나이 젊고 武才가 있는 무과출신자를 선발하라는 왕명(傳敎)이 지당하나 그러한 논의는 先朝에도 있었지만 僉使가 3품이요, 萬戶가 4품이므로 연소자의 資級(官階)이 부족하여 결국 시행될 수 없었으니 첨사나 만호를 임명해야할 關防重處에도 資級미달인 연소무관을 權管으로 호칭하여 임명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명종실록》 권14-38, 명종 8년 윤3월 경신). 현종 원년 8월 함경감사 趙啓遠이 權管에게는 兵符가 없었던 것인데도 兵符를 가진 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임금은 舊例에 의거 兵符를 만들어 주지 못하게 하였다(《현종개수실록》 권4-23, 현종 원년 8월 을사).

【全羅道】

兵馬節度使 2인 종2품, 1인은 觀察使가 겸한다. 虞候 1인 종3품.

節制使 1인 정3품 ○ 濟州鎮에 둔다. ○ 全州鎮은 [續] 삭감한다.

僉節制使 4인 종3품 ○ 羅州鎮·長興鎮·南原鎮·順天鎮에 둔다.

同僉節制使 19인 종4품 ○ 全州鎮管에는 益山 金堤 古阜 錦山 珍山 礪山에 두고 ○ 羅州鎮管에는 光州 靈巖 靈光 長城에 두며, 장성은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이다. ○ 南原鎮管에는 潭陽 淳昌 茂朱에 두며, 무주는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이다. ○ 順天鎮管에는 樂安 寶城 綾州에 두며, 능주는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이다. ○ 長興鎮管에는 珍島에 두고, ○ 濟州鎮管에는 大靜과 旌義에 두며, 대정은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補] 승격시킨 곳이고, 정의도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補] 승격시킨 곳이다.

節制都尉 33인 종6품 ○ 全州鎮의 判官이 겸직하고, 全州鎮管에는 井邑 興德 扶安 萬頃 沃溝 臨陂 金溝 龍安 咸悅 高山 泰仁에 두며, ○ 羅州鎮管에는 咸平 高敞 茂長 南平 務安에 둔다. ○ 南原鎮管에는 任實 谷城 鎮安 龍潭 玉果 雲峯 昌平 長水에 두고, ○ 長興鎮管에는 康津 海南에 두며, ○ 順天鎮管에는 光陽 求禮 興陽 同福 和順에 둔다. ○ 濟州鎮의 判官이 겸직하고 ○ 珍原은 [續] 혁파하며, 羅州·光州·南原에서도 [續] 모두 삭감한다.

水軍節度使 3인 정3품, 2인은 左道와 右道에 나누어 두고¹⁹⁷⁾, 1인은 觀

197) 전라도는 행정상으로도 군사상으로도 육군의 경우에는 單一道였지만 水軍의 경우에는 긴 해안선과 많은 島嶼가 있어서 진도를 기준으로 동쪽해안을 左道, 서쪽해안을 右道라 하여 두 군데 水營을 두어 左右水軍節度使를 임명하였다. 《世宗實錄地理志》에는 경기도와 충청도에서도 수군을 좌우도로 나누어 僉節制使나 都萬戶를 分屬시켰음이 나타나 있으나 水軍都安撫處置使(水軍節度使의 前稱)는 1인이었다(《세종실록》 권148 및 149). 전라도의 좌우도에 수군절도사를 따로 임명한 것은 성종 10년 2월이었다(《성종실록》 권101-7, 성종 10년 2월 기유).

察使가 겸한다. 虞候 2인 정4품, 좌도와 우도에 나누어 둔다.

防禦使 1인 종2품 增 새로 둔다. ○ 濟州牧使가 겸한다.

節制使 1인 정3품 ○ 濟州鎮에 둔다.

僉節制使 7인 종3품 ○ 蛇渡鎮¹⁹⁸에 두어 左道에 소속시킨다. ○ 臨淄島鎮¹⁹⁹ · 加里浦鎮²⁰⁰ · 古群山鎮 · 法聖浦鎮 · 群山浦鎮²⁰¹ · 蝟島에 두어 右道에 소속시킨다. 가리포진은 續 추가된 곳이고, 고군산진은 續 同僉節制使를 두었던 것을 增 승격시킨 곳이며, 법성포진은 原 萬戶를 두어 임치도진에 소속시켰던 것을 續 동첨절제사로 승격시켜 增 고군산진으로 옮겨서 소속시켰다가 補 다시 승격시킨 곳이다. 군산포진은 原 만호를 두어 임치도진에 소속시켰던 것을 續 동첨절제사로 승격시켜 위도에 소속시켰다가 增 고군산진으로 옮겨서 소속시킨 후 補 다시 승격시킨 곳이다. 蝟島는 續 僉節制使를 두었던 것을 增 강등하여 고군산진에 소속시켰다가 補 승격시킨 곳이다.

同僉節制使 3인 종4품 續 새로 설치하여 ○ 蛇渡鎮管의 防踏과 ○ 臨淄島鎮管의 荏子島와 ○ 加里浦鎮管의 古今島에 둔다.

萬戶 15인 종4품 ○ 蛇渡鎮管에는 會寧浦 呂島 鹿島 鉢浦에 두고 ○ 臨淄島鎮管에는 多慶浦 木浦 智島 南桃浦에 두며, 智島는 續 추가된 곳이다. ○ 加里浦鎮管에는 薪智島 於蘭浦 馬島 金甲島 梨津에 두며, 신지도는 續 추가된 곳이고, 어란포는 原 임치도진관에 속하였던 것을 增 옮긴 곳이며, 마도는 原 사도진관에 속하였던 것을 增 옮긴 곳이고, 금감도는 原 임치도진관에 속하였던 것을 增 옮긴 곳이며, 이진은 續 추가된 곳

198) 蛇渡鎮은 전라도 홍양현에 있던 수군의 巨鎮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40).

199) 臨淄島鎮은 전라도 함평현에 있던 수군의 巨鎮이다(《위의 책》 권36).

200) 加里浦鎮은 속대전에서 추가된 수군의 巨鎮으로 전라도 강진현 완도에 있었다. 중종 16년 왜구를 막는 要路이므로 設鎮하여 僉使를 두고 達梁水軍을 병합하였다(《위의 책》 권37).

201) 群山浦鎮은 전라도 옥구현에 있던 수군의 巨鎮이고(《위의 책》 권34) 法聖浦鎮은 전라도 영광군에 있던 수군의 巨鎮이다(《위의 책》 권36).

다. ○ 蝟島鎮管에는 黔毛浦에 두며, 이는 [原] 임치도진관에 속하였던 것을 [增] 고군산진관 소속으로 하였다가 [補] 옮긴 곳이다. ○ 濟州鎮管에는 明月浦에 두며, 이는 [增] 추가된 곳이다. ○ 達梁과 突山浦에서는 [續] 모두 혁파한다.

巡營中軍 1인 정3품 당상관으로 하여 [增] 새로 둔다.

鎮營將 5인 정3품 [續] 새로 둔다. ○ 前營將은 順天에 두어 [補] 府使가 겸하고, 左營將은 雲峯縣監이 겸하며, 中營將은 全州에, 右營將은 羅州에 두고, 後營將은 礪山府使가 겸한다.

監牧官 5인 종6품 ○ [續] 興陽 順天 羅州 珍島에 둔다. ○ [補] 濟州에도 둔다. ○ 荏子島 僉使가 겸직하였다가 [補] 혁파하였다.

別將 7인 종9품 [續] 새로 둔다. ○ 黑山島 古突山 威鳳山城 笠巖山城 金城山城 南固山城 所安島에 두며, 남고산성은 [補] 추가된 곳이고, 소안도도 [補] 추가된 곳이다. ○ 格浦는 [補] 혁파한다.

【黃海道】

兵馬節度使 2인 종2품, 1인으로 觀察使가 겸하였다가 1인을 [續] 더 두었다. 虞候 1인 종3품 [補] (신설)

僉節制使 1인 종3품 ○ 黃州鎮에 둔다. ○ 海州鎮은 [續] 삭감하고, [續] 새로 두었던 蒜山鎮도 [增] 삭감하였다.

同僉節制使 16인 종4품 ○ 黃州鎮管에는 平山 瑞興 鳳山 安岳 載寧 遂安 谷山 信川 文城 善積 東里 蒜山에 두며, 문성은 [續] 추가된 곳이고, 선적도 [續] 추가된 곳이며, 동리도 [續] 추가된 곳이고, 산산은 첨절제사를 두었던 것을 [增] 강등시킨 곳이다. ○ 海州鎮管에는 延安 白川 豐川 金川에 두며, 금천은 [續] 추가된 곳이다. ○ 白峙는 [續] 추가된 곳이나 [補] 開城府

로 옮겨서 소속(移屬) 시켰다.

萬戶 3인 종4품 續 새로 설치하여 ○ 黃州鎭管의 文山 所已 位羅에 둔다.

節制都尉 9인 종6품, ○ 黃州鎭管에는 新溪 兎山 文化 長連에 두고 ○ 海州鎭의 判官이 겸직하며, 海州鎭管에는 松禾 殷栗 康翎 長淵에 두는데, 장연은 原 절제도위를 두었던 것을 續 동첨절제사로 승격시켰다가 補 강등한 곳이다. ○ 江陰과 牛峯에서는 續 모두 혁파하고, 黃州에서도 續 삭감한다.

水軍節度使 2인 정3품 1인으로 觀察使가 겸하였다가 1인을 續 더 두어 瓮津府使를 겸직시켰다. 虞候 1인 정4품 補 새로 둔다.

僉節制使 2인 종3품 ○ 白翎鎭과 椒島鎭에 두며, 백령진은 續 추가된 곳이고, 초도진은 續 동첨절제사를 두었던 것을 補 승격시킨 곳이다. ○ 所江鎭²⁰²⁾ 僉使는 續 水使로 승격하였다.

同僉節制使 4인 종4품 續 새로 설치하여 ○ 白翎鎭管의 登山 串許沙浦 靑叉浦 龍媒梁에 둔다. 허사포는 原 萬戶를 두어 소강진에 소속시켰다가 續 승격시켜 옮긴 곳이고, 오차포도 原 만호를 두어 소강진에 소속시켰다가 續 승격시켜 옮긴 곳이며, 용매양도 原 만호를 두어 소강진에 소속시켰다가 續 승격시켜 옮긴 곳이다.

萬戶 1인 종4품 ○ 白翎鎭管의 助泥浦에 두며, 이는 續 추가된 곳이다. ○ 廣巖梁·阿郎浦·茄乙浦 등에서는 續 모두 혁파한다.

巡營中軍 1인 정3품 당상관으로 하여 增 새로 둔다.

鎭營將 5인 정3품 續 새로 둔다. ○ 前營將은 鳳山郡守가 겸하고, 左營將은 豐川府使가 겸하며, 中營將은 安岳郡守가 겸하고, 右營將은 谷山府使가

202) 所江鎭은 황해도 용진현에 있던 수군의 巨鎭이었으나 속대전에서는 水營으로 승격하였다 (《위의 책》 권43 및 《대전회통》 권4 兵典 外官職).

겸하며, 後營將은 平山府使가 겸한다. ○ 別中營將은 蒜山鎮에 두었다가 增 삭감하였다.

監牧官 3인 종6품 ○ 續 海州에 두어 登山僉使가 겸하고, 豊川에 두어 椒島僉使가 겸하며, 長湍에 두어 白翎僉使가 겸한다.

別將 5인 종9품 續 새로 설치하여 ○ 首陽山城 九月山城 長壽山城 正方山城 大峴山城에 둔다.

【江原道】

兵馬節度使 1인 종2품, 觀察使가 겸한다.

防禦使 1인 종2품 續 새로 둔다. ○ 鐵原府使가 겸직하다가 續 春川府使가 겸직하던 것을 增 옮긴 것이다.

僉節制使 3인 종3품 ○ 江陵鎮·鐵原鎮·春川鎮에 둔다. 철원진은 原 동침절제사를 두었던 것을 增 승격시킨 곳이고, 춘천진도 原 동침절제사를 두었던 것을 增 승격시킨 곳이다. ○ 原州鎮과 淮陽鎮은 增 모두 삭감한다.

同僉節制使 11인 종4품 ○ 江陵鎮管에는 三陟 襄陽 平海 杆城 高城 通川에 두고 ○ 原州鎮管에는 旌善 寧越 平昌에 두며 ○ 鐵原鎮管에는 淮陽과 伊川에 두는데, 회양은 原 침절제사를 두었던 것을 增 강등한 곳이고, 이천은 原 절제도위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한 곳이다.

節制都尉 12인 종6품 ○ 江陵鎮管에는 蔚珍 歙谷에 두고, ○ 原州鎮의 判官이 겸직하며, 原州鎮管에는 麟蹄 橫城 洪川에 둔다. ○ 鐵原鎮管에는 楊口 狼川 金城 平康 金化 安峽에 둔다. 양구는 原 淮陽鎮에 속하였다가 增 옮겼고, 狼川도 原 회양진에 속하였다가 增 옮겼으며, 금성도 原 회양진에 속하였다가 增 옮겼고, 평강도 原 회양진에 속하였다가 增 옮겼으며, 금화도 原 회양진에 속하였다가 增 옮겼고, 안협도 회양진에 속

하였다가 옮긴 곳이다. ○ 江陵에서는 續 삭감한다.

水軍節度使 1인 정3품, 觀察使가 겸한다.

僉節制使 1인 종3품 ○ 三陟浦鎮²⁰³에 둔다. 增 營將이 겸한다.

萬戶 1인 종4품 ○ 三陟浦鎮管의 越松浦에 둔다. ○ 安仁浦·高城浦·蔚珍浦에서는 續 모두 혁파한다.

巡營中軍 1인 정3품 당상관으로 하여 增 새로 둔다.

鎮營將 3인 정3품 續 새로 둔다. ○ 左營將은 春川府使가 겸직하다가 續 鐵原府使가 겸직하던 것을 補 옮겼고, 中營將은 橫城縣監이 겸직하다가 續 原州牧使가 겸직하던 것을 增 옮겼으며, 右營將은 三陟에 둔다.

【咸鏡道】²⁰⁴ 原 永安道

兵馬節度使 3인 종2품, 2인은 南道와 北道에 나누어 두고, 1인은 觀察使가 겸직한다. 虞候 2인 정3품 당상관으로 하여 原 1인을 北道에 두며, 續 1인을 더하여 南道에 두되, 모두 종3품으로 한다. 評事 1인 정6품, 北道에 둔다.

防禦使 1인 종2품 續 새로 둔다. ○ 吉州牧使가 겸한다. 續 城津僉

203) 三陟浦鎮은 강원도 삼척도호부에 있던 수군의 거진이다(《위의 책》 권44).

204) 함경도는 조선 태종 13년에 永吉道라 하다가 同王 16년에 咸吉道라 하였는데 그 후 《경국대전》에서는 永安道라 개칭하였으며, 중종대 이후 함경도라 하여(《중종실록》 권7-60, 중종 4년 2월 을축) 《속대전》에서 그대로 등재되었다. 함경도는 행정상으로는 單一道였지만 군사적으로는 南·北道로 나누었다. 함경도는 땅이 넓고 여진족에 대한 방어대책으로 조선초기에는 단일한 兵馬都節制使를 중심으로 咸興道·永興道·吉州道·慶源道の 四軍翼道로 나누었다가(《세종실록》 권155, 지리지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68) 그 후 남북도로 나누어 세조 12년 각각 병영을 설치하였다. 이 때 신설된 병영은 永安(咸鏡)南道 兵營으로 北靑에 두었으며 北道の 兵營은 鏡城에 있었다. 水使의 경우에는 비록 3인이거나 1인은 관찰사가 나머지 2인은 남북도의 兵使가 겸직하였으므로 專任水使는 없었다(《增補文獻備考》 권234, 兵馬節度使 및 《대전회통》 권4 병전 외관직).

使가 겸하던 것을 [增] 옮겼다.

僉節制使 25인 중3품 ○ 甲山鎮·安邊鎮·三水鎮·惠山鎮²⁰⁵⁾·永興鎮·北靑鎮·端川鎮·長津柵鎮·厚州鎮에 두어 南道에 소속시킨다. 영흥진은 [原] 절제도위를 두었던 것을 [增] 승격시킨 곳이고, 북청진도 [原] 절제도위를 두었던 것을 [增] 승격시킨 곳이며, 단천진은 [原] 동첨절제사를 두었던 것을 [增] 승격시킨 곳이고, 장진책진은 [增] 추가된 곳이며, 후주진도 [補] 추가된 곳이다. ○ 慶源鎮·會寧鎮·鍾城鎮·穩城鎮·慶興鎮·富寧鎮·訓戎鎮²⁰⁶⁾·潼關鎮²⁰⁷⁾·高嶺鎮²⁰⁸⁾·柔遠鎮²⁰⁹⁾·美錢鎮²¹⁰⁾·吉州鎮·魚游澗鎮²¹¹⁾·甫乙下鎮²¹²⁾·城津鎮·茂山鎮에 두어 北道에 소속시킨다. 길주진은 [原] 절제도위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이고, 어유간진은 [原] 萬戶를 두어 鏡城(北兵營)에 소속시켰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이다. 불하진은 [續] 추가된 곳이고, 성진진도 [續] 추가된 곳이며, 무산진도 [增] 추가된 곳이다. ○ 훈융진·동관진·고령진·유원진·미전진·혜산진의 僉節制使는 京官職을 겸직하였는데, [增] 이번에 京官겸직제를 폐지한다.²¹³⁾ 別害鎮은 [補] 혁파한다.

205) 惠山鎮은 함경도 甲山都護府에 있던 육군의 巨鎮이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49).

206) 訓戎鎮은 함경도 慶源都護府에 있던 육군의 巨鎮이었다(《위의 책》 권50).

207) 潼關鎮은 함경도 鍾城都護府에 있던 巨鎮이었다(《위의 책》 권50).

208) 高嶺鎮은 함경도 會寧都護府에 있던 육군의 巨鎮이었다(《위의 책》 권50).

209) 柔遠鎮은 함경도 穩城都護府에 있던 거진이었다(《위의 책》 권50).

210) 美錢鎮은 함경도 온성도호부에 있던 거진이었으며 성종 15년에 신설되었다(《위의 책》 권50).

211) 魚游澗鎮은 경국대전에서는 兵馬萬戶가 있었던 諸鎮인 魚游澗堡로서 鏡城鎮소속이었으나 속대전에서 巨鎮으로 승격한 곳이며, 함경도 鏡城都護府(府使는 北兵使 겸직) 관내에 있는 鎭營이다(《위의 책》 권50).

212) 甫乙下鎮은 함경도 회령도호부에 있던 육군의 거진으로서 중종 4년에 새로 만든 兵馬僉節制使營이었다(《위의 책》 권50).

213) 함경도의 훈융진·동관진·고령진·유원진·미전진·혜산진과 평안도의 만포진·인산진·방산진·벽단진·창주진·고산리진 등은 국방상 요새지이므로 수령겸직 아닌 전임무관을 임명하였다. 이와같이 전임무관이 첨절제사(첨사)로 임명되는 거진은 諸鎭을 거느리지 않은 獨鎭으로서 독자적인 군사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그들 첨사에게 녹봉을 지급하기 위하여 京官職(주로 서울의 특수兵種의 高位官階者)에 겸직시켰다고 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68). 그러나 이러한 京官겸직제도는 《대전통편》에서는 모두 폐지되었다.

同僉節制使 7인 종4품 ○ 永興鎮管에는 定平과 高原에 두고, ○ 安邊鎮管에는 德源과 文川에 두며, ○ 三水鎮管에는 芑波知에 두어 南道에 소속시킨다. 갈파지는 **續** 추가된 곳이다. ○ 吉州鎮管의 西北은 **原** 萬戶를 두어 鏡城에 소속시켰던 것을 **續** 승격시켜 옮긴 곳이고, ○ 鏡城鎮管의 明川은 **原** 절제도위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으로, 이 두 곳에 두어 北道에 소속시킨다.

萬戶 12인 종4품 ○ 慶興鎮管에는 撫夷와 阿吾地에 두는데, 아오지는 **原** 慶源鎮管에 속하였다가 **增** 옮긴 곳이다. ○ 慶源鎮管에는 阿山에 두고, ○ 鏡城鎮管에는 朱乙溫과 森森坡 및 在德에 두며, 삼삼파는 **續** 추가된 곳이고, 재덕도 **續** 추가된 곳이다. ○ 會寧鎮管에는 豊山과 古豊山에 두며, 고평산은 **續** 추가된 곳이다. ○ 鍾城鎮管의 防垣과 ○ 穩城鎮管의 永達 및 ○ 富寧鎮管의 廢茂山과 端川鎮管의 梨洞에 두는데, 폐무산은 **續** 추가된 곳이고, 이동도 **續** 추가된 곳이다. ○ 斜爾洞·斜下北·玉連·茂山 등에서는 **續** 모두 혁파하고, 神方·仇非·魚面 등에서도 **補** 모두 혁파한다.

節制都尉 4인 종6품 ○ 北靑鎮管에는 利原과 洪原에 두며, ○ 鏡城鎮의 判官과 ○ 咸興鎮의 判官이 겸직하는데, 함흥판관의 겸직은 **增** 추가된 것이다. ○ 永興鎮·慶源鎮·會寧鎮·鍾城鎮·穩城鎮·北靑鎮 등에는 **續** 모두 삭감한다.

水軍節度使 3인 정3품, 2인은 남도와 북도의 兵馬節度使가 겸직하고, 1인은 觀察使가 겸직한다.

萬戶 1인 종4품 ○ 북도관내의 造山浦에 둔다. ○ 남도관내의 浪城浦와 道安浦에서는 **續** 모두 혁파한다.

巡營中軍 1인 정3품 당상관으로 하여 **續** 새로 둔다.

鎮營將 6인 정3품 **續** 새로 둔다. ○ 前營將은 洪原縣監이 겸직하고, 左營將은 甲山府使가 겸직하며, 中營將은 永興府使가 겸직한다. 別中營將은 端川府使가 겸직하고, 右營將은 三水府使가 겸직하며, 後營將은 德源府使가 겸직

한다.

衛將²¹⁴⁾ 10인 정3품 **續** 새로 둔다. ○ 남도의 前衛將은 富寧府使가 겸직

하고, 左衛將은 鏡城判官이 겸직하며, 中衛將은 茂山府使가 겸직하고, 右衛將은 明川府使가 겸직하며, 後衛將은 吉州牧使가 겸직한다. ○ 북도의 前衛將은 會寧府使가 겸직하고, 左衛將은 鍾城府使가 겸직하며, 中衛將은 穩城府使가 겸직하고, 右衛將은 慶源府使가 겸직하며, 後衛將은 慶興府使가 겸직한다.

監牧官 3인 종6품 ○ **續** 咸興府使 및 端川府使와 穩城府使가 겸직한다.

權管 14인 종9품 **續** 새로 둔다. ○ 小農堡 同仁 舊 葦波知 雲籠 鎮東 仁遮

外 羅暖에 두어 남도에 소속시킨다. 그 중 운충은 **原** 萬戶를 두었던 것을 **補** 강등시킨 곳이고, 진동도 **續** 만호를 두었던 것을 **補** 강등시킨 곳이며, 인차외도 **續** 만호를 두었던 것을 **補** 강등시킨 곳이고, 나남도 **續** 만호를 두었던 것을 강등시킨 곳이다. ○ 吾村 寶化堡 梁永萬洞 乾原 黃拓坡 安原 西水羅에 두어 북도에 소속시킨다. ○ 甫老知에서는 **增** 혁파하며, 自作·仇非·廟坡·江口·雙靑·黃土·岐伊 등에서도 **補** 모두 혁파한다.

別將 2인 종9품 **續** 새로 설치하여 ○ 中嶺과 赴戰嶺에 둔다.

【平安道】

兵馬節度使 2인 종2품, 1인은 觀察使가 겸한다. **虞候** 1인 정3품 당

상관으로 한다. **原** 종3품이었다.

評事 정6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防禦使 2인 종2품 **續** 새로 둔다. ○ 昌城府使와 江界府使가 겸직한다.

214) 여기서의 衛將은 함경도 북쪽 국경지방에 두었던 武將職으로서 大邑의 수령이 겸직하였다. 鎭營將 이외에 함경남북도(남도도 근세의 행정구역상으로는 북도)에만 10개衛를 두었던 것은 국방상 요지였기 때문이다.

節制使 1인 정3품 續 義州鎮에 둔다.

僉節制使 26인 중3품 ○ 成川鎮·江界鎮·渭原鎮·楚山鎮·碧潼鎮·寧遠鎮·滿浦鎮²¹⁵⁾·安州鎮·昌城鎮·朔州鎮·麟山鎮²¹⁶⁾·龜城鎮·碧團鎮·昌洲鎮²¹⁷⁾·高山里鎮·清城鎮·委曲鎮·神光鎮·牛峴鎮·阿耳鎮·寧邊鎮·嘉山鎮·定州鎮·鐵山鎮·龍川鎮·郭山鎮에 둔다. 청성진은 續 추가된 곳이고, 위곡진도 續 추가된 곳이며, 신광진도 續 추가된 곳이고, 우현진도 續 추가된 곳이다. 아이진은 原 萬戶를 두어 벽동진에 소속시켰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이고, 영변진은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增 승격시킨 곳이며, 가산진은 原 同僉節制使를 두었던 것을 增 승격시킨 곳이고, 정주진도 原 동첨절제사를 두었던 것을 補 승격시킨 곳이며, 철산진도 原 동첨절제사를 두었던 것을 補 승격시킨 곳이고, 용천진도 原 동첨절제사를 두었던 것을 補 승격시킨 곳이며, 광산진도 原 동첨절제사를 두었던 것을 補 승격시킨 곳이다. ○ 만포·인산·方山²¹⁸⁾·벽단·창주·고산리 등鎮의 첨절제사는 京官職으로 겸하였는데, 增 兼職제도를 이번에 폐지한다. 彌串鎮은 續 추가된 곳으로 補 薪島라 개칭하여 水軍에 소속시키며, 寧城鎮은 續 추가하였다가 補 혁파하였다.

同僉節制使 20인 중4품 ○ 平壤鎮의 庶尹이 겸직하고 平壤鎮管에는 中和와 咸從에 두는데, 함중에는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이다. ○ 寧邊鎮管에는 雲山과 熙川에 두고, ○ 安州鎮管에는 肅川과 古城에 두는데, 고성은 續 추가된 곳이다. ○ 成川鎮管에는 德川 价川 慈山 順川 祥原에 두고, ○ 龜城鎮管에는 安義 西林에 두는데, 안의는 續 추가된 곳이고, 서림은 續 清江을 추가하여 增 명칭을 바꾼 곳이다. ○ 江界鎮管

215) 滿浦鎮은 평안도 江界도호부에 있던 육군의 거진이었다(《위의 책》 권55).

216) 麟山鎮은 평안도 義州府에 있던 육군의 거진이었다(《위의 책》 권53).

217) 碧團鎮은 평안도 碧潼郡에 있던 육군의 거진이었고(《위의 책》 권55), 昌洲鎮은 평안도 昌城도호부에 있던 육군의 거진이었다(《위의 책》 권53).

218) 方山鎮은 평안도 의주부에 있던 육군의 거진이었으나, 속대전에서는 諸鎮으로 강등되어 萬戶를 두게 되었다(《위의 책》 권53 및 《속대전》 권3 병전, 외관직).

에는 上土와 柔院에 두는데, 상토는 [原] 萬戶를 두었던 것을 [續] 승격시킨 곳이고, 유원은 [續] 추가된 곳이다. ○ 朔州鎮管에는 天摩에 두는데, [續] 추가된 곳이다. ○ 楚山鎮管에는 車嶺에 두며, [續] 추가된 곳이다. 昌城鎮管에는 恃寨에 두는데, [續] 추가된 곳이다. ○ 嘉山鎮管에는 博川에 두는데, [原] 영변진관에 속하였던 것을 [補] 옮긴 곳이다. ○ 天水는 [續] 추가하였다가 [增] 혁파한 곳이고, 兎城도 [續] 추가하였다가 [補] 혁파된 곳이다.

萬戶 10인 종4품 ○ 江界鎮管의 伐登에 두며, [續] 추가된 곳이다. ○ 朔州鎮管에는 仇寧과 幕嶺에 두며, 막령은 [續] 추가된 곳이다. ○ 義州鎮管에는 玉江 方山 靑水 水口에 두며, 옥강은 [續] 추가된 곳이고, 방산은 [原] 僉節制使를 두었던 것을 [續] 강등시킨 곳이며, 청수는 [續] 추가된 곳이고, 수구도 [續] 추가된 곳이다. ○ 楚山鎮管의 山羊會에 두며, [續] 추가된 곳이고, ○ 渭原鎮管의 湄老梁에 두며, [續] 추가된 곳이다. ○ 龜城鎮管의 植松에 두며, [續] 추가된 곳이고, ○ 楊下는 [續] 추가하였다가 [補] 혁파한 곳이다.

節制都尉 11인 종6품 ○ 平壤鎮管의 龍岡 甌山 順安 江西에 두고, ○ 寧邊鎮管의 泰川과 ○ 安州鎮管의 永柔에 두며, ○ 成川鎮管에는 陽德 孟山 三登 江東 殷山에 둔다. ○ 평양·영변·안주·의주·강계·정주 등에서는 [續] 모두 삭감한다.

水軍節度使 1인 정3품 觀察使가 겸한다. ○ [原] 2인으로 하되, 1인은 兵馬節度使가 겸한다. [續] (병마절도사가 겸하는 1인을) 삭감한다.

防禦使 2인 종2품 [續] 새로 둔다. ○ 三和府使와 宣川府使가 겸직한다.

僉節制使 6인 종3품 ○ 宣沙浦鎮²¹⁹⁾·老江鎮·廣梁鎮²²⁰⁾·三和鎮·

219) 宣沙浦鎮은 평안도 郭山郡에 있던 수군의 거진이었다(《위의 책》 권53). 뒤에 鐵山으로 옮겼다(《大東輿地圖》 제8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70).

220) 老江鎮은 평안도 安州牧에 있던 수군의 거진이었고 廣梁鎮은 평안도 三和縣에 있던 수군의 거진이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52).

宣川鎮·薪島鎮에 두는데, 삼화진은 [原] 節制都尉를 두었던 것을 [增] 승격시킨 곳이고, 선천진은 [原] 同僉節制使를 두었던 것을 [增] 승격시킨 곳이며, 신도진은 [續] 兵馬 소속이었던 것을 [補] 옮긴 곳이다.

巡營中軍 1인 정3품 당상관으로 하여 [續] 새로 둔다.

鎮營將 9인 정3품 [續] 새로 둔다. ○ 前營將은 肅川府使가 겸직하고, 左營將은 德川郡守가 겸직하며, 中營將은 中和府使가 겸직하고, 右營將은 順川郡守가 겸직하며, 後營將은 咸從府使가 겸직한다. 別前營將은 龍川府使가 겸직하고, 別左營將은 龜城府使가 겸직하며, 別右營將은 嘉山郡守가 겸직하고, 別後營將은 寧邊府使가 겸직한다.

權管 18인 종9품 [續] 새로 설치하여, ○ 乾川 廣平 廟洞 甲巖 雲頭里 於汀 灘 大吉號里 小吉號里 芻軒洞 龜洞 大坡兒 小坡兒 楸仇非 馬馬海里 楸坡 崧怪 從浦 平南에 둔다. 추파는 [原] 萬戶를 두었던 것을 [補] 강등한 곳이고, 崧怪는 [續] 만호를 추가하였다가 [補] 강등한 곳이며, 종포도 [續] 만호를 [補] 강등한 곳이고, 평남도 [續] 만호를 두었다가 [補] 강등한 곳이다.

監牧官 1인 종6품 [續] 鐵山の 宣沙浦 僉使가 겸직한다.

別將 7인 종9품 [續] 새로 설치하여, ○ 林土 慈母山城 黃龍山城 保山 白馬山城 劔山 西城에 둔다. 백마산성은 [補] 추가된 곳이고, 김산도 [補] 추가된 곳이며, 서성도 [補] 추가된 곳이다. ○ 德池洞은 [增] 삭감한다.

【土官職】²²¹⁾ [原] 永興府와 平壤府의 驍尉²²²⁾는 서울의 隊卒의 例에 의하여 근무일수를 채우면 官階를 (올려) 주어 去官시키되, 역시 土官職에 임명한다.

221) 解説篇 15. 土官職 參照.

222) 驍尉는 京軍의 隊卒에 상당한 하급군병(주 54)으로서 일정한 품계 이하의 토관직을 받을 수 있었다. 關西驛誌에 의하면 평안도 大同驛에 他道の 他驛에 간혹 있는 將校가 없고 그대신 驍尉 10명이 있었다(趙炳魯, 《조선시대 역제연구》, 1990,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p.89).

【士官階職】 정5품 健忠隊尉, 勳直. 중5품 勳忠隊尉, 副勳直. 정6품 健信隊尉, 勳果. 중6품 勳信隊尉, 副勳果. 정7품 敦義徒尉, 勳正. 중7품 守義徒尉, 副勳正. 정8품 奮勇徒尉, 勳猛. 중8품 効勇徒尉, 副勳猛. 정9품 勵力徒尉, 勳勇. 중9품 殫力徒尉, 副勳勇. 223)

【咸興府】 [原] 永興府 【鎮北衛】 려직·부려직 각 1인, 려과·부려과·려정 부려정 각 2인, 려맹·부려맹·려용 각 3인, 부려용 4인. 【平壤府】 【鎮西衛】 려직·부려직 각 1인, 려과·부려과 각 2인, 려정·부려정 각 3인, 려맹·부려맹 각 4인, 려용·부려용 각 5인. 【寧邊大都護府】 【鎮邊衛】 려직·부려직 각 1인, 려과·부려과·려정·부려정 각 2인, 려맹·부려맹 각 3인, 려용 4인, 부려용 5인. 【鏡城都護府】 【鎮封衛】 려직·부려직 각 1인, 려과·부려과·려정·부려정 각 2인, 려맹·부려맹 각 3인, 려용 4인, 부려용 5인. 【義州牧】 【鎮江衛】 려과·부려과·려정·부려정 각 1인, 려맹 2인, 부려맹 3인, 려용 4인, 부려용 5인. 【會寧】 【慶源都護府】 【懷遠衛】 려과·부려과·려정·부려정 각 1인, 려맹 2인, 부려맹 3인, 려용 4인, 부려용 5인. 【鍾城】 【穩城】 【富寧】 【慶興都護府】 【柔遠衛】 려과·부려과·려정·부려정 각 1인, 려맹·부려맹 각 2인, 려용 3인, 부려용 5인.

223) 조선건국 초기에는 武班官階가 8품밖에 없었으므로 士官의 西班도 8품을 下限으로 하였으나 세종 18년에 무반에 正從 9품계가 생김에 따라 세종 20년, 士官의 西班에도 正從 9품관계가 생겼고 隊長·隊副 일부를 혁파하여 司勇을 새로 두었으며(《세종실록》 권82-7, 세종 20년 7월 병신), 세조 12년에 그 명칭을 고쳐서 그것이 경국대전에 등재된 것이었다.

처음 토관이 설치되었을 때 서반토관직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中郎將(정5품)이었는데 이것이 세종 16년에 司直으로 개칭되었고(《세종실록》 권64-12, 세종 16년 4월 무진) 세조 8년에도 같은 명칭을 쓰다가(《세조실록》 권28-38, 세조 8년 7월 정미) 그 후 勳直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 副勳直(중5품)은 세조 8년 이전의 攝司直이, 勳果(정6품)는 副司直이, 副勳果(중6품)는 攝副司直이, 勳正(정7품)은 司正이, 副勳正(중7품)은 攝司正이, 勳猛(정8품)은 副司正이, 副勳猛(중8품)은 攝副司正이, 勳勇(정9품)은 司勇이, 副勳勇(중9품)은 攝司勇이 각각 세조 8년 이후 개칭된 것이다(위의 실록기사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p.572~573).

【江界都護府】 【鎮浦衛】 려과·부려과·려정·부려정 각 1인, 려맹·부려맹 각 2인, 려용 3인, 부려용 5인.

【京衙前】²²⁴⁾ 原 一交代 인원수(한 차례 번을 드는 수)는 續 原定員數와

같다. ○ 경국대전에서는 皂隸를 지방에서 뽑아 올린다고 하였으나 大同廳을 설립하여 시행할 때에 모두 혁파하고 歩兵으로 대체하여 서울에서 값(급료)을 주어 고용하여 복무하게 하였으며, 지금은 각 관청에서 使令이라 통칭한다. ○ 쌀과 베(米布)가 없는 관청(衙門)에서는 1년 중 8개월은 宣惠廳에서 값(급료)을 주고 4개월은 戶曹에서 값을 준다. 쌀과 베가 있는 관청에서는 모두 해당 관청에서 값을 준다.

【皂隸】²²⁵⁾ 【宗親府】 大君 각 4명, 公主 각 1명, 王子君 각 3명, 翁主 각 1명, 1품君 각 2명, 2품君 및 都正 각 1명. ○ (중친부소속) 15명, 使令이다. 아래도 이와 같다. 【議政府】 議政 각 4명, 贊成 각 2명, 參贊 각 1명, 舍人과 檢詳 각 1명. ○ (의정부소속) 20명. 【忠勳府】 정1품君 각 2명, 이미 議政을 지낸 자에게는 4명, 중1품君 각 2명, 2품君 각 1명. ○ (충훈부소속) 10명. 【中樞府】 領事 2명, 이미 議政을 지낸 자에게는 4명, 判事 각 2명, 知事·同知事·僉知事 각 1명. ○ (중추부소속) 10명. 【儀賓府】 1품尉 각 2명, 2품尉와 副尉 각 1명. ○ (의빈

224) 京衙前은 중앙의 관청이나 관원에게 소속되어 행정실무나 호위·使役 등을 맡았던 자들로서 吏曹에서 관할하던 錄事·書吏와 兵曹에서 관할하던 皂隸·羅將·諸員은 대개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지방의 농민이 일정기간 番上하여 맡았던 國役의 한 형태였으나 조예와 나장 등은 그 役務가 고되어 도망자가 속출하여 17세기 이후 대동법실시 후에는 代立制가 등장, 급료를 주어 사람을 고용하였으므로 國役體制의 붕괴원인이 되기도 하였다(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 1964, pp.695~699).

225) 皂隸는 병조에서 관할하던 京衙前이지만 身良役賤의 하인이었다. 조예는 검은 옷을 입었으며 여러 중앙관서와 宗親 및 관원에게 배속되어 官署에서의 隨廳立役과 중친 및 관원의 隨從·호위(驅從과 別陪) 등 使令으로서 雜役을 맡았다. 조예는 주로 경기지역의 良人農民을 뽑아서 立役시켰으며, 三番으로 나누어 1개월씩 복무하도록 하였고, 當番인원은 약 430명이었다. 羅將과 신분이나 立役條件이 비슷하였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p.575~576).

부소속) 4명. 【敦寧府】 領事 2명, 이미 議政을 지낸 자에게는 4명, 判事 2명, 知事·同知事·都正 각 1명. ○ (돈령부소속) 6명. 【吏曹】 工曹도 같다. ○ 判書 2명, 參判·參議 각 1명, 堂下官 각 1명. ○ (이조소속) 11명. 【戶曹】 禮曹도 같다. ○ 判書 2명, 參判·參議 각 1명, 堂下官 각 1명. ○ (호조소속) 15명. 【兵曹】 判書 2명, 參判·參議·參知 각 1명, 堂下官 각 1명. 【刑曹】 判書 2명, 參判·參議 각 1명, 堂下官 각 1명. 【漢城府】 判尹·左尹·右尹 각 1명, 庶尹·判官·兼參軍 각 1명. ○ (한성부소속) 40명. 【司憲府】 大司憲 1명. 【開城府】 留守 1명, 堂下官 각 1명. ○ (개성부소속) 30명. 【忠翊府】 4명. 【承政院】 承旨 각 1명. ○ (승정원소속) 20명. 【掌隸院】 判決事 1명, 堂下官 각 1명. ○ (장예원소속) 20명. 【司諫院】 大司諫 1명. 【經筵】 檢討官 이상 각 1명. 【成均館】 大司成 1명. 【訓鍊院】 都正 1명. 【尙瑞院】 8명. 【宗簿寺】 正·僉正·主簿 각 1명. ○ (종부서소속) 20명. 補 지금은 종친부에 속한다.

【羅將】²²⁶⁾ 續 지금은 사헌부에서는 所由라 호칭하고, 병조·형조·도총부·典獄署에서는 使令이라 호칭하며, 사간원에서는 喝導라 호칭하는데,

226) 羅將은 병조소관의 京衙前으로서 중앙의 三法司와 사간원·병조·오위도총부·전옥서·평시서 등 司正과 형사업무를 맡은 관서에 소속되어 경찰·순라·看守(獄卒) 등 잡역에 종사하였다. 《성종실록》 권44-12, 성종 5년 윤6월 임인과 《大明律直解》 권1 名例律, 吏卒犯罪에서는 나장을 羅匠(螺匠)이라 썼다. 將字는 이두 표기인 듯하다(윤국일, 앞의 책, p.392). 《속대전》에 의하면 나장은 관청에 따라 所由·使令·喝導 등으로 불리웠으며 조예와 마찬가지로 양인농민을 뽑아 3교대로 나누어 1개월씩 복무하는 당번 인원이 약 460명이었는데 그 중 의금부에 배속된 인원이 과반수였다. 나장은 外衙前으로서 각급의 鑰에도 배속되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576). 나장이 비록 아전이지만 그 일은 下人의 일이었다.

모두 병조에서 값(급료)을 준다. 【義禁府】 判事·知事·同知事 각 2명, 堂下官 각 1명. ○ (의금부소속) 232명. 續 40명. 【兵曹】 20명. 【刑曹】 45명. 續 9명. 【五衛都摠府】 20명 續 14명. 【司憲府】 大司憲 2명, 執義·掌令·持平 각 2명, 監察 각 1명. ○ (사헌부소속) 43명. 【司諫院】 大司諫 1명, 司諫·獻納·正言 각 1명. ○ (사간원소속) 14명. 續 13명. 【平市署】 10명. 【典獄署】 30명. 續 5명.

【諸員】²²⁷⁾ 續 경국대전의 정원수를 지금은 모두 증원하였으나, 해당 관청에서 當番이 된 자에게 收布하고 실제 근무인원數는 줄여서 그 대신 書吏 혹은 書員을 두도록 한다. 【承文院】 3명. 續 6명. 【尙衣院】 40명. 續 117명. 【司饗院】 70명. 續 815명.

【司僕寺】 600명 續 3448명. 【典設司】 60명. 續 500명.

【烏杖差備】²²⁸⁾ 忠贊衛 【轎子陪】 【引路】²²⁹⁾ 諸員 【內命婦】 續 출입할 때에 忠贊衛와 諸員이 착용하는 青衣와 靑頭巾 각 30

227) 諸員은 병조소관의 京衙前으로서 司僕寺·承文院·尙衣院·司饗院·典設司에 배속되어 3교대로 6개월간 복무하며, 당번인원의 총수는 경국대전상으로는 773명인데 그 중에서는 長番인 承文院의 諸員이 포함되어 있다. 諸員은 나장·조예와 비슷한 잡역인이었지만 각기 배속된 관서의 기능에 따라 馬匹飼育·鍊紙·裁縫·儀仗陪從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그들은 戶役이 면제되었으므로 그들의 부담분이 경기도의 평민(농민)의 부담(요역)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諸員의 減額이 요구되었다(《세종실록》 권28-30, 세종 7년 6월 신유). 그러나 속대전에서는 諸員을 대폭증원(4,886명, 그 중 사복시 3,448명)하여 해당관청에서 당번이 된 자에게 收布하고 실제 근무인원은 줄여서 그대신 書吏 또는 書員을 두도록 하였다(《속대전》 권4, 병전, 경아전).

228) 烏杖差備는 黑杖을 갖고 있는 경비 군사를 말하는데 忠贊衛(原從功臣의 자손, 후에는 庶族入屬者多. 주 59 참조)로서 충원하였다.

229) 轎子陪는 가마를 모시고 따라가는 자들이고, 引路는 길을 인도하는 자들로서 諸員이 이를 맡았다.

건은 司僕寺에서 영구히 상납하도록 한다. 【嬪】 오장차비 6명, 교자배 20명. 【貴人】 오장차비 4명, 교자배 20명. 【昭儀】 【淑儀】 교자배 20명, 인로 4명. 【良娣】 【昭容】 【昭媛】 【淑媛】 교자배 18명, 인로 3명. 【良媛】 【承徽】 【昭訓】 교자배 18명, 인로 2명.

【伴尙】²³⁰⁾ 原 병조에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채용(啓差)하되, 黃海·平安·永安 道에 살고 있는 사람은 채용(差出)하지 아니한다. ○ 반당을 배정받은 사람이 죽으면 그 반당은 3년 후 다른 身役을 진다. 宗親·功臣·尉·副尉의 경우에는 본인이 죽어도 처가 살아있으면 그대로 배정하여 주지만 그 반당이 죽으면 보충하지 아니한다. 宦官에게는 品伴尙(堂上品階者에게 주는 반당)을 줄 수가 없다.²³¹⁾ 【大君】 15명 續 10명을 줄인다. 【王子君】 12명 續 8명을 줄인다. 【一品】 9명 續 6명을 줄인다. 【二品】 6명 續 4명을 줄인다. 【三品堂上官】 3명 續 2명을 줄인다. 【一等功臣】 10명 續 7명을 줄인다. 【二等功臣】 8명 續 5명을

230) 伴尙은 양인이 부담하는 국역중 특수한 형태로서 군역대신 종친·공신·당상관에게 배속되어 호위 기타의 役務를 맡았다. 반당은 그 후 나라의 군졸, 경아전, 수행인, 농장관리인 등 여러가지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반당의 당초의 기능이 변질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당은 富實한 양민이 많이 入屬하였으며 경국대전 반포당시 약 3000명으로 추산되었다. 특히 良丁들은 避役의 수단으로 많이 投托하였으므로 假伴尙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었다. 반당에는 종친에게 주어진 종친반당과 공신에게 주어진 공신반당, 그리고 당상관들에게 주어진 품반당이 있었다. 일부 종친반당과 공신반당에게는 종8품과 종9품의 散職을 주었다(한희숙, <조선 초기의 반당>, 《역사학보》 112집, 1986, 12, pp.1-48). 세종대에는 종친반당과 공신반당에게 체아직을 주었으나 성종대 이후 그것이 혁파되고 그대신 散職을 주게 되었다(《성종실록》 권166-1, 성종 15년 5월 무자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77).

231) 품반당은 정3품 당상관 이상에게 배속되었던 반당(호위병 내지 구종)으로서 환관은 비록 당상관일지라도 반당을 배정받을 수가 없으며, 그가 공신인 경우에 한하여 공신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줄인다. 【三等功臣】 6명 續 4명을 줄인다. 【四等功臣】 續 1명.

【外衙前】²³²⁾ 原

【書員】²³³⁾ 【府】 34명 【大都護府】 【牧】 각 30명 【都護府】 26명 【郡】 22명 【縣】 18명.

【日守】²³⁴⁾ 【府】 44명 【大都護府】 【牧】 각 40명 【都護府】 36명 【郡】 32명 【縣】 28명. 【驛】²³⁵⁾ 大路 20명, 中路

232) 外衙前은 각급 지방관청과 驛·鎭에 소속되었던 아전으로서 여기서는 書員·日守·羅將·差備軍 등 西班아전을 의미한다. 州府郡縣에는 이들 네 종류의 아전이 모두 있었으나 驛에는 日守만 있었고 鎭에는 羅將과 差備軍만 있었다. 물론 府使나 牧使를 겸한 主鎭이나 巨鎭의 將에게는 위 네 종류의 아전이 모두 딸려있다.

233) 書員은 記官이라고도 하는데 記官은 고려시대 이래 鄉吏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椽曹龜鑑》 권1, 吏職名目解에 書員者 謂記書之員也라 하였다). 서원의 정원수는 유수부는 50명, 대도호부와 州 및 도호부에는 40명, 군에는 30명, 현에는 20명 등으로 세조 3년에 정한 것이며(《세조실록》 권7-31, 세조 3년 4월 을묘) 그 후 약간의 변동은 거쳐서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중앙各司에도 서원이 있었으나 세조 11년 이후 없어졌다고 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78).

234) 日守는 지방의 각읍과 각역에 배속되었던 西班 外衙前으로서 원래 使客의 支持(접대)를 맡았으나 널리 잡역에 종사하였다. 日守는 壯實한 백성(양인농민) 중에서 뽑았으며 문종 원년에 그 정원수를 정하였고 그 수는 書員과 같으며(《문종실록》 권8-1, 문종 원년 6월 무진) 그것을 그 후 약간 수정하여 경국대전에 수록하였다. 《세종실록》 권28-9, 세종 7년 4월 경신에 「國俗謂之 日守兩班」이라 하여 日守가 양반으로 호칭되고 있음이 나타나 있으나 그것이 양반일 수는 없다.

235) 驛은 公文의 전달과 公務旅行者에 대한 馬匹 및 숙식의 편의제공과 官需物資의 운송을 담당하는 교통·통신·운송기관이었다(趙炳魯, 〈朝鮮時代驛制研究〉, 1990, 동국대박사학위논문 p.1). 조선시대에는 주요 도로에 약 30리 거리로 역이 설치되어 있었고 역에는 항상 馬匹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역장·역리·역졸 등이 있어 公役을 맡았다. 또 몇 개 또는 수십개의 역을 하나의 道로 하여 察訪 또는 驛丞(중종대 이후 모두 찰방으로 승격. 《增補文獻備考》 권233-18, 職官考 20, 察訪 및 《중종실록》 권79-55, 중종 30년 6월 경인)을 두어 驛政의

15명, 小路 10명.

【羅將】 【主鎮】 30명 【巨鎮】 20명 【諸鎮】 10명.

【差備軍】²³⁶⁾ 【主鎮】 20명 【巨鎮】 14명 【諸鎮】 4명.

【軍官】²³⁷⁾ 原 무과급제자 및 근무를 마친(下番) 別侍衛나 甲士를 鎮將²³⁸⁾

관장과 정보수집 및 보고의 임무를 맡겼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79). 역은 신라시대에 비롯되어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약 540여개가 있었다.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에 비하여 국경이 넓어져서 북쪽지방의 驛路가 약간 증설되었으나 中部이남은 거의 고려시대의 것을 답습하였다(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1968, 육군본부, pp.539-559). 驛은 그 위치와 중요성에 따라 大路·中路·小路의 驛路를 두게 되었는데(《세조실록》 권29-1, 세조 8년 8월 정묘) 《속대전》에 의하면 대로는 경기 12驛이고 중로는 경기 9역, 충청 24역, 전라 4역, 경상 5역, 강원 6역, 황해 11역, 평안 13역, 함경 37역 등 109역이며 기타 약 420개역은 소로로 되어 있다.

236) 差備軍은 세종 20년 9월 병조의 건의에 따른 의정부의 啓로 신설되었는데, 10司에 모두 500명의 差備軍(各司 50명)을 두어 고려시대의 예에 따라 上護軍·大護軍·護軍의 수행원 역할(根隨之役)을 시키고, 또한 各領의 使令之任을 맡게 하였다. 차비군은 閑良중 驍勇者를 병조에서 선발하였으며, 他役을 시키지 않고 그 근무일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보아서 近仗·防牌(庶人有力驍勇者 1,500명을 선발)·攝六十(隊正 20人, 伍尉 40인 各有統屬故 總謂之六十)·隊副 등의 자리에 공석이 있으면 充差(보충하여 임용)한다(《세조실록》 권82-21, 세종 20년 9월 기사). 그러나 五衛體制가 갖추어지면서 중앙의 차비군은 소멸하고 步正兵이 그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그대신 鎭管體制에 입각한 각 지방의 主鎮·巨鎮·諸鎭의 外衙前으로서의 차비군만 남게 되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78). 세조 10년 9월 각도의 營鎭軍 중 부득이한 차비군 일부만을 남겨 鎭軍이라 하였고 그 이외의 營鎭軍과 守城軍을 모두 正兵으로하여 배속시켰는데(《세조실록》 권34-27, 세조 10년 9월 경오) 이것이 차비군으로 다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등재된 것이다. 차비군은 一保를 지급받으며 그 임무는 鎭將의 휘하에서 使令·丘史의 여러 잡역에 종사한 것이라 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79).

237) 軍官은 各鎭에 배속되어 鎭將이나 虞候(함경도와 평안도에 限)를 보좌 또는 수행하고 軍士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는다. 물론 軍관은 五軍營이나 捕盜廳, 都體察使(議政)와 외국으로 보내는 使節에게도 배속되나 여기서는 주로 地方軍鎭에 배속되는 軍관을 邑두에 두고 규정하였다. 軍관은 무과급제출신자나 비번인 別侍衛·甲士 중에서 鎭將이 스스로 추천하면 병조에서 심사한 후 임금에게 상신하여 口傳으로 임명받게 되며(口傳軍官)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는 軍관들이 부임을 기피하므로 下番인 京軍士 중에서 武才가 있는 자를 추천하여 口傳으로 임명하여 거느리고 가게 하였으며(《세조실록》 권6-32·33, 세조 3년 2월 기미) 또한 당번(근무중)인 別

이 각각 추천하면 兵曹에서 이를 심사한 후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명(啓差)하며 1년이 되면 교체한다. ○ 兩界²³⁹(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비록(별시위와 감사가) 근무(當番)중일지라도 군관으로 임명하며, 양계의 節度使의 軍官으로는 내금위도 임명하되 그 수는 그 때마다 임금의 지시를 받아서 정한다. 兩界와 濟州의 세 고을²⁴⁰에서는 그 道의 사람을 軍官으로 임명하지 못한다. 續 정원 이외 인원을 더 데리고 가는 경우에는 主將을 문책(推考)한다. ○ 節度使(閫帥)를 지낸적이 있는 사람을 觀察使가 (자신의) 軍官으로 임금에게 임용제청(啓請)하지 못한다. 增 여러 道의 監營·兵營·統營·水營으로 寫字官과 畫員 각 1인을 군관 정원내에서 임명하여 보낸다. ○ 釜山僉使를 지낸적이 있는 사람은 通信使의 軍官이 될 수 없다. 【主鎮】 5명이며, 영안도와 평안도에는 각각 5명을 더 둔다. ○ 영안남도에는 女眞通事 1인을 군관 정원수 내에서 임명하여 보낸다. 續 觀察使·節度使·統制使·統禦使에게 각 9명을 배속시킨다. 【巨鎮】 3명이나, 군사가 없는 鎮(無軍鎮²⁴¹)에서는 군관도 없다. 富寧·慶源·會寧·鍾城·穩城·慶興·甲山·江界·義州·麟山·滿浦·濟州 등 鎮에는 각각 2명을 더 둔다. ○ 北靑이외에는 判官이 있는 곳에서는 또 2명씩을 더 둔다. ○ 義州·渭原·楚山·碧潼

시위와 감사도 군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이 두 道의 절도사의 군관으로는 內禁衛도 임명한다. 군관의 임기는 1년이었고 대개 鎮將들의 子姪이나 친족 중에서 선발하여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근무를 마친 후 타관직으로 진출하는 수가 많았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 580).

238) 鎮將은 진관체제에 따른 主鎮將·巨鎮將·諸鎮將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때로는 陸·海軍의 구분에 따라 陸鎮將·水鎮將이라 하기도 한다(同上).

239) 兩界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말한다. 고려시대에 북쪽 국경지대를 北界와 東界로 나누어 남쪽 각도와 구분하였다. 이는 국방상의 비중이 큰 특수군사행정지역으로서 軍政을 실시함이 타당하였기 때문이다. 조선국초에 이르러 태종 17년 양계(평안도와 함경도)에도 都觀察黜陟使를 배치하여 8道體制로 바꾸었지만 北方兩道의 국방상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양계라 하면서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토관직의 설치, 모든 甲士와 正兵의 留防, 獨鎮의 설치와 兵馬萬戶의 파견 등이 그것이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 581).

240) 제주 세 고을(三邑)이란 濟州牧·大靜縣·旌義縣을 말한다(同上).

241) 無軍鎮은 常任兵力이 없는 鎮이다. 상주병력이 있는 곳은 留防兵이 있는 각 道의 긴요한 鎮과 양계의 獨鎮 및 兵馬萬戶의 諸鎮 그리고 토관이 설치된 중요한 鎮이었고 그 밖에는 無軍鎮이다(同上). 성종 원년 6월 旱荒을 계기로 院相 洪允成이 啓하여 三浦와 같은 국방상 긴요한 곳 이외에는 절도사와 處置使의 군관 및 光州·羅州 등 鎮의 군관을 모두 감하도록 하였는데(《성종실록》 권6-9, 성종 원년 6월 정사) 그러한 사유로 無軍鎮에는 군관을 두지 않게 되었다.

·昌城·滿浦 등 鎭에는 女眞通事 각 1인을, 濟州鎭에서는 倭通事 1인을 모두 軍管 正員수 내에서 임명하여 보낸다. 續 防禦使·營將에게 각 3명을 배속시킨다. 【諸鎭】 端川 이외에는 軍사가 없는 鎭에서는 軍管도 없다.

續 萬戶·別將·權管에게 각 2명을 배속시킨다. 【虞候】 영안도와 평안도의 우후에게는 軍관을 배속시킨다.

【驛馬】²⁴²⁾ 原 무릇 왕명을 받들어 나들이 하는 官員과 官人(奉使員人)에

게는 병조에서 그 等數에 따라 證서(帖)를 내주고 尙瑞院에서 印金에게 아뢰어 馬牌를 지급한다. 마패는 구리로 만든 둥근 모양이며, 한 면에는 각 品階에 따른 數의 말을 그려 넣었고, 한 면에는 字號와 年月을 썼으며 또 尙瑞院 印이라는 네 글자의 篆印을 새겼다. ○ 驛官²⁴³⁾은 역마 이용자의 관직과 성명 및 일시를 모두 적어서 매계절의 마지막 달에 兵曹로 보고한다. ○ 觀察使와 節度使는 모두 發馬牌(馬牌)²⁴⁴⁾를 받는데, 무릇 印金에게 보고할 일이

242) 驛馬는 각 역에 비치되어 交通·통신·운송용에 제공되었던 馬匹이다.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북방계인 果下馬(小馬)와 중앙Asia에서 중국을 거쳐서 전래된 胡馬(大馬)가 널리 사용되었으며, 戰馬用·乘馬用(交通·수렵 등)으로서 혹은 생산용이나 외교용(獻上用)·內治用(賞賜用)으로 쓰였다(남도영, 《馬政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76, pp.16~21).

243) 驛官은 驛을 관할하는 관원으로서 《경국대전》에서는 察防과 驛丞이 있었으나 중종대에 驛丞이 모두 찰방으로 승격하여 《속대전》에서는 찰방일색으로 되었다. 찰방은 관할하는 각驛을 순찰하는 등으로 驛路에 관한 사무를맡은 종6품의 東班 外官職으로 수령의 예에 따라 관찰사가 근무성적을 평정하였다. 麗末에서 세종대에 이르는 조선국초까지는 「程驛察防」이라 하여 京官(朝官)을 임시로 파견하였으나(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앞의 책) p.543) 세조 8년 정월에 察防道마다 찰방 이외의 「吏典去官者」인 役승 1인을 더두어 分掌하여 驛路의 사무에 전심하도록 하였다(《세조실록》 권27-7, 세조 8년 정월 계속). 그 후 세조 8년 8월 各驛路를 정비하면서 각역은 察防道와 驛丞道로 나누어 관할하게 되었으며(《위의 책》 권29-1~3, 세조 8년 8월 정묘) 그 후 그것을 다시 정리하여 경국대전에 등재한 것이다. 찰방과 役승의 수는 경기도와 충청도 및 전라도에서는 각 3인씩이고 강원도에서는 각 2인씩으로 같았으나 경상도에서는 찰방이 5인, 役승이 6인인 반면에 황해도에서는 찰방이 2인, 役승이 1인, 그리고 영안도에서는 찰방 3인, 평안도에서도 찰방 2인뿐으로 합계 찰방이 23인, 役승이 18인이었다. 《대전회통》 권1 이전, 외관직에 의하면 찰방이 모두 40인으로 충청도에서 1인이 줄었을 뿐 나머지 道에서는 경국대전에 있어서의 찰방수에다 役승수를 보탠 숫자와 같다.

244) 發馬牌는 역말의 징발을 나타내는 牌로서 馬牌라고도 한다. 공무로 출장가는 관원은 역말을 사용하기 위하여 尙瑞院으로부터 마패를 발급받았다. 마패에는 징발할 수 있는 말수가 그려

있거나 進上할 경우에는 역말을 쏜다(發馬한다). 돌아갈 때에도 發馬할 수 있다는 廻還文이 있을 경우에는 승정원의 공문서를 살펴 보고 아울러 下等馬를 지급한다. ○ 濟州子弟²⁴⁵⁾ 및 貢物운송인(押貢人²⁴⁶⁾)이 돌아갈 때에는 두 사람마다 짐말(馱馬) 한 마리씩 지급한다. ○ 鎭將과 驛官 및 해변이나 국경지방의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守令, 永安(함경)道 洪原이북과 평안도 博川以西의 敎官에게는 모두 말을 지급하며, 교체되어 돌아 올 경우, 비록 散官에 속하게(解職)되었을지라도 역시 말을 지급한다. ○ 공무로 인한 여행이 아닐 경우에는 각각 본품계에 해당하는 마리 수에서 한 마리를 줄여서 지

저 있는데 10마패까지 있다고도 하나 실제상으로는 4·5마패와 3마패·2마패·1마패 등 5종으로 되어있다. 그 중 암행어사에게는 3마패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속대전) 실제로 2마패를 지급하였다. 또한 암행어사의 경우 마패는 신분증으로도 쓰이고 官印으로도 代用되었다(田鳳德, 〈暗行御史制度研究〉, 《韓國法制史研究》, 서울대출판부, pp.120-126). 마패는 본래 木牌였으나 세종 16년 2월 병조의 건의에 따라 鐵造로 바뀌고(《세종실록》 권63-21, 세종 16년 2월 계유) 그 후 다시 銅製로 바뀌었다. 銅馬牌는 둥근 모양으로 一面에는 사용할 수 있는 말수를 새겼고 다른 일면에는 字號와 연월일 및 尙瑞院印이라는 4자가 새겨져 있다. 특히 관찰사와 절도사는 마패를 항상 지니고 있다가 역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發馬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82).

245) 濟州子弟는 조선시대 제주 세 고을의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上京從仕하기를 희망하는 자 30명을 뽑아서 서울에서 근무시킨 자들을 말한다. 제주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토속적인 질서체계의 遺風이 남아서 그들에 대한 교화 및 회유책으로 토관제와 함께 제주자제의 上京從仕·受祿制를 두었다. 제주자제의 상경종사는 조선 태종실록에도 나타나 있으나(《태종실록》 권19-63, 태종 10년 6월 갑인) 세종 10년 8월 左司諫 金孝貞 등의 상소에 의하면 제주 京在所에서 천거한 자를 바로 直長 등 東班職으로 임명함은 부당하니 제주자제 敍用은 세종 10년 4월 10일의 受敎에 따라 西班牙兒職을 주도록 하되 그 중 文章과 吏文에 모두 능한 자를 동반직에 임용하도록 하고 경재소의 천거제를 폐지하자고 하였으나 임금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세종실록》 권41-10, 세종 10년 8월 경자). 세종 10년 4월의 受敎는 병조에서 짬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제주자제를 단지 本州의 경재소의 薦狀만으로 임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앞으로는 安撫使(제주목사의 前身)가 그 인품과 世系 및 조상의 공로를 고찰하여 병조에 공문을 보내어 병조에서는 경재소의 薦狀을 아울러 고찰하여 임용한다는 것이다(《위의 책》 권40-3, 세종 10년 4월 임술). 경국대전의 병진 番次都目에 의하면 제주목사가 제주자제 중 上京從仕하기에 적당한 자를 골라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는 이를 임금에게 보고하고 병조에서는 그들을 장부에 등록한 다음 매일 출근시켰다. 제주자제는 근무일수 450일을 채우면 官階를 받고 종6품에서 종9품까지의 체아직도 받는다. 그들은 상경할 때 말을 進上하고 대신 쌀이나 綿布를 받는 것이 관례였으며 돌아갈 때에는 馱馬를 지급받는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83).

246) 押貢人은 貢物의 운송과 상납을 맡은 貢物押領人이다. 공물압령인은 대개 향리로서 貢吏라고도 한다. 貢吏(稅貢人吏)는 首戶長이나 記官 등 지식이 있고 富實한 자 중에서 선정하며(《성종실록》 권10-21, 성종 2년 5월 정유), 공물의 수송은 주로 水運으로 하였지만 驛站에 의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진상품의 上送은 주로 驛馬를 이용하였다.

급한다. ○ 朝官(朝士)과 番上軍士의 거주지가 지방인 경우에 그 시체는 역 말을 통하여(傳驛) 내려 보낸다. ○ 군사사정이 긴급할 때에는 雙馬를 쓴다. ○ 짐말에 싣는 중량은 한 마리당 100근을 싣도록 한다. [續] 임금이 거동할 때의 향기로운 술(御用酒)을 싣고 갈 짐말의 수는 짐의 수량에 따라 미리 정하여 준다. ○ 말을 타야할 大小의 奉使人員(御使와 御史)과 觀察使 및 節度使는 모두 馬牌를 받으며, 임무를 마치고 復命하거나 교체되어 돌아갈 때에는 즉시 반납해야 한다. 일응 지방으로 말을 주어 내려 보낸 인원이 任地에 도착하면 관찰사와 절도사는 마패의 포장과 封印을 직접 살펴서 서울로 올려 보내어 尙瑞院에 도착하도록 해야 하며, 기한내에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패를 받아간 사람을 엄중히 문책(推問)한다. 馬牌를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는 이 죄(期限內不送罪) 외에 죄를 加重하고, 馬牌가 없는 경우에는 함부로 말을 탄 죄(濫乘罪)와 같이 본다. ○ 英陵과 寧陵의 獻官(祭官) 및 비변사와 승문원의 郎廳(郎官)이 회람 공문서를 갖고 다닐 때, 그리고 각 군의 徵召集關文을 갖고 있는 將校에게도 모두 말을 지급한다. ○ 관찰사·절도사를 급속히 떠나 보내야할 때에는 定數 이의 말을 더 지급하고, 급한 일로 가는 奉使 인원에게는 軍營馬를 징발하여 파발마로 대용(入把)하되 경기도의 첫 驛站에 이르면 파발마로 바꾼다. ○ 陵에 幸行할 때에 朝士로서 역마를 빌려 타고 가는 자와 지방의 軍官이 마패없이 단지 본도의 草料狀만으로 역마를 타고 가는 자는 모두 濫乘律로 논죄한다. ○ 함부로 말을 탄자(濫乘者)는 관직의 품계가 높건 낮건 간에 해당역의 察訪이 직접 임금에게 서면보고(狀聞)하도록 하되 察訪이 參外官(7품 이하)인 경우에는 관찰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마패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말을 내준 驛官은 私典律(사사로이 내준 죄)에 따라 논죄한다. [增] 왕명을 받아 부정행위자를 조사하러 가는 中使(환관인 사절) 및 承旨에게 말을 내줄 때에는 단지 別監과 書吏까지만 給馬를 허용한다. ○ 성밖으로 임금이 거동할 때에는 承旨와 史官(注書와 檢閱)에게 모두 말을 지급한다. ○ 현직과 전직의 규장각 관원이 휴가를 받아 여행할 경우에 모두 말을 지급하되 提學과 直提學은 重臣(重宰)의 여행으로 보고 直閣과 待敎는 각각 본인의 품계에 따른 여행으로 본다. 전직 직각과 대교인 자의 벼슬이 重宰에 이른 경우에는 전임 제학과 직제학의 예에 의한다. 抄啓文臣²⁴⁷⁾이 휴가를 받아 여행하는 경우에는 단지 한 마리의 역마와 두

247) 抄啓文臣은 당하관 중에서 글재주가 있는 자들을 선발할 목적으로 매달 진행되는 제술·강독 등 시험을 주관하기 위하여 임명되는 시험관을 말한다(오희복, <봉건관료기구 및 벼슬이름 편람>, 여강출판사, 1992, <북한판, 1989>, p.319).

사람의 驛夫를 내준다. ○ 각 陵의 祭物을 싣고 가는 마필에 관하여 奉常寺에서 수량을 더하여 과장되게 보고한 경우에는 濫騎律을 시행한다. ○ 大小使者(使星)의 下人(下屬)이 驛人에게 賂物을 받은 경우에는 使者인 大君과 王子君 이하에게 모두 濫騎律을 적용한다. ○ 공무로 인한 여행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大君·王子君·大臣일지라도 말을 내주라는 왕명이 없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英陵과 寧陵의 獻官을 守令 중에서 임명(差定)한 후에 말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이번에 폐지한다. [補] 宗正卿이 휴가를 받아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官階(資級)에 따라 말을 지급하고, 현직과 전직 副提學·典翰은 규장각 관료와 같이하며, 應敎 이하는 抄啓文臣과 같다. ○ 성밖으로 임금이 거동할 때 承旨와 史官에게 말을 내준다는 것은 이번에 폐지한다.

【上等乘²⁴⁸⁾(말)】 【大君】 【議政 이하】 【堂上3품 이상】 【赴京使】

【副使】 각 1마리 [續] 【御史】 【通信使】 각 1마리.

【中等乘】 【堂下官 6품 이상】 【9품 이상】 【赴京書狀官】 【從事官】

각 1마리 [續] 【通信從事官】 【製述官 이하】 각 1마리.

【下等乘】 【정2품 이상】 3마리 [續] 1마리를 줄인다. 【堂上3품 이상】

2마리 [續] 1마리를 줄인다. 【赴京從人²⁴⁹⁾】 1마리. 【御史】 [續] 1마리. ○ 【6품 이상】 1마리 [續] 삭감한다.

【馱(짐말)】 【大君】 【議政】 3마리 [續] 1마리를 줄인다. 【중2품 이상】

2마리 [續] 1마리를 줄인다. 【堂上3품 이하】 【9품 이상】 1마리. 【赴京使】 【副

248) 乘이란 乘用의 말을 의미한다. 乘用馬는 馱馬(짐말)와 구별되고 있다.

249) 赴京從人이란 赴京使(중국가는 使節)일행에게 딸린 從者를 말한다. 조선후기의 燕行使의 從者로서 庫直奴子·書者·각종의 馬頭·左南馬·軍牢·日傘奉持·輜扶囑·引路·廚子·刷馬領將 기타 각종 馬夫 등이 있었다(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1970, p.66).

使】2마리. 【書狀官】1마리. 【從事官】 및 【從人】 각 2인당 1마리. 【御史】 續 1마리. 【通信使】 續 2마리. 【從事官】 續 1마리. 【製述官 이하】 續 2인당 1마리.

【草料】²⁵⁰⁾ 原 軍官·宦官·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鎭將·평안도 博川 以

西와 영안도 洪原 이북의 守令 및 그 가족과 教官·歸鄉子弟²⁵¹⁾·貢物호송인에게 준다. 濟州子弟 및 공물수송인도 같다. 續 戰船·烽燧·松田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조사와 進上品을 올려 보낼 때 따라가는 將校와 근무성적 평정서(褒貶通議)나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호송하여 가는 將校 및 각 軍營으로부터 심부름 나와서 서울에 이르는 자의 草料狀은 병조와 경기감영에 반납한다. 【從人】 【2품 이상】 6명. 【3품 이하】 4명. 【7품 이하】 2명. 【관직이 없는 사람】 1명. 續 【各營將校】 2명. 【赴防出身】 1명. 補 이번에 폐지한다. 【馬】 【2품 이상】 大 2마리, 小 1마리. 【3품 이하】 大·小 각 1마리. ○ 都護府 이상의 守令에게는 大 1마리를 더한다. 補 이번에 삭감한다. ○ 【7품 이하】 大·小 각 1마리. 【관직이 없는 사람】 小 1마리. 續 【各營將校】 小 1마리. 【赴防出身】 私馬 1마리를 가지게 한다. 補 이번에 폐지한다.

【路文】 增 병조에서 板을 새겨 인쇄하여 내주되 관원의 수행인의 명칭(從人名色)을 품계에 따라 써넣으며, 大·小의 특별使臣(別星)도 한결같이 路文

250) 草料는 관원이나 일정한 無官職人이 공무로 여행할 때 沿道の 각 驛站으로부터 제공받는 馬芻(草)와 음식물(料)을 말한다(《經國大典 註解》 下 後集 兵典). 때로는 草料를 馬芻(풀)와 음식물의 공급을 명령하는 문서(草料貼)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당사자의 資級에 따라 馬匹數와 從人數가 정해져 있으므로 거기에 해당하는 꼴과 음식물을 지급받게 되겠지만 초료의 支持가 각역에서는 큰 부담이 되었으므로 고려말에도 諫官이 上書하여 각종 使行員 기타 공무여행자의 過多로 인한 각역의 피폐상을 지적하였다(《礪溪隨錄》 권22, 兵制後錄, 郵驛). 여하간 《대전회통》에서는 초료의 지급대상 인원(從人)과 馬數가 많이 줄었다.

251) 歸鄉子弟는 부모를 뵈기 위하여 귀향하는 관원이나 관인을 말하는데 문종 즉위년 11월 병조에서 啓한바에 의하면 宦者들이 부모의 病을 청탁하고 휴가를 받아 귀향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휴가받은 자에게는 길이 멀거나 가깝거나 간에 모두 초료를 줌으로서 각역에서의 支持之弊가 적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근무기한이 만료(3년)되어 부모 뵈오러 가는 경우 이외에는 480리 이상의 먼길을 가는 자에게만 초료를 지급하자는 것이었고 임금이 이에 따랐다(《문종실록》 권4-47, 문종 즉위년 11월 무신).

을 준수하여 거행한다. 白文(官印이 없는 路文)과 先文(本人 스스로 소지하지 않고 출발전에 通知하는 路文)을 일체 엄금하며, 범법자는 濫騎律로 논죄한다.

【試取】²⁵²⁾ 原 무릇 남의 손을 빌려 시험을 친 자와 대리시험을 쳐준 자에 대해서는 杖 100刑을 가하고 그 몸은 水軍으로 충원한다. 續 武科의 경우는 이번에 別試·謁聖試·庭試·觀武才 등으로 과거의 명목이 증가하였다. 內禁衛 이하 특체에 관한 諸法을 이번에 바꾸어 中日·試射·取才 등 諸法으로 하였다. 增 대리로 활쏘기 시험을 쳐준 자는 남의 손을 빌려 활쏘기 시험을 친 자에 비하여 2등을 더하여 처벌(勸律)한다.

【木箭】²⁵³⁾ 原 標의²⁵⁴⁾의 거리는 240보이다. 무릇 步射用²⁵⁵⁾으로는 3矢를 쏘는데, 매번 1矢가 표적에 미칠 때마다 7分(점)을 주며, 표적을 넘으면 매 5步당 1分(점)을 더하고, 50步를 지나치면 비록 표적 범위 밖으로 화살이 날아가도 점수를 준다. 앞의 표적은 좌우 거리가 50보 이고, 뒤의 표적은 좌우 거리가 70보 이며, 앞뒤 표적 사이의 거리는 50보 이다. ○ 初試에서는 1矢 이상을 득점해야(표적에 미치거나 표적을 넘어야) 하며, 복시에 서도 같다.

252) 試取는 武才를 시험하여 뽑는다는 뜻으로 새롭게 군사를 선발하는 경우와 기존의 군사들에게 시험보이는 鍊才의 경우가 있다. 史典에서는 諸科와 取才를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兵典에서는 이를 試取라는 단일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취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 木箭·鐵箭·片箭·騎射·騎槍·격구·柳葉箭·편추·講書 등이 있고 시험의 종류에 따라 鳥銃 기타가 있다(《대전회통》 병진, 試取).

253) 木箭은 大閱이나 武科를 비롯 試取 또는 教習에 사용하는 화살로서 화살촉은 나무를 깎아 끝을 몽둥하게 만들었으며 깃이 좁고 화살대의 길이는 3尺 8寸 내지 4尺이다(《國朝五禮儀序例》 권4, 軍禮, 兵器圖說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85).

254) 標의이란 보통 과녁을 설치한 標識板(표지판)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활을 쏘아 득점할 수 있는 거리와 범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세운 侯와 旗를 말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85).

255) 步射는 徒步중에 활을 쏘는 무예시험으로 木箭과 鐵箭으로는 멀리 쏘는 능력을 시험하고, 片箭과 柳葉箭으로는 정확히 쏘는 능력을 시험하였다. 步射는 武科(柳葉箭을 쓰지 않는다)를 비롯한 각종 試取와 서울 및 지방군사들의 훈련용으로 행하였다(《세조실록》 권27-4, 세조 8년 정월 계묘).

【鐵箭】²⁵⁶⁾ 原 標的의 거리는 80步이고, 화살 하나의 무게는 6량이 다. 매번 1矢가 표적에 미칠 때마다 7分(점)을 주며, 표적을 넘으면 매 5보 당 1分(점)을 더한다. ○ 初試에서는 1矢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覆試에서도 같다. 續 80보에서 100보까지는 안표적의 좌우 거리가 각각 15보이나 100보를 넘으면 그러한 제한이 없다. 방패에 맞은 경우에는 표적을 10보 물려서 점수를 준다. 增 3矢를 쏜다.

【片箭】²⁵⁷⁾ 原 標的의 거리는 130步이며, 매번 1矢가 標的板에 맞힐 때마다 15分(점)을 주고, 貫中²⁵⁸⁾하면 점수를 두배로 준다. ○ 標的板(侯)²⁵⁹⁾의 너비가 8척3촌, 길이가 10척8촌이고, 과녁(貫)의 너비는 2척2촌, 길이가 2척4촌이다. ○ 營造尺²⁶⁰⁾을 쓴다.아래도 모두 같다. 續 화

256) 鐵箭은 木箭과 같이 무과를 비롯한 試取나 교습에만 사용하는 화살로서 화살촉은 철로 만들었으나 둥글고 날이 없다. 역시 깃이 좁고 화살대의 길이도 목전과 같다(《앞의 책》 4, 軍禮兵器圖說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85~586).

257) 片箭은 화살의 길이가 1尺 2寸으로 매우 짧으며 片箭筒을 사용하여 발사한다(同上). 편전도 목전·철전과 더불어 試取와 교습에도 사용하였으나 實戰에 많이 쓰여 중요시하였다(《성종실록》 권152-6, 성종 14년 3월 병오).

258) 貫中이란 과녁에 맞춘다는 뜻인데 貫(과녁)은 활을 쏠때 세우는 方形의 목표물의 중심부분이다. 步射에서 片箭을 쏠 경우 貫을 목표물(侯)에 다는데 侯와 貫은 方形이며, 貫은 흰가죽으로 만들어 곰이나 고라니, 돼지 등의 머리를 그려넣었고 활을 쏘는 거리에 따라 크기를 달리 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86).

259) 侯는 步射(활쏘기) 때의 목표물인 과녁을 다는 표적판으로서 방형이다. 특정한 색깔의 布(御射는 붉은 바탕의 베 기타는 푸른 것)를 바탕으로 하여 그 가운데에 白色의 가죽으로 방형의 과녁(貫)을 만들고 거기에 각종 동물의 머리를 그려넣었다. 임금의 활쏘기에는 곰의 머리, 종친 및 文·武官의 활쏘기에는 고라니의 머리, 무과를 비롯한 試取와 교습 등에는 돼지의 머리를 각각 그려넣었다. 또 활을 쏘는 거리에 따라 遠侯·中侯·近侯를 따라 사용하였으며 거리 따라서 侯와 貫의 크기가 각각 달랐다(《國朝五禮儀序例》 권4, 軍禮射器圖說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86).

260) 營造尺은 토목공사 등에 주로 사용하였는데 《경국대전》 工典 度量衡에 의하면 周尺 1尺의 길이가 黃鐘尺으로 6촌 6리이고 營造尺 1척은 黃鐘尺으로 8촌 9분 9리이므로 영조척 1척의 길이는 30.7cm이다.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86에서는 31.55cm라 하나 필자의 계산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차이는 주척 1척의 길이가 23.1cm(중국고궁박물관)에서 20cm(수표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러하나 1992. 12.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선시대에 널리 사용하던 주척을 모아 과학자들에게 측정을 의뢰한 결과 대부분 20.7cm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대전회통연구》 호전·예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4. 12, p.19). 또 布帛尺 1척은 황중척으로 1척 3촌 4분 8리이므로 약 46cm이다.

살의 길이는 축을 제외하고 8촌이며, 布帛尺을 쓴다. 增 3矢를 쓴다.

【騎射】261) 原 1발을 맞힐 때마다 5分(점)을 주는데 4發4中은 5발3중에 준하고, 4발3중은 5발2중에 준한다. ○ 5개의 標的(과녁) 사이의 거리는 각각 35步이다. ○ 標的(과녁)262)의 직경(圓徑)은 1척, 표적을 세운 곳(射梁)의 높이는 1척5촌이다. 續 지금은 말타고 달리면서 標的인 芻人을 쏜다. ○ 5개의 標的의 좌우 거리는 20步이고, 그 중 內馬路는 2步이다. 몸을 굽히고 말을 달리다가 앞을 향하여 마주 쏘며, 활쏘기를 마친 후에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손을 들어 활을 돌려야 한다. ○ 內馬路를 벗어나 標的 옆을 달리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활쏘기를 마치고 원위치에 되돌아오지 못한 자(不及漏水限者) 등은 비록 화살이 的中하여도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貫革】(과녁)263) 續 과녁의 거리는 150步이다. ○ 標的의 길이는 10척8촌 너비는 8척3촌이고, 貫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3분의 1이다. ○ 武科의 初試와 覆試 및 都試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61) 騎射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것으로서 무과를 비롯한 試取의 시험과목의 하나였다. 세종 15년 紅白의 과녁(革)을 좌우로 5개씩 세우고 말을 달려 왕복하면서 5차례 활을 쏘게 하였다. 화살을 과녁에 맞힌 사람은 과녁 하나 마다 3分(점)을 주며(경국대전에서는 5分) 화살 하나를 쏘지 못할 때(未發一矢)마다 3分을 감한다. 말을 통제하지 못하고 左弓右射하거나 右弓左射하면서 화살을 과녁에 맞힌 경우에는 1分을 준다. 비록 다섯 과녁에 모두 맞혔다고 하더라도 말을 빨리 몰지않거나 활을 가득 당기지 않은 경우(《속대전》에서는 內馬路를 벗어나 표적옆을 달리거나 정해진 시간내에 활쏘기를 마치고 원위치에 돌아오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화살이 적중하여도 전혀 점수(分)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화살을 긴것으로 쓰면 1分을 더 준다(《세종실록》 권59-44, 세종 15년 3월 갑자 및 《같은 책》 권133-34, 五禮 嘉禮 儀式, 武科殿試儀와 《속대전》 병전 試取).

262) 騎射의 표적(的, 과녁판)은 흰가죽 등을 써서 원형으로 만들었으며, 武科를 비롯한 試取와 教習 등에 近射用으로 썼다. 騎射에는 紅的과 白的을 각각 5개씩 설치하여 좌측에는 紅·白·紅·白·紅, 우측에는 白·紅·白·紅·白의 순서로 두었다. 또 좌측과 우측 사이의 거리는 35步(《속대전》에서는 20步), 인접한 紅的과 白的의 거리는 5步(속대전에서의 內馬路는 2步)이다. 왼손으로 활을 잡는 자는 왼쪽으로부터 말을 달려 나가면서 좌측의 제1 표적을 쏘고, 이어서 우측의 제2 표적, 좌측의 제3 표적, 우측의 제4 표적, 좌측의 제5 표적을 차례로 쏘는데 모두 紅的을 쏘게 한다. 오른 손으로 활을 잡는 자는 그 逆順으로 오른쪽에서 말을 달려 쏘게 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87 및 주 261의 실록기사와 《속대전》 병전, 試取).

263) 步·射의 貫革(과녁)의 거리는 150步이고 표적의 길이는 10척 8촌, 너비는 8척 3촌이며, 貫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표적의 3분의 1이다.

【騎槍】原 한번 명중할 때마다 5分(점)을 주되 자세를 제대로 갖춘 자라야 한다. ○ 말을 달려나간 후에 두손으로 창을 잡고 높이 들어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즉시 돌려서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고서 첫번째 목표물인 허수아비에 이르면 찌른다. 정면을 명중한 자라야 한다.〈아래도 같다.〉 그 다음으로 창을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두번째 목표물인 허수아비에 달려가서 찌르고 또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고서는 세번째 목표물인 허수아비에 달려가서 찌른다. 찌르기를 마치면 몸을 돌려 왼쪽을 보고 창을 갖고 뒤를 가리킨다. 오른쪽으로도 역시 이와 같이 한 후 창을 끌고 말을 달려 출발지점(出馬處)으로 되돌아온다. ○ 세 허수아비 사이의 거리는 각 25보이다. ○ 창 길이는 15척5촌이다. 續 창 무게는 30근 길이는 15척5촌이다. ○ 정하여진 길을 벗어나 옆길로 달렸을 경우에는 騎芻(달리면서 허수아비 쏘기)의 경우와 같이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擊毬】264 原 毬門으로 공(毬)을 쳐낸 자에게는 15分(점)을 주고 옆으로 공이 지나가게 한 자에게는 10분을 주되 규정된 자세를 갖춘 경우라야 한다. ○ 말의 출발지점인 깃발(出馬旗) 아래로부터 공채(杖)를 말의 목에 가로놓고 공을 놓아둔 깃발(毬旗) 아래까지 달려와서 排至²⁶⁵로서 공을 움직이고 持彼²⁶⁶로서 공을 되돌린다. 공채의 안쪽으로 비스듬히 공을 끌어당겨 높이 쳐 올리는 것을 排至라 하고 공채의 바깥쪽으로 공을 밀고 당겨 쳐

264) 擊毬는 페르시아에서 기원하였다고 하며 말을 달리면서 하는 騎擊毬와 지상경기로서 하는 步擊毬가 있다. 격구는 중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고려시대에는 대중적인 오락성 경기로서 성행하였고, 조선초기에는 騎射·騎槍·騎劍 등을 익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격구에 관한 훈련이 장려되어 세종 7년에 무과의 試取와 春秋 都試의 시험과목으로 되었다(《세종실록》 권28-8, 세종 7년 4월 무오). 격구시험은 응시자 단독으로 행하며 경기로서의 격구를 토대로 시험규칙을 정하였다(《위의 책》, 권50-22, 세종 12년 11월 경신). 그러나 《속대전》에서는 무과 시험과목으로서의 격구를 폐지하였다.

265) 排至는 排之 또는 排技라고도 하며 騎擊毬를 할 때에 공채 끝의 주걱의 안쪽으로 공을 쳐 올리는 것을 말한다. 말의 출발지점인 깃발 아래로부터 말을 출발시켜 공이 있는 곳까지 달려가서 처음 공을 쳐올리는 경우와 오목한 곳에 공이 들어간 경우에도 排至를 한다(《경국대전》 병전, 試取 격구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88).

266) 持彼는 排鈴이라고도 하며 騎격구에서 공채 끝의 주걱 바깥쪽으로 공을 밀어서 굴러가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으로 말의 출발지점인 깃발로부터 200보 떨어진 곳에 세운 5부너비의 毬門을 지나 세번 돌고나서 공을 골문 안으로 친다(同上).

는 것을 持彼라고 한다. 배지나 지피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공채를 말의 가슴에 닿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割胸²⁶⁷)이라 한다. 이렇게 하기를 세 번 끝낸 다음에 곧 말을 달려 공을 친다. 비록 공치는 동작을 세 번 마쳤더라도 擊毬할 형세가 되지 못하면 4회나 5회 하여도 무방하다. 격구를 처음 시행할 때에 縱으로 공을 치지 아니하고 공채를 잡아서 말의 귀와 나란히 가로놓는데 이것을 比耳²⁶⁸) (귀견주기)라고 한다. 두 번이나 세 번 比耳를 한 후에 손을 들어 縱으로 공을 치며, 이 때에 손은 높이 올라가도 공채는 밀으로 드리워져서 흔들리는데 이것을 垂揚手²⁶⁹)라고 한다. 垂揚手는 정해진 회수가 없으며 공을 골문(毬門)으로 내보낼 때까지 행한다. 垂揚手의 동작을 할 때 몸을 옆으로 기울이면서 뒤로 누워 공채를 말꼬리에다가 건주는데 이것을 防尾²⁷⁰)라고 한다. 공이 문을 나간 후에는 비록 공을 치지 아니하더라도 헛동작으로 垂揚手를 행하며, 또 공채를 말의 목에 가로 두고 말을 달려 출발지점(出馬旗下)으로 돌아온다. 혹시 比耳를 할 때에 미처 垂揚手의 동작을 하지 못하고 공이 만약 문을 나갔으면 골문(毬門) 안에서 헛동작으로 垂揚手를 행하며 또 골문(毬門) 밖에서도 역시 헛동작으로 垂揚手를 행한다. 혹시 공이 골문(毬門) 앞에서 멈추려고 하면 다시 쳐서 골문(毬門) 바깥으로 내보내어도 역시 무방하다. ○ 출발지점(出馬標)은 공을 둔 곳(置毬標)으로부터 50보 거리에 있고, 공을 둔 곳은 골문(毬門)으로부터 200보 거리에 있으며 골문(毬門)의 너비는 5보이다. ○ 공채 끝의 주걱은 길이가 9촌이고 너비가 3촌이며 자루는 길이가 3척5촌이다. 공을 둔 곳의 둘레는 10척3촌이다.

續 무과시험 과목으로서의 擊毬는 이제 삭감되었다.

267) 割胸이란 騎격구에서 排至나 持彼를 하기 위하여 취하는 자세인데, 주걱 부분을 아래쪽으로 해서 공채를 말의 가슴부분으로 대어 마치 칼로 말의 가슴부분을 베는 듯한 모양을 갖추는 것이다(同上).

268) 比耳는 격구를 처음 시작할 때에 공채를 잡고 말의 귀와 나란히 가로 놓는 것을 말한다. 이는 騎격구에 있어서 공을 치기 위해서 말을 달리는 동안에 취하는 자세이다(《경국대전》병전, 試取 격구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89).

269) 垂揚手는 騎격구의 마지막 단계로서 골문으로 공을 쳐내기 위한 자세이다. 比耳한 뒤에 양손으로 공채를 잡아서 높이 올리고 주걱부분을 밀으로 드리워서 공을 치게 되는데 騎격구의 동작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손은 높이 올라가도 공채는 밀으로 드리워져서 흔들린다(同上).

270) 防尾는 騎격구에서 比耳로부터 垂揚手까지 진행되는 사이에 주걱부분을 머리 위로 크게 돌려서 밀으로 드리우게 되는데, 이 때 몸을 옆으로 누워서 얼굴을 위로 하고 공채의 주걱으로 말의 꼬리를 치듯이 공채를 말꼬리에다 건주는 것을 말한다(同上).

【柳葉箭】²⁷¹⁾ 續 標的의 거리는 120보이다. ○ 표적의 길이는 6척6촌 너비가 4척6촌이고, 과녁(貫)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그 3분의 1이다. ○ 화살의 무게는 8錢(돈)이며, 화살촉은 날카롭고 가는 것을 禁斷한다. 武科의 初試와 覆試에는 柳葉箭 쏘기가 없다. 增 5개의 화살로 시험한다.

【鳥銃】 續 標的의 거리는 100보이다. ○ 한 번 的中할 때마다 7分(점)반을 주며, 貫中하면 배를 준다. ○ 표적의 길이는 7척이고 너비는 2척이다. 增 세 번 쏘게 한다.

【鞭芻】²⁷²⁾ 續 말을 달려나간 후에 오른손으로 鐵鞭을 잡고 뒤를 향해서 들고, 또 두손으로 앞을 향해서 들며, 이어서 좌우를 향해서 각각 한 번씩 휘두른다. 한 번씩 친 후에는 문득 좌우로 한 번 휘두른다. ○ 馬路를 벗어나 옆길로 달리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치기를 마치고 원위치에 되돌아오지 못한 경우에는 騎芻의 경우와 같이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표적인 6개의 허수아비는 각각 28步씩 서로 떨어져 있고 좌우의 거리는 馬路로부터 3步 떨어져 있다.

【講書】²⁷³⁾ 原 책을 보고 강론(臨文)하도록 한다. 通은 7分(점), 略은 5分, 粗는 3分을 준다. ○ 覆試에서는 4書 5經 중에서 1書, 武經7書 중에서 1書, 通鑑·兵要·將鑑·博議·武經·小學 중 1書を 모두 스스로 원하는 바

271) 柳葉箭이란 화살의 일종으로 화살촉의 모양이 柳葉과 비슷하다. <속대전>에서 유엽전 쏘기가 鳥銃과 함께 시험과목으로 들어갔으나 무과의 初試와 覆試에서는 유엽전 쏘기가 없다 (<속대전> 병전, 시취).

272) 鞭芻는 <속대전>에서 추가된 무예시험과목의 하나로서 말을 타고 鐵鞭을 휘두르면서 달리다가 芻人(허수아비)을 치고 정해진 시간내에 원위치에 되돌아와야 득점할 수 있다(同上).

273) 講書는 經書와 武經 중의 1書 혹은 기타의 책에 관하여 혹은 책을 보고(臨文講書) 혹은 책을 보지 않고(背誦講經) 義理와 註疏를 물어서 通·略·粗의 성적을 매겼다. 무과의 經書에 관해서는 <朝鮮時代의 科擧制度>, <대전회통연구> 禮典編(한국법제연구원, 1994, 12) pp. 545~552 및 pp.588~602 참조.

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經國大典은 필수로 한다. **續** 式年 覆試의 경우에는 經國大典의 규정과 같이하나 增廣覆試에서는 단지 武經7書와 4書5經 중 1書를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한다. **增** 무경7서 중 吳子를 제외하며, 그 외는 續大典과 같다.

【武科式年】²⁷⁴⁾ **原** 初試²⁷⁵⁾의 院試²⁷⁶⁾는 訓練院에서 응시자의 응시자격 심사 후 성명을 등록(錄名)하여 시험 보여 뽑으며, 뽑는 인원은 70인이다. 鄉試²⁷⁷⁾는 兵馬節度使가 差使員(파견관)을 정하여 응시자의 응시자격 심사 후 성명을 등록시켜 시험 보여 뽑으며, 뽑는 인원은 경상도 30인, 충청도·전라도 각 25인, 강원도·황해도·영안도·평안도 각 10명이다. ○ 鄉吏는 武經7書를 講하는 시험에서 粗 이상을 받으면 무과 응시가 허용된다. ○ 覆試²⁷⁸⁾에서는 병조가 훈련원의 7품이하의 관료와 함께 응시자의

274) 解說篇 14. 武科式年 參照.

275) 무과의 초시는 식년시의 전년 가을에 서울·경기지방 거주자는 訓練院에서 기타 지방거주자는 각도에서 실시하여 모두 190명을 뽑도록 하였다. 시험과목은 木箭·鐵箭·片箭·騎射·騎槍·격구 등 무예와 講書시험이 있었다(《경국대전》 병전 試取). 《속대전》에서는 유엽전·조총·편추 등 무예시험과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각종 시험과목을 모두 시험쳐야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으로부터 낙점을 받아 1技 혹은 2技만 시험보인다.

276) 院試는 서울·경기지방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무과초시로서 訓練院이 주관하였다. 훈련원은 訓練觀을 세조 12년에 개칭한 것인데 그 이전에는 院試를 觀試라 하였다(《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앞의 책》, 한국법제연구원, p.492). 본래 院試는 병조와 훈련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試取하였으나 세종 9년부터 훈련관(원) 단독으로 시취하였다(《세종실록》 권35-21, 세종 9년 3월 임진). 선발인원은 태종 2년에는 50명(경기에서는 향시로 40명)이었으나, 京畿鄉試를 폐지하고 그 인원수 중 일부를 院試에 추가하여 70명으로 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90).

277) 鄉試는 서울·경기 이외 지방에 거주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과의 초시로서 병마절도사가 差使員(파견관)을 정하여 試取하였다. 식년 무과 초시의 試官은 各所마다 2품 이상 1인, 당하문관 1인, 무관 2인으로 하고 감찰을 監試官으로 하였고, 증광무과 초시의 시관은 2품 이상 문관 1인과 무관 2인, 당하문관 1인과 무관 2인(감시관은 兩司에서 각 1명씩 2명 파견)으로 하였으므로(이성무, 《앞의 책》 pp.249~250) 여기서의 差使員이란 文·武科를 급제한 都事·守令·僉使·營將 등이라 생각되며, 主試官은 병마절도사 또는 수군절도사(혹은 兼兵使인 監司) 자신이라 할 수 있다.

278) 武科覆試는 무과초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식년 봄에 병조에서 훈련원의 관료와 함께 錄名試取한다. 복시의 시관은 2품이상 문관 1인과 무관 2인, 당하 문관 1인과 무관 2인(감시관은 양사에서 각 1인씩 파견)이었으며(이성무, 《앞의 책》 pp.249~250), 初場에서는 木箭·鐵箭·片箭, 中場에서는 騎射·騎槍, 終場에서는 講書를 시험하여 三場의 총점을 계산해서 합격

응시자격 심사 후 성명을 등록하여 시험 보여 28인을 뽑는다(錄名試取).
 ○ 殿試²⁷⁹⁾에서는 騎擊毬와 步擊毬²⁸⁰⁾로서 그 높고 낮은 차례(등수)를 정한다.
 ○ 등수는 甲科 3인, 乙科 5인, 丙科 20인이다.²⁸¹⁾ 續 增廣試에서도 같다.
 ○ 初試와 覆試에 있어서의 錄名試取의 정원수는 경국대전에 있으며, 大增廣試에 있어서는 초시와 복시에서 모두 정원수의 배를 뽑는다.
 ○ 初試의 두 곳 시험장소(兩所)에서는 각각 2품 이상 1인과 당하관인 문관 1인 및 무관 2인을 試官으로 임명하여 시험보여 뽑으며, 監察이 시험을 감독한다(監試官이 된다).
 ○ 覆試에서는 2품 이상의 문관 1인·무관 2인, 당하관인 문관 1인·무관 2인을 試官으로 임명하여 시험 보여 뽑으며, 사헌부와 사간원(兩司)의 관원 각 1인이 시험을 감독한다.
 ○ 殿試의 試官은 覆試의 試官과 같

여부를 결정하였다. 복시에 불합격한 자는 內禁衛·別侍衛·甲士 등으로 충원하였다(윤훈표, <조선초기 무과제도연구>, 연세대 대학원 1984, 석사학위논문).

279) 殿試는 낙제가 없는 시험으로 임금 또는 왕세자의 임석하에 원칙적으로 복시합격자(예의 直赴殿試者)를 대상으로 하여 科次(등급)만을 정하는 최종시험이다. 전시의 試官은 覆試의 試官과 같으나 議政 또는 1품관을 命官(主試官)으로 삼는다. <대전통편>에서는 전시의 시관으로서 대신 1인과 2품 이상의 문무관 각 1인, 3품 이하의 문무관 각 2인으로 규정하였다(<대전회통> 권4, 병전, 시취). 무과 전시에서도 처음에는 三場制를 취하였으나 세종 2년 3월 병조의 啓에 따라 講經시험을 제외하기로 하였으며(<세종실록> 권7-30, 세종 2년 3월 계미) <경국대전>에서는 騎격구와 步격구만을 시험보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시에 있어서는 사정에 의하여 시험을 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전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91).

280) 騎擊毬는 말타고 하는 격구로서, 경기로서 하는 경우와 시험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경기의 경우에는 200보의 거리를 두고 길북판 양쪽 끝에 골문을 세우고 두 隊로 편을 갈라 하며, 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자 단독으로 골문에 공을 쳐 넣는 것이다. 步격구는 맨땅에 서서 공채로 공을 쳐서 구멍에 넣는 경기로서 공채는 주격부분이 손바닥 만하고 소가죽으로 만들며 자루는 대나무를 합쳐서 만든다. 공은 계란만한 마뇌 또는 나무를 썼다. 步擊毬의 경우에도 응시자가 단독으로 공을 쳐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p.591~592).

281) 殿試는 등수를 정하는 시험으로 조선 국초에는 성적에 따라 乙科·丙科·同進士 또는 1·2·3 등으로 하였으나 세종 20년 이후 이를 乙科·丙科·丁科로 고쳤다가 세조 14년부터 甲科·乙科·丙科로 고쳤다. 무과에서 갑과로 급제한 사람이 官階·官職이 없는(白身) 경우 종7품직이 除授되었으며 원래 官階·官職이 있는 자에게는 加資하였다. 무과급제자가 28명인 경우에는 甲科 3인, 乙科 5인, 丙科 20인으로 특히 조선국초로부터 세종 26년까지는 그들이 모두 곧바로 임용되었으나(<세종실록> 권106-18, 세종 26년 10월 을해) 그 후 급제자 중 갑과를 제외하고는 白身인 경우 을과는 중8품의 散官, 丙科는 중9품의 散官을 받게 되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도 官階·官職이 있는 자에게는 加資하였으며 白身인 을과 및 병과 급제자는 散官으로서 訓練院權知나 別侍衛 등으로 分館되었다가 뒤에 관직진출이 가능하였으나 그것도 조선중엽 이후에는 무과급제자의 대량 배출로 거의 관직진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주 273 참조).

으나 또 議政 1인을 命官으로 삼으며, 간혹 전직 의정 및 1품관으로써 그것을 대신하도록 한다. ○ 11가지 무예기술을 列書하여 임금으로부터 낙점을 받아서 1技나 혹은 2技를 출제한다. ○ 서울에서는 鐘樓(종각)를 좌우로 나누어 왼쪽은 1所에 붙이고, 오른쪽은 2所에 붙이며, 지방은 충청·전라·경상도의 좌도를 1所에 붙이고, 그 우도를 2所에 붙인다. 또 함경도와 황해도를 1所에 붙이고, 평안도와 강원도를 2所에 붙인다. ○ 먼저 武技를 시험한 후에 講經시험을 보인다. **增** 殿試의 試官은 大臣 1인과 2품 이상의 文武官 각 1인, 3품 이하의 문무관 각 2인으로 한다. ○ 무릇 試官은 初試와 會試(覆試)에 있어서는 병조에서 추천하여 뽑고, 殿試와 親試에서는 승정원에서 추천하여 뽑는다. **【木箭】 【鐵箭】 【片箭】 【騎射】 【貫革】** **續** 새로 추가한다. **【騎槍】 【擊球】 【柳葉箭】** **續** 새로 추가한다. **【鳥銃】** **續** 새로 추가한다. **【鞭芻】** **續** 새로 추가한다. **【講書】**

【都試】 282) **原** 매년 봄 가을에 兵曹와 訓練院의 堂上官들이 議政府

282) 都試는 매년 봄·가을에 서울과 각 지방에서 시행하던 武人의 試取로서 武才를 가진 자를 뽑기도 하고, 무과급제자·내금위를 비롯한 동·서반의 종3품 이하자에게 시험을 통하여 승진 시키기도 하였다. 세종 13년 3월 병조의 啓에 의하면 지방 각도의 侍衛軍이나 營鎮軍 소속 군사들에게 활쏘기를 시험하여 取才任用하는 규정(조건)은 세종 2년 윤정월 29일의 受教에 의거, 활쏘기와 말달리며 활쏘기, 창다루기 등을 시험하여 수령은 有才者를 뽑아서 그 성적의 등급을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都節制使(후일 절도사)와 더불어 都試를 보여 1등자를 병조에 公文으로 보내서(移關) 다시 시험보여(更試) 임금에게 아뢰어 甲士로 補任하도록 하였다는 것과 그러나 각도의 군사가 地方取才나 兵曹都試 등으로 왕래하는데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도의 守城軍 및 閑良 중 응시를 원하는 자에게는 外方取才法이 없어서 폐단이 있으니 앞으로는 각 고을의 侍衛軍이나 營鎮軍에 속한 자 및 각 고을의 守城軍·한량인 중 자원을 상대로 수령이 매년 봄·가을에 활쏘기 시험과 말달리며 활쏘기 하는 시험을 보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도절제사와 더불어 界首官 부근에서 都試를 보여 그 등급수를 기록하여 병조에 공문을 보내어 장부에 기록해 두게 하였다가 다시 시험보여 그 성적을 상중하로 나누어 甲士 등에 임용한다는 것이었다(《세종실록》 권51-25·26, 세종 13년 3월 임신). 都試에 관한 《경국대전》의 규정은 세종 때의 제도를 토대로 한 것이나 《속대전》에서는 응시대상자 중 諸色人을 제외시키고 禁軍과 한량에 한정하며, 시험과목도 활쏘기 이외 조총쏘기가 추가되었다. 한량의 경우 성적불량자는 定虜衛로 降屬시키며 점수가 일정수준에 이르면 殿試에 直赴하도록 한다. 또 성적이 소정 점수에 이른 자가 무과급제자이면 邊將으로 임명한다(《대전회통》

· 諸曹 · 都摠府의 당상관 각 1인과 함께 軍士 및 동 · 서반의 종3품 이하와 閑良人²⁸³)들을 시험 보여 뽑는다. 武科及第者와 內禁衛 이외에는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른다. ○ 말타고 활쏘기와 말타고 창쓰기를 각각 두 차례 시험한다. ○ 190분(점) 이상 자를 1등으로 하고, 160분 이상 자를 2등으로 하며, 120분 이상 자를 3등으로 한다. ○ 지방은 兵馬節度使가 서울의 예에 따라 시험 보여 뽑은 후 임금에게 보고(啓聞)한다. 그 道의 守令 · 虞候 · 萬戶 및 그 子弟는 모두 그 道 내에서 응시하지 못한다. [續] 經國大典에 보이는 諸色人(특수병에 해당하는 여러 신분자)의 응시는 이번에 폐지하고 단지 禁軍에게만 시험 보여 初場에 鐵箭 3개가 소정거리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물러나게(汰去) 하며 시험을 마친 후 득점 화살 수가 6矢 미만일 경우에는 鳥銃 3발을 추가로 시험 보여 한발의 명중을 화살 하나 적중한 것으로 쳐서도 6矢가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都試의 규정에 따라 鍊才시험을 보이도록 한다. 그렇게 하여도 또 6矢가 미만인 자는 물러나게 하고 閑良은 定虜衛로 降屬시킨다. 말타고 鐵鞭으로 허수아비를 치는 무술(鞭芻) 이외의 각 무예기술 중 어느 한 기술에서 만점을 받은 자(沒技者)의 기초점수(元晝²⁸⁴)가 110분 이상이 되면 閑良은 殿試에 직접 응시(直赴殿試)하도록 하고 武科출신은 邊將으로 임명한다. 기초점수(元晝)가 미달인 자는 비록 어느 한 기술에 만점을 받았을 경우에도 乘用馬(熟馬)를 賜給한다. [補] 禁軍의 都試는 祿試射²⁸⁵)로 代行한다. 【木箭】 1矢 이상 【鐵箭】 1矢 이상 【片箭】 【騎射】 【貫革】 【騎槍】 【擊毬】 【柳葉箭】 【鳥銃】 【鞭芻】 【講書】 [原] 스스로 講書하기를 원

병전, 시취).

283) 閑良人은 조선초기에는 일정한 職事가 없는 無役人으로서 전직 品官을 포함한 文人 · 武人(士族子弟) 모두를 통칭하였으며 軍田을 지급받은 자는 馬兵으로서 일정기간 赴京宿衛의 임무가 있었다(천관우, 〈麗末鮮初의 閑良〉, 《近世朝鮮史研究》 일조각, 1981, p.52). 여기 대하여 한영우는 閑良을 (i) 職牒 · 職啣을 있으나 職事가 없는 관료 (ii) 職役이 없는 良人 혹은 士族의 子弟 등 2종으로 분류하고 전자속에는 전직관료 · 檢校官 · 添設官이 있다고 하고 후자인 閑散子弟 즉 未仕閑良 속에는 세종 때에는 양반자제 이외 평민자제도 포함된 듯하였으나 성종 · 중종대에는 모두 士族子弟라 하였으며, 그무렵부터 한량은 武士로 변해갔다고 하였다(한영우, 《朝鮮前期社會經濟研究》, 을유문화사, 1983, pp.256~271).

284) 元晝이란 1년 중 5월 · 11월에 禁軍이나 한량을 시험보여 110점 이상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즉 元晝이란 시험합격을 위한 기본점수인 것이다(《校註 大典會通》 조선총독부, p.526).

285) 祿試射는 녹봉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이는 무예(활쏘기) 시험이다(同上).

하는 자는 論語·孟子 중 1書, 5經 중 1經, 通鑑·將鑑·博議·兵要·孫子(286) 중 1書를 선택하도록 한다. **續** 講書는 이번에 삭감한다.

【禁軍】 試射 **補** 매년 5월과 11월에 兵曹判書가 시험 보여 뽑는데 득점한 화살 수에 따라 녹봉을 주며, 어느 한 무예기술에서 만점(沒技)을 한 閑良은 殿試에 직접 응시하도록 하고, 그가 武科출신인 경우에는 官階를 올려 준다(加資). ○ 別試에서 鐵箭을 쏘아 150步 이상 거리에 이르게 한 자는 어느 한 무예기술에 만점한 자(沒技者)와 같이 취급한다. **【柳葉箭】**

3巡(1巡은 5矢) **【騎芻】** 한차례.

【別試】²⁸⁷⁾ **續** 重試에 대응한 과거로, 혹은 나라의 경사로 인하여 설치 시행한다. ○ 初試는 兩所로 나누어 각각 2품 이상의 文官 1인과 武官 2인, 堂下官인 文官 1인과 武官 2인을 試官으로 임명하여 시험 보여 뽑고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료 각 1인을 監試官으로 한다. ○ 殿試에서는 議政 1인을 命官으로 한다. ○ 11가지 무예기술을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落點)를 받아 2가지 기술 혹은 3가지 기술로 시험 보여 뽑으며, 점수 혹은 적중 화살 수로 뽑는 것은 初試와 殿試가 같다. 그리고 初試의 합격자 정원수는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를 받아 정하고 殿試에서는 (初試) 합격자수의 多少에 따른다. ○ 모두 서울에 모아서 시행한다. **增** 殿試의 試官은 式年試에 있어서와 같다. **補** 初試는 式年試의 例와 같이 각 道에서 시험보여 뽑는다.

【木箭】 **【鐵箭】** **增** 화살 하나가 표적에 미치지 못하면 3矢가 적중하여도 모두 못쓰게 된다. **【柳葉箭】** **【片箭】** **【騎芻】**

286) 孫子は 중국 고대의 兵書로서 13편으로 되어 있다. 그 저자로서 春秋時代의 吳에서 벼슬한 孫武說 또는 孫武의 후손인 晉의 孫臏說, 그리고 魏의 曹操說 등 三說이 있다. 孫子は 兵法와 戰術만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諸侯의 內治·外交·국가경영의 방법·승패의 비결·人事의 成敗 등에 관해서도 탁월한 견해를 나타내어 그 戰略論은 후세의 武將들간에 널리 활용되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93).

287) 別試는 세조 때(親試는 태종 때)부터 시행되었으나 法典에 등재되기는 《속대전》부터이다. 別試는 나라의 경사나 重試에 대응한 과거인데 단 한번의 시험인 초시만으로 합격자가 결정되어 등급매기는 殿試를 거쳐서 확정된다. 조선 중엽 이후 別試급제자가 양산되었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주 273).

【貫革】 【擊毬】 【騎槍】 【烏銃】 【鞭芻】 【講書】

【庭試】²⁸⁸⁾ 續 나라의 경사로 인하여 설치 시행한다. ○ 初試와 殿試의 여러 법규정은 別試에 있어서와 같다.

【謁聖試】²⁸⁹⁾ 續 임금이 직접 文廟(공자의 사당)에 가서 酌獻禮를 올린 후에 설치 시행한다. ○ 初試와 殿試의 여러 법규정은 庭試에 있어서와 같으나 初試는 두 곳(兩所)에서 각각 50인을 뽑고 殿試에서는 임금이 직접 임석한다.

【重試】²⁹⁰⁾ 續 10년에 한차례 보이며 文官의 重試 경우와 같다.
○ 당하관으로부터 무과출신자이면서 관직이 없는 인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응시할 수 있다. ○ 初試와 殿試의 여러 법규정은 庭試에 있어서와 같다.
○ 初試의 兩所에서의 합격자 정원수는 謁聖試와 같다.

288) 庭試는 나라의 경사로 인하여 시행하며 별시와 마찬가지로 단 한번의 시험인 初試만으로 합격자가 결정되어 등급매기는 전시를 거쳐서 합격이 확정된다. 정시는 선조 27년부터 시행되었으며(이성무, 앞의 책, pp.156~157) 《속대전》에 처음으로 등재되었다.

289) 謁聖試는 세종 16년에 실시된 후 세조 때 한 번, 성종 때 두 번, 광해군 때 네 번, 인조 때 두 번, 효종 때 3번, 현종 때 한 번 등으로 별시에 비하여 자주 시행된 것은 아니나 숙종·영조·정조때에 비교적 많이 시행하였으며, 순조·헌종·철종때에는 다시 그 횟수가 줄어들었다가 고종때에 약간 늘어났다(이성무, 《위의 책》, pp.156~161). 알성시도 별시나 庭試와 마찬가지로 초시만으로 합격이 결정되어 등급매기는 전시를 거쳐서 확정된다. 다만 알성시의 전시에서는 임금이 직접 참석하며 《속대전》에 처음으로 등재되었다.

290) 重試는 10년에 한 번씩 보이는 시험으로 당하관 및 무과급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관직이 없는 인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응시할 수 있으며 庭試와 같이 초시만으로 합격이 결정되어 등급매기는 전시를 거쳐서 확정된다. 중시는 태종 7년부터 시행되었으나(이성무, 《앞의 책》 p.150) 《속대전》에 처음으로 등재되었다.

【勸武科】²⁹¹⁾ 增 初試와 會試가 없으며, 임금의 특별명령으로 인하여 실시하되 간혹 임금이 직접 임석한다. 합격자는 殿試에 직접 응시하도록 하며, 三營의 勸武軍官이 응시한다. 試官은 大臣 1인과 2품 이상의 文官과 武官 각 1인, 당상관인 문관과 무관 각 1인, 당하관인 문관과 무관 각 1인으로 하되, 임금이 직접 임석할 때에는 간혹 軍門의 都提調·大將·千摠·把摠·武官인 從事官이 (試官으로) 선임되기도 한다. ○ 11가지 무예기술을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낙점)를 받아 정하는 것은 別試에 있어서와 같다.

【外方別科】²⁹²⁾ 續 평안도·함경도·강화·제주 등지에 임금의 특별명령이 있으면 곧 시행하는데 만약 重臣을 별도로 파견하면 文科의 경우와 같이 初試를 생략하고 즉시 그곳에서 합격자 발표(放榜)를 하며, 만약 御史를 별도로 파견하면 합격자를 殿試에 직접 응시하도록 한다. ○ 11가지 무예기술을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를 받아 시험과목으로 정하는 것도 같다. 增 觀武才에서는 4技로서 取才시험을 보이고 임금의 특별명령으로 인한 別試才에서는 2技로서 取才시험을 보인다.

【觀武才²⁹³⁾初試】 續 두 곳(兩所)으로 나누어 각각 2품 이상의 文官과 武官 각 1인을 試官으로 임명하여 시험 보여 뽑는다. ○ 11가지 무

291) 勸武科는 임금의 특명에 의거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 등의 勸武軍官을 상대로 하는 특별과거시험으로서 초시와 會試가 없으며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이 결정되어 전시에서 등급이 매겨진다. 간혹 임금이 직접 임석하며, 試官은 대신 1인과 2품 이상의 문·무관 각 1인, 당상관인 문·무관 각 1인, 당하관인 문·무관 각 1인 등이다. 대전통편에 처음으로 등재되었다.

292) 外方別科는 세조 때에도 平陽·溫陽·高城 등지에서 실시한 바 있으나, 임진왜란 중인 선조 25년 의주에서 700명, 다음 해에 전주에서 1,785명 뽑은 이래 선조 28년 해주에서 579명을 뽑았다. 그 후 外方別試는 광해군 때와 현종때 및 숙종때, 영조·정조때 및 순조때 이후에도 몇차례 시행한 바 있다(이성무, 《앞의 책》 pp.156-161). 그러나 법전에 등재되기는 《속대전》이 처음이고 지역도 평안도·함경도·강화도·제주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영조 이후에는 개성·수원 등지에서 시행한 바 있다(同上). 외방별시는 임금의 특명으로 시행하며 重臣을 별도로 파견하면 초시를 생략하고 단 한번의 시험으로 현지에서 등급을 매겨 합격자 발표를 하며, 만약 御史를 파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합격자를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한다.

293) 주 7 참조(觀武才).

예기술(技藝)을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를 받아 시험과목으로 정하는 것은 諸科의 경우와 같으며, 4가지 武術技藝를 전례에 따라 시험과목으로 낙점을 받는다. 5軍門과 扈衛廳의 軍官, 有廳軍 및 현직·전직의 朝官, 武科출신과 閑良 등은 2가지 技藝로서 뽑고, 5軍門·扈衛廳의 付料軍官, 西·北未付料軍官, 北漢守堞付料軍官, 軍器寺의 別破陣 등은 한 가지 技藝로서 뽑는다. ○ 禁軍은 병조판서가 시험 보여 뽑되 鞭芻와 騎槍交戰²⁹⁴⁾을 추가하여 도합 6 가지 技藝로서 각 技를 시험 보여 뽑는다. 각 軍門의 軍兵은 각각 그 軍營에서 鳥銃 및 각 技와 각 藝로서 뽑는다. [增] 參試官 2인(補당하관)을 더 임명하고 監察이 시험을 감독(監試)한다. ○ 훈련원 奉事·習讀官, 수어청과 충융청의 兩營·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將校·三營의 守門軍 등에게 응시를 허용한다. ○ 馬軍(騎兵) 이상에게는 3가지 技藝를 추가하여 낙점을 받고 步軍의 경우에는 21가지 技藝를 列書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며, 技數와 矢數는 임금의 지시를 받은 바(受點)에 의하여 시험 보여 뽑는다. 수어청과 충융청 兩營의 步軍은 鳥銃 1技로서 시험 보여 뽑는다. [補] 수어청을 수어청 出鎭으로 한다. 【鐵箭】 【柳葉箭】 【片箭】 【騎芻】

[增] 【騎槍交戰】 【鞭芻】 【馬上偃月刀】²⁹⁵⁾ 이상은 將校 및 馬軍用이다. 【鳥銃】 【柳葉箭】 【片箭】 【用劍】 【雙劍】²⁹⁶⁾ 【提督劍】²⁹⁷⁾ 【偃月刀】²⁹⁸⁾ 【倭劍】²⁹⁹⁾ 【交戰】 【本國劍】³⁰⁰⁾ 【銳刀】³⁰¹⁾ 【木長槍】³⁰²⁾ 【旗槍】³⁰³⁾

294) 騎槍交戰은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창을 갖고서 交戰하는 무술이다. 騎槍은 말타고 쓰는 창으로서 길이가 15척 5촌이다(《校註 대전회통》 (앞의 책) p.529).

295) 馬上偃月刀는 말위에서 언월도를 쓰는 무술로서 그 방법으로 新月上天·秋山御風·春江掃雲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同上).

296) 雙劍은 두 칼을 쓰는 劍法으로서 持劍對賊·見賊出劍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同上).

297) 提督劍은 명나라 장군(조선인 후손) 李如松이 전해준 검법으로서 對敵出劍·進前殺賊·揮劍向賊·勇躍一刺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제독검은 腰刀이다(同上).

298) 偃月刀는 月刀라고도 하는데 칼 길이가 2척 8촌, 칼자루 길이가 6척 4촌이며 여기서는 徒步로서 쓰는 무술이다. 그 방법으로는 龍躍在淵·新月上天·猛虎張爪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위의 책》 p.530).

299) 倭劍은 일본의 검법으로서 土田流二十八形·運光流二十五·柳流三十八形·柳波流十八形 등이 있다(同上).

【鏡鉞³⁰⁴⁾(三枝槍)】 【狼筈³⁰⁵⁾(槍)】 【藤牌³⁰⁶⁾

【拳法³⁰⁷⁾】 【步鞭棍³⁰⁸⁾】 【挾刀³⁰⁹⁾】 【棒】 【竹長

槍³¹⁰⁾ 이상은 步軍用이다.

【觀武才覆試】 續 임금의 직접적인 임석(親臨)하에서 활쏘기를

시험하며 參試官은 2품 이상인 文官 1인과 武官 2인을 임명하여 4가지 技藝로서 시험 보여 뽑는다. 또 지방에서는 議政 1인을 命官으로 하여 鳥銃과 鞭芻를 시험하며 參試官은 임금의 親臨試 때와 같다. 또 임금의 좌석 좌우에는 각각 2품 試官 2인을 임명하여 검술과 창술 등 技藝로서 殺手를 시험한다.

○ 嘉善大夫 이상인 武官·禁軍別將·扈衛別將·禁軍將·五衛將·內乘·別軍

300) 本國劔은 속칭 新羅劔이라 하며 신라인 黃倡이 전하는 검법으로서 持劔對賊右內掠·進前殺賊 등을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다(同上).

301) 鏡刀는 環刀(佩刀)로서 칼의 길이가 3척 3촌, 자루의 길이가 1척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검법으로서 太阿倒施, 見賊出劔을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다(同上).

302) 木長槍은 길이 1丈 5尺이며 竹長槍에 대칭되는 것으로서 그 사용방법은 太山壓卵·美人認針·太公釣魚 기타 몇 가지가 더 있다(《위의 책》 p.531).

303) 旗槍은 黃 혹은 紅의 小旗를 붙인 槍으로서 속칭 短槍이라고 한다. 창날의 길이는 9촌, 자루의 길이는 9척으로서 그 사용술은 龍躍在淵·舉戟 등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同上).

304) 당과는 三枝槍이라고도 하는데 그 길이는 7척 6촌이며 그 사용술로서 朝天·中平一刺·進步虎伏 기타 몇가지 형태가 더 있다(同上).

305) 낭선은 대나무를 자루로 한 창으로서 길이가 1장 5척이며 그 사용술은 中平·架上闌下·騎龍 기타 몇 가지 형태가 있다(同上).

306) 藤牌는 등나무로 만든 방패로서 원형이다. 이것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腰刀(길이 3척 2촌, 자루의 길이 3촌)를 쓰는 방법으로서 起手·躍步低平·埋伏·斜行 기타 몇 가지가 있다(同上).

307) 拳法은 동양 전통의 무술로서 手足運動을 自由自在로 하며 그 방법으로 探馬·七星拳·高四平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다(위의 책, p.532).

308) 步鞭棍은 騎鞭棍에 대칭되는 것이며 속칭 鐵連枷라고 한다. 그 구조는 길이 8척 9촌의 棍棒위에 鐵環과 鞭(길이 2척 2촌 5분, 두께 곤봉과 같음)을 연결한 쇠도리계형이다. 그 사용방법은 여러 가지로서 大當·下接·扁身中欄·上剪換之·月夜斬蟬 기타 몇 가지가 더 있다(同上).

309) 挾刀는 칼날의 길이가 3척, 칼자루의 길이가 7척으로서 칼을 사용하는 劔法으로 中平一刺 鳥·龍光射牛斗·右半月 기타 몇 가지가 더 있다(同上).

310) 竹長槍은 竹槍을 사용하는 槍法으로서 太山壓卵·秦王点旗·韓信磨旗·白猿施刀 기타 몇가지 형태가 있다. 즉창은 대나무 막대기 위쪽에 길이 4촌의 銳鋒을 삽입한 창으로서 길이가 20척이며 諸葛亮이 창작한 것이라 한다(《위의 책》 p.533).

職·兵曹의 堂上軍官·五軍門의 中軍 이하 諸將校·宣傳官·武兼宣傳官·都摠府의 郎廳·西·北付料軍官·濟州付料子弟 등에게는 모두 初試를 면제하고 覆試응시를 허용하되 4 가지 技藝를 갖추어 시험한다. 初試에 합격한 사람은 단지 그 합격한 技藝로서 覆試를 본다. ○ 閑良인 합격자는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고 龍虎榜³¹¹⁾이 갖추어지면 그날로 합격자 발표(放榜)를 하며, 그 다음 성적인 자에 대해서는 논의하여 상을(論賞) 준다. 武科출신 이상이면 柳葉箭 3발 맞춘(三中) 경우에 4점을 주어 수령이나 邊將에 임명하고 합격자 중 성적이 우등인 자에게는 官階를 올려(加資)주고, 그 다음은 論賞한다. 鞭笞 및 殺手의 技藝로는 임금의 특명으로 及第를 시켜주는(賜第) 경우가 없다. [增] 임금이 직접 임석하는 殿試에 있어서는 參試官으로서 2품 이상의 문관·무관 각 1인을 임명하고, 3품 이하관은 參考官으로 하여 堂上 무관 1인과 堂下 문관 1인 및 무관 2인을 임명한다.

【內禁衛】 [原] 병조에서 도총부와 훈련원의 당상관 각 1인과 함께 시험 보여 뽑는다. 일반 軍士를 시험 보여 뽑는 경우에도 같으나 다만 正兵의 鍊才³¹²⁾는 훈련원에서 시험 보여 뽑는다. ○ 득점 화살 수가 10矢 이상인 자를 뽑으며, 槍의 명중은 득점 화살 수 하나로 친다. 봄 가을의 鍊才시험에서는 11矢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말타고 활쏘기와 말타고 창쓰기를 각각 두 차례씩 시험 보인다. ○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取才시험을 보여 충원한다. ○ 부모 喪中에 있다가 喪期를 마친 자 및 고질적인 병이 있는 부모나 노부모(예외로 조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侍丁者)³¹³⁾에 대해서는 득점해야

311) 龍虎榜은 文科榜目과 武科榜目を 합칭한 말이다(同上).

312) 鍊才는 군사들에게 무예를 권장하기 위하여 평소에 훈련한 것을 시험하는 것이다. 鍊才는 내금위·별시위·친군위·감사 등 특수 兵種과 正兵·水軍 등 基幹兵種에도 시행하였으며 그 성적에 따라 승진과 罷黜이 정해졌다. 조선 국초에는 수시로 시행되던 鍊才는 세종대에 이르러 정기적으로 군사들의 下番時에 실시하였고, 세조대부터는 上番時에 시행하는 當番鍊才로 바뀌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p. 593~594).

313) 侍丁은 군역을 면제받고 부모나 조부모를 봉양하는 壯丁을 말한다. 부모가 篤疾·廢疾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子, 90세 이상의 경우에는 諸子가 侍丁이 된다. 이러한 경우 자가 없을 때에는 손자중 1인, 친손자가 없을 때에는 외손자 중 1인이 侍丁이 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94). 성종 2년 8월 병조에서 啓하기를 기축년(성종 즉위년) 이후 侍丁 除軍者는 733인이나 되므로 軍額이 날로 줄어들어서 侍衛가 허술하게 될 염려가 있으니 군역이 가벼운 忠順衛·正兵(7番으로 나누어 2개월 番上하고 12개월 휴식)들에게는 전례대로 侍丁을 삼지 말고 獨子 이외에는 시정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자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성종실록》

할 화살 수 하나를 減하여 주고 다시 시험 보인다. 무릇 軍士에 대해서도 이와 같으나 100일 脫喪을 한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 **增** 이번에 폐지한다.

【木箭】 標的의 거리는 240步이고 1矢이상 득점해야 한다. **【鐵箭】** 標的의 거리는 80步이고 1矢 이상 득점해야 한다. **【片箭】** **【騎射】** **【騎槍】**

【宣薦內禁衛】³¹⁴⁾ **增** 병조판서가 도총부와 훈련원의 당상관과 함께 시험 보여 뽑으며 武科출신과 閑良을 막론하고 5技 중 3技 이상을 합격한 자를 뽑는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90보이며 3矢가 모두 入格해야 한다. **【柳葉箭】** 1巡(5矢)을 쏘아 2矢 이상 的中해야 한다. **【片箭】** 1巡을 쏘아 1矢 이상 적중해야 한다. **【騎芻】** 한차례 쳐서 한 번 이상 명중해야 한다. **【講書】** 武經7書 중 吳子를 제외하고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책을 보고 講하도록 하되 粗³¹⁵⁾ 이상 자를 뽑는다.

권11-12·13, 성종 2년 8월 을묘).

314) 宣薦內禁衛는 선전관으로 추천될 내금위를 말한다(내금위에 관해서는 주 89 참조). 선전관이란 形名(주 109)·啓螺(주 110)·侍衛·傳命(왕명전달) 및 符信(兵符 등)의 출납을 맡았던 무관직이다. 세조 3년에 御駕 앞에서 길안내를 하던 駕前訓導를 선전관으로 개칭하였는데(《세조실록》 권7-15, 세조 3년 3월 계미) 당초에 선전관은 모두 15명이 3교대로 5명씩 入直(思政殿 문 앞에서 宿直)하도록 되어 있었다. 《경국대전》 병조, 番次都目에서는 8명의 선전관이 長番으로 정3품에서 중9품까지의 체아록을 받도록 하였지만 《속대전》 병전, 京官職條에 선전관청이 등재되어 선전관이 正職으로 되고 그 인원수도 21인으로 되었다(그 중 1인은 정3품 당상관, 3인은 參上官, 나머지는 參下官). 그 외 문신 겸 선전관이 2인, 무신 겸 선전관이 50인이거나 되었다. 《대전통편》에서는 인원과 직급의 조정이 있었고 《대전회통》에서 최종적으로 선전관이 25인(그 중 당상관 4인, 참상관 7인, 참하관 14인)으로 하고 文臣兼과 武臣兼은 그대로(다만 무신겸의 참상관은 2인을 더하여 40인, 참하관은 2인을 감하여 10인) 두었다. 선전관은 임금을 측근에서 모시는 직책이었으므로 西班玉堂 혹은 西班承旨라 일컫게 되는 淸顯職이었으며 무반의 중심인물이 거치는 자리였으므로 武才가 있고 집안이 좋으며 驍勇한 사람을 뽑아서 임명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94).

315) 講書의 성적등급은 大通·通·略(通)·粗(通)으로 되어 있으며(《조선시대의 과거제도》, 《대전회통연구》 예전편, 《앞의 책》 p.509) 그 이하는 不通으로 점수가 없다.

【守部薦 將鬼薦】³¹⁶⁾ 取才 補 規式은 宣薦內禁衛와 같다.

【禁軍】³¹⁷⁾ 取才 續 병조판서가 도총부와 훈련원의 당상관과 함께 시험 보여 뽑되 身長이 8척 이상인 자라야 한다. 다만 木箭을 잘 쏘아 元標의 밖으로 100步를 넘기거나 6兩箭을 130步 쏜 경우에는 비록 身長이 미달되더라도 역시 뽑는다. ○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武士로서 가합한 자를 淸北과 北關에서 각 3인, 淸南과 南關에서 각 2인을 觀察使와 節度使로 하여금 取才 시험을 보여 뽑아 올리도록 한다. 【鐵箭】 閑良은 135步로 하되, 말을 바친(納付) 자일 경우에는 25步를 減하여 준다. 武科출신은 130步, 邊將이 교체되어 오거나 西·北人과 戰死者의 遺族 및 承傳中禁³¹⁸⁾ 등은 120步, 父母喪의 服喪期間을 마친 자(脫喪한 자)는 110步로 하되, 武科출신 이하인 자가 말을 바쳤을 경우에는 각각 20步를 減하여 준다. 【一巡】³¹⁹⁾ 閑良·脫喪者·西北人·戰死者의 遺族·承傳中禁 등은 3矢를 모두 득점해야 하며, 武科출신은 3矢 중 2矢를 취하고, 邊將으로서 교체되어 온 경우에는 2矢 중 2矢를 취한다.

【宣守部 前銜參上武臣】 取才³²⁰⁾ 補 매년 6월과 12월에 병조판서가 시험 보여 뽑는데 득점한 화살 수에 따라 宣傳官으로 추천할 한 자리와 守門將과 部將으로 추천할 한 자리는 정기인사이동(都政) 때 임용후보

316) 守部薦이란 보통 무과급제자를 守門將이나 部將으로 추천함을 말하는데 신분(집안)이 좋은 사람은 宣薦을 하고 그 외에는 守部薦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將鬼薦은 將魁薦과 같은 뜻으로 보아 장차 대장이 될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라 한다(《校註大典會通》(앞의 책) p.533). 大將은 좋은 집안(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적어도 선전관으로 추천될 만한 사람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수문장이나 부장 그리고 將帥가 될 만한 인재를 추천하기 위한 특채시험을 말한다.

317) 주 79 (內三廳).

318) 承傳中禁은 왕명을 전달하는 中禁을 말하는데 中禁은 掖庭署의 別監 밑에 있는 使人이다 (정재각 외3인, 《대전회통》, 고려대출판부, 1960, p.421).

319) 一巡은 5矢를 말한다.

320) 선전관·수문장·部將의 前職을 가진 參上官階의 武人을 다시 당해 관직에 추천·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 시험이다(정재각, 《위의 책》, p.422).

자를 추천한다. 【柳葉箭】 3巡 【騎芻】 1차레.

【虛司果】³²¹⁾ 取才 補 매년 6월과 12월에 병조판서가 시험 보여 뽑는데 5矢 이상 득점한 사람 중 1인을 정기인사이동(都政) 때에 임용후보자로 추천한다. 【柳葉箭】 3巡.

【宣薦內禁衛額外內禁衛】 取才³²²⁾ 補 매년 6월과 12월에 병조판서가 시험 보여 뽑는데 득점한 화살 수에 따른다. 정기인사이동(都政) 때에 처음 임관할 벼슬자리 하나에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는 규정은 宣薦內禁衛의 取才시험 경우와 같다.

【西北과 六道出身】 取才³²³⁾ 補 매년 6월과 12월에 병조판서가 시험 보여 뽑는데 득점한 화살 수에 따라 西·北道와 6道の 무과출신자를 각각 한 자리씩 정기인사이동(都政) 때에 처음 벼슬하는 후보자로서 추천한다. 【柳葉箭】 3巡.

【別侍衛】 【親軍衛】 原 득점한 화살 수가 6矢 이상인 자를 뽑는데 當番軍士의 鍊才시험에서는 4矢 이상이면 뽑는다. 標的의 거리 240步는 제외하고 180步로 한다. ○ 初試는 서울에서는 훈련원이 거주지 部の 公文(移文)을 살펴보고 시험 보여 뽑으며, 지방에서는 병마절도사가 매년 봄 가을에 응시자들을 巨鎭에 모아서 시험 보여 뽑는다. 합격자에 관해서는 그 身長과 容貌 및 득점 화살 수를 기록하여 병조에 보고하고 병조에서는 이것을 참고하여 다시 시험(更試)보인다. 初試를 치른 후 1년이 지난 사람은 更試에 응시할 수 없으며 甲士도 이와 같다. ○ 更試 후에 1년이 지나도 배속

321) 虛司果는 虛職인 司果를 의미하는 듯 하다. 허직은 影職이라고도 하며 實職의 반대개념으로 실무에는 복무하지 않는 명예직이다(同上).

322) 宣薦內禁衛의 정원외의 내급위를 뽑는 특별채용시험이다.

323) 평안·함경 양도와 중남부 6도의 무과급제자를 시험보여 무관으로 임용하는 채용시험이다.

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시험 보아야 하며 일반 軍士도 이와 같다. ○ 親軍衛는 공석이 있을 때마다 節度使가 시험 보여 뽑고 인적사항을 기록(錄名)하여 임금에게 보고한 후 병조에서 임금의 재가를 받아 임명한다. [增] 이번에 폐지한다. 【木箭】 標的의 거리는 240步이며, 1矢 이상 득점해야 한다.

【鐵箭】 別侍衛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片箭】 【騎射】 【騎槍】

【禁御兩營騎士】 [增] 황해도의 宮中 宿衛 騎士들이 上番하는 규칙을 혁파하고 금위영과 어영청(양영)에서 각각 150인을 두고 3番으로 나누어 1번에서는 守·部薦人(守門將과 部將으로 추천된 사람)을 本營에서 5가지 技藝로서 取才시험을 보여 3技를 갖춘 자를 뽑아서 充원하며 6개월이 지난 후, 계속 근무한 자 및 取才시험에서 우등한 자를 정기인사이동(都政) 때마다 임용후보자로 병조에 보고하면 병조에서는 승진 또는 전보시킨다. 그 나머지는 각 軍門의 병졸로서 무과에 급제한 자(行伍出身)·閑散人·전직관료 및 당상관 이상의 官階를 가진 사람 등으로 充원하여 임명하되, 무과급제 출신자의 경우에는 본영의 哨官 세자리에다가 취재시험을 거쳐 승진임명하며, 당상관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정기인사이동 때마다 兩營에서 각 1인을 자체임용례(自辟例)에 따라 병조에 보고하여 空闕 衛將에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補] 守·部薦人의 장기근속 및 승진 또는 전보에 관한 것을 이번에 폐지한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90步이며, 3矢를 모두 득점해야 한다. 승진 또는 전보를 위한 취재시험에서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柳葉箭】 1巡(5矢)으로 하고 2矢이상 표적을 맞추어야 한다. 【片箭】 1巡으로 하고 1矢 이상 적중해야 한다. 승진 또는 전보를 위한 취재시험에서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騎芻】 한차례 치고 두 번 이상 맞혀야 한다. 【講書】 책을 보도록 하되 武經7書 중 吳子를 제외하고 스스로 원하는 1書を 講하여 粗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甲士】**原** 득점한 화살 수가 5矢 이상인 자를 뽑으며 當番軍士의 鍊才시험의 경우에는 3矢 이상 자를 뽑는다. **增** 이번엔 폐지한다. 【木箭】 표적의 거리는 180步이며, 1矢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 1矢가 표적에 미칠 때마다 5分(점)을 준다. ○ 좌우의 표적은 15보 서로 떨어져 있다. 【片箭】 【騎射】 【騎槍】

【都摠府堂下官】 【部將】 【宣傳官】 **原** 득점한 화살 수가 4矢 이상이고 講書시험에 합격한 자를 뽑는다.³²⁴⁾ ○ 現任 內禁衛는 단지 講書시험만으로 뽑으며 武藝의 경우에도 같다. 【木箭】 표적의 거리가 240步인 경우에는 1矢 이상을 득점하면 단지 講書시험만으로 뽑는다. ○ 표적의 거리가 180步인 경우에도 1矢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片箭】 【騎射】 【講書】 兵政³²⁵⁾ · 陣法 · 兵將說 중의 1書에 通하고, 武

324) 「四矢以上 及講書入者取」를 번역함에 있어서 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423에서는 「得點 矢數 四矢以上者와 兵書講讀에 入格된 자를 取한다」고 하였고 민현구 외4인, 《譯註 經國大典》 번역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348도 “와”를 “뒹”으로 고친 이외는 같은 내용으로 번역하였으며, 윤국일 《국역 경국대전연구》(평양, 1986) p.407에서는 「화살 4발 이상을 맞혔거나 옛책의 강론에서 합격된 사람을 뽑는다」고 하여 어느 한 쪽에 해당하면 합격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現任 내금위는 단지 강서(옛책이란 번역은 부적당)시험만으로 뽑는다”는 특별 규정이 무의미하고 木箭에 관한 규정과도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4矢 이상 “得點”(木箭쏘기에는 과녁이 없고 일정범위까지 날라가면 득점하므로 “맞혔거나”라는 번역도 부적당)하고 또 강서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武藝同」을 번역함에 있어서 정재각 외3인 《위의 책》 p.423 및 p.439에서 “武藝別監”의 뜻으로 보았고 민현구 외4인, 《위의 책》, p.349에서는 “무예도 같다”라고만 하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국일, 《위의 책》 p.407 註에서는 무예별감은 인조 이후에 생긴 벼슬이므로 여기서의 무예를 무예별감으로 보기는 어렵고 무예별감 보다는 훨씬 높은 벼슬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법제화되지 않은 벼슬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萬機要覽》 軍政篇, 訓練都監, 武藝別監條에 “仁祖庚午置”라 하였으므로 그것이 경국대전에 등재될리가 없다. 따라서 무예를 武術技藝로 보아서 현직 내금위의 경우에는 講書시험만으로도 합격시키고 또한 무예시험만으로도 합격시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25) 兵政은 세조 5년 강맹경 · 신숙주 · 한명회의 도움으로 세조가 직접 만든 兵書이다. 이는 세조 3년경에 완비한 五衛制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軍令系統을 규정한 것으로서 오위군의 入直 · 軍務의 啓達 · 都城門과 대궐문의 開閉 · 大閱 · 符驗 · 用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經7書·兵要 중에서 스스로 원하는 1書에서 略 이상을 받아야 한다. **增** 吳子를 제외한다.

【內三廳出身】 取才 **續** 병조·도총부·훈련원에서 자리를 함께 (合坐)하여 추천된 사람을 시험 보여 두 가지 技藝에 모두 합격한 자를 뽑는다. **補** 이번에 폐지한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90步이며 1巡(5矢)에 3矢를 모두 득점해야 한다. **【講書】** 武經7書와 3鑑(通鑑·宋鑑·將鑑) 중 1書を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講하여 粗 이상을 받아야 한다. **增** 吳子를 제외한다.

【內三廳南行】 取才 **續** 內三廳出身의 추천의 경우와 같다. 宣傳官으로 추천된 자인 경우에는 3技에서 득점시수 4矢를 채워야 하며 部將으로 추천된 자인 경우에는 3技에서 득점시수 5矢를 채운 후라야 講시험을 허용하고 이에 합격한 자를 뽑는다. **補** 이번에 폐지한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100步이고 1巡에 1矢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片箭】** 1巡 **【騎芻】** 1次 **【講書】** 위와 같다.

【武藝】³²⁶⁾ **原** 득점화살 수가 5矢 이상인 자 및 講書시험에 합격된

다. 이 책은 武班의 試取 때에 講書用 교재로 사용되었다(金泰永, <兵政解題>, <栖碧外史 海外蒐佚本> 20, 아세아문화사, 1985).

326) 武藝란 武藝取才를 의미하는데, 甲士나 別侍衛가 僉使나 萬戶로 진출하는데는 무예취재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95). 성종 15년 7월 諸將取才 합격자에게 무예취재 시험을 치게 하지 않고 임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대신들 간에 논의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장취재시험이 무예취재시험보다 上位라고 보아서 更試不要(通用無妨)라 하였으나 성종은 李克培의 의견에 따라 무예취재는 본래 沿邊 萬戶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제장취재는 본래 선전관이나 都摠府의 郎廳·部將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니 그 설치의도가 전혀 다르고 무예취재자와 제장취재자의 품계도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통용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성종실록> 권168-8·9, 성종 15년 7월 임인).

자를 뽑되 身·言·書³²⁷⁾도 아울러 보고 뽑는다. **增** 이번에는 폐지한다. **【木箭】** 표적의 거리는 180步이고 1矢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片箭】**

【騎射】 **【講書】** 兵政·陣法·兵將說·武經7書·兵要 중에서 스스로 원하는 1書を講하여 略 이상을 받아야 한다.

【堂上軍官】 取才 **續** 병조판서가 시험 보여 뽑되 병조판서가 유고하면 禁軍別將이 대행한다. **【片箭】** 1巡 **【柳葉箭】** 3巡 **【騎芻】** 1次.

【哨官】 取才 **續** 해당 군영의 大將이 시험 보여 뽑되 大將이 유고하면 中軍과 別將이 함께 시험 보여 뽑는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100步로 하고 1巡을 쏘게 한다. **【柳葉箭】** 1巡을 쏘게 한다. **【騎芻】** 1次 치게 한다.

【教練官】³²⁸⁾ 取才 **續** 哨官의 경우와 같다. 활쏘기·講書·陣法の 3技에서 수석한 자를 뽑는다. **【柳葉箭】** 1巡을 쏘아 1矢 이상 표적을

327) 身言書에 관하여 《경국대전주해》 下 後集 병전에서는 《唐書》 選舉志의 擇人之法을 인용하여 첫째 身은 體貌의 豐偉를, 둘째 言은 言辭의 辨正을, 셋째 書는 楷法의 遵美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28) 教練官은 장교중에서 선발하며 軍隊를 교련하는 임무가 있다. 교련관으로는 射法·陣法·講書에서 수석한 자를 뽑았다. 시험관은 해당 군영의 大將이나 대장 유고시에는 中軍·別將이 함께 試取하였다(이홍직, 《국사대사전》(앞의 책) p.168). 숙종 40년 7월 사간원에서는 각 軍門의 교련관으로 胥吏·市井人이나 무과출신 아닌 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청원하였고(《숙종실록》 권55-14, 숙종 40년 7월 임술), 영조 33년 9월 어영대장 洪鳳漢의 건의에 따라 諸軍門의 教練官의 久勤遷轉之規(장기근속자에 대한 승진 또는 전보에 관한 법규)를 만들었다(《영조실록》 권90-14, 영조 33년 9월 정미).

맞혀야 한다. 【講書】 책을 보지 아니하고 암송(背誦)한다. ○ 兵學指南³²⁹⁾을 背誦한다.

【破敵衛】 原 두 가지 재주에 入格한 사람을 뽑는다. 增 이번에 폐지한다. 【木箭】 표적의 거리가 240步인 경우에는 1矢 이상을 득점해야 하고 180步인 경우에는 2矢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片箭】 【달리기】 一走 ○ 구리로 만든 물병(銅壺)³³⁰⁾의 깊이는 8촌7분, 직경은 4촌7분, 容水量은 8升, 壺口로부터 윗쪽의 물구멍(水孔)까지 6촌7분, 물이 나오는 귀(舌)의 上端의 직경이 2분, 위쪽 물구멍에서 아래쪽 물구멍까지 1촌3분, 아래쪽 물구멍의 직경은 2분이다. ○ 銅壺의 물이 모두 흘러 나올 동안 달려서 270步에 이르면 1走라 하고 260步에 이르면 2走, 250步에 이르면 3走라 한다. 【힘쓰기】 一力 ○ 양손에 각각 50근씩 갖고 능히 160步를 가면 1力, 130步를 가면 2力, 100步를 가면 3力이라 한다.

【壯勇衛】 原 세 가지 재주에 入格한 사람을 뽑는다. 增 중간에 폐지하였다가 도루 두었는데 상세한 것은 훈련도감 局出身條를 보라. 取才시험에서는 활쏘기·講書·陣法 등을 더 시험한다. 補 이번에 폐지한다. 【木箭】 표적의 거리는 240步이고 1矢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달리기】 一走 【힘쓰기】 一力

增 【柳葉箭】 1巡을 쏘아서 1矢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329) 兵學指南은 明將 戚繼光의 저서인 《紀效新書》중에서 操鍊法을 간추려 편찬한 책으로 정조 11년(1787)에 왕명으로 간행하였다(이홍직, 《위의 책》 p.591).

330) 銅壺는 구리로 만든 물병과 같은 것으로서 軍陣과 함께 이동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만든 行漏, 즉 휴대용 물시계이다. 세종 19년에 중국의 행루를 모방하여 여러개의 행루를 만들어 함길도·평안도의 兵營을 비롯하여 沿邊諸鎮에 보낸 바 있다(전상운, 《한국의 과학사》 p.144, 1977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95).

【講書】 兵學指南과 陣法을 講한다.

【捉虎甲士】³³¹⁾ 原 한 가지 재주에 入格한 자를 뽑는다. ○ 첫번째 화살이나 창, 또 두번째 화살이나 창으로 범 2마리를 잡은 자는 取才시험 없이 捉虎甲士로 소속시키는 것을 허락한다. ○ 지방에서 범을 잡을 사람은 節度使가 軍士 및 鄉吏·驛吏³³²⁾·公賤·私賤 중에서 스스로 원하는 자를 뽑아서 정하도록 하고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건장하고 용감한 자를 골라서 정하도록 한다. 增 이번에 폐지한다. 【木箭】 표적의 거리는 180步이고 1矢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片箭】 【騎射】 2矢 이상 的中해야 한다. 【騎槍】 1矢 이상 的中해야 한다. 【달리기】 3走 이상 되어야 한다. 【힘쓰기】 3力 이상 되어야 한다.

【正兵의 旅帥와 隊正】³³³⁾ 原 서울에서는 兵曹, 지방에서는

331) 捉虎甲士는 범을 잡는 일을 맡은 갑사이다. 태종 2년 5월 충청·경상·전라도의 敬差官 大護軍 金繼志가 임금에게 復命한 바에 의하면 지난 겨울에서 그 해 봄까지 경상도에서 범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몇백명으로 특히 해변가 고을이 심하여 사람들이 나다닐 수가 없다고 하였다(《태종실록》 권3-25, 태종 2년 5월 을유). 捉虎甲士의 정원은 세종 3년에 當番·下番 모두 20인으로 하였고(《세종실록》 권11-14, 세종 3년 3월 병자), 《경국대전》 병전, 番次都目에서는 대폭 증원되어 440인이 5교대로 88인씩 6개월간 복무하면서 체아록을 받았다. 세종 7년 6월 병조의 啓에 의하면 捉虎甲士는 용감하여야 하나 용감성을 측정하기는 어려우니 신속·정확성을 기준으로 첫번째 화살이나 첫번째 창을 적중시킨 자로서 임용하도록 하자고 하였다(《세종실록》 권28-32, 세종 7년 6월 을축).

332) 驛吏는 身良役賤層으로서 각 역에 소속된 驛子라고도 하였다. 각 역에는 다양한 호칭을 갖고 있는 驛民이 있었으며 그들은 세습적인 役을 부담하였다. 즉 그들은 왕명의 전달과 田稅·貢物의 수송, 使行에 따른 迎送과 支供 등을 부담하였다. 역리는 고려시대 이래로 범죄인(특히 반역인)의 후손이라 알려졌으며, 조선초기에는 鄉吏가 驛吏로 전락되는 수가 많았다. 역리는 仕路不通이란 신분적 差待 속에서 子子孫孫 역에 소속되었다. 대개 역민속에서는 驛吏 이외 驛奴婢가 있었으나 역리만 있고 역노비가 없는 역이 있는가 하면 역노비만 있고 역리가 없는 곳도 있었다. 역리가 비록 벼슬할 수 없는 신분(仕路不通)이기는 하나 軍功이나 武科 등을 거쳐서 守門將이나 僉使·僉正·參奉 등 벼슬을 한 사람도 있고 孝行으로 崇政大夫의 官階를 받은 사람도 있다(조병노, 〈朝鮮時代 驛制研究〉, 동국대대학원, 1990, 박사학위논문, pp.87~130 및 유승원, 〈朝鮮初期의 驛吏의 身分的地位〉, 《성심여대 논문집》 10, 1979, pp.130~133).

333) 旅帥는 旅의 지휘자이다. 조선시대의 군사편제는 세조때 만든 《五衛陣法》에 의하면 5卒이

兵馬節度使가 시험 보여 뽑으며 한 가지 재주에 入格한 자에게 모두 陣法을 강론시켜서 粗 이상을 받으면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명하도록 하고 30개월이 차면 모두 근무성적평정(褒貶)을 살펴서 官階를 올려 주거나 교체한다. 제주도의 세 고을에서는 節制使가 시험 보여 뽑아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木箭】 표적의 거리가 180步이고 1矢 이상 득점해야 한다. 【片箭】 【騎射】 2矢 이상 的中해야 한다. 【騎槍】 1矢 이상 的中해야 한다.

【當番인 正兵의 鍊才】 原 40分(점) 이상을 1등으로 하고, 25분 이상을 2등으로 하며, 15분 이상을 3등으로 한다. ○ 지방에서는 각각 그 鎮將이 取才시험을 보인다. 【木箭】 표적의 거리는 180步이고 1矢 이상을 득점 해야 한다. ○ 표적의 거리가 120步인 경우에도 1矢 이상 득점하면 된다. ○ 1矢를 的中할 때마다 1分을 준다. ○ 侯의 길이가 5척6촌이고 너비는 4척2촌이다. 【片箭】 【騎射】 1矢 이상 的中해야 한다.

【當番인 水軍의 鍊才】 原 水軍節度使가 매년 巡行하면서 시험 보여 뽑는데, 30分(점) 이상을 1등으로 하고 20분 이상을 2등으로 하며 10분 이상을 3등으로 한다. 【木箭】 표적의 거리는 180步이고 1矢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 표적의 거리가 120보인 경우에도 1矢 이상 득점하면 된다. ○ 1矢를 的中할 때마다 1分을 준다. ○ 侯의 길이가 5척6촌이고 너비는 4척2촌이다. 【片箭】

【隊卒】 【彭排】 原 【달리기】 3走 이상 되어야 한다.

1伍, 5伍가 1隊, 5隊가 1旅 등으로 되어 있어 1旅의 병력은 125명이었다. 그 위로는 統·部·衛가 있어 각각 統將·部將·衛將이 거느렸으며 衛將 위에 大將이 있었다(《문종실록》 권 8-16, 문종 원년 6월 병술 : 大將有五衛 每衛各有五部 每部各有四統). 또 隊正은 5伍로 조직된 隊(25명)의 지휘자이다. 隊는 五衛陣法上的 기초단위가 된다(《萬機要覽》 군정편, 五衛, 衛制, 總例).

【힘쓰기】 3力 이상 되어야 한다. 增 이번에 폐지한다.

【취라치(吹螺赤)³³⁴⁾】 【大平簫】 原 鍊才시험에서는

모두 3등 이상을 뽑는다. 【吹角】 【吹簫】 2등 이상을 뽑는다.

【馬醫】³³⁵⁾ 原 兵曹에서 司僕寺의 提調와 함께 講시험을 보인다.

【講書】 安驥集³³⁶⁾으로 한다. ○ 책을 보고 두 곳을 講하도록 한다.

【宣傳官】 【武兼宣傳官】 【部將】 【守門將】

【禁軍】 【扈衛軍官】 【忠翊衛】³³⁷⁾ 中日³³⁸⁾(子·午·卯

·酉日)에 시행한다. 續 都總府의 入直堂上官 및 郎廳과 兵曹의 입직당상

334) 解說篇 19. 취라치 參照.

335) 馬醫는 司僕寺 소속의 雜職으로서 士人의 벼슬이 아니다(《성종실록》 권82-15, 성종 8년 7월 임오). 馬醫는 말의 병을 약이나 침으로 치료하였으나 세종때까지는 어렵짐작으로 하였으며, 세조때에 이르러 馬醫書를 편찬하였다(《세조실록》 권38-34, 세조 12년 4월 갑인).

336) 安驥集은 馬醫書 중 하나로서 성종 25년에 병든 말을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그것을 번역하여 中外에 반포하라는 왕명이 있었다(《성종실록》 권289-2, 성종 25년 4월 경신).

337) 忠翊衛는 原從功臣의 宿衛兵種이다. 광해 8년 4월 사헌부의 탄핵에 의하면 忠翊衛가 중도에 폐지되었다가 이번에 국법에 의거 다시 설치하여 忠勳府의 當상관 1인을 有司로 하고 文·蔭·武官 중 原從功臣으로 參錄된 자로서 都事 1인을 두어 그 일을 전담하게 한다는 것과 元宗 公心 중 생존자 본인의 姓名·나이·본관·거주 등을 一冊으로 기록하여 勳위라 하고 分番·宿衛(禁旅)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광해군일기》 권102-7, 광해군 8년 4월 병진). 또한 영조 26년 7월 勳신의 장자를 忠贊衛로 하여 병조에 소속시키고 次子를 勳위로 하여 忠勳府에 소속시켜서 收布하자는 주장도 있었다(《영조실록》 권71-32, 영조 26년 7월 갑진). 그러나 勳위는 勳의위와 더불어 收布대상으로 되지 않았기에 假稱者·冒錄者가 많아졌으므로 避役의 淵藪가 되었다(《정조실록》 권5-3, 정조 2년 정월 무진 및 《순조실록》 권14-19, 순조 11년 3월 무진).

338) 中日은 한달의 날짜를 三分한 것 중 가운데 날짜를 말한다. 즉 寅·巳·申·亥日을 初日, 卯·午·酉·子日을 中日, 辰·未·戌·丑日을 終日이라 한다(정재각 외4인, 《앞의 책》, p.439).

관이 標信을 청하여 함께 모여 取才시험을 보여 뽑는다. 한 技藝에 만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閑良은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고 武科出身에게는 논의하여 施賞한다. [增] 만약 殿座·動駕·齊戒·減膳·宿直 및 비와 눈을 만났을 때에는 임금에게 그러한 사유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음을 보고한다. ○ 內中日(午日·卯日)과 外中日(子日·酉日)에 柳葉箭과 片箭에서 만점을 한 자에게는 官階를 올려 주고 閑良에게는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한다.

【柳葉箭】 1巡을 쏘게 한다.

【武藝砲手】³³⁹⁾ 中日에 시행한다. [續] 砲手が 良人인 경우, 한 차례 세 번 的中하면 1년 동안 兼司僕의 급료를 주고, 두 차례 세 번 的中하면 그 자신에 한하여 계속해서 급료를 주며, 연이어 세 차례 세 번 的中하거나 세 번 貫中한 자는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를 받아 곧 바로 전시에 응시하도록 한다. ○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武藝別監의 경우도 같다.

【鳥銃】³⁴⁰⁾ 3발을 쏘게 한다.

【殺手】³⁴¹⁾ 中日에 시행한다. [續] 일등한 자에게는 兼司僕의 급료를 준다. **【藝】** 1藝 ○ 月刀·雙劍·提督劍·平劍·拳法 등으로 시험한다.

【旗隊長】³⁴²⁾ 中日에 시행한다. [續] 해당 軍門의 中軍이 시험 보여 뽑

339) 武藝砲手는 훈련도감 등에 소속된 군사로서 훈련도감의 포수는 모두 20哨 2,440명이다(《萬機要覽》軍政篇2, 訓練都監, 軍摠).

340) 鳥銃의 총수는 6,488柄으로 京軍과 鄉軍에게 나누어 준 것이 그 중 1,167柄이다. 조총 중에는 倭조총 이외 別長銃·大長銃·大銃·唐鳥銃·胡製銃 기타가 있다(《위의 책》, 軍정편 3, 어영청, 軍器).

341) 殺手는 훈련도감 등에 소속된 군사로서 모두 6哨 738명이다(《萬機要覽》軍政篇2, 訓練都監, 軍摠).

342) 旗隊長은 旗摠과 隊長을 합칭한 말이다. 東伍法에 의하면 衛는 部를 통솔하고 部는 旗를, 旗는 隊를, 隊는 伍를 통솔하며, 一司는 5哨를, 一哨는 3旗를, 一旗는 3隊를, 1隊는 2伍를 통솔한다(《西厓文集》 권14, 雜著, 〈戰守機宜十條〉 東伍)고 하였다. 旗摠이란 바로 旗의 지휘관이요, 隊長은 바로 隊의 지휘자이다. 훈련도감의 포수와 살수의 각哨의 병력 122명(또는 123명)안에 각각 旗摠 3명과 隊長 3명이 있다(同上).

으며 한 技藝에 만점을 받은 자는 무과출신이면 官階를 올려 주고 閑良이면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한다. 【柳葉箭】 1巡을 쏘게 한다. 【片箭】 1巡을 쏘게 한다.

【宿衛騎士】³⁴³⁾ 中日에 시행한다. 續 해당 軍門의 別將이 시험 보여 뽑으며 한 技藝에 만점을 받은 자에게는 旗隊長의 경우와 같이 한다. 增 처음에는 황해도의 騎士를 上番시켜서 宿衛하게 하였으나 이번에 혁파하여 本道에 배속시키되 금위영에 배치되었던 騎士는 監營에 부속시키고 어영청에 배치되었던 騎士는 兵營에 부속시켜서 매년 本道の 別武士 都試에 함께 시험 보여 뽑아서 施賞한다. 【柳葉箭】 1巡을 쏘게 한다. 【片箭】 1巡을 쏘게 한다. 【騎芻】 1次 치게 한다.

【砲手】 中日에 시행한다. 續 中軍이 시험 보여 뽑고 한 技藝에 만점을 한 자에 대한 처우 등은 旗隊長의 경우와 같다. 【鳥銃】 3발을 쏘게 한다.

【文臣堂下官】 활쏘기를 시험한다. 續 매월 20일에 2품 이상의 文·武官 각 1인을 試官으로 임명하여 나이 50세 이하인 文官堂下官에게 활쏘기 시험을 보인다. 臺諫·監察 및 錢內 入直者·공무로 인한 出使者·휴가를 받아 下鄉한 자·아직 사은숙배를 하지 못한 자 이외에는 평계를 대어 활쏘기시험을 면하게 할 수가 없다. 병을 칭탁하고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금부에서 推問(조사)한다. ○ 소정 점수에 이른 수석합격자에 대해서는 첫번째는 어린 말을 상으로 주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활을 주며 네번째에는 또 어린 말을 준다. 매년 6월과 12월(歲抄)에 점수를 통산하여 滿 500

343) 宿衛騎士는 禁衛營과 御營廳에 소속된 군사로서 정원은 각 150명이다. 영조 26년 鄉騎士의 上番之規를 혁파하고(특히 황해도) 京外의 무과급제자 중에서 納馬하게 하여 取才시험을 거쳐 충원하도록 하며 순조 8년에는 무과출신자 이외 閑良도 함께 취재시험을 보였다(《萬機要覽》, 軍正3, 금위영 및 어영청 군총).

分(점) 이상인 우등자에게 官階를 올려 준다(加資). 【貫革】 과녁의 거리는 120步이다. ○ 해가 길 때에는 15巡을 쏘아서 35分 이상을 받아야 하고 해가 짧을 때에는 10巡을 쏘아 25分 이상을 받아야 한다.

【武臣堂上官】 활쏘기를 시험한다. 續 매월 17일에 2품 이상의 文·武官 각 1인을 試官으로 임명하여 堂上武官으로서 官職이 있는 자 및 閑散人員에게 활쏘기 시험을 보인다. 시험날에 못치를 사유가 있으면 그 달 안의 다른 날로 연기한다. 4계절의 끝달에 점수를 계산하여 閑散人의 경우 15矢 이상을 득점한 자는 50석에 한하여 祿俸을 주고 연이어 세 차례 수석하거나 騎芻와 片箭에서 만점을 받은 자에게는 官階를 올려 주며, 4矢 미만 득점한 자 및 병으로 응시하지 못한 자는 모두 파직한다. 增 15일에서 그믐 전날까지 형편에 따라 날짜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 堂上인 別軍職은 활쏘기에 참가하지 아니하나 만약 實職이 있거나 혹은 軍門의 관직을 겸무하였으면 활쏘기 시험에 응시한다. 補 36석까지 祿俸을 준다. 【柳葉箭】 8巡을 쏘게 한다. 【片箭】 1巡을 쏘게 한다. 【騎芻】 1次 치게 한다.

【武臣堂下官】 활쏘기를 시험한다. 續 매월 22일 兵曹判書가 堂下官인 武官 實職人員에게 활쏘기 시험을 보인다. 判書가 유고하면 參判이 시험 보이고 또 참판이 유고하면 시험 날짜를 연기한다. 6월과 12월 두 달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單巡에 만점을 한 자는 別單으로 써올리되 여러 巡을 쏘아서 점수를 채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득점 화살 수가 4矢 미만일 경우에는 면직(汰去)시키되 騎芻의 점수를 두배로 하여 4矢 중 부족 矢數에 충당하도록 한다. 補 10巡을 쏘아서 득점 화살 수가 4矢 미만일 경우에는 罰直하고 연이어 5次나 득점이 없으면 면직시킨다. 居首(居甲)인 자에 대해서는 논의하여 施賞하며 優等인 자에 대해서는 參下官은 곧바로 6품에 임용하고 參上官은 4품으로 승진임용하며 4품과 3품인 자는 吏曹로 하여금 곧바로 守丞으로 임명하도록 한다. 우등 다음 등급인 경우에는 참서관은 6품으로 승진할 때 빈자리가 나면 보직을 주고 참서관은 승진임용한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100步이고 1巡을 쏘게 한다. 【柳葉箭】 7
 巡을 쏘게 한다. 【片箭】 2巡을 쏘게 한다. 【騎芻】 1次 치게 한다.

【專經殿講】³⁴⁴⁾ 增 매년 6월과 12월에 內三廳에서 응시자를 보고
 · 추천한 후 兵曹에서 나이 40세 이하인 인원을 뽑아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4계절의 첫달 13일에 임금의 지시를 받아 18일에 시행한다. 병조에서는 武
 官인 東西班 正職者 및 현직인 軍門人員으로 서울에 있으면서 사고가 없는
 자를 列書하여 임금에게 보고해서 그 중 20인을 선정 받는다(受點). ○ 試
 官은 大臣 1인, 2품 이상의 文武官 각 1인, 堂上官인 文武官 각 1인, 堂下
 官인 文官 2인을 승정원에서 추천하여 임금에게 올린다. ○ 만약 수시로 임
 금의 下敎를 기다려 거행하는 경우에는 講官(응시자)의 定數가 없고 임금이
 지명(點下)하는 대로 講시험에 應試한다. 連3次 수석하면 資窮者에게는 官階
 를 올려 주고 參外官에게는 6품으로 승진시킨다. 1次 수석한 사람에게는 어
 린 말(망아지)을 내려 주고 不通한 사람은 의금부에서 推問(조사)한다.
 【講書】 책을 보고 講論한다. ○ 武經7書 중 吳子를 제외하고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

【賓廳講】³⁴⁵⁾ 續 나이 50세 이하의 관원을 列書하여 임금에게 보
 고하면 임금은 10인을 지명(受點)한다. 承旨 1인과 도총부의 堂上官 및 병
 조의 入直 堂上官·郎官이 두 달에 한 번씩 賓廳에 모여서 講시험을 보인
 다. 연이어 5次 純通³⁴⁶⁾을 한 자에게는 官階를 올려 주고 不通者는 推考한
 다. 增 21일에 講官(응시자)을 列書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 만약 임금

344) 專經殿講은 武科試取의 1종이며 매년 4계절의 첫달에 武臣 중 나이 40세 이하로서 東西班
 의 實職에 있는 자 또는 현재 軍門에 奉職 중인 자를 선발하여 이들을 宮中에 모아서 임금의
 親臨下에서 兵書를 專講하도록 하는 시험이다(조선총독부, 《校註 大典會通》《앞의 책》,
 p.541).

345) 賓廳講이란 三議政이 집무하는 장소에서 보이는 講시험으로서 나이 50세 이하인 관원을
 대상으로 한다(同上).

346) 純通이란 책을 암송하고 그 풀과 訓(뜻)에 精通한 것을 말한다(同上).

이 친히 임석하는 殿講이면 試官은 專經殿講의 경우와 같다. 【講書】 책을 보고 講論한다. ○ 4書와 3鑑 중의 1書를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講論하여 粗 이상을 받아야 한다. 增 4書와 宋鑑을 제외하고 단지 通鑑과 將鑑만을 시험 보인다.

【武經講】 續 試官·講官·講所 및 賞罰은 賓廳講의 경우와 같다.

○ 4계절의 첫달 11일에 講시험을 보인다. 【講書】 책을 보고 講論한다. ○ 武經7書 중 1書를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講論하여 粗 이상을 받아야 한다. 增 吳子를 제외한다.

【能麼兒講】³⁴⁷⁾ 續 능마아청의 堂上官 1인과 郎廳 4인이 매일 6次 나이 50세 이하의 관원을 시험하여 4계절의 끝달에 모아서 병조에 보고한다. 연이어 3次 不通한 자는 罷職하고 2次 不通한 자는 推考하며 1次 不通한 자는 罰直한다. 病으로 응시하지 못하여도 不通者와 같이 한다. 增 堂下官인 宣傳官은 시험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 1차에서 3차까지 不通한 자는 엄중히 推考하고 5차나 不通한 자는 越俸(감봉)하며 6차 不通하면 면직시킨다. ○ 임금이 직접 임석한 경우에는 試官이 專經殿講의 경우와 같다. 이때 당상관 3인이 進講에 참여한다. 【講書】 책을 보고 講論한다. ○ 兵學指南을 講論하여 粗 이상을 받아야 한다.

【各營將官】 활쏘기를 시험한다. 續 兵曹判書가 매일 武臣堂下官의 月例 試射 때 三軍門³⁴⁸⁾의 軍士를 거느린 將官³⁴⁹⁾을 시험하여 25矢를 的中

347) 能麼兒講은 능마아청에서 행하는 講書시험이다. 능마아청은 여러 將官에 대한 兵書의 강독 시험과 과업을 권장하는 일을 맡는다(《속대전》 병전, 京官職).

348) 三軍門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을 말한다.

349) 將官은 中軍·騎士別將(別驍衛別將)·千摠·騎士將·把摠(4품 이상)·哨官·禁松參軍 등을 말하여(《萬機要覽》 군정편3, 금위영 員額), 위로는 大將이 포함되지 않으며 아래로는 將校

한 자에게는 말을 下賜하고 26矢 이상을 的中한 자는 邊將에 임명하며, 연이어 3次 수석한 자는 임금에게 보고하여 별도로 상을 준다. 득점 화살 수가 4矢 미만인 자는 면직시킨다. 各軍營의 軍士를 거느리지 아니한 將官의 경우에도 각자 해당 軍營에서 활쏘기를 시험하며 賞罰은 같다. ○ 騎芻의 점수를 두 배로 하는 것은 앞(무신당하관)과 같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100步이고 1巡을 쏘게 한다. ○ 무과출신의 경우에는 90步로 한다. 【片箭】 2巡을 쏘게 한다. 【柳葉箭】 7巡을 쏘게 한다. 【騎芻】 1次 치게 한다.

【射講】 增 五軍門³⁵⁰이 같으며 매월 두 차례 각각 그 軍營에서 시험을 실시하되 11월에서 정월까지와 5월에서 7월까지의 嚴冬과 酷暑의 節候이므로 단지 한 차례 시행한다. 中軍으로 하여금 시험을 감독하게 하며 中軍이 유고하면 堂上將官 중에서 兼中軍을 임명하여 거행하거나 혹은 大將이 시험을 감독한다. 시험이 끝날 때마다 單子(명단과 성적)를 써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陣法 講論에 있어서 연이어 5차례 모두 通한 자, 柳葉箭을 쏘아 5巡 전부 표적판에 맞춘 자(全布者)³⁵¹, 片箭을 쏘아 연3차로 1巡을 전부 표적판에 맞춘 자를 별도의 單子(別單)로 써서 올린다. 각 軍營의 활쏘기 점수와 講論의 성적은 1년간 통산하여 수석인 자를 年末에 別單으로 써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이외의 상벌에 관해서는 각 군영에서의 節目(세칙)이 있다. ○ 당상관으로서 나이가 50세가 된 사람에게는 講시험을 면제하고 60세에 이른 사람에게는 활쏘기를 면제한다. 堂下官은 그러하지 않다(勿論). 【柳葉箭】 10巡을 쏘게 한다. 【片箭】 3巡을 쏘게 한다. ○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3營에서는 2월에서 4월까지와 8월에서 10월까지의 2巡을 減

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장교는 勸武軍官·別軍官·都提調軍官·教練官·旗牌官·別武士·別騎衛·馬醫 등이다(同上). 將官 중에는 지휘관(군사를 거느림)과 참모(군사를 거느리지 아니함)가 있다.

350) 五軍門은 위 3軍門에다 수어청·총융청을 더한 것이다.

351) 全布者란 貫에 맞지는 아니하여도 貫주위의 표적판에 전부 맞춘 것을 말한다(조선총독부, 《校註 大典會通》, 《앞의 책》, p.543).

하여 그 대신으로 騎芻 1次를 시험 보인다. 【騎芻】 1次 치게 한다.
 ○ 수어청과 충융청 兩營에서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補] 수어청은 수어청 出鎮으로 바뀌었다. 【講書】 兵學指南을 보고 講論(臨文)하도록 한다.
 ○ 陣圖를 보지 아니하고 暗誦(背誦)하도록 한다.

【咸鏡道親騎衛】³⁵²⁾ 都試 [續] 觀察使와 節度使가 매년 네 차례 시험 보여 뽑아서 狀啓로 임금에게 보고(狀聞)한다. 한 技藝에서 만점한 자 및 수석한 자의 경우, 閑良은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게 하고 武科出身에게는 邊將에 임명하며 官奴와 寺奴는 免賤한다. 그 다음 成績인 자에게는 해당 본영에서 論賞한다. [增] 黃土·岐伊·寶化堡의 權管은 兵營(병마절도사의 군영)에서 자체임용하며, 中嶺·赴戰嶺의 別將은 監營(관찰사의 군영)에서 자체임용하되, 무과출신자와 우등자 및 한 技藝에서 만점을 받은 자를 運번으로 임명한다. 이미 邊將을 지낸 자는 關西의 例에 따라 官階를 올려 준다. [補] 監營과 南兵營에서 別砲衛를 매년 네 차례 시험 보여 뽑되 좌·우별포위에 수석한 자 각 1인은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고 남병영의 좌·우별포위에 차석한 자 각 1인은 會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한다. ○ 황토와 기이의 權管을 혁파하고 지금은 黃拓坡 權管을 둔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100步이다. ○ 함경도에서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柳葉箭】 【片箭】 【騎芻】 【烏銃】 【鞭芻】 황해도와 평안도에서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平安道別武士】³⁵³⁾ 都試 [續] 관찰사와 절도사가 매년 네 차례 시험 보여 뽑아서 狀啓로 임금에게 보고(狀聞)한다. 閑良으로서 한 技藝에서 만점을 받은 자 및 수석한 자는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고 武科出身으로서 한 技藝에서 만점을 받은 자에게는 官階를 올려 주며 수석한 자는 평안

352) 解說篇 17. 親騎衛 參照.

353) 解說篇 18. 別武士 參照.

도의 別將에 윤번으로 임명한다. 4巡을 통산하여 우등인 자를 監營과 兵營 兩營에서 각각 2인씩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하여 軍門에 골라 임용(調用)한다. ○ 義州 및 四防營(昌城·江界·宣川·三和의 四防禦營)에서는 절도사가 시험 보여 뽑아서 한 技藝에서 만점을 받은 자와 수석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우한다. [補] 의주 및 4방영에서 각각 시험 보여 뽑아서 兵營에 보고하면 병영에서는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한다. ○ 監營에서 振武士와 別親衛士³⁵⁴)를 시험 보여 뽑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³⁵⁵⁾

【黃海道別武士】 都試 [續] 水營(수군절도사의 군영)의 追捕武士의 경우에도 같다. ○ 관찰사와 병마·수군절도사는 매년 네 차례 시험 보여 뽑아서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한다. 한 技藝에서 만점을 받은 자와 수석한 자는 閑良의 경우에는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고 武科出身인 수석자의 경우에는 한량 및 무과출신인 차석자(그 다음 성적인 자)와 더불어 監營에서는 본영의 屯別將에 윤번으로 임용하고 兵營과 水營에서는 邊將으로 임명(除授)한다. [增] 禁衛營·御營廳 兩營의 鄉騎士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江原道別武士】 都試 [續] 監營의 勸武軍官³⁵⁶)과·選武軍官³⁵⁷⁾

354) 別親衛士는 순조 16년에 평안감영 본영의 壯中衛를 혁파하고 그 대신 새로 만든 別親騎衛의 무사를 말한다. 원래 壯中衛는 갑자기 병력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만든 것이나 料米가 한 달에 겨우 3斗이므로 군사들이 入屬을 회피하므로 이를 혁파하고 扈衛京廳의 料射法을 원용하여 제대로 급료를 주어 교대근무시키기 위하여 별친기위를 새로 만든 것이다(《순조실록》 권19-32·33, 순조 16년 11월 무신).

355) 鐵箭·柳葉箭·片箭·騎芻·鳥銃 등 무술기예의 시험과목에 관한 규정을 평안도·황해도·강원도의 別武士條에는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함경도 친기위의 그것에 관한 규정의 문맥으로 보아서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鞭芻를 시험과목에서 뺀 것은 숙종 45년 정월 都提調 이이명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서 그 대신 조총을 시험과목으로 하였던 것이다(《숙종실록》 권63-1, 숙종 45년 정월 병자).

356) 勸武軍官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에 각각 50명씩 두고 있으며 감영에도 두고 있다.

357) 選武軍官은 영조 26년 軍布 2疋을 1疋로 반감함에 따른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종래 군포를 부담하지 않던 閑遊層(《承政院日記》 1059冊, 영조 26년 8월 11일에 있어서의 可惜於軍保而入於軍官者)에게 軍保 대신 軍官이란 이름을 붙여주고 徵布함에서 비릇된 것이다. 그러나 閑遊層이란 신분개념이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를 정하기에도 막연하여 경상도에서는 鄉品·庶孽

의 경우도 같다. ○ 관찰사가 兩西(평안도와 황해도)의 例에 의하여 시험 보여 뽑아서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한다. 三鎭(江陵·原州·鐵原)을 통해서 수석한 자 1인은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한다.

【慶尙道別武士】 都試 **增** 道内の 武科出身은 左別武士에 속하며 정원은 없고 閑良은 右別武士에 속하며 700명을 정원으로 한다. 매년 監司가 네 차례(4等)의 都試를 실시하여 점수를 통산하며 左·右別武士로서 수석한 자 각 1인을 임금에게 장계로 보고하여 武科出身인 경우에는 三軍門의 哨官으로 충원 임용하고 閑良인 경우에는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며 그 다음 성적인 자 4인에게는 本道에서 弓·箭·米·布로 施賞한다. **補** 左別武士로서 수석한 사람과 한 技藝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에게는 官階를 올려 주고 右別武士로서 그 다음 성적인 사람에게는 곧바로 會試에 응시(直赴會試)하도록 한다. ○ 哨官으로 충원 임용하는 것을 이번에 폐지한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100步이고 3矢를 득점해야 한다. **【柳葉箭】**

【片箭】 **【騎芻】** **【鳥銃】**

【京畿水營別武士】 都試 **補** 水使가 매년 시험 보여 뽑아서 임

이상은 제외된 반면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는 그들이 주된 대상자였고 경기도의 양주에서는 양반까지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종래 그러한 窮儒와 庶族들은 軍保(양인)와는 다른 신분층으로 자부해 오다가 같은 軍保(이름이야 軍官이지만)로서의 신분지위가 떨어진 것으로 믿고 모욕을 못참고 流離하는 수가 많았다는 것이다(《승정원일기》 1069책, 영조 27년 윤5월 18일 및 鄭萬祚, 〈朝鮮後期の 中人研究--選武軍官論議--80년도 문교부학술연구조성비 연구결과보고서, pp.171~183). 물론 군포징수 대상자의 확대화 방안으로 숙종대의 戶布案·閑丁搜括策, 그 이전의 儒布論 그리고 경종대의 일부 校生·院生에 대한 收布論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다가 영조 26년의 선무군관포로 낙착된 것이었다(정만조, 〈위의 글〉, pp.151~176). 선무군관은 단순한 收布軍에 그치지 않고 평소 무술을 익히도록 하여 수령이 그 재능을 시험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그들을 모아서 다시 시험보여 가장 뛰어난 자 1인을 뽑아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고(전시에는 낙제가 없음) 그 다음인 자 1인은 會試에 直赴하게 하고, 또 그 다음인 자 5인은 군관포를 면제해 주었다(《승정원일기》 1064책, 영조 27년 정월 14일, 17일). 선무군관의 총수는 영조 27년 11월 24,500명으로 각도에 안배하였다(정만조, 위의 글, p.194).

금에게 狀啓로 보고하며 수석자 1인은 곧바로 전시에 응시하도록 한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100步이다. 【柳葉箭】 【片箭】

【鳥銃】

【京畿】 【忠淸】 【黃海】 【全羅】 【慶尙道】의

【選武軍官】 都試 增 매년 한 차례 각 해당 고을의 수령이 먼저 시험 보여 柳葉箭 1巡을 쏘게하여 1矢 이상을 的中한 자를 뽑아서 監營에 보고하고 감영에서는 監司가 가을 巡行(각읍순찰) 때 부근에 장소를 정하여 그들(일차합격자)을 모아서 다시 시험 보여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한다. 수석자 1인은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 성적인 자 1인은 會試에 곧바로 응시하게 하며 또 그 다음 성적인 자 5인에게는 當年の 身布³⁵⁸)를 면제하여 준다. 【柳葉箭】 1巡을 쏘게 한다.

【江華壯義旅】³⁵⁹) 取才시험을 보인다. 續 壯旅와 義旅 각 18哨로 한다. ○ 留守가 매년 봄 가을로 시험 보여 뽑아서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하

358) 身布는 軍役복무 대상자인 양인 남자(15·16세 이상 60세까지)가 實役대신 年間 布 2필(영조 26년 이후 年 1필)을 납부한 것을 말한다. 영조 28년 병조판서 홍계희가 均役事實冊子 속에 쓰기를 우리나라의 5衛法은 중국의 府兵之制를 모방한 것이나 番上(근무)과 下番(휴무) 등 교대근무로 인한 농사일의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兵不傷農) 納布雇立制를 허용하였는데 이것이 徵布法이 생긴 원인이라 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5위제가 혁파되고 훈련도감이 신설되어 養兵의 비용이 오로지 良保(군포)에 의거하게 되어 징포의 길이 넓어져서 收布量이 속중초에 30萬필이던 것이 영조 28년 당시에는 50만필이라 하였다. 조선국초에는 위로는 公卿의 아들로부터 밑으로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忠順衛·忠贊衛(有蔭者)나 正兵·甲士(無蔭者) 등으로 모두 소속되어 民役을 고루 부담하였으나 그 후 士夫子弟들은 諸衛에 다시는 소속되지 않고 鄉品冷族들도 양반이라 하면서 신역을 면한다는 것이다(《영조실록》 권75-7, 영조 28년 정월 을해). 番上正兵과 水軍의 代立制는 성종 말기부터 성행하여 법으로 금하였으나 그 관행이 없어지지 않아서 결국 중종때에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공인하게 되어 완전히 納布制를 실시하게 되었다(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1968, 육군본부, pp.234-249).

359) 江華壯義旅는 강화도의 군병으로서 壯旅와 義旅를 말하는데 각 18哨라 하니 1哨의 병력은 대체로 130명 정도(위 《한국군제사》 근세조선후기편, 육군본부, 1977, p.170에 의하면 1哨당 병력은 어영청이 134인, 금위영이 127인)이므로 모두 4,680명 정도가 된다.

며 한 技藝에서 만점을 받은 자와 수석한 자는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한다. **增** 別抄武旅³⁶⁰와 舟師校卒(水軍장교와 병졸)을 시험 보여 뽑을 때에도 같다. **補** 武科出身의 경우에는 官階를 올려 준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100步이다. **【柳葉箭】** **【片箭】** **【鳥銃】**

【松都選武】³⁶¹ 取才시험을 보인다. **續** 留守가 매년 봄 가을로 시험 보여 뽑아서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한다. 한 技藝에서 만점을 받은 자와 수석자가 閑良이면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고 武科出身이면 邊將으로 임명한다. **補** 무과출신이면 官階를 올려 준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100步이다. **【柳葉箭】** **【片箭】** **【騎芻】** **【鳥銃】** **【鞭芻】**

【統營將士】 取才시험을 보인다. **續** 매년 水軍을 훈련시킨 후 시험 보여 뽑아서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한다. 수석자 1인은 閑良이면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고 武科出身이면 邊將에 임명한다. **補** 한 技藝에서 만점을 받은 閑良도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한다. **【柳葉箭】** **【片箭】** **【鳥銃】**

【東萊別騎衛】³⁶² 取才시험을 보인다. **續** 각 鎭의 將校 300인을

360) 別抄武旅는 江華鎭營의 前部에 두었던 군대로서 武學을 개칭한 말인데 左部에 壯旅, 右部에 義旅를 두었다고 한다(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433). 정조 3년 11월 강화유수 李性源의 狀啓에 의하면 강화군에는 貴賤 두 가지가 있어 貴한 壯義旅의 軍官은 入屬되기를 원하나 武學은 천하게 여기어 朝聚暮散한다고 하니 이를 武旅軍官으로 개칭하자고 하는 영의정 徐命善의 건의에 따라 그렇게 바꾼 것이다(《정조실록》 권8-62, 정조 3년 11월 경신).

361) 松都選武는 開城留守府의 選武軍官을 의미한다.

362) 東萊別騎衛는 평안도의 別親騎衛(주354)와 같은 성격의 군대로 보인다. 금위영에도 32명

선발하여 명칭을 別騎衛라 하며 慶尙左兵使가 매년 시험 보여 뽑아서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한다. 수석자와 한 技藝에서 만점을 받은 자는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 성적인 자는 會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한다. **補** 東萊府使가 시험 보여 뽑아서 巡營(경상감영)에 보고하고 監司는 이를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한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100步이다. **【柳葉箭】**

【片箭】 【騎芻】 【鳥銃】 【鞭芻】

【南漢軍官】 取才시험을 보인다. **增** 守禦使가 매년 봄 가을로 관내 순시(巡審)를 할 때에 시험 보여 뽑아서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한다. 수석자와 한 技藝에서 만점을 받은 자는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한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100步이다. **【柳葉箭】 【片箭】 【鳥銃】**

【永宗防營軍官】 都試 **補** 防禦使가 매년 시험 보여 뽑아서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하며 수석자 1인은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한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100步이다. **【柳葉箭】 【片箭】 【鳥銃】**

【水原】·【坡州】의 【別驍騎士】 取才시험을 보인다. **增** 매년 2월과 8월에 수원과 파주 두 고을에서 각각 시험을 실시하여 初試로서 鐵箭·騎芻·鞭芻를 시험보여 뽑아서 총융청³⁶³⁾에 보고하면 摠戎使가 서울

의 별기위가 있다.

363) 摠戎廳은 인조 2년 李曙에 의하여 조직된 군영으로서 수원·광주·양주·장단·남양의 五營으로 이루어졌으나(《萬機要覽》군정편3, 총융청), 인조 13년 광주는 남한산성에 수어청이 신설되어 상비군을 두게되자 거기에 移屬되고 竹山이 대신 배정되었지만 죽산도 효종 2년 일부 병력(용인·양지의 3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한산성으로 이속되어 파주로 代置되었다. 또한 효종 7년에 양주도 수어청으로 옮겨가고 대신 通津이 배정되었다. 그 후 약간의 변화를 거쳐서 숙종 15년 9월 이후의 총융청 外營制는 남양을 前營, 장단을 後營, 수원을 中營으로 하여 운영하였다. 숙종 29년 良役變通을 위한 釐正廳이 설치되고 同王 30년에 군제개혁안이 마

의 본청에서 柳葉箭·片箭으로 다시 시험 보여(更試) 두 시험점수를 합계해서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한다. 수석자가 閑良이면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고 武科出身이면 官階를 (올려) 주며 그 다음 성적인 자 2인은 屯監(屯土를 감독하는 자)으로 임명하여 보낸다. 그 나머지는 해당 고을로 하여금 논의하여 施賞하도록 한다. 補 수원에 군영을 설치한 후에는 그 군영에서 시험 보여 뽑으며 파주에서는 지금은 別驍士의 都試만을 시행한다.

【水原別驍士列校】³⁶⁴⁾ 都試 補 留守가 매년 봄 가을에 시험 보여 뽑아서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하며 수석자와 한 技藝에서 만점을 받은 자는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 성적인 자는 會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한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100步이다. 【柳葉箭】 【片箭】 【騎芻】 【鞭芻】 【鳥銃】

【南陽·坡州·長湍別驍士】³⁶⁵⁾ 都試 補 매년 9월에 남양

련되었는데 충용청의 새 편제는 종래의 內·外營을 합쳐서 거주지 단위로 하여 3營에 각각 5司 25哨의 편제(23,157명)로 하였다(《韓國軍制史》 근세조선후기편, 《앞의 책》, pp. 157-172). 그 다음 정조 때에는 충용청을 포함한 5군영의 다수 군사를 이속받아 壯勇營을 만들면서 수원(화성) 중심으로 壯勇外營制가 확립되었는데 총병력은 약 2만명이고 그중 別驍士 2哨와 馬兵 4哨가 있었다. 그 編制는 임진왜란 이후의 새 편제인 隊—旗—哨—司—營의 戚法(戚繼光의 紀效新書)을 버리고 伍—隊—統—部—衛의 五衛編制를 갖추었다(《위의 책》 pp.202-219). 순조 때에는 장용영을 혁파하고 장용외영의 일부 병력을 남겨서 摠理營을 두었는데 정 3품의 別驍將 2인과 別驍士 200명을 두었다(《대전회통》 병전, 京官職). 상세한 것은 解說篇 3. 摠戎廳 參照.

364) 정조 17년 8월 備邊司에서 啓言하기를 水原府가 壯勇外營으로 승격한 후에 馬兵을 壯別隊로 바꾸고 別驍士는 이미 통상적인 部司의 편제에 들어있지 않은데도 그 수 200명은 많으므로 이를 반감하여 別軍官이라 호칭하고 左列과 右列로 만들어서 水原留守에 직속시키자는 것과 별효사를 별군관으로 하였으니 壯別隊(馬軍)의 別將이 別軍官兵房을 겸무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정조실록》 권38-11, 정조 17년 8월 을축). 따라서 水原別驍士列校는 수원유수의 직속 기마부대의 좌열과 우열의 군관(장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365) 정조 18년 4월 임금은 장단의 馬兵을 별효사로 호칭을 바꾸도록 하였다. 그 때 충용사 鄭民始가 啓言하기를 장단부사 徐有和의 보고에 의하면 장단부가 防禦營(《續大典》 兵典, 外官職, 長湍府使가 종2품 京畿防禦使를 겸무)이었을 때 별효사와 馬兵 등의 名色이 있었으나 방어영이 혁파된 후(《대전회통》 병전, 외관직에서 광주부와 수원부로 옮겼다가 《대전회통》 같은 條

·과주·장단 세 고을에서 각각 시험을 실시하여 初試로서 鐵箭·騎芻·鞭芻를 시험 보여 뽑아서 총융청에 보고하면 摠戎使가 서울 본청에서 柳葉箭·片箭으로 다시 시험보여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한다. 每邑 1인의 수석자는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고을로 하여금 논의하여 施賞하도록 한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100步이다. 【柳葉箭】 1巡을 쏘게 한다. 【片箭】 1巡을 쏘게 한다. 【騎芻】 1次 치게 한다. 【鞭芻】 1次 치게 한다. ○ 5中(5개 맞힌 것)을 1矢 득점과 같이 계산하고 6中을 2矢 득점과 같이 계산하며 4中 이하는 쳐주지 아니한다.

【禁御兩營騎士】 都試 補 大將이 매년 한 차례 시험 보여 뽑으며 수석자와 한 技藝에서 만점을 받은 자가 閑良이면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고 武科出身이면 官階를 (올려) 주며 그 다음 성적인 자에 대해서는 각각 그 軍營에서 施賞한다. 【鐵箭】 표적의 거리는 120步이다. 【柳葉箭】 【片箭】 【騎芻】 【鞭芻】

【諸道馬兵】 取才시험을 보인다. 增 京畿內에서의 수어청과 총융청 兩廳의 馬兵 및 각 道の 監營과 兵營 소속의 馬兵을 대상으로 한다. ○ 馬兵別將·哨官·旗牌官 또는 閑良이 함께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 初試는 각각 그 고을 守令이 매년 9월 내로 시험 보여 뽑으며 3技 중 1技에 합격한 자를 갖추어 해당 廳 및 해당 道에 보고하면 수어청과 총융청 兩營에서는 서울의 본청에서 시험을 실시하되 훈련을 행할 때에는 훈련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慶尙左·右道와 咸鏡道の 南·北關에서는 각각 그 兵使가 시험을 주관하여 뽑고 忠淸右道는 監營에서 左道는 兵營에서, 全羅道에서는 蘆嶺 이북은 監營에서, 노령 이남은 兵營에서, 平安道에서는 淸川江 이남은 監營에서, 청

에서 삭감) 별효사도 혁파되어 단지 馬兵만 남게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入屬되기를 기피하여 병력충원과 戰馬 갖추기가 불가능하므로 마병을 별효사로 개칭하자는 것인데 임금이 이에 따랐다(《정조실록》 권39-49, 정조 18년 4월 신유). 남양과 과주에서도 같은 이유로 마병을 별효사로 개칭한 것이라 생각된다.

친강 이복은 兵營에서, 黃海道는 兵營에서, 江原道는 監營에서 시험을 주관하여 뽑는데, 3技 중 2技에 합격한 자라야 비로소 점수계산을 하여 3인을 뽑아서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한다. 우등자 1인은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 성적인 자 1인은 會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한 후에 모두 상당한 군사직임(軍任)에 임용하며 또 그 다음 성적인 자 1인은 軍任에 승진 임용 한다. 만약 2技 합격자가 없을 것 같으면 그 중 수석한 사람을 軍任으로 올려 준다. **補** 함경도의 北關의 馬兵으로서 한 技藝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한다. ○ 수어청 出鎭(남한산성)과 충융청의 馬兵에 대한 시험은 이번에 폐지한다. **【柳葉箭】** 1巡을 쏘게 하여 2矢 이상 的中해야 한다. **【片箭】** 1巡을 쏘게 하여 1矢 이상 적중해야 한다. **【騎芻】** 1次 치게 하여 2中 이상(命中) 해야 한다.

【訓練都監馬兵】 都試 **補** 大將이 매년 1차 시험 보여 뽑으며 수석자와 한 技藝에서 만점을 받은 자가 閑良이면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하고 武科出身이면 官階를 (올려) 주도록 하며 그 다음 성적인 자에 대해서는 해당 軍營에서 施賞하도록 한다. **【鐵箭】** 標的의 거리는 150步이다. **【柳葉箭】** 1巡을 쏘게 한다. **【片箭】** 1巡을 쏘게 한다. **【騎芻】** 한 차례 치게 한다.

【濟州馬兵】 都試 **補** 牧使가 매년 시험 보여 뽑아서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하고 수석자 1인은 殿試에 곧바로 응시하도록 한다. **【柳葉箭】** **【片箭】** **【鳥銃】**

【番次都目】³⁶⁶⁾ **原** 都目 때에는 무릇 軍士를 관할하는 將帥가 군사들의

366) 番次都目は 특수 兵種 기타 軍士의 근무교대 수(번드는 차례)를 의미하는 番次와 근무결과

근무일수의 多少를 계산하여 추천장(薦狀)³⁶⁷⁾을 올린다. 忠義衛는 忠勳府에서 담당한다. 【遞兒】³⁶⁸⁾ 기본근무일수(元仕)³⁶⁹⁾와 특별근무일수(別仕)를 합계하여 遞兒職에 除授(임명)한다. 아래도 같다. ○ 임용(錄用)할 적에는 초과근무일수도 추천장에 아울러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轉屬된자의 경우에 전소속처의 근무일수를 한 번 계산하여 썼으면 비록 초과 근무일수가 있더라도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加階】³⁷⁰⁾ 단지 기본근무일수만을 계산하되 忠順衛·正兵·破敵衛·隊卒·彭排는 특별근무일수(別仕)

를 종합심사하여 올리고 내리는 것을 결정하는 都目を 합칭한 말이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p.598-599). 특수 병종 즉 忠順衛를 비롯한 諸衛는 조선 국초 有蔭子弟(양반자제)의 兵種이었으나 그 후 그들이 거기에 입속되기를 기피하여(《영조실록》 권75-7, 영조 28년 정월 을해 國初則身役之法 甚嚴 上自公卿之子 下至編氓 莫不各有屬處 有蔭者 爲忠順衛·爲忠贊衛 無蔭者爲正兵·爲甲士 世道漸變 法綱漸弛 士夫子弟 己不復隸名於諸衛 以鄉品冷族 亦稱兩班 圖免身役) 결국 양반의 庶族을 비롯한 중간계층 이하의 병종으로 되고 말았다. 여하간 여기서 규정되고 있는 특수병종은 忠義衛·忠順衛·內禁衛·親軍衛·破敵衛·別侍衛·族親衛·忠贊衛·忠翊衛 등 諸衛 등이며, 기타 軍士로 宣傳官(士族의 兵種), 兼司僕(庶族多數), 禁軍, 甲士, 習讀官, 醫員 등과 正兵, 취라치, 弓人, 矢人, 諸員, 隊卒, 童蒙訓導, 補充隊, 水軍, 漕卒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67) 薦狀은 추천장 또는 추천장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官階나 官職(체아직 포함)을 받을 경우 取才시험 성적이나 근무일수를 적어서 일정한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99). 東班의 경우에는 소속 관청의 당상관이나 提調가, 西班의 경우는 군사를 관할하는 장수가 올렸는데(同上) 그 중 漕卒은 각도의 관찰사가 마련하여 啓聞하였다(《大典續錄》 병전, 薦狀).

368) 遞兒에는 東班遞兒와 西班遞兒가 있는데 특히 동반체아는 전문기술관료들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서반체아는 주로 문무 양반관료들의 휴직·퇴직 기간이나 특수임무수행 중(예 암행어사 등) 혹은 入仕전에 녹봉을 주기 위한 체아직으로 軍脚遞兒라고도 한다(有仕체아와 無仕체아). 그 외 서반체아직은 일부 잡직(기술직)이나 軍役(弓人·矢人·隊卒 등)복무자에게도 除授(임명)하였다(《대전회통연구》 이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3, 제3부 해설, pp.240-243).

369) 元仕는 기본적인 통상 근무일수를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경력평정을 근무기간으로서가 아닌 근무일수를 따져서 행하였는데 본래는 하루 근무를 仕一로 쳐주나 특별한 기능이나 위험이 있는 특수한 일을 행하였을 때에는 특별 근무일수(別仕)를 계산해 준다. 따라서 元仕는 別仕의 대칭개념으로 통상적인 근무일수를 의미한다.

370) 加階는 官階를 새로 주거나 올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陞品(品階를 올리는 것)과 加資(참서관 또는 당상관의 資級을 올림)와 구별된다(《위의 책》 p.178 및 p.235). 따라서 加階란 개념 속에는 官階의 신규임명과 승진임명, 두 가지가 포함된다. 양반의 관직인 선전관의 경우에는 東西班正職의 경우 그대로 6품 이상은 근무일수가 900일, 7품 이하는 450일이 차면(仕滿) 加階하며 그의 동반의 京衙前은 녹사는 514일, 서리는 3,600일 등으로 각기 仕滿일수를 달리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주자제는 450일, 醫員은 6품 이상 900일, 7품 이하 450일 등으로 仕滿일수를 선전관과 같이 규정하였다.

를 모두 계산하여 준다. 아래도 같다. [續] 經國大典에는 있으나 親軍衛·別侍衛·甲士에 관한 것은 모두 지금은 폐지되었다.

【**宣傳官과 武兼宣傳官**】 [原] 宣傳官은 8인이며 근무일수가 720일이 되면 교체한다. ○ 처음으로 관직을 받은 자는 근무일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兼司僕·內禁衛·功臣의 嫡長子孫·親軍衛·別侍衛·甲士와 같이 근무이나 태만 정도를 고찰하여 승진 또는 강등시켜 임명한다. [續] 宣傳官 및 武官이 겸하는(武兼) 宣傳官은 합계 71인으로 [增] 지금은 합계 74인이다.) 이를 正職으로 하되 오직 체아록을 받도록 하며 文官이 겸하는(文兼) 宣傳官은 原祿遞兒職 속에 넣는다. 【**番次**】 長番³⁷¹⁾으로 한다. 【**都目**】 정월·7월의 兩都目으로 한다. [續]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正3품 1인, 中3품 1인, 中4품 1인, 中5품 1인, 中6품 1인, 中7품 1인, 中8품 1인, 中9품 1인. [續] 正3품 1인, 中3품 1인, 中4품 1인, 中5품 1인, 中6품 1인으로 (이상) 宣傳官, 中7품 14인 중 1인은 宣傳官, 13인은 武兼宣傳官, 中8품 16인 중 6인은 宣傳官, 10인은 武兼宣傳官, 中9품 36인 중 9인은 宣傳官, 27인은 武兼宣傳官. [補] 正3품 1인, 中3품 1인, 中4품 1인으로 (이상) 宣傳官, 中7품 12인 중 1인은 宣傳官, 11인은 武兼宣傳官, 中8품 12인 중 4인은 宣傳官, 8인은 武兼宣傳官, 中9품 19인은 武兼宣傳官. 【**加階**】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주되, 7품

371) 長番은 교대없이 계속 근무함을 의미하는데 체아직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受祿하므로 正職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0). 장번 가운데에서도 兩都目に 해당하는 자는 4계절의 첫달에 連等(等은 녹봉지급시기를 의미하는데 連等이란 “봉금지급 때마다 해석된다)하여 녹봉을 받으며 선전관·검사부·내금위·功臣嫡長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장번 중 4都目(1년에 네 번 근무성적 평정하여 승진·전보·면직을 정하는 것)인 자는 근무일수의 다소에 따라 각각의 녹봉지급시기에 지급받는데 族親衛·忠義衛 등이 여기 속한다. 그 다음 장번이 아닌 경우 2番 兩都目인 자는 당번때 4계절의 첫달에 連等受祿하며 親軍衛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5番·6番, 兩都目·3都目인 자는 각자 당번때 한번(一等)만 녹봉을 받는데 별시위·감사·충찬위·취라치·대평소·弓人·矢人·諸員·壯勇衛·隊卒·彭排·破陣軍 등이 이에 속한다. 또 충찬위 이하는 근무일수의 다소에 따라 녹봉을 주고, 의정부·6조·충훈부·종친부·도총부의 醫員 등은 각각 체아록을 교대로 받으며 濟州子弟는 출근일의 다소에 따라 連等受祿한다(《경국대전 주해》 前集, 병진, 番次都目).

이하는 450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兼司僕】³⁷²⁾ 原 50인으로 하고, 그 중 10인은 永安(함경)도와 평안도의 子弟(젊은이)로 하여, 영안남도 2인 영안북도 6인 평안도 2인으로 한다. 節度使가 재주있고 행실이 바른 자를 골라서 임금에게 보고하면 兵曹에서는 內禁衛의 試取例에 따라 다시 시험 보여 8矢 이상 득점한 자를 임금의 裁可를 받아서 임용한다. ○ 內乘 3인은 모두 다른 관원이 겸직하며 그 중 1인은 司僕寺正이 겸직한다. 【番次】³⁷³⁾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과 7월의 兩都目으로 한다. 【遞兒】 정3품 1인, 종3품 2인, 종4품 5인, 종5품 6인, 종6품 9인, 종7품 6인, 종8품 9인, 종9품 14인. 【加階】 근무일수가 180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去官】 정3품에서 그친다.

【內禁衛】³⁷⁴⁾ 原 190인으로 한다.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과 7월의 兩都目으로 한다. 【遞兒】 정3품 1인, 종3품 4인, 종4품 7인, 종5품 18인, 종6품 28인, 종7품 49인, 종8품 39인, 종9품 44인. 【加階】 근무일수가 108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去官】 정3품

【禁軍】³⁷⁵⁾ 續 內禁衛 300인, 兼司僕과 羽林衛 각 200인으로 한다.

372) 주 88 (兼司僕將).

373) 주 12 (內乘).

374) 주 89 (內禁衛將).

375) 주 79 (內三廳).

補 내금위는 100인을 줄인다.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하되 豫備禁軍(預差)의 경우에는 10월 都目이 없다. 補 예비금군에게도 10월 都目を 시행한다.

【遞兒】 정3품 3인 중 1인은 내금위, 1인은 우림위, 1인은 겸사복, 중4품 13인 중 4인은 내금위, 5인은 우림위, 4인은 겸사복, 중5품 31인 중 12인은 내금위, 10인은 우림위, 9인은 겸사복, 중6품 82인 중 35인은 내금위, 24인은 우림위, 23인은 겸사복, 중7품 115인 중 66인은 내금위, 24인은 우림위, 25인은 겸사복, 중8품 132인 중 59인은 내금위, 37인은 우림위, 36인은 겸사복, 중9품 324인 중 123인은 내금위, 99인은 우림위, 102인은 겸사복. 補 정3품 3인 중 1인은 내금위, 1인은 우림위, 1인은 겸사복, 중4품 13인 중 4인은 내금위, 5인은 우림위, 4인은 겸사복, 중5품 30인 중 12인은 내금위, 9인은 우림위, 9인은 겸사복, 중6품 83인 중 31인은 내금위, 26인은 우림위, 26인은 겸사복, 중7품 115인 중 40인은 내금위, 38인은 우림위, 37인은 겸사복, 중8품 132인 중 46인은 내금위, 43인은 우림위, 43인은 겸사복, 중9품 224인 중 66인은 내금위, 78인은 우림위, 80인은 겸사복.

【功臣嫡長】³⁷⁶⁾ 原 인원수에는 정원이 없으며 모두 遞兒職을 받는다. 그 체아직은 인원수에 따라 加減한다. 續 經國大典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체아직의 수를 줄인다.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376) 功臣嫡長은 正功臣의 嫡長子孫을 말한다. 正功臣은 태조때의 개국공신으로부터 영조때의 奮武功臣에 이르기까지 모두 21종 705명이다. 准功臣에 해당하는 原從功臣이 보통 어느 한 시기에 몇천명이 되는데 비하여 正功臣(단순히 功臣이라 할 때에는 정공신을 의미)은 400년 동안에 700여명에 불과한 것이다(《대전회통연구》 이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3, 12, pp.238-240). 공신의 적장자손은 과거나 음서를 통하여 많은 수가 문무 正職으로 진출하였겠지만 《경국대전》에서는 그렇지 못한 인원에게도 모두 체아직을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공신수의 증가와 그 적장자수의 累增으로 인하여 그들 모두에게 체아직을 주기는 어려워 《경국대전》에서도 체아직의 수를 141석으로 한정하였고 또한 《속대전》에서는 그 수를 더욱 제한하여 44석으로 하였다(병전, 番次都目).

정월과 7월의 兩都目으로 한다. **續**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3품 2인, 종4품 4인, 종5품 7인, 종6품 10인, 종7품 17인, 종8품 38인, 종9품 63인. **續** 종3품 2인, 종4품 2인, 종5품 7인, 종6품 7인, 종7품 6인, 종9품 20인. **【加階】** 근무일수가 108일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去官】** 정3품에서 그친다.

【親軍衛】 377) **原** 40인으로 한다. ○ 永安道人이 이에 속하며 남도와 북도 각각 20인씩이다. **【番次】** 2番으로 하며 1년씩 서로 교대한다. **【都目】** 정월과 7월의 兩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4품 1인, 종5품 2인, 종6품 3인, 종7품 4인, 종8품 4인, 종9품 6인. **【加階】** 근무일수가 56일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 관직을 떠나야 할(去官) 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270일까지 허용하되 정3품에서 그치도록 한다. **【去官】** 종3품.

【別侍衛】 378) **原** 1500인으로 한다. **【番次】** 5번으로 하며 6개월씩 서로 교체한다. **【都目】** 4월과 10월의 兩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4품 4인, 종5품 12인, 종6품 22인, 종7품 37인, 종8품 82인, 종9품 143인. **【加階】** 근무일수가 48일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 去官할 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216일까지 허용하되 정3품에서 그치도록 한다. **【去官】** 종3품.

377) 주 56 (親軍衛).

378) 주 53 (別侍衛).

【族親衛】³⁷⁹ 原 임금과 동성동본으로 겨우 복을 면한 친족(宗姓祖
 免)·임금과 성은 다르지만 석달복(總麻服) 이상을 입는 친척 및 왕비의 석
 달복 이상을 입는 친척·세자빈의 1년복을 입는 친척 등이 여기 속한다. 선
 왕과 선후의 친척도 같다. ○ 임금과 동성동본인 친족은 宗簿寺에서, 성이
 다른 친척 및 왕비와 세자빈의 친척은 敦寧府에서 磨勘(審査)하여 임금에게
 보고한 후 兵曹에서 임금의 裁可를 받아 임명한다. 忠順衛도 이와 같다. ○
 위 사람들의 첩자손도 여기 속한다.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
 目】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5품 2인,
 종6품 3인, 종7품 4인, 종8품 6인, 종9품 8인. 【加階】 근무일수가
 144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 去官할 者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180일까지 허용하되 정3품에서 그치도록 한다. 【去官】 종4품.

【忠義衛】³⁸⁰ 原 功臣의 자손이 여기 속하며 첩자손인 承重者(奉祀
 者)도 이에 속한다. 續 경국대전에 있는 遞兒職數를 줄인다.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
 로 한다. 【遞兒】 종4품 1인, 종5품 3인, 종6품 8인, 종7품 10인, 종
 8품 13인, 종9품 18인. 續 종6품 2인, 종8품 3인. 【加階】 근무일수가
 144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 去官할 者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180일까지 허용하되 정3품에서 그치도록 한다. 【去官】 종3품.

【甲士】³⁸¹ 原 14,800인으로 한다. ○ 범 잡는(捉虎) 甲士 440인

379) 주 55 (族親衛).

380) 주 58 (忠義衛).

381) 주 50 (甲士).

과 兩界(동북계와 서북계)甲士 각 3,400인도 위 정원내에 있다. 兩界에서 예비로 임명한 預差甲士³⁸²⁾ 각 480인은 甲士에 결원이 있을 때에 그 중 근무일수가 많은 자로 보충하여 임용한다. ○ 番次·都目·加階는 留防正兵³⁸³⁾의 그것과 같다. 【番次】 5番으로 하며 6개월씩 서로 교체한다.

【都目】 4월과 10월의 兩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4품 5인 그 중 2인은 兩界甲士, 종5품 59인 그 중 20인은 兩界甲士, 종6품 65인 그 중 20인은 兩界甲士, 종7품 134인 그 중 50인은 兩界甲士, 종8품 222인 그 중 100인은 兩界甲士, 종9품 1515인 그 중 208인은 兩界甲士. ○ 兩界에서는 節度使가 근무일수를 審査(磨勘)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면 兵曹에서 재조사하여 임명한다. ○ 內地와 外地로 나누어 10分率로 하되 內地人은 4分, 外地人은 6分の 비율로 임명한다. ○ 종4품의 遞兒職은 永安道에서는 남도에서 한 번, 북도에서 두 번, 평안도에서는 內地와 外地에서 각 한 번씩, 돌림

382) 預差甲士는 甲士預備員(갑사후보자)이라 할 수 있는데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만 임명하였다. 預差甲士는 스스로 병장기와 양식을 갖추 수 있는 富實한 자로서 희망자에 한하여 임명하였으며, 세종때 실시하다가 중도에 폐지하였던 것을 성종 6년 7월 右參贊 魚有沼의 건의에 따라(《성종실록》 권57-13, 성종 6년 7월 기사) 후에 복구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1). 갑사의 총 정원 14,800인 중 兩界甲士는 각 3,400명으로 留防兵力이며, 預差甲士 480인도 留防兵力으로서 복무하고 있다가 위 갑사에 결원이 생기면 근무일수가 많은 순서대로 충원·임용하였다. 預差甲士는 番次·都目·加階 등이 모두 留防正兵과 같았다.

383) 留防正兵이란 양인의 의무병종인 正兵 가운데에서 각도의 요긴한 諸鎭에 가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다. 당초 沿海岸을 중심으로 하는 요새지에는 營鎭軍이 赴防하였는데 세조대에 五衛體制와 鎭管體制가 확립되자 서울에 番上하는 侍衛牌와 兩界의 正軍을 正兵이라 개칭하고 이어서 세조 10년에 다시 留防軍인 營·鎭軍을 정병에 合屬시킴으로서 양인의 군역부담으로 조직된 육군은 정병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1). 성종 6년 9월 병조의 틈에 의하면 정병의 元額은 충청도 12,500명으로 그 중 留防兵은 4番으로 每1番당 1,125명이며 합계 4,500명이고, 番上兵은 8番으로 每1番당 1,000명이며 합계 8,000명이다. 전라도는 18,650명 중 유방병이 6,500명, 번상병이 12,150명, 경상도는 15,122명 중 유방병이 12,000명, 번상병이 3,122명, 강원도는 1,424명 중 유방병이 600명, 번상병이 824명, 황해도는 3,082명 중 유방병이 1,600명, 번상병이 1,482명, 京中 448명과 경기도 1,594명은 모두 번상병 등으로 이상 5개도와 서울·경기의 정병 총계 52,820명 안에 유방병이 每1番 6,355명으로 합계 25,200명이며(이상 4番), 번상병이 每1番에 3,452명으로 합계 27,620명(이상 8番)이다. 그 외 개성부 600명은 土兵으로 모두 本府에서 巡綽하도록 하고 평안도 12,947명과 영안도(함경도) 5,737명도 모두 토병으로 각각 그 도에서 赴防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성종실록》 권59-5·6, 성종 6년 9월 병진). 이상으로 留防正兵은 총계 44,484명으로 전체 정병 72,104명의 62%에 해당된다.

차례(輪番)로 임명한다. 【加階】 근무일수가 62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 兩界에서는 144일이 차야 한다. ○ 去官할 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72일까지 더하도록 하며, 兩界에서는 180일까지 허용하되 정3품에서 그치도록 한다. 【去官】 종4품 實職.

【忠贊衛】³⁸⁴⁾ 原 原從功臣 및 그 자손이 여기 속한다. 첩자손인 承重者(奉祀者)도 여기에 속한다. 【番次】 5番으로 하며 4개월씩 서로 교체한다. 續 12번으로 한다. 【都目】 4월·7월·10월의 3都目으로 한다. 續 정월·4월·7월의 3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6품 3인, 종7품 4인, 종8품 6인, 종9품 7인. 【加階】 근무일수가 39일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 去官할 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21일까지 허용하되 정3품에서 그치도록 한다. 【去官】 종5품.

【忠順衛】³⁸⁵⁾ 原 임금과 성이 다른 總麻服(석달복)의 친척과 外6寸 이상의 친척, 왕비의 시마복인 친척과 外5촌 이상의 친척이 여기에 속한다. 선왕과 선후의 친척도 이와 같다. ○ 東班 6품 이상, 西班 4품 이상의 實職인 顯官을 지낸 자와 文·武科出身者, 生員·進士, 有蔭者(蔭職의 혜택을 입힐 수 있는 자)의 아들·손자·사위·동생·조카 등이 여기 속한다.

【番次】 7番으로 하며 2개월씩 서로 교체한다. 續 12番으로 한다.

【都目】 續 정월·4월·7월의 3都目으로 한다. 【加階】 근무일수가 75일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 去官할 자가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41일까지 허용하되 정3품에서 그치도록 한다. 【去官】 종5품 影職.³⁸⁶⁾

384) 주 59 (忠贊衛).

385) 주 61 (忠順衛).

386) 解說篇 16. 影職 參照.

【忠翊衛】³⁸⁷⁾ 續 【番次】 12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4월·7월의 3都目으로 한다.

【習讀官】³⁸⁸⁾ 原 訓鍊院·司譯院·觀象監·典醫監에 둔다. 續 경국대전에 있는 遞兒職數를 加減한다. 【番次】 續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7월의 兩都目으로 한다. 續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6품 1인 사역원, 종7품 4인 중 1인은 훈련원, 1인은 사역원, 1인은 관상감, 1인은 전의감, 종8품 9인 중 3인은 훈련원, 2인은 사역원, 1인은 관상감, 3인은 전의감, 종9품 14인 중 4인은 훈련원, 5인은 사역원, 1인은 관상감, 4인은 전의감. 續 종5품 5인 중 4인은 사역원, 1인은 관상감, 종6품 9인 중 7인은 훈련원, 1인은 전의감, 1인은 관상감, 종7품 7인 중 2인은 사역원, 3인은 관상감, 1인은 훈련원, 1인은 전의감, 종8품 11인 중 7인은 사역원, 4인은 관상감, 종9품 43인 중 17인은 사역원, 4인은 관상감, 22인은 훈련원. 補 종5품 8인 중 7인은 사역원, 1인은 관상감, 종6품 12인 중 7인은 훈련원, 1인은 전의감, 4인은 관상감, 종7품 7인 중 2인은 사역원, 3인은 관상감, 1인은 훈련원, 1인은 전의감, 종8품 12인 중 8인은 사역원, 4인은 관상감, 종9품 44인 중 18인은 사역원, 4인은 관상감, 22인은 훈련원. 【加階】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주는데 7품 이하는 450일이 차면 된다.

【醫員】³⁸⁹⁾ 原 議政府와 6曹에 각 3인을 두고 宗親府·忠勳府·都

387) 주 337 (忠翊衛).

388) 주 21 및 92 (習讀官).

389) 醫員은 醫療職에 종사하던 기술관료로서 雜科인 醫科에 합격하였거나 取才시험에 합격한 관원인 점에서 단순한 의학생도인 醫生과는 구별된다. 의원의 대다수는 內醫院·典醫監·惠民 暉에 소속되어 東班체아직을 받았지만 《경국대전》에서는 의정부·6조·충훈부·종친부·도총 부에 배치된 의원들만, 《속대전》에서는 종친부·의정부·6조·충훈부 이외에 耆老所·내의원

摠府에 각 2인을 둔다. **續** 경국대전에 있는 인원수에다가 內局(內醫院)·惠民署·耆老所³⁹⁰⁾·中樞府에 더 둔다. **【番次】** **續**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8품 7인 중 1인은 종친부, 2인은 의정부, 2인은 6조, 1인은 충훈부, 1인은 도총부, 종9품 2인 중 1인은 종친부, 1인은 충훈부. **續** 종4품 4인 종5품 5인은 내국, 종6품 3인 중 1인은 내국, 2인은 혜민서, 종7품 2인은 내국, 종8품 6인은 종친부·의정부·6조·충훈부·기로소·중추부에 각 1인, 종9품 2인 중 1인은 혜민서, 1인은 종친부. **補** 종5품 6인은 내국, 종6품 4인 중 2인은 내국, 2인은 혜민서. **【加階】**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주는데 7품 이하는 450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內宮房司鑰】³⁹¹⁾ **續** **【番次】** 長番으로 한다. **【遞兒】** 종9품 2인.

【守門將】³⁹²⁾ **續** 23인을 둔다. **補** 11인으로 한다. **【番次】**

·혜민서와 中樞府의 의원들까지 番次都目條에 올려 체아직(西班牙체아직)을 교대로 받게 하였다(민현구 외5인, 《앞의 책》 p.602).

390) 耆老所는 조선국초 문관(문과급제자) 정2품의 實職者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그러나 그 후 정2품 문관인 실직자가 없으면(무관과 蔭官은 참여할 수 없음) 종2품 문관인 실직자 중에서 한두 사람을 임금에게 추천하여 들어가도록 하였다(《대전통편》 이전, 경관직). 임금 중에서는 태조가 60세에, 숙종이 59세에, 영조가 51세에 들어갔으며 특히 영조는 83세에 별세할 때까지 오랫동안 老臣들과 사귀었다고 한다(《대전회통연구》 이전편, 《앞의 책》, p.121).

391) 內弓房司鑰이란 내궁방에서 자물쇠와 열쇠관리를 맡은 雜職인 사약을 말한다. 내궁방은 尙衣院 소속으로 활과 화살을 만드는 弓矢製造所를 의미한다(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446).

392) 守門將은 궁궐문과 네군대의 殿廟의 문을 守衛하는 일을 맡으며 《경국대전》에서는 정원이 없었으나 《속대전》에서 23인, 《대전통편》에서 29인이 되었고, 《대전회통》에서는 그 외 肇慶廟·慶基殿·濬源殿·華寧殿 등에 각 1명씩 추가되었다. 그러나 체아직 수는 《속대전》에서 23인이었으나 《대전회통》 병전, 경관직에서는 11인으로 많이 줄었다.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과 7월의 兩都目으로 한다. 補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6품 1인, 종7품 3인, 종9품 19인. 補 종9품 7인.

【訓練院權知】³⁹³⁾ 續 參軍 8인, 奉事 38인으로 한다. 補 봉사 26인으로 한다.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7품 40인, 종8품 2인, 종9품 4인. 補 종7품 28인.

【兼假引儀】³⁹⁴⁾ 續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7품 6인, 종8품 6인.

【吏文學官】³⁹⁵⁾ 續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4품 1인, 종6품 1인, 종7품 1인, 종8품 1인. 補 종4품은 이번에 삭감한다.

393) 주 22 및 주 106 (權知).

394) 禮儀를 관장하는 通禮院(東班)에 종9품직인 兼引儀와 假引儀 각 6인씩 있는데 番次都目條에 규정되고 있는 兼引儀와 假引儀는 이전 경관직의 정원외의 인원으로 보인다(增置分).

395) 吏文學官은 중종 19년부터 승문원에 두게된 관료(蔭官)로서(오희복, 《봉건 관료기구 및 벼슬이름 편람》, 여강출판사, 1992, 북한판, 1989, p.254). 중국과의 외교문서의 작성실무를 맡았다. 중종 35년 右贊成 金安國은 吏文(독특한 文體로서 對中國外交用임)을 맡은 관직은 승문원의 南行之職으로서 정원을 늘려서 서얼들도 임용하자고 하였다(《중종실록》 권94-9, 중종 35년 10월 신미).

【寫字官】³⁹⁶⁾ 續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 ·

4월 · 7월 · 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정3품 1인, 종3품 1인, 종4품 1인, 종5품 1인, 종6품 1인.

【製述官】³⁹⁷⁾ 續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 · 4

월 · 7월 · 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정3품 1인, 종8품 2인. 補 종8품 1인.

【畫員】³⁹⁸⁾ 續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 · 4월

· 7월 · 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6품 2인, 종7품 1인, 종8품 1인.

【補字官】³⁹⁹⁾ 續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 · 4

월 · 7월 · 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9품 1인.

【校書館唱準】⁴⁰⁰⁾ 續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396) 寫字官은 승문원의 기술관료로서 筆才가 있는 사람으로 충원된다.

397) 製述官도 吏文學官 및 寫字官과 마찬가지로 승문원(東班)의 정원의외의 관료이다. 2인 중 1인은 문관, 1인은 蔭官으로 임명한다.

398) 畫員은 圖畫署의 기술관료로서 인원이 30명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그것은 吏典 경관직의 圖畫署條의 註에 있는 것이므로 정원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병전 番次都目條의 체아직으로 녹봉을 주는 것이다.

399) 補字官은 규장각의 外閣인 校書館의 기술관료로서 체아직을 주도록 하였다.

400) 주 87 (唱準).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9품 4인. 補 11인.

【訓練都監將官】 續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4품 8인, 종5품 6인.

【禁衛營將官】 續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4품 6인, 종5품 5인.

【御營將官】 續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4품 8인. 補 7인.

【摠戎廳將官】 續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4품 3인.

【守禦廳將官】 續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4품 5인. 補 지금은 폐지되었다.

【捕盜廳軍官】 續 【都目】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로 한다. 【遞兒】 종4품 5인, 종5품 12인, 종6품 18인, 종7품 12인.

【正兵】⁴⁰¹⁾ 原【番次】 8번으로 하여 2개월씩 서로 교체한다.

○ 諸鎮의 留防軍은 4번으로 하여 1개월씩 서로 교체한다. 【都目】 2월 · 4월 · 6월 · 8월 · 10월 · 12월의 6都目으로 한다. ○ 留防軍은 <2월> 1都目으로 한다. 【加階】 근무일수가 64일이 차면 官階를 준다. 去官할 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35일 까지 더하게 한다. ○ 류방군은 245일이 차야 官階를 주며 계속 근무하는 자는 135일 까지 더 한다. ○ 계속 근무자도 모두 정 3품에서 그치도록 한다. 【去官】 종5품 影職.

【吹螺赤】⁴⁰²⁾ 640인으로 한다. 【太平簫】 60인으로 한다.

原【番次】 5번으로 하여 4개월씩 서로 교체한다. 【都目】 4월 · 7월 · 10월의 3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6품 2인 중 1인은 내취라치⁴⁰³⁾ · 대평소로 하고 종7품 3인 중 1인은 내취라치 · 대평소로 하며 종8품 7인 중 1인은 내취라치 · 대평소로 하고 종9품 20인 중 1인은 내취라치 · 대평소로 한다. 【加階】 근무일수가 39일이 차면 官階를 주며 去官할 자가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21일까지 더하게 한다. ○ 내취라치와 대평소는 170일로 하되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108일까지 허용한다. ○ 계속 근무자도 모두 정3품에 그친다. 【去官】 종5품.

401) 주 62 (正兵).

402) 주 334 (吹螺赤) 및 解說篇 19. 취라치 參照.

403) 내취라치는 왕궁내에서 날라리를 부는(吹角) 취라치이다. 그러나 보통의 취라치가 軍陣에서 吹角하는 戰鬥要員인데 비해서 내취라치는 궁중의 宴禮, 임금의 거동(動駕) 군대의 행진에 있어 취각하는 비전투원으로서 선전관청에 소속되었다(최남선, 《朝鮮常識問答 續編》, <音樂>, p.148, 1973).

【尙衣院】과 【軍器寺】의 【弓人】 【矢人】⁴⁰⁴⁾ 原

尙衣院과 軍器寺가 협의하여 추천장을 올린다. 【番次】 3번으로 하여 6개월씩 서로 교체한다. 【都目】 정월과 7월의 兩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7품 2인 중 1인은 弓人, 1인은 矢人⁴⁰⁵⁾으로 하고 종8품 6인 중 2인은 內弓人, 2인은 內矢人, 1인은 弓人, 1인은 矢人⁴⁰⁵⁾으로 하며 종9품 6인 중 3인은 弓人, 3인은 矢人⁴⁰⁵⁾으로 한다. 【加階】 근무일수가 327일이 차면 官階를 주며 內弓人·內矢人으로서 去官할 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또 327일까지로 하되 정3품에서 그치도록 한다. 【去官】 종5품에서 그친다.

【諸員】⁴⁰⁶⁾ 原 承文院에서는 事大文書에 쓸 종이를 裁斷할 때에 1일마다 특별근무(別仕) 2일로 처준다. ○ 큰 일이면 10일, 작은 일이면 5일로 처준다. 【番次】 3번으로 하여 6개월씩 서로 교체한다. 승문원에서는 長

404) 弓人은 활을 만드는 사람, 矢人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다. 弓匠·矢匠이라 하지 않고 궁인·시인이라 한 것은 그것이 常人戶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 한다. 본래 활은 黃帝의 신하인 靑陽氏(揮)가 처음 만들어 그 공로로 張氏 성을 下賜받았다고도 하며 혹은 少昊의 아들 盤이 처음 만들었다고도 한다. 화살은 황제의 신하인 夷則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고 혹은 牟夷가 처음 만들었다고도 한다(權五榮 외4인, 《역주 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p.780-781). 세조 6년 8월 병조의 건의에 따라 尙衣院 소속 궁인의 정원은 15명으로 하여 각 5명씩 3교대(3番)로 나누어 일을 하도록 하였고, 軍器監에는 90명이 소속되어 각 30명씩 3교대(3번)로 나누어 일을 하도록 하였다. 또 상의원 소속의 矢人是 30명으로 3교대로 나누었으며 軍기감 소속의 시인은 60명으로 역시 3교대로 나누어 일을 하도록 하였다(《세조실록》 권21-9, 세조 6년 8월 갑진).

405) 內弓人과 內矢人은 궁궐안에 설치된 내궁방에 소속된 匠人으로서 임금이 사용하는 활과 화살을 만들었다. 내궁방은 宦官이 주관하였는데 세종 20년 11월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弓矢의 제조를 환관에게 맡기는 것이 부당하므로 상의원 등에 맡기자고 하였으나 세종은 그대로 환관이 주관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83-17·18, 세종 20년 11월 계묘). 세조 6년 8월 병조의 건의에 따라 상의원의 內速毛赤의 정원을 40인으로 하고 2교대(番)로 나누어 20인으로 하되 궁인과 시인을 각 10인씩 두며, 체아직으로 副司直 1인, 司正 1인, 副司正 3인, 司勇 5인을 두도록 하였다(《세조실록》 권21-9, 세조 6년 8월 갑진).

406) 주 227 (諸員).

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과 7월의 兩都目으로 하되 승문원에서는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7품 10인 중 1인은 尙衣院, 1인은 司饗院, 7인은 司僕寺, 1인은 典設司로 배정하고, 종8품 20인 중 1인은 承文院, 1인은 尙衣院, 2인은 司饗院, 15인은 司僕寺, 1인은 典設司로 배정하며, 종9품 32인 중 1인은 상의원, 2인은 사옹원, 28인은 사복시, 1인은 전설사로 배정한다. 【加階】 근무일수가 514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승문원에서는 1542일을 채워야 한다. ○ 去官할 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128일까지 더하게 하고 승문원에서는 385일까지로 하되 모두 정3품에서 그친다. 【去官】 종6품.

【濟州子弟】⁴⁰⁷⁾ 原 30인으로 한다. ○ 濟州牧使가 3邑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벼슬하기에 적당한 자(從事可當者)를 골라서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임금에게 아뢰면 병조에서는 이를 장부에 기록하여 매일 출근(親着)시킨다. 【都目】 정월과 7월의 兩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6품 1인, 종7품 1인, 종8품 2인, 종9품 2인. 【加階】 근무일수가 450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 관직을 받았을 때의 근무일수와 병조에서 출근한 때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준다.

【破敵衛】⁴⁰⁸⁾ 原 2500인으로 한다. 【番次】 5번으로 하여 4개월씩 서로 교체한다. 【都目】 4월·7월·10월의 3都目으로 한다. 【加階】 근무일수가 108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 去官할 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58일까지 더하게 하되 정3품에서 그치도록 한다. 【去官】 종5품 影職.

407) 주 245 (濟州子弟).

408) 주 60 (破敵衛).

【管領】⁴⁰⁹⁾ 原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일의 1都目으로 한다. 【加階】 근무일수가 1542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 去官할 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385일까지 더하게 하되 정3품에서 그치도록 한다. 【去官】 종6품 影職.

【壯勇衛】⁴¹⁰⁾ 原 600인으로 한다. 【番次】 5번으로 하여 6개월씩 서로 교체한다. 【都目】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6품 1인, 종7품 2인, 종8품 2인, 종9품 10인. 【加階】 근무일수가 62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 去官할 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72일까지 더하게 하되 정3품에서 그치도록 한다. 【去官】 종6품 實職.

【隊卒】⁴¹¹⁾ 3000인으로 한다. 【彭排】⁴¹²⁾ 5000인으로 한다. 原 【番次】 5번으로 하여 4개월씩 서로 교체한다. 【都目】 4월·7월·10월의 3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8품 31인 중 11인은 隊卒, 20인은

409) 管領은 조선시대 서울(한성) 5부의 各坊과 城底 10리의 各里에 두었던 행정책임자이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3). 세종 10년 윤4월 한성부의 上啓(보고)에 의하면 京城(서울) 5부의 戶數는 16,921戶이고 인구는 103,328명으로 管領이 46인이라는 것과 城底 10리는 1,601戶 6,044명에 管領이 15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城內는 100家를 1里로 하여 里正을 두고 城底各面은 30家를 1里로 하여 勸農官을 둔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管領 1인당 평균 管轄 호수는 城內는 300호~400호, 城底는 100여호씩이 된다. 그 때 이조의 榜에 따라 5부의 管領에게 隊長·隊副의 差役을 주고 한성부에서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살펴서 임용하되 원래 관직이 있는 자에게는 行職을 주며, 만약 범법하면 한성부와 各 해당 부 이의는 제멋대로 論罪할 수 없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40-11, 세종 10년 윤4월 기축).

410) 주 19 및 주 63, 주 130 (壯勇衛).

411) 주 54 (隊卒).

412) 주 57 (彭排).

彭排·雜職으로 하고, 정9품 126인 중 46인은 대졸, 80인은 팽배로 하며, 종9품 1474인 중 554인은 대졸, 920인은 팽배로 한다. 【加階】 근무일수가 1080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 去官할 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290일까지 더하게 하되 종6품에서 그치도록 한다. 【去官】 종8품 實職.

【伴尙】⁴¹³⁾ 原 散職,⁴¹⁴⁾ 종8품 10인, 종9품 50인으로 하되, 大君·王子君·公主의 남편인 駙馬都尉·功臣의 반당은 서로 교체하여 임명한다. 【都目】 정월과 7월의 兩都目으로 한다.

【童蒙訓導】⁴¹⁵⁾ 原 【都目】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9품 1인. 【加階】 근무일수가 450일이 차면 官階를 준다. ○ 관직을 받을 때 근무일수를 셈하여 준다.

413) 주 230 및 주 231 (伴尙).

414) 주 6, 주 160, 주 386 (散職).

415) 여기서의 童蒙訓導는 조선시대에 각 지방에서 사사로이 소년들을 가르치던 儒者를 의미하기도 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3). 동몽은 冠禮를 올리기 전의 소년들을 말한다. 관례는 대체로 15세~20세 사이에 올리나 早婚풍습으로 인하여 그보다 일찍 올리는 수가 많았다. 鄕校에도 童蒙校生이 있었으나 동몽은 대체로 서당이나 家塾같은 私學에서 공부하였다. 訓導는 원래 官學인 향교의 종9품직인 교관으로서 조선전기에는 각 고을에 배치되었으나 《속대전》에서는 그 정원이 모두 삭감되고 관인으로는 西北兩道の 譯學訓導와 경상도의 倭學訓導만이 남게 되었다(《대전회통연구》 예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4. 12, p.237). 그리하여 조선후기의 동몽훈도는 주로 사적인 교육시설의 교사를 의미하게 되었다. 물론 조선전기에도 官學인 향교의 敎官만을 동몽훈도라 한 것은 아니고 《경국대전》 병진, 番次都目條의 동몽훈도는 사학의 사적인 교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라에서는 조선전기부터 사학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동몽훈도의 근무실태를 살펴서 일정한 성과가 있는 자에게는 都目 때마다 임금에게 보고하여 체아직을 주도록 하였다(민현구 외4인, 《위의 책》 p.603). 그러나 동몽훈도에게 배당된 체아직은 종9품 1자리 뿐이었고 비록 《大典後續錄》에서 그것이 2자리(副司勇) 加設되었으나(병진, 체아) 그것이 《속대전》에는 등재되지 못하였다.

【羅將 皂隸】⁴¹⁶⁾ 原 【番次】 3번으로 하여 1개월씩 서로 교체한다. 【都目】 정월과 7월의 兩都目으로 한다. 【加階】 근무일수가 3600일이 차면 官階를 준다. 【去官】 종9품 雜職.

【補充隊】⁴¹⁷⁾ 原 나이가 60세가 된 자와 去官하기 전에 죽은 자의 근무일수는 모두 자손이 그 役을 계승하면 通算하여 준다. 【番次】 4번으로 하여 4개월씩 서로 교체한다. 【都目】 정월과 7월의 兩都目으로 한다. 【加階】 근무일수가 1000일이 차면 官階를 준다. ○ 2품 이상의 자손은 330일이 차면 官階를 준다. ○ 原從功臣의 賤妻妾子가 承重 할(奉祀者가 될)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반으로 減하여 준다. 【去官】 종9품 雜職.

【破陣軍】⁴¹⁸⁾ 原 180인으로 한다. 【番次】 6번으로 하여 1개월씩 서로 교체한다. 【都目】 정월·4월·7월·10월의 4都目으로 한다. 【遞兒】 雜職, 종7품 2인, 종8품 2인, 종9품 3인. 【加階】 근무일수가 909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 정6품에서 그친다.

【水軍】⁴¹⁹⁾ 原 48800인으로 한다. ○ 항상 등근 牌(圓牌⁴²⁰⁾)를 패

416) 주 225 및 주 226 (皂隸 및 羅將).

417) 주 51 (補充隊).

418) 주 164 (破陣軍).

419) 水軍은 고려말 왜구에 대비하여 재건된 후 연해의 各浦에서 교대 근무하던 兵種으로서 騎船軍 또는 船軍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세종 때 제도상으로 정비된 수군은 良人층의 의무병종으로 《경국대전》상의 정원이 48,800인이었다. 수군은 연해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내지인도 포함되었으며 2교대로 1개월씩 1년에 6번 근무시켰다. 처음에는 戶首와 奉足이 교대근무할 수 있

용한다. 둥근 패는 직경이 周尺으로 3寸이며, 일면에 어느 浦의 水軍 누구·나이·용모·거주지를 쓰고, 일면에는 연월일을 쓰는데, 양면 모두 水軍이란 두 글자를 篆字로 낙인한다. ○ 水軍은 父祖의 소임을 그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며 다른 身役은 지지 아니한다. 그 중에서 활쏘기에 능한 자가 있으면 수군절도사가 관내를 순행할 때에 시험 보여 뽑아서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매년의 都目 때(歲抄⁴²¹)에 우등자를 임금에게 아뢰어 散官職(직무가 없는 벼슬자리)에 임명하되, 경기도·충청도·황해도·강원도에서는 각 2인, 경상좌·우도와 전라좌·우도에서는 각 3인, 영안도와 평안도에서는 각 1인씩으로 한다. ○ 재주와 행실에 탁월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찰사가 수군절도사와 함께 그 인적사항과 才行 정도를 갖추어서 列書하여 임금에게 아뢰어 재능에 따라 임용함으로써 무술을 권장한다. 【番次】 2번으로 하여 1개월씩 서로 교체한다. 【都目】 정월의 1都目으로 한다. 【加階】 근무일수가 360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 去官할 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450일까지 허용하되 정3품에서 그치도록 한다. 【去官】 종4품 影職.

였으나 戶首만 근무(立番)시켰고 그 代立防止策으로 漆圓木牌를 사용하였다. 수군은 당번이 되면 1개월간의 양식을 갖고 赴防하여 船上근무를 하였으며, 그의 수군은 屯田·漁鹽·海產物採取·兵船修理·漕運·築城·京外大小工役·牧場役事 등의 잡역에 동원되었고 貢物進上의 備納 등 그 役이 과중하였으며 성종대 이후 수군의 世傳이 구체화되면서 賤役化하여 조선후기에는 七般賤役의 하나로 간주되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4 및 이재룡, 〈조선전기의 수군〉, 《한국사연구》5, 1970).

420) 圓牌는 수군의 正軍임을 증명하는 黑漆圓木牌로서 성명·나이·용모·신장·부모名號·거주지 등이 써있고 수군 두 글자가 낙인되어 있다. 戶首에게만 지급되었으며 代立을 막기 위하여 수군은 이것을 상시 패용하여 點考(점검)에 응하도록 하였다. 수군의 도망·사망·老病時에는 舊牌를 회수하고 새로 발급하였다(《세종실록》 권116-3, 세종 29년 4월 임인). 선군(수군)의 戶首에게만 圓牌를 지급하다 보니 불편하고 특히 매월의 교대시에 가고 오고 하는 날짜를 빼면 휴식은 겨우 20여일 하게 되어 고통을 못견디어 流散하는 者가 생겼으므로 성종 8년에 保人에게도 모두 圓牌를 주어 상호 교대로 立番할 수 있게 하여 勞逸을 고르게 하였다(《성종실록》 권77-4, 성종 8년 윤2월 기유).

421) 주 100 (歲抄).

【漕卒】⁴²²⁾ 原 5960인으로 한다. 패용하는 패의 형식(牌制)은 水軍

과 같으나 다만 어느 倉의 漕卒이라는 것을 쓰고 조졸이란 두 글자를 篆字로 낙인한다. ○ 조졸은 父祖의 소임을 그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며 다른 身役은 지지 아니한다. 배마다 領船⁴²³⁾ 1인이 있고 10船에 統領⁴²⁴⁾ 1인이 있으며 20船에 千戶⁴²⁵⁾ 1인이 있다. 영선과 통령은 海運判官⁴²⁶⁾이 선정하여 임명하며 천호는 해운판관이 풀라서 호조에 보고하여 임명한다. 漕運時에 조심스러히 배를 운행하지 아니하여 파선 또는 침몰시킨 경우에 령선은 첫번째이면 형장 100을 치고 근무일수를 삭감하며 두번째이면 전가족을 변방에 이주시킨다. 그러한 경우에 조졸에게는 각각 형장 100을 치고 근무일수를 삭감하며 천호에게는 5선이면 형장 100을 치고 근무일수를 삭감하며 10선이면 전가족을 변방에 이주시킨다. 그리고 통령인 경우에는 2선이면 형장 100을 치고 근무일수를 삭감하며 5선이면 전가족을 변방에 이주시킨다. 만약 風變(풍랑)을 만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422) 漕卒은 漕運에 종사하는 자로서 沙工·格軍·漕軍·水夫 등을 통칭한 말이다. 漕卒은 거의 세습직이었으며, 그 신분은 비록 良人이나 그 役이 賤視되어 身良役賤으로서 七般賤役에 속한다. 漕卒의 임무는 稅穀의 운반 이외에 破船의 개조·船隻의 看守·製鹽 등도 담당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4 및 崔完基, 〈朝鮮初期 漕運試考〉, 《白山學報》 20, 1976, pp.410-423). 숙종 7년 5월의 漕軍數는 3,200여명이라 하였으나 兩南의 收米는 모두 私船을 빌려 싣는다고 하였다(《숙종실록》 권11-47, 숙종 7년 5월 임신).

423) 領船은 漕運船의 漕卒가운데 우두머리로서 船長에 해당된다. 領船은 대개 浦所지역의 토착인으로서 富強한 자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5).

424) 統領은 漕運船 10척을 단위로 삼아 行船을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浦所 지역의 토착인으로서 유력자였다고 추정된다(同上).

425) 千戶는 고려후기 元制에 따라 依用하게 되었으며 民戶를 지배하는 관원인 百戶, 萬戶와 더불어 管領하는 민호수를 나타내는 관직이기도 하였으나 그 후 점차로 鎭將의 품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하였다(이재룡, 〈조선전기의 수군〉, 《한국사연구》 5, 1970, p.120). 수군의 千戶는 태조 7년에 4품이상으로 임명되었다가 태종 13년에는 千戶(5품), 副千戶(6품)로 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의 천호는 漕運船 30隻을 하나의 船團으로 하여(綜이라 함) 行船할 때에 그것을 총지휘하는 사람을 가리킨다(同上).

426) 海運判官은 海路를 통한 稅米 등의 조운을 담당하던 감독관(押領官)으로서 戶曹의 屬衙門인 典艦司 소속의 관원이다. 그러나 경기도를 제외한 각도의 조운감독을 해운판관이 담당하기가 어려워져(특히 전라도와 충청도) 다시 각도의 監司와 水使의 전속 관할로 두기로 하였다(《성종실록》 권6-14, 성종 원년 6월 을축 및 《같은 책》 권99-7, 성종 9년 12월 정유). 중종 20년 6월 임금이 전교하기를 해운판관은 명망있는 문관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래 그렇지 못하여 漕船 19척(곡식 5,600여석)이 敗船되었다고 하였다(《중종실록》 권54-47, 중종 20년 6월 경술). 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453에서는 해운판관을 충청·전라 양도에서 조운임무를 맡았던 관원으로 숙종 23년에 양도 都事가 겸임했다고 한다.

○ 조운할 때가 아니면(배가 정박할 때는) 배 마다 2인을 교대로 지정하여 지키도록 한다. ○ 조운할 때에는 짐을 싣기 시작한 날로 부터 京江⁴²⁷⁾에 이르기까지 1일 마다 특별근무일수 10일을 쳐주되 榮山倉으로부터는 29일, 法聖浦倉으로부터는 18일, 德城倉으로부터는 19일, 貢稅串倉으로부터는 13일 내에 운송해야 한다. ○ 배에 소용되는 기구(什物)를 준비할 때와 경강에 머물 때 및 돌아갈 때에는 1일 마다 하루의 근무일수로 쳐주며 짐물을 준비하는 기간은 30일 간으로, 京江에 머무는 기간은 20일 간으로 정한다. ○ 배를 지킬 때에는 3일을 근무일수 1일로 쳐준다. ○ 漕卒이 有故하면 관청에 알려져서 保內人⁴²⁸⁾을 대신 보내되 근무일수로 쳐주지 아니한다. 사사로이 교체한 자와 교체된 자(私自代替及替之者)에게는 모두 죄를 논의하여 처벌(논죄)하고 그것을 檢察하지 못한 관리도 논죄한다. 【番次】 2번으로 하여 1년씩 서로 교체한다. 【都目】 정월, 1都目으로 한다.

【加階】 근무일수가 360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준다. ○ 去官할 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450일까지 허용 하되 정3품에서 그치도록 한다.

【去官】 종4품 影職.

【訓練都監軍士】 續 【番次】 長番으로 한다.

【都目】 정월과 7월의 兩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4품 2인, 종5품 4인, 종6품 6인, 종7품 6인.

【禁衛營軍士】 續 【番次】 宿衛騎士⁴²⁹⁾는 15번으로 하여 매

427) 京江은 뚝섬으로부터 楊花渡까지의 한강을 의미하였다. 京江에 水軍(舟師)을 두었는데 그 역할이 과중하여 폐단이 컸다(《선조실록》 권129-21, 선조 33년 9월 병인).

428) 保內人은 保人和 作保되지 않은 同居의 子·壻·弟를 합칭한 말이다. 漕卒은 1保를 받는 이외에 동거하는 子·壻·弟는 保數를 초과하더라도 2丁까지는 他役으로 充定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漕卒이 유고하면 保人이나 그들 餘丁(內人) 가운데에서 代立시킬 수 있다고 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5). 그러나 《교주 대전회통》 조선총독부, 《앞의 책》 p.566에서는 保內人을 保人(保布납부자)과 같은 것으로 본다. 역자는 앞의 의견에 따른다.

월 서로 교체하며 步軍은 25번으로 하여 두 달씩 서로 교체하되 농사철(農月)인 4개월은 매일 서로 교체한다. **增** 農月에도 두 달씩 서로 교체한다.

【都目】 정월과 7월의 兩都目으로 한다. **【遞兒】** 종6품 1인, 종7품 1인, 步軍.

【御營軍士】 **續** **【番次】** 宿衛騎士는 15번으로 하여 매일 서로 교체하고 步軍은 25번으로 하여 두 달씩 서로 교체한다.

【騎兵】 **續** **【番次】** 8번으로 하여 두 달씩 서로 교체한다. **補** 2번을 감한다.

【軍士給仕】⁴³⁰⁾ **原** 매일을 하루로 근무일수를 쳐준다. ○ 다른 관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入直日⁴³¹⁾은 하루 근무로 치고 出直日⁴³²⁾은 2일 마다 하루 근무로 치며 일이 수월한 곳에서는 3일을 하루 근무로 친다. 軍士⁴³³⁾

429) 宿衛騎士는 금위영과 어영청에 소속되어 立番하여 宿衛하는 軍官을 말한다. 騎士와 步軍은 각각 正軍으로서 교대로 上京宿衛하였지만 후일 보군(보병)은 上番을 정지하고 身布만을 납부하였으나 기사(기병)중 일부는 상경 숙위하게 하고 나머지는 放軍收布하였다(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453).

430) 軍士給仕는 군사에게 근무일수(仕日)를 쳐주는 것을 말한다. 통상근무(기본근무)일수를 쳐주는 元仕(주 366)와 특별근무일수를 쳐주는 別仕가 있는데 元仕는 入直과 行巡에만 해당되며 그밖에 侍衛·習陣·赴防·捕盜·捕虎 등에는 別仕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6).

431) 入直은 將帥와 軍士가 궁궐안에 들어가서 숙직하는 것을 말한다. 병조의 당상관 1인과 도총부의 당상관 2인의 지휘·감독하에서 5衛의 각1部和 兼司僕·내금위가 3일 교대제로 入直한다(《경국대전》 병전, 入直).

432) 出直은 궁궐안에서 숙직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것, 즉 숙직자의 出番을 뜻한다. 그러나 출직 중에도 군사들은 都城內外를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3일 중 1일은 훈련원에 나아가서 習陣이나 사격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6).

433) 軍士는 병졸과 하급무관을 의미한다. 고려시대에는 일반 군인과 하급장교인 校尉·隊正까지를 군사라 하였으며(이기백, 《高麗兵制史研究》, 1968, 일조각, pp.83-85), 조선시대에는 많은 특수병종이 설치되고 그 중 체아직을 받는 수가 많았는데 그들을 포함시켜 군사라 하였

가 아닌 자도 같다. ○ 行香과 傳香⁴³⁴을 맡은 인원이 일을 마친 후 관찰사는 일한 날짜(日月)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兵曹에 공문을 보내고 병조에서는 일정과 거리를 헤아려서 근무일수를 쳐준다. 기한을 넘긴 자는 이유없이 근무하지 아니한 例에 따라 논한다. ○ 무릇 특별근무일수(別仕)는 장부에 적어 두고 통솔하는 장수가 서명(花押自署) 날인(官印押捺)하여 보관한다. ○ 長番이 아닌 軍士에 관해서는 장부를 2건 작성하여 당번이 끝난 2일 내에 나누어 병조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 무릇 無祿軍士⁴³⁵의 入直·行巡·侍衛⁴³⁶ 이외의 특별근무에 대해서는 3일 마다 하루 근무로 쳐준다. 續 경국대전에 傳香 인원 이하에 대하여 서울과 지방에서 특별근무일수를 쳐주는 법이 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 禁軍에게 資級(官階)을 올려 주고 實職에 임용할 때에는 兼司僕의 근무 이외에는 다른 관청의 근무일수는 모두 통산하여 주지 아니한다. ○ 무릇 지방의 軍官과 軍士들의 근무일수는 각각 그 鎭將이 磨鍊하여 절도사에게 보고하고 절도사는 이를 재심사(磨勘)하여 每都目的 전달 初10일 안에 임금에게 아뢰다.

【入直】 통상근무(元仕) 1일 【行巡】 통상근무 1일 【侍衛】 특별근무(別仕) 1일 習陣⁴³⁷ 특별근무 1일 習射⁴³⁸ 入直 ○ 특별

다. 그러나 중급이상의 무관 내지 군관을 모두 포함시킬 수는 없으며 《경국대전》 병전, 告身條의 「軍士 五品以下受遞兒者」의 규정에 비추어 군사란 병졸과 5품 이하의 무관을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6).

434) 行香은 각종 제사를 거행함을 말하는데 세종 17년 9월에 각처에 行香使를 임금이 지정(受點)하였으나 身病 기타를 핑계삼아 불응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다(《세종실록》 권69-31, 세종 17년 9월 무술). 또 세종 18년 10월 임금은 친히 朔祭(매월 초하루에 宗廟·永寧殿·文昭殿·諸陵·文廟에서 지내던 제사 《國朝五禮儀》 권 1·2 吉禮)에 香祝을 전달하였는데 이를 傳香이라 한다(《앞의 책》 권75-9, 세종 18년 10월 신묘). 大祀(왕이 親祭)·中祀(왕 또는 관원이 주관)·小祀(관원이 주관)와 大祭 기타 제사(天神에 대한 제사를 祀, 地祇에 대한 제사를 祭, 人鬼에 대한 제사를 享)에 있어서의 行香 및 傳香에 관하여 《대전회통》 예전, 제례와 《국조오례의》 권1·2, 吉禮 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대전회통연구》 호전·예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4, 12, pp.191~202).

435) 無祿軍士는 녹봉을 못받는 군사로서 立番중에 체아직을 받지 못하는 충순위·정병·破敵衛 등이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7).

436) 行巡은 衛將이나 部將이 군사를 거느리고 야간에 시간을 나누어(分更) 궁궐이나 도성내의 를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대전회통》, 병전, 行巡). 또 侍衛는 임금을 호위하는 것인데, 大閱·講武·巡幸·打圍 및 임금이 親行하는 제사 등에 있어서의 應行條件을 병조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지시를 받아 해당 軍門에 공문을 보내어 侍衛하도록 하였다(《同上》 병전, 侍衛).

437) 習陣은 陣法을 익히는 훈련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실시하였다. 그러나 세종 3년 7월 병조의 啓에 의하면 陣圖之法이 軍國의 急務인데도 지방군사들이 전혀 습진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

근무로 하되 표적판(候)에 맞으면 1일, 표적(正)에 맞으면 2일로 처준다.⁴³⁹⁾

【赴防】⁴⁴⁰⁾ 특별근무 1일 【赴役】⁴⁴¹⁾ 특별근무 2일 【捕盜】⁴⁴²⁾

특별근무 1일 ○ 都城 밖에서 잡은 경우는 1일을 加算한다. ○ 사사로이 竊盜나 牛馬를 죽인 자를 잡은 경우에는 범인 1인당 10일로 특별근무일수를 쳐주고 1인이 증가할 때마다 5일씩 加算하되 특별근무일수가 50일에 이르면 그친다. 強盜를 잡으면 1인당 특별근무일수 50일로 쳐주고 1인이 증가할 때마다 10일씩 加算하되 특별근무일수가 100일에 이르면 그친다. 범인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잡은 자의 특별근무일수의 3분의 2를 쳐준다. 범인을 신고한 자와 잡은 자가 비록 많더라도 모두 특별근무일수를 쳐준다. 續 경국대전에 범

으로는 각도 절제사로 하여금 농사일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군사들을 모아 습진시키도록 하라고 하였다(《세종실록》 권12-22, 세종 3년 7월 기사). 陣圖法은 세종대의 몇차례의 受敎를 종합하여 문종 원년에 임금이 〈五衛陣法〉을 편찬하였는데 후에 〈진법〉이란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진법은 일찌기 태조 7년에 정도전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태종대의 《續六典》에 규정되었으며 세종대의 몇차례의 보완을 거쳐서 《경국대전》에 등재된 것이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7 및 《세종실록》 권122-6, 세종 30년 10월 신사). 《경국대전》, 병전, 敎閱條에 의하면 매월 2일과 16일에 出直 將士들을 모아서 郊外에서 習陣하도록 하였고 또 지방군은 매월 16일(農月은 제외)에 各鎮에서(2월과 10월에 巨鎮에서) 습진하도록 하였다. 《속대전》 같은 條에 의하면 매월 3次 三軍門이 교외에서 습진한다고 하였다.

438) 習射는 활쏘기 연습을 말하며 火器가 발달된 이후에도 중요한 무예로 보았고 무관들의 기본소양으로 여겼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8), 《경국대전》 병전 敎閱條에 의하면 出直 軍士들은 助番(代理入番)이나 순찰임무 수행자 이외에는 3일에 1일씩 훈련원에 가서 習陣하거나 習射하도록 하였다.

439) 候는 표적판(射布)을 의미하고 正은 표적판 중앙에 단 貫(표적)을 의미한다.

440) 赴防은 압록강·두만강 등 연변지역의 鎭·堡 등 국방의 요새지에 군사를 파견하여 방위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赴防은 가장 힘든 고역이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8).

441) 赴役은 役事에 군인이나 양민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조선전기에는 주로 도성내의 축성과 궁궐·하천·교량의 보수 기타의 勞役に 도성 인근 고을 백성이나 충청도·강원도 백성들을 많이 동원하였고 때로는 僧徒들도 동원하였다. 부역에 동원되는 군인은 防牌·隊卒과 그 밖의 대부분의 병종에 해당되는 자이다(同上).

442) 捕盜는 도적을 잡는 것을 말하는데 《大明律》의 刑律, 捕亡條에서 도적을 체포할 의무있는 군병이 소정기한내에 잡지 못한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大明律 直解》 권27, 刑律, 捕亡, 盜賊捕限)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捕盜者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고 있다. 조선초기에는 포도관을 따로 두지 않고 있었으므로 포상위주의 捕盜대책이 세워질 수 밖에 없었다(李泰鎭 외4인, 《역주 경국대전》 주석편, 형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p.695-696). 세종 29년 3월 의정부에서는 도적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한 포상을 《경제육전》과 세종 17년 9월 및 세종 21년 윤2월, 세종 25년 8월·9월의 受敎에 따라 실시할 것을 임금에게 건의하고 있다(《세종실록》 권115-20, 세종 29년 3월 계미). 이러한 포상규정은 세조 7년 7월에 撰定된 《경국대전》 형전에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세조실록》 권39-40, 세조 12년 9월 병술).

인 수를 계산하여 근무일수를 쳐주는 법이 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 死刑에 해당하는 도적 5명을 동시에 잡은 경우에는 그것을 지시한 자와 체포한 자 각 1명에게 資級(官階)을 올려 주되(加資) 本土인이 아니면 그러하지 않다. ○ 무릇 일반 백성도 같다. 【田獵(사냥)】⁴⁴³⁾ 특별근무 1일 ○ 都城 밖에서는 1일을 加算한다. 【越境迎送】⁴⁴⁴⁾ 특별근무 2일 【越境斥候】⁴⁴⁵⁾ 특별근무 4일 【赴戰】⁴⁴⁶⁾ 특별근무 21일 【捕虎】⁴⁴⁷⁾ 守令이 1년 동안에 범 10마리 이상 잡으면 官階를 올려 준다(加階). ○ 5마리를 잡으면서 화살이나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는 모두 2資級(官階)을 뛰어넘어 올려 준다(超二階). 鄉吏·驛吏와 賤人の 경우에는 綿布 60필을 支給하며 이 아래 경우에 있어서는 매 등급마다 각각 20필씩을 減한다. ○ 두 마리를 먼저

443) 田獵은 새와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말하는데(《경국대전 주해》 하, 후집, 병전) 사냥을 할 때에는 군사훈련도 겸하였다. 이 때에 잡은 짐승을 종묘의 제물로 바쳤다(《태종실록》 권 18-47, 태종 9년 12월 정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가 좁고 사냥으로 인한 농작물 폐해도 예상되었으므로 황해도 平山 남쪽 100여리를 수렵지로 한정하여 매년 가을과 겨울에 그곳에서 사냥을 하면서 무예를 닦도록 하였다(《정종실록》 권4-18, 정종 2년 6월 기유).

444) 越境迎送은 국경을 넘어가서 使臣을 영접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북경에 가는 사신을 迎送하는 군사로는 평안도의 정병을 정하여 보냈다. 使行의 전송에는 4隊를, 出迎에는 2隊를 동원하였고 單使로서 方物을 휴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영송에 모두 2隊를 동원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09). 또한 赴京使行의 호송군은 별다른 나쁜 소문이 없을 때(無聲息時)에는 1隊를 감한다(《大典後續錄》, 병전, 迎送).

445) 越境斥候는 국경을 넘어가서 타국의 정세를 정탐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기도 한다. 《경국대전 주해》 하 후집, 병전에 斥候는 도적을 염탐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敵兵을 탐정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446) 赴戰은 戰場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 戰功으로 인한 賞給은 조선전기에도 있었으나(《세종실록》 권69-30, 세종 17년 9월 정유) 특히 임진왜란 때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官階·官職(實職과 影職)의 除授와 免賤·免役·免鄉 등의 조치가 있었고(《선조실록》 권32-3, 선조 25년 11월 경신, 《같은 책》 권40-30, 선조 26년 7월 무진, 《같은 책》 권43-5, 선조 26년 10월 병술, 《같은 책》 권46-4, 선조 26년 12월 경술, 《같은 책》 권51-8, 선조 27년 5월 을유, 《같은 책》 권59-5, 선조 28년 정월 신사, 《같은 책》 권60-9, 선조 28년 2월 기유), 그 후에도 병자호란(《승정원일기》 54책, 인조 14년 12월 19일·21일)과 李适亂을 비롯하여 내란·외란을 거치면서 赴戰者에 대한 포상이 널리 시행되었다(李章熙, 〈兩班·農民層의 變化〉, 《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84, pp.447-452).

447) 捕虎는 호랑이나 표범을 잡는 것으로 甃(檻機)나 활·창 등을 사용하여 잡았다. 호랑이를 잡은 士人이나 良人에게는 加階·給仕를 하거나 復戶 또는 綿布를 주었고, 鄉吏·驛吏·賤人들에게는(특히 향리에게는) 身役을 면제시켜 주거나 면포를 지급하였다(《大典續錄》 병전, 捕虎 및 《대전회통》 병전, 軍士給仕).

명중시키고 세 마리를 他人 다음에(두번째로) 명중시킨 경우에는 1資級을 뛰어서 官階를 올려 준다. 한 두마리를 먼저 명중시키고 서 너마리를 다음에 명중시킨 경우에는 官階를 올려 주되 階窮인 자에게는 準職을 준다. 448) ○ 큰 범(大虎)을 화살이나 창으로 먼저(첫번째로) 명중시킨 자에게는 특별근무일수로 50일을 쳐준다. 鄉吏 및 驛吏와 賤人の 경우에는 綿布 6필을 支給하며 그 아래 경우에 있어서는 매 등급 마다 각각 반필씩 減한다. ○ 큰 범(대호)을 타인 다음(두번째)으로 명중시킨 자에게는 특별근무일수로 45일을 쳐주고 또 그 다음(세번째)으로 명중시킨 자에게는 40일을 쳐준다. 보통 범(中虎)을 화살이나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에게는 특별근무일수로 40일을 쳐주고 그 다음으로 명중시킨 자에게는 35일을 쳐주며 또 그 다음으로 명중시킨 자에게는 30일을 쳐준다. ○ 작은 범(小虎)을 화살이나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에게는 특별근무일수로 30일을 쳐주고 그 다음으로 명중시킨 자에게는 25일을 쳐주며 또 그 다음으로 명중시킨 자에게는 20일을 쳐준다. ○ 표범을 화살이나 창으로 먼저 명중시킨 자에게는 특별근무일수로 20일을 쳐주고 그 다음으로 명중시킨 자에게는 15일을 쳐주며 또 그 다음으로 명중시킨 자에게는 10일을 쳐준다. ○ 덧(檻機) 혹은 활이나 창을 갖고 自進하여 범을 잡은 자에게는 각각 두번째로 화살이나 창을 적중시킨 자의 例에 의하여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근무일수를 쳐주거나 혹은 綿布를 지급하고 잡은 범과 표범도 모두 지급한다. 향리가 자진하여 1년에 5마리를 잡은 경우에는 身役⁴⁴⁹⁾을 면제한다. [續] 경국대전

448) 階窮은 정3품 下인 품계로서 東班官階로서는 通訓大夫, 西班官階로는 禦侮將軍을 말하는데 資窮이라고도 한다. 階窮은 당하관으로서는 최고의 官階(資級)로서 이를 거치지 않고서는 당상관이 될 수 없다(《경국대전주해》 前集, 吏典).

準職은 承文院 判校·奉常寺 正·通禮院 左通禮와 같이 정3품인 당하관직으로서 특별한 훈공이 없는한 준직을 거쳐야만 당상관이 될 수 있었다(《대전회통연구》, 이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3, 12, p.237). 예종 원년 윤2월에 寧城君 崔恒의 건의에 따라 未資窮·未準職인 자에게는 加資를 하고 己資窮·未準職者에게는 準職을 주며, 己資窮·準職者에게만 당상관으로 올려주도록 하였다(《예종실록》 권4-22, 예종 원년 윤2월 갑신). 또 성종 11년 정월 임금이 말하기를 準職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祿을 탐하기 때문이라 하고 祿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으나(관직의 升降은 가능하나) 資級(官階)에는 升降이 없으니(쉽지 않으니) 어찌 중하지 않는가라 하였다(《성종실록》 권113-11, 성종 11년 정월 무술).

449) 身役은 신분에 따른 役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國役은 신역과 요역으로 나누며 신역에는 職役과 軍役이 있었다. 國役 부과대상은 16세(후일 15세)로부터 60세에 이르는 모든 丁男이었다. 職役은 문무양반으로부터 鄉戶·驛戶 등에 이르기까지 有職者가 부담하였고 군역은 양인인 軍戶가 부담하였다. 양반도 조선전기에는 관직이 없는 경우 군역을 부담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幼學 즉 공부하는 학생이란 핑계로 군역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조선 전기에 無職인 양반이 군역을 지더라도 양반이 지는 군역은 특수병종으로 入屬하여 체아직을 받았으므로 결국은

화살 수를 계산하여 근무일수를 쳐주는 법이 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 연이어 범의 머리를 쏘거나 찢어서 잡은 것이 5마리 이상인 자에게는 資級을 (올려) 주는데 무릇 백성도 같으나 守令과 邊將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아니한다. ○ 3마리나 4마리 이하를 그렇게 잡은 경우에는 米와 布로서 헤아려 준다.

【活人】 **續** 15명 이상의 인명을 구하여 살려낸 자에게는 資級을 (올려) 준다. 무릇 백성도 같다. ○ 각 營 軍官이 인명구조(拯活)를 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금)에 아뢰지 아니한다. **【都試】** 1등에게는 官階를 올려 주되 階窮者(당하정3품인 官階者) 및 근무일수를 처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모두 근무일수를 쳐주되 지방에서는 단지 근무일수를 半減하여 쳐준다. 2등과 3등에게도 같다. ○ 1등의 특별근무일수는 100일로 하고 2등은 80일, 3등은 50일로 한다. **【內禁衛鍊才】** 무릇 파직해야 할 자에게 재시험을 허락하되 득점 화살 수가 비록 많더라도 근무일수를 모두 삭감하여 본래의 소속으로 되돌려 보낸다. ○ 赴防者(군사상으로 요긴한 곳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鍊才시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른 軍士도 같다. ○ 16 矢를 득점하면 특별근무일수 10일로 쳐주고 1 矢를 더 득점할 때마다 5일씩을 加算한다. 14 矢를 득점하면 10일을 삭감하되 1 矢가 감소될 때마다 5일씩을 삭감하며 10 矢 이하를 득점하면 파직한다. **【別侍衛鍊才】** 7 矢를 득점하면 특별근무일수로 7일을 쳐주고 1 矢를 더 득점할 때마다 4일씩을 加算한다. 5 矢를 득점하면 7일을 삭감하고 4 矢를 득점하면 11일을 삭감하며 3 矢 이하를 득점하면 파직한다. **【甲士鍊才】** 6 矢를 득점하면 특별근무일수로 6일을 쳐주고 1 矢를 더 득점할 때마다 3일씩을 加算한다. 4 矢를 득점하면 6일을 삭감하고 3 矢를 득점하면 9일을 삭감하며 2 矢 이하를 득점하면 파직한다. **【正兵鍊才】** 1등에게는 특별근무일수 50일, 2등에게는 20일, 3등에게는 10일을 쳐준다. **【吹螺赤·大平簫鍊才】** 諸鎭의 軍士들 중에서 취악기 부는데 능한 자를 골라서 항상 연습하도록 한다. ○ 1등에게는 특별근무일수 10일, 2등에게는 7일, 3등에게는 4일을 쳐준다. **【水軍鍊才】**

관직과 연계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官學校의 학생에게는 군역이 면제되었고 노부모를 모시는 侍丁이나 廢疾者도 군역이 면제되었다(이성무, 《조선초기의 양반연구》, 일조각, 1981, pp. 171~174 및 이재룡, 《조선초기 사회구조연구》, 일조각, 1993, pp. 188~189).

1등에게는 특별근무일수 30일, 2등에게는 20일, 3등에게는 10일을 쳐 준다.

【諸道兵船】 450) 原 大猛船⁴⁵¹⁾ 매1척에 水軍 80인, 中猛船⁴⁵²⁾ 매 1척에 水軍 60인, 小猛船⁴⁵³⁾ 매1척에 水軍 30인씩 배치하며, 아래도 모두 같다. 續 경국대전의 대·중·소맹선 등 諸船의 명칭이 지금은 戰船·防船·兵船 등 諸船⁴⁵⁴⁾으로 변하여 名目이 이미 바뀌었고 또한 創設·廢棄·移易된 것이 많으므로 지금 곧바로 현재의 명칭과 현존의 수량을 등재 기록한다.
○ 함경도와 강원도의 諸船은 모두 삭감한다.

【京畿】 原 【大猛船 16隻】 主鎮에 6척, 永宗浦에 1척, 月串에 3척,

- 450) 諸道兵船에서는 각도 병선의 종류와 隻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태종 8년 3월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각도의 병선수를 정하였는데 경기좌우도에는 元數 51척에다 25척을 加定하였고 전라도에는 元數 81척에다 30척을 가정하였으며, 경상도에는 원수 137척에다 50척을, 풍해도(황해도)에서는 원수 26척에다 20척을, 강원도에서는 원수 16척에다 10척을, 충청도에서는 원수 47척에다 30척을, 西北面에서는 원수 40척에다 15척을, 동북면에서는 元數 30척에다 5척을 각각 加定하였다(《태종실록》 권15-12, 태종 8년 3월 경오). 그 후 《세종실록》 地理志에서는 이들 선박들을 大船·中大船·中孟船·中船 등으로 道에 따라 달리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그것이 단종초에 大船·中船·小船으로 개칭(《단종실록》 권2-3, 단종 즉위년 7월 을미) 그 후 《경국대전》 병전, 諸道兵船의 大猛船·中猛船·小猛船으로 된 것이라 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10). 그러나 《속대전》에서는 防船·兵船·龜船·伺侯船·기타로 나누어 규정하였다(《대전회통연구》 이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3, 12, pp.63-64).
- 451) 大猛船은 1척에 수군 80명이 배치되어 왜구를 방어·격퇴하는데 사용되었다. 대맹선에는 軍器·軍糧·軍卒을 싣고 갑옷을 입은 鎭將이 승선하여 주야로 賊을 방어하였다(《중종실록》 권99-7, 중종 37년 8월 임진). 그러나 배의 몸체가 크고 속도가 느려 무용론이 자주 제기되었으며 1척을 만드는데 材木이 235條나 소요되었다(《단종실록》 권2-3, 단종 즉위년 7월 을미). 강원도와 영안도를 제외한 각도에 80척이 배치되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11).
- 452) 中猛船은 1척에 수군 60명이 배치되어 왜구를 방어·격퇴하는데 사용되었다. 세종 10년 10월에 中大船이 속도가 느려서 왜적선을 追及할 수가 없다고 하여 중맹선으로 개조하였는데(《세종실록》 권42-6, 세종 10년 10월 무술), 1척을 건조하는데 재목이 211條가 소요되었다(《단종실록》 권2-3, 단종 즉위년 7월 을미). 강원도를 제외한 각도에서 모두 192척이 배치되었다(同上).
- 453) 小猛船은 비교적 가볍고 속도가 빨랐으며(《중종실록》 권26-38, 중종 11년 10월 을축), 1척을 건조하는데 재목은 114조가 소요되었다(《단종실록》 권2-3, 단종 즉위년 7월 을미). 매 1척에 수군 30명(때로는 40명)이 배치되었으며 전국 각도에 216척을 두었다(同上).
- 454) 解説篇 30. 諸船(戰船·防船·兵船) 參照.

草芝梁·濟物梁·井浦에 각 2척을 둔다. ○【中猛船 20隻】 주진에 7척, 월
곶에 6척, 정포에 3척, 영종포에 2척, 초지양·제물양에 각 1척을 둔다. ○

【小猛船 14隻】 주진에 4척, 초지양에 3척, 영종포·월곶·정포에 각 2척,
제물양에 1척을 둔다. ○【無軍小猛船⁴⁵⁵⁾ 7隻】 정포에 2척, 주진·영종포·
초지양·제물양·월곶에 각 1척을 둔다.

續【戰船 4隻】 主鎭에 2척, 注文島·花梁에 각 1척을 둔다. 【防

船 10隻】 主鎭에 1척, 長峯島에 3척, 永宗鎭·德浦鎭에 각 2척, 花梁

·注文島에 각 1척을 둔다. 【兵船 10隻】 主鎭에 4척, 永宗鎭·德積

鎭에 각 2척, 德浦鎭·花梁에 각 1척을 둔다. 【龜船⁴⁵⁶⁾ 1隻】 主鎭

에 둔다. ○ 임진왜란 때 처음 만들었다. <아래도 같다.> 【伺候船⁴⁵⁷⁾ 16

隻】 主鎭에 8척, 덕포진에 3척, 주문도에 2척, 화양·장봉도·덕적진에

각 1척을 둔다. 【거룻배(居舳船)⁴⁵⁸⁾ 3隻】 영종진·주문도·

장봉도에 각 1척을 둔다. 【汲水船⁴⁵⁹⁾ 9隻】 主鎭에 3척, 영종진·

455) 無軍小猛船은 긴급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비치해둔 병선으로서 세종 때에는 경기도 각포에 47척, 충청도에 10척 등 57척이 있었으나(《세종실록》 권148 및 권149, 지리지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11). 《경국대전》에서는 삼남지방 201척을 포함하여 8도 총계 245척이 나 되었다. 無軍船은 평시에는 空船으로 포구에 계류하여 두고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였으므로 군비가 절감되었으며, 또한 조운선으로도 사용하였다(金在瑾, 《朝鮮王朝軍船研究》, 한국문화연구원, 1976).

456) 解說篇 31. 龜船 參照.

457) 伺候船은 水營(主鎭)과 水營 관내 巨鎭 및 諸鎭에 딸려 斥候에 쓰던 軍船의 한 종류이다. 강원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각도에 있었다.

458) 거룻배는 돛을 달지 않은 작은 배로서 그 중 兵船인 거룻배(居刀船)는 작고 빠른 싸움배이다. 경기도와 황해도 및 평안도의 일부 水營(水軍 主鎭) 또는 수영 관내 일부 포구에 두었다. 거룻배는 세조 5년 일본의 傳馬船을 본받아서 만들었으며 海賊驅逐을 목적으로 만든 배라고 한다(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458). 그러나 반대로 해적들이 거룻배를 逆用하였는데, 성종 18년 6월 전라도 관찰사 金宗直이 밝하기를 전라도의 水賊이 居刀船을 타고 다니면서 도적질 하는데 그 빠르기가 나는 듯하므로 잡기가 매우 어려우니 私用 居刀船은 일체 엄금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領敦寧 이상으로 하여금 의논케 하였던 바 居刀船은 해산물 채취 등 민간에게 꼭 소용되는 배이므로 廢할 수가 없으니 軍관을 별도로 정하여 水賊을 잡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성종실록》 권204-15, 성종 18년 6월 무자).

459) 汲水船은 바다나 항구에서 선박에 음료수 기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통을 장치한

주문도에 각 2척, 화양·장봉도에 각 1척을 둔다.

【忠清道】**原** 【大猛船 11隻】主鎭에 4隻, 所斤浦·唐津浦에 각 2척, 波知島·馬梁·舒川浦에 각 1척을 둔다. ○【中猛船 34隻】主鎭에 8척, 당진포에 7隻, 소근포·마양에 각 6隻, 서천포에 4척, 파지도에 3척을 둔다. ○【小猛船 24隻】主鎭에 10척, 마양에 4척, 소근포·파지도·당진포에 각 3척, 서천포에 1척을 둔다. ○【無軍小猛船 40隻】主鎭·마양에 각 10척, 소근포에 8척, 서천포에 5척, 당진포에 4척, 파지도에 3척을 둔다.

續 【戰船 9隻】主鎭에 2隻, 洪州·泰安·瑞山·安興鎭·소근포·마양鎭·서천포에 각 1척을 둔다. 【防船 21隻】主鎭에 1척, 平薪鎭·서천포·韓山·林川에 각 2척, 안흥진·홍주·서산·海美·結城·沔川·保寧·藍浦·庇仁·당진·소근포·마양진에 각 1척을 둔다. 【兵船 20隻】主鎭에 2척, 홍주·태안·서산·해미·결성·보령·람포·비인·舒川·한산·임천·면천·당진·소근포·마양진·안흥진·평신진·서천포에 각 1척을 둔다. 【龜船 1隻】主鎭에 둔다. 【伺候船 41隻】主鎭에 7척, 홍주·서산·안흥진·소근·마양진에 각 3척, 태안·서천·한산·임천·평신진·서천포에 각 2척, 당진·해미·결성·면천·보령·람포·비인에 각 1척을 둔다.

【慶尙道】**原** 【大猛船 20隻】左·右道の 主鎭에 각 2隻, 多大浦·釜山浦·海雲浦·豆毛浦·西生浦·鹽浦·安骨浦·薺浦·永登浦·玉浦·知世浦·助羅浦·唐浦·蛇梁·赤梁·平山浦에 각 1隻을 둔다. ○【中猛船 66隻】좌도의 主鎭에 7척, 우도의 主鎭에 11척, 제포·옥포에 각 5척, 염포·지세포·당포에 각 4척, 부산포·두모포·영등포·적양·평산포에 각 3척, 다대포·안골포·조라포·사양에 각 2척, 해운포·서생포·包伊浦에 각 1척을 둔다. ○【小猛船 105隻】좌도의 主鎭·다대포·甘浦·포이포·丑山浦에 각 6척, 우도의 主鎭에 8척, 지세포에 7척, 부산포·염포·제포에 각 5척, 해운포·서생포·漆浦·烏浦·옥포·사양에 각 4척, 두모포·안골포·영등포·

조라포·당포·적양·평산포에 각 3척을 둔다. ○【無軍小猛船 75隻】 좌도의 主鎭·염포에 각 2척, 우도의 主鎭에 10척, 영등포·옥포·적양·평산포에 각 6척, 제포·지세포·당포·사양에 각 5척, 안골포에 4척, 조라포에 3척, 다대포·부산포·海雲浦·두모포·서생포·감포·포이포·칠포·오포·축산포에 각 1척을 둔다.

【續】【戰船 55隻】 左·右道の 主鎭에 각 3척, 晉州·昌原·金海·河東·巨濟·熊川·泗川·昆陽·鎭海·南海·固城·蔚山·機張·다대포·부산포·두모포·서생포·안골포·제포·영등포·옥포·지세포·조라포·당포·사양·평산포·적양·加德鎭·彌助項鎭·天城浦·龜山浦·加背梁·所非浦·栗浦·三千浦·尙州浦·曲浦·舊所非浦·南村·豐德浦·新門·晴川·長木浦·감포·開雲浦·포이포·칠포·축산포·西平浦에 각 1척을 둔다. 【防船 2隻】 蟾津에 둔다. 【兵船 66隻】 左道の 主鎭에 5척, 右道の 主鎭 兼 統營에 7척, 부산포·다대포·가덕진·진주·거제에 각 2척, 창원·웅천·사천·곤양·진해·남해·고성·하동·김해·울산·기장·제포·옥포·지세포·당포·두모포·영등포·적양·평산포·안골포·조라포·사양·서생포·포이포·미조항진·천성포·구산포·가배양·소비포·울포·상주포·곡포·구소비포·남촌·풍덕포·신문·청천·장목포·감포·개운포·칠포·축산포·서평포·삼천포에 각 1척을 둔다. 【龜船 9隻】 右道の 主鎭 兼 統營에 3척, 左道の 主鎭에 1척, 거제·진주·가덕진·부산포·다대포에 각 1척을 둔다. 【伺候船 143隻】 右道の 主鎭 兼 統營에 21척, 左道の 主鎭에 12척, 거제·진주·가덕진·부산포·다대포에 각 4척, 창원·웅천·사천·곤양·진해·남해·고성·하동·김해·울산·기장·감포·축산포·포이포·지세포·제포·서생포·칠포·옥포·사양·두모포·안골포·영등포·조라포·당포·적양·평산포·미조항진·천성포·구산포·가배양·소비포·울포·삼천포·상주포·구소비포·곡포·남촌·풍덕포·신문·청천·장목포·개운포·서평포·섬진에 각 2척을 둔다. 【探船⁴⁶⁰⁾ 2隻】 右道の 主鎭에 둔다.

460) 探船은 경상우도의 主鎭(水營)에만 2척 있는 정탐선인 듯하다.

【全羅道】**原** 【大猛船 22隻】右道の 主鎮에 3척, 左道の 主鎮에 2척, 臨淄島·突山浦·呂島·鉢浦·鹿島·會寧浦·馬島·達梁·於蘭浦·金甲島·南桃浦·蛇渡·木浦·多慶浦·法聖浦·黔毛浦·群山浦에 각 1척을 둔다. ○【中猛船 43隻】左道の 主鎮에 6척, 右道の 主鎮과 사도에 각 4척, 임치도·발포·남도포에 각 3척, 돌산포·녹도·마도·달양·금갑도·법성포·군산포에 각 2척, 여도·회령포·어란포·목포·다경포·검모포에 각 3척을 둔다. ○【小猛船 33隻】右道の 主鎮·임치도·여도·회령포·어란포·사도·검모포에 각 2척, 남도포에 4척, 발포·녹도에 각 3척, 左道の 主鎮·돌산포·마도·달양·금갑도·목포·다경포·법성포·군산포에 각 1척을 둔다. ○【無軍小猛船 86隻】右道の 主鎮에 9척, 어란포·금갑도·사도에 각 8척, 左道の 主鎮에 7척, 발포·회령포·마도·남도포·검모포·군산포에 각 4척, 임치도·돌산포·여도·녹도·달양·목포에 각 3척, 다경포·법성포에 각 2척을 둔다. **續** 【戰船 47隻】左·右道の 主鎮에 각 3척, 羅州·사도진·防踏에 각 2척, 靈巖·靈光·順天·樂安·光陽·興陽·寶城·長興·珍島·咸平·海南·務安·임치도·여도·발포·녹도·회령포·마도·어란포·금갑도·남도포·목포·다경포·법성포·검모포·군산포·古突山·梨津·加里浦·古群山·蝸島·智島·薪智島·古今島·荏子島에 각 1척을 둔다. 【防船 11隻】右道の 主鎮·임치도·어란포·검모포·남도포·마도·금갑도·목포·다경포·법성포·가리포에 각 1척을 둔다. 【兵船 51隻】左道の 主鎮에 5척, 右道の 主鎮에 4척, 나주·사도진·방답·가리포에 각 2척, 순천·낙안·광양·홍양·보성·장흥·진도·함평·해남·무안·영암·영광·임치도·발포·남도포·녹도·마도·금갑도·법성포·군산포·여도·회령포·어란포·목포·고돌산·다경포·검모포·고군산·위도·고금도·신지도·지도·임자도·이진에 각 1척을 둔다. 【龜船 3隻】左·右道の 主鎮과 가리포에 각 1척을 둔다. 【海鶻船⁴⁶¹⁾ 1隻】右道の 主鎮에

461) 海鶻船은 《속대전》 병전, 諸道兵船條에 의하면 全羅右水營에만 있는데 머리는 낮고 꼬리는 높으며 앞부분이 크고 뒷부분이 작다. 좌우 뺏전에 날개 모양의 날이 있어 海鳥와 같다고 하였으며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노를 젓고 사격할 수 있는 배였다. 영조 16년 윤6월 金在魯의 건의에 따라 統營과 諸道水營에서 해골선을 만들도록 하였다. 해골선은 그 때 전라좌수사 田雲祥이 만들었으며 선체가 작고 가벼워서 빨리 달리고 바람을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둔다. 【伺候船 101隻】 左道の 主鎮에 11척, 右道の 主鎮에 8척, 사도진·방담·가리포에 각 4척, 영광·진도·함평·해남·무안·나주·영암·순천·낙안·광양·홍양·보성·장흥·어란포·금갑도·마도·남도포·검모포·군산포·임치도·목포·다경포·법성포·발포·회령포·여도·녹도·고돌산·고군산·이진·위도·고금도·신지도·지도·임자도에 각 2척을 둔다.

【江原道】 原 【小猛船 14隻】 三陟浦에 4척, 蔚珍浦·高城浦에 각 3척, 越松浦·安仁浦에 각 2척을 둔다. ○【無軍小猛船 2隻】 울진포에 둔다.

【黃海道】 原 【大猛船 7隻】 所江·龍媒·茄乙浦·呑叉浦·阿郎浦·許沙浦·廣巖梁에 각 1척을 둔다. ○【中猛船 12隻】 소강·용매·가을포·오차포·광암양에 각 2척, 아랑포·허사포에 각 1척을 둔다. ○【小猛船 10隻】 소강·가을포·오차포·아랑포·허사포에 각 2척을 둔다. ○【無軍小猛船 10隻】 소강·용매·광암양에 각 2척, 가을포·오차포·아랑포·허사포에 각 1척을 둔다.

續 【戰船 2隻】 主鎮에 1척, 白翎鎮에 1척을 둔다. 【防船 26隻】 主鎮에 3척, 海州·豊川·허사포·오차포·登山·용매양에 각 2척, 安岳·白川·延安·長連·長淵·殷栗·康翎·백령진·椒島·瓮津·助泥浦에 각 1척을 둔다. 【兵船 9隻】 主鎮에 1척, 백령진·초도에 각 2척, 용매양·등산·허사포·오차포에 각 1척을 둔다. 【伺候船 5隻】 초도에 4척, 조니포에 1척을 둔다.

【小猛船 1隻】 主鎮에 둔다. 【거룻배 21隻】 主鎮에 5척, 백령진에 4척, 등산·허사포·오차포에 각 3척, 용매양에 2척, 강령에 1척

을 둔다. 【汲水船 6隻】 용진에 2척, 해주·풍천·장연·金沙寺에 각 1척을 둔다. 【挾船⁴⁶²⁾ 17隻】 主鎭에 2척, 장연·풍천·해주에 각 2척, 연안·배천·안악·장련·은울·용매양·초도·용진·조니포에 각 1척을 둔다. 【別小船 1隻】 등산에 둔다. 【追捕船⁴⁶³⁾ 23隻】 主鎭에 10척, 금사사에 5척, 용진·허사포에 각 2척, 해주·풍천·장연·조니포에 각 1척을 둔다.

【永安道】 原 【中猛船 2隻】 道安浦에 둔다. ○ 【小猛船 12隻】 浪城浦에 8척, 造山浦와 도안포에 각 2척을 둔다. ○ 【無軍小猛船 9隻】 낭성포와 도안포에 각 4척, 조산포에 1척을 둔다.

【平安道】 原 【大猛船 4隻】 廣梁에 2척, 老江과 宣沙浦에 각 1척을 둔다. ○ 【中猛船 15隻】 광양·선사포·노강에 각 5척을 둔다. ○ 【小猛船 4隻】 노강에 2척, 광양과 선사포에 각 1척을 둔다. ○ 【無軍大猛船 1隻】 【無軍中猛船 3隻】 모두 노강에 둔다.⁴⁶⁴⁾ ○ 【無軍小猛船 16隻】 선사포에 7척, 광양에 5척, 노강에 4척을 둔다.

續 【防船 6隻】 선사포와 광양진에 각 2척, 宣川과 노강진에 각 1척을 둔다. 【兵船 5隻】 광양진에 2척, 선천·노강진·선사포에 각 1척을 둔다. 【伺候船 12隻】 선사포에 6척, 선천에 3척, 彌串鎭에 2

462) 挾船은 황해도와 평안도에 있는 병선의 일종이나 《중종실록》 권84-44, 중종 32년 4월 신해의 기사에 의하면 중국 사신을 접대하면서 대동강에서 樓船과 挾船에 사신들을 기생과 함께 태워서 뱃놀이한 것이 나타나 있다. 또 《선조실록》 권5-8, 선조 4년 11월 계미의 기사에 의하면 협선이 板屋船과 더불어 無軍船으로 남아 있다는 것과 만든지 3·4년만에 썩어서 쓸모가 없다고 하였다.

463) 追捕船은 황해도에만 있던 병선의 일종으로서 敵船의 뒤를 쫓아가서 잡는데 쓰는 경쾌한(속도가 빠른) 배로 보인다.

464) 無軍大猛船과 無軍中猛船은 모두 평안도 老江에만 두었다. 긴급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치해 두었던 병선이었으므로 평소에는 병력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주 455).

척, 노강진에 1척을 둔다. 【거룻배 1隻】 미곶진에 둔다. 【汲水船 4隻】 광양진에 3척, 노강진에 1척을 둔다. 【挾船 1隻】 미곶진에 둔다.

【武科】 原 武科及第者에게는 文科의 例에 따라 官階나 官職을 除授하되 別侍衛 및 訓練院 權知로 나누어 임명(分差)⁴⁶⁵한다.

續 과거응시자의 보증·추천인(舉子保舉主⁴⁶⁶)은 모두 관직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 등록시켜야 한다. 위반자는 등록부에서 빼버린다. 여러 賤人이 몰래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羅將·漕卒·日守⁴⁶⁷·公私賤 등이 몰래 과거에 응시하면 모두 水軍으로 充定하며, 赦免이 허용되지 아니한다(勿揀赦前).

465) 分差는 무과급제자를 別侍衛나 訓練院權知로 나누어 임명하는 것으로서 문과의 分館에 해당된다. 그러나 문과급제자의 경우에는 1등(후일 을과, 다시 갑과로 고침)만 實職(실제의 관직)에 임명되었고 나머지 2등(후일 병과 다시 을과로 고침) 이하는 官階만 주어 承文院·成均館·校書館 등의 權知로 임명되는데 비해서 무과급제자 28명은 조선국초부터 1등 3인에게 종7품직, 2등 5인에게 종8품직, 3등 20인에게 종9품직(이상 武職)을 주었고 원래 관직이 있는 자에게는 1등급씩 올려주었다(《태종실록》 권3-3, 태종 2년 정월 기축). 그러나 세종 26년 11월 문과의 예에 따라 무과급제자도 無官職者의 경우 1등 3인에게는 곧바로 종7품직에 임명하되 2등에게는 종8품의 官階(散官)를, 3등에게는 종9품의 關係(산관)을 주도록 하고 원래 관직이 있는 자에게는 加資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106-19, 세종 26년 11월 정축). 그보다 앞서 세종 5년 11월 吏曹의 啓에 따라 訓練觀 參外官은 문과의 三館의 예에 의거 6품에서 去官하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22-15, 세조 5년 11월 병신). 성종 3년 11월 훈련참군 張重智 등의 上言에 의거하여 병조에서 啓하기를 무과급제자는 훈련원(훈련관을 개칭한 것)에만 있는데(경국대전에서는 훈련원 이외 별시위로도 分差) 2년에 5인씩 去官하다 보니 乏缺되고 있는 자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權知·祿官을 매년 3인씩 去官시키도록 하자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성종실록》 권24-3, 성종 3년 11월 정유).

466) 舉子는 과거응시자를 말하며, 保舉主는 과거응시자를 보증하고 천거하는 자를 말하는데 관직이 있는 자라야 한다.

467) 日守는 각 지방관청에 소속된 하급 아전으로서 身良役賤層이다.

○ 公私賤으로서 贖良⁴⁶⁸) 된 자는 비록 良人으로서의 身役이 이미 定하여졌다고 하더라도 補充隊⁴⁶⁹)에서 소정기간의 복무를 하였다는 공문이 없으면 良人으로서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內侍로서 과거에 응시하는 자는 과거시험장에 몰래 들어간 죄(冒入科場罪)로 논한다. 시험관을 문책(推考)한다. ○ 과거시험장에서 농간을 부린 자는 그 행위의 輕重에 따라 죄를 따져 벌(論罪)한다. 시험장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水軍으로 充定하고 그 保舉主는 科場用情律로 논죄한다. ○ 같은 시험장소에서 單子(응시원서등)를 거듭 제출한 경우, 이름이 호적에 없는데도 情實로 허위 기록한 경우, 두 곳의 시험장소(兩所)에 單子를 이중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는 응시자(舉子)와 錄名官을 모두 科場用情律로 논죄한다. 형제가 각자 다른 향렬자를 쓸 경우⁴⁷⁰)에는 制書有違律⁴⁷¹)로 논죄하고 형제가 각각 다른 시험장소에서 응시하는 경우에 保舉人이 응시자의 이름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에는 詐不以實律⁴⁷²)로 논죄한다. ○ 응시자가 총포사격 시험에서 한번

468) 贖良은 公·私賤(公·私奴婢)이 代口 또는 金錢 따위로 몸값을 치르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免賤하는 것을 말한다. 公賤은 代口贖身 즉 다른 노비를 자기대신 바치고 免賤하는 것인데 자기를 대신할 노비가 여러 式年의 호적상으로 신원이 확실하고 나이도 비슷하며 남녀성별도 같아야 한다. 만약 대납한 노비가 10년내에 죽으면 贖身된 자가 賤人으로 환원한다. 工匠인 노비와 私奴婢는 돈을 바쳐야만 속량되는데 그 값은 百兩을 초과할 수가 없다. 또 寺奴가 私賤을 쫓하여 소생자녀를 妻의 上典에게 속량하는 경우와 私賤의 자녀로서 母의 상전에게 속량하는 경우에는 모두 良人이 됨을 허용한다. 이 때 속량된 자는 기한내에 官의 公證(立案)을 받지 아니하면 掌隸院에서 屬公시킨다. 賤者隨母法이 적용되어 賤人인 父의 상전이 강제로 자신의 노비로 한 경우에는 壓良爲賤律로 論罪하며 비록 양인이 된 자라도 다시금 賤人인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낳은 자식은 면천되지 아니한다(《속대전》 형전, 속량). 그리고 천인이 임금의 同姓 6代孫까지와 자기의 婢나 妻妾의 婢를 쫓으로 삼아서 낳은 자녀는 속량함이 없이도 從良될 수 있다(《경국대전》 및 《속대전》 형전, 賤妻妾子女).

469) 解說篇 20. 補充隊 參照.

470) 형제가 각자 다른 향렬자를 쓸 경우는 우리의 관습상 거의 있을 수 없으나 嫡庶子간에는 달리 향렬자를 쓰는 경우가 발견된다. 여기서는 무과시험관이 형제를 함께 합격시키는 것을 꺼리어 불합격시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응시자가 향렬자를 일부러 달리 쓰는 경우를 말한다.

471) 制書有違律은 《大明律直解》 권3, 吏律 公式에 있는데 임금의 文書命令(制書·教書)에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는 律文이다. 事案에 따라 杖刑 또는 笞刑에 처하도록 하였다.

472) 詐不以實律은 《大明律直解》 권24, 刑律 詐僞 중 對制上書詐不以實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데 事案에 따라 杖 100 徒3년 혹은 杖 80 徒2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 탄환 두 개를 쏜 경우에는 徒3년으로 定配한다. ○ 성명을 바꾸어 다시 사격한 경우에는 借射代射律에 따라 논죄한다. ○ 타인의 손을 빌려서 사격시험을 보려고 하거나 대리로 사격시험을 쳐주려고 하다가 未遂에 그친 경우에는 奸未成律을 적용한다. ○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등으로 과거합격을 도적질한 경우에는 絶島로 보내 노비로 삼는다. ○ 紅牌(문무과거의 합격증)를 매매한 경우에는 산자와 판자에게 모두 賊科律을 적용한다.⁴⁷³⁾ ○ 함경도의 과거시험장에서 범법(犯律)하여 마땅히 水軍으로 充定하여야 할 자는 그 도내의 極邊에 充軍한다. 과거시험장에서 의농간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응시자(舉子)는 영구히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差備官⁴⁷⁴⁾은 영구히 관직에 임용할 수 없게 한다. [增] 과거시험장에서 농간을 부린 자는 먼 邊地에 充軍하고 私情을 쓴 差備官에 대해서는 刑具로 엄하게 세 차례 심문한 후 본인 자신에 한하여 絶島의 水軍으로 充定하며 화살의 표적을 감시하는 장소에서 화살의 도달 거리수를 測量하는 書吏가 농간을 부린 경우에도 刑具로 엄하게 세 차례 심문한 후 絶島로 보내어 본인 자신에 한하여 종(奴)으로 삼는다. ○ 현직 邊將이 殿試에 응시할 경우에는 그 職을 그 만두고 응시해야 한다. 軍兵의 賞格으로 會試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講經시험 없이 科擧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무릇 응시자(舉子)에게 과거시험을 停止시킬 때에는 훈련원의 현직 參外官 3인이 모여서 의논하여 죄목을 분명히 써서 入門所⁴⁷⁵⁾에 보낸다. 만약 私感으로 인하여 죄를 꾸민 경우에는 誣人律(무고죄)로 논죄한다.

473) 紅牌를 매매한 경우란 同姓者의 합격증을 買入하여 자기 이름을 洪패(합격증)에 있는 이름으로 改名한 후 멀리 移居하여 급제자 행세를 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격답안지를 바꿔치기한 賊科者와 같은 형벌(賊科律)로서 매매쌍방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474) 差備官은 科擧에 관한 사무를 分掌시키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한 관원을 말한다.

475) 入門所는 과거시험장의 입구쪽에 임시로 설치된 곳으로서 사헌부의 監察로 하여금 시험장에 들어가는 자를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增】 초시합격자가 비록 定員에 미달 되더라도 다만 합격자수대로 발표(出榜)한다. ○ 殿試에 곧바로 응시한 사람(直赴殿試人)이 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문과의 예에 따라 전시를 뒤로 연기시켜(다시 시험보게 하여) 준다.

【補】 殿試의 壯元은 原榜 중에서 뽑는다.⁴⁷⁶⁾ ○ 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가 이유없이 세 번의 式年(9년)을 응시하지 아니하고 경과한 경우에는 전시를 볼 수 없게 된다. 殿試 응시자격이 있는 동안에 사망한 사람에게는 합격자명단 끝(榜末)에 덧붙여서 紅牌(합격증)를 만들어 준다.

【告身】⁴⁷⁷⁾ 原 軍士가 5품 이하로서 遞兒職을 받은 경우에는 곧 告身(임명장)을 만들어 각각 그 入直날에 兵曹의 입직 당상관이 전에 받은 告身과 대조하여 본 후에 나누어 주며 그가 녹봉을 받은 후에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엄격히 조사하되 두 달이 되도록 전에 받은 告身을 提出(納付)하지 아니한 경우에

476) 殿試는 式年會試나 增廣會試 후에 설치하여 시행하는 최종시험으로서 전시 시행전에 각도에서 시행한 都試에 합격한 자나 혹은 別試 합격자들도 모두 전시에 응시하기 때문에 전시의 장원은 그러한 특별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닌 식년회시나 증광회시 같은 정규시험 합격자 명단(原榜)에 있는 자 중에서 뽑는다(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p.464-465).

477) 告身은 관직에 임명할 때 내주는 임명장(符)를 말한다(《경국대전》 주해상, 후집, 이전). 태조 원년 10월에 고려 이래의 告身署經法을 개혁하여 1품에서 4품까지는 王旨로서 임명하여 官敎라 하였고, 5품에서 9품까지는 奉敎給牒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敎牒이라 하였다(《태조실록》 권2-10, 태조 원년 10월 계유).

는 그(새로운) 告身을 회수하고 아울러 녹봉도 추징한다. 彭排와 隊卒은 월급(月俸)을 追徵한다. ○ 무릇 녹봉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엄격히 조사한 후 告身(임명장)을 만들어 준다. ○ 兩界(평안도와 함경도) 軍士의 告身은 그 道에 보내어 관찰사가 전에 받은 告身과 대조하여 본 후 나누어 준다. 그 軍士가 녹봉을 받은 후 200일이 되도록 전에 받은 告身을 사간원에 提出(納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역시 고신을 회수하고 녹봉을 추징한다.

續 무릇 軍士의 告身(임명장)은 기한을 정하여 (옛 것을) 받고 (새 것을) 내주며, 각 道에서는 1년을 기한으로 하되 兩界에서는 3년을 기한으로 한다. 기한을 넘긴 자는 임용되지 못한다. ○ 軍士 및 雜職人員에 대한 加資(資級을 주거나 올려 주는 것)를 임금이 裁可함에 있어서 告身을 내주지 아니하여 전의 資級(官階)으로 추천장을 올린 경우에는 告身을 내주어 대조하여 본 후에 그 資級에 따라 응당 주어야 할 官階를 준다.

褒貶⁴⁷⁸⁾(근무성적평정) **原** 지방관에 대해서는 節度使가 근무성적을 평정(等第)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守令 이외의 陸鎮將⁴⁷⁹⁾·旅帥·隊正·土官인 西班에 대해서는 병마절도사가, 水鎮將⁴⁸⁰⁾에게는 수군절도사가 모두 관찰사와 같이 의논하여 평정하고, 虞候·評

478) 褒貶이란 관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우수한 자를 승진시키고 성적이 나쁜 자를 좌천 또는 면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국대전》 주해상, 후집, 이전에 「推美曰褒 遠謫曰貶」이라 하였다.

479) 여기서의 陸鎮將은 兵馬節制使·兵馬僉節制使 등의 巨鎮將과 兵馬同僉節制使·兵馬節制都尉·兵馬萬戶 등의 諸鎮將 중 수령이 아닌 專任武將을 말한다.

480) 여기서의 水鎮將은 水軍僉節制使(水軍僉使)와 水軍萬戶 등 전임무장을 말한다.

事에게는 각각 그 절도사가 근무성적을 평정하며, 濟州의 3고을에 대해서는 節制使(濟州牧使)가 평정하여 主鎮에 보고한다.

續 절도사가 邊將을 褒貶(근무성적 평정)할 때에 下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승정원에서 이를 조사한다. 강원도의 邊將은 단지 1인만 있으므로 비록 下로 평정된 자가 없더라도 조사하지 아니한다. ○ 中과 下로 평정되어 그것이 공개되기 전에 將領으로서 資級이 올라간 경우에는 그것을 還收한다.

增 각 軍營의 將官과 中軍 이외에는 講시험을 보여 上下의 성적을 매긴다(殿最). 宣傳官은 병조판서로부터 各操笏記講⁴⁸¹을 수험하여 등급(성적)이 매겨지게 된다. 南行部將은 班次圖講⁴⁸²을 수험하여 등급(성적)이 매겨지게 된다. ○ 서울과 지방의 入直 將官은 입직을 이유로 하여 講시험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 서울과 지방의 관직 중에서 30개월을 임기만료로 하는 자리에서 두 차례 中의 평정을 받은 사람은 吏曹의 例에 따라 파직한다. 기한이 다된 후에 草記蕩滌 한다.⁴⁸³

【入直】原 무릇 將帥와 軍士가 宿直할 경우에는 3일 만에 交代한다. 兵曹에서는 날마다 交代한다. ○ 五衛는 각 1部씩 入直하되 전날 저녁에 兵曹에서 장소와 시간을 나누어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를 받아 衛將⁴⁸⁴은 임

481) 各操笏記講은 군사훈련(操)이나 임금의 觀兵式에 있어서 차례와 儀式을 적은 책(笏記)을 講하도록 하는 것이다.

482) 班次圖講이란 東班(文班)·西班(武班)·南班(蔭職)의 관직자들이 儀式때 지위에 따라 늘어서는 차례를 나타내는 도표를 講하도록 하는 것이다.

483) 기한이 다된 후에 草記蕩滌한다는 것은 官吏가 면직되었을 때 복권유에 기한이 다된 후에 임금에게 아뢰어 죄명을 씻어 내는 것을 말한다.

금의 지명(落點)을 받아 軍士를 나누어 거느리고 兼司僕將·內禁衛將·守門將도 역시 임금의 지명을 받는다(受點⁴⁸⁵). 〈守門將은 西班 4품 이상의 후보자 중에서 임명한다.〉 都摠府로 공문을 보내면(移關) 도총부에서는 순차적으로 아래로 이첩(移文)한다. ○ 兵曹의 堂上官 1인과 都摠府의 堂上官 2인은 中所⁴⁸⁶에서 숙직하면서 각각 衙門(관청)을 설치한다. 諸衛의 宿直所 이외에 별도로 中所를 두며 司僕⁴⁸⁷과 內禁衛도 역시 각각 중소 옆에서 숙직한다. 〈사복은 3번(교대)으로 나누고 내금위는 5번으로 나눈다.〉 大內(대궐안 임금의 거처하는 곳)에서의 上護軍·大護軍·護軍은 〈5번으로 나눈다.〉 護軍廳에서 임직한다. 宿直을 交代하는 날

484) 주 65(五衛將).

485) 落點은 인사에 있어서 복수로 추천된(보통 3배수로 추천) 인원 가운데 있어서 임금이 임용할 자의 이름 위에 점을 찍어 내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낙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를 受點이라고 한다. 세종 즉위년 8월, 병조의 틈에 의하면 2품 이상의 관원 임용시에는 御筆낙점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점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3품 이하이 관원을 임명할 때에는 「不由批目 而用之者 謂之口傳」이라 하여 그러한 注擬(3배수 추천)와 批點(受點)의 절차없이 임용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구전이라 한다(《세종실록》 권1-13, 세종 즉위년 8월 병오).

486) 中所는 諸衛의 宿直所 이외 별도로 둔 숙직장소이다. 세조 5년 8월 병조의 틈에 따라 入番한 司僕·내금위와 諸衛(五衛)의 군사를 뽑아서 獅子衛를 만들고, 그 衛將으로는 入番한 都鎮撫(세조 12년 이후의 五衛都摠府)의 諸衛將(오위장) 이외에 임무를 감당할만한 宰樞 중에서 전날 저녁에 병조에서 뽑아서 임금에게 올려 낙점을 받아 中所에서 受牌·入直하게 한다고 하였다(《세조실록》 권17-12, 세조 5년 8월 갑자). 또 예종 원년 6월 공조판서 梁誠之의 상서에 의하면 都城안의 巡綽處가 세곳이었는데 그 때 두곳을 加設하여 昌德宮巡廳을 東所로 하고, 雲從街巡廳을 西所로 하며 의 금부를 北所, 龍驤衛를 南所, 中樞府를 中所로 한다는 것과 동서남북 四所에서는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순찰(行巡)하였으나 중소에서는 군사 500인이 무장한 채(按甲) 움직이지 않고 궁성을 호위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예종실록》 권6-28, 예종 원년 6월 신사). 《경국대전》 병전, 입직에서는 병조의 당상관 1인과 오위도총부의 당상관 2인이 중소에서 숙직한다고 하고 그 註에서 諸衛의 숙직소 이외에 별도로 중소를 둔다고 하였다.

487) 司僕은 兼司僕을 의미한 듯 하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15). 태종 16년 정월 임금은 入直 내금위와 內司僕 등이 궁성내에서 翳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였는데(《태종실록》 권31-6, 태종 16년 정월 병오), 이들 司僕이나 內司僕 등의 용어가 세조대 이후 검사복으로 호칭되었으며, 또 그 때 검사복을 지휘하는 兼司僕將을 두어 卿宰들을 거기에 임명하여 왕명을 받아 1인씩 입직하도록 하였다(《세조실록》 권24-29, 세조 7년 6월 을미). 검사복은 고려의 尙乘承旨에 기원을 둔 內司僕寺 제도에서 비롯되어 태종 9년에 처음 성립되고 세조 10년에 정비된 조직을 갖추었으며, 주로 임금의 신변보호와 왕궁호위 및 親兵의 양성 등 책임을 맡았다(남도영, 〈조선초기의 검사복에 대하여〉,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1969, pp.155~180).

에는 諸將이 肅拜하고 大內(대궐안 임금이 거처하는 곳)에서 牌를 받기도 하고 반납도 한다. 兵曹와 都摠府에서는 항상 擲奸牌⁴⁸⁸)를 받는다. ○ 宣傳官 2인은 形名⁴⁸⁹)을 갖고 大內 근처에서 숙직한다. 吹螺赤 2인도 따라서 입직한다. 임금이 都城 밖에 나가 있을 때(行在時)에는 서울에 남아 있는 세 大將(留都三大將⁴⁹⁰)이 세 곳에 나누어 주둔 하되 날마다 주둔처를 바꾼다. 작은 일은 먼저 시행 하고 뒤에 임금에게 보고하며 형벌권을 행사(用刑) 함에 있어서는 行在時의 例에 의한다. 兵曹도 같다.

〔續〕 五衛將 4인과 部將 4인은 동서남북 네 곳(四所)으로 나누어 宿直한다. 東所의 衛將은 忠義衛 3·4인 혹은 5·6인과 忠順衛 2인을 거느리고 南所의 衛將은 忠贊衛 2인을 거느리는데 그들도 衛將을 따라서 숙직하도록 한다. 〔增〕 충의위 5인·충순위와 충찬위 각 1인씩을 거느리게 한다. ○ 兵曹의 堂上官과 郎官 각 1인, 都摠府의 堂上 관과 낭관 각 2인이 中所에서 숙직하도록 한다. 병조의 近仗軍 10인이 관원을 따라서 숙직하도록 한다. 〔補〕 5인을 더 한다. ○ 宣傳官 4인과 武兼 宣傳官 6인은 임금이 거처하는 大

488) 擲奸牌는 궐내에서 입직하는 衛將·部將 등의 단속과 기타의 범법자를 檢擧하기 위하여 병조와 도총부의 관원에게 야간순찰시에 항상 휴대하도록 하였던 木牌였다. 한면에는 擲奸이라 쓰고 다른 한면에는 御押(임금의 手決이 새겨진 도장)이 있었다. 이를 巡檢牌라 부르기도 한다(《燃藜室記述》別集, 政教典故, 符璽).

489) 주 109 (形名).

490) 留都三大將은 三軍門의 세 대장(훈련대장·어영대장·금위대장)인 듯하다.

內 근처에서 숙직하도록 한다. 吹螺赤 8·9인 혹은 10인이 관원을 따라서 숙직하도록 한다. [增] 12인으로 한다. [補] 3인을 줄인다. ○ 禁軍將 1인 임금의 지명(落點)을 받아서 禁軍 100인과 火砲軍 2인을 거느린다. 扈衛別將 1인 軍官 30인을 거느린다. 忠壯將⁴⁹¹⁾ 1인 忠壯衛 3인을 거느린다. 忠翊將⁴⁹²⁾ 1인 忠翊衛 6·7인 혹은 10인을 거느린다. [增] 4인으로 한다. 別軍職⁴⁹³⁾ 3인 등이 각각 本所에서 숙직하도록 한다. [補] 1인을 줄인다. ○ 守門將 9인이 임금의 지명(落點)을 받는다. 각 문에 나누어 숙직한다. 임금이 거처를 옮길 때에는 門數에 따라 숙직인원을 加減한다. ○ 訓練都監의 把摠 2인 [增] 1인을 줄인다. 哨官 2인 임금의 지명(落點)을 받아서 砲手 200인을 거느린다. [增] 1인을 더하고 포수 240인을 거느린다. 禁衛營 哨官 1인 임금의 지명(落點)을 받아서 軍士 114인을 거느린다. [增] 금위영에 把摠 1인을 두며 이는 훈련도

491) 忠壯衛는 임진왜란 후 軍功者·納粟者·戰死者의 子 중 5품 이하인 者로서 편성된 部隊이며 忠壯將은 그러한 부대의 지휘관이다(《광해군일기》 권97, 광해군 7년 11월 8일 경진 및 권126, 광해군 10년 4월 신묘). 兪장위는 교대로 外間을 晝夜譏察하기도 하지만 入京하여 宮中宿衛하는 수가 많았다(同上). 또한 兪장위는 價布를 징수하는 부류가 아닌데도 그들에게 면포를 징수한 兪장위장을 광해 때 罷職한 바 있다(《광해군일기》 권77·권81, 광해군 6년 4월 22일 및 6년 8월 27일). 숙종 12년 8월 玉堂의 관료들은 納粟受帖者들이 兪장위로 充定되는 것을 폐단의 하나로서 지적하고 있다. 納粟受帖者가 兪장위에 充定된 것은 그들을 賤役에 充定할 수도 없고 無役人으로서 둘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民怨이 있으므로 變通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숙종실록》 권17-37, 숙종 12년 8월 정축). 그리하여 숙종 43년 5월경에는 兪장위가 戰死者의 자손만으로 편성되어 매년 納布 1필을 바치는 良役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자손도 無限代가 아닌 3대로 제한하고 曾孫代 이후에는 일반 軍役に 充定하게 되었다(《숙종실록》 권59-36, 숙종 43년 5월 기사). 영조 35년 11월에는 병조판서 李昌壽의 건의에 따라 忠壯衛將은 忠翊衛將과 함께 五衛將의 예대로 체아직을 주도하도록 하였다(《영조실록》 권94-17, 영조 35년 11월 정사).

492) 忠翊將은 忠翊衛(주 337)의 지휘관이다.

493) 주 18 (別軍職).

감의 把摠 1인을 줄이는 대신으로 더 둔 것이다. 局別將⁴⁹⁴⁾ 1인 임금의 지명(落點)을 받아서 局出身 45인을 거느린다. 등이 各所를 나누어 守直한다. ○ 무릇 宿衛하거나 守衛하던 사람이 대궐안의 여러 處所 및 城門은 반드시 禁衛營과 御營廳 兩營 및 禁軍廳의 元軍이 나누어 把守하도록 하고 그 외 각처의 把守軍은 서울의 坊民을 雇立하여 定하도록 한다.⁴⁹⁵⁾ 當直 중에 도망친 경우에는 杖 100에 처한다. 哨官 이 상에게는 각각 형벌 1등을 더하여 杖 60 徒 1년에 처한다. ○ 城門을 守直하는 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죄를 따져 벌(論罪)한다. 禁軍 兩人이 모두 자리를 비우면 杖 60, 徒 1년에 처하고 1인이 자리를 비우면 杖 80에 처한다. 符驗⁴⁹⁶⁾을 받은 護軍이 야간 당직에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두 사람이 모두 자리를 비웠을 때의 죄와 같다.

〔增〕 壯勇衛⁴⁹⁷⁾ 12인은 明政殿 서쪽 月廊⁴⁹⁸⁾의 銅龍門 안에서 入直하며, 軍兵 중에서 뽑아낸 5명은 장용위 2인으로 하여금 거느리도록 하여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建陽門을 把守하게 한다. 〔補〕 壯勇衛가 明政殿 月廊에 입직하는 것은 지금은 폐지되었다. 훈련도감의 別武士 2인이 建陽軍 10인을 뽑아서 건양문에 입직한다. ○ 임금이 도성 밖으로 거동하여 숙박(經宿動駕)할 때에는 兵曹에서 守宮大將을 임금에

494) 局別將은 局出身(주 131)의 지휘관이다.

495) 解說篇 25. 坊民 參照.

496) 符驗은 都城正門을 留門(門開閉를 보류하는 것)할 때 사용하는 符信으로서 승정원에 청하여 이를 받아내어서 入直禁軍에게 교부한다.

497) 주 19, 주 63, 주 130 (壯勇衛).

498) 明政殿은 창경궁 안에 있는 궁전으로서 성종 15년에 건립된 것이다. 月廊은 궁전 좌우(東西)에 있는 廊屋을 말한다.

게 천거하여 임명하도록 (啓差)해서 궐내를 숙직하게 하며, 大將은 從事官 1인을 임금에게 천거하여 임명하도록 해서 文官인 侍從 궁궐 담장 안을 순찰하게 한다. 또 大臣 1인과 현직이나 전직 중에서 選任 三軍門의 大將 1인이 都城에 남아서 지킨다. 大臣은 扈衛軍官을 거느리고 結陣한다. 守禦廳과 摠戎廳 兩營에서는 운번으로 弘化門 밖에 머물러서 陣을 친다. [補] 수어청의 남한산성 出鎭과 충유청이 專管한다. ○ 임금이 궐내에서 거동하여 침전 아닌 곳에서 숙박할 때의 임직은 병조와 도총부의 당상관 및 낭관·선전관·무검 선전관 각 1인이 임금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본래의 장소에서 守直하도록 한다. ○ 宗廟·社稷·永禧殿·景慕宮⁴⁹⁹의 守直軍을 고용된 군병(雇軍)으로 하는 것을 영구히 혁파하고 지방에서 뽑혀 올라온 군병(鄉軍) 중에서 골라 정하되 근실하게 選定하여 보내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分軍衛將에게 무거운 律文으로 시행한다. 그것을 살피지 못한 해당관청(本署)의 관원에게도 죄를 같이 준다. ○ 兵曹와 都摠府의 入直人員은 移職(轉補)이나 죄로 被訴되었을 경우를 막론하고 규정된 시간 전에 守直所를 나와서

499) 宗廟와 社稷 및 景慕宮에 관해서는 《대전회통》 이전, 경관직 종5품아문을 참조하고, 永禧殿은 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의 초상화를 奉安한 殿閣이다(《대전회통연구》 이전 편(앞의 책), p.153).

(徑出) 입직장소를 비울 수가 없으며 다음 번에 입직할 사람과 對面하여 交代해야 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군법으로 처리(從事)한다.

補 禁軍將 · 守門將 · 各營將官이 입직할 경우에는 미리 임금의 지명을 받지(受點) 아니하고 차례대로 裁可를 받아 시행한다.

【擲奸】⁵⁰⁰⁾ **原** 무릇 入直하는 將帥와 軍士에 대해서는 병조 및 도총부에서 不正有無를 조사(擲奸)하며 아울러 武器도 점검한다. 밤에는 먼저 임금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

續 빈 宮闕과 宮城을 守直하는 部將은 돌아가면서 조사(擲奸)하되 매일 이상 유무를 兵曹에 보고한다. 야간 통행금지를 위반한 사람(犯夜人)에게는 杖 100 徒 3년에 처한다. ○ 매년 春秋로 兵曹의 당상관이 工曹와 漢城府의 당상관 및 郎官과 더불어 宮城 · 都城을 순찰 · 조사(巡審擲奸)한 후에 탈이 난 곳이 있으면 임금에게 보고한다. 宮城이면 戶曹 및 紫門監에서, 都城이면 軍門에 나누어 주어 改修시킨다.

增 都城의 城堞(성벽위의 낮은 담)에 대해서는 三

500) 擲奸은 摘奸이라고도 하며 궁궐내에 入直하는 將兵을 단속하고 범행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병조와 도총부에서 擲奸牌(주 485)를 갖고 그러한 일을 하였다. 척간은 그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범법행위 유무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15).

軍門의 大將이 春秋로 看審하며(살피며) 매일 將校를 정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 宮城의 修築은 都城의 例에 의하여 三軍門이 分掌(나누어 담당)한다. ○ 景慕宮의 宮牆(담장)에 대해서는 兵曹判書가 本宮의 提調와 더불어 春秋로 巡察하며 조사한다. 담장의 修築은 궁궐 담장(宮牆)의 例에 따라 三軍門에서 舉行한다. ○ 舍春苑⁵⁰¹)의 경우도 같다.

【行巡】原 궁궐내에서는 衛將이나 部將이 軍士 10인을 거느리고 시간을 나누어 순찰을 行한 후에 이상유무(無事與否)를 임금에게 직접 보고한다. ○ 都城 内外의 순찰은 兵曹가 당직을 마치고 나가는 軍士를 忠義衛·忠贊衛·忠順衛·族親衛·內禁衛 이외의 五衛의 각 1部の 軍士를 2개소로 나누어 지정(差定)하여 순찰을 행하도록 한다. 또 임금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巡將⁵⁰²) 및 監軍⁵⁰³)과 巡將은 中樞府의 知事 이하 僉知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여 임명(望差)

501) 舍春苑은 서울 창경궁 동쪽에 있는 동산이다.

502) 解說篇 11. 巡將 參照.

503) 監軍은 巡將을 보좌하여 야간에 도성내외의 巡察을 감독하였는데 선전관이나 병조와 도총부의 당하관 중에서 후보자를 임금에게 추천하여 選定을 받아서 임명하였다. 위의 註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중종대에 巡將을 노직당상관으로 임명하였고 監軍도 술마시기를 일삼아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監軍이 비록 堂下武官으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도 그가 監軍牌를 갖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비록 王子와三公일지라도 길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군패에는 임금의 手決(御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상관인 承旨의 行次에 감군패를 가진 도총부 經歷 李玄成이 물러서지 않는다고 卑賤武夫라 하여 알보고 벌한 君臣모두를 史官은 비판하고 있다(《숙종실록》 권17-38, 숙종 12년 9월 병술).

하고 부족하면 行職 堂上官⁵⁰⁴)을 후보자로 추천하여 임명한다. 각 運領官⁵⁰⁵)으로
 는 上護軍·大護軍·護軍을 임명하고 부족하면 別侍衛로서 6품 이상인 자를 임명하
 다. ○ 監軍으로는 宣傳官이나 兵曹 및 都摠府의 堂下官을 후보자로 추천하여 임명
 한다. 番을 마치고 나가거나 當番으로 들어오는 軍士
 의 將帥는 대궐에 들어가서 肅拜하고 임금이 거처하
 는 곳(大內)에서 牌를 바치거나 받는다. 각 運領官이 받을
 牌는 巡將이 모두 받아서 나누어 준다. 임금이 宮城 밖에 나가서 머
 물 때(行在時)에는 승정원에서 牌를 受納한다. ○ 兵
 曹에서는 宮城의 4門⁵⁰⁶) 밖의 宿直인원으로 각각 上
 護軍·大護軍·護軍 중에서 1인을 임명하고 부족하면
 行職人⁵⁰⁷)으로 임명한다. 正兵 5인을 지정한다. 都城內外의 여러 警
 守所⁵⁰⁸)에서는 步兵⁵⁰⁹) 2인이 부근 坊里人 5명을 거느리고 또한 그들이 소유하고

504) 行職堂上官은 官階와 관직이 모두 당상관인 경우(예 嘉善大夫 行兵曹參議)도 예상할 수 있
 으나 여기서는 中樞府의 僉知事에도 미치지 못한 관직자임을 예상한 것으로 보아서 官階는 비
 록 당상관이나 그 관직이 당하관인 경우라 할 것이다.

505) 運領官은 巡官이라고도 하는데 각 運의 領率官이다. 運이란 야간에 순찰하는 立番軍士를
 임시로 分隊한 단위이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616). 巡官은 도성내외의 순찰 및 경비업
 무를 수행하는데 이들은 每更(初更 : 甲夜戌時, 二更 : 乙夜亥時·····五更 : 戊夜寅時
 등으로 지금 시간으로 오후 7시부터 오전 5시까지 사이를 두시간 단위로 나눔)마다 한번씩 순
 찰하며 미리 나누어 준 木柵을 각 更마다 警守所에서 거두어 다음날 아침 일찍 병조에 반납하
 도록 하였다. 병조에서는 이로서 巡官이 每所에 순행한 眞僞를 알 수 있게 되었다(《세종실록》
 권57-31, 세종 14년 9월 계해).

506) 궁성의 4門이란 경복궁에 있는 四門으로서 光化門(남문)·建春門(동문)·迎秋門(서문)·
 神武門(북문)을 말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16). 세종 8년 10월 집현전에 명하여 처
 음으로 경복궁 각문의 명칭을 정하였는데 근정전 앞 제2문을 弘禮門, 제3문을 광화문, 근정전
 東廊夾門을 日華門, 서쪽을 月華門, 궁성 동쪽을 건춘문, 서쪽을 영추문이라 하였다(《세종
 실록》 권34-4, 세종 8년 10월 병술). 북문은 태조때 木柵을 설치하여 만든 바 있었으나 그
 후 폐쇄하고 築城하였는데 세종 15년 7월에 다시 축조되었다(《위의 책》 권61-14, 세종 15년
 7월 임신).

507) 行職人은 行守法에 의거 官階보다 관직이 낮은 경우인데 여기서는 護軍보다 관직이 낮은
 자(중4품 이하인 자)를 의미한 듯 하다.

508) 解說篇 26. 警守所 參照.

있는 활·칼·杖⁵¹⁰) 등을 가지고 更籤⁵¹¹)을 받아서 숙직하도록 하되 오직 노인·질병인·과부가 있어서 달리 그들을 모시고 부양할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직을 면제한다. ○籤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며 某警守籤이라고 쓴다. ○山谷의 警守所에서는 正兵 5인이 숙직한다. 光化門⁵¹²)의 護軍은 초저녁에 兵曹에서 방울(鐸⁵¹³)을 받고 아울러 軍號⁵¹⁴)도 받아서 각

509) 步兵은 馬兵(騎兵)과 함께 육군에 속하나, 마병이 부유한 家戶에서 나온 병사인데 반하여 보병은 그렇지 못하고 지급되는 奉足의 수도 마병이 3丁인데 반하여 보병은 2丁이다(《경국대전》 병전, 給保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17).

510) 杖은 막대기란 뜻도 있으나(同上) 창자루란 뜻으로 보아서 막대기 끝에 쇠붙이를 단 민간용 창으로 보인다(1940년대까지 흔히 볼 수 있었다).

511) 更籤은 야간 통행금지 시간에 도성내의 여러 경수소에서 순찰인원이 사용하던 證票이다. 병조의 武備司에서 담당하였으며 나무에 某警守所籤이라고 새겨넣은 木牌이다. 특히 야간에 관원 또는 백성에게 急病이나 死喪·出產 기타 급한 일이 있을 때 巡官 혹은 경수소의 인원이 이를 휴대하고 出行하였다. 그 이외 변방의 鎭堡에서 巡軍이 야간에 사용하던 標信도 更籤이라 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p.617-618).

512) 광화문은 경복궁의 남문으로서 경복궁 건립 직후에는 正門이라고도 하였는데 이 문은 태조 4년 9월에 경복궁과 함께 건립되었다(《태조실록》 권8-6·7, 태조 4년 9월 경신 및 권8-9, 同年 10월 정유). 이 문 앞에는 좌우로 의정부를 비롯한 三軍府·六曹·司憲府 등의 관청이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임금의 모든 명령과 政敎 및 관료들의 上奏(啓)와 復命(보고) 등이 이 문을 통해서 전달되었다(위 실록 기사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18). 이곳에는 上護軍·大護軍·護軍 중의 1인과 정병 5인이 함께 숙직하도록 하였다. 광화문의 개폐에는 標信이 있어야만 했다(《중종실록》 권77-60, 중종 29년 8월 정사). 중종 23년 9월에는 광화문 搖鈴將이 화재사건을 임금에게 문틈으로 보고하였다(《위의 책》 권63-11, 중종 23년 9월 갑신). 명종 4년 2월에는 광화문의 군사가 문틈으로 匿名의 封書를 받았으므로 수문장과 요령장을 推考하였다(《명종실록》 권9-5, 명종 4년 2월 신축).

513) 鐸은 큰 방울을 의미하며 號令이 내리면 武事를 헤아려 金鐸을 흔든다고 하였다(《세종실록》 권133, 五禮 軍禮序禮). 木鐸은 新令이 있을 때 흔들어 백성들을 경계시켰으며 文事에도 목탁을 흔들었다. 목탁도 鐸은 金屬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金鐸과 같으나 금탁의 혀가 금속인데 반해서 목탁의 혀는 나무로 되어 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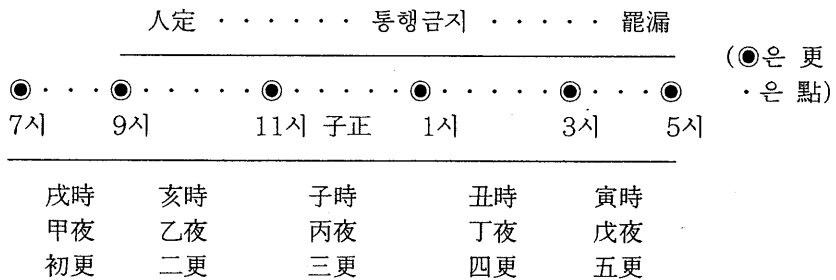
514) 軍號는 軍中에서 쓰는 暗號로서 속칭 言의이라고 하였다(《경국대전주해》 하 후집, 병전). 매일 밤 병조參議와 參知 중 한 사람이 3字 이내의 암호를 秘封하여 임금에게 올리면 임금은 비밀히 이를 각 경수소 및 군문에 내려서 軍號로 삼았다(同上). 성종 12년 11월에는 병조의 啓에 의하여 雪松을 軍號로 삼았다고 한다(《성종실록》 권135-5, 성종 12년 11월 갑신). 또 중종 20년 3월 임금의 陵行時에 선전관으로 하여금 軍호를 갖고 서울에 남아 있는 병조의 관원에게 가도록 한 바 있다(《중종실록》 권53-3, 중종 20년 3월 병인, 정묘). 선조 29년 윤8월 승정원에서 軍호는 軍機重事인데 여러날 동안 임금의 결재(啓下)를 받지 못하였다고 했다(《선조실록》 권79-28, 선조 29년 윤8월 무인). 그 후 영조 36년 7월 왕세자가 온양온천에 갈 때의 軍호를 능행시의 예에 따르게 하고 온양 숙박 때의 軍호는 東宮의 예대로 하도록 하였다(《영조실록》 권96-3, 영조 36년 7월 기미). 또 정조 22년 2월 임금이 수원에 있을 때에

處에서 軍號를 받는 것도 같다. 軍號를 속칭 言的(암호)이라 한다. 人定⁵¹⁵⁾ 후에 正兵 2인으로 하여금 방울을 흔들면서 宮城을 순찰하도록 하여 4面의 警守所 및 각 門에 차례로 傳授하는 등으로 循環(돌기)을 계속하되 罷漏⁵¹⁶⁾에

禁軍을 시켜서 軍號를 서울로 보내면 어떻겠는가를 병조판서가 묻자 임금은 軍號가 至重且秘함이 兵符와 다름없으니 선전관이 갖고 가라고 하였다(《정조실록》 권48-16, 정조 22년 2월 정유).

515) 人定은 매일밤 初更 3點末(오후 9시경) 또는 2更 3點初(오후 10시경)에 鐘樓의 大鐘을 28번 쳐서 城門을 닫고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던 것을 말한다. 큰 종을 28번 치는 것은 별자리 28宿에 곱하여 밤의 안녕을 빈다는 뜻이다(《경국대전 주해》 하 후집, 병전 및 《세종실록》 권19-5, 세종 5년 정월 경자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19). 종루는 태조 7년 4월에 만들었으며 그것을 지금의 종각자리로 옮긴 것은 태종 13년이다(《서울六百年史》, 서울시史편찬위원회, 1977, pp.310-313). 중종 31년 4월 남대문과 동대문에도 종을 달아서 人定과 罷漏의 시간을 널리 알리자는 주장이 있어 임금이 그대로 하라고 했다(《중종실록》 권81-39, 중종 31년 4월 기사). 그러나 그 시행(그것도 남대문에 限)은 선조 27년 11월에 이르러서였다(《선조실록》 권57-2, 선조 27년 11월 무인). (初更을 5點으로 나누는 說에一 의하면 현재시각이 다르게 계산된)

516) 罷漏는 세종 5년 정월까지는 매일 새벽 5更 3點末(오전 5시경)에 그 이후는 5更 3點初(오전 4시 30분경)에 큰 쇠북을 33번 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던 것을 말한다(《경국대전 주해》 하 후집, 병전 및 《세종실록》 권19-6, 세종 5년 정월 경자). 종루의 대종을 33번 치는 것은 帝釋天이 이끄는 33天에 곱하여 그날 하루의 國泰民安을 빈다는 뜻이다(《서울육백년사》 3, p.89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19). 광해군 8년 8월 欽敬閣 校正廳에서 啓하기를 임진왜란 후 禁漏(궁중에서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물시계)의 更點이 모두 맞지 않는다는 것과 人定은 戌初一刻(오후 7시~7시15분), 罷漏는 寅正初刻(오전 4시~4시15분)이라는 것이었다(《광해군일기》 권106, 광해 8년 8월 20일 무오). 更點은 북(중)과 징을 쳐서 야간에 시각을 알리던 시간단위로서의 更과 點을 말하는데 하룻밤의 시간을 5更으로 나누고 1更과 5更은 3點(5點 說有)으로, 2경에서 4경까지는 5點으로 다시 나누어 경을 알릴 때에는 북(중)을, 점을 알릴 때에는 징을 쳤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신기철·신용철 《새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p. 203).



이르면 그친다. 巡官 즉 각 運領官은 每更에 宮城을 순회하며 4面の 警守所 및 各門에 가서 更籤을 회수하여 날이 밝으면 兵曹에 반납한다. 여러 곳의 警守所로 巡將이 巡官을 임명하여 不意에 보내서 更籤을 거두어 兵曹에 바친다. 巡將도 不時에 친히 가서 考驗(상고하여 조사함)하도록 한다.

○ 二更 이후 五更 이전까지 大小員人(크고 작은 관원이나 높고 낮은 사람)은 나다닐 수 없다. 만약 급속한 공무나 疾病·死喪·出產 등 부득이한 일로 인하여 通行할 경우에는 巡官이나 警守所에 직접 알려야 하고 大小員人이 巡將이나 巡官을 만나면 모두 말에서 내려야 하고 巡將·巡官·大小員人 등이 御押標信⁵¹⁷⁾을 맞게 되면 모두 말에서 내린다. 巡官이나 警守所에서는 사람을 시켜서 更籤을 갖고 위 해당자를 책임지고 맡아서(保授) 목적지인 家屋까지 데리고 가도록 하며, 巡官인 경우에는 인근의 警守所의 更籤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음날 병조에 알려서 사실조사를 한다. 巡官 및 警守所에서는 이유없이 야간통행을 하는 자를 잡으면 인근 경수소에 차례로 넘겨 주어 巡廳⁵¹⁸⁾에

517) 御押標信은 임금의 手決(御押)이 있는 標信으로서 御押信牌 또는 御押牒이라고도 하였다. 임금의 명령에 의거, 궁궐문을 열거나 닫을 때 혹은 군대를 소집해야 할 비상시에 이 標信을 사용하였다. 표신은 象牙로 만들었으며 원형으로 지름이 2寸이고 鹿皮로 끈을 달았다(민현구의 4인, 앞의 책, p.619).

518) 巡廳은 도성내외의 行巡책임자인 巡將을 중심으로 하여 설치된 관청이다. 좌우의 2개소가 있었으며 각소에는 각각 순장을 보좌하는 兼官인 監軍 이외에 錄事와 書吏가 별도로 배치되어 行巡을 담당하는 出直軍士와 그들을 지휘하는 巡官에 관한 庶務를 처리하였다(同上). 한편 한성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禁火에 관한 일도 야간에는 순청에서 분담하였다(《增補文獻備考》 권

가두며 3품 이하의 곧바로 가두고 당상관 및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이면 根隨(수행하는 하인)를 가둔다. 都城 밖에서는 경수소에서 가두고 날이 새면 巡將에게 이를 보고한다. 다음날 兵曹에 보고한다. 만약 사유를 숙여서 통행금지를 위반하거나(犯禁) 혹은 뇌물을 받고 犯禁者를 고의로 석방한 경우에는 軍令⁵¹⁹⁾으로 論罪한다. ○ 通宵旗⁵²⁰⁾를 巡廳에 세웠으면 비록 標信⁵²¹⁾이 없어도 밤새도록 통행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增] 지금은 폐지 되었다. ○ 都城 內外를 순찰도는 軍士에 대하여서는 巡將이 초저녁에 이름을 대조하면서 點考(點呼)하고 罷漏 후에 또 點考하여 解散시킨다. ○ 失火가 있을 경우 巡官은 달려가서 불을 끄고 도적을 살피야 한다. ○ 군사의 결석 및 출석과 각 更의 無事與否(이상유무)를 巡將이 兵曹에 보고하고 병조에 서는 이를 임금에게 아뢴다.(啓達한다.) ○ 兵曹 · 刑曹 · 義禁府 · 漢城府 · 修城禁火司 · 五部の 속직원 은 通行標信⁵²²⁾을 둥근 모양으로 일면에는 통행이라 쓰고 다른 일면에는

224-6, 職官考11, 修城禁火司). 순청을 2所로 나눈 것은 세조 11년 12월부터인데 이 때 每所에서는 巡將 1인과 監軍 1인이 同坐點檢하였으며, 감군은 선전관과 병조와 鎭撫所의 郎廳 중에서 임금의 낙점을 받아서 임명하였다(《세조실록》 권37-29, 세조 11년 12월 을해).

519) 解說篇 27. 軍令 參照.

520) 通宵旗는 대체로 명절이나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에 巡廳에 게양하는 깃발이다. 通宵旗가 게양되었을 때에는 아무런 標信이 없더라도 야간에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다(《서울옥 백년사》 앞의 책, 권1, p.412).

521) 解說篇 28. 標信 參照.

522) 通行標信은 야간통행증 혹은 宮門出入證에 해당하는 표신으로서 단순히 표신이라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행표신을 가르킨다. 통행표신은 야간통금지시간(2경에서 5경)에 공무로 통행

통행이라 篆字로 烙印하였다. ○ 야간통행 및 陣中에서 그것을 쓴다. 承政院에서 받고 다음날 아침 반납한다. 軍號를 兵曹에서 받아서 각각 그 관청의 衙前과 使命을 거느리고 수시로 순찰을 행한다. 임금이 行在할(都城 밖에 나가 있을) 때에도 같다. [增] 標信을 지금은 通符라고 하며 형조 이하 각 관청에서 순찰 하는 것은 지금은 폐지되었다. ○ 임금이 行在할(都城 밖에 나가 있을) 때에는 都城에 머물고 있는 3大將이 각각 軍士 30인을 내어 兵曹로 보내면 병조에서는 장소를 나누어 경비임무를 맡기고 또 巡將과 巡官을 임명한다. ○ 임금의 行在所⁵²³⁾ 內陣⁵²⁴⁾의 순찰은 都摠管 이하 여러 將帥 중에서 병조가 임금에게 아뢰어 지명(낙점)을 받아 군사 5인을 거느리고 수시로 행하도록 하되 순찰한 후 巡將은 임금에게 곧바로 보고한다. 外陣⁵²⁵⁾의 순찰 및 특별순찰의 경우에는 大將⁵²⁶⁾이 衛將이나 部將

하거나 궁문을 출입하는 자의 통행허가증인 동시에 軍門과 法司 소속의 야간 순찰근무자들의 신분증이기도 하였다(주 521 참조). 표신을 《대전통편》에서는 通符라고 하였다.

523) 行在所는 임금이 궁성 밖으로 나갔을 때 머무는 곳을 말한다.

524) 內陣은 임금이 궁궐을 떠나 행재소에 있을 때에 경호를 위한 陣을 설치하는데 임금이 있는 중심부는 內陣, 그 외각지대는 外陣으로 편성된다. 이 때의 陣形은 5衛連陣이라 하며(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21) 중앙의 中衛가 獨陣을 이루어 내진이 되고 전후좌우의 四衛가 縱橫으로 그 주변을 에워싸면서 외진이 된다(《문종실록》 권8-18, 문종 원년 6월 병술). 이 때 대장은 외진의 4衛를 중심으로 하는 경비책임을 맡고 내진의 中衛는 별도의 경호체계를 갖춘다(병전, 行巡).

525) 外陣은 陣法에 있어서의 連陣이나 合陣의 경우 내진 바깥의 경비체계를 가르킨다(同上).

526) 大將은 군대의 최고지휘관으로서 문종 원년 6월의 陣法에 의하면 대장은 5衛를 衛將은 5部를, 部將은 4統을, 統將은 관내 旅帥를, 旅帥는 5隊(125인)를, 隊正은 5伍(25인)를, 伍長은 5인을 통솔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장은 25部, 100統을 거느리게 되고 만약 1旅가 1統이라면 五衛兵은 모두 12,500인이라 하였다(《문종실록》 권8-16·17, 문종 원년 6월 병술).

을 정하여 군사 10인을 거느리고 순찰하도록 한다.

〔續〕 都摠府의 郎官 2인과 궐내에 入直하는 兵曹의 郎官이 수시로 야간순찰을 하되 미리 임금에게 품의한 후에 行해야 하며 간간이 晝間에도 순찰·점검한다. 궁궐 밖에서 당직하는 郎官은 軍號를 받아서 入番하는 소속 軍士를 거느리고 수시로 야간 순찰을 한다. ○ 軍號는 入直 당상관이 親書封印하여 매일 申時(오후 3시부터 5시까지)에 郎官으로 하여금 직접 승정원에 올리도록 한다. 兵曹에서 근무중인(行公) 당상관이 없으면 都摠府의 수석 당상관이 通例대로 행하며 도총부에서도 當상관이 모두 공석이면 兵房承旨가 거행한다. ○ 사사로이 軍號를 같은 隊伍의 軍士에게 전달한 자에 대해서는 병조에서 곤장을 친다. 임금이 都城 밖으로 거동할 때에 世子가 수행하지 않으면 世子에게 軍號를 올리고 세자가 만약 수행하면 임금이 도성 밖에 거동할 날 짜수에 맞추어 미리 군호를 준비하여 임금의 裁可를 받아서 兵曹에 둔다. 〔補〕 임금이 都城 밖으로 거동할 때에는 行在所에서 軍號를 그 때 그 때 裁可받고 도성 밖에서 임금이 숙박할 때에는 미리 군호에 관하여 裁可를 받아둔다. ○ 左右 兩 捕盜廳에서는 각각 牌將 8인과 軍士 64인을 정하여 都城 內外를 매일 밤 순찰하게 하고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3軍門에

따라서 1隊가 1統이 되는 경우의 부대라면 모두 2,500명이 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22).

서는 날짜를 나누어 윤변으로 훈련도감에서는 初日, 금위영은 中日, 어영청은 終日.⁵²⁷⁾ 牌將과 훈련도감에서는 9인, 금위영은 7인, 어영청은 8인 [增] 금위영과 어영청도 각 9인. 軍士를 정하여 훈련도감에서는 90인, 금위영은 94인, 어영청은 77인. [增] 훈련도감에서는 83인, 금위영은 84인, 어영청은 67인. 都城 內外를 야간에 순찰하도록 하고 또 각 軍門은 해당 지방 軍營(外營)의 入直 將校 1인이 入直 軍士를 거느리고 宮城 밖에서 시간을 나누어 (分更⁵²⁸⁾) 야간순찰을 하도록 한다. 훈련도감에서는 初更·三更·四更에 순찰하고, 금위영은 二更, 어영청은 五更에 순찰하도록 한다. [增] 四更과 五更은 어영청에서 순찰한다. 또 각 軍門은 각각 將校 1인을 정하여 入直軍士 5인을 거느리고 궁궐 담장 밖에서 매일 밤 초저녁(日晡)부터 새벽(天明)까지 순찰하도록 한다. 別巡邏牌를 만들어 준다. 禁令을 위반하여 야간을 통행한 사람은 순찰자가 잡아서 인근 警守所에 맡겨 두었다가 다음 날 각 해당 軍營에서 곤장을 쳐서 죄를 다스린다. 初更에 위반한 자에게는 곤장10번, 二更에는 20번, 三更에는 30번, 四更에는 20번, 五更에는 10번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친다. ○ 무릇 순찰하는 사람은 모두 軍號를 받으며 궐내 순찰인과 궁궐 담장 밖의 순찰인이 다른 軍營人을 순찰 담당

527) 初日, 中日, 終日이란 날짜를 3분하여 寅·申·巳·亥日을 初日, 子·午·卯·酉日을 中日, 辰·戌·丑·未日을 終日이라 한 것을 의미한다(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439).

528) 주 516 (罷漏와 人定 및 分更).

구역(信地)에서 만나면 그 때마다 서로 응답하고(相應) 그렇게 계속 되풀이하여 罷漏에 이르면 그친다. 城內外를 순찰하는 牌將과 軍士가 혹시 서로 만나서 軍號를 물어 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야간 통행금지 위반자로 잡아서 다스린다.

〔增〕 外三營인 北營 및 新營과 東營의 入直 중에 元巡邏軍 이외에 將官을 매일 밤 罷漏 후에 覲見하여 새벽까지 각 해당 軍營의 管轄구역(字內) 안의 宮城을 자세히 살피도록 한다. ○ 궁중의 하인(掖隸)이 紅衣를 입지 아니하고 야간통행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곧바로 곤장으로 다스린다.

〔補〕 金虎門과 弘化門의 入直 軍士 각 6명과 銅龍門의 入直 軍士 2명은 罷漏로부터 새벽이 될 때까지 각각 그 管轄구역 안에서 巡邏로 돌아다니면서 순찰한다.

【啓省記】⁵²⁹⁾ 〔原〕 무릇 宿衛하며 巡察하는 사람 및 여

529) 啓省記는 省記를 임금에게 보고(啓聞)하는 것을 말한다. 省記란 병조의 入直당상관이 매일 軍號와 宿衛行巡人 및 各門把守人·警守所宿直人의 인원수를 적어서 임금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다. 임금이 도성밖에 머물 때(행재소)에 內陣軍士수와 外陣軍士수를 각각 都總管과 大將이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622).

러 장수는 각각 入直 將士의 數를 자세히 적어서 兵曹에 보고한다. **각 門의 把守人과** 宮城門에는 兵曹에서 正兵과 甲士를 差出하여 여러 곳에 分屬시켜 把守하게 하고 또 隊卒 10인을 差出하여 光化門과 宗廟門을 지키도록 한다. 都城門은 당직을 마치고 나오는 步兵으로 하여금 把守하게 하되 興仁門⁵³⁰·崇禮門⁵³¹·敦義門⁵³²·東小門⁵³³에는 護軍을 差定하고 그 나머지 門에는 五員⁵³⁴을 差定하여 거느리게 한다. 五員은 軍士가 아니고 司直이하 武官의 호칭인데 軍士의 數는 每 大門에는 30인이고, 中門에는 20인으로 大門의 左右 挾門에도 이와 같다. 小門에는 10인으로 中門의 左右 挾門에도 이와 같다. ○ 宗廟門에는 4인, 都城門에는 8인이다. **警守所의 宿直人에 관하여는 兵曹의 入直 當상관이 초저녁에 軍號와 아울러 이름을 적어(署名하여) 封해서 올린다.** 宮內에서 入直하는 여러 將帥와 宣傳官·兼司僕·上護軍·大護軍·護軍·각 관청의 官員 및 巡將·巡官이외는 모두 總數를 기록한다. ○ 임금이 都城 밖에 머물 때(行在時)에는 서울에 남아있는 兵曹의 當상관이 이를 封해서 承政院에 올리되 임금이 還宮한 후에 보고(啓達)한다. ○ 行在所의 內陣軍士에 관해서는 都摠管이, 外陣軍士에 관해서는 大將이 각각 이름을 적어(署名하여) 封해

530) 興仁門은 지금의 동대문을 의미하며 태조 5년에 건립되었다. 동대문에는 다른 성문(4대문과 4소문)에 없는 용성이 둘러 있는데 이는 태조 6년에 축조되었다. 이 문은 문종·단종년간에 개축되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622).

531) 崇禮門은 지금의 남대문을 의미하며, 도성의 정문으로 태조 7년에 준공되었다. 이 문은 세종 30년과 성종 10년에 두 차례 개축되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623).

532) 敦義門은 지금의 서대문로타리에 있었던 서대문의 정식명칭이다. 태조 때 처음 축조되었을 때의 서대문의 위치는 지금의 사직동에서 독립문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었다고 하며 태종 때 위치를 옮겼다가 세종 때 또다시 서대문 로타리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同上).

533) 東小門은 지금의 서울 혜화동에 있었던 惠化門을 의미하며 신축초기에는 弘化門이라 하였으나, 성종 15년에 건립된 창경궁의 흥화문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중종 때에 혜화문이라 고쳐부르게 되었다고 한다(同上).

534) 五員은 5衛의 司直·司果·司正·司猛·司勇을 말한다.

서 올린다. ○ 行軍하여 下營(設陣)한 후에 軍士의 도착 미착과 호위부대 後尾의 無事與否에 관하여 大將이 임금에게 보고한다.

〔續〕 임금이 慶熙宮⁵³⁵⁾에 갈 때를 맞추어 春塘臺⁵³⁶⁾에서 과거시험장을 설치하게 되면 시험관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살펴서 기록(省記)한다. ○ 月食할 때에는 救食所⁵³⁷⁾에서 별도로 살펴서 기록한다. ○ 무릇 살펴서 기록한 것(省記)을 임금이 都城 밖으로 거동하였을 때에는 大妃殿이나 王妃殿에 보고하고 世子가 수행하지 아니 하였으면 東宮으로 進達한다. 〔補〕

임금이 都城 밖으로 거동하였을 때에는 行在所에서 裁可를 받고 도성 밖에서 숙박할 때에는 미리 裁可를 받아 둔다.

〔增〕 각 관청의 單官處(官員이 1인이 있는 곳)에서는 임시직(假官)과 교대로 省記함을 허용한다. 交替省記는 1개월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35) 慶熙宮은 서대문 안에 있었던 궁전으로 광해군 8년에 건립하여 慶德宮이라 하던 것을 영조 36년에 개칭한 것이다. 인조는 원년 3월에 이 궁궐에서 대비의 명령으로 즉위하였다. 한일 합방 후 건물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경성중학교(서울 중·고등학교 전신)가 설립되었다(이홍직, 《國史大事典》, 한국출판사, 1982, p.86).

536) 春塘臺는 창경궁 안에 있는 臺로서 임금이 이곳에 親臨하여 문무과거시험의 하나인 春塘臺試를 보였는데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이 결정되는 大科殿試였다. 선조 5년에 처음 실시되었다(이홍직, 위의 책, p.1569).

537) 救食所는 日蝕이나 月蝕이 있을 때 이를 異變(病)이라 하여 임금이 각 관청의 당상관과 낭관을 각 1명씩 거느리고 해나 달을 향하여 기도하며 자숙하던 月臺(전각 앞에 있는 섬돌)를 말한다. 이 때 관원들의 의복은 淡淺色(옥색)이었다. 救蝕행사로서 간혹 火箭을 쏘거나 북을 치거나 放砲하기도 하였다. 연산군 때 救蝕행사를 일시 폐지시킨 적이 있으나 종종 때 다시 부활하였다(이홍직, 위의 책, p.176 및 조선총독부, 《校註 大典會通》, 앞의 책, p.593).

【門開閉】 **原** 宮城門은 초저녁에 닫고 해뜰 때 열며 都城門은 人定에 닫고 罷漏에 연다.⁵³⁸⁾ 宮城門은 注書⁵³⁹⁾가 都摠府의 당하관 <補 宣傳官> 및 司鑰⁵⁴⁰⁾과 더불어 열고 닫되 承旨에게서 열쇠를 받고 또 반환(受納)한다. 都城門은 護軍과 五員(司直·司果·司正·司猛·司勇)이 열고 닫으며 交代時에는 兵曹에서 열쇠를 受納한다. ○ 임금이 宮城 밖에 머물 때에는 守門將이 열쇠를 간수하고 명령을 기다린다. 때마침 임금에게 보고할 문서가(啓達事) 있으면 護軍이나 五員이 문틈으로 받아서 급히 꺾문에 가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 소정시간이 아닌 때에 都城門을 열 경우에는 大內(임금이 거처하는 곳)로부터 開門左符⁵⁴¹⁾를 내리며 개문좌부의 모양은 둥글고 일면에는 篆書로 信符라 그려 넣고(圖) 일면에는 篆書로 信符라 박아넣어(印) 가운데를 갈라서 護軍과 五員이 右符를 받으며 交代時에 兵曹에서 受納한다. 宮城門은 標信

538) 宮城門은 都城門보다 일찍 닫고 늦게 연다. 도성문은 4대문인 승례문, 흥인문, 돈의문, 肅靖門과 4小門인 동소문, 서소문, 光熙門, 彰義門을 말한다. 모두 도성이 축조되었던 태조 5년에 건립했으나(《태조실록》 권10-5, 태조 5년 9월 기묘) 그 준공에는 약간의 시차가 있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p.623~624).

539) 注書는 정종 2년에 中樞院堂後官이 승정원의 당후관으로 되었다가(《정종실록》 권4-5, 정종 2년 4월 신축) 그 뒤에 注書로 개칭되었다. 注書는 승정원일기를 쓰는 일을 맡았는데 원래 史官이 아니었으나 세조 3년 7월부터 春秋館記事官을 겸하게 되었다(《세조실록》 권8-17 및 8-21, 세조 3년 7월 기사 및 정축). 주서는 승지의 감독(糾檢)하에서 승정원문서를 관장하는데 그 문서는 모두가 史籍이다(《성종실록》 권72-5, 성종 7년 10월 계미). 注書는 또한 궁성문을 열고 닫는 책임을 맡았다.

540) 司鑰는 掖庭署의 잡직인 정6품직으로서 체아직이다. 사약은 궁문과 꺾내의 여러 문의 자물쇠를 맡아본다(韓佑勳 외4인, 《역주 경국대전》(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 140).

541) 開門左符는 人定에서 罷漏까지의 開門시간에 긴급한 일이 있어서 도성문을 열 경우에 使用되는 信符의 左片이다. 사용시에는 선전표신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모양은 원형으로서 처음에는 양면에 각각 篆字體로 信符라 쓰고 도장을 찍었으나 뒤에는 일면에 해당 門號를 새겼다(《增補文獻備考》兵考4, 符信). 左符는 꺾내에 비치하고 右符는 수문장(護軍과 五員)에게 교부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24).

을 써서 열고 닫는다. 開門標信⁵⁴²은 모양이 네모꼴로서 일면에는 開門이라 썼고 일면에는 御押(임금의 手決)이 있다. 閉門標信⁵⁴³도 이와 같으나 다만 일면에 閉門이라 썼다. ○ 긴급할 때에는 都城門에도 통용한다.

續) 임금이 궁궐을 나가서 都城안에 거둥할 때에는 宮闕門의 開閉에 관하여 慈旨(大妃의 標信)·內旨(王妃의 標信)·徽旨(世子の 標信) 중에서 請하여 거행하고 都城門의 開閉는 例에 따라 行在所로 標信을 請한다. 임금이 都城 밖으로 거둥할 때에는 궁궐문과 도성문의 開閉에 관하여 모두 慈旨·內旨·徽旨 중에서 請하여 거행한다. 그러나 世子가 임금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곧 바로 徽旨를 請한다.

增) 宮闕門을 열고 닫는 것을 보류해야 할 때에는 승정원에서 임금에게 標信을 請하여야 하며 그것이 내리기 전에는 단지 문을 닫은 채 잠그지는 아니하고 비록 임금의 下敎가 있더라도 출입 시켜서는 안 되며 標信이 내리는 것을 기다려서 비로소 출입을 허가한다. ○ 임금이 거둥할 때의 開門은 標信을 임금으로부터 공손히 받은 후에 또 徽旨를 啓請해야

542) 開門標信은 초저녁(初昏)에서 날이 밝을 때(平明時)까지의 궁성문의 폐문시간에 궁성문을 열 경우에 사용되는 표신으로 처음에는 方形이었으나 뒤에는 銳形으로 바뀌었다. 일면에는 개문이라 쓰고 다른 일면에는 임금의 手決(御押)을 새겼다. 개문표신은 긴급시에는 도성문에도 사용되었다(同上).

543) 閉門標信은 개문표신과 같은 형태였으나 일면에 폐문이라고 썼다(同上).

한다. 宣傳官이 임금의 標信을 갖고 闕門 밖에 이르면 兵曹와 都摠府의 守宮 堂上官이 문틈으로 직접 받아서 승정원에 전하고 승정원에 남아 있는 承旨가 徽旨를 啓請한다. 陵行時에는 守宮大將이 역시 從事官으로 하여금 문틈으로 임금의 標信을 공손히 받도록 한다. ○ 都城門의 開閉를 보류(留門)할 때에는 宣傳標信을 사용한다. 4大門에서는 宣傳官에게 宣傳標信을 주고, 禁軍에게 당해 大門의 해당 시간의 符驗⁵⁴⁴을 주며, 또 宣傳官 1인에게 開門標信을 주어서 먼저 開門標信으로 闕門을 열도록 한 후에 宣傳標信 및 符驗을 받은 자가 같이 城門에 도착하면 자물쇠를 연다(啓鑰). 사이문(間門)에는 단지 開門標信만을 사용하고, 대문의 開閉를 보류하는데에는 宣傳標信으로 거행하며, 사이문의 開閉를 보류하는데에도 같다. 宣傳官은 標信을 갖고 머물면서 기다리다가 部將과 함께 문을 도루 닫은 후 임금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비가 개이기를 비는 제사 때의 문의 開閉에도 標信을 기다려야 한다. ○ 임금이 都城 밖에서 숙박하면서 陵行할 때에 성문을 닫을 時刻에 열도록(留門)하자면 반드시 信箭⁵⁴⁵과 標信이 함께 도착한 후 慈旨(大妃의 標信)와 符驗을 신청하여 받아야만 開門이 허용된다.

【侍衛】⁵⁴⁶ 原 무릇 大閱⁵⁴⁷ · 講武⁵⁴⁸ · 巡幸⁵⁴⁹ · 打

544) 주 496(符驗).

545) 信箭은 임금이 도성 밖으로 거동하면서 군령을 각군영으로 전달할 때 또는 도성의 성문을 닫을 시각에 이를 계속 열어두도록 명령할 때, 선전관으로 하여금 이를 휴대하도록 한 화살이다. 화살촉에 令字를 새겼고 각색의 小標旗에 붙친 旗面에 信字를 썼다(《교주 대전회통》, 조선총독부, 1938, p.596).

546) 주 436 (行巡 및 侍衛).

547) 大閱은 임금이 행하는 大觀兵式으로서 이 때에 군사들에게 習戰시켰다(《경국대전 주해》하병전, 후집). 매년 9월과 10월중에 習陣行事를 도성 밖에서 실시하였는데 大閱儀는 세종 3년 6월에 처음 정하였으며, 그 때 宗室 이하 文武群臣이 모두 甲冑를 입고 임금(金甲을 입을)을 따르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12-6·7, 세종 3년 6월 임진). 大閱儀式은 그 후 문종 원년 6

圍⁵⁵⁰) 및 임금이 직접 지내는 제사에 있어서 응당 행해야 할 侍衛條件에 관하여 兵曹가 임금의 지시를 받아서 공문으로 전달하되 왕세자의 거동시에 응당 시행할 시위조전도 역시 지시를 받는다. 임금이 직접 지내는 祭祀에서는 軍士를 지휘하는 깃발이나 복 등(形名)을 가진 사람은 祭壇 밖에 머물고 廟와 陵의 제사에서는 문밖에 머문다. 大小의 朝賀⁵⁵¹)나 宴享에는 衛將이 각각 그 軍士를 거느리고 뜰에 정열하여 서고 兵曹와 都摠府 이하의 官職者로서 군무를 띤 자⁵⁵²) 및 司僕은 임금 곁에 모시고 서

월 陣法(親撰新陣法) 제정으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제도로서 확립된 것이다. 즉 진법의 大閱儀注에 의하면 그날 좌우군으로 나누어 教場에서 서로 마주 대하여 布置한 후 임금의 거동(大駕)이 教場에 이르면 大角을 불고 大將은 오위장을 소집하여 진퇴좌우를 兵法에 의하도록 훈시(誓)하며 衛將은 이를 듣고 각각 해당衛에 돌아가서 차례대로 傳令하고 成陣한다는 것이다(《문종실록》 권8-19·20, 문종 원년 6월 병술).

548) 講武는 임금의 親臨下에서 실시하는 狩獵大會로서 軍事訓練을 목적으로 하였다. 태조 5년에 義興三軍府의 건의로 처음 講武儀式을 만들었고(《태조실록》 권10-10, 태조 5년 11월 갑신), 뒷날 《國朝五禮儀》 嘉禮講武儀에 상세한 절차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중앙에서는 4계절말에 도성 인근 교외에서 수렵행사를 행하여 잡은 짐승으로 종묘와 사직에 제사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384 및 pp.624-625).

549) 巡幸은 임금이 도성밖을 나다니는 것을 말하며 行幸이라고도 하였다. 임금의 車駕가 머무는 곳에는 백성들이 그 德을 입게되므로 요행으로 여긴다는 뜻으로 임금의 巡歷을 순행이라 하였다(《경국대전 주해》 하 후집, 병전, 순행).

550) 打圍는 수렵을 의미한다. 수렵할 때 짐승을 포위하여 잡았으므로 수렵을 打圍라 하게 된 것이다(《위의 책》 병전, 打圍).

551) 朝賀는 설날·동짓날·초하루·보름 및 임금과 왕비의 생일(誕日)에 왕세자와 백관이 慶賀하는 글을 올리고 예물을 바치는 의식을 말한다. 이 때 왕세자나 세자빈이 올리는 글을 致詞라 하였고 문무백관이 올리는 글을 箋이라 하였다(《대전회통연구》II, 예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178).

552) 軍務를 띤 자란 임금을 측근에서 모시고 호위하는 임무를 띤 자를 말하는데 《國朝五禮儀序禮》 권2, 嘉禮, 排班圖, 勤政門朝參之圖에 의하면 御座左右에 捧寶劔都摠管·捧甲上護軍·捧弓矢上護軍이 호위하고 전면좌우로 捧雲劔大護軍에 뒤이어 佩雲劔中樞·都摠府·兵曹·五衛將·內禁衛將이 侍立하며 후면에 兼司僕이 列立하도록 되어 있다.

며 內禁衛와 別侍衛는 섬돌위에 정열해서 선다. ○ 常參⁵⁵³에 있어서는 단지 入直將士로 하여금 侍衛하게 한다. 먼저 궁궐 뜰에 들어오면 각각 그 方位에 위치하게 되는데 例컨대 東所로 들어온 자는 동쪽에 정열하는 따위와 같으며 임금이 還宮한 후에 나간다.

〔續〕 仁政殿에 임금이 친히 납실 때에는 別軍職이 인 정전 밖에 선다. 임금이 친히 납시어 백관의 朝賀를 받을 때와 직접 誓戒를 받을 때의 軍兵의 배열 등의 일은 동일하게 거행한다. ○ 임금이 山陵에서 참배(展謁)할 때 및 都城 밖에서 숙박하는 거동이 있을 때에는 輦을 좌우로 호위하는 砲手(挾輦砲手) 200인이 侍衛하면서 따른다. 日傘의 체비는 경기의 驛卒로 하여금 奉行하도록 한다. 〔補〕 挾輦砲手の 인원수는 그 때 그 때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를 받아 정한다. ○ 임금이 行幸할 때 宮內의 侍衛兵이나 수행인(根隨)이 정하여진 한도 이외에 더 들어갔을 때에는 官員을 엄중히 推問하고 수행인은 허가없이 함부로 侍衛 隊列에 들어간 例로 죄를 다스린다.

〔增〕 別抄軍⁵⁵⁴은 駕後禁軍의 例에 의하여 50인을 定

553) 常參은 정식 朝會인 朝參(월4회, 실제상 월1회)에 대하여 약식 朝會라 할 수 있다. 매일 대신을 비롯한 주요 부처의 당상관, 경연관, 史官들이 便殿(副殿)에서 常服차림으로 임금을 배알하는 의식으로서 常參 후에 업무보고와 輪對가 행하여진다. 常參은 매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선 중엽에는 실제로 한달에 몇번씩만 시행되었다(한국법제연구원, 《위의 책》 p.179 및 權穰, 《冲齋先生文集》 권3·4 일기). 따라서 常參 때에는 朝賀나 朝參 때와는 달리 侍衛도 매우 간소하게 하였다.

員으로 하되 임금이 거동할 때 都城 안이면 輦의 좌우를 侍衛하고 都城 밖이면 駕後禁軍과 함께 前後를 나누어 侍衛한다. ○ 騎馬兵 중에서 1哨를 선발하여 攔後別隊(後陣別隊)를 만들어 그 將帥로 하여금 前後로 나누어 통솔하여 侍衛 하도록 한다. ○ 兼內吹와 元內吹⁵⁵⁵⁾는 임금이 거동할 때와 宮殿에 正座할 때에 함께 侍衛한다. 黃色 옷을 입은 黃內吹와 黑色 옷을 입은 黑內吹의 舊例로 한다. ○ 槍劔軍은 전부 禁衛營에 속하되 訓練都監의 例에 따라 把摠과 哨官 각 1인이 나누어 거느리면서 侍衛하도록 한다. ○ 文官이 겸하는 宣傳官은 비록 實職이 있더라도 侍衛에 나아가 참여한 다. ○ 將臣은 감히 令箭⁵⁵⁶⁾으로서 謁內的 軍兵을 지휘하지 못한다. ○ 임금이 거동할 때의 路上에서는 標信이 없으면 侍衛行列 내로 출입할 수가 없다. 該房(兵房)承旨와 兵曹判書 및 奎章閣의 여러 官員의 牙牌⁵⁵⁷⁾를 가진 前導者는 출입을 禁止하지 아니하며 道中の 行幕 및 임금이 輦에서 내릴 때에는 다만 承旨와 史官(승정원 注書와 예문관 檢閱)만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輦이 머물 때에는 標信을 가져야 들어올 수 있게 한다.

554) 別抄軍은 고려시대의 도성에서 도적을 잡기 위하여 설치한 夜別抄와 그 발전된 형태인 삼별초를 의미할 때도 있으나, 조선시대의 별초군은 어떤 지점을 수비하기 위하여 그 부근 사람을 모집하여 편성된 군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조선중기 이후에는 임금이 거동할 때 御駕를 호위하기 위하여 50명을 별도로 뽑은 군사를 의미하였다(이홍직, 《앞의 책》 p.586).

555) 兼內吹와 元內吹는 궁중에서 軍樂을 연주하는 樂隊로서 명칭을 兼과 元으로 나누었다. 그들이 황색옷을 입으면 黃內吹, 흑색옷을 입으면 黑內吹라 하였다.

556) 令箭은 軍令을 전하는 화살이다.

557) 牙牌는 상아로 만든 2품 이상 관료의 號牌이다. 승지가 비록 3품관이나 官階가 嘉善大夫(중2품)이면 牙牌를 찰 수 있다고 하겠다.

【疊鼓】⁵⁵⁸⁾ 原 대궐 안(大內)에서 큰 북을 거듭 치면(疊鼓) 각 문을 把守하는 當直者 이외의 入直하는 諸衛의 軍士는 勤政殿⁵⁵⁹⁾ 뜰에 모여서 각각 자기 위치를 찾아 줄서되 兵曹에서는 東閣門 밖에 서고 都摠府에서는 그 다음에 서며 上護軍과 大護軍 및 護軍은 또 그 다음에 서고 內禁衛는 西閣門 밖에 서며 閣門은 思政殿⁵⁶⁰⁾ 남문의 좌우에 있는 挾門이다. 司僕은 그 앞에 선다.

【嚴鼓】⁵⁶¹⁾ 增 지금은 嚴鼓를 疊鼓 대신으로 쓴다. 첫번째 큰 북을 치면(初嚴) 百官은 문밖의 정해진 집회장소(外

558) 疊鼓는 임금이 대궐에 入直한 군사들을 소집하고자 할 때에 궁중에 있는 큰 북을 계속 두드렸던 것을 말한다. 이는 평상시에 비상대처훈련을 하는 것이나 실제 비상시에 처하였을 때 왕권을 신속히 보호하고 국가의 安危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한다(車文燮, 〈防衛制度〉, 《서울육백년사》 권1, pp.414~415). 그러나 훈련부족으로 계속 북을 두드렸으나 군사들이 설 장소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중종실록》 권73-24, 중종 27년 9월 을축).

559) 勤政殿은 경복궁의 正殿으로서 임금이 즉위하거나 朝臣들의 賀禮를 받던 곳이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勤政門·弘禮門·光化門이 있고, 동쪽으로는 日華門, 서쪽에는 月華門이 있다. 근정전이란 명칭은 태조 3년 경복궁 축조 후 정도전이 붙인 것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6·17, 京都上, 宮闕).

560) 思政殿은 경복궁 안에 있는 便殿으로서 근정전의 북쪽에 있다. 사정전은 임금이 문신들과 함께 경전을 講論하고 宗親·大臣들에게 酒宴을 베풀던 곳이며 임금이 親臨하여 문무과거를 보이던 곳이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26). 사정전이란 명칭은 경복궁 축조후 정도전이 붙인 것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7, 京都上, 宮闕). 사정전의 남문인 思政門의 동쪽 左挾門을 東閣門, 서쪽 右挾門을 西閣門이라 하였다(車文燮, 〈防衛制度〉, 《서울육백년사》 권1, 서울특별시, 1977, p.414).

561) 嚴鼓는 임금이 正殿에 出御할 때나 또는 거동할 때에 엄숙한 威儀를 보이고 백관과 侍衛軍士가 제자리에 모여서 대기하도록 宮中의 큰 북을 치는 것을 말하는데 첫번째 치는 것을 初嚴, 두번째 치는 것을 二嚴, 세번째 치는 것을 三嚴이라 하였다. 두번째의 북소리로 모든 준비태세를 갖추게 되며 세번째의 북소리로 임금이 정전에 臨御하거나 行陣을 하게 된다.

位)로 나아가고 侍衛將士는 지정된 곳(信地)에 줄지어 서며 甲士는 각문을 把守한다. 正門에는 훈련도감의 甲士 12인, 左挾門에는 禁衛營의 甲士 12인, 右挾門에는 御營廳의 甲士 12인, 光範門과 崇範門에는 훈련도감의 甲士 각 8인이 把守한다. 두번째 큰 북을 치면 (二嚴) 百官은 正殿 뜰에 들어와서 정해진 자리로 나아가고 東班은 좌측에 서고 西班은 우측에 선다. 세번째 큰 북을 치면 (三嚴) 임금의 正殿에 臨御하고 侍衛는 班次圖에 의한다. ○ 임금이 거동할 때에는 初嚴에는 大駕를 따르는 軍兵이 지정된 장소(信地)에 모여서 대기 하며 二嚴에는 陣形을 結成(結陣)하고 三嚴에는 行陣한다.

【疊鐘】⁵⁶²⁾ 原 큰 종을 거듭 치면 즉 大閱 때이다. 곧 入直하는 諸衛의 軍士들이 疊鼓例와 같이 集合한다. 만약 임금이 勤政殿 및 諸門에 남시면 그 남신 곳을 따라 그 뜰에 집합한다. 五衛의 軍士는 光化門 앞길에서 鐘樓⁵⁶³⁾와 興仁門까지 늘어선다. 義興衛 左部는 광화문

562) 疊鐘은 임금이 閱兵(군사들을 大閱)할 때 궁중의 樓上에 걸려있는 大鐘을 쳐서 오위의 군사 및 관계 관원을 모았던 것을 말한다. 그 때 出入番軍士들은 모두 갑옷을 입고 대기하는 등 비상훈련에 대비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중종실록》 권73-24, 중종 27년 9월 을축).

563) 鐘樓는 태조 4년 도성안의 중심지인 雲從街(지금의 종로) 대로상에 세웠던 누각이다. 이곳에 대종을 달고 人定과 罷漏에 종을 쳐서 통행금지과 그 해제시각을 알렸고 또한 도성내의 화재 등 변고가 있을 때 이를 쳐서 도성백성들에게 알렸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26).

앞에 서고, 後部는 그 다음에 서며 中部는 또 그 다음에 서고, 前部는 또 그 다음에 서며, 右部는 또 그 다음에 선다. 龍驤衛·虎賁衛·忠佐衛·忠武衛는 또 그 다음에 서되 部의 차례는 위와 같다. 衛將 이하는 왕명을 받고 가서 군사를 거느리며, 百官은 소속 관청에 남는 1인 이외는 宗廟와 社稷의 官員은 모두 소속 관청을 지키며 客館⁵⁶⁴의 官員과 官人은 그 館을 떠나지 못한다. 甲冑⁵⁶⁵를 착용하고 무기를 갖추어 각각 朝房⁵⁶⁶에 모여서 명령을 기다린다. 宗親府·議政府·儀賓府의 당상관에게는 武器를 준다. 대궐 안에 있는 여러 관청 및 都城 밖에 있는 여러 관청의 官員은 각각 소속

이 종루를 짓고 큰 종을 달게된 所以는 大功을 세우고 大業을 정한 것(왕조창업의 위업)을 종에 새겨서 後人의 이목을 크게 움직이게 하고 새벽과 저녁에 종을 쳐서 온 도성의 大邑 사람들이 일하고 쉬는 것을 엄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3-16, 한성부, 궁실). 종루와 별도로 경복궁 광화문 밖 서쪽에 종각이 있었는데 세조 때 大鐘을 鑄造하였으며 申叔舟가 鐘銘序를 썼다. 鐘樓에 매단 鐘의 鐘銘序는 權近이 썼다(同上). 종루는 세종 때 개축하였고 종도 세조 때 새로 만들어 달았으나 임진왜란 때 종루는 불타고 종도 파괴되어 광해군 때에 종각을 새로 짓고 종도 원각사 종을 옮겨 걸었으며 그 후에도 종각이 여러번 불탔으나 곧바로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광해군일기》 권159, 광해 11년 4월 갑술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26).

564) 客館은 넓게는 서울과 지방의 외국사신의 숙소를 총칭하지만 여기서는 서울의 太平館·東平館·北平館을 의미한다.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태평관(중국사절의 숙소)과 동평관(倭使의 숙소)만 의미하게 되었다. 事淸 이후 여진인사절의 숙소인 북평관은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종 20년 2월 외국사신의 보호 및 密賣의 감시 등을 위하여 동평관과 북평관에는 時散 3품 이하 6품 이상의 監護官 3인씩(3인중 1인은 의금부 관원이 겸무)과 錄事 2인씩을 두었으며(《세종실록》 권80-24, 세종 20년 2월 계미), 세종 20년 4월에는 그것을 5품衙門例에 의한 常設衙門으로 하였다(《위의 책》 권81-1, 세종 20년 4월 병진).

565) 甲冑는 갑옷과 투구를 말한다. 갑옷 중에서는 鐵로써 미늘을 만들고 水銀에 적신 水銀甲을 비롯하여 柳葉甲·皮甲과 鐵絲로 만든 작은 고리를 서로 꿰 銷子甲, 철미늘과 철고리로 된 鏡幡甲, 접은 종이로 미늘을 만든 紙甲 등이 있었다. 투구는 쇠로 만들었으며 처마가 있는 簷冑, 처마가 없는 圓簷이 있었다(《세종실록》 권133, 五禮, 軍禮序禮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27).

566) 朝房은各司의 관원들이 조회할 때에 대기하던 장소로서 宮門 옆에 두었는데 창덕궁의 경우는 金虎門(西門) 밖에 있었다고 한다. 기타 국가의 중요행사 때에 종친과 백관이 儀式前에 대기하던 곳으로도 쓰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27).

관청에서 명령을 기다린다. 미처 문을 나가지 못한 자는 朝房에 모이고 미처 문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문밖에 모인다. 侍臣⁵⁶⁷⁾은 建春門⁵⁶⁸⁾과 迎秋門⁵⁶⁹⁾ 밖에 모여서 명령을 기다린다. 숙직을 마치고 나가는 兵曹·都摠府의 官員·衛將·部將·宣傳官·司僕·內禁衛 및 訓練院과 軍器寺의 官員들은 소속 관청에 머무는 관원 이외에는 광화문 앞에 모여서 명령을 기다린다. 軍器寺에서는 2인이 명령을 기다리고 나머지 官員은 소속 관청 및 宿直所를 지킨다. ○ 宮城의 4門 및 都城의 諸門에서는 標信을 조사하고 출입시키되, 만약 大駕(임금의 가마)가 문을 나갈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한다.

【吹螺】 增 지금은 天鵝聲⁵⁷⁰⁾(나팔)을 불어서 疊鐘을 대신하는데 다만 危急을 알릴 때에만 사용한다. 百官은 각각 朝房에 와서 모이고 각 營의 軍兵은 규정된 위치(信地)에 따라 扈衛한

567) 侍臣은 임금이 거동하거나 儀式을 행할 때에 가까이에서 임금을 모시는 신하로서 經筵(玉堂)·春秋館(史官)·知製教 및 사헌부와 사간원·通禮院의 당하관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 社稷祭·宗廟祭祀·文宣王享祀 등 중요 儀式에는 반드시 임금의 大次 뒤에 侍臣의 幕次를 설치하도록 하였다(同上 및 《國朝五禮儀序禮》 吉禮 車駕出宮, 車駕還宮).

568) 建春門은 경복궁의 東門으로 태조 4년 9월에 건립되었다(《태조실록》 권8-7, 태조 4년 9월 경신).

569) 迎秋門은 경복궁의 西門으로 태조 4년 9월에 건립되었다(同上).

570) 天鵝聲은 나팔을 의미한다. 함경북도에 天鵝가 있어서 태조가 일어날 때 울어 吉祥이 있었다고 하여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나팔을 天鵝聲이라 하였다(조선총독부, 《앞의 책》 p.600).

다. 訓練大將은 中軍 이하와 旗鼓隊를 거느리고 敦化門에서 把守하되 그 步軍은 金虎門⁵⁷¹) 남쪽으로부터 東營의 서쪽에 이르기까지 陣을 치고(結陣) 騎馬兵은 把子橋 앞길에 陣을 친다. 禁衛大將은 中軍 이하와 旗鼓隊를 거느리고 金虎門에서 파수하되 그 步軍은 金虎門 북쪽으로부터 廣智營 서쪽에 이르기까지 陣을 치고 騎士는 曜金門으로부터 拱北門⁵⁷²)에 이르기까지 陣을 친다. 御營大將은 中軍 이하와 旗鼓隊를 거느리고 弘化門⁵⁷³)에서 把守하되 그 步軍은 東營 북쪽에서 廣智營 동쪽에 이르기까지 陣을 치고 騎士는 館峴에서 진을 친다. 守禦使는 中軍 이하와 旗鼓隊를 거느리고 備邊司 서문 밖에서 陣을 친다. 摠戎使는 中軍 이하와 旗鼓隊를 거느리고 禁衛營 동문 밖에서 陣을 친다. 護衛別將은 軍官을 거느리고 金虎門 북쪽에서 拱北門 밖에 이르기까지 陣을 친다. 龍虎將은 禁軍인 駕後軍을 거느리고 敦寧府 앞길에서 陣을 친다. 駕前別抄軍은 宣仁門⁵⁷⁴) 밖에서 陣을 친다. [補] 守禦使의 結陣은 남한산성 出鎮 후에 폐지되었다.

【符信】⁵⁷⁵) [原] 發兵符⁵⁷⁶)의 모양은 둥근데 일면에는 發兵이라 쓰고

- 571) 金虎門은 창덕궁의 正殿인 仁政殿의 서문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30, 京都上 궁궐).
- 572) 曜金門과 拱北門도 창덕궁이나 창경궁 안에 있는 문으로 보인다.
- 573) 弘化門은 창경궁의 正殿인 明政殿의 동문인 明政門 방향의 동쪽에 있는 문으로서 문내에 御溝橋가 있었는데 玉川이라고 하였다(同上). 성종때의 건축물로서 현존하는 궁궐문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장중·우아·화려하다.
- 574) 宣仁門은 창덕궁의 正殿인 仁政殿의 동문인 建陽門 방향의 동쪽에 있는 문이다(同上).
- 575) 符信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信標의 일종으로서 金·玉·銅·竹·木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표면에 문자를 새기고 둘로 쪼개어서 임금과 將帥가 나누어 가졌다가 병력동원이나 군작전시에 맞추어봄으로써 명령의 진위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종 46년 장군 朴希實·趙文胄 등이 元으로부터 金符를 받은 일이 있고 태조 6년에는 虎符라는 符信을 제작·사용하였다. 조선시대의 부신중 가장 중요한 것은 發兵符와 密符인데 發兵符는 세조 3년부터 관찰사·절도사와 鎮將에게 교부되었고 密符는 성종 원년부터 2·3명의 重臣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후에는 五軍營의 大將 등 주요 군지휘관들에게 주어서 패용하게 하였다. 이 밖에 開門左符·信符·漢符·通符·命召 등의 准符信과 각종 標信 및 각종 牌 등도 넓은 의미의 부신에 속한다. 여러 부신의 형태와 운용방법은 《대전회통》 병전 符信條와 《增補文獻備考》 권112, 兵考4, 附 符信에 규정되어 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28).
- 576) 發兵符는 병력동원을 명하는 符信으로서 세조 3년에 처음 제작하여 각도의 관찰사와 절제사(후일의 절도사)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 여러 鎮將에게도 주었다. 관찰사와 절도사의 左符는 궐내에 비치하였고 諸鎮將의 左符는 소속 관찰사와 절도사가 보관하였다가 發兵敎書가 내려오면 諸鎮에 보내어 發兵케 하였다. 조선후기 오군영 등 주요 군지휘관들에게 교부한 密符도 일종의 발병부로서 발병부의 운용에 관해서는 《대전회통》 병전 부신조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일면에는 어느 道 觀察使·節度使라 쓰며 諸鎮이면 鎮號를 써서 가운데를 조겐다. 右符는 觀察使와 節度使 및 諸鎮에 나누어 주고 [增] 守禦使와 摠戎使에게도 준다. [補] 4都 留守에게도 준다. ○ 守禦使는 지금은 廣州 留守로 되었다. 左符는 대궐안(大內)에서 보관하는데 만약 병력을 동원(徵兵)하자면 左符와 敎書를 내려 보내서 맞추어(合驗) 본 후에 徵兵에 應하도록 한다. ○ 觀察使와 節度使도 역시 관내 諸鎮에 내리는 左符와 敎書를 받으면 左符를 諸鎮에 보내어 병력을 동원(發兵)하도록 한다. ○ 군사훈련(習陣)時에는 大閱·講武·巡幸 등으로 병력동원에 응해야 할 곳에서는 習陣을 정지한다. 兵符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병력을 동원한다. ○ 諸鎮將⁵⁷⁷⁾이 왕명으로 다른 지방에 출장갈(出使) 때에는 항상 兵符를 패용해야 하고 만약 공무로 인하여 3일 旅程으로 다른 곳에 출장 갔다가 혹은 喪을 당하거나 혹은 휴가(告)를 받거나 씌는 휴가이다. 혹은 본인이 죽었으면 判官이나 口傳軍官(임금이 간단한 절차로 임명한 군관)이 전해 받아서 巨鎮에 가서 交付한다. 判官이 없으면 敎官이 한다. 巨鎮將⁵⁷⁸⁾은 그것을 받아서 節度使에게 보고하고 交付한다. 節度使가 有故하면 虞候에게 교부하고 虞候가 유고하면 口傳軍官에게 교부한다. 評事가 있는 곳이면 評事에게 교부한다. ○ 巨鎮將이

있다(同上).

577) 諸鎮將은 同僉節制使·節制都尉·萬戶 등을 말한다.

578) 巨鎮將은 節制使와 僉節制使(僉使)를 말한다.

有故하면 判官이나 口傳軍官이 節度使에게 직접 교부한다. 節度使는 구체적인 사유를 갖추어 임금에게 보고하며 兵符를 諸鎭將에게 還付한(돌려준) 후에도 임금에게 보고한다.

○ 節度使가 有故하면 虞候가 그것을 전해 받아서 보관하고 이를 임금에게 보고한다. 虞候가 有故하면 부근의 守令이나 口傳軍官이 그것을 보관하고 評事가 있는 곳이면 評事가 그것을 보관하며 이를 兵曹에 보고하여 임금에게 아뢰다. 諸鎭將이 돌려 받은 후에도 스스로 임금에게 아뢰다. ○ 만약 變亂에 대처하거나 도적을 잡거나 나쁜 짐승이 사람 또는 가축을 해치는 경우에는 여러 고을에서는 항상 널리 檻穽과 機械⁵⁷⁹)를 설치하여 나쁜 짐승을 잡는다. 發兵符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먼저 兵力을 동원한 후에 임금에게 아뢰다. 중국 使臣을 맞이하거나 보낼 경우에도 發兵符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병력을 동원하는데 북경으로 가는 우리 使臣의 경우도 같으며 그 병력은 5隊(125명)를 넘지 못한다. 만약 사냥하거나 漕船을 守護하거나 藏氷 또는 營繕 등의 일에 대하여서는 兵曹가 王命을 받아서 공문을 보낸 후에 兵力을 동원한다. ○ 무릇 軍事와 國事에 관한 긴급한 일에는 宣傳標信⁵⁸⁰)을 쓴다. 모양은 둥글고 일면에는 宣傳이

579) 檻穽은 짐승을 잡기위하여 설치한 장치(함정·우리 등)를 말하며, 機械는 동물의 목이나 발을 움아매어 잡는 덫을 말한다.

580) 宣傳標信은 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왕명의 전달이나 기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되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29). 선전표신은 원형으로 일면에는 선전이라 쓰여 있고 일면에는 御押(임금의 手決)이 있으며 승정원에서 관장하였는데(同上) 大臣·宗親·兵曹·鎭撫所·宣傳官·宦官·司諫·司鑰 심지어 승정원의 皂隸 등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7-21, 세조 3년 4월 갑오). 표신 일반에 관해서는 해설편 28, 標信에서 상

라 썼으며 일면에는 임금의 手決(御押)이 있다. ○ 사람을 處刑할 때에는 쓰지 아니한다. 임금이 대궐밖에 나가 있을 때에 왕비와 왕세자가 모두 궁궐에 남아 있으면 왕세자는 徽旨標信⁵⁸¹을 쓰고 모양은 곧으며(직사각형) 일면에는 徽旨라 썼고 일면에는 임금의 手決이 있다. 王妃만 궁중에 남아 있으면 內旨標信⁵⁸²을 쓴다. 모양은 뾰족하며(삼각형) 일면에 內旨라 썼고 일면에는 임금의 手決이 있다.

○ 대궐문에 들어갈 때에는 信符를 쓴다. 모양은 네모난 것·둥근 것·굽은 것·곧은 것(직사각형)·뾰족한 것(삼각형)이 있으며 매년 바꾸는데 일면에는 篆字로 信符라는 글자와 그 해의 干支를 烙印한다. 紗帽를 쓰고 角帶를 띤 사람은 信符를 패용하지 아니한다.

續 信符⁵⁸³와 漢符⁵⁸⁴는 매년초 入直 堂上官이 통상적인 定數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여 烙印한 후 宮中으로 들였다가 궁밖의 각 관청에 나누어 주었다. 信符의 길이는 2촌9분, 너비는 2촌5분이다. 漢符는 네모난 것과 굽은 것이면 길이가 4촌3분, 너비가 4촌3분이고, 둥근 것이면 직경이 4촌3분이며, 곧은 것이면 길이가

세히 서술하고 있다.

581) 徽旨標信은 임금이 도성밖으로 거동하였을 때에 왕세자가 궁중에서 사용하는 표신으로서 선전표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30).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일면에 徽旨라 썼고 일면에 御押이 있다. 휘지란 뜻은 세자가 임금을 대리하여 庶務를 裁決하고 명령한다는 것이다(《세종실록》 권108-14, 세종 27년 5월 을유).

582) 內旨標信은 왕과 왕세자 모두 도성을 떠나 있을 때에 왕비가 궁중에서 사용하는 표신으로 모양은 삼각형이며 일면에 內旨라 썼고 일면에 御押이 있었다. 조선전기에는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한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630).

583) 信符는 非官人의 궁궐출입증으로서 초기에는 方形·曲形·直形·銳形(삼각형)을 매년 바꾸어 사용하였으나 후에는 直形(직사각형)만 사용하였다. 일면에 信符란 글자와 그 해의 干支를 篆字로 낙인하고 일면에는 사용자의 소속관청을 새겼다. 信符는 연초에 병조의 당상관이 직접 감독하여 제작하였으며 官員(사모쓰고 角帶 띤 자)은 패용하지 아니하였다(同上).

584) 漢符는 女子用門鑑의 일종으로서 궁중에 출입하는 官婢들이 패용하는 木造의 小牌이다. 해마다 개조하여 그 형태를 달리하는데 寅·午·戌년에는 方形, 亥·卯·未년에는 圓形, 申·子·辰년에는 曲形, 巳·酉·丑년에는 直形의 것을 쓴다(조선총독부, 《校註大典會通》, 《앞의 책》 p.602).

4촌5분, 너비가 4촌3분이다. ○ 후면에는 軍士이던 그 소속처를, 官에 속한 사람이던 관청 이름을 아울러 새긴다.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信符는 175개이다. [增] 465개로 하되 漢符는 235개이다. [增] 모두 565개로 하되 그 중 各殿 差備(下人)에게 47개 [增] 82개 [補] 73개, 各 色掌에게 8개 [增] 11개 [補] 8개, 各殿 照羅赤에게 15개 [增] 24개 [補] 19개, 各色 房直에게 26개 [增] 30개 [補] 34개, 供上 및 進上(進排)를 맡은 각 관청과 司宰監에 5개, 司圃署에 4개 [增] 6개, 掌苑 署에 4개 [增] 3개, 義盈庫에 3개 [增] 4개, 長興庫에 3개 [增] 8개, 內資寺와 內瞻 寺에 각 2개 [增] 각 5개, 司籙寺에 2개, 奉常寺에 2개 [增] 4개, 濟用監에 2개, 繕工監에 1개 [增] 4개, 內水庫·東水庫·西水庫에 각 1개 [補] 서빙고에 2개, 내빙 고에는 삭감하고 길내 출입은 각관청의 差備가 한다. 兵曹에 68개 [增] 84개 [補] 85개, 承政院에 44개 [增] 72개 [補] 17개, 司僕寺에 32개 [增] 90개 [補] 88개, 內需司에 21개 [增] 44개 [補] 90개, 各衛將廳에 17개, 侍講院에 16개 [增] 32개, 典設司에 16개 [增] 12개 [補] 10개, 承文院에 15개, 弘文館에 15개 [增] 27개 [補] 8개, 都摠府에 15개 [增] 21개, 吏曹에 14개, 翊衛司에 14개 [增] 24개, 司饗 院에 14개 [增] 23개 [補] 29개, 內醫院에 13개 [增] 19개, 中樞府에 13개 [增] 14개, 宣傳官廳에 13개 [增] 삭감한다. 尙衣院에 12개 [增] 19개 [補] 24개, 議政 府에 11개 [增] 22개 [補] 19개, 宗親府에 11개, 藝文館에 10개, 內侍府에 10개 [增] 7개, 內三廳에 8개 [補] 7개, 戶曹에 7개 [增] 6개, 工曹에 7개 [增] 5개 [補] 7개, 禮曹에 6개, 刑曹에 6개 [增] 5개 [補] 4개, 備邊司에 6개 [增] 24개 [補] 삭 감한다. 武兼宣傳官廳과 守門將廳에 각 6개 [補] 守門將廳에 4개, 敦寧府에 5개 [增] 6개 [補] 10개, 漢城府와 京畿監營에 각 5개 [補] 한성부에 4개 경기감영에 8 개, 鷹師에게 5개 [增] 8개, 部將廳에 4개, 各衛의 軍士廳에 4개 [增] 5개. [補] 폐 지한다. 尙瑞院 4개, 通禮院 4개 [增] 6개 香室 4개 [增] 5개, 忠勳府 4개 [增] 2개 [補] 4개, 別軍職廳 4개 [增] 7개, 禁漏 4개 [增] 6개 [補] 9개, 紫門監 4개 [增] 3 개, 廣興倉·軍資監·典獄署·局別將廳에 각 3개 [補] 광흥창과 軍자감에 각 2개, 左右巡廳에 각 3개 [增] 합하여 3개, 司憲府와 司諫院에 각 2개, 掌隸院에 2개 [增]

삭감한다. 儀賓府에 2개 [增] 7개, 訓練都監·禁衛營·御營廳·瓦署·平市署·典醫監·忠義衛·忠壯衛·忠翊衛廳에 각 2개, 軍職廳에 2개 [增] 4개, 訓練院과 排設房에 각 2개, 扈衛廳의 三廳에 각 2개 [增] 한 廳에 6개 [補] 4개, 宗廟署·社稷署·永禧殿·講學廳·景福宮에 각 1개, 昌慶宮에 1개 [增] 삭감한다. [補] 2개, 慶熙宮에 1개, 昭顯廟·洗心宮·耆老所에 각 1개 [增] 모두 삭감한다. 義禁府에 1개 [補] 삭감한다. 宣惠廳에 1개 [增] 5개 [補] 4개, 校書館·觀象監·軍器寺·掌樂院·成均館에 각 1개, 四學에 1개 [增] 삭감한다. 司譯院·宗簿寺·造紙署에 각 1개 [補] 宗簿寺 것은 삭감한다. 惠民署에 1개 [增] 2개, 禮賓寺와 五部에 각 1개, 典涓司에 1개, [增] 삭감한다. 司瞻寺에 1개, 守禦廳과 摠戎廳에 각 1개 [增] 각 2개 [補] 수어청 것은 삭감한다. 左右 捕盜廳·禁軍別將廳·能麼兒廳·習讀廳에 각 1개, 儀仗庫에 1개 [增] 3개, 內農圃에 1개 [增] 2개 [補] 8개, 生鮮貢物 納入者에게 5개 [補] 8개, 其人인 貢物 納入者에게 4개 [增] 奎章閣에 58개 [補] 48개, 景慕宮에 4개, 儲慶宮·疏祥宮·延祐宮·義烈宮·懿昭廟에 각 1개, 典牲署·豐儲倉의 貢物 納入者에게 각 1개, 狗皮契의 貢物 納入者에게 2개, [補] 疏祥宮에 21개, 義烈宮 즉 지금의 宣禧宮에 21개, 璿源殿에 6개, 文禧廟에 1개, 建禮堂에 2개, 後苑에 2개, 內東山에 6개, 藏書閣·農圃에 각 2개, 明禮宮·壽進宮·龍洞宮·於義宮에 각 60개, 景祐宮에 21개, 恩彦君房에 15개, 恩信君房에 3개, 恩全君房에 8개, 雲峴宮에 34개, 安洞宮에 22개, 宜嬪宮에 19개, 順和宮에 15개, 慶壽宮에 5개, 寧嬪房에 3개, 淸衍郡主房·淸璿郡主房·淸瑾縣主房에 각 2개, 淑善翁主房·明溫公主房에 각 15개, 福溫公主房에 8개, 德溫公主房에 15개, 朴貴人房·趙貴人房·方淑儀房에 각 17개, 兩倉 貢物 納入者에게 2개 ○ 임금이 거동할 때에 駕後禁軍과 駕前別抄軍은 만약 임금 께서 分付(명령)하는 일이 있으면 標信과 信箭으로서 奉行한다. ○ 중앙 각 軍營의 장수(將臣)와 각도의 관찰사(藩臣) 및 절도사(帥臣)등은 官職이 바뀌어 돌아가게 되면 密符⁵⁸⁵⁾와 命召⁵⁸⁶⁾를 받드시 직접 승정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혹시 官職이 없게 되거나 有故한 경우에는 직접 謁에서 謁하여야 하며 이러한 명령을 遵守하지 아니한 자가 卿宰(중2품이상)인 경우에는 엄중히 推考하고 通政大夫인 경우에는 의금부에서 推問한다. 이 경우 守職者는 본래의 資級(官階)으로 論罪한다. ○ 몸에 將帥의 임무를 띠고 있는 자는 命召를 佩用하거나 密符를 佩用하거나를 막론하고 都城 밖에 居處할 수 없다. 휴가를 받아서 고향에 내려간 경우에 密符는 특별한 왕명이 없으면 이를 계속 佩用하고 왕래할 수가 없다. ○ 守令의 兵符는 守令이 罷職되었으면 즉시 兼官인 이웃 고을 守令에게 傳授한다. 新舊 守令이 對面하여 交代해야 하는 고을에서는 그렇지 않다.

增 大妃殿의 慈旨 모양이 뾰족하고 일면에는 慈旨라 썼으며 일면에는 임금의 手決이 있다. 嬪宮의 內令 모양이 네모나고 일면에는 內令이라 썼으며 일면에는 임금의 手決이 있다. 王世孫의 懿旨 모양이 곧으며 일면에는 懿旨라 썼고 일면에는 임금의 手決이 있다. 만약 임금이 謁박으로 行幸(行幸)하였을 때에 軍事나 政事에 중대한 일이 있는데도 미처 임금이 있는 行在所로 稟達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먼저 王世孫의 徽旨를 받아서 行幸하고 혹시 왕세자가 임금을 따라갔으면 王妃의 內旨로서 行幸되 大妃의 慈旨 이하의 경우에는 수시로 품의하여 지시를 받는다. ○ 問安標信 모양이 둥글고 위쪽에 蓮葉을 새겼으며 일면에는 問安이라 쓰고 烙印하였으며 후면에는 某宮이라 썼는데 各 殿宮에 문안 드릴 때 쓴다. 擲奸標信 모양이 둥글며 일면에는 擲奸이라 썼고 후면에는 임금의 手決이 있었는데 각처의 불법행위자를 색출하는데 쓴다. ○ 命召의 모양이

585) 解說篇 29. 密符 參照.

586) 命召는 임금이 은밀하게 議政大臣·捕盜大將·三軍門大將·병조판서 등의 관원을 부를 경우에 사용하는 割符로서 그 모양은 둥글고 일면에 「命召某職」이라 쓰고 또 그 옆에 「年號月日」을 쓰며 다른 일면에 임금의 수결이 있다. 이것을 가운데로 쪼개어 오른쪽 한 조각을 부르는 자에게 보내고 다른 한 조각은 궁중에 둔다.

둥글고 일면에는 命召 某職이라 썼으며 年號와 月日을 그 옆에 썼고 일면에는 임금의 手決이 있었는데 가운데를 나누었다(中分). **오른 쪽 한 조각은 三大臣·左右 捕將·三軍門의 大將·兵曹判書·兼兵曹判書에게 나누어 주고 왼쪽 두 조각은 대궐 안(大內)에서 보관하다가 만약 機密에 속한 중대한 일이 있으면 밤중에 이것으로 임금이 은밀하게 (大臣·大將·兵曹判書 등을) 부르는데(命召)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조각을 맞추어 보고 부합하면 그대로 거행한다.** ○ **密符의** 모양이 둥글고 일면에는 몇번 제 符라 썼으며 일면에는 임금의 手決이 있었는데 가운데를 나누었다(中分). **오른쪽 한 조각은 觀察使·統制使·守禦·摠戎 兩使·** 補 수어사를 지금은 廣州留守로 한다. **兩都** 補 4都 留守·節度使·防禦使에게 나누어 주고 왼쪽 두 조각은 대궐 안(大內)에서 보관하였다가 무릇 兵力動員(發兵)이나 臨機應變 등으로 대처할 일이 있으면 (宣傳官 등이 갖고 내려가는데) 각 지방의 將帥는 그 조각을 맞추어 보고 符符合하면 반역 등 간악한 일을 막도록 하되 오로지 임금으로부터 받은 諭書에 따라 거행한다. ○ **大將牌** 모양은 둥글고 일면에는 左邊 捕盜大將이라 썼고 <右邊 捕盜大將의 경우도 같다.> 일면에는 임금의 手決이 있다. **傳令牌** 모양이 곧으며 일면에는 좌변 포도대장이라 썼고 <우변 포도대장의 경우도 같다.> 烙印하였으며 후면에는 傳令이라 썼는데 左右捕將에게 나누어 준다. ○ **衛將牌** 모양은 둥글고 일면에는 衛將이라 썼으며 일면에는 烙

印하였다. 巡將牌 모양이 둥글고 일면에는 信字를 썼으며 일면에는 巡將이라 썼다. ○ 木馬牌 모양은 둥글고 일면에는 馬字를 篆字로 써서 烙印하였으며 후면에는 一馬로부터 五馬까지로 하되 司僕寺의 馱馬(짐싣는 말 또는 열등한 말)를 사용하는데 쓴다. ○ 通符⁵⁸⁷⁾ 모양이 둥글고 일면에는 通符라 써서 烙印하였으며 그 위에 또 年號와 月日을 썼고 일면에는 몇 天 몇 地라 썼다. ○ 將臣에게 준 密符와 命召는 비록 (죄를 지어) 王命을 기다릴 때라도 官職이 교체되어 그것(密符)을 빼앗기 전에는 감히 제멋대로 納符할 수 없다. ○ 守禦使가 남한산성에 갈 때에나 摠戎使가 鍊戎臺에 갈 때에는 그 本鎮의 密符를 임금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수어사나 총융사로서 갖고 있는) 密符를 계속 패용하고 왕래하도록 한다. 各營의 將臣이 그 軍營의 일로 성밖으로 나가서 당일 돌아올 경우에도 역시 승정원에 와서 密符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보고하여 임금에게 아뢰도록 한다. ○ 將臣을 陵所에 보내서 祭祀지내도록 할 경우에 都提調가 이를 兼察할 때에는 命召를 계속 패용하고 왕래하도록 한다. ○ 通符를 패용한 자에게는 해당 大將 이외에는 마음대로 棍杖을 쳐서 다스리지 못한다. ○ 信符에는 관청 이름과 役名을 새겨 써넣고 먹물로 채워서 나누어 주되 만약

587) 通符는 의금부·병조·형조·한성부의 入直官이나 포도청의 從事官과 軍官이 범인을 잡는 증표로서 차던 符札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성종 24년 4월 임금이 병조에 傳旨하기를 前日의 通行標信을 遺失한 바 있으므로 지금 개조하여 通符라 하였으며 그것을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성종실록》 권276-8, 성종 24년 4월 신축). 따라서 通符는 통행표신과 같은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글자를 새겨 넣지 아니한 符를 패용하거나
혹은 舊符를 계속하여 패용한 경우와 서로 빌려서
패용한 경우에는 해당 下隸(下人)를 엄중히 다스리
고 그것을 단속하지 아니한 官員에게도 論罪한다.

【教閱】⁵⁸⁸⁾ 原 매월 초 2일과 16일에 陣法을 익히
도록(군사훈련) 한다. 임금의 親閱⁵⁸⁹⁾이 停止되면 兵
曹에서 추천하여 임금의 指定을 받은(受點) 諸將이
當直을 마치고 나가는 將士들을 모아서 郊外에서 陣
法을 익히도록 하되 이 때에 諸將의 能熟여부를 기
록하여 임금에게 아뢰어 歲抄 때에 성적을 통산하여
내보내거나 올려 준다. 諸鎮에서는 매월 16일 各自 陣法을 익히도록
하되 <농사철에는 停止한다.> 雜色軍⁵⁹⁰⁾은 제외한다. ○ 2월과 10월에 巨鎮 소속 諸鎮
兵은 하루 이틀 혹은 10여일에 이르는 식량을 싸가지고 鎮을 바꾸어 가면서 陣法
을 익히되 雜色軍은 제외한다. ○ 每 4季節 끝달에 兵曹와 都
摠府의 堂上官 및 軍器寺의 提調 각 1명이 郊外에
나가서 火炮⁵⁹¹⁾ 쏘기를 연습시키며 壯勇衛와 破敵衛의 軍士 각

588) 教閱은 군사들에 대한 教鍊과 閱兵을 의미하며 중앙과 지방 군사의 習陣·火炮 쏘기연습·
武器와 馬匹의 點考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서울로 上番入直하는 군사들에 대한 훈련과 그에 따
른 상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教閱時에는 임금이 親行하거나 혹은 장수에게 명하여 행하였다
(《중종실록》 권73-24, 중종 27년 9월 을축)

589) 親閱은 임금이 親臨하여 군사들의 훈련(習陣)을 觀覽하는 것으로 大閱과 같은 것이다(同
上).

590) 解說篇 21. 雜色軍 參照.

591) 火炮는 화약을 쓰는 兵器로서 그 중 銃筒·火桶·火筒은 銃筒안에서 화약을 폭발시켜 丸

20인을 골라 화포 쏘기를 연습시킨다. 지방에서는 諸鎭將이 화포 쏘기를 연습 시킨다. 水軍과 陸軍 10인마다 각각 1인씩을 골라서 每鎭에 立番할 때에 화포 쏘기를 연습하도록 한 후에 主將⁵⁹²⁾은 사용된 火藥數⁵⁹³⁾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임금에게 아뢰는다. ○ 2월과 9월의 20일에 兵曹와 都摠府의 堂上官 각 2인이 [補] 각 1인 郊外 혹은 訓練院에서 兼司僕·內禁衛 [補] 羽林衛·忠義衛·族親衛·各品の 伴佺·壯勇衛의 [補] 충의위 이하는 지금은 폐지되었다. 武器를 點考(검열)한다. 節度使는 때와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巡視하여 諸鎭의 陣法 익히기와 화포 쏘기 연습 등 일체의 軍務에 만약 능숙하지 못한(不能) 諸將이 있으면 즉시 임금에게 아뢰는다. ○ 兵曹와 都摠府의 堂

또는 箭을 발사시키는 것이고 走火와 神機箭은 箭앞에 부착된 화약통의 화약을 태워서 추진력을 얻었다. 또 二銃筒·三銃筒·勝字銃筒 등은 개인화기였고 대형인 銃筒砲口·將軍火筒·天字銃筒 등은 공용화기였다. 우리나라의 火砲는 고려후기에 등장하였고 공민왕말에는 화약의 제조까지 가능하였다고 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31 및 蔡連錫, 《韓國初期火器研究》 pp.137-146, 《한국군제사》 근세조선전기편, p.391). 우왕 3년에는 최무선의 건의로 火燭都監이 설치되었다(《고려사》 권133-31, 列傳 46, 辛禡 3년 10월). 조선 세종 때에는 화포가 획기적으로 발달하여 동왕 27년에는 舊制火砲를 모두 폐기하고 새로 改鑄하도록 하였으며, 《銃筒謄錄》을 각도에 보내어 각종 화포를 만들도록 하였다(許善道, 《韓國火器發達史》上, 1969 및 同上).

592) 主將은 특정 部隊나 특정지역의 으뜸되는 將帥를 말하며 여기서는 諸鎭將을 의미한다. 특히 육군의 경우 留防軍이 있는 긴요한 諸鎭과 수군의 諸浦에서는 當番軍士들에 대한 화포의 훈련이 諸鎭將 책임하에서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p.631-632).

593) 화약은 폭발성 교체 화학물질로서 화포쏘기의 추진력으로 쓰였다. 고려 중엽에도 화약사용의 흔적이 있으나 銃筒類에 사용되는 화약은 고려말에 수입 내지 제조(주 591)되었다. 조선 태종 때는 화약제조기술이 매우 향상되어 동왕 17년에는 火藥監造廳이 설치되었다. 세종 때에는 화포제조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화약제조기술도 더욱 발전되어 각지방에도 敬差官을 보내어 화약원료인 焰硝를 굽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에 못미쳐서 중국에서 염초를 수입하거나 궁중에서도 그것을 굽었다. 그 후 화약제조는 단종 이후 화포의 쇠퇴와 함께 점차 부진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32 및 허선도, 《麗末鮮初 火器의 傳來와 發達》上下, 《歷史學報》24, pp.25-27 및 25 pp.58-96). 인조 14년 李曙의 《火砲式諺解》에는 화약과 왜약·石硫火箭藥·明火藥·噴筒藥 등 화약류의 제조법과 재료, 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다(同上).

上官 각 1인이 郊外에서 不時에 (때를 정하지 아니하고) 番上軍士⁵⁹⁴의 騎馬(타는 말)와 馱馬(짐말)를 점검·검열한다. 점검에 빠진 자·남의 말을 빌려서 점검을 받은 자·여 위고 허약한 말로 점검 받은 자를 論罪하고 빌려준 자도 아울러 論罪하며 그 말은 官에서 몰수한다. ○ 당직을 마치고 나오는 군사는 당번군사를 도와 순찰하는 경우 이외에는 3일 중 1일은 훈련원에 나아가서 陣法을 익히거나 麼兒⁵⁹⁵를 사용한다. 혹은 활쏘기(표적판 쏘기)를 한다. 破敵衛·彭排·隊卒은 달리기·힘쓰기·창자루쓰기(杖)·방패쓰기(楯⁵⁹⁶) 등을 익히도록 한다. 소관 部將은 훈련원의 堂下官과 함께 이를 점검하고 시험하여 특별근무일수 1일을 쳐주되 표적판(侯)에 화살을 맞힌 자는 화살 1개마다 근무일수 1일을 쳐주며 표적 가운데(正)를 맞힌 자에게는 근무일수 2일을 쳐준다. 점검과 시험에 빠진 사람은 태형 10대에 처한다.

594) 番上軍士는 조선시대의 軍士 가운데 長番인 양반 특수 兵種을 제외하고는 대개 番次에 의하여 교대로 근무하였는데 당번이 되어 서울에 올라온 군사를 번상군사라 하였다. 번상군사는 갑사 1,512명, 별시위 300명, 친군위 20명, 破敵衛 500명, 壯勇衛 600명, 彭排 1,000명, 隊卒 500명, 正兵 약 5,300명이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고 한다(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1983, p.163).

595) 麼兒는 圖上習陣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이것으로 形名과 進退를 익혔다(《중종실록》 권 73-24, 중종 27년 9월 을축). 《大典後續錄》 병전 교열에 의하면 수시로 명조·도총부·훈련원의 당상관들이 모여서 훈련원에서 “陣書”를 익힌 사람을 추천으로 10여명을 뽑아서 “마아形名”을 사용하여 結陣法을 강론하게 하였다.

596) 楯은 방패(防牌·旁牌) 또는 盾이라고도 하는데 방어용 무기이다. 板木을 원형(騎兵用) 또는 長方形(步兵用)으로 깎아서 겉으로 가죽을 덮어씌우고 그 가운데에 5색으로 그림을 그렸다. 왼손으로 방패를 잡아 자신을 보호하고 오른손으로 劒을 잡는다고 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33).

[續] 임금이 직접 臨席하여 武藝를 查閱할 때에는 宣
 傳官과 敎鍊官이 함께 참석한다. ○ 매월 세 차례
 三軍門에서는 郊外에서 陣法을 익히도록 한다. 訓練都
 監은 초9일과 19일, <29일은 근래에는 의례히 생략>. 禁衛營은 10일·20일·30일, 御營
 廳은 초1일·11일·21일에 하되 新舊番이 交代하는 달에는 어영청에서는 28일에
 먼저 시행한다. ○ 훈련도감과 금위영에서 군사훈련(習操)을 할 때에 番을 서고 나
 가는 宣傳官도 나아가서 참석한다. ○ 금위영에서 陣法을 익힐 때에 入直하는 禁軍
 의 1番은 불러내어 쓸 수 없다. ○ 新番軍과 舊番軍이 합동으로 군사훈련(合操)을
 할 경우 이외에는 極寒과 盛暑를 만날 것 같으면 임금에게 품의하여 임시로 훈련
 을 정지시킨다. ○ 신변군과 구변군이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할 때에 大將이 有故하
 면 都提調가 代行한다. [增] 비록 합동군사훈련이 아닐지라도 역시 代行하며 6월·7
 월과 11월·12월에는 덥고 추운 사유로 군사훈련하기 어려우면 이를 임금에게 품
 의해야 한다. ○ 남한산성의 三營 및 左右部는 각각 그
 관할구역(信地)에서 봄 가을에 윤번으로 훈련한 후
 합동하여 大훈련(大操)을 한다. 지방의 各邑·各鎭·堡의 城 있
 는 곳에서는 봄 가을로 城안에서 훈련한다. [增] 摠戎廳 소속 4營의 군사훈련은 매
 년 봄 가을 長湍·坡州 및 南陽·水原을 남북으로 나누어 각 2營씩 輪回하여 훈련
 시킨다. [補] 水原이 摠理營으로 승격된 후에는 3營이 輪回하여 훈련시킨다. ○
 兵馬節度使가 관내를 巡歷(巡視)할 때에 각 邑의 東
 伍軍⁵⁹⁷⁾과 歲抄軍⁵⁹⁸⁾을 함께 點檢 檢閱하고 활쏘기
 시험을 보이되 그 異常有無를 조사하여 임금에게 보
 고한다. 점검에 불참(闕點)하거나 대리로 점검(代點)을 받은 자가 100명 이상

597) 解說篇 22. 東伍軍 參照.

598) 歲抄軍은 군사의 도망이나 사망 등으로 생긴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매년 6월과 12월 등
 일정한 시기에 閑丁을 색출하여 代定한 군사를 말한다(주 644). 歲抄는 현종 12년에 이미 정
 지되고 있었다(《현종실록》 권19-37, 현종 12년 8월 병술).

이면 守令은 奪告身3等⁵⁹⁹)하고 50명 이상이면 削職⁶⁰⁰), 20명 이상이면 罷職, 10명 이상이면 엄중히 推考⁶⁰¹)한다. 兵馬節度使가 有故하면 營將이 대리로 巡視한다. 점검 검열과 활쏘기 시험 등의 일은 통상의 例대로 행하며 畿輔3鎮(서울에 가까운 廣州 楊州 南陽 등 3鎮管)에 있어서는 邊將의 賞木(賞으로 주는 布木)을 兵曹에서 내려준다. ○ 각 邑의 鄉吏·官奴·保人⁶⁰²)을 部隊編成(作隊)하여 매년 함께 점검 검열하고 재능을 시험하여 施賞한다. ○ 소속 邑의 軍兵을 사사로이 점검 검열한 자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하여 充軍한다. ○ 巡察使·兵使·營將이 군사훈련을 시킬 때에 色吏가 軍兵을 侵奪하는 경우에는 一律(사형에 해당하는 죄)을 적용하고 巡察使와 兵使는 罷職하며 해당 營將은 (의금부에) 잡아다가 문초한 후 죄를 준다. ○ 凶年으로 訓練을 停止할 때에는 각 邑의 軍兵을 官門에 모아서 輪番으로 돌려 가면서 鍊習시킨다. 3일로 한정하여 봄 가을 두 계절 초(兩朔)에 시행한다. ○ 號令砲⁶⁰³)의 火藥은 원래의 定數 이외로 지출한 것과 相計하여 남은 것을 계산한다(以元會付會減). ○ 官門에서 훈련할 때에 軍兵이 물품을 거두어 官에서의 부족분을 補充(官成貼)하면 守令은 徒年定配하고 물품을 각출한 군병에게는 엄중히 곤장을 친다. ○ 함경도(北道)의 守令이 五家軍의 點考⁶⁰⁴)를 하도록 엄중

599) 告身은 관료들에게 주는 임명장인데 奪告身은 그들에게 주었던 임명장을 빼앗았으므로 임명행위를 취소(관원자격 박탈)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3등을 3階級으로 보아서 奪告身 3등을 3계급 강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494 및 조선총독부, 《앞의 책》 pp.610-611), 等은 等級이란 의미 이외 기간이란 의미로도 많이 쓰였는데 奪告身의 3등을 세번에 걸친 都目政(人事時期)에서 받은 告身을 모두 빼앗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결과 官階가 세번 강등될 수도 있을 것이고 官階는 변동없이 관직(벼슬) 임용행위가 세번 취소되거나 관계 및 관직이 한 두 차례씩 각각 강등될 수도 있을 것이다.

600) 削職은 그 직을 물러나게 되는 점에서는 罷職과 같으나 파직은 그 직의 임명행위 그 자체는 취소되지 아니하나 삭직은 그 직의 임명행위가 취소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奪告身 1 등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삭직을 削奪官職 또는 削奪官爵이라고도 하는데 삭직을 당하면 官階나 官職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仕版에서 이름도 각아버림을 당한다.

601) 推考는 관료들의 허물을 推問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여러가지 從政圖를 보면 推考가 제일 가벼운 처벌이고 그 다음이 罷職 또 그 다음이 削職, 徒刑, 流刑, 死刑 등 순으로 되어 있었다.

602) 解說篇 24. 保人 參照.

603) 號令砲는 號令의 信號로서 발포하는 것이다.

604) 五家軍의 點考란 五家軍을 점검함을 말하는데 北道(함경도)에서는 5家마다 1丁씩 내게 되어 있으며 이들을 五家軍이라고 하였다.

히 申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금부에서) 잡아다가 조치한다. [增] 각 해당 邑과 鎭의 官門에 모아서 點檢한 후 즉시 이상유무를 병마절도사의 營(兵營)에 보고해야 하며 수어청과 총융청 兩營에서의 輪回 訓練과 巡察點檢이 모두 停止될 경우에는 역시 本邑에 모아서 點檢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增] 新舊番 軍兵의 點考와 활쏘기 試合 후 賞줄 때에는 都城 內外營의 入直軍兵에게 標信을 내줄 것을 請하여 거행한다. ○ 궁궐 내외의 宿衛 軍兵은 해당 軍營에서 陣法을 익히게 할 때에는 뽑아내어 쓸 수 없다. ○ 훈련도감군은 每哨에 각 3인씩을 뽑아서 火炮를 敎習시킨다.

【屬衛】⁶⁰⁵ [原] 임금이 軍士를 查閱하는 大閱 때에는 雜色軍과 各品の 官員을 수행하는 伴尙(品伴尙)은 모두 五衛에 配屬시킨다. ○ 水軍과 烽燧軍⁶⁰⁶은 통

605) 屬衛는 五衛에 配屬시킨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大閱時에 전국의 모든 군사를 동원하는데 이때 雜色軍과 伴尙까지도 징발하여 五衛의 陣容 속에 배치하나 水軍과 烽燧軍은 직무의 성격 상 통상적으로 징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606) 烽燧軍은 봉수대 근처에서 거처하면서 망을 보고 봉화불(밤)과 연기(낮)로 신호를 보내는 군병이다. 麗末鮮初 이래로 烽火軍·烽卒·烽軍·烽火干·看望軍·候望人이라 불리웠다(민현구의 4인, 앞의 책, pp.633-634). 세종 19년 이후에는 沿邊烟臺는 每所에 10여명이 每番 3명씩, 5일마다 교대하다가 10명이 上下 兩番으로 10일마다 교대하게 되었다. 內地 봉수군의 정원은 每所 6명이었고 역시 上下 兩番으로 每番 3명씩 10일 교대였다. 京烽燧는 세종 28년 이후 종전 15명이었던 것을 20명으로 늘려 매소 2명씩 入直시켜 상하양변으로 나누었다(同上). 《경국대전》 병전, 烽燧條에서는 서울 남산(목멱산)에 매소 군사 4인, 伍長 2인, 沿邊에 매소 군사 10인, 伍長 2인, 內地에 每所 軍士 6인, 伍長 2인을 둔다고 하였다. 《속대전》 병전, 봉수조에서 봉군 등은 他役에 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며 《대전통편》 같은條에서는 봉군 1인당 3명씩의 保人을 준다고 규정하였다. 그러한 법전상의 규정이 없던 조선전기에도 비록 그들이 身良役賤이기는 하나 그 役이 他役에 비하여 가벼웠으므로 많은 사람이 自願하였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도 受刑人의 아들로서 烽卒을 충원하였지만(高麗史 卷131-10, 列傳 44, 趙

상적으로 徵集하지 아니한다.

〔續〕 常民으로서 武科에 及第한 者의 子孫이 忠順衛에 配屬되는 것을 허용한다. 3父子 이외에는 配定될 수가 없다.

【名簿】⁶⁰⁷⁾ 〔原〕 軍士의 名簿는 각각 그 將帥가 매일 手決하고 捺印하여 保存(藏之)한다. 2件을 작성하여 每番의 근무가 끝날 때마다 兵曹에 나누어 保存한다. 交代가 없는 장기근무(長番)인 경우에는 매계절의 끝달에 그것을 保存한다. ○ 명부를 잃어버렸거나 보태고 뺀 경우에는 行首와 掌務⁶⁰⁸⁾를 죄로 다스리고 근무일수를 삭감한다.

〔續〕 訓練都監·禁衛營·御營廳 등 3軍門의 中軍은 將校와 軍兵 總數의 (관등·성명등을 기록한) 官案을 작성하여 매4계절 끝달에 임금에게 보고하여 付標하기를 청한다. 〔增〕 수어청과 충융청의 兩營 및 龍虎營에서도 같다. 〔補〕 수어청 出鎭에서도 같다. ○ 軍名簿의 脫漏·加減·移定(다른 役으로 옮겨 定함)·差錯(내용이 틀리고 잘못됨) 등의 경우에는 모두 輕重에 따라 죄를 따져 벌한다. 歲抄(6월과 12월 등의 결원보충시)에서 脫漏한 인원이 10인 이상이면 守令은 罷職하고 3인 이상이면 守令의 資級을 降等하며 2인 이하이면 守令을 杖80에 處하고,

日新, 流李君常二子希吉·希慶配烽卒) 조선시대에도 京外에서 徒刑을 범한 자는 모두 봉수군으로 差定하여 소정의 日數를 복무시켰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634).

607) 名簿는 番上軍士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것으로서 軍사의 이름·소속·신분·나이·父·주거·얼굴모습·配屬日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同上).

608) 行首는 同列 가운데 우두머리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당번군사 중 최선임자를 의미한다. 掌務는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당번군사 중 庶務를 맡도록 지정된 군사로서 行首를 도와 번상군사들의 명부를 보관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同上).

監官과 色吏에 대해서는 1인 이상 脫漏시켰으면 杖100 徒3년에 처한다. 草案에는 제대로 付錄(기록)되어 있으나 連梯에서 脫漏 되었거나⁶⁰⁹ 連梯에서는 付錄되어 있으나 草案에서 脫漏된 것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守令은 杖70에 처하고 監官과 色吏에게는 杖100에 처하며, 2인 이하인 경우에는 守令에게는 杖60, 監官과 色吏에게는 杖80에 처한다. ○ 나이를 더한 것이 20인 이상이고 나이를 줄인 것이 25인 이상이면 守令은 罷職하고 監官과 色吏에게는 杖100 徒3년에 처한다. 나이를 더한 것이 10인 이상이고 나이를 줄인 것이 15인 이상이면 守令은 資級을 降等하고 監官과 色吏는 杖80 徒2년에 처한다. 나이를 더한 것이 9인 이하이고 나이를 줄인 것이 14인 이하이면 守令은 杖80, 色吏는 杖100에 처한다. ○ (현역인) 軍士를 제멋대로 다른 役으로 옮겨 定한 것이 15인 이상이거나 閑散人이 된(作散) 軍士·保人·雜類등을 다른 役으로 옮겨 定한 것 및 漕軍과 水軍의 子孫을 陸軍 및 官屬으로 옮겨 定한 것이 20인 이상이면 守令은 罷職하고, 10인 이상이면 守令의 資級을 降等 하며, 9인 이하이면 守令을 杖80에 처한다. 監官과 色吏에게는 5인 이상이면 杖100 徒3년에 처한다. ○ 軍籍을 작성할 때가 아닌데도 제멋대로 役을 옮겨 定한(移定) 경우에는 守令은 移定人員이 3인 이상이면 罷職하고 2인이면 資級을 降等하며 1인이면 推考한다. 그러한 경우 監官과 色吏는 杖100 徒3년에 처한다. ○ 姓名과 住居名의 글자가 잘못된 것 및 두곳에 二重으로 기록한 것이 5인 이상이면 守令·監官·色吏는 杖80에 처하고 3인 이상이면 杖60, 2인 이하이면 笞50에 처한다.

【番上】⁶¹⁰ 原 일응 서울에서 番을 서려고(근무하려고) 하는 軍士에 대해서는 서울은 5部, 지방은 병마 절도사가 點檢·檢閱하여 兵曹로 공문을 보내면 兵曹와 都摠府에서 또 點考한다. 諸員·皂隸(下人)·羅將도 같다.

609) 草案이란 처음 군사를 뽑을 때 성명만을 쓰는 것을 말하며 連梯는 성명·父祖·曾祖의 이름과 경력 등을 각란에 적어서 사다리 모양처럼 만든 것을 뜻하는데 초안을 수정한 畢案이다 (조선총독부, <<校註大典會通>>, 《앞의 책》 p.612).

610) 番上이란 군사가 당번이 되어 番을 서기 위하여 상경함을 말한다. 세종대에 중앙군의 양적 확장과 番次數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문종대에 下番(번을 서고 내려가는) 중앙군이 모두 거주지에 錄籍되어 都節制使(절도사)가 관장하면서 번상의 체제가 갖추어졌다고 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35 및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pp.239~243).

지방의 軍士는 虞候와 軍官 중의 1인이 거느리고 와서 番上시키되 소정의 上番日數에 미달되는 자는 모두 날짜를 계산하여 추가로 番上하게 한다.

〔續〕 각도의 番上軍을 징집한다는 공문(關文)은 各軍門의 將校가 巡營⁶¹¹⁾(巡察使의 營)으로 전달하여 巡營 裨將으로 하여금 직접 兵營(兵馬節度使의 營)으로 전달하도록 한다. ○ 上番軍인 有廳軍⁶¹²⁾은 旅帥와 等牌⁶¹³⁾ 이외에 色吏⁶¹⁴⁾를 定하여 그들을 거느리도록(領付⁶¹⁵⁾)한다. 2명 이상이 탈이나면 色吏에게 刑杖을 치면서 조사(刑推)한다. ○ 番上할 차례가 된(當番) 軍人이 親喪中에 있을 경우에는 某年월일에 부모중 어느 쪽 喪

611) 巡營은 대개의 경우에는 監營과 일치한다. 즉 평상시에는 관찰사가 巡察使를 겸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관찰사(감사)의 별칭이 巡使道인 것이다. 그러나 戰時 기타 事變時에는 軍務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중앙의 고급관료로서 중1품(정1품은 都體察使) 이하 정2품까지의 관료이면 도순찰사라 하고 중2품일 때 순찰사라 한다.

612) 有廳軍은 영조 25년에 補充隊와 落講軍(落講者 즉 餘丁)으로 조직한 군대이며 병조 소속인 收布軍(매년 배 1필을 거둠)으로서 忠順衛·忠贊衛·忠壯衛에 배속되었다(오희복, 《앞의 책》 p.246). 보충대에 관해서는 주 469 참조. 落講人員에 대한 軍保降定(보병 또는 納布)문제는 인조 4년에도 거론된 바 있으며(《인조실록》 권13-44, 인조 4년 7월 계미 및 권14-2, 인조 4년 8월 계묘(주602)와 권14-50, 인조 4년 12월 을묘), 숙종 28년과 30년에도 落講校生에 대하여 士族인 경우에는 軍役に 책정하지 말고 1필 또는 2필의 罰布만 징수하도록 건의하고 있었다(《숙종실록》 권36-21, 숙종 28년 5월 계사 및 권40-59, 숙종 30년 12월 갑오).

613) 旅帥는 군사 125인을 거느리는 지휘관이고 等牌는 군사나 일꾼들 중에서 뽑힌 그 무리의 領率책임자이다. 旅帥는 1旅(25인이 1隊, 5隊가 1旅)의 長으로서(《문종실록》 권8-16, 문종 원년 6월 병술) 下級單位隊의 지휘관이지만 周代에는 500인을 거느리는 下大夫였다(《周禮注疏》 권28, 夏官, 司馬序).

614) 色吏는 담당 吏胥를 말한다. 원래 色吏는 監營이나 각 고을에서 돈이나 곡식의 출납·간수 등의 일을 맡아 보던 아전을 의미하였는데(《세종실록》 권56-31, 세종 14년 6월 임진) 그 후 軍籍이나 軍役(除役) 등을 담당하는 아전도 色吏라 하였다(《명종실록》 권17-19, 명종 9년 7월 을축 및 《선조실록》 권5-4, 선조 4년 5월 계미).

615) 領付는 領率下에 付屬시킨다는 뜻으로 有廳軍 중 上番軍은 旅帥·等牌·色吏 등의 통솔하에 둔다는 의미이다.

中에 있다는 것을 兒名(小名)으로 기록하여 임금에게 아뢰되⁶¹⁶⁾ 100일이 지난 후에는 起復⁶¹⁷⁾을 명하여 올려 보내어 番을 서도록 한다. 百日喪을 마친 후 番을 서는 기한의 남은 날짜가 단지 수십일간일 경우에는 지방 軍士의 上京을 면제(安徐)한다.

○ 각 軍營의 軍士는 番서는 차례(番次)가 정해진 대로 윤번으로 上京하며 保人 및 牙兵 등 上番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는 身役으로 米布를 거둔다. 어영청 및 금위영의 군사로서 上番하는 자를 正軍으로 삼고 각자에게 資保 1丁을 주어 番서로 갈 채비(무기·양식·의복·여비 등을 마련)를 하도록 하며 또 官保 2丁씩이 있어 각자 米 12두를 官(고을)에 납부하도록 하여 각 해당 軍營에서 거두어 저장하였다가 上番軍의 軍料로 제공한다. ○ 訓練都監軍의 軍糧미를 내는 餉保의 納米도 위와 같으며 砲手의 保人은 布2필을 바친다. 補 保人의 納米(保米)는 6斗를 減하되 그 6斗는 結作米로 바꾸어 내도록 하며 保布도 1필을 減한다. ○ 騎兵이 上番하기 전월 25일에 各道 觀察使는 派遣官(差員)을 정하여 當番인 騎兵과 步兵의 價布(保布)를 함께 거두어 들이도록 한다. 正軍이 戶首가 되고 戶首에게는 각각 保人을 두며 두 달을 1當番으로 하되 당번마다 兵曹에서 그 番上할 戶首를 정한다. 番上할 자는 각각 그 保布를 매丁당 각 2필을 거두어 番上의 경비로 삼게하며 그 上番하지 아니하는 者의 戶保로부터는 모두 布2필을 거두어 그것으로 兵曹에서 서울 시민(坊民)을 고용하여 대신 番들게 한다. ○ 당번이 限度에 미치지 못하고 未收布가 1同(50필)이 찬 경우에는 守衛이 아울러 營門에서 杖刑을 당하게 된

616) 兒名(小名)으로 기록하여 임금에게 啓聞하는 이유는 군사들 중에서는 同姓同名인 자가 많으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조선총독부, 《校註大典會通》, 《앞의 책》 pp.613~614).

617) 起復이란 父母喪中에 있는 관원이나 군사들에게 임금이 특별히 명령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예법에 따라 부모상중(26개월)에는 侍墓 기타로 服喪을 할 뿐 통상적인 근무는 하지 아니하나 국가유사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와서 근무하도록 임금이 명령한다.

다. 圜 1필을 減한다. 補 派遣官에 관한 것은 지금은 폐지되었다. ○ 當番 대신으로 番을 선 자의 경우에는 당번 본인과 대리로 번을 선 자 모두 1년 기한으로 먼 邊方으로 充軍한다. 兵曹의 관리가 만약 스스로 돈을 받고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番을 서도록 한 경우에는 인원수의 多少를 가리지 아니하고 杖100 徒3년에 처하며 當番인 자는 濟州島로 徒3년에 처하고 充軍한다. ○ 式年마다 각 邑에서 正軍으로 올라 砲手로 등록된 자(陞戶砲手)를 뽑아 올린다. 만약 불법으로 강제징발하거나 뽑힌 포수가 도망치는 등의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觀察使를 推考하고 守令을 罷職하며 監官과 色吏를 定配한다. ○ 軍丁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軍籍簿를 정리 작성한 후 (逢點分抄後) 10년내에 도망하여 잡히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각 해당 邑으로 하여금 대리인을 정하여 올려 보내도록 한다. 增 뽑아올릴 때에 이름이 뒤바뀌어 포수로서 보낸 사람의 몸(身手)이 등록된 자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道의 觀察使를 罷職하고 守令은 먼저 罷職한 후 (의금부에서) 잡아가도록 하며 監官과 色吏에게는 杖刑을 加한 후 流配한다. 補 正軍으로 올라서 등록된 자(陞戶)는 每邑에서 단지 1명만 남기고 그 나머지로 부터는 米布를 收納하여 砲手의 上番 經費에 充당(資裝)하도록 한다.

增 禁衛營과 御營廳 兩營의 上番軍에게는 保布를 減하여 旅需錢(군수용으로 비축한 금품)을 대신 준다. 元軍에게는 매1명당 1兩씩 주고 卜馬軍(짐말을 맡은 軍士)에게는 매1명당 2兩씩을 준다. ○ 有廳軍에 대해서는 番上을 停止하도록 하고 布 1필을 거둔다. 돈으로 대신 바치도록 한다.

【留防】⁶¹⁸⁾ 原 各道の 긴요한 곳에 있는 諸鎭에 留

618) 留防은 국방상 중요한 지점에 군사를 상주시켜서 방위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留防 지역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營鎭과 비슷하여 留防制度는 세종대에 완비된 것으로 보인다.

防兵⁶¹⁹)을 두고 不意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한다. 충청

도에는 主鎮에 3旅, 庇仁·藍浦·泰安 등 鎮에 각 2旅를 둔다. 경상도에는 主鎮에 4旅, 東萊·熊川 등 鎮에 각 3旅, 寧海·金海·泗川·延日 등 鎮에 각 2旅, 南海·巨濟 등 鎮에 각 1旅를 둔다. 전라도에는 主鎮에 3旅, 沃溝·茂長·扶安·順天 등 鎮에 각 2旅, 興陽·珍島 등 鎮에 각 1旅를 둔다. 황해도에는 康翎·長淵 등 鎮에 각 2旅, 黃州·遂安·豐川·瓮津 등 鎮에 각 1旅를 둔다. 강원도에는 江陵·三陟 등 鎮에 각 1旅를 둔다. ○ 兩界(함경도와 평안도)의 甲士와 正兵은 모두 本道에 남아서 防備(留防)하도록 한다. ○ 開城府의 正兵은 本府에 남아서 巡緝⁶²⁰(순찰)하도록 한다.

續 武科에 及第한 자(出身者)는 모두 西北 邊方 고

을에 가서 防禦임무를 수행(赴防⁶²¹)하도록 한다. 나이

가 60이 지난 자는 그러하지 않으며 父母 年歲가 80인 자에게는 특별히 西北 邊邑 赴防을 면제한다. ○ 기한내에 즉시 출발하지 않으면 곧 그 지역에 充軍한다. ○ 赴防을 면제받은 자는 쌀을 바쳐야(納米) 하며 양반자손은 赴防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남한산성내의 무과급제자는 赴防이 면제된다. ○ 廣州·江華·東萊의 무과급제자에게 만약 赴防 대신 納米가 허용된다면 그 쌀은 本鎮에 바치도록 한다. **增** 양반자손 이외에는 추천 有無를 막론하고 모두 赴防을 면제한다. **補** 赴防은 지금

다. 평안도와 영안(함경)도의 甲士·正兵은 각각 그 本邑에, 개성부의 정병은 개성부에 모두 留防하였으며 기타 각도의 요충지에는 1~4旅(125명~500명)의 留防正兵이 배치되었으며 이들은 4교대로 복무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35).

619) 留防兵은 正軍이지만 서울에 番上하지 않고(또한 변경지방에 赴防하지 않고) 거주지 근방 고을에서 留防을 하는 군사이다. 개성부와 각 도의 留防兵은 正兵 뿐이었으나 兩界의 경우에는 정병 이외에도 甲士가 있었다. 이들 정병을 留防正兵이라 하였으며 營鎮軍의 後身인 이들은 番上정보보다는 못하였지만 각기 1保씩 지급받은 良人군사였다(同上).

620) 巡緝은 야간에 군사들이 隊伍를 지어서 威儀를 갖추고 號令을 하면서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同上). 태종 원년과 2년 예기치않은 변란이 暮夜에 잤다고 하여 巡緝을 엄히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대종실록》 권1-30, 태종 원년 5월 무신 및 권3-36, 태종 2년 6월 경오). 문종대에는 銃筒衛도 巡緝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문종실록》 권9-32, 문종 원년 9월 병오)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대전통편》·《대전회통》의 병전, 行巡條에 순찰(巡緝)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621) 解説篇 23. 赴防 參照.

폐지되었다. ○ 함경도의 土兵(토착군병)에게는 貢賦이
 의 雜役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國境을 지키는
 일(防戍)만 맡긴다. 함경북도의 節度使營 소속 軍兵 600인 내에서 鎮撫
 는 每1番에 30인을 定員으로 하고 함경남도의 節度使營 소속 軍兵 400인 내에서
 鎮撫는 每1番에 20인을 定員으로 하며, 定員數 외로 더 소속시킬 수 없다. 邊將
 이 軍兵이나 민간을 침탈 착취하여 도망쳐서 흩어지
 게 한 경우에는 觀察使가 임금에게 아뢰어 弼正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처리하게 한다. ○ 防戍하러 들어
 간 軍士가 방위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闕防)
 대리자로 하여금 防戍하도록 한 경우에는 죄를 따져
 벌을 주고(論罪) 交代없이 계속 防戍(連防)하도록
 한다. 1년내에 30일간 闕防하거나 40일간 대리인으로 하여금 防戍하게 한 자는
 1년간 充軍하고, 60일간 闕防하거나 70일간 대리 防戍하도록 한 자는 2년간 充軍
 하며, 90일간 闕防하거나 100일간 대리 防戍하도록 한 자는 3년간 充軍한다. 그리
 한 불법행위자를 검거하지 아니한 官吏는 2차까지는 엄중히 論罪하고, 3차이면 守
 令은 罷職하여 내쫓고 色吏는 杖100 流3000리에 처하며, 正兵이 旅內에서 대리자
 로 교체(代替)한 후 이를 旅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論罪한 후 1년간 連
 防하게 하며 代替한 자 및 대리 防戍자는 3년간 連防하도록 한다. ○ 統制使
 營 및 水使營과 (소속) 각 鎮의 水軍은 番을 나누어
 入防한다.

增 關東 산마루의 좁은 교통 요충지(嶺隘)에는 防
 守 機構를 더 두도록 하였다. 淮陽府使가 防守使를 겸하고 伊川

·平康·通川·高城·歙谷 등 5邑의 守令을 防守將으로 삼아 防守使로 하여금 통솔 하게 하되 급한 變亂의 警報(警急)가 있을 때에는 東伍軍의 馬兵과 步兵을 거느리고 지정된 구역(信地)에서 防守하도록 하되 평시에는 그들이 鐵原防禦使營에 소속 하여 매년 각각 그 지정된 구역(信地)에서 鍊習하도록 한다. ○ 義州의 馬軍과 步軍은 비록 병마절도사의 兵營에 소속되었을 지라도 變亂의 警報가 있을 때에는 그들을 병영의 통솔 하에 넘겨 줄 수가 없으며(勿爲領付) 전원을 남겨 두고 그들을 모아서 협력하여 義州府를 지키도록 한다.

【給保】 原 서울과 지방의 軍士에게 保人(奉足)을 주되 差等이 있다. 2丁을 1保로 하여 甲士에게는 2保를 주며 交代없이 계속 근무하는 長番인 宦官에게도 이와 같이 준다. ○ 兩界(평안도와 함경도)의 甲士⁶²²에게는 1丁을 더 준다. 騎兵인 正兵(騎正兵⁶²³)·吹螺赤·大平簫·水軍에게는 모두 1保1丁씩을 주며 出番과 入番 등으로 交代 근무하는 宦官과 騎兵인 雜色

622) 兩界甲士는 北界(후에 西界)·東界 즉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을 수비하는 留防甲士를 말하며 감사의 총인원 14,800명 중 6,800명이 양계감사이다. 그 중 당번인원은 1,360명(5番)이고 그 체아직은 400窠였다. 이는 京 감사 1,600窠보다 적으나 兩界甲士는 京甲士에 비하여 給保에 있어서 1丁을 더 주었다. 또한 경감사가 번상군인데 비해 양계감사는 留防軍이며 仕滿 144일이면 加階하고 去官 후에도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면 180일까지 근무 후 加階하여 정3품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차문섭, 《앞의 책》 p.47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p.640-641).

623) 騎正兵은 정병 중 기병을 말하는데 정병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정규병력으로서 국초의 侍衛牌가 세조 5년에 개칭된 병종이다. 正兵은 騎正兵과 步正兵으로 나누고 또 중앙의 五衛(忠武衛)에 교대로 근무하는 番上正兵과 각 지방 요새지에 赴防하는 留防正兵으로 나눈다. 처우상으로는 기정병이 가장 우대되었는데 1保1丁의 奉足을 받았고 근무일수 64일마다 1階씩 加階하여 종5품에 이르면 去官하여 影職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정병은 兵器와 軍장비 뿐만 아니라 말까지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였고 번상근무가 규정대로 잘 되지 않았다(주 62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41).

軍(騎雜色軍⁶²⁴)·서울에 머물고 있는 濟州子弟에게도 이와 같이 준다. 步兵인 正兵(步正兵⁶²⁵)·壯勇衛⁶²⁶·破敵衛⁶²⁷·隊卒·彭排·破陣軍·漕卒·烽燧軍·差備軍에게는 모두 1保씩을 주며, 漁夫⁶²⁸·步兵인 雜色軍⁶²⁹·濟州的 騎兵인 正兵과 步兵인 正兵·水軍에게도 이와 같이 준다. 奴子로서 保人을 받게 될 자에게는 반을 줄여서 준다.⁶³⁰ 保人으로서 取才試驗에 합격한 자에게는 軍士가 되는 것을 허락한다. ○ 軍士 및 漕卒과 同居하는 아들·사위·동생은 비록 군사 保數를 초과하더라도 2丁까지는 다른 役으로 充定하지 아니한다. 水軍으로서 만약 3인이 동거하는 경우에는 1인은 保人數에 넣지 아니하고 1丁을 별도로 준다. ○ 保人에게 雜物을 지나치게 마구 거둔 자 및 <1인에게서 매월 綿布 1필을 초과할 수 없다.> 違法으로 保人을 부러먹은 자는 가까운 이웃과 함께 軍令으로 論罪하고 軍士 본인은 降等시켜 保人을 삼는다. ○ 司譯院·典醫監·觀象監의 官員과 生徒·惠民署의 官員·算員·律員 및 그 生徒·道流와 그 生徒·弓人·矢人·畫員과 그 生徒·諸員·馬醫·皂隸·羅將·醫生·律生·書員·日守·牧子⁶³¹·津夫⁶³²·水夫⁶³³·進獻席匠⁶³⁴ 등에게

624) 騎雜色軍은 잡색군(주 590) 가운데 기병을 말한다. 잡색군은 自願에 따라 騎잡색군과 步잡색군으로 나누어진다.

625) 步正兵은 정병 중 보병을 말한다. 보정병은 중앙의 忠武衛에 교대근무하는 番上步正兵과 각 지방 요새지에 赴防하는 留防正兵으로 나눈다. 보정병은 1保(2丁)의 奉足을 받았고 번상의 경우에는 근무일수 64일마다 1階씩 加階하여 종5품에 이르면 去官하여 影職을 받는다(주 62).

626) 주 19 주 63 주 130 (壯勇衛).

627) 주 60(破敵衛)

628) 漁夫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는 자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內需司나 司饗院에 소속되어 궁 중용 생선을 잡아 바치는 지정된 어부를 지칭한다. 그들은 다른 役이 면제되었고 1인의 保人을 받도록 하였다. 그 수는 200명이며 3番으로 나누어 교대로 바쳤다. 이들은 초기에는 100명으로 그 身分은 良人 또는 公私賤이었으며 海尺·生鮮干 등으로 불리웠으나(《세종실록》 권 92-17, 세종 23년 3월 정미 및 《단종실록》 권 9-11, 단종 원년 11월 계해) 세조 이후 干·尺의 호칭의 소멸 경향과 함께 어부로 통칭되었다(劉承源, <조선초기 身良役賤 階層---稱干稱尺者를 중심으로--->, 《朝鮮初期身分制研究》, 1987, 을유문화사, p.244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42).

629) 步雜色軍은 잡색군(주 590) 가운데 보병으로서 잡색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잡색군은 군역을 지지않는 인원으로 편성한 보병 예비군 조직이었다.

630) 奴子가 丁으로 파악될 경우(准丁) 그 수의 반만을 給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保法이 처음 시행되던 세조 10년에는 토지 5結을 1丁으로 간주하고 奴子도 丁으로 파악되었으나(《세조실록》 권34-7·8, 세조 12년 정월 임술) 그러나 《경국대전》에서는 土地准丁은 폐지되고 奴의 경우도 准丁한 수의 반만을 保로 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42).

631) 牧子는 조선시대 각 지방의 목장에서 牛馬의 번식과 관리를 맡아 보던 자이다. 조선초기의 목자는 監牧官(6품 이상)에게 직속되었으며, 세종 7년 11월 암말 100필을 1群으로 하고 거기에 群頭 1인, 群副 2인, 牧子 4인을 두어 목자 1인이 말 25필을 담당하여 기르도록 하였다

는 동거 친족 중 1인을, 書吏·樂生·良人樂工·水夫⁶³⁵⁾ 등에게는 2인을, 院主⁶³⁶⁾에게는 3인을 다른 身役に 充定하지 아니한다. ○ 書吏·樂生·司僕諸員⁶³⁷⁾·水夫

(《세종실록》 권30-17, 세종 7년 11월 경신). 《경국대전》에서는 1群에 숫말 15필을 추가하였고 그 이외는 세종 7년의 조치 그대로를 성문화하였다. 목자는 身良役賤의 신분을 세습하면서 牧子位田 2結을 지급받고 復戶도 되었지만 그 役(부담)이 과중하여 流離逃散을 면치 못하였다 (남도영, 〈朝鮮牧子考〉, 《東國史學》8, 1965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p.642-643).

632) 津夫는 조선시대 官設 나루(渡津)에 소속된 사공으로서 津尺이라고도 하였다. 나루의 규모에 따라 大渡에는 10結50負, 中渡에는 7結, 小渡에는 3結50負를 지급하였다. 津役은 水役과 같은 苦役이었으므로 기피하였으며 주로 강변 거주인이나 군사·奉足으로 충원되었다(《중종실록》 권7-16, 중종 3년 11월 임인). 水夫田·水夫田 등은 《대전회통》에서 폐지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津夫田은 존속되었다.

633) 水夫는 水庫에서 얼음을 떠서 보관하는 役을 맡은 人夫이다. 東水庫에 10인, 西水庫에 40인이 분속되어 있다. 그러나 伐水과 藏氷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빙고 부근에 거주하는 백성과 正兵을 동원하였다(《성종실록》 권34-2, 성종 4년 9월 계사). 水役은 고역이었으므로 水夫에게는 요역을 면제하는 한편 1結의 토지를 지급하고 戶내의 一丁에 대하여 他役に 充定시키지 않게 하였지만 과중한 부담 때문에 타역으로 投屬하거나 流亡하는 자가 적지 아니하였다(《중종실록》 권65-17, 중종 24년 4월 을축).

634) 進獻席匠은 중국황제에게 바칠 돛자리를 만드는 匠人이다. 進獻席에는 滿花方席·彩花方席·滿花席·黃花席·雜彩花席 등이 있으며, 또 進獻·龍文席은 경상도 안동부에서 織造하였는데 席子 1張에 莞草 16把(64양)가 소용되었다. 위 進獻席子는 대개 경상도의 공물이었다(민현구, 《앞의 책》 pp.643-644 및 《세종실록》 권25-26, 세종 6년 9월 신묘, 권89-21, 세종 22년 5월 병인, 同地理志와 《세조실록》 권11-3, 세조 4년 정월 병자).

635) 水夫는 한강연변에서 水運을 보조하던 자로서 水站에서 雜役을 맡았던 人夫이다. 태조 4년에 서울 용산에서 충주에 이르는 漢江水路에 7개소의 水路轉運所 完護別監을 설치하였으며 每所에 30戶가 예속되었다(《태조실록》 권7-1, 태조 4년 정월 병오). 태종 14년에는 이를 水站轉運使로 개칭하고 副使와 判官도 두어서 使를 보좌하게 하였다(《태종실록》 권28-42, 태종 14년 12월 임신). 수참에는 水夫와 轉運奴子(30戶)가 있었으며 水夫의 役은 良役으로서 원래 水站干이라고 하던 것을 賤人과 구별하기 위하여 水夫라 고쳤지만(《태종실록》 권28-40, 태종 14년 11월 병진) 세종대에는 諸司奴婢를 水夫로 충원한 예도 있다고 한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644). 성종 9년 2월에는 水夫에게 同居親族 1인을 타역에 定屬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의 助丁 1인(동거인 또는 비동거인)을 더 주도록 하였다(《성종실록》 권89-23, 성종 9년 2월 신유).

636) 院主는 조선시대 公務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었던 院의 관리를 맡은 자이다. 조선초기에 院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폐지되거나 퇴락한 경우가 많았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44). 그리하여 세종 10년 윤4월에는 僧人을 院主로 하여 잡역을 면제하는 등으로 院宇補修策이 강구되었으며(《세종실록》 권40-14, 세종 10년 윤4월 무술) 同王 27년 7월에는 院位田을 새로 책정하여 大路院에는 1結50卜, 中路院에는 1結, 小路院에는 50卜으로 하였다. 院位田으로는 院근방에 있는 田地를 折給하였다(《세종실록》 권109-5, 세종 27년 7월 을유).

637) 司僕諸員은 諸員 중에서 司僕寺에 소속되었던 자들을 말하며 그 신분은 京衙前에 속한다. 司僕諸員은 京外에서 馬匹을 調習시키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모두 600명이 3교대로 복무하였

에게 동거인이 없으면 戶別로(다른 戶에서) 1인을 지정하여 保人으로 한다.

續 諸色人에게 保人을 주되 差等이 있다. 別騎兵⁶³⁸)과 烽

臺마다 25戶인 烽燧軍에게는 모두 1保1丁을 주며 2丁을 1保로 한다. ○ 交代없는 長番인 宦官에게는 4保, 出番과 入番 등으로 交代하는 宦官에게는 3保, 어린 宦官에게는 1保를 준다. ○ 內弓房의 弓人和 矢人·繕工監의 木匠·掌樂院의 樂生에게는 모두 1保를 준다. ○ 서울의 驛卒에게는 3保를 주고 또 동거 친족으로 助役 2명을 지정하여 준다. 지방의 驛卒에게는 1保 1丁(3丁)을 준다. ○ 管領에게는 원래 保人이 있는 경우에는 1保를 증진대로 주고 保人이 없는 경우에는 率丁 1인을 다른 역(신역 및 요역)에 充定하지 아니하며 率丁조차 없는 경우에는 다른 戶의 사람으로 1인을 준다. ○ 중국어·몽고어·일본어·여진어의 學生(生徒)·忠贊衛·忠順衛·忠義衛·族親衛·各陵의 守護軍 등은 동거 친족 중 2인을, 각 관청의 苦役인 匠人에게는 동거 친족 중 1인을 다른 역(신역 및 요역)에 充定하지 아니한다.

○ 正軍인 戶首가 죽거나 비었을 경우의 保人은 保人이 없는 戶首에게 옮겨 준다.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守丞을 論罪하여 罷職한다.

【成籍】⁶³⁹⁾ **原** 서울과 지방의 軍丁⁶⁴⁰⁾에 관해서는

으며 1部는 差役을 받았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44).

638) 別騎兵은 영조 14년 서울로 上番하여 거주하는 京騎兵制를 폐지하고 그 在鄉保人 1,500인을 선발하여 만든 병종으로서 그들로부터 價布를 징수하였다(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p.501~502)고 한다. 정조 14년 8월 양산군수의 상소에 의하면 대대로 양민이었던 자가 약간의 재산이라도 모으면 향교나 書院·鄉廳 등에 投身하는데 한번 軍役에서 벗어나면 비록 選武軍官이나 별기병들도 백방으로 군역을 모면하려 한다는 것이다(《정조실록》 권31-2, 정조 14년 8월 정사).

639) 成籍은 軍籍을 작성함을 말한다. 군적은 6년에 한번씩 작성하는데 군적에는 해당자의 성명·연령·병종이 명기되었고 正軍·奉足의 구분도 있었다. 戶籍작성과 별도로 군적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세조 때에도 논의된 바 있었지만 중종 4년 8·9월 병조에서는 호적에는 脫漏者가 많아서 소용없으므로 군적작성을 별도로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헌부의 관료들은 부실한 호적을 먼저 고쳐 작성한 후에 호적을 토대로 군적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이종일, 《조선전기의 戶口·家族·財産相續制研究》, 《國史館論叢》14집, 1990, pp.11~13).

640) 軍丁은 군역을 지는 성인 남자로서 丁男이라고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시대에 따라 달랐으나 대체로 20~56세 혹은 16~60세 사이의 남자가 여기에 해당되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6년마다 軍籍을 작성(成籍)하여 서울에서는 5部에서, 지방에서는 각각 그 節度使가, 제주도의 3邑에서는 節制使가 軍籍을 작성한다. 兵曹에 보내어 그것을 保存하도록 하고 監營(觀察使道⁶⁴¹)·主鎮·巨鎮·諸鎮에서도 1件씩 보존한다. 兵曹에서는 그 총수를 임금에게 보고한다. ○ 3년마다 각 목장⁶⁴²의 牧子에 관해서는 兵馬節度使가, 여러 고을의 鄉吏와 각 역의 驛吏에 관해서는 觀察使가 帳籍을 작성하여 모두 각각 保存한다. 靑坡와 蘆原의 兩驛吏에 관해서는 兵曹에서 帳籍을 작성한다.⁶⁴³

續 軍士에게 탈(事故나 病)이 있으면 歲抄⁶⁴⁴ 때에

책》p.645 및 《文獻通考》戶口考). 조선국초에는 16~60세 사이의 양인 남자를 군정으로 하여 그 중 品官馬兵에게는 1인당 奉足 4명을, 官職이 없는 馬兵 1명에게는 奉足 3명을, 步兵 1명에게는 奉足 2명을 책정하여 戶主名下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內外族親이 없는 單丁일 경우에는 일반 單丁을 奉족으로 준다. 또 奴子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자에게는 各別로 奉족을 주지 아니한다(《태조실록》권11-3, 태조 6년 2월 갑오). 조선 중엽 이후에는 軍丁의 연령이 15세 이상 60세 이하로 되었지만 실제상 젖먹이 어린애나 70 노인까지도 兵籍에 편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다(《增補文獻備考》권121-3, 兵考13, 摠論軍制). 이는 바로 軍役의 身布化에 따른 부작용이다.

641) 觀察使道는 관찰사가 있는 道廳 즉 監營을 의미한다. 관찰사는 고려시대의 按察使 또는 按廉使(6개월 임기)의 後身이나 직급도 종2품으로 높였고 임기도 1년으로 하였으며 그 직무도 監察業務 이외에 행정·사법·군사 업무까지 통할하여 관내 각 고을을 감독하는 상급지방행정 관인 동시에 도내 최고 군사지휘관 겸 최고 사법관이었던 것이다. 관찰사를 보좌하는 관원으로서 都事(사법), 判官(행정) 등이 있으며, 기타 토착 향리가 실무자로서 감영의 일을 돕고 있었다.

642) 牧場은 말·소·닭·개·양·돼지 등을 기르던 곳이다. 國營牧場인 경우에는 각도 관찰사의 책임하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찰사 밑에는 수령이 겸직하는 監牧官이 있어서 각 목장의 현장 종사자인 群頭·群副·牧子 등을 지휘 감독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목장은 병조의 속아문인 司僕寺에서 총괄하였다(남도영, 〈조선시대의 제주목장〉, 《한국사연구》4, 1969 및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45).

643) 靑坡역은 남대문 밖 3리에 있었으며 蘆原역은 동대문 밖 4리에 있었는데 모두 병조의 직속역으로 중요시되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권3-34, 漢城府, 驛院).

644) 歲抄는 효종 때 유계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도망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군사들의 결원을 채우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정원을 大·中·小邑별로 책정하여 6월 12월 등 소정

다른 사람을 대신 정하여 軍籍을 만들어 1년간 充定한 數를 모두 합하여 考還⁶⁴⁵⁾하되 節度使가 이를 심사(磨勘)한 후 임금에게 보고한다. 軍兵의 保人(軍保)의 자손이 校生이나 院生⁶⁴⁶⁾ 및 將校(武廳⁶⁴⁷⁾)로 섞여 들어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골라내어 軍保로 充定한다. ○ 贖良된 사람이 補充隊에서의 복무를 마치기 전에 良役으로 入屬하여 布木 2필을 바친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1필을 바친 경우에는 餘丁⁶⁴⁸⁾으로 입속시킨다. ○ 東伍軍으로는 公私賤을 막론하고 充定한다. ○ 다른 고을에서 移徙하여 온 자로서 公文이 없는 자는 有役 無役을 막론하고 良人은 상당한

의 시기에 關丁을 강제로 색출하게 한 것을 말한다(주 598). 그러나 거기에 따른 비리와 부작용이 매우 컸다(정만조, <조선후기 中人연구>, 1980, 연구결과보고서, pp.150-151).

645) 考還이란 歲抄 때 군사에 關員이 있으면 타인을 대신 充定하여 1년간의 수를 맞추되 6년마다 軍籍을 작성할 때에 그 實數를 考査하여 關數를 除하고 代定한 인원은 환원시킨다는 뜻이다(조선총독부, <<校註大典會通>>, 《앞의 책》 pp.618-619).

646) 校生은 鄉校의 생도이며 院生은 書院의 생도이나 조선후기, 그 신분이 떨어져서 향교나 서원의 심부름꾼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러서 避役良民의 대명사처럼 되었다(《승정원일기》 591, 영조 원년 4월 17일). 그러나 17세기경까지도 교생 중 東齋生은 士族인 儒生들이었고 西齋生은 庶類였다(尹熙勉,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1990.3, pp.8-9 및 류형원, <반계수록>권9, 敎選之制). 물론 18세기 이후에도 양반 유생들이 향교에 계속 출입하였고 靑衿錄 등 儒生案을 만들었으나 더이상 교생이라 호칭하지 아니하며 庶類 내지 평민인 교생과의 차별성을 나타내었다(윤희면, <위의 책> p.10 및 류수원, <우서> 권2, 論學校補選之制 및 論揀門閥之弊). 여하간 18세기에는 약간의 먹물거리라도 있는 평민이면 교생·원생 등으로 투입하여 良丁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승정원일기》 1070책, 영조 27년 6월 4일 및 <비변사등록> 170책, 정조 11년 5월 3일, 同 5월 8일, <정조실록> 권49-48, 정조 22년 10월 계묘). 18세기 초인 숙종 30년 12월 落講校生들에게 徵布함은 물론 서원이나 祠宇에 소속된 下齋生(院生)에게도 考講을 하여 교생과 같이 落講者에게 收布하자는 試圖가 있었고(《숙종실록》 권40-59, 숙종 30년 12월 갑오) 그 후에도 여러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잘 시행될 수 없었다(윤희면, <앞의 책> pp.137-151). 요컨대 조선전기에는 양반들이 향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으나 16세기 이후 양반자제들은 거의 서당이나 서원에 입학하여 修學하므로써 조선후기의 교생은 평민 내지 庶類인 西齋生만을 의미하고(전경목, <조선후기 교생의 신분에 관한 재검토>, 송준호 교수 정년기념논총, 1987, pp.213-252) 원생 또한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이 아니라 하인을 의미하게 되었다.

647) 武廳은 將廳이라고 하는데 각 고을의 將校가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648) 餘丁은 3丁을 1保로 할 경우에 옮겨다니면서 일을 보는 1丁으로서 戶首의 保人을 의미한다. 즉 세조 12년 11월 대사헌 양성지의 상소에 의하면 1인은 戶主로서 治兵하고 1인은 率丁으로서 治農하며 1인은 餘丁으로 轉移執事하여야 하는데 2丁을 1保로 한다면 餘丁이 없어서 戶가 부실해진다고 하였다(《세조실록》 권40-11, 세조 12년 11월 경오).

역에 充定하고 私賤은 束伍軍으로 충당한다. ○ 館軍⁶⁴⁹이 낳은 자손은 각 察訪이 式年마다 軍籍에 넣어서(成籍하여) 兵曹와 本道로 나누어 보낸다. ○ 各 鎮軍 및 募軍에 관해서는 각 邊將이 歲抄 때마다 成籍하여 巡營과 兵營으로 보낸다. 觀察使와 節度使는 募案⁶⁵⁰을 取하여 살펴보고 만약 募軍 중에서 (퇴역할) 나이가 찼으나 鎮軍의 빈자리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다른 良民을 (鎮軍으로) 대신 充定한 경우에는 임금에게 보고하여 각 事案別로 論罪한다. 良民이 鎮軍으로 몰래 (不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모두 골라내어 良役に 充定한다.

增 幼兒(黃口)와 5세 이하에 한한다. 幼少年(兒弱)을 14세 이하에 한한다. 軍役に 充定한 守令은 事案의 輕重에 따라 論罪한다. 黃口 10명 이상을 軍役に 넣은 守令은 5년간 자격정지(禁錮)시키고 監考⁶⁵¹와 色吏에게는 刑杖으로 때린 후 流配(刑配)한다. 黃口 20명 이상을 軍役に 넣은 守令은 10년간 자격정지(禁錮)시키며, 監考와 色吏에게는 엄중히 刑杖으로 때린 후에 섬으로 유배한다. 兒弱을 10명 이상 軍籍에 充定한 守令에 대해서는 制書有違律로 처벌하고 監考와 色吏는 杖80 徒2년에 처한다. 兒弱 20명 이상을 軍役に 充定한 守令은 徒配에 처하고 監考와 色吏는 刑杖으로 때린 후 유배한다.

649) 館軍은 院이나 館에 소속된 軍卒이다. 院은 각 지방의 대로변에 30리마다 두었고 館은 50리마다 두어서 공무로 여행하는 관원들이 留宿하도록 하였다(조선총독부, 《校註 大典會通》, 《앞의 책》 p.619).

650) 募案은 군인을 소집 또는 모집하는 기록을 말한다. 歲抄時의 代定문제에 관해서는 <<현종실록>> 권19-37, 현종 12년 8월 병술 참조.

651) 監考는 각 관청이나 궁방에서 돈이나 곡식 그 밖의 물건을 보관·관리하며 여러가지 잡다한 일거리에 종사하던 사람을 말한다(오희복, <봉건관료기구 및 벼슬이름 편람>, 여강출판사, 1992, 북한판, 1989, p.8). 조선국초부터 飢民구제 등 수령을 보좌하는 일을 맡기기 위하여 관내 閑良品官 중 자상하고 청렴한 자를 골라서 監考로 임명하였다(《태조실록》 권8-3, 태조 4년 7월 신유). 감고와 비슷한 일을 하는 監官은 역시 관청이나 궁방에서 돈이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捧上監官) 내주는 일을 맡거나 운송을 맡은(領船監官) 벼슬로서 사대부 중에서 선발하며 이를 기피하면 圖避差役로 처벌된다(이홍직, 《앞의 책》 p.18). 본문의 監色을 정책각의3인, 《앞의 책》 p.503에서는 監官과 色吏로 보았으나 監考와 色吏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歲抄(결원보충) 때에 限度(소정 인원수)에 미달되면 (不_及限) 守令은 推考하여 資級을 낮추고 鄉所(鄉廳의 座首와 別監)는 徒1년에 처하며 色吏는 徒2년에 定配(配所를 정하여 보냄)한다. ○ 수어청과 총융청 兩營의 軍兵은 (결원이 있을 때에는) 각각 그 고을에서 결원수만큼 다른 사람으로 대신 充定하도록 한다. 결원이 있음에도 덜어 둔 경우에는 旗擡과 隊長을 엄하게 刑杖으로 때린 후 定配(配所를 정하여 유배)하고 守令에 대해서는 결원의 多少에 따라 임금에게 사실을 보고(草記)하여 論罪한다.

【軍士還屬】原 죄를 범한 軍士라도 盜賊 및 綱常⁶⁵²에 관계되는 범죄가 아니면 근무일수를 삭감하여 원래의 軍役으로 還屬시킨다.

續 軍士 및 保人이 軍役을 싫어하고 꺼리어 他戶로 逃避한 경우에는 본래의 役으로 환속시킨다. 他戶로 도피하여 들어온 자를 허용하여 받아들인 자는 杖100 徒3년에 처하고 事情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가까운 이웃이나 管領 및 里正은 制書有違律로 論罪한다. ○ 나이를 속여서 老年(60세)이 되었다고 하여 軍役을 면제받은 자는 복무연한을 연기하여 원래의 軍役으로 환속시킨다. 원래의 軍役으로 還定되는 것을 싫어하여 대리근무자를 보낸 경우에는 당자와 대리자 모두에게 杖100 徒3년에 처한다. ○ 이미 軍役에 入屬된 자가 有廳軍으로 올라가서 소속될 때에

652) 綱常은 三綱五常을 의미하며 인간의 윤리·도덕의 기본으로서 이를 범하면 유교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중죄로 인식하였다. 삼강은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을 뜻하며,五常은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孟子) 또는 父義, 母義, 兄友, 弟恭, 子孝(書經) 혹은 仁義禮智信을 뜻하기도 한다.

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軍役을 대신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종전의 軍역에 속하게 한다. 거짓으로 原從功臣의 자손이라고 사칭하는 자에 대하여 軍役을 査定한 후에 忠勳府에서 만약 다시 忠義衛에 소속시켜서 侵奪하는 경우가 있다면 査定된 軍役대로 시행하지 못한 해당 官吏에 대해서는 엄중히 곤장으로 다스린다.

增 忠義衛로 거짓 등록한 자는 刑杖을 친 후에 定配한다.

【復戶】⁶⁵³⁾ **原** 內禁衛와 別侍衛로서 率丁⁶⁵⁴⁾ 10명이상이거나 田地가 10結 이하인 자와 각종(諸色) 軍士로서 率丁이 5명 이하이거나 田地가 5結 이하인 자에게는 모두 復戶(戶役을 면제) 한다. 무릇 復戶는 단지 원거주 戶에만 戶役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 內弓人과 內矢人·司僕寺의 諸員·守陵軍⁶⁵⁵⁾·守墓軍⁶⁵⁶⁾·驛吏·驛日守·助役⁶⁵⁷⁾·宦官·津夫·水夫·氷夫·

653) 復戶는 나라에서 戶단위로 부과하는 요역을 면제하는 것으로(《經國大典註解》前集, 兵典) 대상자에 따라 왕족·獎勸·賑恤·特殊人·軍戶·定役의 6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상으로 永年復戶와 限年復戶로 나눌 수 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46 및 有井智德, 《李朝における復戶制の研究》, 《史潮》80·81, 1962).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復戶는 大同米·布·錢의 면제를 의미하게 되었다. 광해군 원년 3월 사간원에서 啓하기를 요역이 매우 고르지 못한 까닭은 復戶에 있다는 것과 약간이라도 세력이 있는 자는 모두 복호에 들어서 복호자가 한 고을의 거의 반이라는 것, 그리하여 殘弱한 最下戶만이 많은 賦役을 獨부담한다는 것이다. 본래 복호란 戶役을 면제하는 것임에도 중인·잡직·아전과 匠人·樂工·畫員·道流·理馬·醫女·女妓 등이 모두 복호되어 田結之役까지 면제받고 있다고 하였다(《광해군일기》 권14, 광해 원년 3월 신묘).

654) 率丁은 한 家戶에 속해있는 人丁(率居人)을 말하며 保率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46). 특히 內禁衛와 別侍衛 등 給保대상이 아닌 자에게는 率丁 10명 이하이거나 田地 10결 이하인 경우에 요역을 면제해 주었다(《경국대전주해》前集, 병전).

655) 守陵軍은 陵을 지키는 役을 진 잡류로서 그 인원수에 관해서는 《경국대전》 병전, 雜類註에

漁夫도 이와 같다. 上下番者(교대로 번을 서는 자)에게는 上番 때마다 復戶한다.

○ 大小人⁶⁵⁸으로서 나이가 80살 이상이고 率丁이 10명 이하이거나 田地가 10結 이하인 자에게는 復戶한다. 平民⁶⁵⁹과 公私賤이면 率丁 5명 이하이거나 田地 5結 이하인 자에게도 역시 復戶한다. 90살 이상이면 田地와 率丁의 多少를 막론하고 復戶한다. ○ 임금의 宗姓인 袒免 이상의 親族과 外家姓 및 왕비의 同姓인 總麻 이상의 親族으로서 田地가 15結 이하인 자에게는 復戶한다. 先王과 先后의 친족도 이와 같다. 벼슬 하고 있는 자(從仕者) 및 6품 이상의 벼슬을 하는 자의 아들과 손자(子孫)로서 重罪를 범하여 赦免되지 아니한 자·不忠과 不孝의 죄를 범한 자의 아들과 손자(子孫)에게는 모두 復戶하지 아니한다. 2품 이상인 경우에는 비록 閑散者⁶⁶⁰의子和孫일지라도 역시 復戶하지 아니한다. ○ 實職이 2품 이상인 官職을 지내고 나이가 70세 이상으로서 물러나 시골에 가서 사는 자에게는 復戶한다.

○ 공무로 인하여 죽은 자에게는 3년 동안 復戶한

규정되어 있다.

- 656) 守墓軍은 임금의 外戚 등 중요 인물의 墓所를 지키는 잡류로서 先后 및 왕비의 부모 묘소에 각 2명씩 배정되었다(同上).
- 657) 助役은 그 역할이 日守(주 234)와 같으나 日守는 보통 驛에 두었지만 助役은 殘廢한 驛에 두었다(《성종실록》 권199-7, 성종 18년 정월 정사). 그 신분은 日守와 마찬가지로 身良役賤층으로 보인다.
- 658) 大小人은 흔히 大小員人 또는 大小人員과 비슷한 뜻으로 이해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47). 大小員人이 크고 작은 官員과 官人 즉 文武官과 生員·進士·錄事·有蔭子孫 및 無嫡인 有蔭妾子孫을 의미(刑典, 賤妻妾子女)하는데 대하여 大小人員은 전·현직 관원을 지칭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大小人은 大小員人 보다도 범위가 넓은 大人(官人)과 小人(良人과 賤人) 모두를 통칭한 것으로 보인다.
- 659) 평민은 非班非賤의 良民·常民과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1, p.391). 그러나 평민 중에서도 上下階層이 많아서 庶人은 士族에 가깝고 良人은 賤人에 가깝다(송준호,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1987, pp.208~212).
- 660) 閑散者는 官階만 있고 官職이 없는 前職者 기타 無職事인 官人을 뜻한다.

다. 戰死者인 경우에는 5년 동안 復戶한다. ○ 새로 歸化하여 온 사람에게는 10년 동안 復戶한다. ○ 무릇 寺刹에 대해서는 貢賦⁶⁶¹⁾ 이외의 徭役은 면제한다(復役).

增 남한산성의 將校와 軍兵 등에게는 특별히 給復⁶⁶²⁾한다. 田地 180結을 給復한다.

【免役】⁶⁶³⁾ 原 軍士로서 나이가 60세가 된 자와 篤疾者 및 廢疾者에게는 篤疾이란 惡性疾患·지랄병(癲狂)·두 눈이 먼 것(兩目盲)·팔다리(4肢)중 2개가 切斷된 것을 말하며 廢疾이란 바보(白痴)·병어리·난쟁이·허리가 꺾어진 것(굽사등이)·4肢 중 하나를 못쓰는 것을 말한다. 바보는 정신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고 난쟁이는 키가 작은 모습이다. 모두 軍役을 면제한다. 무릇 다른 身役이 있는 자도 이와 같다. ○ 篤疾이나 廢疾인 父母가 있거나 혹은 나이 70세 이상인

661) 貢賦는 넓게는 田稅·貢物·進上·雜稅 기타의 각종 부역 등 수취의 총칭으로 쓰이기도 하나 좁게는 조세(賦)와 공물(貢) 등 두가지만을 의미하기도 한다(《세종실록》 권148-155, 지리지 및 《경상도지리지》와 李泰鎭 외4인, 《역주 경국대전》 註釋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220).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貢賦로 해석된다. 넓은 의미의 貢賦로서 “위에서 거두는 것을 賦라 하고 아래서 바치는 것을 貢이라 한다”라는 《태조실록》 권2-10, 태조 원년 10월 경신의 기사나 “賦稅는 賦之貢이라”고 한 정도전의 《朝鮮經國典》 賦典摠序의 기록 등을 들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렇게 넓게 보면 「貢賦外復役」이 무의미해질 수 밖에 없다.

662) 給復은 대동미 납부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의 戶役(요역)은 대동법 시행 이후 大同米布錢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給復은 그 이전의 復戶와 같은 戶단위의 부역이나 공물의 납부의무 면제라는 측면보다도 免稅에 가깝다(貢納의 租稅化).

663) 免役은 軍役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16~60세(후에는 15~60세, 주 640 참조)의 양인 이상 신분의 남자는 누구나 軍役(國役)을 질 의무가 있었으나 官職이나 鄉役도 國役의 일종으로 보아서 官人이나 鄉吏 등은 軍役이 면제되었다.

父母가 있는 경우의 1자와 90세 이상인 父母가 있는 경우의 모든 아들은 軍役(身役)이 면제 된다. 아들

이 죽었을 경우에는 孫子 1인이, 親孫이 없으면 外孫이 軍役(신역)에서 면제된다. ○ 서울에 거주하는 軍士와 지방에 남아서 지키는 留防軍士 및 忠順衛·正兵 등은 獨子 이외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續 有蔭人(父祖의 蔭德으로 벼슬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代數를 한정하여 軍役(신역)을 면제한다.

大王의 後孫은 代數를 한정하지 아니함을 새로운 法式으로 정한다. ○ 戰死者의 子孫으로서 현재 忠衛에 소속된 자는 3대에 한하여 免役된다. ○ 族親衛 및 正勳인 功臣⁶⁶⁴의 자손으로서 忠義衛에 속한 자는 9대에 한하여 免役된다. ○ 4王孫(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후손) 및 先賢의 後裔는 그 신분에 상당한 良役 이외의 七般賤役인 皂隸·羅將·日守·漕卒·水軍·烽燧軍·驛保 등으로는 모두 充定하지 아니한다. ○ 歸化人이 軍籍에 들어간 경우에는 다른 身役을 면제하도록 한다. 여러가지 거짓 사유로서 軍役(신역)을 면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免役을 해주지 않도록 한다. 속여서 忠義衛에 소속되어 影職의 帖紙(임명장)를 받은 자와 속여서 鄉校·鄉所의 任員에 속하거나 校生·衙前 등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收布案(軍布징수부) 중에 면제사유를 기록하지 못하도록 한다. ○ 納粟堂上官⁶⁶⁵으로서 軍役이 있는 자는 핑계를 대어 軍役을 면하지 못하게 하며 軍役이 없는 자는 軍役に 充定한다. ○ 軍士로서 죽은 자 · 나이 60세가 되고 45년간 軍役に 복무한 자 · 도

664) 正勳인 功臣이란 正功臣을 의미한다. 정공신은 각 등급에 약간명씩 도합 몇십명(예외 中宗 反正時의 靖國功臣은 107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準功臣이라 볼 수 있는 原從功臣은 각 등급마다 수백명 이상으로 모두 몇천명씩 된다(《대전회통연구》 이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3, pp.238~240).

665) 納粟堂上官이란 戰時·事變·凶年 기타로 飢民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명목상의 벼슬을 팔아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데(주 8 참조), 그 중 通政大夫나 嘉善大夫 등 堂上官階를 곡식으로 산 자를 納粟堂상관이라 하였다. 그들은 軍役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결코 納粟帖만으로는 신분상승이 될 수 없었다.

망친 후 10년이 지난 자에 대해서는 모두 다른 사람을 대신 充定(代定)한다. 죽었거나 60이 차서 除隊한 경우에는 年初와 年末을 막론하고 곧 代定한다. 사망확인서(物故立案)를 3개월이 지나도록 작성해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守令을 罷職하고 色吏에게는 엄중히 형벌을 가한다.

○ 도망쳐서 (10년) 기한이 지나도 일족이 있는 경우에는 일족 중에서 스스로 代定하도록 하되 代定을 하기 전에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한다. ○ 살아 있는 자를 죽었다고 하고 남아 있는 자를 도망쳤다고 하며 허위로 篤疾이나 廢疾이라 칭하여 거짓으로 公文을 내어 閑丁(國役을 지지 아니하는 壯丁)을 容認하거나 숨겨준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1명이라도 守令은 파직하고 監考와 色吏는 杖100에 充軍한다.

○ 죽은 후 해가 지나거나 도망친 후 限年(10년)이 지나도 代定하지 아니한 경우와 비록 代定하여도 假名으로 허위 記錄한 것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守令은 파직하고 監考와 色吏는 營門에서 刑具로 推問하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守令은 削職하고 監考와 色吏는 徒刑으로 定配하며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守令은 徒刑으로 定配하고 監考와 色吏는 刑杖을 친 후에 流刑에 처한다. ○ 一家內에 여러 사람이 軍役に 복무(應役)하거나 1인이 두 가지 이상의 身役に 거듭 복무할 경우에는 除滅한다. 東伍軍 중에서 父子 3인이 隊伍에 편성된 경우에는 그 父의 軍役을 면제하여 주고 兄弟 4인이 隊伍에 편성되었을 경우에는 그 兄의 軍役을 면제하여 주고 그를 대신할 자는 官에서 정한다. ○ 4父子 이상이 良役に 복무할 경우에는 同居여부를 막론하고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1인의 身役을 除滅한 후 스스로 代定하도록 한다. ○ 한 몸이 두 가지 이상의 身役に 거듭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뒤에 지게된 신역을 減한다.

○ 違法으로 除軍(除隊)하게 한 경우에는 論罪한다. 7인 이상이면 守令을 파직하고 5인 이상이면 그의 資級을 강등하며 4인 이하이면 杖80에 처하며 1인 이상이면 色吏를 杖100 徒3년에 처한다. ○ 富實한 軍丁을 衙前으로 바꾸어 정한 경우 및 軍籍에 등록된(案付) 軍丁을 鄉吏나 雇工으로 (취급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違法으로 除軍하게된 例에 따라 論罪한다.

【給假】 原 軍士가 病을 신고한 경우에는 兵曹에

서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휴가를 준다. 入直軍士이면 都摠府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兵曹로 공문을 보내고 軍士의 父母가 병이 났으면 서울에 있는 자는 本部(소속 部)에 신고하고 지방에 있는 자는 本邑(소속 고을)에 신고하며 守營의 아들이면 이웃 고을에 신고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傳報하도록 하되 모두 兵曹로 공문을 보내게 한다. ○ 녹봉을 받는 군사(有祿軍士⁶⁶⁶)로서 이유없이 만 25일간, 有故로 만 40일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녹봉이 없는 군사로서 이유없이 만 30일, 有故로 만 50일간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杖80에 처하고 근무일수를 삭제한다. 忠義衛·忠贊衛·忠順衛·族親衛는 근무일수만을 삭제한다.

【救恤】⁶⁶⁷ 原 水陸의 赴防軍으로서 病이 났을 경우에는 각각 그 將帥가 親管人⁶⁶⁸에게 책임을 지워 救護하게 하고 病이 重하면 소재지 고을에 맡겨서 치료하게 한다. 죽은 자는 假埋葬(草葬⁶⁶⁹)하여 標木을 세우며 本家에 알리고 兵曹에 보고한다.

增 三軍門에서는 藥房을 두고 鍼房과 藥房 각 1房 病이 있는 軍卒을 救護하고 治療한다.

【城堡】⁶⁷⁰ 原 宮城과 都城에 대해서는 매년 봄 가

666) 有祿軍士는 正職이나 差役을 받은 군사를 의미한다. 西班체아직을 받는 군사로서는 甲士·親軍衛·別侍衛·族親衛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사들은 無祿軍士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48).

667) 救恤은 군사가 병났을 때 치료하고 구호하며 사망하였을 때에는 장례를 치워주는 것을 뜻한다. 兵士에 대한 구호를 소홀히 하여 죽게한 지휘관(兵을 거느리는 자)은 처벌되었다(《태조실록》 권11-3·4, 태조 6년 2월 갑오).

668) 親管人은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도록 책임을 지운 有病軍士의 看護人을 말하는데 대개 病者의 親族일 것이나 친족이 없으면 친구일 수도 있다.

669) 草葬은 시체에 풀을 덮어서 임시로 假埋葬하는 것을 말한다.

을로 兵曹가 工曹·漢城府·修城禁火司와 함께 巡察 審査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城 옆에는 안밖으로 모두 도랑을 파고 草木이 나서 자란 곳은 즉시 베버린다. 소나 말을 고의로 放牧하여 잔디를 밟아서 손상을 입히거나 성가귀(弓家)를 들이 받아서 파손케 한 자 또는 벽들을 흠친 자에 대해서는 수성금화사에서 매일 巡行하여 檢舉하고 各面의 山直⁶⁷¹⁾이도 살피는 일(考察)을 兼行한다. 諸鎭의 邑城⁶⁷²⁾·山城⁶⁷³⁾·行城⁶⁷⁴⁾에 대해서는 兵馬節度使가 무너진 곳을 순찰·심사한 후 修築할 곳을 자세히 적어서(開坐) 歲抄때마다 임금에게 보고한다. 만약 무너진 곳이 있는데도 즉시

670) 城堡는 城池와 保壘를 말한다. 石築한 것을 城이라 하고 土築한 것을 堡라 하며 또는 큰 것을 城, 土石으로 쌓은 작은 것을 堡라 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49 및 《경국대전 주해》상, 後集, 吏典).

671) 山直이는 서울의 四山山直과 지방의 山直이로 구분된다. 특히 경복궁과 창덕궁의 主山 및 來脈을 보호하는 일을 중요시 하여 京正兵 중에서 뽑아 四山山直을 임명하였다. 또한 서울에 사는 下番(出番)인 破敵衛·隊卒·正兵 중에서 별도로 7인 또는 5인을 정하여 圓牌를 주어 순행하면서 불법으로 나무를 벌채하는 자를 체포·고발하도록 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49 및 《大典續錄》工典, 雜令). 그러나 보통의 山直은 수령이 임명하고 山直監考는 수령이 山勢에 밝은 자를 뽑아 병조에 보고하여 임용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권218-8, 성종 19년 7월 경오).

672) 邑城은 지방 고을 청사를 중심으로 한 읍내를 둘러싼 평지의 城이다. 세종 때와 문종 때에는 倭寇에 대비하기 위하여 삼남의 沿海지역을 중심으로 邑城의 修築이 추진되었다. 단종·세조·예종·성종을 거치면서 문종 때까지 이룩되지 못한 關防시설의 보완이 이룩되었다(차용걸, 〈조선전기 關防設施의 정비과정〉, 《한국사론》7, 국사편찬위원회, 1980, pp.115~136). 성종대에 이르면 전국의 邑城이 대체로 정비되어 그 수가 190개소에 이르렀다(반영환, 《한국의 성곽》, 1978, pp.143~146 및 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649).

673) 山城은 山勢를 이용하여 쌓은 성으로 크게 包谷式과 테뫼식으로 나눈다. 삼국시대 이래 많은 산성이 축조되었으며 세종때 邑城과 行城수축에 치중하였으나 여전히 山城은 국방상 주요한 위치를 점하였다(同上).

674) 行城은 함경도와 평안도 등 변경지방에서의 野人방어상, 要害地를 이용하여 쌓은 長城이다. 行城은 세종 22년 2월 申概의 長城修築 건의와 同年 7월의 병조판서 皇甫仁의 상소로 축조되기 시작하였다(《세종실록》 권88-19, 세종 22년 2월 을미 및 권90-19·20·21·22, 세종 22년 7월 기사). 그 후 세종대에만 의주행성·온성행성·회녕행성·종성행성 기타 등 많은 행성이 수축되었다(차용걸, 〈앞의 글〉 pp.89~93). 성종·연산군·중종대에도 계속 행성축조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장성으로서 완비된 것으로는 되지 못하였다(《한국군제사》 근세조선 전기편, 앞의 책, pp.303~307).

修築하지 아니하거나 修築하여도 견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관원을 파직하여 내쫓는다.

〔增〕 都城 内外에 소나무가 울창하고 뺨뺨하여 城堞에 방해가 되는 곳이 있다면 城内은 5步까지, 城外는 10步까지의 限度内에서 (나무를) 베어버린다.
○ 城 위에는 작은 돌을 쌓아 둔다.

【軍器】⁶⁷⁵⁾ 〔原〕 서울에서는 軍器寺가, 지방에서는 각 鎭이 橫看⁶⁷⁶⁾에 의하여 精巧하고 緻密하게 製造하며, 전에 만든 것도 항상 修理하고 整備한다. 軍士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軍器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는 兵曹가, 지방에서는 守令 및 節度使가 항상 검사하고 살펴서 낡아 못쓰게 되지 않도록 한다. 각 고을과 각 鎭에서는 고을이나 鎭의 호칭을 篆字로 烙印한다. ○ 해마다 화살 만들 대나무(箭竹)를 兩界로 보내고 永安道에는 경상도에서 25000개, 강원도에서 11500개, 平安道에는 전라도에서 15000개, 충청도에서 5000개를 보

675) 軍器는 군사용 兵器·깃발·戒仗·악기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군기는 衣甲·깃발·악기 등을 제외한 순수 병기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軍器寺에는 弓人·矢人·甲匠·冶匠·鑄匠·木匠 등의 諸色匠이 소속되어 군기의 제작을 담당하였다. 특히 세종대에는 火藥·火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민현구 외4인, 《앞의책》 p.650 및 《한국군제사》 근세조선전기편, 앞의 책, pp.387~485).

676) 橫看은 궁중과 각 관청의 예상되는 지출내역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橫으로 列記한 것으로 貢賦의 세입예산안으로 볼 수 있는 貢案과 대칭된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上, 戶典, 經費條에 「橫看卽式例也, 貢案外貢簿也」라 하였다). 횡간은 또한 경비를 現物로 지급하는 經費式例 橫看과 貢賦를 재료로 사용하는 供用造作式例 橫看으로 구분되는데(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1964, pp.298~334) 여기서의 후자를 의미한다.

낸다. 양계의 節度使는 이를 소속 鎭에 나누어 주고 만든 화살 수 및 將帥와 軍士에게 나누어준 數量을 자세히 적어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續〕 임금이 거동할 때의 御前 巡視旗와 令旗⁶⁷⁷⁾는 바탕이 붉은 비단이고 글자가 푸른 비단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 軍門에서는 바탕이 푸른 비단, 글자가 붉은 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서울과 지방이 같다. 御前の 前排⁶⁷⁸⁾는 붉은 제복(紅號衣⁶⁷⁹⁾)을 입는다. 서울과 지방의 前排의 服色은 종전대로 한다. 御前の 초롱(燭籠)은 紅紗를 바탕으로 하여 靑紗로 上下緣을 둘렀고 임금의 가마(輦) 좌우 양쪽의 초롱은 紅紗로 하였으며 輦을 좌우에서 모시는 軍士(挾輦軍⁶⁸⁰⁾)의 服色은 붉은 制服(紅號衣)이다. 왕세자(東宮)의 초롱은 黑紗를 바탕으로 하고 紅紗로 上下緣을 둘렀으며 輿좌우의 초롱은 黑紗이고 輿를 좌우에서 모시는 군사(挾輿軍⁶⁸¹⁾)의 服色은 검은 制服(黑號

677) 巡視旗는 임금 또는 大將이 軍中을 순시할 때 쓰는 깃발로서 「巡視」라는 두 글자가 써있다. 令旗는 軍令을 전달한 때 傳令이 갖는 깃발로서 「令」字가 써있다(조선총독부, 《校註大典會通》, 《앞의 책》 p.625).

678) 前排는 임금이 거동할 때 임금의 가마(御輦) 앞에서 羅列하는 大殿別監 등 官屬을 말한다(조선총독부, 《위의 책》 p.625). 《정조실록》 권38-35, 정조 17년 10월 계미의 기사에 의하면 옛날에는 前排가 단지 40명이었으나 그당시 98명이나 되었으므로 앞으로 60명을 定式으로 한다는 것이다.

679) 號衣는 軍人·官屬 등의 소속을 나타내는 制服을 의미한다(同上).

680) 挾輦軍은 임금의 가마(輦)를 좌우에서 모시는 군사이다. 《정조실록》 권38-35, 정조 17년 10월 계미의 기사에 의하면 挾輦軍이 옛날에는 불과 40명이었으나 그당시 60명으로 늘어나 있지만 앞으로는 40명을 定式으로 한다는 것이다.

681) 挾輿軍은 세자나 世孫의 가마(輿)를 좌우에서 모시는 군사를 말하며 세손의 경우에는 20

衣)이다. 軍門의 초롱은 푸른 바탕에 붉은 緣을 둘렀는데 서울과 지방이 같다. ○ 世孫宮의 초롱은 靑紗를 바탕으로 하고 紅紗로 上下緣을 둘렀으며 5쌍이다. 輿를 좌우에서 모시는 군사(挾輿軍)의 20인이다. 초롱은 靑紗이며 輿좌우 군사(挾輿軍)의 服色은 푸른 制服(靑號衣)이다. ○ 駕前別軍職의 鞭棍(쇠도리깨와 곤장)은 兵曹에서 만들어 준다. ○ 월내에 入直하는 禁軍이 거처하는 곳에는 軍器를 만들어 備置하여 둔다. 활주머니나 활통은 100부, 활은 100장, 화살(片箭)은 100부, 화살통은 100개, 要鉤鞭⁶⁸²은 100개, 環刀⁶⁸³는 100자루. ○ 三南(경상 전라 충청도)과 海西(황해도)의 鳥銃·火藥·鉛丸에 대한 月課米는 常平廳에서 관리 하되 月課契貢物⁶⁸⁴을 창설한다. 鳥銃은 軍器寺에서 값을 받고 製造하며 火藥과 鉛丸은 本年(그 해)에는 三軍門과 貢人이 반씩 나누어 값을 받고 제조하며 間年(한해를 건너서)에는 貢人이 값을 전부 받아서 제조한다. 三軍門에서 제조한 것은 해당 軍門에 그대로 두고 貢人이 제조한 것은 三南과 海西에 나누어 보낸다. [增] 지금은 수어청과 충융청 兩廳에서 관리하며 각 고을로 나누어 보낸다.

명이다.

682) 要鉤鞭은 끝에 갈구리 모양의 쇠가 달린 막대기로서 배·건물·나무 등을 걸어 당기는데 쓴다(조선총독부, 《校註 大典會通》, 《앞의 책》 p.626).

683) 環刀는 패용하기 편하도록 칼집에 고리를 단 칼이다(同上).

684) 月課契貢物이란 달마다 정례로 바치는 공물이란 뜻이다. 당초에는 삼남지방 및 海西에 있어서의 鳥銃 및 화약과 鉛丸을 大小郡에 분담시켜서 大郡에서는 매월 조총 2자루, 화약 8근, 鉛丸 400개, 中郡에서는 조총 1자루, 화약 4근, 연환 200개, 殘郡에서는 6개월마다 조총 1자루, 화약 4근, 연환 200개를 갖추도록 하되 그 값을 백성들의 田結에서 징수케 하였으나 대동법을 실시할 때 이것을 大同米布 중에 넣어서 조총 1자루의 價米를 3石5斗, 화약 1근의 價米를 10두, 연환 100개의 價米를 5두로 정하여 대동미를 各郡에 분배하여 지방관이 이를 갖추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여 숙종 때 價米를 常平廳에 이관하여 代價를 先拂하도록 해서 조총은 軍器寺에서, 탄환은 三軍門과 貢人이 나누어서 제조하도록 하여 각군으로 송부하게 하였다(조선총독부, 《校註大典會通》, 《앞의 책》 p.626).

補 수어청이 남한산성으로 出鎭한 후에는 총융청에서 專管하여 나누어 보낸다.

○ 각 고을의 軍器에 대해서는 節度使가 不時에 추첨으로 (調查對象地를) 정하여 조사(擲奸)하며 欠缺이 잡힌 고을의 守令은 論罪한다. 순찰 점검시에 그 잡힌 흠결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해당 수령은 그 輕重에 비추어 곤장을 맞으며 (절도사는) 이러한 사실을 열거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 鳥銃과 火藥이 관청 창고에 보관되지 아니하여 奸弊가 있게 된 경우에는 절도사와 수령이 犯越例(犯亂例)에 의거 照律 處斷된다. ○ 각 고을과 각 鎭의 軍器를 특별히 준비하여 바친(別備) 자에게는 論賞한다. 鳥銃이면 鉛丸을, 활이면 화살을 아울러 준비하여 바친 후라야 特別備納(別備)으로 인정하여 施賞한다. ○ 舊軍器를 아울러 改修하고 흠잡힌 일이 없는 然後에 새로운 軍器를 준비한 자에게 論賞한다. 增 각 營과 각 고을에서 현 물건(舊軍器)을 改修하지 아니하고 단지 새로운 軍器를 준비하면 그 건수가 비록 많더라도 資級을 올려주지(加資) 아니하고 말을 주어 褒賞한다. ○ 入直 軍士의 軍裝과 雜物이 변색하고 파열하여 흠이 잡힌 경우에는 論罪한다. 4건이 되는 경우에는 笞 50, 중한 경우에는 杖 80. ○ 軍器를 훔친 자는 兵曹에서 임금에게 아뢰어 梟示(참수하여 목을 내거는 형벌)하고 그를 잡은 자에게는 論賞한다. 훔친 것이 활 30장과 조총 3자루 이하인 경우에는 刑杖으로 3차 推問한 후에 사형을 감형하여 定配하고 監考와 色吏는 輕重에 따라 죄를 준다. 增 훔친 것이 火藥이 100斤 미만인 경우에는 回示(조리 돌리기)한 후에 사형을 감형하여 엄중히 곤장을 친 후에 섬으로 流配하고 環刀와 旗槍 5자루 이하, 징과 북 5개 이하인 경우에는 鳥銃 3자루 이하를 훔친 律로 論罪한다. 補 軍器를 사사로이 제조한 자는 그것을 독점적으로 맡아서 판자와 더불어 극형(一律)으로 처단하고 사사로이 서로 매매한 자는 죽지 않을 정도로 엄하게 형장을 친 후에 極邊으로 無限年 遠配하고 그 물건은 몰수(屬公)한다. ○ 화약을 사사로이 제조하여 매매한 자도 법률에 의하여 엄중히 다스린

다.

〔增〕 임금이 거동할 때에 御前の 信箭촉에는 令字를 새기고 각 色の 비단으로 된 小標旗를 다는데 旗面에는 황색으로 信字를 써서 각 軍營에 명령한다. ○ 왕세자의 代理聽政(임금을 대리하여 政事를 맡음) 후에는 御駕 앞에 세우는 巡視旗와 令旗의 바탕이 검은 비단이고 글자는 붉은 비단이며 前排는 검은 制服(號衣)을 입는다. 英宗 25년 己巳 ○ 활과 화살을 進上할 때에는 知弓品堂上⁶⁸⁵⁾을 임명하여 보낸다. 弓房의 內官이 보고서(手本)를 승정원에 올리면 병조에서 知弓品堂上의 후보자를 단일화하여 임금의 裁可를 받으며 尙衣院에서 활과 화살을 별도로 만들 때에는 상의원에서 병조로 공문을 보내어 知弓品堂上을 임명하여 거행하도록 한다.

【兵船】⁶⁸⁶⁾ 〔原〕 여러 浦口의 兵船 및 그 備品(什物)에 대해서는 水軍節度使가 歲抄 때마다 그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병조에 보고하고 병조에서는 임금에게 이를 아뢴다. 兵船을 製作한지 8년이 되면 修理하고 또 6년이 되면 다시 修理하며 또 6년이 되면 改造한다. 〈漕船⁶⁸⁷⁾도 같다.〉 매일 그믐과 보름에

685) 知弓品堂上은 弓矢를 진상할 때에 활의 품질의 우열을 조사하는 3품 이상의 당상관으로서 임시관직이다. 병조에서는 弓品을 알만한 당상관 중에서 1명을 골라 임금에게 올려 결재를 받아서 임명한다.

686) 解說篇 30. 諸船(戰船·防船·兵船) 參照.

687) 漕船은 稅米를 운반하는 漕運船을 말하며 漕轉船이라고도 한다. 세종 28년에 漕船의 크기와 적재량을 규정하였는데 대선은 길이가 50척, 너비가 10척 3촌 이상, 중선은 길이가 46척, 너비가 9척 이상, 소선은 길이가 41척, 너비가 8척 이상이다. 그 積米石數는 대선이 250석, 중선이 200석, 소선이 130석이다(《세종실록》 권113-35, 세종 28년 9월 신사). 성종 3년 8

연기로 배밑을 끄슬린다(煙燠⁶⁸⁸). 그러나 경상좌도·강원도·영안도에서는 10년이 되어야 수리하고 또 10년이 되어야 개조하되 연기로 배밑을 끄슬리는 것(煙燠)은 하지 아니하며 항상 강물(陸水)에 정박하도록 한다. ○ 배마다 비품을 3건 이상 갖추도록 하며 배를 제작한지 5년 이내에 遺失한 경우에는 大猛船이면 綿布 230필을, 中猛船이면 210필을, 小猛船이면 110필을 追徵하되 5년이 더 지날 때마다 각각 10필씩을 減하여 20년이 되면 추징을 그친다. 만약 썩어서 못쓰게 되었거나 불탔을 경우에는 위 年限에 의한 추징액의 반을 징수한다. 거룻배⁶⁸⁹의 경우에는 小猛船의 반을 減하여 추징한다.

續 각 道의 戰船과 兵船이 年限이 차면 腐敗와 損傷 與否를 水軍節度使가 직접 심사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경상도의 戰船과 兵船은 右道에서는 80개월이 기한이나 20개월을 연기하여 改造하고 左道에서는 60개월이 기한이나 20개월을 연기하여 개조하며 모두 쇠못을 사용하였으므로 연결부분(속)을 고칠 것(改槳)은 없다. ○ 전라도의 戰船·防船·兵船은 제작한지 3년 후에 처음 改槳하고 또 3년 후에 다시 改槳하며 또 3년 후에는 改造한다. ○ 충청도의 戰船은 제작한지 30개월이 되면 改槳하고 또 30개월이 되면 다시 改槳하며 또 30개월이 되면 改造하는데 7년 6개월만에 1차 改造하는 셈이다. 防船은 36개월이 되면 처음 改槳하고 또 36개월이 되면 다시 改槳하며 또 36개월이 되면 改造하는데 9년만에 1차 改造하는 셈이다. 兵船은 36개월을 더하여 세 번 改槳하며 12년만에 1차 改造한다. ○ 평안도의 大小船은 每3년 간격으로 改槳하여 10년만에 改造한다. ○ 황해도의 大小船은 每2년 간격으로 改槳하여 12년만에 改造한다. ○ 경기의 大小船은 정해진 기한이 없고 그 損傷된 곳을 조

월에는 漕船 149척에 每船 漕軍 20명, 합계 2,980명을 정하였다(《성종실록》 권21-6, 성종 3년 8월 정축). 그 후 漕軍 40명이 2番으로 나누어 격년제로 漕運하였으나 성종 6년 9월부터 1,000석 이상 싣는 배에는 漕軍 22명을, 700석 이상 싣는 배이면 20명, 600석 이상 싣는 배이면 18명을 배정하여 조운케하였다(《성종실록》 권59-33, 성종 6년 9월 무진). 한편 성종·중종 연간에는 병선(병선)이 조운에 자주 이용되었다고 한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 652).

688) 煙燠은 연기로 배밑을 끄슬리어 防腐作用을 함과 동시에 바닷지렁이의 침식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강물(陸水)에 배를 정박시키는 이유도 바닷지렁이의 침식을 막고 굴조개 등이 달라붙어서 배가 무겁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경국대전주해》 하, 후집, 병진, 兵艇條).

689) 거룻배는 漕運大船에 딸려 뿔나무 채취와 물기는 일 등에 사용한 작은 배이다(민현구 외 4인, 《앞의책》 pp.652~653). 배의 용량은 1척당 米 4·5석을 싣었다(《성종실록》 권57-6, 성종 6년 7월 경신). 병선인 거룻배와 私用 거룻배에 관해서는 주 458 참조.

사하여 거기 따라 改槩한다. ○ 兩湖(충청도와 전라도)의 諸船이 기한전에 부패 손상하여 改槩이나 改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水軍節度使가 직접 보고 심사하여 비변사에 보고해야 <補> 의정부에 보고해야 施工이 허용되며 비록 기한이 지나도 船體가 완전히 단단하면 또 나무를 첨가하여 改槩한다. ○ 守將이나 邊將이 戰船의 製造에 감독을 근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기한이 되기 전에 배가 부패·손상하여 움직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杖100에 처한다. ○ 戰船과 兵船은 먼 바다(外洋)로 내보낼 수가 없다. 위반자는 縱放軍人 出百里外 空歇軍役律⁶⁹⁰에 의하여 杖100에 처하고 充軍한다. ○ 몰래 戰船을 放出하여 떠내려가게 해서 잃게한 자는 극형(一律)으로 論罪한다. ○ 兵船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강화부의 禦邊船을 여러 중앙 관청(諸司)에서 징발하여 쓰지 못한다.

【烽燧】⁶⁹¹ 原 烽燧는 평상시에는 1炬(擧), 賊의 모습이 나타나면 2炬, 境界(國境)에 접근하면 3炬, 境界를 침범하면 4炬, 接戰하면 5炬⁶⁹²를 올리는데,

690) 縱放軍人 出百里外 空歇軍役律은 《大明律直解》兵律 권14, 軍政條에 규정되어 있으며 杖刑·遠邊充軍 등의 刑을 科하도록 하였다.

691) 烽燧는 燧(烽)과 燧(燧)로서 밤·낮으로 신호(急報)를 보내던 통신방법이다. 고려 의종 3년(1149)에 서북면 兵馬使 曹晉若의 上奏에 의거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하되 평상시에는 한번씩 올리고 2急에는 2炬, 3急에는 3炬, 4急에는 4炬씩 올렸다. 봉수대에는 防丁 2명, 白丁 20명을 두고 각각 平田 1結을 주도록 하였다(《增補文獻備考》 권123-1, 兵考 15, 봉수 1).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에 정식으로 봉수제도를 마련하였는데 평시에는 봉화를 1炬, 적의 모습이 나타나면 2炬,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3炬, 국경을 넘어서면 4炬, 접전을 하면 5炬를 올렸다. 그러나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어서 연락을 할 수 없을 때에는 烽卒들이 차레로 달려가서 보고하였다. 또 각 지방에서 신호가 오면 서울에서는 守直禁軍(五員)이 병조에 보고하였고 지방에서는 伍長이 관할 鎮將에게 보고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책》 p.653 및 《萬機要覽》軍政編1, 烽燧). 烽燧軍에 관해서는 주 606 참조.

692) 5炬(擧)制는 세종 원년 5월 병조의 啓에 따라 정하였다. 즉 종전에는 無事時에 1擧, 유사시에 再擧하였으나 앞으로는 倭賊이 海中에 있으면 再擧, 近境則 3擧, 兵船과 전투하면 4擧, 賊이 육지에 내려오면 5擧로 하고, 또 육지의 賊變에서는 적이 境外에 있으면 再擧, 近境則 3

서울에서는 5員(司直 司果 司正 司猛 司勇)이 增 지급은 守直 禁軍이 兵曹에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伍長⁶⁹³이 鎭將에게 보고한다. 木覓山⁶⁹⁴(남산) 烽燧臺는 동쪽으로 第1臺(所)가 영안도와 강원도에서 오는 楊州 아차산의 烽燧를 받고, 第2臺가 경상도에서 오는 廣州의 천천령의 烽燧를 받으며, 第3臺가 평안도의 陸路에서 오는 무악산 동쪽 봉우리의 烽燧를 받고, 第4臺가 평안도와 황해도의 海路에서 오는 무악산 서쪽 봉우리의 봉수를 받으며, 第5臺가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오는 陽川 개화산의 烽燧를 받는다. 兵曹에서는 사람을 定하여 望을 보게 해서 이튿날 이른 새벽에 승정원에 告하여 望

舉, 犯境則 4舉, 적과 더불어 전투하게 되면 5舉로 한다는 것이다. 낮에는 봉화 대신 연기로 하고 부주의하여 봉화를 관망한 烽火干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청에서 依律科罪한다고 하였다. 봉화불 올리는 자를 干 혹은 尺이라 하였는데 身良役賤이었다(《세종실록》 권4-9, 세종 원년 5월 경오). 모든 봉수대에는 5개의 烽火所가 있으므로 사태의 완급에 맞는 갯수의 봉화를 사용하여 舉火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책》 p.654).

693) 伍長은 봉수대에서 봉수군과 함께 거처하면서 그들을 감시·감독하는 일을 맡은 봉수대의 책임자였다. 세종 28년경부터 봉수대에 監考를 두었으며 그 후 감고가 《경국대전》에서는 伍長으로 개칭되었다. 서울에 있는 남산 봉수대에는 전국의 봉수(통신)가 집결되는 곳으로서 伍長 대신 五員(司直 이하 司勇까지)을 두었다. 《대전통편》에서는 五員 대신 守直禁軍이 兵曹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 봉화소에 사고가 있으면 지방관에게 즉시 알리고 무사하면 10일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책》 p.654). 세종 29년 3월 병조의 보고에 의한 의정부의 啓에 따라 監考와 烽火 海望人戶에게는 貢賦 이외의 잡역은 모두 면제하고 감고가 근면·성실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6년마다 1차례 散官職을 除授한다고 하였다(《세종실록》 권 115-16, 세종 29년 3월 병인). 監考나 伍長의 신분은 봉수군보다는 우위였겠지만 良人身分인 듯하고 봉수대 부근에서 사는 사람으로 임용하였다(許善道, 〈近世朝鮮前期의 烽燧制〉下, 《한국학논총》 8, 1986, pp.87-94). 그러나 《속대전》 병전, 烽燧條에 있는 監考는 品官으로서 조선전기의 감고(伍長의 전신)와는 신분이 달랐지만, 봉수대의 감독업무를 맡은 점에서는 그 직무가 유사하였다.

694) 木覓山은 서울 남산을 말하며 引慶山이라고도 한다. 목멱이란 이름은 고구려 서울 평양의 목멱산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654). 이 목멱산 봉수대는 조선 봉수체계의 중심으로서 각지방에서 전해오는 봉수를 최종적으로 받는 곳이다. 목멱산 봉수대는 모두 5개소로 되어 있으며 제1소(臺)는 함경·강원도에서 오는 신호를 楊州(현 성동구)의 아차산 봉수대를 통해서 전달받고, 제2소에서는 경상도에서 오는 신호를 廣州의 穿川峴(청계산 근처) 봉수대를 통해서 전달받으며, 제3소에서는 평안·황해도 지역의 육로에서 오는 신호를 母岳山(서대문) 東峰을 통해서 전달받았다. 또한 제4소에서는 평안·황해도 지역의 海路에서 오는 신호를 무악산 西峰을 통해서 전달받았고, 제5소에서는 전라·충청도 지역에서 오는 신호를 陽川의 開花山 봉수대를 통해서 전달받았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3-15·16, 漢城府, 烽燧). 봉수대는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3,646명의 봉수군이 있었다고 한다(方相鉉, 〈朝鮮前期의 烽燧制〉, 《史學志》14, p.69).

금에게 아뢰도록 한다. 만약 變故가 있으면 비록 밤일지라도 즉시 告하도록 한다. ○ 木覓山 烽燧臺의 每所에는 軍士 4인과 伍長 2인을 두고 海邊과 邊境지방에는 每所에 軍士 10인과 伍長 2인을 두며 내륙지방에는 每所에 軍士 6인과 伍長 2인을 둔다. 군사 및 오장은 모두 봉수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을 채용(差定)한다. ○ 혹시 구름이 끼어 어둡거나 바람이 마구 불어 연기나 불로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烽燧軍이 차례대로 달려가서 보고하도록 한다.

續 烽燧煙臺에 所在하는 烽軍 등은 다른 身役に 充定될 수가 없으며 오로지 望을 보게 한다. 부지런하고 재간있는 品官 각 4인으로 특별히 監考를 정하여 2番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하여 밤낮으로 烽燧를 올리는 상태를 점검(檢舉)하도록 한다. 혹시 煙火가 끊어진 곳이 있으면 守衛는 杖80에 처하고 監考는 杖100에 처하며 色吏와 烽軍은 杖100에다 極邊으로 充軍되되 모두 收贖하는 것(속죄금 받는 것)을 排除하고 杖刑을 집행한다. 賊이 이른 곳임에도 煙火로 알리지 아니한 烽卒은 법에 의거 斬刑(사형)에 처한 후 임금에게 보고한다. ○ 거짓으로 烽火를 든(올린) 자는 煙臺와 다른 곳임을 막론하고 모두 극형에 처(用一律)한다. ○ 無事할 때에 點呼에 빠진 자는 軍官·監考·烽軍임을 막론하고 각각 별도로 엄중하게 곤장을 친다. **增** 거짓으로 烽火를 올린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斬刑하며 烽燧臺 근처에서 放火한 자는 때를 기다려 斬刑한다.

增 木覓山の 烽燧將은 忠順衛가 혁파된 후 그 대신 禁軍 중 녹봉이 후한 자로 하여금 윤번으로 守直하게 한다. ○ 목덕과 무악 두 산의 烽軍과 奉足(保人)은 모두 烽軍인 戶는 30戶이며 每戶당 각각 保人을 3명씩 준다. 각각 120명이며 24番으로 나눈다. 每番에 5명씩 立番하며 6일만에 교대한다. ○ 烽燧臺는 標를 설치하여 境界를 정하고 거짓으로 烽火를 올리거나 放火한 것 등임을 막론하고 100步 이내에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兵曹에서

말아서 다스리고 100步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軍營에서 담당하여 다스린다. ○ 烽燧臺 근처에서의 淫亂한 祭祀나 祈禱는 禁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관이 制書有違律로 벌을 준다.

【廢牧】⁶⁹⁵⁾ 原 司僕寺의 祿官과 兼官 및 馬醫와 養馬⁶⁹⁶⁾ 등이 부지런히 말과 소를 사육(飼養)하지 아니하여 병들거나 혹은 죽은 경우에는 犧牲으로 쓸 짐승을 주관하는 관청에서의 사육이 법률의 규정과 같지 않음을 처벌할⁶⁹⁷⁾ 때에 비하여 한 등급을 더해서 論罪한다. 여러 고을에 나누어 사육하는 말과 소에 관해서도 이와 같다. ○ 去勢한 말이 21일 이내에 죽은 경우에는 去勢를 행한 자도 아울러 論罪한다. ○ 소나 말이 죽었을 경우에는 每 3마리당 1마리를 追徵한다. 소나 말이 遺失되었을 경우에는 그 數대로 추징한다. ○ 여러 道の 목장에서는 암말 100마리와 숫말 15마리를 1群으로 삼아서 소도 이와 같이 한다. 1群 마다 群頭⁶⁹⁸⁾ 1인과 牧子 內에서

695) 廢牧은 마구간(廐)과 말을 놓아 기르는 것(牧)을 의미한다(《경국대전주해》 상, 후집, 이전). 그러나 여기서의 말은 보통의 軍馬나 官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御用馬를 의미한다(한우근 외4인, 《앞의 책》 p.50).

696) 養馬는 司僕寺의 하급관리로서 말을 직접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養馬는 고려시대 이래로 있어온 것으로서 그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56 및 《문종실록》 권3-40, 문종 즉위년 9월 경신).

697) 희생으로 쓸 짐승을 주관하는 관청에서의 사육이 법과 같지 않아서 그 짐승이 병들 경우에는 《大明律直解》 권11, 禮律, 祭祀, 祭享條에 의하여 笞刑 또는 杖刑에 처한다.

良人을 골라 定한다. 群副도 이와 같다. 群副⁶⁹⁹ 2인 및 牧子 4인
 을 定하여 돌보고 기르게 하되 매년 85마리 이상
 번식시킨 경우에는 群頭에게 官階를 주되(加階) 특
 별히 실적이 좋은 자에게는 官階와 官職을 준다. 監牧
 官에게는 번식수를 3년간 通算하여 연평균(連等) 50마리 이상이 되면 論賞한다.
 ○ 群頭·群副·牧子が 말이나 소 1마리를 잃어버
 리면(遺失) 笞 50에 처하고 監牧官은 1등급 減刑한다. 每 1마
 리당 刑을 1등급 더하여 罪가 杖 100에 이르면 그
 치도록 하며 잃어버린 數대로 追徵한다. 無人 海島의 牧場
 에서 말이나 소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1등급 減刑하며 每 3마리당 1마리를 追徵
 한다. 죽은(故失) 말이 3마리면 1마리를 주고 1마리
 를 追徵하며⁷⁰⁰ 죽은 소가 2마리면 1마리를 주고 1
 마리를 追徵한다. 항상 돌보고 기르는 牧場이 아닐 경우에 죽은 말이 4
 마리면 2마리를 주고 1마리를 追徵하며 죽은 소가 3마리면 1마리를 주고 1마리를
 追徵한다. 無人 海島의 牧場의 경우에는 죽은 말이 7마리면 3마리를 주고 1마리를
 追徵하며 죽은 소가 4마리면 1마리를 주고 1마리를 追徵한다. ○ 말은 濟州 이
 외에는 모두 綿布로 追徵하되 上等말은 8마리, 中等말은 6마리, 下等말은 4마리
 로 한다. ○ 위 항목의 잃어버리거나 죽은 말이 만약 등급이 같지 아니하면 數가

698) 群頭는 여러 道의 목장에서 암말 100필과 숫말 15필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말을 85필 이상 증식시킨 경우에는 官階를 주었고 特異하게 실적이 좋은 자에게는 官階와 官職을 주었으며 반면 말이나 소를 유실한 경우에는 笞刑이나 杖刑으로 처벌하였다.

699) 群副는 여러 도의 목장에서 말을 관리하던 부책임자로서 별직규정은 群頭와 같다.

700) 죽은 말이 3마리이면 1마리를 주고 1마리를 추증한다는 것은 1마리의 가죽과 고기(죽은 말)를 내주고 生馬 1마리를 변상시킨다는 뜻이다(《경국대전주해》前集, 병진 및 민현구 외 4인, 《앞의책》 p.657). 그러나 윤국일, 《경국대전연구》(1986, 평양) p.449에서는 말 3마리를 죽이면 1마리는 보충해주고 1마리는 변상시킨다고 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 《경국대전주해》를 찾아보지 아니한 소치일 것이다.

많은 등급에 따라서 追徵한다. 즉 3마리 내에 2마리가 상등이고 1마리가 중등이면 상등에 따르는 것과 같다. ○ 1살 이하 및 15살 이상인 말은 모두 追徵하지 아니한다. 兼監牧官에게는 差減하여 追徵한다. 잃어버린 말이나 소가 10마리 이상·죽은 말이나 소가 15마리 이상이거나, 항상 돌보고 기르지 아니하는 牧場에서 잃어버린 것이 15마리·죽은 것이 20마리 이상이거나, 無人 海島의 牧場에서 잃어버린 것이 20마리·죽은 것이 25마리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牧子 1명의 例에 따라 追徵한다. ○ 牧場 내에 호랑이나 표범이 들어와 있는데도 즉시 잡지 아니하여 말이나 소 5마리 이상을 죽이게 한 경우에는 監牧官은 杖 100에 처하고 兵馬節度使는 杖 90에 처한다. 歲抄(결원보충) 때마다 兵曹에서 말을 點考한 文籍을 살펴서 그 잃어버리거나 죽거나 살해된 것이 가장 많은 경우와 번식시킨 수가 3년을 통산하여 연평균 30마리 미만인 경우에는 監牧官을 罷職하여 내쫓는다. ○ 무릇 관청 말을 탄 사람이 말을 상하게 하거나 병들게 한 경우에는 杖 70에 처하며 죽게 한 경우에는 杖 80에 처하고 말(값)을 追徵한다. 驛馬의 경우에도 같다. 만약 말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論하지 아니한다.

續 濟州·旌義·大靜의 각 牧場에서는 몸집이 크고 길이 잘 들었으며 영리하고 모양이 좋은 말을 去勢하여 잘먹이고 길들여서(調養) 교체되어 서울로 오는 官員이 임금에게 進上하도록 한다. 牧使와 判官은 각 3마리, 縣監은 2마리로 하되 임금이 타기에 不適合하면 進上者를 制書有違律로 論罪한다. ○ 牧場의 말은 깊이 烙印하여 농간할 수 없도록 한다. 혹시 간사스러운 情狀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監牧官을 罷職하여 내쫓고 群頭와 牧子에게는 杖100 徒3년에 처한다. ○ 각 道의 點馬御史⁷⁰¹로

는 文官(문과급제자인 관료)을 골라서 임명한다. 경상
 좌도에는 司僕寺의 正이 스스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여 보낸다. 말을 點檢
 (點馬)하여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監牧
 官을 罷職하여 내쫓고 兼監牧官도 이와 같다. 牧子 등에게는
 엄하게 刑杖을 치면서 (점마어사가) 직접 推問한다.
 각 牧場에서 죽은 말의 값은 상등말은 綿布 16마리이고 중등말은 12마리이며 하등
 말은 8마리이다. ○ 濟州의 각 牧場에서는 馬匹의 數대로 대신 (다른 말을) 징수
 한다. ○ 각 고을에 나누어주어서 기르게 한 말이 죽
 거나 여위거나 길들지 아니하였으면 守丞을 論罪한
 다. 1마리면 엄중히 推問하고 2마리면 1資級을 강등하며 3마리면 2資級을 강등
 하고 4마리면 罷職한다. 말이 죽었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말로서 추징한다.
 ○ 말이 죽거나 여위어서 응당 2資級을 강등할 경우에 堂上官이면 그대로 資級을
 강등하나 堂下官이면 녹봉지급을 정지(越祿)한다. ○ 해당 고을의 守丞과 兼官(이
 웃 고을 수령이 그 고을 수령을 겸직)이 모두 有故하여 留鄉所에서 해당 고을 수령
 직을 대행하면 그 죽은 말값은 그(수령직 대행자)에게 追徵하고 말이 여위었으면
 그를 다른 고을로 옮겨서 刑杖으로 推問한다. ○ 濟州에서 올라 오는 貢馬가 中路
 에서 병으로 머물 때에 그 고을 수령이 잘 救療하지 아니하여 곧바로 죽게 되었을
 경우나 그 해가 지났는데도 즉시 보내 올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分養馬의 故失例에
 따라 論罪한다. ○ 貢馬를 바꾸어 바친 수령에 대해서는 司僕寺에서 임금에게 직접
 보고하여 잡아서 처분한다. ○ 國有인 말을 監守하는 자가 스
 스로 그 말을 훔친 경우에는 律文에 의거 論罪한다.
 初犯은 杖100에 絶海孤島(絶島)로 定配하고 再犯은 絶海孤島의 노비로 삼으며 三
 犯은 斬刑(사형)한다. 常人인 초범은 杖100에 定配하고 재범은 杖100에 絶島로 定
 配하며 삼범은 斬刑한다. ○ 屠殺者는 훔친 자와 같이 처벌한다. ○ 잃어버린 말이
 10마리 이상이면 監牧官을 罷職하여 내쫓고 5마리 이상이면 資級을 강등하며 4마
 리이면 推考하고 3마리 이하이면 문제삼지 아니한다. ○ 私有인 말이 임

금계서 타기에 적합한 경우에 징발(被執)됨을 꺼리어 귀를 재고 갈기를 잘라 고의로 흉하게 만든 자는 杖 100에 처하고 말은 몰수하여 公有로 한다. ○

牧子の 자손에게는 다른 役을 지을 수 없다. 다른 役을 지운 경우에는 本役을 이유로 그 役을 면제시키고(頤下) 해당 監考와 色吏를 推問하여 다스린다. ○ 牧子가 되는 것을 꺼리고 기피해서 일이 적은 곳으로 投屬한 者는 本役으로 刷還하며 그것을 거행하지 아니한 監牧官은 罷職하여 내쫓고 色吏에게는 刑杖으로 推問한다. 이들 모두는 사면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良民이 牧子名簿(案)에 투속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罷)하고 가장 괴로운 役을 지우며 監牧官을 罷職한다. ○ 牧場내에 私有인 牛馬와 船隻이 왕래하는

것을 엄금한다. 위반자에게는 杖100 徒3년에 처하며 그 牛馬와 船隻을 몰수하여 公有로 한다. (그것을 목인한) 監牧官은 罷職하고 兼監牧官도 이와 같이 하며 色吏에게는 刑杖으로 推問한다. ○ 土豪가 (목장 소속의) 田地나 墓地로 쓸 山地를 불법점유(冒占)한 경우에는 杖100 徒3년에 처하고 葬事지낸 곳을 파서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增 內司僕寺⁷⁰²⁾는 매월 官馬와 私馬의 調練(훈련)을 행한다. 초1일·11일·21일에는 官馬를 調練하고, 초5일·초10일·15일·20일·25일·30일에는 후원에서 기르는 말(宮中馬)을 조련하며, 초7일·17일·27일에는 私馬를 調練하되, 만약 有故하게 되면 날짜를 물려서 거행하고 한 달에 12차를 실시해야 한다. ○ 司僕寺의 官馬 調練日은 內司僕寺와 같으나, 초5일·15일·25일에 私馬의 調練을 행한다. ○ 활쏘기 시험에서 賞을 내릴

702) 內司僕寺는 內寺라고도 하며 外寺 즉 司僕寺와 대칭된다. 內寺는 궁중의 마굿간과 임금이 타는 말을 관리하던 관청으로 그 관원으로는 內乘 3인이 있었다. 內乘 중 2인은 종2품 이하의 관원이 겸직하였고 1인은 外寺(司僕寺)의 正이 겸임하였다(이홍직, 《앞의 책》 p.345). 內司僕寺는 고려시대의 內乘局을 개칭한 것으로서 內乘들이 백성들을 침탈하는 폐단이 있었으므로 조선 초기에 內乘의 수를 3인으로 제한하고 그 후 內乘은 淸班으로 임명하는 등(《성종실록》 권189-1, 성종 17년 3월 병오) 개혁이 있었다. 아울러 內乘 밑에 司僕을 두어 御乘馬관리와 入直·侍衛케 하였다(남도영, 〈조선초기의 兼司僕에 대하여〉, 《김원룡박사회갑기념논총》, 1969, pp.10~12).

때의 馬帖⁷⁰³)으로는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綿布와 麻布를 대신 주도록 할 수 있다. 망아지는 綿布 1필과 麻布 2필로 대신 줄 수 있고, 半熟馬⁷⁰⁴)는 면포 2필과 마포 1필로 대신 줄 수 있으며, 熟馬는 순면포 3필로 대신 줄 수 있으나, 대신 주는 규정은 임금이 직접 임석하여 활쏘기 시험을 보일 때에만 適用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논의(시행)하지 아니한다. ○ 면포와 마포로 대신 줄 때에는 각각 그 受賞人이 소속된 관청에서 그 10분의 9를 司僕寺에 넘겨주고 司僕寺에서는 그 부족수인 10분의 1을 채워서 그 馬帖을 바치는 것을 기다려서 前例에 비추어 上下 등급을 따져보고 내준다. ○ 임금이 거동할 때 및 왕명을 받고 출장갈 때에는 閣臣(규장각의 提學 등 관료)은 內司僕寺의 말을 타는 것이 허용된다. ○ 三軍門의 騎馬軍으로서 官馬를 받았으나 그 말에 탈이 났을 경우에는 司僕寺에 보고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도록 한(分養시킨) 말을 대신 주도록 한다. 8년 내에 죽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다른 말을 준비하여 갓추게(改立) 하고 8년 이후에 죽은 경우에 비로소(官에서) 다른 말을 대신 내준다. 補 지금은 폐지되었다.

補 임금이 거동할 때 수행하는 國舅(왕의 장인) · 宗親 · 儀賓(왕의 사위) · 承旨 · 史官 · 玉堂(홍문관의 관료) · 왕명을 받고 전하는 宣傳官 · 別軍職 등에게는 內司僕寺의 말을 타는 것을 허용한다.

703) 馬帖은 말을 賞으로 준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마첩으로 만드지 말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말 대신 무명베나 삼베를 내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受賞人의 소속관청에서 10분의 9를 부담하고 司僕寺에서 10분의 1을 부담하였다.

704) 反熟馬는 반쯤 길들인 말을 의미한다. 즉 調練(훈련)이 미완성된 말이다. 熟馬는 훈련이 잘되어 잘 길들여진 말을 뜻한다.

【積芻】⁷⁰⁵⁾ 原 여러 고을에서는 해마다 말먹이 풀(馬芻⁷⁰⁶⁾)을 비축하여 위급할 때를 대비하도록 한다.

큰 고을(大官⁷⁰⁷⁾)에서는 10萬束, 중간 고을(中官)에서는 8萬束, 작은 고을(小官⁷⁰⁸⁾)에서는 6萬束을 비축하되 주요 交通路邊의 고을에서는 각각 1萬束을 더 비축하도록 한다.

增 백성의 田結에서 馬芻를 거두어 모으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모두 관청 곡식을 나누어 내준(分糶) 후에 생긴 빈 섬(空石)의 多少에 따라 매년 馬芻를 비축하도록 하되 이 명령에 위반하여 백성으로부터 馬芻를 수취하는 守畵은 論罪한다.

【護船】⁷⁰⁹⁾ 原 여러 道의 漕轉船(租稅米 등 運搬船)

705) 積芻는 馬芻(말먹이풀, 풀, 生芻)를 저장·비축하는 일을 말한다. 조선초기에는 馬芻의 수집을 위하여 백성의 田結(民結)에다 일률적으로 배정하여 백성들에게 심한 고역이 되었다. 그리하여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풀을 거두지 않고 관에서 자체조달하도록 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57).

706) 馬芻는 生芻 또는 풀이라고도 하였다. 한마리의 말이 매일 풀을 10여단(束) 정도 먹었다고 한다(同上).

707) 고을을 대·중·소로 나누는 기준은 뚜렷하지 않으나 수령의 직급에 따라서 당상관 수령의 고을인 府·大都護府·牧을 大官이라 할 수 있다.

708) 中官은 중간 고을로서 도호부와 郡을 의미하며 小官은 작은 고을로서 縣(180개소 이상)을 의미한다.

709) 護船은 漕船(漕轉船, 稅米 등 운반선)을 호송하는 兵船인데 태종 6년 4월 倭船 18척이 전라도에서 우리 漕船 14척과 호송선 1척을 약탈하여 稅米 4,090石을 훔쳐간 일이 있었으므로 《태종실록》 권11-15, 태종 6년 4월 무진. 단종 3년 정월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경기·충청·전라도의 處置使·僉節制使·諸浦萬戶·千戶 등이 병선을 거느리고 각각 관할지역내에서 漕船을 호송하도록 하였다(《단종실록》 권13-3, 단종 3년 정월 을축). 병선으로서 漕船을 호송하게 한 이유는 倭寇나 水賊으로부터 稅米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중종실록》 권65-46, 중종 24년 5월 을묘).

에 대해서는 水軍節度使·僉節制使·萬戶가 각각 그 관할 境內에서 兵船을 거느리고 호송한다. ○ 商船⁷¹⁰은 통과하는 諸鎮의 將이 점검하여 路引(여행허가 증서)을 살펴보고 軍器를 점검하며 단독 航行을 금한다. 主鎮(절도사의 鎭營)에 보고한다.

【迎送】⁷¹¹ 原 北京으로 가는 使臣을 영접하거나 송별하는 군사(迎送軍⁷¹²)는 평안도의 正兵을, 使臣 일행이 타고갈 말이나 짐말은 각 고을의 鄉戶馬⁷¹³를 윤번으로 지정하여 보낸다. 江界·渭原·楚山·碧潼·昌城·朔州·義州·龍川·鐵山에서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 迎送軍은 使行 때마다 보내되, 送別에는 4隊, 迎接에는 2隊로 하며, 單身인 使臣으로서 方物이 없으면 영접과 송별에 모두 2隊로 한다. 遼東으로 가는 관원에게는 3개의 伍(15명)를 보낸다. 使臣 일행이 타고갈 말이나 짐말은 本道의 觀察使가 禮曹의 공문에 의거한 數대로 나누

710) 商船은 장삿배로서 간사한 倭人들에게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종 27년 6월 大船 40명, 中船 30명, 小船 20명 등으로 여러 섬의 상선의 승선인원수를 한정하였다(《성종실록》 권108-17, 세종 27년 6월 신해). 또 성종 6년 8월에는 평안도에서 상선을 이용하여 곡식을 서울 등지로 내다 팔았으므로 평안도 곡식이 거의 떨어질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상선의 왕래를 금지시키고 몰래 곡식을 내다판 당사자는 물론 처벌하고 소재지 수령까지 파직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권58-12, 성종 6년 8월 을미). 또 西南海를 왕래하는 남방의 상선은 倭船에게 침해당할 우려가 언제나 있었다(《중종실록》 권48-55, 중종 18년 7월 을해).

711) 迎送은 여기서는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나 지방으로 왕래하는 수령 및 그 가족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일을 말한다.

712) 迎送軍은 중국으로 가는 사신일행을 요동지방까지 迎送하는 군사를 의미한다.

713) 鄉戶馬는 鄉戶(향리집안)에서 鄉役으로 기르는 驛馬와 騎馬·馱馬(짐말) 등을 말한다. 북경으로 가는 사신의 행차에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鄉戶馬가 이용되었다(《성종실록》 권166-14, 성종 15년 5월 을미). 그런데 평안도에서는 원래 향리가 매우 적어서 軍戶에 해당되는 자가 鄉役(赴京使臣에게 騎馬와 馱馬를 제공하는 일 등)을 지면서 鄉戶노릇을 하는데 鄉戶와 軍戶를 兼役하는 수가 많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166-8·9, 성종 15년 5월 정미).

어 배정하며, 왕복시에 말을 부지런히 돌보고 먹이지 아니하여 죽거나 손상하게 되면 團練使⁷¹⁴에게 罪주고 그 死傷이 3필 이상이면 관찰사가 임금에게 아뢰어 正使·副使·書狀官 모두에게 죄준다. ○ 守令 및 그 家屬(가족과 기타 동거인)이 왕복할 때에 수행하는 人馬는 鄉吏⁷¹⁵·日守·官奴 중에서 (사람을) 뽑고 또 (말을) 선정한다. 守令은 본인의 품계에 따라 馬數를 정하고 家屬은 府·大都護府·牧인 고을에서는 각 20필, 都護府인 고을이면 17마리, 郡 이하의 고을이면 15마리로 정한다. 수행인원수는 말의 숫자에 따른다. 春分以後 秋分以前에는 迎接하지 아니한다.

〔增〕 북경가는 使臣이 타고가는 말과 그 짐말은, 乘用이면 驛馬를 쓰고 짐실을 경우에는 刷馬(지방에 배치된 官用馬)를 쓴다.

【路引】⁷¹⁶ 〔原〕 무릇 軍士가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714) 解說篇 12. 團練使 參照.

715) 鄉吏는 地方官員 밑에서 행정실무를 맡은 자들로서 外衙前(주 232)이라고도 하였다. 衙前(胥吏, 人吏) 중에서는 중앙관청에서 근무하는 京衙前이 있었고 外衙前 중에서도 道단위 관청에서 근무하는 營吏(監營 등의 아진)와 각 고을에서 근무하는 邑吏 등이 있었다. 또한 東班에 속하는 戶長·6房(吏房·兵房·刑房 등)官屬과 記官(書員)·色吏 등이 있었고 西班에 속한 羅將·差備軍·日守 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지방 토박이인 향리와 타지방민인 假吏 등이 있었다. 향리제도는 고려전기에 확립된 이후 갑오경장에 이르기까지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다(이훈상, 《조선후기의 鄉吏》,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1988, 박사학위논문, p.1). 고려시대의 향리는 호족적 기반을 가진 지방의 세력자였고 중앙집권정책에 따라 그 지위가 격하당하기는 하였으나 중앙관료의 공급원이었다. 麗末鮮初의 신흥사대부들도 대개 향리의 상층부인 戶長層家門에서 배출되었으나 조선왕조 건국이후 양반관료들은 자신들의 출신기반이기도한 향리들을 억압하여 신분상승의 길을 막았다(李佑成, 《韓國中世社會研究》, 일조각, 1991, pp.111~113 및 崔承熙, 〈조선후기 鄉吏身分이동여부考〉, 《金哲堧교수華甲紀念論叢》, 1981, 지식산업사, p.487). 그러나 19세기 조선말기 중간신분층의 신분상승의욕과 신학문에 대한 발빠른 접목으로 20세기초 이래 지배집단으로 올라가서 1925년에는 전국 300여명의 군수 중 무려 260여명이 향리들의 자손이 차지할 정도였다고 한다(이훈상, 위의 글). 향리들의 조직체로서는 6房중심으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作廳과 치안이나 군사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武廳, 그리고 元老鄉吏들의 조직인 安逸房(인사에 관여) 등이 있었다(이훈상, 〈조선후기 吏胥集團과 武任集團의 組織運營과 그 特性〉, 《韓國學論集》 17輯,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0, pp.179~181).

돌아갈 경우에는 兵曹에서 여행증명서(路引)를 내준다.

【驛路】⁷¹⁷⁾ 續 驛路는 大中小路로 나눈다. 大路는 京畿道

의 양재·낙생·구흥·영서·벽계·마산·동과·청교·산에·녹양·안기·양문 등이다. 中路는 京畿道の 금령·좌찬·분행·무극·가천·청호·평구·봉안·오빈과, 忠淸道の 장양·태랑·울봉·쌍수·덕류·증약·가화·토파·회동·신흥·성환·신은·김제·광정·일신·경천·평천·연원·용안·단월·황강·수산·장립·안부, 慶尙道の 료성·유곡·덕통·낙양·낙원, 全羅道の 삼례·반석·앵곡·양재, 江原道の 풍전·생창·직목·창도·신안·은계, 黃海道의 금교·홍의·금암·보산·안성·용천·검수·동선·소곶·경천·단립, 平安道の 생양·대동·안정·숙령·안홍·가평·신안·운흥·임반·차련·양책·소곶·의순, 咸鏡道の 고산·남산·봉룡·삭안·철관·양기·통달·화원·초원·봉대·평원·덕산·함원·신은·평포·오천·거산·시리·곡구·기원·마곡·영동·임명·웅평·고참·명원·수성·주촌·요참·오촌·석보·회유·풍산·력산·무안·녹야·덕명등이다. 나머지는 小路이다.

○ 각 道로 가는 奉命使臣(使客) 이하 인원은 길을

716) 路引은 속칭 行狀이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信用狀이다(《경국대전주해》상, 後集, 호전). 路引은 여행하는 군사나 상인·倭人·귀향인들에게 관에서 발급하여 주는 여행허가증 내지 통행허가증이다. 구체적으로 路引은 100리 이상 여행하는 軍·官·民 즉 휴가를 받아 귀향하는 군사나 상인·어선·商船·三浦倭人 등에게 병조에서 발급해 주었다. 때로는 기근이 들 경우에 他道 他邑으로 구걸하러 갈 수 있도록 路引을 발급하기도 하였다(《세조실록》 권8-30, 세조 3년 8월 을사). 路引에는 본인의 신분·나이·본관·휴대품의 物目과 그 수 등을 기록하였다. 路引발급의 목적은 離農과 避役을 막는데 있었으며 路引이 없는 상인의 財貨를 몰수하였다(《태종실록》 권21-9, 태종 11년 2월 임진). 태종 12년 4월에는 서북면 路引法을 만들어 牛馬를 몰래 중국인에게 파는 행위를 막고 路引이 없는 자를 처벌하였다(《위의 책》 권23-23, 태종 12년 4월 정사 및 李泰鎭·李成茂·閔賢九 외2인, 《앞의 책》 pp.282~283, p.409, p.659).

717) 驛路는 원래 중앙정부의 명령을 지방관청에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뒤에는 외국사신의 왕래, 관원의 여행 또는 부임시의 乘馬·짐말을 공급하는 시설이 되었다. 전국을 41개 驛道로 하여 모두 543驛(세종때에는 538역)이 있었으며 그 중 大路는 12역, 中路는 109역이 있었다(조병로, 《앞의 글》 pp.31~57).

나누어 往來해야 하며, 忠淸右道와 全羅右道로 왕래할 경우에는 衿川과 水原을 경유해야 하고 忠淸左道와 慶尙左道로 왕래할 경우에는 廣州와 利川을 경유해야 하며 全羅左道와 慶尙右道로 왕래할 경우에는 果川을 경유해야 한다.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觀察使가 糾擧(죄를 따져 열거함)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改火】⁷¹⁸⁾ 原 兵曹에서는 매년 4계절의 入節日⁷¹⁹⁾과 늦여름의 土旺日⁷²⁰⁾마다 나무를 서로 마찰하여 새 불씨를 만들어 헌 불씨와 바꾼다. 立春日에는 느릅나무나 버드나무, 立夏日에는 대추나무나 살구나무, 늦여름 土旺日에는 뽕나무나 산뽕나무, 立

718) 改火는 대궐안에서 나무를 서로 마찰시켜서 새 불씨를 만들어 헌 불씨와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해마다 4계절의 入節日(立春·立夏·立秋·立冬)과 늦여름 土旺日에 內兵曹(궁중에서 侍衛·儀仗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에서 나무를 비벼서 불을 새로 만들어 각 궁전으로 진상하고 각 관청과 대신들 집으로도 나누어 주었다. 각 고을에서도 이에 따라서 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59). 이와 같이 불씨를 갈아주는 행사는 周禮의 古制에 따른 것으로서 봄에는 푸른 나무, 여름에는 붉은 나무, 늦여름 土旺日에는 黃色 나무, 秋冬에는 각각 白·黑色의 나무를 사용하여 불씨를 만든다는 등 태종 6년 3월의 改火令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陰陽을 조화시켜서 疫疾의 災害를 막는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다(《태종실록》 권11-12, 태종 6년 3월 갑인). 지방에서는 성종 2년 11부터 改火法이 실시되었다(《성종실록》 권13-5, 성종 2년 11월 무신).

719) 入節日은 四時의 첫 節日, 즉 立春·立夏·立秋·立冬을 말한다. 입춘은 양력으로 2월 4일 또는 5일이고, 입하는 5월 6일 또는 7일, 입추는 8월 8일 또는 9일, 입동은 11월 7일 또는 8일이다.

720) 土旺日은 五行 중 土氣가 왕성한 날로서 봄은 입하 이전 약 18일간, 여름은 입추 이전 약 18일간, 가을은 입동 이전 약 18일간, 겨울은 입춘 이전 약 18일간이 이에 해당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60). 각 계절마다 90일 중 金·水·木·火·土의 각각 18일간씩 왕성한데 이는 五行의 相生說에 따라 土가 아니면 金이 생성될 수 없고(土生金), 물은 金에서 생겨나며(金生水) 또한 물은 나무를 생장케하고(水生木), 불은 나무에서 나며(木生火) 그리고 불은 흙을 생성(火生土)하니 흙이 만물의 생성과 지탱에 있어 근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書經》周書, 洪範 및 《六堂 崔南善全集》9, 民俗, 현암사, 1974).

秋日에는 떡갈나무나 졸참나무, 立冬日에는 해나무나 박달나무를 쓴다. 각 고을에서도 이러한 例에 의한다. 增 각 宮殿으로 單子(名目を 적은 글)를 갖추어 올리면(入啓하면) 임금에 朝臣에게 나누어 준다.

【禁火】⁷²¹⁾ 原 兵曹 · 義禁府 · 刑曹 · 漢城府 · 修城禁火司 · 五部の 숙직 관원은 순찰을 돌면서 火災를 단속(禁火)한다. ○ 대궐 안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큰 鐘을 치며 增 소라(나팔)를 부는 것으로 대신한다. 대궐에 있는 자는 달려가서 불을 끄되 將卒(武將과 兵卒)은 守直所를 떠나지 아니한다. 番을 서고 나가는 將卒은 각각 그 소속 衛에, 각 관청(諸司)의 관원은 각각 그 朝房(朝會 때 대기하는 곳)에 모이고, 각 관청의 諸員 · 匠人⁷²²⁾ · 五部の 坊里人⁷²³⁾ · 番을 서고 나가는 別

721) 禁火는 救火와 防火를 의미한다. 태종 7년 4월에는 兵船用 松木의 보호를 위하여 각 道 수령에게 禁火令을 내렸고(《태종실록》 권13-16, 태종 7년 4월 신묘), 同王 13년 12월에는 錢穀 · 軍器 · 威儀用具 등을 맡고 있는各司에서는 성실하게 夜警(坐更)을 돌면서 禁火하도록 하되 이에 위반하면 당직관에게 중벌을 내린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26-49, 태종 13년 12월 기미). 또 동왕 17년 11월에 다시 서울의各司와 지방수령에게 야간 순찰 강화와 지방창고 守直 감독 강화 등으로 禁火할 것을 지시하는 금화령을 내렸다(《위의 책》 권34-31, 태종 17년 11월 신유). 세조 13년 12월에는 救火事目을 만들어 도총부 · 병조 · 공조 · 한성부에 내렸는데 그 내용은 文書와 錢穀을 갖고 있는 諸司에서는 防火담장을 築造할 것, 滅火軍(소방군) 50인을 정하여 도끼 · 쇠갈고리 · 밧줄 등 소방기구를 주고 鍾樓에 올라가서 망보게 할 것, 諸司의 소방기계 및 숙직원들의 巡更 등에 대해서는 도총부 및 승정원에서 수시로 점검하여 살피고 또 병조 · 공조 · 한성부의 郎官들은 매계절의 끝에 禁火를 부지런히 했는가, 태만히 했는가를 자세히 적어서 임금에게 아뢰는 것 등이다. 또한 5부의 坊里에서는 大戶 · 中戶 · 小戶의 등급에 따라 일정수의 도끼 · 쇠갈고리 · 긴사다리 등 소방기구를 갖추어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며 한성부의 郎官과 5부의 官員이 수시로 점검하고 살피도록 하였다(《세조실록》 권44-52, 세조 13년 12월 임자).

722) 匠人은 각 관청(各司)에 소속되어 각종 器物을 만드는 사람이다. 29개 官司에 129종

監⁷²⁴) 및 각 差備人(임시직) 등은 모두 대궐 문밖에 가서 명령을 기다린다. 移御所⁷²⁵)에서도 이와 같다. ○ 각 관청(諸司)을 나누어 五部에 소속시키고 救火牌⁷²⁶)를 내준다. 五部內에서 불이 났을(失火) 경우에는 兵曹 · 義禁府 · 刑曹 · 漢城府 · 修城禁火司의 관원이 部에 소속된 各人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불을 끈다. 坊里人에게는 每1統마다 禁火板⁷²⁷)을 내주어서 統人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불을 끄게 한다. ○ 義禁府에서는 火災監視人(望火人)을 정하여 義禁府

2,795명의 京工匠이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兵器의 제작과 宮中·府中用의 생필품 및 장식품을 만들었다. 지방관청에서도 27종의 外工匠이 있어 각종 器物의 제작에 종사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60).

723) 五部の 坊里人이란 서울 5부에 속한 都民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서울의 행정구역은 5부로 나누었고 5부에는 都城內와 都城外 10리까지 포함되었다. 도성내에는 坊·契·洞·統의 순서로 나누었고 도성외는 坊 대신 里라 하였으므로 坊民 대신 坊里人이라 하였다(정재각, 《앞의 책》 p.525).

724) 別監은 궐내에서 잡역에 종사한 부류로서 掖庭署와 掌苑署에 속하여 각 궁전에 배치되었다. 정종 2년 11월 門下府郎舍 孟思誠이 內侍別監으로 청렴·근실·단정한 자를 임명하도록 건의하였다(《정종실록》 권6-7, 정종 2년 12월 계유). 세조 원년 11월에는 大殿과 각 嬪宮에는 掖庭署 소속 별감인, 中宮·東宮에는 慶昌府 소속 별감인, 上王殿·大妃殿에는 上林園(뒤의 掌苑署) 소속 별감이 배치되었으며 1년 양 都目에서 교대로 체아직에 임명되었다(《세조실록》 권2-42, 세조 원년 11월 갑신). 그러나 그 후 별감은 掌苑·掖庭 兩署로 분속된 것으로 보인다. 장원서 소속 별감은 苑內의 花果·禽獸 등을 재배·사육하는데 따른 잡무에 종사하였으며 그 중에서는 所掌의 잡직 체아직에 差任되기도 하였다(한우근 외4인, 《앞의 책》 p.139).

725) 移御所는 임금이 경복궁 또는 창덕궁과 같은 本宮을 떠나서 임시로 거처하는 離宮(仁慶宮·慶運宮 등 非常住別宮)이나 私家를 의미한다. 임진왜란 직후 궁궐이 타서 임금이 10여년간 私家에 머물렀는데 이를 時御所라고도 하였다(《增補文獻備考》 권38-33, 輿地考 26, 宮室附歷朝營繕).

726) 救火牌는 각 관청의 관원에게 발급해준 消火牌이다. 그 당시는 소방요원이 따로 없었으므로 모든 관리와 都民(坊民)이 달려가서 분담구역에서 불을 끄도록 하였는데 이 때 도적들이 消火를 핑계로 도적질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화에 종사하는 관원임을 증명하는 牌가 필요하였다(《서울 600년史》 권1, 서울시, 1977, pp.418~428).

727) 禁火板은 화재시에 불을 끄는 都民(坊里人)임을 증명하는 板이다. 1통마다 禁火板 한개씩을 발급하였는데 이것도 화재시에 도적을 예방하기 위한 신분증명이 목적이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61).

의 羅將과 司僕寺 및 軍器寺의 奴子 각 1명을 정한다. 항상 鐘樓에 올라가서 망을 보게 하되 離宮⁷²⁸⁾이나 관청건물에서 불이 나면(失火) 종을 치고 私私家屋이 連燒할 때에도 종을 친다. 都摠府에서는 즉시 임금에게 보고하여 部將으로 하여금 入直한 歩兵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불을 끄게 한다. ○ 바람이 어지럽게 불면 修城禁火司는 坊里의 各戶로 방울(鐸)을 흔들고 다니면서 순찰 경계하여 火災에 대비하도록 한다. ○公私건물이 있는 각처에는 모두 貯水用 구덩이를 파고 防火用 흙더미와 소화기계를 비치한다. ○ 宗廟⁷²⁹⁾ · 永寧殿⁷³⁰⁾ · 文昭殿⁷³¹⁾에

728) 離宮은 보통 行宮이라고도 하는데 임금이 巡幸할 때에 거처하기 위한 별장이다. 고려시대에도 離宮이 있었으며 조선 정종은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 양주땅에 離宮을 지어서 연희궁이라 하고 거처하였다(《增補文獻備考》 권37-14, 輿地考 25, 歷代宮室 및 권38-22, 輿地考 26, 本朝宮室). 여기서는 임금(또는 上王)이 常住하는 本宮 이외의 서울 소재 여러 別宮을 의미한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61).

729) 宗廟는 先王의 영혼을 祭祀하는 王室의 사당으로서 국가의 祀典에서는 社稷에 대한 제사와 함께 大享祀(하늘에 대한 제사는 祀, 땅에 대한 제사는 祭, 人鬼에 대한 제사는 享)였다(《대전회통연구》 호전·예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p.191-192). 조선왕조는 제후국임을 자처하여 5廟制를 취하였으므로 태조를 중심으로 2昭2穆제였다. 태조 3년말에 한양(서울)에서 착공하여 태종 5년에 완공되었으며 왕궁의 정면 좌측에 건립된 것이다(한우근 외4인, 《앞의 책》 p.115).

730) 永寧殿은 종묘에서 모시는 代가 끝난 선왕의 神主를 봉안한 別廟로서 종묘 서쪽에 있다. 세종 3년 정종의 신주를 새로 종묘에 모시면서 목조의 신주를 옮길 때 別廟를 세워 永寧殿이라 하였다(《세종실록》 권12-25, 세종 3년 7월 무인 및 《대전회통연구》 호전·예전편, 앞의 책, p.191). 春秋孟月上旬 및 납일(동지가 지난 후 세째 戊日)에 大享이 거행되었다(이성무 외4인, 《앞의 책》 p.411).

731) 文昭殿은 조선전기 경복궁내에 있던 原廟이다. 原廟는 역대 임금들의 연고지에 특별히 세우게 되어 있었으며 漢高祖를 추모하는 뜻에서 沛宮을 제2의 廟로 만든데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며 조선시대의 原廟는 이를 모방한 것이라 한다(《연려술기술》 별집1, 祀典 典考 原廟). 文昭殿의 原名은 仁昭殿이라 하며 태조 7년 11월에 韓氏를 신의왕후로 追尊하여 別殿에 모시고 이를 仁昭殿이라 하다가(《태조실록》 권15-9, 태조 7년 11월 계미) 태종 8년 8월에 文昭殿으로 바꾸어 職官을 두고 매일 3인씩 入直侍衛케 하였다(《태종실록》 권16-8, 태종 8년 8월 신

는 그 官員이 巡察을 行하여 화재를 단속하고 바람이 어지럽게 불면 提調⁷³²가 入番하며 宗親⁷³³이 巡察한다. ㉡ 지금은 폐지되었다. ○ 宮城⁷³⁴과 宮牆⁷³⁵의 4方

축). 세종 14년 10월에는 새로 건립한 원묘를 또한 문소전이라 하고 그 이듬해에 舊문소전에 모셨던 태조兩位와 廣孝殿에 모셨던 태종양위의 位牌를 새 문소전으로 모셨다(《세종실록》 권 58-10, 세종 14년 10월 갑인 및 권60-13, 세종 15년 5월 을묘). 同王 15년 3월에는 禮曹의 啓에 따라 문소전의 行祭時期와 節次를 정하였다(《위의 책》 권59-48, 세종 15년 3월 무진). 문소전의 제사는 임진왜란 때까지 지속되다가 亂中에 神主를 땅에 묻고 피난간 이래 제사가 폐지되었다. 기타의 원묘로서는 성종 2년에 설치된 德宗의 원묘인 의묘(延恩殿—명종 때에는 仁宗의 위패를 봉안)와 태조의 古宅이었던 威興 本宮과 桓祖의 고택이었던 永興 本宮이 있었다(태조와 그의 4祖를 봉안). 이 두 本宮은 韓末까지 존속되었다(이성무 외4인, 《앞의 책》 p.420).

732) 提調(제주)는 한 官司의 일을 調和(提舉調和)한다는 뜻이다(《경국대전주해》상, 후집, 이전). 提調는 堂上官으로서 無堂上인 衙門을 兼攝하는데 정1품인자이면 都提調, 종1품이하 종2품인자이면 提調, 정3품 堂上인 자는 副提調라 한다. 都提調는 承文院과 巡禁司(의금부) 이외에는 해당 관청에 출근하지 않으나 提調로 하여금 출근하도록 해서 소관관원의 근무상태를 살펴서 殿最(근무성적평정)할 때에는 都提調·提調가 함께 의논한다(《태종실록》 권27-42, 태종 14년 6월 임자 및 《성종실록》 권62-5, 성종 6년 12월 무자). 提調는 소관 官司에 상근하면서 그 관청의 운영을 감독하고 그 관원의 근무성적에 관해서는 소속 曹의 堂上官과 함께 평정하는 등 소관 관원을 단속한다. 대개의 無堂上衙門에는 1인 이상의 提調가 배치되어 있으나 通례원·세자시강원·宗學·典設司·풍저장·광흥창·내수사·사은서·의영고·장흥고·양현고·四學·五部 등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 無堂上衙門에서는 보통 수석관원(行首)이 장관이 되나 提調가 있는 경우에는 그 提調가 장관이 되고 祿官인 行首가 佐貳官이 된다(《세종실록》 권68-35, 세종 17년 6월 갑자). 기타 國葬都監·山陵都監·刊經都監 등 임시 관사에 提調가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성종실록》 권4-20, 성종 원년 4월 무오 및 한우근 외4인, 《앞의 책》 pp.86~87).

733) 宗親은 임금의 同姓(宗)親族(父黨)을 의미하는데 玄孫 이내의 친족을 「在內」(宗代未盡)라 하여 일반 종친(임금의 玄孫밖에 나간 자)과 구별한다. 태종 7년 정월에 更定된 百官祿科에 의하면 1科에 在內大君 政丞, 이상 祿米 100石 紬布正布 모두 32필, 2科 在內 諸君 議政府贊成事, 이상 녹미 90石 紬布正布 모두 27필·····18科 宗9품 祿米 14石 正布 4필, 權務 녹미 9石 正布 3필로 규정하여 在內君 이상은 1품 관원과 같이 처우하였다(《태종실록》 권13-2, 태종 7년 정월 신미). 그러나 태종 17년 12월에 祿科를 詳定할 때에는 宗室諸君의 祿科는 모두 散官에 따라서 지급하되 대군에게는 제1과에다가 3石을 더 주도록 하고 異姓諸君은 모두 實職에 따른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34-41, 태종 17년 12월 정미).

734) 宮城은 서울 都城(경성)안에 있는 궁궐(경복궁)을 둘러싸고 있는 城인데 둘레가 1,813步이고 높이가 21자 1치이다. 궁성의 남쪽 대문은 광화문(정문), 북쪽에 神武門, 동쪽에 建春門, 서쪽에 迎秋門이 있다. 서울 都城은 태조 5년에 돌로 쌓아 만든 것을 세종 4년에 개수하였는데 둘레가 9,975步 높이가 40자 2치였다. 도성에는 4大門과 4小門이 있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15, 京都上 城郭, 京城 및 宮城).

100尺 이내에는 사람들이 집짓는 것을 **禁한다**. 창고는 30척으로 제한하되 모두 布帛尺⁷³⁶⁾을 쓴다.

續 기와집 3間 이상, 초가집 5間 이상의 家屋에 불이 났을(失火) 경우에 人定에서 罷漏까지는 화재 즉시 임금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사람과 동물이 傷하게 되었으면 비록 1間的 火災라도 역시 임금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雜類】⁷³⁷⁾ **原** 雜類人(雜職人)을 선정하여 일을 맡기는데(差定)에는 差等이 있다. 守陵軍은 先王陵과 先后陵에는 각 70인을 差定하되 服 입을 親代가 다하여 사당을 옮길 경우(親盡遷廟⁷³⁸⁾)에는 5인으로 한다. ○ 守墓軍은 先后 및 王妃의 부모묘에는 각 2인으로 하되 服 입을 親

735) 宮牆은 임금이 상주하던 경복궁 이외의 諸宮이나 時御所의 담장을 의미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타버린 후에는 역대의 임금들이 창덕궁을 비롯한 제궁을 옮겨다니면서 거쳐하였으므로 궁성과 궁장은 혼칭되었다. 그러나 보통은 궁장으로 창덕궁의 담장을 지칭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22 및 《萬機要覽》軍政篇2·3,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宮牆把守字內 및 宮城把守字內).

736) 布帛尺은 黃鍾尺에다 대비하면 포백척 1자는 황중척으로 1자 3치 4푼 8리이며 周尺 1자는 20.7cm(《대전회통연구》 호전·예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4, p.19)이고 또한 황중척으로 6치 6리이므로 약 46cm가 된다(《위의 책》, 한국법제연구원, p.40에서는 45cm).

737) 雜類는 원래 궁중과 관청에서 잡역에 종사하던 말단 吏屬이었으나 후대에는 잡다한 賤役に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雜類로서는 驅史·丁吏·房子·所由·注衣 기타 등이 있어서 세습되는 신분이었으나 무신란 이후에는 品官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홍승기, 〈고려시대의 雜類〉, 《역사학보》57집, 1973, pp.59~96). 그러나 그들은 고려말기부터 다시 吏職만 답습하게 되었고 조선시대에 이르면 잡류를 더욱 천시하였다. 守陵軍·守墓軍·壇直·堂直·津夫·氷夫·水夫·藥夫·漁夫 등이 이에 소속되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662).

738) 親盡이란 제사지낼 代數가 다했음을 말한다. 《경국대전》 예전, 奉祀條에 의하면 임금은 4대, 6품 이상의 문무관은 3대, 7품 이하관은 2대, 庶人은 부모만을 제사지내도록 되었으므로 親盡도 신분에 따라 4대·3대·2대·1대를 지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중엽 이후에는 4대봉사가 관례화 하였으므로 親盡도 4대가 지난 5대를 의미하게 되었다. 親盡이 되면 종묘에서는 神主를 永寧殿으로 옮기고(遷廟), 사대부집의 家廟에서는 제사지낼 대수가 끝나지 않은 傍孫집으로 순차를 옮겼다가 그 대수가 모두 끝나면 墓所에 묻는다(同上).

代가 다하면 差定하지 아니한다. ○ 고려 太祖陵⁷³⁹의 守陵軍은 3인으로 하고 顯宗·文宗·忠敬王의 陵⁷⁴⁰에는 각 2인으로 하며 箕子墓⁷⁴¹에는 1인으로 한다. ○ 胎室의 看守軍⁷⁴²은 선왕과 선후의 태실에는 각 4인으로 하고 服 입을 親代가 다하면 2인으로 하며 大殿(왕)과 王妃殿의 태실에는 각 8인, 왕세자의 태실에는 4인으로 한다. 諸壇直⁷⁴³과 諸堂直⁷⁴⁴은 각 1인으로 한다. ○ 津夫(나루의 뱃사공)는 大路에는 10인으로 하되 한강나루⁷⁴⁵와 노량진나루⁷⁴⁶ 및 三田渡나루⁷⁴⁷에는 10

739) 고려태조 왕건(877-943)의 陵은 개성 송악산 서쪽 파지동에 있으며(《증보문헌비고》 권 70-11, 禮考, 山陵) 그의 사당은 경기도 마전군 서쪽 5리에 있다(《위의 책》 권64-13, 禮考 崇義殿). 前朝의 始祖를 예우하기 위하여 수릉군 3인을 두어 지키도록 하였다.

740) 현종(재위:1009-1031)·문종(재위:1046-1083)·충경왕(원종, 재위:1259-1274) 등은 고려 임금 중에서 나라에 공이 크다고 하여 태조의 사당인 崇義殿에 함께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며 그들의 陵에는 수릉군 각 2인씩 差定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현종의 룡은 개성 송악산 서쪽에 있고 문종의 룡은 개성 佛日寺 남쪽에 있으며 충경왕의 룡은 개성 북쪽 15리에 있다(《증보문헌비고》 권70-11·12, 禮考, 山陵 및 권64-13, 禮考, 崇義殿).

741) 箕子墓는 평양성 북쪽 토산에 있다. 순조 24년(1824) 룡으로 고쳐 불렀다(《위의 책》 권 70-4·5, 禮考, 山陵). 또 기자를 모시는 사당은 崇仁殿으로 평양성 밖에 있다(《위의 책》 권 64-9, 禮考, 崇仁殿). 과거에는 箕子東來說을 믿었으나(조선전기 이래의 동몽선습에서 19세기 후기의 개화기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쓰여있다) 지금은 중국에도 기자묘가 있다는 설도 있고 또한 동래설 그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여하간 조선시대의 지배층이었던 儒者들에 의하여 기자는 숭앙되었고 따라서 그 묘에는 1인의 守墓軍을 두어서 지키도록 하였다.

742) 看守軍은 임금이나 왕후 또는 왕세자의 胎室(胎를 모은 장소)을 지키는 雜類이다. 왕자가 태어나면 日官이 吉地를 골라 태반에 약을 묻혀서 독에 넣고 石室을 만들어 安胎使로 하여금 매장케한다. 왕비의 것은 妃가 된 후에 전일 매장한 것을 옮겨서 봉안한다(정재각, 《앞의 책》 p.526).

743) 壇直은 나라의 제사를 위하여 서울과 지방에 설치한 壇을 수호하고 관리하던 잡류인데 守陵軍·守墓軍·看守軍·堂直과 같이 그들은 役務로서 身役(軍役)을 대신하였다. 壇은 서울에는 先農壇을 비롯한 20여개소가 있고 지방에는 성황단을 비롯하여 명산·대천에 다수 있다(《증보문헌비고》 권61·62, 禮考, 禮壇).

744) 堂直은 堂을 수호하고 관리하던 잡류이다. 堂은 壇과 같이 나라의 제사를 위하여 서울과 지방에 세웠던 祠堂을 의미한다. 堂은 壇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신 세웠으며 堂直은 壇直이와 그 기능이 비슷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64).

745) 한강 나루는 서울과 용인간의 통로로서 豆毛浦와 西水庫 사이에 있다. 고려때에는 沙平渡라 하였고 속칭 沙里津이라 하였다. 처음에는 渡丞을 두었고 뒤에는 別將을 두어 행인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세금거두는 관할은 압구정·두모포 몽뢰정·서빙고였으며 훈련도감 소속의 배가 10척 있었다(同上).

746) 노량진 나루는 서울과 시흥간의 통로이다. 처음에는 渡丞을 두었고 뒤에는 別將을 두어 행인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세금을 거두는 관할은 신촌리·사촌리·곽계·형제정계·마포강이었다. 소속된 선박은 금위영의 배 10척이었다. 津과 渡는 강폭의 넓고 좁은데 따른 구분이며 渡는 濟·過라고도 하였다(同上).

747) 三田渡나루는 현재 강동구 잠실동에 있었던 渡船場이며 서울과 광주간의 통로로서 잠실대

인을 더하며 中路에는 6인, 小路에는 4인으로 한다. ○ 水夫(뱃사람)는 船 2척마다 3인으로 하고 氷夫는 동빙고⁷⁴⁸)에 10인, 서빙고⁷⁴⁹)에 40인을 差定한다. ○ 藥夫⁷⁵⁰) (약캐는 인부)는 牧 이상에는 5인, 都護府에는 4인, 郡에는 3인, 縣에는 2인을 差定한다. ○ 漁夫는 200인으로 하되 良人과 賤人을 가리지 아니한다. ○ 雜色軍은 定數가 없고 錄事⁷⁵¹) · 書吏⁷⁵²) · 諸員⁷⁵³) · 畫員⁷⁵⁴) · 道流⁷⁵⁵) · 書題⁷⁵⁶) · 僕

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에 있었다. 세종 21년 7월에 신설된 것으로 교통량이 급증하자 한강의 나룻배 1척과 사재감의 배 2척 및 한강 津尺 5인과 洛河津尺 5인을 여기에 소속시켰다(《세종실록》 권86-6, 세종 21년 7월 계축).

748) 東水庫는 얼음의 채취·보존·출납을 맡아보던 곳으로서 《경국대전》에서는 빙고가 종5품 아문이었으나 《속대전》에서 수석관료인 別坐(종5품)가 삭감되어 사실상 종6품 아문이 되었다. 《대전통편》에서는 수석관료인 別提(종6품) 2인을 두어 東西水庫에 각 1인씩 배치하도록 하였다. 《대전회통》에서는 명실상부하게 종6품 아문 속에 넣었다. 동빙고는 태조 5년 豆毛浦(현 옥수동)에 두었으며 연산군 10년에는 서빙고 남쪽으로 옮겼다. 동빙고의 貯水量은 10,244丁으로 각종 祭享에 사용하였으며 두모포 앞 저자도 사이의 얼음이 두께 4寸 이상 되면 奉常寺의 주관하에 채취하여 藏水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65 및 《증보문헌비고》 권 223-9, 職官考 水庫).

749) 서빙고도 동빙고와 함께 얼음의 채취·보존·출납을 맡은 곳으로서 태조 5년에 한강변 屯智山 밑에 설치하였다. 서빙고의 貯水量은 134,974丁이며 얼음창고도 8동이나 되었다. 얼음을 저장할 때에는 軍器監·군자감·예빈시·내자시·내섬시·사섬시·사재감·제용감 등에서 각각 주관하였다(《위의 책》 권223-10, 職官考 水庫). 저장된 얼음은 궁중의 각 殿·宮과 각 관청에 공급되고 또 백관에게도 나누어 주었으며 活人署의 病人과 의금부·전옥서의 죄수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65).

750) 藥夫는 약초를 채취하는 人夫로서 각 고을마다 지정된 雜類이다. 약부는 약초채취로서 身役(군역)을 대신하였다. 고려시대에는 注藥·藥龍이라는 採藥담당자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태조 2년에 처음으로 採藥丁夫를 각 지역에 差定하였으며 藥夫라는 호칭은 세조때부터라 한다(同上).

751) 錄事는 경아전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上級吏胥로서 議政府·각曹·中樞府·宗親府·敦寧府·忠勳府·儀賓府·耆老所 등 고위 관청이나 議政·領中樞·大君·王子君·領敦寧 등 고위 인사에게 배속되어(《대전통편》 吏典 경아전) 실무를 맡았다. 녹사는 고려시대와 조선국초에는 8·9품의 품관이었으나(《태조실록》 권1-48, 태조 원년 7월 정미 및 《태종실록》 권27-4, 태종 14년 정월 계사). 세종 21년 4월 의정부에서 啓하기를 녹사는 원래 都堂(의정부)의 吏로서 《經濟六典》 元典에서는 모두 都評議使司에 속하였다고 하였다(《세종실록》 권85-4, 세종 21년 4월 경인). 세조 12년 정월의 관제개정 때 의정부 녹사를 司錄으로 개칭하고, 濟用監·軍器寺·軍資監 등에서는 녹사를 혁파하여 判官·主簿·副奉事·參奉 등을 增置하였으며 尙瑞院에서는 녹사를 副直長으로 고쳤다. 그리하여 녹사는 그 후 새로 생긴 것으로서 그 호칭이 같아도 품관이 아닌 고급아전으로 되었다(《세조실록》 권38-4·5·6, 세조 12년 정월 무오). 세조 8년 당시의 土官 중에서도 錄事(정·종9품)와 副錄事(종9품과 權務)가 있었으나 뒤에 개칭되었다. 錄事는 書吏보다 그 임기가 짧았으며 官階(資級)가 있는 자는 入屬할 수 없도록 하였다(《성종실록》 권43-8, 성종 5년 6월 계유). 녹사는 임기를 마치면 종6품으로 去官하여 수령취재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하면 京職 등에 임용될 수 있고 불합격하면 影職을 받게 되

隸757) · 각 고을의 人吏758) · 日守 · 書員759) · 醫生760) · 律生761) · 守陵軍 · 守墓軍

었다(《위의 책》 권142-19, 성종 13년 6월 정묘).

752) 書吏는 경아전으로서 각 중앙 관서와 당상관에게 배속되어 실무를 담당하였다. 중앙관료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각 관청의 실무는 경아전만이 파악하고 있어서 星湖 이익은 국가가 吏胥에게 의지하여 存立한다고 하였다(《星湖僊說》 권10, pp.49-50 人事門, 胥徒褒貶). 《경국대전주해》上 後集, 吏典에서는 書吏를 府史之屬이라 하고, 吏는 掌書者라 하며 五代時의 藩鎮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각 중앙관청에서는 書員 · 掾吏 · 書吏 · 令史 · 司吏 등의 아전이 있어 이를 典吏로 통칭하였는데 세조 12년 이후 典吏가 書吏로 단일화한 것이라 한다(한우근 외4인, 《앞의 책》 p.182). 서리는 녹사에 비하여 임기가 길며 임기를 마친 후 종7품 또는 종8품으로 去官하여 驛丞(渡丞)취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하면 임용되나 합격후 임용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서리로 근무시켜서 근무일수가 많은 순서대로 임명하였다. 또 서리는 각 고을의 校生 중에서 충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校生만으로는 부족하여 각 관청의 서리에 결원이 많으니 앞으로는 正兵해당자 중에서도 글을 해득하고 일을 맡길만한 자를 골라서 吏曹에 보고하도록 하여 書吏로 삼아서 각 관청에 나누어 주되 서리가 임기를 마친 후 驛丞取才시험에 불합격하면 다시 정병으로 소속시키자는 것이었다(《성종실록》 권9-5·6, 성종 2년 정월 병술).

753) 註 227(諸員).

754) 주 398(畫員).

755) 道流는 道教를 닦은 자로서 昭格署에 15인 있었으나 《속대전》에서 모두 혁파되었다. 조선 전기에 있던 道流는 雜職으로서 去官후 서반 체아직을 받았다(한우근, 이성무 외3인, 《앞의 책》 p.132 및 p.442).

756) 書題는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 吏典 京衙前에 들어있지는 않으나 錄事와 격이 거의 같은 상급서리로서 公文의 발송·접수 등 행정실무를 맡았다(한우근 외4인, 《앞의 책》 p.113).

757) 僕隸는 중앙의 각 관청에 배속된 根隨奴 · 差備奴 등 노복류이다(이태진 외4인, 《앞의 책》 p.705).

758) 人吏는 邑吏 · 鄉吏와 같은 것이다. 고려전기에는 記官 이상의 중앙 吏胥를 지칭하였으며 流品外 吏職이었으나 入仕職으로 보았다. 그러나 고려후기의 人吏는 지방의 戶長층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吏胥 모두를 지칭하였다(김광수, <고려시대의 胥吏職>, 《한국사연구》4, p.12 및 이성무, <조선초기의 향리>, 《한국사연구》5, p.74). 그러나 조선시대의 人吏는 향리만을 지칭하였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66).

759) 주 233(書員).

760) 醫生은 醫學을 배우는 生徒를 말하는데 중앙의 典醫監에 50인, 惠民署에 30인, 지방의 府에 16인, 대도호부·牧에 각 14인, 도호부에 12인, 군에 10인, 현에 8인씩 두었다(《경국대전》 禮典, 生徒). 《속대전》 예전 생도에서는 중앙의 의학생도를 증원하여 전의감에 56인, 혜민서에 62인을 두도록 하였다. 또 《大典續錄》 禮典 獎勸에 의하면 지방의 의생 중 나이가 젊고 충민하며 글자를 해득하는 자를 큰 고을(州 이상)에서 1·2명(경주는 3인)씩 5년에 한 차례 뽑아 올리도록 하였다. 《大典後續錄》 같은 條에서는 兩醫司의 의학생도 중 年少 충민자를 精選하여 각별히 가르쳐서 그 중 가장 精熟한 자는 서얼임을 막론하고 내의원에 소속시키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761) 律生은 法律學을 배우는 생도로서 중앙의 형조에 40인, 府에 16인, 대도호부와 牧에 각 14인, 도호부에 12인, 군에 10인, 현에 8인씩을 두도록 하였다(《경국대전》 예전, 생도). 《속

· 看守軍 · 壇直 · 堂直 · 藥夫 · 津夫 · 水夫 · 氷夫 · 院主 · 牧子 · 匠人 · 公賤 · 私賤 등을 이에 定屬시킨다.

續 雜類人은 他役으로 옮기거나 바꿀 수 없으며, 결원이 있으면 대신할 사람으로 충당한다. 諸驛의 日守로서 他役에 投屬한 경우에는 모두 本役으로 되돌려 보내고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守令이 驛吏의 보고(狀告)를 들어서 驛 근처의 건실한 閑丁으로 보충하여 주며 閑丁이 없으면 비록 그 고을의 日守나 軍士일지라도 뽑아서 充定한다. ○ 평안도와 황해도의 永定館軍은 他役으로 배정하지 못하며 그 자손으로서 신분 기타에 瑕疵가 없는 경우에는 文科 · 武科 · 生員 · 進士試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 正軍 및 保人 등은 水夫나 漁夫의 결원처에는 옮겨 정하지 못한다. ○ 司僕寺 諸員의 결원을 대신 충당함에는 동거하는 아들 · 사위 · 동생 · 조카로서 充差한다.

增 임금과 세자의 가마를 메는 군사(輦輿軍)는 私奴로서 充定하지 못한다.

【用刑】⁷⁶²⁾ **原** 都摠管 이하의 관원이 일응 직책상 軍務를 띠고 있는 경우에 죄를 범하면 兵曹가 임금에게 보고하여 그 죄상을 조사(擧劾)하되 임금이 궐 밖에 있을 때(行在時)에는 堂上官 · 議親⁷⁶³⁾ · 功臣 및

대전》 예전 생도에서는 중앙의 형조에 40인을 증원하여 80인이 되었다. 律生들의 주요 학습 과목은 《大明律》·《唐律疏議》·《無冤錄》·《율학해이》·《율학변이》·《경국대전》 등이었으나(《경국대전》 예전, 諸科), 《속대전》 예전, 제과에서는 율과시험에서 《大明律》·《無冤錄》·《경국대전》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였으므로 학습 또한 이들 세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762) 여기서의 用刑은 軍律위반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을 지칭한다. 軍令위반자 기타 軍法規에 저촉된 행위자는 소속 將帥가 보고계통을 통하여 임금에게 보고한 후 왕명을 받아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나 범법행위가 가벼운 경우나 임금의 行在時에는 대체로 소속 장수가 직접 형벌을 결정하여 처단하였다.

763) 議親은 《大明律》의 8議 중의 하나로서 임금의 同姓 袒免(9寸·10寸) 이상 親·外姓(王大妃·大王大妃 친정) 總麻 이상 親·왕비의 小功 이상 親·世子嬪의 大功 이상 親을 지칭한다. 8議란 評議에 의하여 형벌을 감면해주는 8개 조건을 말하는데 周禮의 8辟에서 유래하였다. 8

軍士 이외에는 杖 80 이하는 (병조에서) 직접 결정하여 처단(直斷)한다. ○ 都摠府의 大將(都摠管)도 역시 그 소관내의 범죄자를 임금에게 보고하여 죄상을 조사(擧劾)하며, 임금이 궐밖에 있을 때에는 都摠府의 大將·(五衛의)衛將·部將 등이 각각 소관내의 범죄자를 笞刑 이하는 직접 결정하여 처단하고 杖刑 이상은 임금에게 보고한다. 統將·部將 및 游軍將⁷⁶⁴·領將·衛將의 차례로 大將에게 보고하여 임금에게 아뢰며 旅·隊·伍의 보고계통도 이와 같다. ○ 將帥가 王命을 받아 外地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堂上官·議親·功臣 이외는 杖 이하의 刑을 직접 결정하여 처단한다. 諸鎮將은 笞 이하의 刑은 직접 결정하여 처단하고 杖 이상의 刑은 主鎮將⁷⁶⁵에게 보고한다. 敵과 맞선 때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임금이 대궐 밖에 나가 있을 때(行在時) 이외의 평상시에 軍令을 범하여 죽을 죄를 지은 자가 諸將이면 杖

議는 議親(황실의 일정범위내의 친척)·議故(皇家의 故舊로서 여러해 특별한 은덕을 받고 있는 자)·議功(국가에 큰 공훈이 있는 자)·議賢(큰 덕행이 있는 賢人君子로서 나라에서 특별한 恩典을 받고 있는 자)·議能(有才有能하여 王業을 보좌하고 人倫의 師範이 되는 자)·議勤(文武官으로서 부지런히 奉職하거나 외국사신으로 나가서 크게 힘쓴 자)·議貴(爵 1품 이상인 자, 문무관 3품 이상인 자, 散官 2품 이상인 자)·議賓(前代 군왕의 자손으로서 조상의 제사를 받들며 國賓의 대접을 받고 있는 자) 등이며 이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嚴封한 문서로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금의 뜻에 따라 拘引·審問한다(한우근·이태진 외 3인, 앞의 책, p.197, pp. 676~677 및 《大明律直解》名例律 권1, 8議).

764) 遊軍將은 遊軍의 지휘관(將帥)이다. 5衛→5部→4統으로 이어지는 系線組織上的 軍사(正軍) 이외에 遊軍5領이 별도로 있어서 陣中에서 대기하였는데 이들 遊軍(유격군)과 正軍의 비율은 3 : 7이다. 遊軍將은 陣法上 衛將의 왼쪽에 위치하여 領將들을 호령할 때 사용하는 5色小旗와 衛將의 호령에 응할 때 쓰는 中標旗를 각각 하나씩 갖고 있었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p.666-667 및 《문종실록》 권8-16·17, 문종 원년 6월 병술).

765) 주 167, 169 (節度使 등·主鎮) 및 解說篇 7. 外官職 參照.

60에 처하고 軍士이면 杖 90에 처한다. 평상시에 야간 숙직을 빼먹는 자 이외에는 雜犯⁷⁶⁶으로서의 형벌법규를 적용한다.

續 군인과 민간인 범죄자에 대하여 輕重에 따라 軍法(軍律)을 적용한다. 해변가의 백성으로서 중국 선박에 접촉 왕래한 자, 변방의 情勢를 거짓 보고한 자, 宿衛하는 軍兵으로서 성벽을 넘어 출입한 자, 入番하는 軍兵 쪽으로부터 賂物을 받은 자와 준 자 모두에게 군법(軍律)을 적용한다. ○ 軍兵이 도망하였을 경우 초범이면 곤장을 50대 치고 재범이면 80대 치며 삼범이면 斬首하여 그 머리를 내건다. ○ 邊將이 타인에게 얻어 맞을 때 軍官이 버려두고 돌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곧바로 군법을 적용한다. ○ 사사로이 東伍軍을 징발한 경우에는 범죄인(사적인 징발자)만을 斬首하여 그 머리를 내건다. ○ 軍門의 將領이 軍兵을 제멋대로 동원하여 郊外에서 숙박하게 한 경우에는 엄중히 곤장을 쳐서 먼 邊方에 充軍한다. 허가없이 대궐문에 함부로 들어간 下人은 衙門(관청)의 高下를 막론하고 兵曹에서 잡아들여 곤장으로 다스린다. **增** 武藝別監이 도망친 경우에는 군사훈련일(習陣日)에 白沙場에서 조리를 돌린 후(回示後)에 곤장을 50대 쳐서 먼 외딴 섬(絶島)으로 充軍하고 훈련을 꺼리어 기피한 자도 엄하게 刑杖을 쳐서 海島로 充軍한다.

增 軍務에 관한 일이나 대궐문에 허가없이 함부로 들어간 사람 이외에는 棍杖을 쓰지 아니한다. 곤장에 관한 제도는 오로지 欽恤典則⁷⁶⁷을 준수하여 시행하며 모두 버드나무(柳木)로 만들어 길이 너비(長廣)와 두께(厚薄)는 營造尺⁷⁶⁸을 써서 맞추고 그 위에는 표지를

766) 《大明律直解》 권26, 刑律. 雜犯

767) 欽恤典則은 죄수를 신중하게 처우하라는 임금의 恩典을 규정한 準則이다. 정조 원년 지방 감옥에서 私情에 따라 刑具를 가볍게 쓰거나 무겁게 쓰는 등으로 죄인을 학대하는 일이 있음을 임금이 알고 가련하게 여기어 欽恤之政을 시행케하며, 刑具를 고쳐서 바르게 하도록 王命을 반포하였는데 이듬해 정조 2년 이를 간행한 것이다(《朝鮮圖書解題》, 조선총독부, 1932, p.81).

768) 營造尺은 兵器·刑具·築城·橋梁·道路·土木·建築·선박·차량·容器 등의 제작이나 측량 등에 기준이 되는 자로서 한자의 길이가 30.71cm(민현구는 31.55cm)쯤 된다. 구리로 만들기도 하고 상아로 만들기도 하였는데 唐人들은 이를 大尺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28년 11월 新營造尺 40개를 中外에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민현구·이태진·權五榮 외2인, 《앞의 책》 p.586, p.679, p.746 및 《세종실록》 권114-18, 세종 28년 11월 무진).

새긴다(刻誌).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한다. ○ 重棍은 兵曹判書·軍門의 大將·留守·監司·統制使·兵使·水使가 사용하되 죽을 죄를 지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쓸 수 없다. 大棍은 三軍門의 都提調·병조판서·군문의 대장·禁軍別將·捕盜廳·軍門의 中軍·留守·감사·통제사·병사·수사·討捕使 및 2품 이상인 軍務使者가 사용한다. 中棍은 內兵曹·都摠府·軍門의 從事官·別將·千摠·禁軍將·左右巡廳·營將·兼營將·虞候·中軍·邊地守令·邊將·四山參軍·3품 이하인 軍務使者가 사용한다. 小棍은 軍門의 把摠·哨官·僉使·別將·萬戶·權管이 사용한다. 治盜棍은 포도청·류수·감사·통제사·병사·수사·토포사·검토포사·변지수령·변장 등이 도적을 다스리거나 邊政관계 및 松政관계로 쓰되 그 이외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雜令】⁷⁶⁹⁾ 續 각 衙門(관청)에서 收布色目⁷⁷⁰⁾을 充定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道를 거쳐서 해당 고을에 關文(지시공문)을 보내야 한다. 京衙門에서 고을로 직접 充定할 경우에는 임금에게 아뢰어 論罪한다. ○ 서울의 각 관청에서는 지방 고을로 직접 關文을 보낼 수가 없다. 그러나 비록 새로운 規定(定式)이 있어도 軍兵의 도망이나

769) 雜令은 《속대전》에서 신설한 조항으로서 중앙의 각 관청에서 직접 각 고을로 公文(關文)을 보내는데 따른 여러가지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각도를 거쳐서 지시공문을 보내도록 하였다. 또한 군병의 私兵化를 막기 위하여 군사를 사사로이 使役시킨 장수들을 파직 또는 論罪하도록 하였다. 국경지방이나 제주 등 먼 지방의 官民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었고 또한 《대전회통》에서는 새로 임명된 西班牙인 지방관들이 중앙관료에게 부임인사를 하는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770) 收布色目은 軍布를 징수하는 경우의 각종 名目이다. 조선후기 正軍·保人할 것 없이 모두 收布軍化하자 徵布에 따른 폐단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효종 2년 5월에는 서울各司의 收布之弊로서 종래 한 필이 35·6척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을 40여척으로 늘려 백성들의 원성이 많다고 하였고(《효종실록》 권6-28, 효종 2년 5월 무인), 효종 10년 2월에는 良人들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士族들에게도 軍布부담을 분담시키자는 병조의 건의가 있었으나 大臣들의 반대로 시행되지는 아니하였다(《위의 책》 권21-6·7 및 12, 효종 10년 2월 기사·경진). 현종 즉위년 10월 軍兵 중 어린이·도망자·죽은자 등으로 減布해야할 수량이 2만필이라고 하였다(《현종개수실록》 권2-3, 현종 즉위년 10월 임인).

휴가 등과 같은 사항은 이 規定例에 구애되지 아니한다. 포도청은 賊人의 체포에 관한 공문서 이외에는 지방 고을로 직접 關文을 보낼 수가 없다. 增 三軍門의 逃亡軍을 추적하여 체포하는 일, 上番軍에게 重複된 役務를 부담시켜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일, 親喪中이거나 죽은 군인을 대신하여 番을 서게 할 자를 정하는 일, 將校와 軍兵이 휴가를 받아 지방에 있을 경우 소속 부대로 돌아갈 것을 재촉하는 일, 수어청과 총융청 兩營 管下의 고을 및 군병의 屯田이 소재하는 고을에 신칙하여 명령을 거행(知委)하게 하는 일, 좌우포도청에서 도적의 情況을 譏察하여 逮捕하는 일, 戶曹에서 義州와 東萊 두 곳의 事大交隣의 외교(문서)를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일, 사옹원의 분원 및 葦魚所와 蘇魚所⁷⁷¹⁾ 두 곳에서 시급히 거행하여야 할 일, 司僕寺에서 임금이 陵幸할 때에 행차길 옆인 各驛으로 말을 더 보내줄 것을 통지(知委)하는 일과 兼監牧官이 邑과 鎭에 신칙하여 명령을 거행하게 하는 일 등에는 모두 직접 關文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 軍門의 軍士를 사사로이 使役시킨 자가 大將 및 提調이면 罷職하고 中軍 이하면 失律⁷⁷²⁾로 論罪한다. 陞戶軍⁷⁷³⁾은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있어도 軍案(軍籍)에서 삭제하지 아니하고 또한 定配하지도 아니하며 엄중히 棍杖을 친다. ○ 六鎭⁷⁷⁴⁾이나 三水 甲山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온 경우에 그가 武士이면 兵曹에 이름을 登載하여 재능을 시험 보여(試才) 給料를 준다. ○ 濟州의 武科式年 初試에 합격한 사람이 높은 功勞으로 인하여 미처 會試에 응시하려

771) 葦魚所는 응어를 진상하던 곳이고 蘇魚所는 주로 반댕이(蘇魚)를 진상하던 곳으로 경기도 안산에 있었다. 두 곳 모두 사옹원 소속기관이다(정재각, 《앞의 책》 P.529).

772) 失律에 관한 大明律의 규정은 없으나 《大明律直解》 권1 名例律, 公事失錯條를 유추하여 준용한 듯 하다.

773) 陞戶軍은 선조 27년 서울에서 砲手를 선정할 때 신체건강한 자를 뽑되 公私賤인 자는 良民戶로 승격시켜서 砲手正兵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陞戶軍이라 하게 된 것이다. 그 후 각 지방에 서도 이와 같이 하였으며 만약 그러한 正軍戶 중에서 건실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保人 중에서도 선발하여 別陞戶라 하였다(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498).

774) 6鎭은 함경북도의 경원·회령·중성·온성·경흥·부령 등으로 세종 때 설치한 鎭名이다.

오지 못한 경우에는 앞으로 당면한 庭試⁷⁷⁵)에는 또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 邊將의 자리를 기피한 자는 充軍한다. ○ 邊將이나 邊帥로서 부모 나이 75세가 된 자는 遞職(辭職)할 수 있도록 한다. 獨子로서 兄弟가 없으면 부모나이 70세를 限度로 하여 체직을 허용한다. 補 承重者이거나 형제가 있어도 남의 養子로 나갔을 경우에도 같다.

增 임금이 留宿하는 陵幸과 因山(國葬) 및 遷陵(陵을 옮기는 것)時에는 沿路 각 道の 監司는 道の 境界上에서 대기해야 한다. ○ 永付司果職⁷⁷⁶)에는 임금의 특별한 下敎(명령)가 있는 경우 이외는 임용제청(稟請)할 수 없다.

補 새로 임명된 統制使·兵使·水使·防禦使·邊地

775) 庭試는 문무과거시험 중 別試의 하나로서 임금의 즉위 이외의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시험이었다. 別試文科는 초시와 전시 두 단계만 있어서 이 때의 초시는 式年文科의 복시에 해당한다. 별시는 예고없이 실시하였으므로 지방유생에게는 응시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庭試는 본래 매년 봄·가을로 성균관 유생을 殿庭에 불러들여 시험을 보여 우수한 사람에게 殿試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점수를 주는(給分) 특별시험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선조 16년부터 독립된 과거시험으로 실시하였으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討逆科·忠良科·蕩平科 등 다양한 명목으로 시행되었다. 숙종 38년에 이르러 응시자가 너무 많아서 결국 영조 19년부터는 정시를 초시와 전시로 나누게 된 것이다. 庭試文科는 庭試文科에 대응하여 실시한 시험으로서 선조 27년 174명, 同王 30년 1073명, 同王 32년 206명, 광해군 10년 3200명, 同王 11년 100명 同王 12년 3000명, 同王 13년 4031명을 뽑은 이래 仁祖·孝宗·顯宗·肅宗·景宗·英祖·正祖·純祖·憲宗·哲宗·高宗代를 거치면서 거의 매년 적게는 몇 명, 많게는 몇백 명 또는 몇천 명씩 뽑았다(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pp.115~161 및 《대전회통연구》 예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4, p.615, 《영조실록》 권57-7·8, 영조 19년 정월 경진).

776) 永付司果職이란 장기간 체아직인 司果에 임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체아직은 단기간에만 임명되는 것이 常例이나 이와 같이 장기간 임용함에는 임금의 특별한 명령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僉使·營將 및 새로이 資級을 받아 지방 武官職으로 나가게 된 자는 현직 및 전직 大臣과 將臣·6曹의 判書·兵曹의 堂上官·郎官 등에게 찾아 다니면서 부임인사(歷辭)를 해야 한다. 兵馬 또는 水軍節度使 등은 사헌부 관료(臺官)들에게도 찾아 다니면서 부임인사를 해야 한다.

第2部

大典會通 兵典 解説

第1章 軍營 /293

第2章 武官職과 武科 및 기타 官職 /304

第3章 軍士・赴防과 保人 등 /318

第4章 軍令・標信・軍船 기타 /359

第2部 兵典 解説

第1章 軍營

1. 訓練都監과 禁衛營

訓練都監은 임진왜란 직후 砲手양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치되었던 軍營으로서 그 때 柳成龍이 壯丁 70여명을 뽑아서 明軍에 보내어 훈련시킨 바 있으며, 또 선조 26년 7월 황해도에 머물고 있던 임금은 北方에서 이미 砲手양성의 경험이 있는 李鎰을 시켜서 行在所의 武臣·禁軍·火砲匠 등을 거느리고 각종 火器 및 殺手의 技藝를 학습시켰다(《선조실록》 권40-2, 선조 26년 7월 갑인). 그 때 砲手 200명과 預差(예비포수) 50명을 閑良과 公私賤 중에서 뽑았던 것이다.

훈련도감은 창설 직후인 柳成龍과 李鎰의 포수훈련을 계기로 선조 27년 8월 임금의 지시에 따라 설치되었는데 그 무렵에 만든 훈련도감 事目에 의하면 火砲 쏘는 훈련 이외에 騎射·步射·찌르기 등 紀効新書의 각종방법으로 훈련시키도록 하였다. 임진왜란前의 主武器는 弓矢였으나 倭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銃砲와 창·칼 등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砲手·殺手が 脚光을 받게 되었다. 동시에 在來의 무기인 弓矢와 그 射手도 무시할 수는 없어서 훈련도감은 三手兵 중심으로 편제되었다.

훈련도감은 창설 직후인 선조 27년 11월 이후 동왕 28년 초에 걸쳐서 군사 훈련만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捕盜·巡綽 등을 임무로 하는 軍營에 소속군사를 배치하였고 임금의 侍衛와 外敵방비 및 지방군사의 훈련까지 감독하게 되었다. 훈련도감이 창설될 당시의 경제적 기초는 매우 빈약하였다. 唐粟米 2,000石이 財源이었으며 그것으로 軍士 1인당 하루 2升의 給料를 주었다. 이는 飢民救濟에 해당되는 분량이지 精兵養成의 財源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식량이었다. 그리하여 경기 近邑民으로서 응모된 군사 500여명이 황무지를 개간하는 등으로 財源確保를 위한 屯田耕作(《위의 책》 권46-8, 선조 26년 12월 입자 및 권49-1, 선조 27년 3월 기묘, 《선조수정실록》 권28-3, 선조 27년 2월 경술)이 추진되었고 丁酉再亂 후에는 給保문제까지도 거론되었으나 훈련도 감軍이 良賤 혼성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良人이나 士族(落講校生)들이 賤人의 保人이 될 수 없다는 주장 때문에 임금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給保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財源確保策은 屯田을 넓히는 것이었으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代案으로 三手米를 징수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선조 39년 9월 戶曹의 啓目에 의하면 경기·충청·전라·강원·황해 등 道에 논·밭을 막론하고 大小米를 1結당 1斗씩 임인년(선조 35년)부터 거두어 三手兵의 급료로 삼게 하였다(《선조실록》 권203-23, 선조 39년 9월 무자). 삼수미의 신설로 어느 정도 재원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많은 軍士(柳成龍의 목표는 10,000명이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음)들에게 충분히 급료를 줄 수 없어서 京外의 砲手를 私費資裝으로 뽑아 올리는 陞戶法이 강구되었다. 만기요람에 있는 훈련도감의 軍摠은 7,207명으로 그 중 別武士 68명, 漢旅 33명, 局出身 150명, 武藝別監 198명, 馬兵 833명, 砲手 2,440명, 殺手 738명, 諸色標下軍 1,230명, 吹手 358명, 吹鼓手 183명, 大旗手 166명, 願留軍 147명 기타 663명으로 되어 있다. 그 외 6道 陞戶가 모두 191戶이다(이상, 육군사관학교 한국軍事연구실, 《한국군제사》 근세조선후기편, 육군본부, 1977, pp.3-19 및 車文燮, 〈宣祖朝의 訓練都監〉, 《史學志》 4, 1970 과 《萬機要覽》 軍政篇 2, 訓練都監).

禁衛營은 훈련도감의 축소로 인하여 생겨난 軍營이다. 훈련도감의 축소에 관한 주장은 현종 즉위 초 西人 宋時烈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나 그 果實은 宋의 주장에 찬동한 南人들(許積, 柳赫然 등)에 의하여 얻게 되어 현종 10년 2월 訓練別隊의 창설을 보게된 것이다. 訓練別隊는 訓練都監의 常住(長番)軍兵 5,000명(후에 6,000명)과는 달리 어영청의 예에 따라 番上兵(6,665명이 13番으로 하여 每番 512명)으로 발족하였는데 후에 그 인원이 13,700명으로 늘어나서 4部 13番으로 나누어 1番에 1,000여명(10哨)으로 하였다. 즉 訓練都監의 軍兵이 都城常住의 給料兵인데 비해서 訓練別隊의 軍兵은 番上兵이었고 番上制 軍營이 더 나은 제도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 다음 병자호란 이후 경기지방

의 騎兵과 步兵이 精抄되어 番上宿衛의 임무가 주어졌던 精抄軍도 이 때에 크게 발전하여 현종 4년 8월 1番에 200명(중전 148명)으로 되었다가 同王 9년 12월에는 1番에 500명씩 番上시키되, 正軍(正兵) 4,440명, 資保(正兵의 番上往來경비 부담자) 4,440명, 官保(正兵의 番上(滯京) 중의 비용을 軍營에 납부하는 자) 10,511명의 규모가 되었다. 이 때의 精抄軍은 경기 이외의 인원으로도 충원하였으며 精抄廳이 신설되어 그 大將은 병조판서가 겸직하였던 것이다. 同王 14년에는 資保 중에서 1,220명을 正軍으로 陞戶作隊하여 10哨를 늘여서 총래 40哨 8番의 正軍을 50哨 10番으로 하여 番上시켰다. 또한 資保 중 나머지 3,220명을 모두 收布保人(官保)으로 돌리고 50哨의 정군 각자가 새로이 자신의 資保를 확보하여 充定하도록 하였다(《萬機要覽》 軍政篇, 〈禁衛營設置沿革〉). 숙종 원년 정월 精抄廳이 혁파되어 精抄軍은 兵曹직할로 되었다. 동왕 3년 5월 남인계의 訓練別隊 正軍을 10,000명으로 줄이고 서인계의 精抄軍을 3,000명으로 줄였으며 西人政權下였던 同王 8년 3월 이 두 軍兵을 합쳐서 禁衛營을 만들었던 것이다. 禁衛營의 대장은 병조판서가 의례히 겸직하도록 하였지만 兵判 金錫胄가 右相이 된 후에도 금위대장을 겸직하였다. 숙종 8년 3월 갑자에 兼兵曹判書 金錫胄가 올린 軍制變通節目에 의하면 訓練別隊의 正軍에다 훈련도감에서 넘어온 707명을 합한 수는 13,949명으로 이를 4部 16司 80哨(10,748명)로 편성하고 남는 正軍數 3,201명을 그 資保와 함께 保人(官保)으로 降定하고(6,402명), 精抄軍 3,773명은 이를 1部 25哨(3,350명)로 편성한 후 남는 인원 423명을 그 資保와 함께 保人(官保)으로 降定하며(846명), 精抄軍의 保人 11,628명에다 元軍 및 資保 降保者 846명을 합친 수 12,474명 중 6,595명만 금위영에 소속시켜 納米하도록 하고, 나머지 5,879명은 兵曹에 還屬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訓練別隊와 精抄軍의 두 軍兵을 합쳐서 만든 금위영의 正軍數와 資保數는 각각 14,098명씩이고 保人(官保)수는 54,097명이었으며, 이들 正軍은 10番으로 나누어 윤번제로 두 달씩 上番하게 하였다(육군사관학교 한국軍事연구실, 앞의 책, pp. 138~153 및 《숙종실록》 권13상-18, 숙종 8년 3월 갑자와 金甲周 〈朝鮮後期保人研究〉, 《國史館論叢》 17輯, 1990 p.181).

2. 御營廳

御營廳의 신설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仁祖反正 직후 親明排金(淸)策을 내세운 西人政權은 敵侵時에 國王親征을 하기 위하여 임금이 開城에 나아가 抗戰하다가 勢不利하면 江都로 退陣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한 계획하에서 反正功臣인 李貴를 開城留守 겸 禦戎使에 임명하였으므로(《인조실록》권3-39, 인조 원년 11월 경오) 이귀는 개성에 가서 임금을 호위할 精銳兵 260여명을 모집하였다. 그 후 임금이 개성으로 親征하지 않았고 또한 개성유수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였음에도 여전히 이 兵力에 대한 통솔권은 이귀가 갖고 禦戎使란 호칭을 御營使로 바꾸고 副使에 개성유수를 임명하여 지속적인 募兵의 임무를 맡겼다(《위의 책》권4-2, 인조 2년 정월 정묘). 그리하여 독립된 軍營이 생겨났다. 인조 2년 정월 李适의 亂이 일어나자 御營軍은 訓練都監軍과 함께 扈駕의 임무를 맡아 공주까지 내려갔다. 인조의 공주 滯在時 호위병력의 증강을 위하여 인근 고을의 山尺砲手를 精抄(大邑 7명, 中邑 4명, 小邑 2명)하여 약 600여명의 軍士를 증원하여 1,000명이 되었고 이를 兩分하여 一番에 500명씩 교대로 하여 侍衛의 임무를 맡겼다(《인조실록》 권6-48, 인조 2년 8월 경술) 및 《顯宗改修實錄》 권10-9, 현종 4년 11월 무인). 또 御營軍士는 良人에게는 保人 1丁을 주었고 賤人에게는 잡역면제(復戶)의 혜택을 주었다(《인조실록》 권16-16, 인조 5년 4월 계해). 훈련도감에서는 西北邊으로의 砲手入防(파견)이 자주 있었으나 어영군은 摠戎軍과 마찬가지로 西北赴防이 면제되었다(《인조실록》 권6-44, 인조 2년 8월 갑오 및 《같은 책》 권7-56, 인조 2년 12월 정미와 《같은 책》 권9-48, 인조 3년 8월 임진). 丁卯胡亂時에 國王의 호위병력인 어영군(李貴)은 摠戎軍(李曙)과 함께 都體察使(張晩·李元翼) 및 副體察使(金塗)의 지휘권 밖에 있었다. 흔히 李貴·李曙系를 少西, 金塗·金自點系를 老西(이원익은 南人)라 하는데 老·少西 兩系의 軍權을 둘러싼 대립은 상당히 심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인조 11년 이귀의 病死와 이서의 病中으로 인하여 守禦使 李時白이 金塗에게 곤장을 맞는 등으로 金塗의 都體察府의 軍士가 모든 軍營에 미친듯 하였다(육군사관학교 軍事연구실, 《앞의 책》 pp.91~97).

御營軍은 정묘호란 중 水原軍 및 訓練都監軍과 함께 임금의 호위 병력으로 江都에 들어갔으며 亂中·亂後에 모집을 계속하여 인조 13년경에는 6,200여명

으로 확대되었다. 처음 江都入據時에 自願扈駕한 私砲手 920여명을 임금은 어영군으로 흡수하려 하였으나, 金瑬는 그들 포수를 모아서 별도의 部隊를 만들고자 하였다(《인조실록》 권16-5, 인조 5년 4월 무술). 그리하여 위 포수들은 體府衛兵이라 하여 도체찰사 소속이 되었지만 후에 어영군 소속으로 되었다. 인조 6년 이귀의 病辭로 어영군은 이서가 督察하게 되어 위 體府衛兵 920여명 이외 어영청에서 직접 모집한 인원이 同王 13년경에는 5,250여명이 되어 이들 6,170명의 軍士를 番次로 나누어 정기 上番하도록 하였다. 즉 이들 軍士를 8番으로 나누어 2番씩 番上시키되, 冬期에만 番上하였으므로 각 군사는 1番에 780명씩 4년마다 75일간 番上扈衛하였던 것이다. 어영군의 主力은 본래 砲手였지만 胡亂 後 殺手도 양성하였다(육군사관학교 軍事연구실, 《앞의 책》 pp.97~99).

어영군의 신분은 武學·別侍衛·忠贊衛·忠翊衛·壯勇衛 등을 비롯하여, 騎·步·正兵 및 그 保人 또는 砲保 등과 樂生·醫生·日守·烽燧軍·역리·향리 등 다양하였다. 어영군은 병자호란 후 親淸의功西세력이 우세해지면서 金自點이 장악하게 되며 인조 17년 7월에는 7,009명이 되었고 이를 3년 1次로 하여 1番次에 1,100여명씩 番上시키도록 하였다(《인조실록》 권39-6, 인조 17년 7월 병자). 그 후 同王 22년 3월 沈器遠의 逆謀事件과 그 이듬해의 昭顯世子の 毒殺 등(모두 金自點의 음모설 有)으로 親淸의인 功西派인 金自點이 계속 발호하였으나 孝宗의 즉위와 反淸의山林의 진출로 그는 몰락하였다(육군사관학교 軍事研究室, 《앞의 책》 pp.99~121). 그 다음 一營五部制란 어영청을 1營으로 하되 5部로 나누며 각 部는 5司로 각 司는 5哨로 나누는 편제이다(정재각 외3인, 《앞의 책》 p.377). 인조대의 어영군 총수 7,000여명은 효종 3년에 3배 증가하여 21,000명이 되었다. 또 종래의 겨울 3개월만의 番上制(4·5년에 한번씩 番上)가 폐지되고 1番에 1,000명씩 6番으로 나누어 매년 2개월씩 연간 6,000명이 3년반에 한 차례 番上하도록 하였다(《효종실록》 권8-84, 효종 3년 6월 기사). 保人은 資保 1인과 官保 2인씩을 주었다. 숙종 30년 어영청은 금위영과 같이 5部 25司 125哨로 되었고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한 三軍門體制가 되었다. 番上은 종래 1番에 10哨씩 2개월이던 것을 숙종 30년에는 125哨의 군사를 25番으로 나누어 1번에 5초씩 2개월 번상시켰으므로 4년에 1번 번상하였다(육군사관학교 軍事研究室, 앞의 책, pp.169~171).

3. 摠戎廳

摠戎廳은 李适의 亂 때 방어군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기監司 李曙와 수원府使 李興立 등의 경기군사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만든 軍營이다. 이괄의 난 직후인 인조 2년 5월 李曙는 「京畿諸邑軍兵 次知堂上」이란 직함을 갖게 되고 다음 달에는 이 직함이 「畿輔摠戎使」로 개칭되어 그가 관할하는 경기군을 「摠戎軍」이라 부르게 되었다(《비변사등록》 3冊, 인조 2년 6월 13일). 인조 2년 11월의 실록기사에 나타난 長湍鎭管(소속 6邑)의 병력은 正軍(正兵) 565명, 束伍軍 1,541명, 別隊馬軍 315명, 도합 2,421명이었고, 楊州鎭管(소속 7읍)의 병력은 正軍 308명, 束伍軍 1,292명, 別隊馬軍 184명, 도합 1,784명이었다(《인조실록》 권7-33, 인조 2년 11월 기미). 이들 병력을 4部로 나누어 각 부에 千摠이하를 두었으며 수원소속의 각 읍 병력은 點閱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 숫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同上). 廣州鎭管 소속 병력도 기록상 찾을 수가 없다. 摠戎使 소관인 경기도내 四鎭管 소속 각 읍의 軍兵은 처음에 5營으로 하여 每營에 3部, 每部에 3司, 每司에 3哨로 편성하였으나, 그 후 每營에 3部, 每部에 2司, 每司에 5哨로 하고 每司의 中哨는 馬軍으로 하여 7營으로 하였는데(《같은 책》 권8-5, 인조 3년 정월 무오) 여하간 총융군 총수는 약 2만명이었다(《같은 책》 권7-40, 인조 2년 11월 정축). 7營制下에서는 每營 3部라면 21部이나 실제상 12部였으므로 모두 123哨였다는 것이다(육군사관학교 한국軍事연구실, 《앞의 책》 p.84). 총융군사에게 지급할 무기로서 인조 2년 5월 일본에서 구입한 鳥銃 2,000자루와 활 3,000개를 내렸고(《비변사등록》 3冊, 인조 2년 5월 28일). 同王 3년 8월에는 三穴銃 1,000자루와 鳥銃 1,000자루가 배당되었다(《인조실록》 권9-44, 인조 3년 8월 기묘). 또한 총융청의 군사의 생계보장책으로 포수에게도 正兵의 예에 따라 1인당 1保1丁(3丁)의 保人이 배당되었으며 私奴인 포수에게는 4丁의 保人이 배당되었다(《인조실록》 권11-3, 인조 4년 정월 계축).

경기도 병력으로 이룩된 총융청의 군사는 본래 都城으로 番上하지 않았으나, 旗手·鼓手 등 標下軍(기간병)과 大將의 手下親兵인 牙兵(인조 24년 4월 총융사 李時白의 手下牙兵은 800명)은 摠戎廳本廳 入番을 하였고 숙종초에 그 병력

규모는 10哨~16哨에 달했다. 또한 壯抄 10哨, 牙壯抄 3哨, 屯牙兵 3哨 등으로 총융청의 병력규모는 모두 26哨였으며, 그 중 壯抄와 屯壯抄는 인조 24년부터 겨울 3개월동안 都城에 入番하여 宮城宿衛를 맡았다. 이서 등에 의하여 조직된 당초의 총융청은 前述한 바와 같이 수원·광주·양주·장단·남양의 五營으로 출발하여 七營制(인조 3년)로 되었다가 도루 五營制로 되었다. 그 후 守禦廳으로 광주가 移屬되고 竹山이 대신 배당되었다가 효종 2년과 7년에 다시 양주·죽산이 수어청으로 이속되고 坡州·通津이 배당되는 등(인조 13년)으로 변동이 있어 현종 4년 11월에는 수원·남양·통진·파주·장단 등 五營으로 되었으며 軍兵은 14,891인이었다(《현종개수실록》 권10-9, 현종 4년 11월 정축). 이 五營制는 숙종 13년 2월 鎭撫營과의 관계로 三營制(수원·남양·장단)로 바뀌었으며(육군사관학교 軍事연구실, 앞의 책, p.158), 이를 外營制라 하였다. 內營은 壯抄·屯壯抄·屯兵·屯牙兵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內營은 숙종 30년의 軍制改革 때 外營(三營)에 편입되었다(육군사관학교 軍事연구실, 앞의 책, pp.171~172).

4. 守禦廳

守禦廳은 정묘호란 前年(인조 4년)에 남한산성을 改築하고 이어서 호란 후 山城常住의 守禦將과 守城軍을 배치하여 만든 군영이다. 처음 摠戎使 李曙의 山城築造나 四道都檢察使 沈器遠의 山城管理는 모두 총융군 또는 下三道(영호남과 湖西)軍의 入據地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인조 5년 9월 右贊成 李貴가 江都保障을 위해서는 남한산성과 해주산성의 방비를 튼튼히 해야 할 것이므로 廣州牧使와 高陽郡守를 위 各城의 守禦將으로 삼아서 邑民의 힘을 산성으로 집중시키자고 하였다(《인조실록》 권17-19, 인조 5년 9월 정해). 그리하여 인조 6년 9월에 남한산성에 大將을 두도록 비변사에서 의논이 되었으며 李曙는 李貴의 아들인 광주목사 李時昉이 山城防禦使를 겸무하도록 추천하여 例兼하게 하였으며(《위의 책》 권19-29·58, 인조 6년 9월 갑신 및 11월 갑신), 그 후 남한산성 방어사는 수어사로 別稱되었고, 수어사가 따로 있었음에도 총융사 이서는 築城을 주관하였던 연고로 오랫동안 남한산성을 兼察하게 되었다(《備邊司謄錄》 4冊, 인조 12년 2월 23일). 남한산성 수어사는 이시방이 맡았던 것을 인조 9년

8월에 李守一이 이어받았고, 同王 10년 3월에는 副使 沈器遠이 승진하여 임명되었지만 총융사 이서의 총책임하에서 총융군의 일부인 廣州牧의 군사를 산성에 전속시켜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同王 12년 2월 이서가 身病으로 총융사의 職을 具宏에게 물려준 후 남한산성의 실무는 수어사 심기원의 책임하로 넘어갔다. 이와 같이 총융사와 수어사의 직무가 분리되었지만 이서가 병자호란 중에 病死할 때까지 備局堂上의 자격으로 여전히 「兼察」하였고 그의 死後 비로소 수어사가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여하간 수어청은 총융청과 함께 당시 老西(金塗系)와 대결국면에 처해있던 小西(이귀·이서계)측의 무력기반이었고 심기원 다음에는 이귀의 아들인 李時白이 다시 수어사가 되었다(육군사관학교 韓國軍事研究室, 앞의 책, pp.95~96).

有事時에 남한산성에 入防할 군사는 산성소속 畿內 5개읍과 原州·安東·大邱 등 3개읍의 군사들로서 약 12,700명이었다(《인조실록》 권31-1, 인조 13년 정월 기미 및 《같은 책》 권33-5, 인조 14년 7월 정사). 그러나 老西측인 都體察使 金塗와 都元帥 金自點은 李時白을 견제하여 남한산성 戰力強化에 지장이 있도록 하였다(육군사관학교 軍事研究室, 앞의 책, p.97). 여하간 병자호란을 거친 후 남한산성을 재건하게 되었으며, 인조 15년 7월 수어사 이시백은 廣州府尹(선조 10년 목사가 승격)이 겸직하는 수어사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부윤을 留守로 올려달라고 건의하였는데 그 후 이시백이 병조판서로 승진하여 수어사를 겸직하게되어 저절로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그리하여 산성의 현지사무는 守禦副使를 例兼하게 된 광주부윤이 맡았다. 그러나 산성재건은 인조 17년 12월 淸使의 간섭을 받게되어 新設砲樓가 철해지는 등 곤욕을 치르게 된다(《인조실록》 권35-14, 인조 15년 7월 정해 및 같은 책, 권36-3·5·10, 인조 16년 정월 정축·경진·경인과 권39-23·24, 인조 17년 12월 무자·신묘·임진). 하지만 그 후에도 산성의 군비강화는 계속되어 인조 20년 3월 당시에는 鳥銃 1,000~1,600자루, 활 1,000여張, 화살약 20,000개와 米 17,000여석, 콩 5,000석, 기타 잡곡 수천석이 확보되었다(위의 책, 권43-9, 인조 20년 3월 임오).

효종 2년 6월 左議政 이시백이 말하기를 남한산성의 守備兵이 5만명은 되어야하나 4만명 뿐이었으므로 안동·대구 등의 鎭軍 2,000명과 춘천 鎭軍 2,500명 및 광주 등 5읍의 軍 2,300명으로 채우게 하였으나 병자호란 때 실효성이

없었으므로 遠路인 대구·안동진의 군사를 충주·청주진의 군사로 바꾸고 강원도 군사를 남한산성에 소속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다. 임금은 이를 총융사와 의논하도록 하였다(《효종실록》 권6-39, 효종 2년 6월 무신). 효종 원년 7월 이시백의 동생 李時昉을 수어사로 임명하여(《효종실록》 권4-37, 효종 원년 7월 정사) 산성재건과 군사력강화를 하도록 하였다. 효종 3년 9월에 임금은 수어사 이시방에게 수어청의 牙兵은 射手와 砲手를 반반씩으로 하도록 명령하는 등으로 그 후에도 임금은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었고 특혜를 주며 지원을 하였다(《효종실록》 권9-10, 효종 3년 9월 신미 및 권11-10, 효종 4년 7월 병인과 권14-1·6, 효종 6년 정월 무자·임자 그리고 권10-37, 효종 4년 3월 기사). 앞서 수어사 이시백의 건의에 따라 遠路의 안동·대구진의 군사를 충주·청주진의 군사로 바꾸었지만 효종 2년에는 거기도 멀다고 하여 용인·양지의 300여명을 제외한 죽산營 관내 군사를 총융청 소속에서 남한산성 소속으로 바꾸고 同王 7년에는 다시 총융청 소속 양주 관내군사를 남한산성으로 移屬시켜서 현종대까지 수어청은 광주·죽산·양주·원주 등 鎭管의 군사 및 畿內에 散在한 牙兵들을 관할하였다(육군사관학교 한국軍事연구실,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篇, 육군본부, 1977, p.159 및 《현종개수실록》 권10-9·10, 현종 4년 11월 정축).

현종 14년에 수어사 李浣이 양주 관내의 麻田·加平·積城 등의 군사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들과 죽산 관내 중 아직도 총융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용인·양지의 군사들을 바꾸자고 하였다(《현종실록》 권21-17, 현종 14년 5월 갑신). 李浣이 죽자 수어사가 된 金錫胄는 숙종 즉위년 11월 건의하기를 京畿 6營의 半은 남한산성에 속하고 있으나 병력은 8,000여명에 불과하므로(2만명 필요) 원주·철원의 二鎭 및 충주진의 군사를 산성으로 준 바 있으나 嶺西之路가 막혔다고 하여 원주와 철원진의 병력을 각 本道로 돌려주었으므로 7,000여명이나 감축되었으니 원주진 7읍 중에는 아주 먼 곳도 있을 것이나 가까운 곳은 산성소속으로 하여 開屯作兵하도록 하면 몇백명의 군사를 더 얻을 수가 있다고 하였다. 또 楊根땅은 남한산성과 제일 가까운 곳이나 宮家의 柴場處로 折受(할애)된 곳이므로 軍民을 모아 屯田을 만들고 宮家에는 다른 곳으로 바꾸어 주면 좋겠다고 하였고 또 훈련도감의 둔전이 있는 횡성도 移給함이 좋겠다고 하여 숙종이 그대로 하도록 하였다(《숙종실록》 권1-30, 즉위년 11월 신사).

수어청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군영이지만 서울에 수어사가 常駐하는 京廳을 두고 산성은 광주부윤이 수어부사를 겸직하여 관리하게 하였던 것을 숙종 9년 정월 京廳을 혁파하여 수어사를 없애는 대신 廣州府를 留守官으로 바꾸어 留守가 직접 산성관리에 임하는 「出鎭」제를 취하여 경비절감을 도모하였다(《숙종실록》 권14上-14, 숙종 9년 정월 경오). 그러나 남인집권시기인 숙종 16년 정월에 다시 수어사제로 되돌아갔다(위의 책, 권22-4, 숙종 16년 정월 정미). 그 다음해 10월에는 광주부를 수원의 예에 따라 防禦營獨鎭으로 승격시키고 여전히 守禦副使를 겸하여 수어청을 총괄하게 된 부윤 아래 防營中軍을 더 두어 부윤이 맡은 營將의 임무를 대신하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23-35·36, 숙종 17년 10월 정유). 수어청은 前·左·右·後營 등 4營제에다가 左·中·右 3부의 牙兵을 가진 체제였는데, 숙종 30년 12월의 新編制에 의하면 4營 중 右營인 원주를 멀다고 하여 혁파하고 양주를 中營으로 하여 광주·죽산을 前後營으로 하는 3營체제를 갖추고, 屯牙兵의 3部制도 中部를 혁파하여 2部制로 고치되 左部軍의 3분의 1, 中部軍의 3분의 2를 大將의 親牙兵으로 하고 중부군의 나머지 3분의 1은 右部에 합쳤다. 이로써 수어청은 5司 25哨의 3營과 屯牙兵 2부의 편제로 되어 병력수가 32,351명이 되었다(《숙종실록》 권40-54·55, 숙종 30년 12월 갑오). 그러나 영조 26년 5월 수어사를 광주유수로 고치고 서울에 있는 수어청 소속 軍校들을 금위영과 어영청으로 分屬하였다(《영조실록》 권71-22, 영조 26년 5월 경오). 하지만 그 해 7월의 실록기사에 의하면 「守禦使兼南漢留守 除眷率一周年 府尹改爲經歷兼從事官」(위의 책, 권71-33, 영조 26년 7월 기유)라 하여 수어사의 호칭은 없어지지 않았고 남한유수를 겸직하여 1년간 가족을 거느리지 않고 단독으로 부임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의 광주부윤을 「經歷兼 從事官」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개혁으로 그 후 곧 守禦京廳도 되살아나서 정조 19년 8월까지 존속하였다. 그때 우의정 蔡濟恭을 비롯한 대신과 卿幸들이 지적하기를 수어사는 남한산성을 관장(節制)하는 職任임에도 불구하고 京廳을 설치하여 서울에 있으면서 남한산성의 재물만 축내고 있으므로 이를 혁파하고 留守를 두자고 하였다. 그 당시의 수어사였던 沈頤之도 남한산성을 전적으로 관할하는 수어사가 京廳을 설치하여 서울에 있는 것은 옳지 않고 비록 남한산성에 수어사를 보좌하는 留營別將이 있으나 사실상 城內之事는 광주부윤이 전적으로 관장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조의 수어청 혁파의사

를 대신들과 卿宰들 모두가 지지하였으므로 그때에 廣州府가 留守府로 재차 승격되어 남한산성을 명실공히 專管하게 된 것이다(《정조실록》 권43-20, 정조 19년 8월 병신).

5. 管理營

管理營은 숙종 37년(신묘) 개성에 설치된 군영이다. 숙종 초, 남인이 집권하자 體察使 許積과 訓練大將 柳赫然 등은 곧 그들이 주동이 되어 만든 훈련별대 5,000여명과 各色工匠 1,100명을 동원하여 개성에 都體察府의 鎮으로서 大興山城을 축조하고(《숙종실록》 권5-22, 숙종 2년 4월 정축), 瑞興의 두 곳, 遂安의 한 곳, 谷山의 두 곳과 伊川·平康 등 地의 監營 및 訓局의 屯田을 할애(移屬)받아 군사를 양성하였으며, 더구나 숙종 2년의 萬科(무과급제자 18,251명)를 통하여 얻은 무사 중 상당수를 산성소속으로 하였다. 그러나 숙종 6년 3월 西人들로부터 南人들이 이 병력으로 逆謀를 도모하였다는 구실로 공격을 받아 이른바 庚申大黜斥으로 남인정권이 붕괴된다(육군사관학교 軍事研究室, 《앞의 책》 p.145). 서인정권이 들어서자 대홍산성의 主管堂上의 名號를 管理使로 호칭하게 되었고(《숙종실록》 권9-34, 숙종 6년 5월 병신) 그 때 대홍산성의 인력과 물자는 서인정권 수립에 가장 큰 功을 세웠던 金錫胄가 관장하였다(육군사관학교 韓國軍事研究室, 《앞의 책》 pp.145~148). 숙종 10년 10월 김석주가 죽자 대홍산성의 관할은 훈련도감으로 넘어가서 훈련대장이 주관하게 되었다(《숙종실록》 권15 下-28, 숙종 10년 10월 기해). 그 후 숙종 37년 管理營을 설치하여 개성유수가 管理使를 겸하게 되고 정3품인 中軍을 두어서 대홍산성에 머물러 鎮守하도록 하였다(《大典會通》 兵典, 京官職, 管理營).

6. 鎭撫營

鎭撫營은 숙종 26년에 강화에 설치된 군영이다. 강화에는 원래 都護府使가 있었으나 광해 10년에 府使를 府尹으로 승격하였고 인조 5년에 留守를 두었다(《대전회통》 吏典, 京官職, 江華府). 영조 51년 정월 강화유수 李徽之의 상소에 의하면 유수가 이미 鎭撫使를 겸하고 있다는 것과 지금 만약 水使를 겸하고

있는 統禦使를 江華留守府에 소속시킨다면 자연히 진무사도 수사를 겸직하게 되며 喬桐·永宗 및 通豊 등 水軍관할의 諸邑을 모두 지휘 통솔할 수 있게 되어 水陸이 相應하여 防守에 소홀함이 없게될 것이라 하였다(《영조실록》 권 124-5, 영조 51년 정월 신미). 그리하여 정조 초에 강화유수겸 진무사는 水使 겸직인 통어사를 겸하여 水陸兩營이 통합 운영되었다(《정조실록》 권5-63, 정조 2년 윤6월 신미 및 권7-21, 정조 3년 3월 임진). 정조 10년 2월 강화유수 朴祐源이 啓言하기를 강화유수부와 진무영에 소속된 고을은 富平·延安·豊德·通津의 四營將 및 統禦營 屬鎮인 喬桐·永宗 등으로 이들은 모두 강화유수부에 속하나 本府所藏의 兵符(左符)가 없으므로 제조하여 달라고 하였으므로 임금이 병조에 下命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정조실록》 권21-21, 정조 10년 2월 계묘).

그 후 정조 13년에 統禦營은 水營으로 還屬되어 水陸軍이 분리되고 진무영 屬邑 중 풍덕이 인천으로 바뀌었으나(《대전회통》 병전, 진무영), 고종 3년 10월 강화유수가 다시 진무사 및 三道水軍統禦使를 겸하게 되고 경기 水營산하의 各鎮이 移屬되어 그 병력이 砲軍을 중심으로 약 3,000명에 이르렀다(《備邊司謄錄》 251冊, 고종 3년 10월 30일과 11월 16일 및 육군사관학교 한국軍事연구실, 《앞의 책》 p.271). 진무영의 재원으로 司僕寺 稅納錢 352兩餘와 三留營의 米·太 및 田畚과 屯牛, 京畿水營 및 三道소재 穀摠과 防錢·糧錢, 長寧殿 守護軍所守 通津·金浦 두 고을에 있는 60結, 均役廳에 납부하는 漁鹽稅 약 616兩, 包麥 1萬斤, 稅錢 14萬兩 등이다(同上). 진무영은 고종 11년 8월 4일 舊制로 복구할 때까지 군사력이 京軍을 능가하였다(同上 및 《고종실록》 권11-32 및 71, 고종 11년 3월 20일 및 8월 4일).

第2章 武官職과 武科 및 기타 官職

7. 外官職(節度使·虞候·評事)

節度使는 兵馬(육군)·水軍(해군)의 道단위 군사지휘관으로서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말한다. 虞候도 兵馬虞候와 水軍虞候가 있으며 각각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보좌하는 幕僚로서의 亞將이다. 兵馬虞候는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없고 황해도에는 후에 생겼다. 또 水軍虞候도 경기·강원·함경·평안도에는 없고 황해도에는 후에 생겼다. 評事는 兵馬評事의 약칭으로서 평안도와 永安(함경)北道의 兵營에만 있는 문관이다. 그러나 평안도의 병마평사는 속대전에서는 삭감되고 오로지 함경북도의 병마평사만 남게 되었다. 병마평사는 세조 12년 정월 관제개혁 때 兩界兵馬都節制使 經歷所都事를 혁파하여 설치한 것으로서(《세조실록》 권38-7, 세조 12년 정월 무오) 성종 원년에는 문관(문과급제자)으로서 永安北道評事만 임명하였다(《성종실록》 권8-12, 성종 원년 12월 계축). 성종 3년 정월에는 大司諫 成俊 등이 虞候를 없애고 評事を 남겨서 兩者를 겸무시키자고 하였으며(《성종실록》 권14-8, 성종 3년 정월 임자), 연산군 원년 5월에도 충청도 都事 金駟孫이 같은 주장을 하였다(《연산군일기》 권5-33, 연산군 원년 5월 경술). 그러나 虞候를 없애지 않았고 兩界의 虞候와 評事は 官階가 높고(秩高) 명망이 있는 자를 골라 보낼 것을(差送) 대신들이 의논하여 임금에게 書啓하였다(《중종실록》 권21-11, 중종 9년 10월 경술). 중종 12년 11월 병조에서 평안도 평사로 임용할 후보자를 임금에게 보고하자 임금이 傳敎하기를 兩界評事는 보통사람으로는 안되며 官階가 높고(秩高) 명망이 있는 자로서 다시 추천하라고 하였다(《위의 책》 권30-42, 중종 12년 11월 무인). 중종 12년 12월 사헌부에서 啓하기를 함경남도에서는 前日邊故가 있어 評事を 혁파하고 虞候를 두었지만 평사를 復立하여 문신을 골라 보내자고 하였다(《위의 책》 권31-16, 중종 12년 12월 정묘).

또한 명종 2년 10월 임금은 邊將이 軍卒을 侵漁함을 막고자 평사를 혁파하여 압록강·두만강邊에 御史를 두고자 하였으나 신하들은 監司에게 都事가 있듯이 兩界 兵使에게는 評事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반대하였으며(《명종실록》 권6-44, 명종 2년 10월 계축) 그 대신 侍從(玉堂)이나 臺諫을 지낸 자를 평사로 임명하여 보냄으로서 僉使나 萬戶가 軍卒들을 侵虐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위의 책》 권11-26, 명종 6년 2월 계미). 명종 10년 6월에는 비변사의 啓에 따라 각도에 평사를 두도록 하였다. 즉 초기의 경국대전(甲午大典)에서는 병마절도사가 있는 곳에서는 모두 평사가 있었으나 現存 경국대전(乙巳大典)에서는 함경북도와 평안도에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혁파하였는데 이는 국방상으로서

복을 중요시하고 남방을 경시하였기 때문이지만 왜구 등으로 남방도 국방상으로 중요하므로 병마절도사가 있는 곳에 모두 평사를 두어 文臣·名望者를 뽑아서 임용하여 監軍御史의 직무를 兼行시키고자 하였다(《위의 책》 권18-67, 명종 10년 6월 정해 및 권 19-2, 명종 10년 7월 갑오, 권19-6, 명종 10년 7월 계묘). 그러나 명종 13년 8월 사간원에서 評事로서의 적격자가 드물어 유해무익하며 主將에 대한 견제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각도의 평사를 혁파해야 한다고 啓함에 따라 그것을 모두 혁파하였다(《同上》 권24-55, 명종 13년 8월 무오).

그런데 효종 3년 3월 각도 兵營과 水營의 虞候를 評事로 바꾸어 侍從之臣을 임명하여 파견하자는 전라도 암행어사 閔鼎重의 書啓가 있었고(《효종실록》 권 8-32, 효종 3년 3월 을미), 北評事を 復設하자는 함경감사 徐必遠의 書啓가 있었으므로(《현종개수실록》 권11-12, 현종 5년 6월 갑진) 숙종 원년 함경북도에 서만 평사가 임명·파견되었다(《숙종실록》 권4-59, 숙종 원년 11월 을유).

8. 統制使

統制使는 三道水軍統制使를 말하며 그 약칭으로서 統閫이라고도 하였다. 본래 수군의 道단위 최고지휘관으로서 수군절도사(水使)가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전라·충청 삼도의 수군을 총지휘할 필요성이 생겨서 선조 26년 8월 전라좌수사였던 李舜臣을 本職에다 겸직으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여 三南의 수군을 통솔하도록 하였다(《선조실록》 권45-15, 선조 26년 윤11월 병술 및 진단학회, 《한국사연표》). 전라좌수영은 순천에 있었으나 統制營은 거제도도에 있었다가 선조 37년에 경상도 고성(현재의 통영)으로 옮겼다(이홍직, 《앞의 책》 pp.1608~1609).

선조 40년 5월 비변사에서 啓하기를 당초에 통제사를 창설할 때 巡邊使衙門의 경우를 따랐으나 처음 만들면서 깊이 연구하지 않아서 水使를 本職으로 하고 통제사를 겸직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제사의 직함이 정식으로 없었으며 그 결과 통제사는 水使로서 巡察使의 節制를 받게 되었으므로 문서전달체계나 명령계통상으로 다름이 있는 듯하니 앞으로는 통제사를 본직으로 하고 水使를 겸직으로 하여 그 體面을 높여서 海防之任의 중함을 육군의 三道巡察使에게도 알

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를 윤택하였다(《선조실록》 권211-5, 선조 40년 5월 무진).

이와 같이 통제사의 지위가 향상되고 그 권한이 강화되자 각 읍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서 軍民을 침해하고 列邑에 폐해를 끼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광해군일기》 권69, 광해 5년 8월 18일 계묘). 통제사의 임기는 2년이었으나 현종 15년 정월 임금이 그것을 1년으로 단축시켰다가 우의정 金壽興의 건의에 따라 2년으로 다시 정하였다(《현종개수실록》 권27-53·56, 현종 15년 정월 무진 및 경인). 영조 30년의 실록기사에 의하면 통제사는 삼도의 上官으로서 권위가 매우 중하여 각 고을에서 두려워하기를 監司나 兵馬節度使보다 두 배가 된다는 것이었다(《영조실록》 권81-22, 영조 30년 4월 무신). 또 순조 8년 정월 임금이 전통제사 이준을 불러보고 統制營 소속 군인수와 戰船數를 물었던 바 節制하는 군사총수는 만여명이고 大小船隻이 560여척이라 하였다(《순조실록》 권11-1, 순조 8년 정월 정미).

9. 邊將

邊將이란 나라의 변방요충지에 근무하는 武官職으로서 僉使·萬戶·權管 등이 있다(오희복, 《앞의 책》 p.116). 鎭撫와 邊將을 혼용하기도 하였으며(《중종실록》 권67-39, 중종 25년 2월 경인), 때로는 경흥부사 등 국경지방의 수령을 변장이라 하는 경우도 있으나(《명종실록》 권16-64, 명종 9년 6월 갑신) 세조 7년 11월 임금이 吏曹에 傳旨하기를 「앞으로는 평안도와 함길도의 邊將 및 연변고을의 수령에 대해서는 兵曹와 의논하여 인사권을 행사(銓注)하라」는 명령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장과 연변수령을 개념상 구별하고 있다(《세조실록》 권26-15, 세조 7년 11월 병오). 또 《속대전》 병전 外官職에서도 「防禦使는 수령과 邊將으로서 겸한다」고 하여 수령과 변장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변방의 수령이 僉使 등 변장을 겸하여 一人二役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단순히 변장이라고만 할 경우에는 주로 전임 첨사를 의미하지만 첨사겸직인 수령의 경우에도 수령으로서 근무성적 평정(殿最)을 道臣(監司)에게서 받고 변장으로서 또한 帥臣(兵·水使)에게서 평정을 받는 등으로(《영조실록》 권85-20, 영조 31년 9월 을유) 二重性을 나타내고 있다. 여하간 변장은 國法上 私妾을

거느리고 갈 수 없으며 현지에서의 축첩도 엄금하였다(《중종실록》 권92-36~40, 중종 34년 11월 무술·경자·신축) 또한 大小邊將은 세종 23년 7월 의정부의 啓에 따라 함길도와 평안도 이외에는 부임시에 內禁衛·別侍衛·甲士 등 禁軍 기타 軍士를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海島에 邊事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함길도와 평안도의 예에 따라 소정의 군사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93-13, 세종 23년 7월 계축). 한편 명종 2년 10월, 임금은 변장이 軍卒과 邊民을 침탈한다고 하면서 評事를 혁파하고 御史를 파견하고자 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어사를 파견하지 못하였지만(해설편 7, 外官職) 명종 6년 2월 사헌부에서 啓하기를 兩界(함길도와 평안도)는 서울에서 매우 멀고 字牧之責(府使·牧使 등)과 軍馬之任(僉使·萬戶 등)을 오로지 武夫에게 맡겨 놓았으므로 그들의 貪暴之習과 縱恣之狀이 특히 심하기 때문에 監軍 御史를 파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의정부와 6曹판서 및 判尹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던 바 좌의정 沈連源·우의정 尙震과 吏·戶·兵·工曹의 判書 및 左參贊·判尹 등은 西北邊地의 각 고을마다 많게는 6·7개 적어도 4·5개의 鎭堡가 있어 비록 僉使·萬戶 등 邊將이 軍卒을 심히 침학한다고 하여도 兩界御史가 그들을 모두 단속할 수 없으므로 評事를 侍從이나 臺諫을 지낸 자로서 임명하여 보내고, 府使나 判官도 간간히 명망있는 문관을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명종실록》 권11-25·26, 명종 6년 2월 임오 및 계미).

10. 邊地守令

邊地守令은 邊鎭守令(《예종실록》 권6-5, 예종 원년 6월 경신, 《성종실록》 권192-2, 성종 17년 6월 신사, 《같은 책》 권238-10, 성종 21년 3월 정축) 또는 邊方守令(《성종실록》 권190-7, 성종 17년 4월 신묘 및 《중종실록》 권51-43, 중종 19년 8월 을묘, 《같은 책》 권53-5, 중종 20년 2월 기해)과 같은 것으로 보이나 흔히 邊地는 邊地僉使를 의미하므로(《정조실록》 권31-19, 정조 14년 9월 정해) 邊地守令이란 邊地僉使와 수령을 의미하는지, 글자그대로 邊地(邊方)의 수령을 의미하는지 불명하다. 《숙종실록》 권37-26, 숙종 28년 9월 계유에 「鍾城府使洪萬紀稱病不赴· . . . 上曰邊地守令 人皆厭避·」라 하였으며, 《영조실록》 권50-23, 영조 15년 11월 임신에 「邊地守令 限二十

朔太遠 請限周年· · · 上從之」, 같은 책, 권54-41. 영조 17년 12월 갑인에 「命邊地守令 罪罷貶下者 勿許履歷 以示懲勸」 또 같은 책, 권56-29, 영조 18년 11월 무인에 「邊地陞擢之窠· · · · 理山府使陞品差出」라 하였고, 같은 책, 권 92-11, 영조 34년 8월 기묘에 「以邊地守令 勿以初除者 差送事仰陳, 上從之. 領議政 俞拓基 以邊地守令·邊將 準瓜前徑遞者 勿論病罷貶罷 勿以邊地履歷 施行事仰陳 上從之」라 하여 邊地守令은 邊將과는 다른 邊地の 府使·牧使 등 수령을 지칭하는 것 같다. 하지만 邊地守令의 개념속에 邊地僉使를 포함시켜 생각 하여 볼 수도 있다. 邊地僉使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변방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평안도의 동진·신도·신광·아이·만포·고산과 함경도의 혜산·고령·훈용·성진 및 황해도의 백령도·철도·초도와 전라도의 청산도, 경상도의 부산·다대포 등에 둔 첨사를 지칭한다(오희복, 《앞의 책》 p.116). 그러나 《중종실록》 권92-38, 중종 34년 11월 경자의 記事에 의하면 「邊方兵使·守令·僉使·萬戶」 등으로 분명히 邊方僉使와 邊方守令은 구별되고 있다. 또한 邊方の 절도사는 邊帥(《숙종실록》 권14 下-41, 숙종 9년 9월 갑오) 또는 關帥(같은 책, 권15 上-10, 숙종 10년 2월 무술)라 하여 邊將이나 邊方守令과 구별하고 있다.

11. 巡將

巡將은 都城內外 巡察의 지휘관으로서 中樞府의 知事·同知事·僉知事 또는 行職堂上官 중에서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여 임금의 지정을 받아 임명하였다. 원래 도성의 순찰은 고려후기에는 巡軍萬戶府에서 관장하였고 조선초기에는 그 後身인 의금부의 소관이었는데(韓佑勣, 〈麗末鮮初 巡軍研究〉, 《震檀學報》 22, 1961) 세조대를 전후하여 병조가 총괄하게 되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16). 즉 세조 11년 11월 대사헌 양성지의 건의에 따라 앞으로는 巡將을 문관과 무관 2인으로 임명하되(巡將二所) 의금부의 上直郎官이 巡將에 대하여 병조의 文案을 親授하고 또 軍目도 보내어 순장은 軍目を 받아서 검찰한다고 하였다(《세조실록》 권37-24, 세조 11년 11월 기미). 또 세조 12년 정월 병조의 啓에 따라 巡將 6인(當次人員)이 3番으로 나누어 5일간씩 근무하다가 교대하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38-9, 세조 12년 정월 을축). 중종 29년 7월 참찬관

許沅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2품 宰臣이 巡將이 되었는데 지금은 老職堂上官이 그것을 맡아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巡將을 보좌하는 監軍도 무뢰배들을 거느리고 술마시기를 일삼는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監軍이 음주를 일삼고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巡將이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라 하고 병조의 당상관이 巡將이 되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임금은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巡將과 監軍을 六曹의 당상관으로 임명하여 낮에는 本曹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衛將·巡將의 임무를 맡기는 문제를三公들과 의논하라고 하였다(《중종실록》 권77-49, 중종 29년 7월 경인). 그러나 老職당상관이 巡將으로 되는 것은 명종초까지 바뀌지 않았다. 명종 원년 6월 사간원의 탄핵에 따라 노쇠한 巡將 6인을 교체하였다(《명종실록》 권3-90, 명종 원년 6월 임진). 정조 5년 6월 巡將에게 軍職을 또 주자고 하는 병조의 탄핵에 대하여 임금은 巡將이 그 本職인데 어찌하여 군직에 또 付職하자는 것이냐 하고 반대하였다(《정조실록》 권11-85, 정조 5년 6월 임신).

12. 團練使

團練使는 조선시대에는 사신을 호위하는 수행관이다. 고려 성종 14년에 큰 고을의 군사지휘관 겸 지방행정관으로서 都團練使 또는 團練使를 두었다가 대체로 顯宗代 내지 神宗代에 知京山府事, 防禦使 또는 都護府使 등으로 개칭되었다(《고려사》 권57-23, 권58-1, 권58-3, 志11·12, 地理2·3). 조선국초에도 兵馬團練使로 호칭되는 3품인 지방 州郡兵의 지휘관이 있었으며(《태조실록》 권5-13, 태조 3년 2월 기해), 세조 원년 9월 병조의 탄핵에 따라 軍翼道의 편제상 中翼인 堂上守令을 兵馬節制使라 하고, 非堂上이면 僉節制使, 기타 左右翼守令들의 직함은 兵馬團練使·副使·判官으로 부른다고 하였다(《세조실록》 권2-23, 세조 원년 9월 계미). 세조 4년 정월 병조의 탄핵에 따라 諸道諸邑의 中翼 左·右翼 등 軍翼道制가 혁파되고 鎭을 설치한 후에도 수령들의 직함이 主鎭 당상관일 경우에는 兵馬節制使, 3품은 僉節制使, 4품은 同僉節制使로 각각 호칭되 諸邑에 분속하여 兵馬團練使·副使·判官으로도 호칭하게 하였다(《위의 책》 권11-1, 세조 4년 정월 임술).

그 후 세조 12년 정월의 官制改正時에 都觀察黜陟使를 觀察使로 고치고 兵馬

團練使를 兵馬節制使로, 兵馬團練副使를 兵馬同僉節制使로, 兵馬團練判官을 兵馬節制都尉로, 知郡事를 郡守로 개칭하였다(《위의 책》 권38-6, 세조 12년 정월 무오). 그리하여 團練使는 그 의미가 변하여 使臣의 호위나 수행을 위한 임시직인 迎逢團練使·護送團練使 등만 남게 되었다. 성종 21년 10월 병조에서 啓하기를 赴京行次에 따른 단련사는 전에 수령으로 임명하였으나 짐신은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武才가 있는 軍官을 골라 임명하도록 하였는데 다시 수령으로 임명하게 되어 옳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軍官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권246-1, 성종 21년 10월 기유). 여하간 중종 36년 6월 퇴계 이황이 點馬(御史)로서 의주에 가 있을 때 왕명에 따라 聖節使 團練使의 밀수행위를 적발하였는데 護送團練使에게 특히 부정한 일(泛濫之事)이 많았던 것 같았다(《중종실록》 권95-40, 중종 36년 6월 경신). 단련사는 조선후기에는 대체로 僉使나 萬戶 등 武將으로 임명된 듯 하였으며(《영조실록》 권22-10, 영조 5년 4월 병신) 사신들 일행과 말·물품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졌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59).

13. 點馬御史

點馬란 말을 점검(點考)한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點馬御史를 의미한다. 인조 때 승지를 지낸 바 있는 李民晟의 문집인 敬亭集 10, 年譜, 萬曆 33년(선조 38년)條에 그가 제주도 點馬御史로 바다 건너갈 때 그곳에 監賑御史로 가는 金尙憲과 동행하여 왕래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點馬御史는 종래 點馬別監과 御史를 2중으로 파견함에 따른 번거로움과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중종 32년 8월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중종실록》 권85-42, 중종 32년 8월 신해 및 田鳳德, 〈暗行御史制度研究〉, 《韓國法制史研究》, 1968, 서울대출판부, p.82). 點馬에 관한 실록의 기사는 세종 5년 7월에 처음 보이는데 點考時 말을 빌리거나 혹은 不實馬로서 受檢하니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의법처단(依律論罪)한다는 것이었다(《세종실록》 권21-5, 세종 5년 7월 갑오). 그리고 문종 원년 7월에 임금이 승정원에 傳敎하기를 앞으로 點馬別監을 久任例에 따라 사람을 골라 임명하여 各分掌시킨다는 것이었다(《문종실록》 권8-34, 문종 원년 7월 기유).

단종 2년 7월에는 한발이 심함으로 諸道에 點馬別監을 파견하지 않도록 하였

다(《단종실록》 권11-42, 단종 2년 7월 경오). 세조 4년 2월에도 흉년으로 下三道에 點馬別監을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세조실록》 권11-8, 세조 4년 2월 병신). 성종 6년 6월 사헌부에서는 점마별감은 청렴하고 부지런하며 아주 일에 밝은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한다고啓하였다(《성종실록》 권56-16, 성종 6년 6월 을사). 성종 9년 7월 승정원에서 啓한 내용은 이번에 諸道の 점마별감으로 하여금 永安道の 예에 따라 수령의 불법을 아울러 살피도록 함이 좋겠다는 것과 또 前日 임금께서 하교하시기를 점마별감의 不法事를 그 道の 監司로 하여금 糾察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奉命之臣이 監司의 규제를 받게 됨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위의 책》 권94-22, 성종 9년 7월 경진). 성종 17년에도 흉년으로 인하여 점마별감을 파견할 수 없었다(《위의 책》 권188-8, 성종 17년 2월 정해). 이로써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흉년이 아닌 한 매년 각도로 점마별감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중종 20년 9월에는 제주목사가 점마별감의 弊를 말하였다(《중종실록》 권55-30, 중종 20년 9월 갑신). 점마별감은 원칙적으로는 가을에 보냈으며 예외로 봄에 보냈다(《위의 책》 권61-45, 중종 23년 5월 신묘). 숙종 35년 3월 각도의 점마별감은 반드시 司僕寺의 官員 1·2명으로 하되 매년 봄·가을로 윤회하여 내려보내도록 定式化하였다(《숙종실록》 권47-20, 숙종 35년 3월 경인).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조 때 點馬御史가 나타나 있고 《승정원일기》 284책, 숙종 7년 7월 23일에도 點馬御史가 보이는데 숙종 35년에도 여전히 각도로 점마별감을 보냈다는 위의 실록기사는 용어의 혼용이거나 아니면 두 가지 종류의 王使를 보냈거나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자일 가능성이 더 많다. 《중종실록》 권95-40, 중종 36년 6월 경신에 李滉이 “點馬”로서 의주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때 그는 왕명에 따라 聖節使의 경호책임자의 밀수행수를 적발하는 등 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점마별감이 곧 후일의 점마어사였다고 하겠다.

14. 武科式年

武科式年은 文科式年과 같은 시기에 시행하여 원칙적으로 28명을 뽑도록 하였으나 조선 태조 2년에는 문과와 같이 33명을 뽑았고 그 후 조선 후기까지

도 두세 번의 예외는 있었지만 거의 28명 이하선을 고수하였는데, 武科別試의 경우에는 조선 중엽 선조 17년 별시에서 500명, 선조 25년의 의주별시에서 700명, 선조 26년의 전주별시에서 1,785명씩을 뽑은 이래 인조 15년의 별시에서 5,536명을 합격시킬 때까지 수백명 내지 수천명씩 뽑았다. 그 후에도 그런 현상은 지속되어 武科庭試의 경우에도 숙종 2년의 庭試에서는 18,251명(또는 14,000명), 정조 8년의 정시에서는 2,676인 등으로 量産하였고 나중에는 謁聖試와 式年試에 이르기까지 武科及第者는 量産되어 고종 26년의 알성시에서는 12,513명을 뽑았으며, 고종 31년의 식년시에서는 1,147명을 뽑았다. 물론 조선중엽 이후에도 식년시에서는 오랫동안 定員數를 지켜왔으나 결국 조선왕조 말기가 가까워지자 수십명 내지 수백명씩 뽑은 경우는 많았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別試와 庭試에서의 대량합격으로 더 이상 무과급제자가 과거 합격자로서 대접받기는(관료임용 기타) 어렵게 되었다(《위의 책》 p.605, p.491~494 및 李成茂, 《韓國의 科擧制度》(集文堂, 1994), pp.150~161). 무과의 응시자들의 신분도 조선 전기에는 양반자제(내금위·별시위·검사복 포함)들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일부 양반과 다수의 양반의 서얼 그리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망라되었다. 이미 조선 성종 때부터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지만 특히 조선후기의 양반들은 더 이상 諸衛에 속하거나 武學(선조 39년의 山陰帳籍에서 처음 보임)에 入屬되기를 꺼리었으므로 무과 응시자 및 합격자의 많은 수가 서얼 또는 평민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이성무 《앞의 책》 pp.161~162, p.187, p.202~207 및 이종일, 《朝鮮時代 庶孽身分變動史研究》, 동국대대학원 1987, 박사학위논문, pp.92~93).

무과에 있어서도 문과와 같이 정기시험인 식년시 이외 여러 종류의 別試와 謁聖試·重試 등이 있었고 式年試의 경우 初試·覆試·殿試 등으로 나누어 시험보였다. 시험과목은 武藝시험과 講經 등인데 殿試는 대개 낙제가 없는 시험이므로 바로 전시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합격을 거의 보장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선조 32년 3월 적의 목을 베 자를 위한 斬級武科殿試에서 許通(서얼) 권승경 등 206명을 뽑았으므로 그 때의 史官은 이를 名分 문란행위라고 비판하였다(《선조실록》 권110-9·10, 선조 32년 3월 병신).

15. 土官職

土官職은 고려전기(10세기~13세기)의 鄉職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고려 초기의 鄉職의 官階는 「一品曰三重大匡·重大匡, 二品曰大匡·正匡, 三品曰大丞·佐丞, 四品曰大相·元甫, 五品曰正甫, 六品曰元尹·佐尹, 七品曰正朝·正位, 八品曰甫尹, 九品曰軍尹·中尹」이라 하여 9품계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文·武散階와는 다른 별도의 것이었다(《增補文獻備考》 권235-14). 그러나 고려후기의 토관은 평양과 화령 등 兩界에만 설치되었는데 평양 토관의 설치연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和寧은 공민왕 5년 雙城摠管府를 收復하여 和州牧으로 하였던 것을 同王 18년에 和寧府로 승격시켜 토관을 두었다(《고려사》 권58-18, 志12, 地理13). 평양에 있던 元의 東寧府는 충렬왕 16년에 고려에 환수되었고 공민왕 18년에 萬戶府를 설치하였다가 그 후 평양부로 개칭하였다(《고려사》 권58-30, 志12, 地理3). 따라서 土官은 늦어도 고려말 이전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려사》 권78, 志32, 食貨1, 「請於平壤府 減土官」). 고려후기 평양의 동녕부와 화주의 쌍성총관부 이외에 제주도에도 고려 元宗代부터 약 30년간 元의 耽羅摠管府가 설치되었으므로 토관이 있었을 것이나 고려사에는 기록이 없다. 다만 《태조실록》 권5-17, 태조 3년 3월 병인에 「土官子弟 十歲以上 皆令入學」 등의 말이 있으므로 그 이전에 土官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태종 원년 당시의 永興府(和寧)의 토관수는 576명이었으며(《태종실록》 권2-5, 태종 원년 7월 경술), 태종 6년의 평양부의 토관수는 600여명이었고(《위의책》 권11-27, 태종 6년 6월 계해) 제주도의 토관수는 세종 7년에 629명이었다(《세종실록》 권29-6, 세종 7년 7월 임오). 세종 11년에는 평양(鎭西衛)의 西班土官은 5領 336명이었고 영변(鎭邊衛)의 서반토관은 3領이었다(《세종실록》 권42-28, 세종 11년 3월 임신).

토관수의 확대는 세종 때 북방영토 확장과 관계가 있는데 함경도에서는 세종 3년에 甲山郡, 그 이전에 北靑과 慶源에서, 또 세종 10년 이전에 吉州·鏡城 등에서, 咸興土官으로 1년 1인씩 윤번으로 임명하여 보냈으며(《세종실록》 권11-8, 세종 3년 2월 병신 및 권40-20, 세종 10년 5월 신사), 세종 10년에 慶源府, 세종 14년에 길주(세종 16년 혁파), 세종 16년에는 慶源府의 寧北鎭(뒷날 富寧府)과 會寧都護府, 세종 18년에는 鏡城府(吉州土官 移設), 세종 23년에

는 穩城과 鍾城도호부, 세종 25년에는 慶興도호부 등 길주·경성과 6鎭이었던 곳에 토관을 설치하여 文字와 數를 解得하는 未仕者인 土民(백성)들에게 벼슬을 주어 사기를 양양시켰다(이재룡, 《朝鮮初期社會構造研究》, 일조각, 1993, pp.47~49 및 실록기사). 평안도에서도 평양 이외 세종 11년 영변에 토관을 설치하여 117명의 토관을 두었고(《세종실록》 권43-28, 세종 11년 3월 임신), 세종 14년 길주에(《세종실록》 권55-10, 세종 14년 2월 신묘), 또한 그 무렵에 江界府에 토관이 각각 별도로 설치되었다(《위의 책》 권103-14, 세종 26년 2월 계미). 영변과 강계는 4郡의 후방 기지였기 때문이다.

평안도와 함길도의 토관임명은 1席當 임용후보자 3인을 왕에게 추천하여 낙점을 받아 시행하였다(《세종실록》 권14-14, 세종 3년 12월 임인). 토관의 임명(告身)은 文武官例에 따라 50일내에 臺諫의 署經을 받게 되었으나 그 기일이 잘 준수되지 않은 듯 하였다(《단종실록》 권1-19, 단종 즉위년 6월 임술). 제주도의 토관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존속되었다. 경주(東京)와 전주(南京)에도 각각 일시적으로 토관이 설치되었다. 경주의 토관은 東班 37명, 西班 300명, 전주의 토관은 동반 39명, 서반 122명이었으나 설치된지 5년후인 세조 8년에 혁파되었다. 그러나 세조 11년에는 개성(中京)이 鄉吏가 없는 곳이라 하여 토관을 설치하였으나 예종 원년에 혁파하여 錄事와 書吏 등으로 대체하였다(이재룡, 《위의 책》 pp.49~51). 개성토관 설치문제는 세종 9년에도 거론되었으나 서울 가까이 토관을 두면 京官으로 擬化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만 두었다(《세종실록》 권36-16, 세종 9년 5월 계묘). 鍾城토관은 兵營이 鏡城에서 옮겨오자 함께 옮긴 것이다. 경성토관은 그 후에 復立되었다(《문종실록》 권7-46, 문종 원년 5월 을축).

咸興府(永興府)의 서반토관인 鎭北衛의 官職과 그 品階는 태종 7년 領(모두 3領)마다 각각 中郎將(5품) 1인, 郎將(6품) 2인, 別將(7품) 3인, 散員(8품) 4인, 隊長(9품) 5인, 隊正(9품) 15인, 權知隊正 15인 등이 있었다(《태종실록》 권14-20, 태종 7년 9월 신해). 세종 16년 진복위는 2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정5품 司直 1인, 종5품 司直 1인, 종7품 司正 2인, 종8품 副司正 4인 등 모두 8명으로 되어 있었다(《세종실록》 권64-12, 세종 16년 4월 무진). 그러나 세조 8년 7월 함흥의 진복위는 평양과 함께 4領으로 되었고 그 인원수도 훨씬 많아져 各領이 30명 내외였고 모두 127명이었다. 평양의 鎭西衛는 각령의 토관이

50명으로 모두 200명이었다. 진북위의 官階·官職도 평양의 鎭西衛와 같게 하였다. 기타 영변의 鎭邊衛와 鏡城의 鎭封衛는 3領 84명, 의주의 鎭疆衛·경원의 柔遠衛, 회령의 懷遠衛는 2領 57명, 강계의 鎭疆衛·온성의 柔遠衛·부령의 懷遠衛·중성의 柔遠衛 등은 2領 34명(전주·경주는 혁파) 등이다(《세조실록》 권28-38, 세조 8년 7월 정미). 《경국대전》 권4, 병전, 土官職에 있는 토관수는 영흥부(鎭北衛) 23인, 평양부(鎭西衛) 30인, 영변대도호부(鎭邊衛) 25인, 鏡城도호부(鎭封衛) 25인, 의주부(牧)(鎭江衛) 18인, 회령·경원도호부(懷遠衛) 18인, 중성·온성·부령·경흥도호부(柔遠衛) 16인, 강계도호부(鎭浦衛) 16인 등 모두 171인이다. 이 숫자는 조선국초보다는 많이 감소되었으나 조선 말기의 《대전회통》에 이르기까지는 변동이 없었다. 서반토관의 관직명은 태종대에는 「中郎將, 郎將, 別將, 散員, 隊長」으로 또 세종·세조 연간에는 「司直, 副司直, 司正, 副司正, 司勇」 등으로 서반관직 그대로 사용하다가 《경국대전》에서는 「勵直, 副勵直, 勵果, 副勵果, 勵正, 副勵正, 勵猛, 副勵猛, 勵勇, 副勵勇」 등으로 달리 호칭하였다. 또한 官階도 세종 16년에는 隊尉, 徒尉 등으로 호칭하였고 그것을 경국대전에 그대로 등재하였다(《세종실록》 권64-12, 세종 16년 4월 무진).

서반토관은 절도사의 추천에 의하여 臺諫의 署經을 거쳐서 임명하였는데, 千戶(100戶 통솔) 百戶(50戶 통솔)·鎭撫·知印·令史 등 그 지방의 유력자로서 임용하였으며 때로는 千戶 百戶·統主가 토관을 겸직하기도 하였다. 知印과 令史는 吏屬이지만 함경도의 鄉吏는 지방유력자인 閑良人이 그것을 맡았으므로(《세종실록》 권28-1, 세종 7년 4월 경자) 그들의 그 지방에 있어서의 사회적 지위는 높았다. 또한 토관직은 遞兒職으로 除授하였는데 보통은 지방유력자가 翼軍의 武人으로 근무하거나 鄉吏의 役을 마친 후에 임명되었지만 賞職·贈職으로 除授하는 경우(軍功·戰死 등)와 補充軍·防牌·火砲軍·試才·譯學生徒·南道에서 自募入居한 良民 등에게 제수되기도 하였다. 조선초기 제주도에서는 王爵을 경시하고 토관을 중시하였다고 하며 제주토관은 印信을 받고 수령과 竝立하여 吏卒을 통솔하였다. 토관에게는 나라에서 토지가 지급되었는데 이를 地祿이라 하였다. 고려말에는 최고 10결, 최하 3결을 주었으나(《고려사》 권 78-20, 志32, 食貨, 공양왕 3년 정월), 태종 7년에는 5품 6결, 6품 5결, 7품 3결 50卜, 8품 2결 50卜, 9품 1결 50卜 등으로 줄어졌다(《태종실록》 권

14-20, 태종 7년 9월 신해).

토관이 朝官을 受職할 때에는 품계를 강등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 46-13, 세종 11년 12월 갑술). 따라서 토관은 朝官보다 1품 낮게 보아 토관 5품을 조관 6품, 토관 6품은 조관 7품으로 하되 그것도 해당 품계의 末에 두기로 하였다(《위의 책》 권43-8, 세종 11년 정월 정묘). 또 토관은 조관의 예에 따라 行守法을 적용하였다(위의 책, 권 108-18, 세종 27년 6월 기미). 토관이 取才시험을 거쳐 서반의 관직을 받도록 하였으며(위의 책, 권46-3, 세종 11년 10월 기축), 때로는 토관이 수령으로 임명되는 수도 있으나 대간에서는 토관이 士族이 아니라 衙前이라 하여 조관(수령)으로의 임명을 반대하였다(《세종실록》 권45-9, 세종 11년 7월 신미 및 100-27, 세종 25년 6월 계사). 그러나 토관의 신분은 타지방의 鄉吏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았고, 田稅와 요역의 減免 혜택도 있어서 백성을 모으는데 이바지 하였다. 또한 토관은 북방국경지대의 백성들이 異民族과 결탁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으로 국방상으로도 이바지하였다(이재룡, 앞의 책, pp.63~66 및 吉田光南, 〈15세기 朝鮮의 土官制〉, 《朝鮮史 研究會論文集》 18, 1981). 그러나 그 후에도 토관은 知印·主事 등과 함께 아전이란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성종실록》 권188-14, 성종 17년 2월 무술). 그렇다고 토관의 비중이 낮았던 것은 아니었다. 즉 세조 2년 3월 집현전 직제학 梁誠之는 서울을 上京, 개성을 中京, 전주를 南京, 평양을 西京, 함흥을 北京으로 하여 각각 토관을 두고 軍兵을 加定하자고 하였으며(《세조실록》 권 3-25, 세조 2년 3월 정유), 또 同王 3년 6월에는 吏曹에서 경주와 전주에 토관을 두자고 하였다(위의 책, 권8-11, 세조 3년 6월 신유).

16. 影 職

官職 중에는 職事가 있는 實職과 職銜만 있고 職事가 없는 散職이 있으며, 實職 중에서도 祿官과 無祿官으로 나누고 祿官은 正職과 掾·直으로 나누기도 한다(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1, pp.124~125). 그러나 掾·直 중에서는 職事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掾·直을 散職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고(影職掾·直) 實職과 正職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한다(《대전 회통연구》 이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3, 12, p.232).

散職을 관직이 없고 官階만 있는 散官(散階)과 혼용되기도 하고(《경국대전 주해》 상, 후집, 이전 : 「無實職而只有階曰散階即散官也」 및 이성무 외4인, 《역주 경국대전》 주석편, 예전, p.490), 散職과 影職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나 散職은 散官職(散官)과 같은 것으로 보아 影職과는 개념상 구별되기도 한다(《문종실록》 권5-57, 문종 원년 정월 을축). 여하간 影職은 虛職(《위의 책》 상, 후집, 이전 : 「影職有職銜而無職事者· · · · 虛職也」)으로서 고려후기와 조선국초의 添設職(태조時)과 檢校職(태종時)처럼 官階·官職이 명목상으로만 있을 뿐(관직이 있는 점에서 散官과는 다르다) 실제 담당할 직무가 없는 것을 말하며 세종 때 설치하였다(《세종실록》 권108-8, 세종 27년 4월 병진). 세종 26년 6월 이조의 보고에 의거하여 의정부에서 啓하기를 影職이 고려말의 添設職과 다름없다고 하고 軍功이나 老人職으로 산관과 직사를 除授할 때에 자리가 거의 없어서 影職을 주는데 이는 名實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104-31·32, 세종 26년 6월 갑오). 세조 12년 4월 圓覺寺 건축에 이바지한 趙塘 등 65인에게 影職 典牲署 主簿를 除授(임명)하였고 金繼壽 등 17인에게 檢職 禮賓寺 主簿에 임명하였는데 檢職도 影職의 한 종류라고 하였다(《세조실록》 권38-36, 세조 12년 4월 무오). 영직은 조선후기에는 더욱 많아져서 동일한 관직에 5·6명을 동시에 임명하는(이 경우 1명만이 正職) 이른바 假職을 의미하기도 하고(宋斗用, 《韓國法制史考》, 진명문화사, 1985, p.409), 외견상으로도 實職과 구별될 수 있는 散官職을 의미하기도 한다.

第3章 軍士·赴防과 保人 등

17. 親騎衛

함경도 親騎衛는 숙종 10년 함경도의 弓才·馬才·氣力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兵營과 監營에 두도록 하였는데 그 수가 3,000명이라 하였다(정재각 외 3인, 앞의 책, p.440). 《숙종실록》에서는 친기위를 “右族驍健者 중에서 선발한다”(권 34上-11, 숙종 26년 2월 을해)고 하고 “士驍馬健”(권49-30, 숙종 36년

11월 갑진)이라 하였다. 또한 숙종 43년에는 “試才賜第者(합격자)가 다수 배출 되었으므로 친기위에 入屬되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다(《숙종실록》 권59-22, 숙종 43년 3월 병자). 한편 영조 5년 4월 병조판서 趙文命의 건의에 따라 각도 친기위·별무사의 試才에서 우등하거나 어느 한 武技에서 만점한 자(沒技者)는 무과 출신의 경우에는 邊將에 임용하고 한량의 경우에는 殿試에 直赴하도록 하며 官奴들은 免賤하도록 하였다(《영조실록》 권22-13, 영조 5년 4월 임인). 영조 11년 12월 경상도 진주에도 친기위를 두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친기위는 戰馬를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데 남쪽에는 말이 적고 또 영남에서 친기위를 두면 경기·충청·전라도에서도 두자고 청원할 것이므로 불가하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40-52, 영조 11년 12월 임신). 영조 25년 10월에는 병조판서 金尙魯의 건의에 따라 함경도 친기위로서 무과에 급제하고 또한 都試에 합격한 자를 權管으로 임용하도록 하였다. 그때 그는 함경남북도의 친기위는 모두 “驍勇善射”하고 軍馬도 건장하니 1,000인 이상을 더 두자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위의 책》 권70-20, 영조 25년 10월 계사).

정조 13년 監賑御史 鄭大容의 別單에 의하면 關北의 兵馬가 모두 6,000여명이나 戰馬와 軍裝服色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他軍役に 비하여 부담이 크므로 유력자는 여러가지로 그것을 면하고자 하고 無勢者로 그 숫자를 채우니 流亡者가 속출한다는 것과 앞으로는 馬兵都試를 親騎衛都試에다 分屬하여 각각 우등자와 한 武技에서 만점한 자를 모두 친기위의 예에 따라 선발하자는 것이었다(《정조실록》 권27-45, 정조 13년 7월 무술). 정조 21년 9월 獻納 丁志元이 상소하기를 北道의 10州 가운데 가장 믿음직스러운 것이 친기위 1,000인이거나 大邑은 100명, 小邑은 50명이 남북으로 산재하여 있으므로 불시에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47-22, 정조 21년 9월 갑신). 순조 15년 2월 전 함경감사 金履陽의 狀啓에 의하면 北關親騎衛의 都試 때 鳥銃一技를 別砲衛左右列에 移施하여(左右列에서) 각각 수석한 자 1인을 뽑는다는 것이었다(《순조실록》 권18-7, 순조 15년 2월 병술). 순조 22년 12월 함경감사의 狀啓에 의하면 北兵營 친기위에서 邊將으로 取才할 자리는 두 곳이라는 것이다(《위의 책》 권25-29, 순조 22년 12월 계해). 순조 26년 9월 南兵營의 親騎衛都試 狀本에 의하면 한 技藝에서 만점을 한 자가 29인이나 되었는데 이는 試法이 문란한 所以라 하여 兵使를 파직하였다(위의 책, 권28-14, 순조 26년 9월

기축).

18. 別武士

別武士는 훈련도감과 금위영·어영청의 馬兵들 중에서 선발하여 승진시킨 行伍(졸병)출신의 騎士로서 훈련도감에 68명, 금위영과 어영청에 각 30명씩 배속되었다(이홍직, 앞의 책, p.585). 그 외 각 도에서도 조선후기에는 別武士가 있었는데(鄉騎士) 숙종 10년 7월 宣川府使 金汝欽의 上言에 의하면 閑丁 900여명을 모집하여 別武士라 하고 또한 임금의 允허를 받아 將校로 임명하였다는 것이다(《숙종실록》 권 15상-49, 숙종 10년 7월 기축). 숙종 45년 정월 都提調 이이명의 上言에 의하면 평안도와 황해도(兩西)의 別무사 중에서는 어느 한 가지 무예에 탁월한 자가 없지 않으나 조총쏘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 別무사를 試取할 때 조총쏘기시험도 함께 보이자고 하였다(위의 책, 권63-1, 숙종 45년 정월 병자). 숙종 46년 정월 西路 別무사에게 사격시험을 보여 성적이 탁월한 자(沒技者)에게 과거에 곧바로 응시하게 하고 三南地方民과 같이 임용하도록 대사간 김유경이 上言하였다(위의 책, 권 65-3, 숙종 46년 정월 계미).

영조 11년 12월에 황해감사 俞拓基가 啓言하기를 황해감사 소속 別무사 중 매년의 都試에서 수석한 자를 과거에 급제시켜서 관직을 주고, 차석한 자에게는 邊將에 임용하도록 되었으나 근래 그 임용이 잘되지 않으므로 감영 소관 各屯 別將 5·6개 자리를 과거시험 합격자로 채우도록 하였다(《영조실록》 권40-52, 영조 11년 12월 임신). 영조 29년 2월 掌令 丁禧愼이 상소하기를 영남은 島夷(일본)와 접해있으므로 別武士都試之規를 만들어 前任防禦使 및 士夫子孫 중 활쏘기를 잘하는 자를 모두 入屬시켜서 재능을 시험보여 선발하자는 것이었으나 잘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니 西北諸道の 沒技直赴之規(어느 한가지 무예에 탁월한 자에게 곧바로 殿試나 會試에 응시하도록 하는 법규)에 따라 무예를 권장하도록 하자는 것이었고, 이에 임금은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위의 책》 권 79-13, 영조 29년 2월 신해). 정조 21년 윤 6월 壯勇大將 鄭民始가 啓言하기를 善騎隊中 간혹 무술기예가 월등한 자가 있으나 그들을 발탁할 官階가 없으므로 別무사 두 자리를 左右哨 善騎隊의 久勤窠로 하여 차례로 승진 또는 전보시키자는 것과 中旬에 연 3차 수석한 자는 훈련도감의 馬兵例에 따라 別武士로

승진 또는 전보시키며 會講時에 수석한 자는 곧바로 本營의 敎鍊官으로 승진시키자고 하였는데 임금이 이에 따랐다(《정조실록》 권46-56, 정조 21년 윤6월 경자).

19. 吹螺赤

취라치(吹螺赤)는 吹角(나팔 부는 것)으로 선발하고 날라리 부는 군사(太平簫)는 吹簫(통소 부는 것)로 선발한다. 나팔은 角 또는 螺라고도 하며 중국에서 軍馬를 놀라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것으로서 원래는 羌胡의 악기라고도 하며 조선에서는 大角과 小角이 사용되었다. 大角은 나무 또는 銀으로 만들어 朱 또는 黑色 칠을 하였고, 小角은 黃銅에 鍛金한 것 또는 소뿔로 나팔 부분을 만들고 나무로 자루를 달아 朱色の 칠을 하였다(《세종실록》 권133, 五禮軍禮序例兵器). 고려말 이성계 장군이 吹螺赤를 앞세워 吹角으로 군사를 모아 진격시켰는데(龍飛御天歌 19章, 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97), 조선 문종 때 五衛陣法이 갖추어져서 大角과 小角을 대장에게 각 2개씩, 部將·遊軍將·衛將에게 각각 1개씩 배정하여 號令을 할 때에는 먼저 대각을 불어 경계하고(令角) 전투를 알리는 戰角으로서 소각을 불게 하였다. 즉 대각은 進退를 촉구할 때 쓰며, 소각은 교전을 재촉할 때 쓴다(《문종실록》 권8-17, 문종 원년 6월 병술). 통소(태평소)는 세종 8년 明의 사신을 통해서 전래되어 軍器監에서 이를 모방하여 만들어서 傳習시켰다(《세종실록》 권32-1, 세종 8년 4월 을축).

취라치(吹螺赤)는 使役人이란 뜻을 가진 몽고어라고 하며 나팔 부는 군사를 의미한다. 세종 16년 임금은 병조의 啓에 따라 취라치가 軍中에서 가장 앞서서 병졸이므로 吹角만 시험 보이는 것은 옳지 않고 軍士例에 의거 騎射와 步射 중 한 武才를 시험 보여 뽑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64-3, 세종 16년 4월 임자). 취라치는 세종대에는 6품으로 去官하였으나(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598) 성종 2년에 종5품으로 去官하되 거관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었다(《성종실록》 권10-27, 성종 2년 6월 정미).

취라치의 정원은 문종 원년 8월 병조의 건의에 의한 의정부의 啓에 따라 5司各領에서 元額 2명, 預差 2명(합계 元額·加設 모두 50명, 預差 50명)씩 배정하여 각 領의 통솔자인 護軍으로 하여금 거느리도록 하고 그 근무일수를 살펴

서 병조에 보고하여 등용하는 데 참고하도록 한다(《문종실록》 권9-8, 문종 원년 8월 을해).

날라리(태평소)는 악기 이름이나 그것을 부는 군사를 지칭하기도 한다. 취라치와 같이 6품으로 거관하도록 하였다가 성종 2년에 종5품으로 거관하도록 하였다. 그 정원은 문종 2년에 元額·加設 모두 20명, 預差 20명으로各司마다 4명씩 분속시켰으며, 그 임용법도 취라치에 의거하도록 하였다(同上).

20. 補充隊

補充隊는 일종의 國役に 해당되는데 천인으로서 속량한 자, 특히 士人·良人이 公私婢를 妻妾으로 삼아서 그간에 출생한 자손으로 충원한다. 보충대는 조선국초부터 보충군으로 호칭되었다가 예종 원년 4월 개칭되었는데 원래의 奴婢從母法이 從父法으로 바뀌면서 보충군도 혁파되었던 것을 그 때 다시 노비종모법이 부활되면서 보충군도 復立됨과 동시에 軍이 隊로 바뀐 것이다(《예종실록》 권5-8, 예종 원년 4월 기사).

노비가 속량되자면 贖身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충군 내지 보충대에서 일정기간 복무해야만 했는데 그 복무내용은 軍役 뿐만 아니라 營繕·雜役에도 종사시켰고 樂工, 舞童, 驛館夫 등의 일도 하게 하였다(周藤吉之, 〈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研究〉, 《歴史學研究》 9-4호, 1939 및 《세종실록》 권80, 권63, 권39). 태종 15년 3월 이전까지는 관인들의 自己婢妾 소생 및 그 女孫과 妻邊婢妾 소생등을 司宰監水軍으로 충원하여 立役시켰으나 태종 15년 3월에 처음으로 보충군을 설치하여 그들을 거기에 소속시켜 分番侍衛로 군역을 지웠다. 그 때 干尺이라 불리우는 자들도 고려 때의 예에 따라 보충군에 소속시켰다(《태종실록》 권29-13, 태종 15년 3월 병오). 태종 16년 5월에는 보충군을 3番으로 나누어 6개월씩 서로 교대로 立番시켰다(《위의 책》 권31-37, 태종 16년 5월 신해).

세종대에는 보충군인 正軍 1명에 奉足 2명을 주어서 4개월씩 교대로 立番시켰고, 근무일이 많은 자에게는 隊副(9품)라는 職을 주어 去官시켰지만 婢妾소생 등은 보충군으로의 差役을 기피하여 도망치는 자가 많았으므로 세종 원년 7월에는 그들 婢妾소생들에 관하여 本主의 陳告를 허락하여 還給하였고 稱干稱

尺인 자는 관노비로 永續시켰다(《세종실록》 권4-26, 세종 원년 7월 신유). 그 무렵 2품 이상의 賤妾소생으로 隊長·隊副를 받은 자에게는 甲士의 취재시험이 허용되었고 세종 10년 9월에는 3품 이하의 賤妾子 및 雜色보충군이 去官하여 隊長·隊副가 된 자에게 모두 취재시험을 거쳐서 限品敍用하였다(《위의 책》 권 41-19, 세종 10년 9월 계유). 그러나 보충군을 限品으로 임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臺諫에서는 班常混淆·嫡庶通婚·過品 등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반대하였지만 세종은 고려 때의 賤妾子는 노비와 다름없었으나 조선에서는 限品敍用法을 만들었으므로 그들을 임용한다고 해도 祖宗成憲을 문란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위의 책》 권42-4·11, 세종 10년 10월 병신·무신). 그 다음해 11월 병조에서 啓하기를 세종 7년 정월의 受敎에 의거 各色補充軍의 나이가 60세가 되면 除役하도록 하자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위의 책》 권46-12, 세종 11년 11월 경오).

《경국대전》 형전, 賤妻妾子女에서는 「大小의 官人과 官員이 公私婢를 娶하여 妻妾으로 삼은 경우의 자녀는 그 父가 掌隸院에 告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해서 錄案한 후 병조에 공문을 보내어 보충대에 入屬시킨다. 그리고 나이가 16세가 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申告狀을 제출한 후 3년이 지나도록 立案(공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입안한 후 立役하지 아니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해서 도로 賤人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르면 보충대에로의 立役이 매우 형식화되어 갔다. 광해군 5년 8월 公私賤으로서 新良人이 된 자는 병조나 훈련원에서 30개월 근무한 후라야 都目 때 去官한다는 것이지만 補充隊 入屬者는 근무월수를 채우지 않고 “오늘 입속하였다가 내일 거관하며, 거관 후에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軍役을 회피하여 定軍者는 열에 한·둘도 없다”는 것이다. 근년에 보충대에 속한 자로부터 布 10필씩 징수하였는데 新良人들을 일일이 조사해내서 상당한 役에 充定해야만 軍額을 점차 채울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광해군일기》 권69, 광해 5년 8월 26일). 광해군 12년 2월에서도 公私賤이었던 新良人은 보충대에서 3년을 근무하고 거관한 후라야 영구히 양인이 될 수 있으며, 三醫司·書吏·正兵 등 役에 定屬된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149-3, 광해 12년 2월 경오). 그러나 이미 광해군 4·5년경부터 보충대 거관법이 폐지되어 공사천이었던 新良人들이 모두 役도 없이 한가로이 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三醫司와 書吏 중에는 그러한 자들이 과반수이

며 근래(광해군 12년 2월) 原從功臣 및 기타 사유로 면천된 사람이 부지기수이니 신랑인으로서 보충대를 거치지 아니한 자들을 일일이 조사하여 각자에게 10 필씩 收布하고 병조에 공문을 보내어 勸力副尉의 差帖을 내주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149-3, 광해군 12년 2월 경오).

숙종 6년 7월 영의정 金壽恒은 贖良後 보충대에 入屬하지 않아서 도로 천인이 된 자가 妻子인 경우에는 本主에게 돌려주되 自己婢妻子인 경우에는 公賤으로 入屬시키자고 하였고, 領中樞 金壽興은 두 경우 모두 본주인에게 돌려주자고 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우의정 閔鼎重의 견해에 따라 自己婢·妻婢·妾婢와 사이에 낳은 자식은 모두 贖身없이도 從良하게 한 것은 血族간의 情理 때문이라 하고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官에 신고하여 보충대에 입속한 후라야 양인이 된다는 것과 중종 19년 3월 17일의 受教(骨肉相殘不得使喚)는 법전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나 決訟 때 매번 公賤化(屬公)함은 부당하고 또한 嫡(主)과 庶孽(奴婢)이 4촌간일 때(조부의 자기비첩자의 자녀인 경우) 使喚함은 부당하니 면천시켜서 양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촌수가 5·6촌이 되면 使喚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 公賤化함은 남의 노비를 빼앗는 것이므로 역시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보충대의 帖文을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연내에 관에 신청하여 받아야 하고 明年(숙종 7년) 정월 1일 이후에는 그러한 帖文을 받지 못한 자들을 모두 還賤시켜서 本主에게 맡긴다고 하였다(《속종실록》 권9-61·62, 숙종 6년 7월 경인).

그러나 《속대전》 형전, 보충대에서는 자기비첩 소생의 자녀(孽자녀)가 보충대에 입속하지 않았음이 발각된 경우에는 公賤으로 삼는다고 하고 본주는 使役할 수 없다고 하여 위 김수항의 의견이 법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순조초 공노비제의 폐지와 함께 혁파되었을 것이며, 《대전회통》 형전, 보충대조에서는 이를 폐지한다고 註記하였다.

21. 雜色軍

雜色軍은 유사시에 동원하기 위하여 정규의 軍役賦課者 이외의 각종 人丁으로 편성한 예비군이다. 잡색군은 중앙 각 軍門의 예비군으로서도 존재하지만 진관체제하에서 전국 각지의 지방군은 留防(특수지역 방위)에만 종사하고 있었으

므로 賊이 침입하였을 경우 방비의 허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비의 허술함을 막기 위하여 잡색군이 편성되었다(민현구 외4인, 《앞의 책》 p.630). 태종 10년 2월 의정부에서 啓하기를 지방의 侍衛鎭屬軍은 이미 갖추어져 있고 지금 雜色軍丁을 點檢하면 農務에 방해가 되므로 3월 이후로 미루자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잡색군에 대한 官門點檢은 면제하고 스스로 修備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권19-9, 태종 10년 2월 경자). 태종 14년 윤9월 강원도에서 講武를 실시하였는데 임금은 농민(일반군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軍器監 소속의 잡색軍丁과 시위군의 隊長·隊副를 징발하였다(《위의 책》 권28-28, 태종 14년 윤9월 계묘).

세종 즉위년 9월 충청도 兵馬都節制使가 보고하기를 道內 別牌 중 한 가지 무예도 없는 자는 잡색군에 소속시키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1-22, 세종 즉위년 9월 무진). 세종 3년 8월 전라도 관찰사의 啓에 따라 道內郡縣 중 낮은 지대에서 水災를 당하여 곡식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船軍과 鎭軍의 立番을 8월에서 10월 15일까지 면제하고 곡식이 조금 잘된 州郡 잡색군내 壯實者 및 日守로 하여금 船軍과 鎭軍을 대신하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13-3, 세종 3년 8월 정유). 잡색군사 중에서는 양인 이외에 賤身分에서 贖良한 잡색보충군도 있었다(《위의 책》 권42-4·11, 세종 10년 10월 병신·무신). 각 도 잡색군의 병장기는 스스로 준비하였으므로(《위의 책》 권69-14, 세종 17년 8월 무신) 그 부담이 과중하여 제대로 갖추기가 어려웠기에 그것을 점검하면 소요가 있을 것이며, 田地를 모두 팔아야할 지경이라 하였다(《위의 책》 권69-20, 세종 17년 9월 기사). 잡색군은 사변이 있을 때에 모두 調發하도록 하고 50인을 1牌로 하여 摠牌를 두고 10인마다 小牌 1인을 두었는데 이는 각도 水陸正軍 이외의 鄉吏·驛子·公私奴婢 및 鄉校生徒 등을 本役有無를 막론하고 모두 板籍에 登名하여 作牌하고 잡색군이라 하였다(《위의 책》 권93-1, 세종 23년 6월 신미). 이와 비슷한 기사가 《세조실록》 권28-20, 세조 8년 5월 계묘에도 있는데 醫律學·日守·書員도 포함되었다.

세종 23년 7월 의정부의 啓에 따라 함길도와 평안도에서는 잡색군 중 壯實한 자를 골라 별도로 1牌를 만들어 비록 大賊이 없더라도 警急이 있으면 즉시 징발하여 軍勢를 넓히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93-10, 세종 23년 7월 신축). 문종 즉위년 8월 영의정 河演이 上書하여 屯田·屯兵之制를 건의하면서 둔병으로

中外閑散者·무과불합격자·나이 많고 재주 없는 校生·品官子弟·2품 이상의 妾子·成衆官 중에서 有故未去官者로서 넉넉하고 무예가 있는 자를 골라 充定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侍衛牌·營鎮軍·騎船軍 중 재능 있는 자를 골라서 移定 하며 그 移定者의 자리에 각 고을의 日守·書員·醫律生徒·楊水尺·잡색군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문종실록》 권3-21, 문종 즉위년 8월 병신).

세조 7년 4월 정창손·권람 등이 승지들과 事目을 만들어 啓하기를 雇工人을 모두 刷出하여 雜色軍案에 넣을 것과 挾戶·隱丁 등으로 權門勢家の 奴子가 된 자를 골라내어(自首시켜서) 양인이면 군역에 充定하고 公私賤이면 雜色案에 등록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세조실록》 권24-2, 세조 7년 4월 계유). 세조 7년 7월 병조의 啓에 따라 서울에서도 당상관 및 자식 없는 홀아비·늙고 병든 사람 등을 제외하고 지방의 경우와 같이 전직 3품 이하의 大小閑良人·諸司의 胥吏·僕隸·工匠·公私賤口 등을 戶籍에 의거하여 골라내어 3丁을 1戶로 잡색군으로 成籍한다는 것이다(《위의 책》 권25-5, 세조 7년 7월 신해). 성종 원년 2월 병조의 啓에 따라 지방의 諸鎭에서는 잡색군을 제외하고 매년 2월 10일 各自 習陣(군사훈련)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권3-21, 성종 원년 2월 계유).

중종 5년 9월의 제주목사의 防禦節目에 의하면 종전의 잡색군이었던 公私奴子를 모아서(刷出하여) 다시 훈련(습진)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중종실록》 권12-20, 중종 5년 9월 기사). 중종 20년 6월 병조판서를 비롯한 병조의 당상관들이 임금에게 올린 軍籍摠目에 의하면 正軍은 기사년(중종 4년)에 176,416명이었으나 그 때(중종 20년)에 10,275명이 증가하였고, 잡색군은 기사년에 123,408명이었으나 그 때 1,666명이 늘어났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54-42, 중종 20년 6월 신축). 중종 31년에 전라도를 비롯한 三道에 蟲害와 풍수해가 있었으므로 피해농민 중 군사인 자도 2,925명인데 이들에게 조세징수를 면제하더라도 징수가능한 군졸수는 30,432명이고 또 才人·白丁인 잡색군이 있어서 그 숫자가 적지 않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82-37, 중종 31년 9월 임술).

인조 6년 10월 병조판서 李貴가 啓하기를 祖宗朝의 教鍊法이 폐지되었으므로 병조가 도리어 點軍·收布나 하는 閑局이 되었다는 것과 평시에 正軍을 뽑아서 훈련해 두었다가 戰時에 대응하게 하고 公私賤으로 된 군사를 잡색군이라 하여 本道를 방어하게 하였다는 것, 그리고 柳成龍이 공사천인 正軍·保人을 모두 東

伍軍이라 하고 훈련도감의 군사들과 함께 훈련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훈련도감의 군사들에게는 1인당 보인 3인을 주고 매달 料米를 주었으나 지방의 속오군은 모두 身役之人(의무병)으로 강제로 隊伍에 充定하여 훈련시켰으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않다는 것과 또한 앞으로는 公私賤인 諸色軍으로서 上番하지 않은 자는 속오법에 의거 遷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인조실록》 권 19-39, 인조 6년 10월 병신).

숙종 45년 9월 우의정 李健命이 임금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임술년간(숙종 8년)에 淸城府院君 金錫胄의 건의에 따라 各軍門의 잡색군 15,000명을 삭감하여 그 인원을 각 고을로 보내어 도망쳤거나 죽은 자로 인한 부족수를 채우게 하였다(《숙종실록》 권64-15, 숙종 45년 9월 신미). 영조 4년 8월 임금은 각 營門소속 잡색군을 모두 혁파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영조실록》 권19-2, 영조 4년 8월 경진). 그러나 각 도의 잡색군을 혁파하여 正軍으로 편입·충당한다는 조정(廟堂)의 논의는 계속되어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였던 바 충청감사 金始炯은 그 시행상의 어려운 점을 임금에게 말하였다(《위의 책》 권19-24, 영조 4년 10월 무자). 영조 46년 5월 兵曹參知 申一淸의 上疏에 의하면 茂山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 5,000여호인데 잡색군액을 제외하고도 병사 3,000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무산은 獨鎭으로서 兵使에게 領率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위의 책》 권114-20, 영조 46년 5월 기축). 정조 3년 3월의 강화유수부 관내 잡색군은 모두 4,655(全軍의 39.2%)이었다(《정조실록》 권7-34, 정조 3년 3월 임진).

22. 東伍軍

東伍軍은 선조 27년을 전후하여 설치되기 시작하였다(《增補文獻備考》 권 109-18, 兵考1 및 권162-20, 戶口考2). 즉 선조 26년 6월 公私賤人도 良人과 더불어 軍務를 맡게 되었고, 그 해 10월 이후 속오법에 의거 훈련도감이 설치됨과 동시에 砲·殺·射手의 三手 技藝를 기초로 良賤混成의 지방군으로서의 속오군도 설치되기 시작하여 이듬해 말부터 보편화된 것이다(《선조실록》 권 39-22, 선조 26년 6월 정유 및 권49-6, 선조 27년 3월 갑신). 선조 27년 8월 포수의 훈련을 계기로 訓練都監의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훈련도감군은 속오

법에 의하여 편성되고 중국의 戚繼光의 紀效新書에 따라 훈련되었다(《한국군제사》 근세조선후기편, 앞의 책, p.13 및 p.28, 車文燮, 〈東伍軍研究〉, 《朝鮮時代軍制研究》, 단국대출판부, 1977, pp.179~183). 선조 27년 10월 柳成龍은 우리 장수들이 東伍分數之法을 모르고 군졸들이 잘 흠어진다고만 탓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고 속오는 “衛가 部를, 部가 旗를, 旗가 隊를, 隊가 伍를 각각 통솔하게 함으로서 많은 인원을 적은 인원처럼 거느릴 수 있다”고 하였다(《西厓集》 권14, 雜著, 〈戰守機宜十條〉, 東伍).

그 무렵 비변사에서 前日 黃海兵使 趙仁得이 뽑아 놓은 精兵 4,000명에 대하여 속오법을 적용하도록 건의하였다. 즉 “군사들의 強弱勇怯은 오로지 장수의 운용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과 그 군졸들이 潰散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오직 속오에 있다는 것, 그리고 東伍分部之法을 모르기 때문에 參差紊亂하다는 것을 말하고 紀效新書에 따라 隊伍를 나누어 隊長은 一隊를 통솔케하고 旗總은 3隊를 통솔케 하며, 哨將은 3旗를 통솔하게 하여 평상시에는 법에 따라 훈련시킨 후 그 재능을 살펴서 分等하여 임금에게 아뢴다는 것이다(《앞의 책》 권56-51, 선조 27년 10월 을축). 그러나 鎭管體制이면서 군사지휘권이나 훈련권을 중앙에서 장악하고 있어 수령이 어찌할 줄 몰라 속오군의 조직이 부진하였다(《차문집, 《앞의 책》 p.185).

여하간 지방군의 정비는 황해도부터 시작되었는데 해주에서는 良人·公私賤·內奴·庶孽을 막론하고 分等抄出하여 年少 壯健 伶俐하여 훈련·교습할만한 자를 上等으로 삼아서 兵法 東伍之規에 의거 10인을 隊로 하고 3隊를 旗로 하며 3旗를 哨로, 5哨를 師로 하되 司는 各哨의 多少에 따라 군사가 많으면 師司도 많고 군사가 적으면 師司도 적으니 이들을 모두 大將이 통솔한다는 것이다. 그 東伍東隊의 방법은 鄉里·比隣을 서로 붙여모으며 農時에는 날짜를 정하여 番次에 따라 교대로 훈련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屯田을 넓히고 農牛와 種子를 주어 中下等民은 농사에 전력하여 上等者에게 양식을 대어 奉足의 예와 같이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위의 책》 권65-18, 선조 28년 7월 정축·경진).

충청도에서는 砲·殺手 1명당 봉족 2명을 주었으나 폐단이 많았고, 전라도에서는 뇌물의 多少로서 속오군이 勒定되어 怨苦가 쌓였다고 하였다(차문집, 《앞의 책》 p.215). 평안도에 있어서는 이미 우의정 李元翼이 감사로 있을 때에 分部定將하여 哨官·旗總·隊總이 각각 소관 장병을 통솔케하며 砲殺之技로 教鍊

하여 그 수가 많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68-29, 선조 28년 10월 신유). 이와 같은 지방군의 속오편성은 선조 28년에 武學事目を 頒行하므로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同王 29년 전반기까지는 완료된 듯 하다. 그리하여 정유재란 때에는 4道 속오군을 징발하여 서울에 入衛케한 일도 있다. 그리고 東伍之軍·東伍軍兵·東伍軍卒·編伍軍 또는 哨軍으로 호칭되던 것이 속오군으로 용어가 통일된 것은 대체로 선조 30년경이라 한다(《한국군제사》 근세조선후기편, 앞의 책, pp.30~31).

속오군의 編制에 관한 史料는 경기도와 평안도의 것 일부만 남아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全道를 4營으로 나누어 左右前後營으로 하고 서울의 훈련도감군을 中營으로 하는 5營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전후좌우영은 津·山城 등 요새지에 설치된 점이 진관체제에 있어서의 巨鎭이 행정상의 단위로 설치된 점과 다르며 그 아래 前後左右中司가 있어 각 邑이 분속되었다. 또 그 이하 哨·旗·隊는 각읍의 面·里·村의 형편에 따라 분속시켰다. 그러나 강화喬桐은 海島이므로 육군에 예속되지 아니하였다(《軍門臚錄》 속의 編伍事目).

哨 이하의 편제는 평안도에 관한 류성룡의 《鎭管官兵編伍殘卷》에 의하면 砲手·射手인 隊는 火兵 이외 10명 모두가 같은 砲手·射手로 되어있으나 殺手의 경우에는 隊總 이외 11명이 다양한 무기를 갖도록 되어 있다. 평안도(安州鎭管)의 右營左司의 三手의 隊別 통계는 총 36隊중 砲手 8隊, 殺手 5隊, 射手 23隊이며 그 중 奴가 전혀 없는 것이 6旗18隊로서 모두가 射手인 隊이다. 또 把摠과 哨官은 무과출신이나 旗總은 모두가 양인이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精兵의 필요성 때문에 중앙군으로서는 兵農을 분리한 召募給料兵制로서의 훈련도감이 창설되었으나 경제적인 困乏 때문에 지방군까지 그러한 군사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않고 鄉里에 따라 紀效新書의 속오법으로 部伍를 단속(결속)하는 속오군을 조직하여 양인 이외의 公私賤까지 포함시켰던 것이다(《한국군제사》 근세조선후기편, 앞의 책, pp.33~37).

선조 30년 11월 비변사에서 啓하기를 각 도의 속오군은 有役·無役의 公私賤을 막론하고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단결(결속) 作隊하였는데 비단 賤人만이 아니고 양반 유생이나 衙前之類로서 土木之役을 감당할 수 없는 자도 그 중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속오군은 양반이나 아전들은 물론 公賤까지도 대개 빠지고 가난한 양민이나 私賤들이 포함되었는데 속오군이 동원될

때 군사들이 鳥銃·弓箭 등을 모두 팔아버리고 양식이 부족하면 또 의복까지 팔아서 심지어 市里에서 行乞하면서 원성이 길에 가득차니 모두가 속오를 禍根이라 하였다. 또한 私賤인 경우 타인의 사유재산이므로 그 주인에게 官爵이나 他奴로 代償해야만 했다(《앞의 책》 권94-20, 선조 30년 11월 계묘 및 차문섭, 《앞의 책》 pp.213~216).

속오군은 本役이 따로 있으면서 속오군에 편입되어 一身兩役을 지게 되었는데 선조 31년 정월 사간원에서는 免賤·免鄉·免役人이 많은 중에서 속오군은 防戰·役使·天兵(中國軍)供奉 등으로 혹사당하고 있다고 啓하였다(《위의 책》 권96-31, 선조 31년 정월 임자). 선조 31년 7월 강화부에서도 옛날에는 精軍이 많이 있어 속오군에 들어간 자가 몇천명이 있었으나 근래에는 요역이 번거롭게도 많아서 훈련을 전폐하여 쓸만한 군사가 없으니 경기감사로 하여금 事勢를 參詳하여 강화부의 요역을 관대하게 推移하여 민력을 펴게 해서 조직화(단속)하게 되면 「朝發夕至」 할 수 있게 된다는 것과 지난해 황해도·평안도·함경도의 군사로서 징집되어 올라 온 자가 몇만 여명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10여일 사이에 도착하였으니 이는 대체로 속오법이 있어서 군사를 결속한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속오법이 폐단이 되어 날로 군대의 士氣가 해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위의 책》 권102-19·20, 선조 31년 7월 갑오).

또한 선조 32년 4월 사간원에서 啓하기를 兵亂 이후에 公私賤·雜類를 막론하고 모두 속오군으로 편성하여 무예를 가르쳐서 위급할 때를 대비하게 하였으나 지금은 東伍之役이 正軍의 倍가 되었으며 해당 고을(本官)에서 조금이라도 役民之事가 있으면 속오군을 쓴다는 것과 속오군은 官門에 長立하면서 조금도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 上番할 때에 속오군을 諸將의 衙門으로 나누어 배정하는데 아문의 하인(幫子)이 채찍으로 때려서 그 침해당하는 고통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 하였다. 속오군은 원래 本役이 있었으나 또한 保人을 거느림이 없어서 한 집안내의 父子兄弟를 인원수대로 헤아려서 충당하니 비록 늙은이나 어린이도 면할 수가 없고 그 役의 고됨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이므로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도망쳐 흩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111-2, 선조 32년 4월 정사).

선조 34년 4월 兼4道 都體察使 이덕형이 馳啓하기를 지난날 民兵을 뽑아서 속오군이라 하고 公私賤도 섞어 편성하여 일응 賦役에 골라쓰니 민원이 널리

피져 있고 그 고통스러움이 견딜 수 없을 지경이라서 속오군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며 富力者는 빠지기를 피하고 孤弱者만 거기에 속한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136-15, 선조 34년 4월 을유). 속오군이 창설된 직후인 선조 27년 12월에 이미 속오군에 관한 폐단이 지적되고 있었다. 즉 賤人從母法이 오래 시행되어 양민이 날로 줄어들어 軍額이 크게 감소되었으므로 公私賤人도 모두 속오군에 넣었으나 지방군은 이미 本役이 있는데 또 속오라는 군역을 지워서 保人도 주지 않고 京軍(훈련도감병)과 같은 보수도 주지 않아서 도망자가 계속되어 州縣의 폐단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선조수정실록》 권 28-16, 선조 27년 12월 갑진).

광해군 4년 11월 鄭仁弘이 啓하기를 속오군의 役을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과 조정에서는 束伍軍人數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령을 賞罰하므로 수령이 그 숫자 채우기에 힘써서 비록 그 숫자가 많아졌으나 모두 노약자와 殘疾者들로서 이러한 무리들로서 적을 방어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광해군일기》 권59-2, 광해 4년 11월 신묘). 정인홍은 일찌기 류성룡을 비난하면서 그가 만든 束伍募屯等事를 모두 혁파하자고 건의한 바 있었다(《위의 책》 권 59-3, 광해 4년 11월 신묘). 이러한 수령중심의 속오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만든 것이 인조 5년 4월에 성립된 營將制度이지만 훈련권(營將)과 행정권(수령)의 분리로 문제가 있어 병자호란 이후 속오군은 수령중심으로 운영되다가 효종 때 다시 營將制가 復置되고 효종 흥거후 다시 논의를 거듭하다가 숙대 전에서는 兼營將制로 환원하였다(차문섭, 《앞의 책》 pp.197-198).

광해군 6년 7월 公洪(忠淸)감사 尹孝雋이 말하기를 옛날에 자신이 평안도 관내 영유현령으로 있었으므로 평안도의 軍兵之事를 잘 안다는 것과 평안도 여러 고을의 속오군은 매우 精銳한데다가 그 수도 25,000명 이상이며 이들 군사가 항상 압록강변을 교대로 지키는데 근래 들으니 명나라(上國)에서 파병요청(徵兵之舉)을 한다고 하니 부득이 보내야 할 경우에는 평안도 속오군 중 1만명을 보내고 나머지 1만여명으로 평안도를 지키게 하면 될 것이라 하였다. 이에 임금은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위의 책》 권80-14, 광해 6년 7월 정묘). 광해군 10년 윤4월에 병조에서 啓하기를 갑인년(광해 6년)에 결재받은 공문을 보니 평안도의 속오군이 25,000명이나 그 중 老殘하여 收布軍이 된 자가 12,500명이므로 이들을 빼고 훈련시켜서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게 하면 이

길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 각 도에서 두루 징병하면 그 폐단이 걱정된다고 하였다. 다른 곳에서는 군사를 선발(調發)하지 말고 단지 평안도에서 7,000명, 황해도에서 2,550명, 강원도에서 200명, 개성부에서 50명을 뽑아 내어 出師(여진족 정벌)를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평안도의 군병은 거의 30,000명이 나 되며 正軍도 여유가 있으므로 비록 7,000명을 뽑아서 上國(명나라)의 명령에 응하더라도 나머지 군사로 국경을 방비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下三道와 강원도의 군병을 각각 수천명 뽑아서 대기시키고 경기도와 개성 등의 군사는 모아서 서울의 不時之用에 대비케 하되 常人·兩班·朝官·閑良 등을 막론하고 별도로 가려 뽑아서 대기시켜 갑인(광해 6년) 事目대로 시행하자고 하였다.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위의 책》 권127-27·28, 광해 10년 윤 4월 을해).

이와 같이 속오군은 明을 도와 만주로 출정하게 되는데 그들에 대한 공식적 처우문제가 논의된 것은 인조 5년 4월의 營將節目에서이다. 즉 속오군 중 老殘者를 제외시키고 壯丁으로 편성하되, 老殘者는 軍餉助軍으로 하고 무기를 官給하며 連次居首者에게 給復(戶役免除)하는 것 등이 거기에 포함되었다(《인조실록》 권16-12, 인조 5년 4월 병진). 그러나 그 후 많은 양민은 收布軍化하였고, 丁壯 抄擇制는 도리어 富實者가 속오군을 빠져나가는 구실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속오군에는 殘弱者만 남게 되어 가난한 일부 良丁과 賤隸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차문섭, 《앞의 책》 p.218). 여하간 속오군으로서 도망친 자에 대해서는 선전관을 보내어 처형한 후 梟首하였다(《인조실록》 권17-40, 인조 5년 11월 무인).

인조 6년 10월 병조판서 李貴가 啓하기를 故相 류성룡이 처음으로 公私賤과 正軍·保人을 모아서 모두 속오군이라 칭하고 훈련도감군과 함께 훈련하였다는 것과 훈련도감에서는 매1인당 보인 3인을 주고 또 월급으로 料米를 주나 지방에서는 속오군이 모두 身役이 있는 사람을 강제로 隊伍편성하여 훈련시키는데 營將을 별도로 파견하였지만 그 폐단이 무궁하니 앞으로는 公私賤인 諸色軍 중 上番하지 아니한 자는 속오법에 따라 遷動하지 못하게 하자고 하였다(《위의 책》 권19-39, 인조 6년 10월 병신).

인조 6년 12월 軍籍廳堂上 李曙가 啓하기를 비록 正軍일지라도 作束하면 역시 속오군이 되나 지금은 정병이 당면이면 騎兵이라 하고 營將에게 환속하면

속오군이라 하여父子가 1戶에 같이 있으면서 두 곳을 바쁘게 달려가야 하니 行資가 부족하고 집안일을 돌볼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戶首가 속오군으로 있는 경우 그 아들은 父의 上番日字에 한하여 모두 훈련을 면하게 하여 兩役의 폐단이 없게 하고 또 각 도의 營將으로 하여금 정군 1호 중 戶·保 2·3인이 모두 속오군에 든 경우에는 壯丁 1인을 골라 거기에 남기고 나머지는 汰去하자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위의 책》 권19-62, 인조 6년 12월 신묘).

인조 8년 정월 임금이 문기를 각 고을에서 속오군을 뽑는 것이 고르지 못하여 작은 고을의 군역이 무겁고 큰 고을의 그것이 가벼워 불공평하므로 인구비례로 뽑는 十分取一之法을 만들었던 바 충청도에서 소요가 있었음은 무엇 때문이냐고 하자 특진관 이서는 正軍의 保人들을 속오군으로 充定했기 때문이라 하였다(《위의 책》 권22-5, 인조 8년 정월 계묘). 그에 앞서 인조 7년 12월 公淸(충청)감사 南以雄이 東伍什一抄定之弊를 啓陳한데 대한 비변사의 回啓에 의하면 十一編束之命은 부득이한 조치이며 실제상 호패총수의 6·7분의 1을 뽑게되므로 소요가 있었던 것이므로 10분의 1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위의 책》 권21-51, 인조 7년 12월 신미).

인조 11년 2월 승정원의 啓에 의하면 8도의 田結은 모두 53만여 數이고 여러 곳의 속오군 수는 97,000여인이며 그 외 무과출신자 및 武學·雜色軍兵之數가 4·5만명 이상이라 하였다(《위의 책》 권28-7, 인조 11년 2월 병인).

인조 14년 7월 金鑿가 말하기를 8도의 軍案을 모두 조사하니 出武·演武·壯武·忠壯·忠翊·忠順·忠贊·業武·新選 등 여러 명목(諸色)의 군인과 속오군을 合計하면 모두 118,825인인데 그 중 평안도 및 각 도의 諸色軍을 제하면 속오군만은 86,073인으로, 그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2만인을 뽑아서 비상시에 대비하자고 하였다(《위의 책》 권33-4, 인조 14년 7월 병오).

그러나 효종대부터는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속오군에 收米法이 적용되었다. 즉 효종 원년 개성부의 속오군 1,000여명은 모두 商人이므로 米斗를 바치고 훈련을 면제받았다(《비변사등록》 14책, 효종 원년 8월 17일). 숙종 29년에는 양인은 20斗, 私奴는 15斗를 納粟하면 立番이 면제되었고 이러한 속오수미법은 숙종 말년에 이르면 총융청 소속 모든 속오군에게 보편화된 것 같다(차문섭, 《앞의 책》 p.199). 《비변사등록》 159책, 숙종 34년 8월 21일의 記事에 의하면

壯實한 良丁은 모두 徵布로 빠지고 疲殘無依之類만으로 속오군에 充員되었다는 것이다. 여하간 효종은 유명무실하였던 營將制를 부활하고 군제를 개편하는 동시에 경상도 속오군에 대하여 奉足定給節目을 반포하였다. 즉 속오군의 族屬·隣里·公私賤·軍保之類 중에서 스스로 원하는 1인을 봉족으로 정하고 이들에게서 매1년에 糧米 7斗를 내게 하여 軍資裝에 補하도록 한다는 것과 이러한 봉족은 官家나 사대부·鄉儒·品官의 奴僕은 물론 豪勢家戶의 入接之輩까지 모두 搜括해서 充定 한다는 것이었다(《비변사등록》 17책, 효종 5년 9월 29일). 이러한 경상도 속오군에 대한 奉足定給節目은 여러가지로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 효종 5년 11월 領敦寧府事 金堉이 영남에서 속오군의 給保之擧로 소요가 있다고 하였다. 28,000여 명의 保人을 일시에 찾아서 充定하니 어찌 폐단이 없겠는가라 하고 一道의 백성이 그로 인하여 흩어진다는 것이다(《효종실록》 권 13-22, 효종 5년 11월 기해). 그러나 복벌을 계획하고 있던 효종은 이를 거부하였지만, 경상도 속오군에게 주던 保人制는 효종 死後 속종 원년 이전에 없어졌다(《비변사등록》 31책, 속종 원년 12월 4일).

효종 8년 정월과 2월에 군신간에 三南속오군의 給復(戶役免除)문제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大臣과 諸卿들 중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 그대로 給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삼남에만 給復을 행하고 他道에는 시행하지 않음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졌다. 임금은 가을까지 기다린 후 變通하자는 의견에 따랐다(《효종실록》 권18-8, 효종 8년 2월 정축). 여하간 효종 이후는 營將중심의 속오군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王城중심의 군사체제를 지향하고 收米布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속오군은 그 후에도 명맥은 계속 유지되었다(차문섭, 앞의 책, p.200).

현종 12년 8월 좌의정 鄭致和가 말하기를 歲抄(정기적인 결원보충)가 이미 정지되어 있으므로 諸員과 諸色軍은 代定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속오군의 경우에는 만약 수시로 充定하지 않으면 闕額이 많아지게 되어 비록 풍년을 만나도 그것을 일시에 充定하기는 어려우니 수시로 代定함이 옳다고 하였다(《현종실록》 권19-37, 현종 12년 8월 병술). 《현종개수실록》 권10-8, 현종 4년 11월 정축의 기사에 의하면 선조 26년 류성룡의 건의에 따라 훈련도감을 만든 이래 그 후 각 도로 하여금 매式年에 精壯한 戶首 200인을 뽑아서 東伍砲手라 이름하여 무장을 갖추어 서울로 올라오게 해서 各哨의 결원에 充當하였는데 인조

이후에는 그 숫자가 날로 증가하여 3,000명~4,000명이 되었고, 申景禎이 大將일 때에는 5,000여명, 효종 때 李浣이 대장일 때에는 馬兵 1哨가 증가하고 무술년(효종 9년)에는 또 步軍 10哨가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그 후 신해년(현종 12년)에는 새로이 別隊를 만들어 馬兵 매戶당 4保, 步軍 매호당 3保를 주어 각자 3필의 布木을 바치게 하였다는 것이다(都監軍이 給料兵인 점과 다르다).

현종 5년 12월 함경감사 閔鼎重이 啓하기를 道內 公私賤 중 속오군에 편성된 자가 가장 고역이라 하고 一家內의 妻子數의 다소를 막론하고 모두 納貢하게 하여 가련하다고 하면서,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매년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保人 2인을 주도록 하되 그들의 妻子姉妹로서 보인을 삼는다면 그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덜어질 것이라 하였다(《현종개수실록》 권12-26, 현종 5년 12월 정해). 현종 7년 11월 수원부사의 말에 의하면 수원부의 속오군이 매년 증가하여 6,000여 명에 이르렀으며 그 중에서는 노약자와 도망친 자, 죽은 자가 많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영의정 鄭太和의 건의에 따라 수원의 軍額을 4,000명으로 減定해 주었다(《위의 책》 권16-16, 현종 7년 11월 임오·을유). 현종 12년 6월 수어사 李浣이 말하기를 東伍之規는 上番하면 京軍이 되고 下番하면 鄉軍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속오군병을 삭감하여 精抄軍으로 充定하니 無費有用之兵이 有費無益之軍으로 되었다고 하였다(《현종개수실록》 권 24-20, 현종 12년 6월 기축).

숙종 원년 2월 황해병사가 西路軍兵과 器械를 30년간이나 폐기한 나머지 속오군 15,000명이 태반이나 결원이 되었다고 하였다(《숙종실록》 권2-32, 숙종 원년 2월 기유). 숙종 3년 5월 제주의 속오군이 防軍을 겸하게 되어 兩役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히 戶內의 雜役을 감면하였다(《위의 책》 권6-27, 숙종 3년 5월 계미). 숙종 7년 8월 同知經筵 李端夏가 地方兵政의 積弊에 관하여 말하기를 속오병을 通計一國하면 20여만명으로 軍裝을 스스로 갖추는데 田地를 팔아야 하는 수가 많아서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지금 만약 壯丁만을 골라서 實兵으로 하고 나머지는 保人으로 하면 精兵이 될 것이라 하였다(《위의 책》 권 12-9, 숙종 7년 8월 무자).

숙종 7년 12월 병조참판 李師命이 상소하여 戶布를 論하기를 元戶 100여만 호 중에서 公私賤·廢疾·流乞 등으로 徵布할 수 없는 40여만호를 제외하면 징포할 實戶는 70여만호라는 것과 이들로서 징수하는 포목만으로는 50만필이 부

족하다고 하나 그것을 賤人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賤人이 많고 양인이 적다고 하지만 關西戶를 예시하면 총 17만호 중 公私賤은 불과 3만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5위제가 붕괴된 후 可用兵力(堪戰之卒)은 단지 어영군·精抄·別隊의 戶首와 훈련도감의 포수 3만여명, 그리고 속오군 20여만명, 총융·수어청의 牙兵·각 도의 新選 2만여명이며, 保人 收布之類는 모두 閑遊無役人이라는 것이다(위의 책, 권12-60, 숙종 7년 12월 갑오). 그런데 30여년간 시행되던 속오군에 관한 給復法이 숙종 9년에 혁파되자 지방군의 핵심인 속오군은 사실상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는 부실한 군대가 되었다(차문섭, 앞의 책, p.224 및 《비변사등록》 37책, 숙종 9년 정월 12일).

숙종 12년 5월 좌의정 南九萬이 말하기를 祖宗朝의 騎正兵(및 步正兵)이 지금은 收布之軍(良丁)으로 바뀌고 지방의 戰卒은 오직 속오군 뿐인데 속오군에게는 보인도 주지 않고 또 復戶(戶役 면제)도 해주지 않으면서도 軍裝을 스스로 준비하게 하고 武術의 技藝를 연습하도록 하며 평시에는 군사훈련을 시키고 변란이 있을 때에는 死地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였다. 효종조때에 營將을 신설한 후 삼남의 속오군은 他道에 비하여 약간 精鍊하였으나 근래에는 연이은 흉년으로 군사훈련이 정지된 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위의 책, 卷17-24, 숙종 12년 5월 병술, 同卷 18-43, 숙종 13년 9월 신축에도 비슷한 記事가 있음).

속오군에 대한 給保問題는 숙종 33년 5월에 知經筵事 李寅燁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즉 그동안 속오군을 조정에서 軍伍로 대우하지 않았으므로 매우 허술하게 되어 유사시에 調發하여도 흩어져서 씨먹을 수가 없다고 하고 그들에게 1인의 保人을 주어서 5·6斗의 쌀을 내게 해서 資裝에 쓰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保人은 子姪 중에서 골라 쓰므로 비록 그들로부터 쌀을 받지 못해도 子姪에게 도와주는 셈이 되니 좋다는 것이었다(《비변사등록》 58책, 숙종 33년 5월 17일). 그러나 給保問題는 이 때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경종 원년 8월에도 좌의정 李健命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속오군은 모두 公私賤을 充定하였다는 것과 지금 關西의 양민들은 2匹의 役(부담)이 1匹로 감해졌는데 이들 壯丁을 모두 선발하여 속오군으로 充定하고 명칭을 武學이라 하며 公私賤으로서 일찌기 속오군이된 자를 武學의 保人으로 하여 각각 1保씩 주라고 하였다. 임금이 윤택하지 아니하였다(《경종실록》 권4-20, 경종 원년 8월 계해). 결국 속오군에 대한 給保는 영조대에 이르러 본격화되었다. 즉 영조 4년

3월 이인좌난이 일어나자 속오군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되었다(《영조실록》 권 18-32, 영조 4년 7월 임자).

영조 5년 3월 副護軍 이어적의 건의에 의하면 속오군의 통솔권이 營將에게 있으므로 수령에게는 手下兵이 전무하므로 納米·納布하는 保人들을 조직화하여 평상시에는 그들로부터 布米를 받고 亂時에는 그들을 거느리게 함이 좋겠다는 것이었다(《위의 책》 권21-31, 영조 5년 3월 을묘). 그 해 12월 爲政者들은 속오군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고 모순을 지적하게 되었다. 즉 영의정 洪致中과 이조판서 趙文命은 지방에서 收布에만 전념하고 속오를 소홀히 하여 將校는 활 쏘기를 연습하지 않고 軍卒은 放砲를 모르며, 결원을 채우지 않고 旗摠이 東面에 있는데 隊下는 西面에 있어 呼吸相通·首尾相救할 수 없다는 것이다(《비변사등록》 86책, 영조 5년 12월 12일).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조 6년 9월에 20여條의 束伍節目이 발표되었다. 거기에 의하면 營將所居地를 중심으로 束伍作隊를 할 것과 죽은 자·도망자 등의 처리, 결원보충규칙, 위법자에 대한 처벌, 훈련법, 哨官의 擇差와 仕滿규칙, 속오군의 給保문제, 各哨의 旗·隊長 및 各邑色吏 등의 군졸에 대한 폐단 단속, 營將의 號令을 준수하지 않은 수령문제, 수령이 馬·步軍을 官役に 쓰는 것을 禁止, 作隊(各司 哨는 旗摠 3명, 隊長 9명, 元軍 90명, 火兵 9명, 小計 111명 외에 書記 1명, 將旗手 1명, 鼓手 1명, 卜馬軍 9명을 더하면 123명) 후 보고 등을 규정하였다(위의 책, 88책, 영조 6년 9월 25일). 속오군에 대한 給保 1명과 雜役減免, 色吏들의 情債금지, 가렴주구 금지 등의 규정은 확실히 속오군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켰던 것이나 실제상으로 그대로 시행된 것인지는 의문이다(차문섭, 앞의 책, p.226).

영조 23년 7월 함경감사 李宗城이 상소하기를 조선국초의 軍制였던 五衛가 (임진왜란 때) 혁파되고 속오군제로 바뀌어 100년간 시행된 후 또 오위군제로 되었지만 이는 오위제와 속오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군에 定制가 없고 兵에 定額(T/O)이 없으며 오위군에게 고통만 加重시킨 것이라 하였다. 賤隸로서도 富實한 자는 모두 軍籍에서 빠지고 鄉族 중 빈궁한 자를 점차 卒伍에 충당하여 선비들이 본분을 잃고 愁心과 원망이 날로 쌓인다고 하였다(《영조실록》 권 65-34, 영조 23년 7월 신묘). 영조 24년 9월에는 正言 朴盛源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良役을 혁파하고 富實한 백성들을 모두 속오군에 充定하여 資裝保 10명

을 주고 保錢은 口錢에 따라 시행하면 고통분담이 될 것이라 하였다(위의 책, 권68-19, 영조 24년 9월 무인).

또한 영조 25년 12월 湖南御史 金致仁이 復命하기를 각읍의 속오군은 모두 私賤·無依者로 充定하여 훈련할 때에는 재빨리 도망쳤으므로 將校들은 거지들을 불러와서 급히 充員한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70-30, 영조 25년 12월 계묘).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영조 6년의 속오절목이 형식적인 文具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私賤의 軍隊가 된 속오군은 본래의 身役과 東伍役 등으로 一身兩役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정조 4년 2월 훈련대장 具善復의 상소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균역법(영조 26년) 시행 후 良軍은 단지 1필의 布木을 납부하게 되었으나 私奴는 그 주인에게 평생 사역되면서 納米와 훈련 및 허다한 잡역을 지게되어 양역에 비하여 심하다”고 하였다(《정조실록》 권9-15, 정조 4년 2월 경오).

영조 27년 정월 예조판서 申晩이 말하기를 각 읍에 속오군이 있어 亂을 만났을 때 營將이 이를 거느리나 本邑에서는 방어할 他軍卒이 없어 한심스럽다고 하였다(《영조실록》 권73-2, 영조 27년 정월 계묘). 그러나 그 후 속오군도 收布米軍化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영조 34년 11월 수원에서도 개성의 경우처럼 需米東伍라 하여 6두의 미곡을 바치는 총융청 소속의 東伍兼役이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수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총융청 소속의 다른 고을도 마찬가지였으며 속오군이 1년간 바치는 비용이 收布軍(良役者)의 그것에 배가 되었다는 것이다(《비변사등록》 135책, 영조 34년 11월 29일). 속오군에 대한 훈련과 巡點도 영조 말년 이후에는 흥황이란 이유로 거의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차문섭, 《앞의 책》 p.228).

《속대전》 병전, 免役條에서는 부자형제 등 가족이 3·4인이나 속오군으로 編伍되었을 경우에는 父나 兄의 役을 면제하여 주고 또한 1인이 거듭 役을 지게 될 경우에는 後의 役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속오군은 영조 말년에 이르면 거의 모두 皮폐하였다(《영조실록》 권118-18, 영조 48년 2월 병자). 영조 52년 2월 行副司直 具善復이 上書하여 말하기를 각 도의 속오군이 창설될 당시에는 良賤을 막론하고 함께 充定하여 定員을 채웠으나, 良役變通後(영조 26년의 均역법 시행 이후)에는 私奴만으로 충원하여 아침에 편성하면 저녁에 흩어져서 10중 7·8은 못채웠다는 것과 훈련 때에는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내

세우는 일도 있으니 유사시에 어찌 속오군에 의지할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위의 책》 권127-15, 영조 52년 2월 경술).

속오군의 피폐화 현상은 정조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정조 2년 6월 大司成 류당이 상소하기를 8도의 속오군이 21만명이라 하나 노약자로 충원되어 있으며 豪丁壯夫는 반수가 吏鄕(향품이나 아전)의 養戶로 되어 있고 忠勳府에서도 良丁을 橫占하였으며 鄕校와 서원에 濫屬募入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망쳐서 役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富하고 유력한 자는 가벼운 役에 투입되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만이 正軍에 이름이 올라 있지만 正軍의 軍籍簿 또한 虛簿로서 保布의 白骨徵布, 隣徵 등으로 수탈되지 않은 고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8도의 속오군을 10만으로 줄이고 법대로 훈련시켜서 精兵化하는 것이었다(《정조실록》 권5-69, 정조 2년 6월 신사). 그 해 9월 副司直 姜游도 비슷한 건의를 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속오군이 모두 19만명이나 그 중의 상당수가 노약자이니 속오군 중 步兵·馬兵·雜色軍을 각각 4분의 1을 줄이고 壯實한 자 15만명만 남기자는 것이다(《위의 책》 권6-43, 정조 2년 9월 병신). 그러나 그러한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그 후에도 속오군을 반감하여 건실한 良丁만 남겨서 정군으로 승격시켜 作隊하고 나머지 반은 資保로 낮추어 정군의 뒷바라지를 하도록 하자고 하였다(《위의 책》 권38-11, 정조 17년 8월 기축).

정조 20년 3월 훈련대장 李柱國이 상소하기를 우리 軍制인 束伍之規는 周室의 兵農之制와 分番之法을 모방하였고 唐나라의 長征之例를 取했다는 것과 임진왜란 이후 오위가 諸營으로 변하였으나 서울의 병력이 萬數가 차지 아니하여 걱정하던 중 임금께서 壯勇營을 특별히 설치하였다는 것이다(《위의 책》 권44-33, 정조 20년 3월 무진). 장용영은 京師에 內營, 華城에 外營을 설치하였는데 외영 소속 5읍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속오군 510명과 納布軍 490명을 특별히 감액하고 또한 5읍(龍仁·振威·安山·始興·果川)의 속오군 중 精壯者를 뽑아서 차례대로 壯勇外營에 移屬하였다는 것이다(《위의 책》 권49-53·54, 정조 22년 10월 기유).

순조 8년 8월 비변사 有司堂上인 沈象奎가 속오군은 모두 가난한 無賴之類라고 하자 임금은 각 읍의 標下軍이나 兩營(어영청 및 금위영)의 番上軍 및 척후병·伏兵 등은 모두가 속오군 名色이나 그 모양은 허술하기 그지없다고 하였다

(《순조실록》, 권11-20, 순조 8년 8월 갑오). 이와 같이 18세기 말기와 19세기 초기의 속오군은 유명무실하였지만 19세기 중엽 고종시대의 속오군은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나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고종 3년 9월 양주목사가 속오군 200명을 거느리고 礪峴을 防守하였는데 그 중 100명은 금위영 소속 군사를 이속받은 것이었다(《고종실록》 권3-60, 고종 3년 9월 10일). 고종 21년 9월의 승정원의 啓에 의하면 前충용청 소속 南陽·坡州·長湍·朔寧·麻田·高陽·交河·陽川·積城·漣川 등 고을의 속오군은 海防衙門으로 이속한 바 있다는 것이다(《위의 책》 권21-71, 고종 21년 9월 2일). 또 고종 29년 12월 경상감사의 狀啓에 의한 兵曹의 啓에 따라 새로 府로 승격된 聞慶에서 鳥嶺 및 諸山城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聞慶府의 屬邑 중 龍宮·醴泉·咸昌鎭管을 문경부로 이속함과 동시에 속오군도 그 지휘권을 移管하였다(《위의 책》 권29-76, 고종 29년 12월 27일).

23. 赴防

赴防이란 각도의 군사가 함경도와 평안도 등 서북 국경지방을 방위하기 위하여 수자리 서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 8년 정월 병조의 啓에 따라 赴防甲士에게 실제 赴防日數를 살펴서 京中番上 甲士例에 의거 근무일수를 쳐주되 接戰日에는 비록 斬級(적병을 죽임)이 없었더라도 진심으로 力戰한 자에게는 1일을 근무일수 100일로 쳐준다(《세종실록》 권31-10, 세종 8년 정월 신유). 이러한 赴防制는 조선국초에 이미 확립되었는데 赴防軍士 중에서는 倭人도 섞여 있었다(《세종실록》 권4-5, 세종 원년 5월 경신). 또 세종 18년 윤6월 의정부의 啓에 따라 평안도와 함길도 연변 각처에 있는 小堡에 武官을 임명하여 보내고 또한 赴防人을 출신지의 遠近에 따라 일정기간(중부권 20개월, 3남지방 15개월 등) 근무를 하면 희망에 따라 土官이나 散官職을 주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73-2, 세종 18년 윤6월 정묘). 이 시기에는 전직관료와 甲士들도 가정을 떠나 먼 서북지방으로 괴롭게 赴防하고 있었다(위의 책, 권73-8, 세종 18년 윤6월 계미).

세종 18년 8월에는 병조의 啓에 따라 평안도와 함길도의 自募赴防人內 학생이 있으면 9품을 주고 그가 9품이면 8품으로 陞職하는 등 차례로 陞職任用하기

로 했다(위의 책, 권74-12, 세종 18년 8월 신미). 같은 해 11월에는 함길도의 赴防 火藥匠은 평안도의 예에 의하여 6개월 교대로 서로 바꾸게 하였다(위의 책, 권75-15, 세종 18년 11월 기해). 또한 병조의 건의에 의거한 의정부의 啓에 따라 평양 士官 隊副 10석과 寧邊士官 隊副 5석을 체아직으로 하여 화포군 중 여연·강계·리산·창성·벽동·의주 등에서 赴防하는 자 524인을 都節制使가 그 赴防일수를 고려하고 아울러 그들의 재능을 시험하여 3년에 한 차례씩 임명하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75-17, 세종 18년 11월 을사). 세종 20년 정월 의정부에서는 병조의 보고에 의거하여 啓하기를 연변 각읍의 赴防軍人들이 매월 교대하므로서 人馬가 모두 피폐하게 되니 앞으로는 道內 馬步兵을 전부 5인씩으로 伍를 만들게 하고 伍마다 壯勇者 1인씩을 골라서 3番으로 나누어 輪番으로 防戍하도록 하며 나머지 4인은 赴防者의 양식을 조달하게 하자고 하였다(위의 책, 권80-10, 세종 20년 정월 경자).

세종 22년 2월 우의정 申概의 上言에 의하면 함길도와 평안도의 赴防之弊가 크다는 것이었다(《위의 책》 권88-17, 세종 22년 2월 신묘). 그 해 9월 衆所共知의 武才 탁월자인 군관을 赴防시키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90-35, 세종 22년 9월 임인). 세종 23년 4월 평안도 都節制使의 보고에 의하면 諸鎭의 赴防軍士는 많아야 4·5백명 적으면 2·3백명 뿐이므로 賊變에 지탱하기 어려우니 道內 正軍 중 弓馬가 있고 건실한 자도 함께 赴防하여 守備를 엄중히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임금은 척후를 전방에 보낼 것을 강조하였다(《위의 책》 권92-24, 세종 23년 4월 신묘). 그리하여 척후병을 보냈지만 겁많은 자들 뿐이었으므로 제대로 임무수행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우의정 申概·병조판서 鄭淵·참판 辛引孫 등은 赴防군사들 중 지략이 있고 壯勇한 자를 錄名하여 척후병으로 더 두어 교대로 적의 동정을 탐지하도록 하자고 하였다(《위의 책》 권93-27, 세종 23년 9월 병신). 또 세종 24년 9월 병조의 보고에 의거 의정부에서 啓하기를 영변토관은 압록강변 각처에서 赴防하는데 평양토관만이 방어임무에 임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평양토관도 分番赴防하도록 하고 無役閑良者도 모두 推刷하여 正軍으로 삼도록 하자고 하였다(《위의 책》 권97-42, 세종 24년 9월 무인).

세종 25년 6월 공조참판 鄭恭의 啓에 의하면 평안도 각 고을에서는 군량미가 적은데다가 연이은 흉년으로 백성이 어렵다는 것과 남도의 赴防人民들이 멀고

험한 길을 오는 동안 갖고간 식량이 떨어져서 布貨로서 곡식을 사먹어야 하는데 상인들의 농간으로 곡식값이 높아서 사기 어려우니 水路로 곡식을 운송할 것 등을 건의하고 있다(《위의 책》 권100-32, 세종 25년 6월 무술). 그 해 7월에는 김종서가 兩界士卒과 年久赴防者를 敍用(등용)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위의 책》 권101-8, 세종 25년 7월 계해). 그 무렵 임금은 병조에 傳敎하여 司僕寺의 말 200필을 내어 평안도와 함경도의 赴防軍士 중 가장 오래되고 빈궁한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위의 책, 권101-19, 세종 25년 7월 정축).

세종 27년 9월 병조의 보고에 의한 의정부의 啓에 의하면 赴防甲士들이 거짓으로 부모의 병을 칭탁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방어를 소홀히 하게 되기 쉬우니 京中軍士例에 따라 請暇日數에 준하여 番 서기를 마친 후에도 그대로 남겨서 수자리 서기와 방어를 하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109-28, 세종 27년 9월 갑술). 세종 28년 정월에는 南道 당번 赴防軍을 포함한 體探軍 409명 중에서 8명씩 선발하여 6품 이하의 散官職을 주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111-2, 세종 28년 정월 임신).

세종 29년 7월 평안도 도절제사의 啓에 의하면 沿邊 赴防正軍이 간혹 殘劣人을 사사로이 代送하므로 방어가 소홀하여진다는 것과 앞으로는 赴防正軍인 戶首에게는 船軍例에 의하여 圓木牌를 官給하되 일면에는 성명·나이·용모 및 부모성명을 쓰고 다른 일면에는 某縣·某里居住라 쓰며 小篆으로 正軍 두 글자를 烙印하여 赴防을 대신 세우는 일을 두절시키고 실제 방어에 임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임금이 이에 따랐다(위의 책, 권117-3, 세종 29년 7월 신해).

세종 30년 5월 병조의 보고에 의거한 의정부의 啓에 의하면 평안도 沿邊州縣 各口子(港灣)에 赴防하는 本邑의 군인은 10월 15일 이후로부터 익년 2월말까지 入保하여 番으로 戍禦하다가 3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2番으로 나누어 戍禦하도록 하였으므로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춥고 배가 고파서 도망치게 되어 軍額이 날로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그러하므로 앞으로는 농사철인 6·7월은 3番으로 나누어 戍禦하도록 하여 민생을 편케 하자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위의 책》 권120-14, 세종 30년 5월 경인).

단종 원년 6월 의정부에서 평안좌도 도절제사의 啓本에 의거 啓하기를 도내 諸邑의 甲士 중 去官하여 관직에 다시 임명된 자도 당번시에는 池寧口子(港)로부터 厚州沿邊에 이르기까지 방어하다가 대개 4월의 下番時에는 3番으로 나누

어 高山里로부터 의주에 이르기까지 輪次로 赴防하여 무릇 두 달이 심히 艱苦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下番甲士 및 새로 보충된 甲士取才者 모두를 나누어 방어시키므로 고산리에서 의주 沿江에 이르는 防禦之卒이 옛날과 많이 다르다는 것과 甲士去官者는 沿江諸邑에 살고 있는 사람 이외에 南道諸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당번이 되거나 사변시에만 赴防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단종실록》 권6-44, 단종 원년 6월 을사).

세조 5년 6월 병조의 啓에 따라 종래 春秋로 연 2회 赴防하던 北靑軍士의 부담을 半減하여 南道諸邑의 例대로 1年 1度 赴防하도록 하였다(《세조실록》 권 16-24, 세조 5년 6월 임자). 세조 6년 2월 임금은 호조에 傳敎하여 평안도의 赴防甲士·別侍衛·外別赴防軍士에게 양식을 지급하였다(《위의 책》 권19-24, 세조 6년 2월 정축). 세조 6년 12월 호조에서 啓하기를 평안도와 함길도의 赴防甲士 등이 서울에서 받을 祿俸은 길이 멀어서 운송할 수가 없어 그 告身(임명장)과 祿牌를 상인들에게 轉轉賣買한다는 것과 이는 大體에 어긋남이 있으니 내년부터는 兩界甲士의 녹봉은 소재읍의 軍需陳穀에서 내주고 紬布·楮貨도 또한 陳穀(묵은 곡식)으로 값을 정하여 준다는 것이었다(《위의 책》 권22-33, 세조 6년 12월 갑신).

세조 9년 윤7월 임금은 의금부에 傳旨하기를 각 고을로 永屬·充軍·安置된 受刑人(죄인)들을 석방하여 兩界에 赴防하여 공을 세워 自贖하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31-5, 세조 9년 윤7월 을유). 세조 12년 7월 임금은 赴防軍士들의 番次를 막론하고 그 番 서는 일수를 초과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39-19, 세조 12년 7월 정축). 성종 20년 6월 병조의 啓에 의하면 赴防軍士에게 赴防근무일수를 계산하여 관직을 주는 것이 例라고 하였다(《성종실록》 권 229-8, 성종 20년 6월 무술).

중종 23년 2월 함경남도 절도사 윤희평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野人들은 사냥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노략질하는 것이 常例라는 것과 대체로 赴防군사들은 적에 대한 방어에 用意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는 평안도 兵使時에도 보니까 군사들이 군장비를 갖춘 자가 없고 막대기(杖)를 갖고 나오는 자가 많아서 그들을 검거하여 논죄하려 하였으나 굶주리고 곤궁한 그들 병졸에게 일일이 죄 줄 수도 없었다고 하였다(《중종실록》 권60-29·30, 중종 23년 2월 병오).

선조 26년 10월 豊原府院君 류성룡은 赴防군사들이 많이 도망을 쳤고 또한

수천리 밖으로 멀리 赴防하러 가기도 어려워서 서울에 上番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선조실록》 권43-8, 선조 26년 10월 경인). 임진왜란이 끝난 선조 34년 3월 임금이 赴防砲手들에게 술을 하사하였는데 그 때 포수들이 赴防을 마치고 내려간 후에 요역을 면제(復戶)할 것과 처자식들에게 식량(料)을 줄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특히 私賤인 군인들에게 주인이 侵虐함이 심하여 죽이기 까지 한다고 하였으므로 임금은 그들의 건의대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고 奴主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냐? 그들의 無理함이 심하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 135-36, 선조 34년 3월 을축). 선조 34년 8월 윤황이 말하기를 평안도의 무과급제자(출신자)가 매우 고통되다고 하였다. 즉 일반 군사에게는 奉足이 있고 分番하여 복무를 하지만 무과출신자 중 압록강변에 赴防하는 자는 1년의 과반수 날을 복무하면서 스스로 군장비를 갖추기 때문에 破家流移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140-15, 선조 34년 8월 계미). 선조 38년 4월 임금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前日 赴防砲手들의 妻에게 食料를 주도록 하였는데 지금 그것을 半減하여 주거나 전혀 주지 않는다고 하니 그 수량대로 주도록 담당 官司에 말하라고 하였다(《위의 책》 권186-20, 선조 38년 4월 무진).

숙종 2년 4월 영의정 許積이 말하기를 새로이 무과급제한 자(출신자)가 14,000여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모두 赴防시킨다면 지금 국경지대(邊塞)에 飢荒이 든 날에 主客(현지인과 赴防軍士) 모두가 곤궁하여질 걱정이 있으므로 自願에 따라 赴防을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찬동 하였다(《숙종실록》 권5-20, 숙종 2년 4월 을축). 그러나 《속대전》 병전 留防條에서는 무과출신자는 모두 서북 변방으로 赴防하도록 하되 본인이 60세 이상이거나 부모 나이 80이 된 자인 경우와 남한산성 내의 무과출신자 등에게는 赴防을 면제시켜 주었다. 그리고 《대전통편》의 같은 조항에서는 양반자손 이외는 모두 赴防을 면제하였고 정조 20년 3월 무과출신의 赴防法을 거듭 修明하였다(《정조실록》 권44-22, 정조 20년 3월 임자). 《대전회통》에서는 赴防制를 모두 폐지하였다.

24. 保人

保人은 正兵이나 胥吏와 같이 직접 身役に 立役하는 자(正丁)를 경제적으로

돕도록 하는 자(餘丁)로서 奉足이라고도 하였다(《세종실록》 권7-4, 세종 2년 정월 을사). 조선시대의 役으로는 身役과 徭役(조선후기 大同米布錢으로 代替)이 있고 신역에는 軍役과 吏役 등 職役이 있는데 그 중 軍役(병역)이 제일 문제된다. 軍役으로는 實役을 지는 正兵과 納布(米·錢)를 통하여 正병을 경제적 으로 직접·간접으로 돕는 保人이 있었다. 保人은 正兵의 兵種에 상응하여 砲手保·步保·騎保·水軍保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고(金甲周, 〈朝鮮後期 保人研究〉, 《國史館論叢》 17輯, 1990, p.161), 또한 保人은 正병의 資裝을 직접 부담하는 資保와 나라(병조)에 納布하므로써 軍費에 尙당토록 하는 官保가 있었다. 立役하는 正丁을 戶首 또는 甲首라고도 하였으며 戶首를 돕는 人丁을 奉足 또는 助丁 혹은 率丁·管下·人祿이라고도 하였다. 奉足の 語源은 足丁을 받는다는 뜻으로 麗代의 足丁에서 유래하였다(이재룡, 《조선초기 사회구조연구》 일조각, 1993, p.93).

조선초기에는 正병을 뒷바라지 하는 人丁인 奉足(麗代養戶에서 유래)을 品官 馬兵에게는 4인, 無官職인 馬兵에게는 3인, 步兵에게는 2인을 주었으며 奉족은 16세~60세인 內外族親으로 尙當하였지만 族親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 軍丁으로 奉족을 정하여 주었다(《태조실록》 권11-3, 태조 6년 2월 갑오). 그러나 이듬해인 正宗 즉위년 9월(즉위월)에는 人丁 뿐만 아니라 田結로도 奉족 지급의 기준으로 삼았다(《태조실록》 권15-4, 태조 7년 9월 정해). 태종 4년 6월에는 다시 計田法으로 바뀌어 경작지의 다소에 따라 奉족을 지급하였다. 즉 奉足戶는 所耕田이 2·3結 이하인 자에게 1戶 또는 2戶를 주되 甲士, 侍衛牌, 騎船軍 등에게는 4·5결 이하인 자에게 1戶씩 주었다(《태종실록》 권7-21, 태종 4년 5월 계해). 이와 같은 計田法만으로는 미비한 점이 있어 태종 6년 11월 다시 人丁과 田結을 모두 기준으로 하여 編戶 내지 收米를 하는 즉 計丁 計田折衷法에 의한 收煙戶米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1·2품을 上戶로 하여 米10두를 내게 하고 3·4품을 中戶로 하여 6두를 내게 하며 5·6품을 下戶로 하여 4두를 내게 하고 參外官(7·8·9품)을 下下戶로 하여 2두를 내게 하며 서인은 1두를 내게 하고 前職各品은 각각 그 職級 해당 액의 반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에서는 田 15結·男女 15口 이상을 上戶로 하고, 田 10結·男女 10口 이상을 中戶, 전 5결·남녀 5구 이상을 下戶, 전 1결·남녀 1·2구를 不成戶로 하되 不成戶는 3戶를 합쳐서 1호로 하여 서

율의 3등례에 따라 쌀을 내게 하되 차등을 두며 풍년에만 定數대로 하고 中年에는 반감하며 흉년에는 전부 면제한다는 것이다(《태종실록》 권12-35, 태종 6년 11월 계유). 이와 같이 人丁과 田結을 기준으로 하여 收米하는 법은 봉족지 급규정에도 준용되어 세조대 이전까지 그 기준이 되었다(金甲周, 〈앞의 글〉 p.165).

조선시대의 봉족의 前身이라 할 수 있는 고려시대의 足丁은 足丁戶에 量給된 토지의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이기도 하였다. 고려 府兵制의 기초인 3家 1戶란 1軍戶를 구성하는 3家에서 각각 軍丁 1명씩을 내었고 그 중 1명이 府兵(正丁)으로서 立役하였는데 나머지 2명은 비번의 休閑兵으로서 농사를 지어 上番者의 養戶(足丁)가 되었다. 이를 이어받은 조선시대의 봉족 또한 丁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戶를 단위로 조직되었다. 戶에는 살림집인 自然戶와 法制戶가 있으며 3丁 1戶의 戶는 세개의 自然戶(單丁인 경우)가 하나의 법제호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대가족인 자연호는 몇개의 法定戶로 나누어진다(이재룡, 《앞의 책》 p.93 및 p.99). 대가족인 자연호(주로 양반대가집)가 수 개의 법제호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잘 시행되지 않았고 土豪들은 많은 양민들을 봉족이라 하여 노예처럼 使役하였다(이재룡, 《위의 책》 pp.99~104).

奉足制는 태조대에는 군병에게만, 태종대에는 군병 뿐만 아니라 일반 國役者에게도 적용하였지만 軍役이 國役의 基幹이었으므로 역시 군역을 위주로 논의되고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봉족제는 여러가지로 모순이 드러났으므로 세조대에 와서는 助戶(봉족) 대신 助丁을 주게 되었다(《세조실록》 권13-4, 세조 4년 6월 정축 및 권14-17, 세조 4년 11월 계사). 비록 丁數를 세어서 봉족을 주었다고 하여도 타인에게 寄食하는 자나 사방에 流移하는 자, 노비 등도 그 속에 포함되어서 봉족이 유명무실하였으며(《위의 책》 권 32-21, 세조 10년 2월 정유), 또한 세조 10년 8월 同知中樞院事 梁誠之의 上書에 의하면 나라에서 軍戶를 推刷한 결과 충청도의 本2만호가 지금은 11만호가 되었고 경상도의 本4만호가 지금은 30만호가 되었으며 이 2道를 미루어 보아서 他道도 마찬가지라는 것과 軍額을 分定할 때에 姦吏가 壯者를 奉足으로 하고 弱者를 戶首로 하며 건실한 자를 病者라 하고 병자를 건실한 자라 하며 無馬者를 騎兵으로 하고 有馬者를 보병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1戶내에서 타인을 奉足으로 삼고 子枝를 타인의 봉족으로 하며 혹은 西村人을 東村人

의 봉족으로 하고 동촌인을 서촌인의 봉족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그는 3丁을 1戶로 하고 兵種에 따라 3戶爲1兵, 2戶爲1兵, 1戶爲1兵으로 하되 약자를 丁으로 하지 말고 子枝를 分屬시키지 말며 隣保를 나누지 말고 病者를 計定하지 말도록 하자고 하였다(《위의 책》 권34-2, 세조 10년 8월 임오).

그리하여 세조 10년 10월 임금은 충청·경상·전라 3道에 각각 軍籍使를 임명하여 事目を 주었다. 事目的 내용은 2丁을 1保로 하고 田5結을 1丁에 准하게 하며 奴子도 奉足丁數에 准하게 하여 甲士에게는 3保가 1保를 받들게 하고(保人 7丁), 騎正兵·吹螺赤 등은 2保가 1保를 받들게 하며(保人 5丁), 平虜衛·破敵衛·近仗·別軍·步正兵·大平蕭·騎船軍 등은 1保가 1保를 받들게 하고(保人 3丁), 烽燧軍·防牌·攝六十 등은 獨保(保人 1丁)로 한다는 것이다. 그 외 기술적인 書雲·醫·譯·律의 權知와 生徒·吏員·雜職 기타 각종 職役人에게는 同居親族 중 3인(諸邑·諸驛은 1인) 이하에게 他役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위의 책》 권34-34, 세조 10년 10월 을미). 保의 신설은 종래의 戶라는 가족적 단위를 人丁本位로 개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金錫亨, 〈李朝初期 國役編成의 基柢〉, 《震檀學報》 권14, 1941, p.27). 保를 戶首에게 지급되는 봉족과 같은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한다(이재룡, 《앞의 책》 p.107).

세조 12년 정월 병조판서 김질을 충청·경상·전라 삼도의 軍籍使로 삼아서 軍籍事目を 내려보냈다. 그 내용이 2년 전의 것과 거의 비슷하였으나 세조 10년에는 주로 軍兵에 대한 作保였던 것인데 세조 12년에는 書員·書吏와 기술직 生徒·牧子·津尺·水夫·日守 등 諸役人에게도 作保가 실시되었으며 軍額의 증가를 보게 되었다(《세조실록》 권38-7, 세조 12년 정월 임술 및 이재룡, 《앞의 책》 pp.107~108). 그러나 군액의 증가에는 무리가 뒤따랐고 他道와의 균형도 맞지 않아서 성종은 下三道의 군액을 감소시켰으며 아울러 甲士·騎正兵·步正兵 등에 대한 봉족도 감사의 봉족 7丁내에 2丁을 감하고 기정병의 봉족 5丁 중 2丁을 감하며 보정병의 봉족 3丁 중 1丁을 감하는 등 2丁 또는 1丁씩 감소시켰고 田丁·雇工·才白丁 및 諸色匠人에 대한 作保도 금하였다(《성종실록》 권3-23, 성종 원년 2월 기묘).

保制가 성립되자 공조판서 양성지는 여러 차례 상소를 하여 2丁1保는 保(保則戶也)로서는 單弱하고 田地와 奴子を 人丁에 准하게 함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3丁1保로 하여 1丁은 戶首로서 治兵하고 1정은 率丁으로서 治農

하며 1정은 餘丁으로서 평시에는 賦役에 供하고 行軍時에는 군수품을 운반하게 하면 1保가 實해질 것이라 하였다(金甲周, 앞의 글, p.166 및 《예종실록》 권 6-28, 예종 원년 6월 신사).

《경국대전》(現存法典인 성종 16년의 乙巳大典) 병전, 給保條에서는 세조 10년의 保法을 약간 수정한 세조 12년의 軍籍事目を 수용하였으나 그동안의 비판도 참작하여 成文化하였다. 즉 《경국대전》에서도 2丁1保의 기본 골격상으로는 변함이 없으나 田地准丁 조항은 삭제되었고 奴子准丁은 반감(奴子准保者 減半 給保)되었다. 그 외 甲士·騎正兵·步正兵을 비롯한 諸色軍士의 給保數와 諸役人의 勿定他役 등 조항은 세조 12년의 事目を 受容하면서도 성종 원년 2월에 修正한 것을 成文化 하였다. 《경국대전》에서는 保人에게 雜物을 濫收하지 못하게 하고 保人 1인당 매월 綿布 1필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지만 그러한 규정을 두기 전인 예종 원년 3월의 병조의 啓에 의하면 諸色軍士가 番上할 때마다 助丁으로부터 면포 8·9필씩을 침탈하여 그로 인해서 助丁이 破산하거나 도산한다고 하였다(《예종실록》 권4-29, 예종 원년 3월 갑오). 예종 원년 9월 경국대전(기축대전) 편찬완료 후에도 戶首(正軍)의 保人(助丁)에 대한 수탈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여하간 《경국대전》 병전, 給保條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에게는 他戶의 保人이 주어진 반면에 非軍役 諸役人에게는 親族인 保人이 編制되었으므로 보인에 대한 수탈문제는 주로 軍役人에게 야기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保布는 원래 軍布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軍布는 番上의 對價로 收布하는 것이고 保布는 戶首가 保人에게 收價하는 것이다. 軍布의 기원이 언제부터 인가는 분명하지 않으나(柳馨遠, 《반계수록》 我國放軍收布之規 未知起於何時) 세종 21년 11월 을묘의 실록기사에서 군사들의 立番代立 綿布價가 1개월에 布 3필이라 하였으니 그 때부터 收布가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군포가 국가의 財政制度로 일반화한 시기는 중종대라 할 수 있다. 保法이 성립된 이후에도 軍兵·軍保의 확보는 어려워지고 番上의 立役도 해이해졌으며 軍兵·軍保의 구분도 희미해지고 軍布와 保布의 구분도 애매해져서 簽丁收布가 널리 행하게 되었다(이재룡, 앞의 책, pp.111~112).

성종 23년의 《大典續錄》 병전, 給保條에서 保法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이 있었지만 군사 및 보인의 流離와 逃亡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族徵·隣徵으

로 인한 친족과 이웃사람의 도망현상까지 생겼다. 심지어 戶役으로 부과시키던 요역까지 군사들에게 부담시켜서 군역과 요역의 구별이 무의미하게 되었다(김갑주, 앞의 글, p.167 및 《중종실록》 권49-54, 중종 18년 12월 정미). 종래 番上正兵은 代立價를 保人으로부터 염출하여(番上兵이) 중앙에 번상하여 배당된 근무처(役處)의 주무관청 吏胥에게 직접 납부하도록 되었지만 濫徵의 폐단이 컸으므로 중종 33년 10월 價布의 국가수납제를 정하였다. 즉 지방관이 관내 보병의 (公定된) 番價를 거두어 踏印監封하여 番上歩兵 中 才幹있고 믿을만한 자에게 책임지워 올려 보내면 병조에서는 各處로 分送하며 각처의 관원은 封署를 考驗한 후 代役人에게 分給하게 함으로써 濫受의 폐단을 없앤다는 것이다(위의 책, 권88-61, 중종 33년 10월 계축). 중종 36년 2월에는 이를 전담할 부서를 별도로 설치할 것인가에 관하여 君臣間에 논의가 있었다(위의 책, 권94-57, 중종 36년 2월 신미).

중종 38년의 《大典後續錄》 병전, 雜令에 의하면 “步兵의 番價는 每月 5升綿布 3필반으로 하고 皂隸·羅將·選上軍士는 2필반으로 하되 그 升數에 미치지 못하면 반필씩 더 받았으며 綿布兩端에 도장을 찍어 해당관청으로 보내고 그 관청에서는 이를 검사하여 각 관서에 보낸다. 병조의 장관과 司贍寺의 提調는 수시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중종 말년의 正軍의 納布化현상은 정병과 보인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하였으나 다만 기마병만이 여전히 番上근무를 하였을 뿐이었다(金甲周, 앞의 글, p.169 및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 1964, pp.639~729와 池斗煥, 〈朝鮮前期 軍役의 納布體制 확립과정〉, 《韓國文化研究》 I, 1988).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인 선조 27년 4월 영의정 류성룡이 時務策을 올려서 그 당시 기병의 上番之數(常數)는 23,700여 명인데, 각자 보인 3명이 있으므로 모두 9만 여명이라는 것과 보병의 上番之數는 16,200여 명인데 각자 보인이 1명씩 있으므로 모두 32,000 여명이라 하였다. 그 외 甲士의 上番者는 4,640명이고 각자의 보인이 2명씩이므로 모두 13,920명이며, 定虜衛는 上番者 2,161명, 각자의 보인(奉足)이 2인씩이므로 모두 6,400여명, 별시위는 상번자 1,119명, 각자의 보인(봉족)이 2인씩이므로 모두 3,300여명, 기타各司 諸員 2,177戶에다 각자 봉족 2인씩 있었고,各司 조예 3,628명에다 각자 봉족 1인씩 있었으며, 또 掌樂院 樂工 700명, 樂生 300명이 각자 봉족 2인씩 갖고 있

어서 그 숫자가 역시 3,000명이라 하였다(이상 총계 162,400여명).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국대전》상의 2丁1保制가 16세기에는 1丁1保制로 바뀌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종종 말년 納布化가 일반화된 후 생겨난 현상으로 보인다. 1정1보제가 정착된 후 보인과 봉족도 명칭상으로 혼용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甲士나 步兵들의 保人數도 자연히 반감되었다. 다만 기병만은 보인이 2정1보제하에서 1보1정(3명)이었던 것이 1정1보제하에서 3보(3명)가 되었으므로 보인수에 변동이 없다. 이는 보병 등이 納布軍化한데 반하여 기마병은 계속 변상병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선조수정실록》 권28-5, 선조 27년 4월 기유 및 김갑주, 앞의 글, pp.169~170).

임진왜란 이후 五軍營이 신설됨과 동시에 五衛兵制는 해체되었지만 그 군병들은 자연히 병조나 신설되는 군영에 移管되었다. 오군영의 설치가 완료되는 숙종 8년경의 병조 소속 軍額은 정병 5만 여명, 보인 10만여 명으로 도합 15만 여명이었으나(김갑주, 앞의 글, pp.171~172) 숙종 28년에는 기병·갑사 기타의 正軍은 59,800명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보인과 잡역인 등은 283,6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났다(申琬, 《綱菴集》 권4, 疏筭〈進八條萬言封事冊子筭〉). 이와 같이 병조 소속 보인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숙종 15년(기사)에 각 고을 人吏들의 보인 3명씩을 혁파하여 병조로 移屬시켰기 때문이다(《승정원일기》 380책, 숙종 24년 9월 12일). 그동안 지방유생들은 人吏들의 보인소유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여 왔던 것이므로 숙종 15년 己巳換局으로 집권한 南人들에 의하여 모두 병조로 이속되었던 것이다(위의 책, 252책, 숙종 2년 3월 13일). 그러나 병조로 이속되었던 각 읍 人吏들의 보인은 균역법 시행 이후 다시 각 고을로 배당되었다(《良役摠數》〈外案額〉).

五軍營 중 地域留防軍으로 편성된 수어청과 총융청은 屯田을 경영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했지만(차문섭, 〈수어청연구〉상·하, 《東洋學》 6·9, 1976·1979, pp.69~99 및 pp.241~275, 崔孝軾, 〈총융청연구〉, 《동국대 경주대 논문집》 4, 1985). 둔전 경영만으로는 부족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역시 保人을 주었다(《숙종실록》 권58-46, 숙종 42년 11월 계미 및 《인조실록》 권11-3, 인조 4년 정월 계축). 더구나 長番給料制로 운영된 훈련도감이나 番上給保制로 운영된 어영청과 금위영 등 三軍門은 주로 보인에 의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하였다(김갑주, 〈앞의 글〉 p.173). 물론 급료병인 훈련도감 군사에게는 保人支給이

불필요할 것 같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는 동안 국고가 고갈하여 훈련도감 군사들의 급료는 물론이고 백관이나 禁軍의 녹봉이나 급료를 줄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훈련도감 운영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조 26년 12월 호조에서 둔전경작을 설정하였으나(《선조실록》 권40-7·8, 선조 26년 12월 임자) 그것만으로는 막대한 경비를 염출할 수가 없었으므로 둔전경작도 곧 실패하였다(《선조수정실록》 권28-3, 선조 27년 2월 경술). 결국 선조 32년 정월 비변사에서는 훈련도감 군사에게 보인을 지급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納粟에 의하여 授職免賤된 사람을 모두 搜括成籍하여 年少驍健者는 포수·살수로 삼고 부적합자는 보인으로 삼아서 徵米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건의는 임금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훈련도감 군사로는 賤人도 포함되었으므로 양인이 천인의 保人으로 될 수 없다는 반대론 때문이었다(《선조실록》 권108-2, 선조 32년 정월 계미 및 권113-13, 선조 32년 5월 정묘와 차문섭, 《앞의 책》 p.175). 그리하여 선조 34년 2월 우의정 金命元은 “군사가 될 수 있는 閑遊者는 군사에 소속시키고 奉足으로 될 자를 보병으로 삼아서 步兵價 3필을 병조에서 거두어 훈련도감으로 보내자고 하였다(위의 책, 권134-3, 선조 34년 2월 경오). 그러나 사람들은 훈련도감군사(포·살수)의 봉족을 천시하여 봉족이 되는 것을 꺼리고 피하였다(위의 책, 권135-24, 선조 34년 3월 정사). 임금은 그 해 8월 “祖宗朝에서는 金宗直도 생원으로서 軍保가 되었다”고 하고 都監軍士에게 보인을 주는 것은 이치상으로도 당연하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140-22, 선조 34년 8월 계사).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훈련도감 군사들은 사망·도망·사고 등으로 계속 감소되었으므로(김갑주, 앞의 글, p.175) 비록 일부 군사(도감군사 2,000여명 중 700명)에게 보인을 지급하였고(위의 책, 권165-42, 선조 36년 8월 계축), 훈련도감의 절박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三手米를 징수하게 되었지만(위의 책, 권203-23, 선조 39년 9월 무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하였다.

훈련도감 군사에 대한 給保문제는 광해군대 이후에 이르러 해결을 보게 되었다. 즉 광해군 8년 훈련도감의 포수에게 3명씩의 保人을 주었으나(《광해군일기》 권103-10, 광해군 8년 5월 경진) 인조 4년까지도 포수 중 3인의 보인을 갖춘 사람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인조실록》 권11-1, 인조 4년 정월

정미). 그리하여 인조 8년에는 砲保節目을 작성하였는데 보인은 도감군사가 살았던 각 지방에서 마련한 保布를 거두어 훈련도감에 올려 보낸다는 것과 戶首와 保人간의 保布의 사사로운 授受는 부자형제간에 한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서울거주자였던 군인에게는 지방에서 훈련도감으로 올라오는 保布를 分給하였다(김갑주, 앞의 글, p.175). 이러한 <砲保節目>은 그대로 잘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인조 9년 7월 執義 김반이 “훈련도감 軍額의 元數는 대략 4천명인데 거기에는 3保를 모두 갖춘자도 있지만 2保(2丁)를 갖고 있는 자와 無保者도 있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25-5, 인조 9년 7월 계미). 그 후 騎馬軍이 늘어나서 훈련도감군은 모두 5,000여명이 되었는데 기마병에게는 4명, 보병에게는 3명의 保人이 배정되어 매인에게 각 3필씩을 거두어 正軍(戶首)에게 資給하도록 하였다(《현종개수실록》 권10-9, 현종 4년 11월 무인).

효종대에는 훈련도감군사를 倍增(10,000명)할 것을 계획하였으나(《효종실록》 권18-4, 효종 8년 정월 병인) 재정난으로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현종대에는 보인확보난 때문에 훈련도감의 축소내지 혁파문제가 논의되었다. 현종 2년 현재 搜括閑丁이 총 2,300 여명이나 그 중 1,500 여명만을 훈련도감의 砲保로 할당하였다(《현종개수실록》 권5-5, 현종 2년 정월 을묘). 훈련대장 李浣은 훈련도감 砲保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하고 2필로 줄일 것을 주장하였으나 그렇게 시행되지 않다가 숙종 13년 10월 知敦寧府事 申汝哲의 건의에 따라 2필로 경감되었다(《비변사등록》 41책, 숙종 13년 10월 16일).

숙종 30년 12월 5軍門의 군제개혁시에 훈련도감의 보인의 定額은 舊額 그대로 砲保가 36,820명, 軍餉保가 5,581명이었으며(《숙종실록》 권40-55, 숙종 30년 12월 갑오, 김갑주, <앞의 글> p.177의 주 75) 그 후 숙종 39년 7월에는 砲保가 37,000명, 軍餉保가 7,000명으로 증액되었다(《비변사등록》 66책, 숙종 39년 7월 18일 및 111책, 영조 18년 12월 15일).

어영청은 서인정권이 창설한 것으로서 창설당시에는 260명이었으나 李适亂後에는 1,000명이 되었고 이러한 어영군은 정묘호란후 어영청으로 확대개편되었으며 인조 13년경에는 그 定額이 6,200여명이 되었다(해설편 2, 어영청 참조). 그 무렵 어영군은 종래의 募兵制에서 5道鄉軍의 번상체제로 바뀌어갔다(崔孝軾, <어영청연구>, 《한국사연구》 40, 1983). 어영군의 창설 초기에는 良人에게 保人 1명을 주었고 賤人에게 雜役을 면제해 주는 復戶의 혜택을 주었을

뿐이다(《인조실록》 권16-16, 인조 5년 4월 계해). 그 후 어영청의 노력으로 給保人員의 증원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위의 책》 권 50-17 인조 27년 4월 기유) 결국 인조 말년에 〈御營廳節目〉이 제정되어 戶首 1인당 保人 3명(11세 이상)을 확보하여 그 중 2명은 官保, 1명은 資保로 하되, 山郡지역은 布2필, 海안지역은 米12斗를 내게 하고 보인도 잡역과 東伍 등 役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인조대에는 시행되지 않다가 효종이 즉위하여 어영청을 확대하면서 시행되었다. (김갑주 《앞의 글》 pp. 177~178)

효종 3년 6월 어영군을 21,000명으로 하고 1년에 2개월씩 6番으로 나누어 한번에 1천명씩 번상시켜 3년반만에 한 차례(중전에는 4~5년 한 차례) 돌아오게 하였으며 어영군 각자에게 보인 3명씩 배정하였다. 보인 3명중 1명은 資保로서 軍士의 번상에 있어서의 왕래비용을 맡고 나머지 2명은 官保로서 滯京中의 軍費를 맡게 하였다. 資保로부터서는 포2필(山郡) 또는 미12두(海邑)를 戶首(번상군)가 직접 징수하고 官保로부터서는 어영청에서 수납 관리하도록 하였다(김갑주, 〈앞의 글〉 p.178 및 《효종실록》 권8-84, 효종 3년 6월 기사). 戶首는 2개월간의 入役(立番)시기 이외에도 매년 포2필을 징수하고 東伍나 잡역을 면제받는데 이는 매년 상변하는 기마병(비번 때 東伍나 烟戶의 役부담)과 너무나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숙종 30년의 어영군의 수는 모두 141 哨×每哨 134人=18,894人으로 그 資保·馬保·官保 등 諸色軍을 합쳐 106,270인이었는데 이를 5部, 25司, 125哨로 하여 正兵·保人을 합쳐서 86,953인이 되도록 고쳤다(《숙종실록》 권40-55, 숙종 30년 12월 갑오). 이때 官保가 42,820명이었는데 영조 5년에 540명이 증원되어 43,360명이 되었다(《비변사등록》 111책, 영조 18년 12월 15일).

금위영은 숙종 8년 병조판서 겸 훈련대장 김석주의 주장으로 精抄軍과 훈련 별대를 통합하여 만든 군영이다. 정초군은 병자호란 후畿內 속오군을 대상으로 기병과 보병을 뽑아서 설치한 것으로서 인조 25년에 그 수가 1,600 여명이었으며(《인조실록》 권48-31, 인조 25년 8월 무자) 성립초에 松都의 속오군 1,000 여명을 파하여 그들의 資保로 삼았다(《萬機要覽》 軍政篇, 〈훈련도감〉, 軍摠). 정초군은 현종대에 이르러 크게 확대되었다(해설편 1, 훈련도감과 금위영). 이 때 정초청의 보인은 어영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병 1명당 3명이나 보인 1명의 부담은 어영군의 경우 미12두인데 비해서 미15두였다(《현종개수실

록》 권22-57, 현종 11년 7월 무인). 훈련별대는 현종 10년 2월 長番軍士로 구성된 훈련도감의 별대로서 도감군사와는 달리 번상병으로 설치되었다. 설치 당초의 병력은 6,665명이었으나 그 후 (현종 10년 6월)에 13,700명으로 늘어났고 보인도 각자 3명씩 배정되어 41,100이 되었으며 보인들은 매년 미12씩을 부담하였다(《현종개수실록》 권10-9, 현종 4년 11월 무인 및 《현종실록》 권 16-14·15, 현종 10년 2월 정묘).

이러한 정초군과 훈련별대는 숙종 8년 군역의 변동논의 과정에서 禁衛營으로 통합되었다. 금위영의 正軍은 14,098명, 資保 14,098명, 官保 54,097명이었다(同上). 이 때 보인 1명의 부담은 布3필이었다. 현종 10년에는 海西지방인 500명을 뽑아서 금위별대안에서 기마부대인 別驍衛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금위 별대가 모두 보병이었으므로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김갑주, <앞의 글> p.181 및 《숙종실록》 권15상-7, 숙종 10년 정월 을유). 이들에게는 각각 보인 5명씩 배당되었으며 보인의 부담은 매년 포2필씩이었다(차문섭, 《앞의 책》 p.372). 그 후 숙종 30년 군제변통 때 정군과 보인 및 京外標下·別驍衛·別破陣 등 군역 총수는 85,274명이었고 보인의 부담도 포2필로 통일되었다(《숙종실록》 권40-55, 숙종 30년 12월 갑오 및 김갑주, <앞의 글> p.182). 영조 18년의 良役査正 때에는 官保가 모두 44,087명(숙종 36년 900명 증액, 영조 4년 540명 증액)이었다(《비변사등록》 111책, 영조 18년 12월 15일).

前述한 바와 같이 보인은 군사뿐만 아니라 각 아문의 人吏와 雜職人이나 官奴에게도 배정되었다. 조선전기부터 그들의 同居親族中 1명~3명까지 他役に 充定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동거친족이 없으면 별도로 1명을 배정하였다. 중앙 관청의 아전·잡직인이나 官奴 뿐만 아니라 향리에게도 吏卒 혹은 作廳保佐란 이름의 보인을 주었다. 그러나 각 고을 人吏들의 보인은 숙종 15년에 혁파하여 병조로 이속시켰으며 병조에서는 그들을 모두 收布軍化 하였다(김갑주, <앞의 글> pp.182~183). 숙오군에 관해서는 해설편 22에서 상세히 살펴 보았거니와 당초에 그들에게는 급료도 주지 않고 보인도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그들은 良賤人 혼성부대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인조 5년 이후 효종대에 이르러 처우개선이 되기 시작하여 給復이 되고, 給保문제도 비록 일부지방(경상도)에서만 해결되고 있었다(《비변사등록》 17책, 효종 5년 9월 29일 및 18책 효종 7년 9월 2일). 그러나 숙오군에게 보인을 주는데 대한 감사 이상진의 반

대 때문에 현종 4년 10월 경상도에서마져 속오군에게 給保하는 것이 정지되었다(《현종실록》 권7-25, 현종 4년 10월 임인). 그 후 숙종 34년 영의정 최석정에 의하여 속오군에 대한 給保문제가 제의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영조 6년 9월 〈束伍節目〉이 반포되어 속오군사에게 보인 1명씩을 배당하도록 하였다(《비변사등록》 73책, 숙종 46년 3월 15일 및 88책, 영조 6년 9월 25일). 그러나 그 무렵 正軍과 保人 모두가 納布軍化되고 있었으며 특히 영조 12년을 전후해서 속오군 중 양인은 모두 이탈하고 賤人만 남았으므로 보인을 실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김갑주, 〈앞의 글〉 p.186).

17세기 중앙 각 군영의 설치와 병력의 증강으로 각 읍의 보인수도 증가되어 18세기초 京案軍額은 634,373명, 外案軍額은 409,627명으로 도합 1,044,000명이나 되었다(김갑주, 〈앞의 글〉 pp.186~187). 그런데 보인들의 부담이 병종에 따라 포 3필에서 포 1필까지로 고르지 못하여 富實한 자는 모두 어영청, 금위영 등 가벼운 쪽에 소속되고, 궁핍하고 쇠잔한 자는 모두 水軍이나 砲保·騎保 등 무거운 쪽에 편성되었다는 것이다(《승정원일기》 339책, 숙종 16년 정월 15일 및 《비변사등록》 50책, 숙종 25년 9월 12일).

인조·효종 연간에는 군병이 필요한 보인을 스스로 充定(直定)하였고 그 부담 또한 험하였으므로 그 후 投屬者가 너무 많아져서 각 고을에서는 良丁의 부족현상까지 생겼다(김갑주, 〈앞의 글〉 pp.188-189). 그리하여 숙종 4년 額外保人을 私募屬하는 直定에 대한 금지조치가 있었고(《受教輯錄》 병전, 〈軍制〉), 숙종 15년 정월 直定の 금지를 事目으로 정하였지만(《비변사등록》 42책, 숙종 15년 정월 24일) 그러한 현상은 계속 확대되어 갔다(김갑주, 〈앞의 글〉 p.189 및 鄭演植, 〈17·18세기 良役均一化政策의 推移〉, 《한국사론》13, 1985, pp. 123~142).

보인이 가벼운 쪽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온갖 방법으로 보인됨을 謀避하기도 하였는데 18세기에 이르면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었다(《비변사등록》 73책, 숙종 46년 3월 15일 및 鄭萬祚, 〈군역법의 選武軍官〉, 《한국사연구》18, 1977, 金容燮, 〈朝鮮後期 軍役制의 동요와 軍役田〉, 《東方學志》32, 1982, 金容燮, 〈朝鮮後期 軍役制釐正의 추이와 戶布法〉, 《省谷論叢》13, 1982). 특히 신분상승 도모(幼學의 冒稱 등)와 도망 및 入山爲僧·作廳保奴·店舍로 投入 등으로 軍役(保人役)에서 벗어나려는 현상이 17세기 후기

내지 18세기부터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김갑주, <앞의 글> p.190 및 同人의 글인 <朝鮮後期の 養戶, 《歷史學報》 85·86, 1980의 數篇).

保人 기피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종래 군역을 지고 있지 않던 士族에게도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戶布 口錢制의 논의가 일찍부터 대두되었다. 인조 4년 8월 사간원은 士族을 軍保로 降定하기는 어려우나 당하 3품 이하 인원 중 講試에 낙방한 자를 餘丁에 소속시켜서 軍布만은 수납하자고 하였으며(《인조실록》 권14-2, 인조 4년 8월 계묘) 효종 5년 11월 大司成 金益熙가 상소하여 祖宗朝에서는 有蔭者는 忠順衛가 되고 無蔭者는 保人이 되어 소속이 없는 閑遊者가 없었다는 것과 祖宗朝의 舊制를 부활시켜서 前銜(전직관료)과 生進初試 入格者·篤疾廢疾者 이외에는 貴勢子弟·忠義衛·品官·校生·庶孽 등을 막론하고 나이 30세 이상자(과거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5세 이상자)에게 각각 正布 2필을 해마다 징수하자고 하였다(《효종실록》 권13-25, 효종 5년 11월 임인). 이와 같은 戶布·口錢에 관한 논의는 효종 4년에 閔鼎重, 同王 5년 정월에 金堉, 同王 7년에 元斗杓, 동왕 10년에 兪榮·宋時烈 등이 제기하였고, 그러한 제의는 현종대와 숙종대에도 이어졌지만 名分論者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김갑주, <앞의 글> pp.192~194 및 《효종실록》 권10, 권12, 권16, 권21, 《현종개수실록》 권16, 권17, 《현종실록》 권20 및 《숙종실록》 권4-74, 숙종 원년 12월 무인·권6-68, 숙종 3년 12월 정묘·권37-17, 숙종 28년 8월 경인).

숙종 36년 11월 吏奴들을 作隊함에 있어서 그들의 保人도 함께 作隊한 바 있으나 특히 영조 4년의 戊申亂 이후 보인에 대한 作隊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고 아울러 부분적이기는 하나 作隊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비변사등록》 60책, 숙종 36년 11월 24일 및 85책, 영조 5년 3월 12일 및 21일). 그리하여 영조 5년 4월 비변사의 건의에 따라 임금은 각 읍에서는 수령이 거느리는 親兵이 없어서 亂時에 수령이 도망치는 일이 부득이하다고 하고 三局(訓·御·禁의 三軍門) 保人을 모두 作隊하여 亂時에 그들을 수령이 거느리도록 해서 한 고을의 땅을 保守하도록 하였다(《비변사등록》 85책, 영조 5년 4월 12일). 그러나 이러한 보인의 作隊는 곧 속오군의 作隊에 흡수되었다(《비변사등록》 88책, 영조 6년 9월 25일, <東伍節目>).

군역제를 바로잡자는 논의는 숙종 초부터 시작되어 숙종 30년에는 군역인 1

명당 2필씩 부담하도록 균일화되었지만 그 부담이 과중하여 영조 26년 그것을 반감한다는 均役法이 성립되었다(김갑주, <앞의 글> p.195, 균역법에 관해서는 車文燮·黃夏鉉·鄭演植 諸氏의 글이 있다). 영조 26년의 균역법은 동왕 24년에 작성한 <良役實摠>을 기준으로 하여 定額化한 것으로 6道の 良役人 총수는 577,508명이었다. 그 중에서 중앙 5군영 正兵 56,575명을 빼면 순수한 良人 收布軍은 50여만명이었다(<良役實摠數> <京外案付良役都數> 및 <京案付良役都數>와 《영조실록》 권75-7, 영조 28년 정월 을해). 이는 양인의 보인화를 의미하며 軍保의 濫屬과 直定을 막는데 의미가 있었다(奴子들은 제외되었으며 良賤合하면 100 여만명으로 추정 : 김갑주, <앞의 글> p.196). 그러나 2필을 1필로 반감함에 따라 結米부과·隱結收括·選武軍官布 징수·漁鹽船稅 징수 등으로 부족분을 보충하였는데 거기 따른 부작용으로 지방재정의 결손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지방민에게 加徵하여 종래의 軍保米 6두가 12·13두가 되기도 하였고(《비변사등록》 174책, 정조 13년 5월 27일), 환곡의 신설과 加分, 고리대, 額外保率로서의 私募屬의 부활 등으로 지방재정의 결손을 충당하였다(김갑주, <앞의 글> p.197 및 《승정원일기》 1071책, 영조 27년 7월 15일). 정조 16년 榮川군수 李勉兢의 상소에 의하면 同郡의 壬子式 戶摠이 3,283호인데 그 중 僧戶·女獨戶·病廢·巫女·柳匠 등 戶를 제하면 2,700여호에 불과하다는 것과 그리고 朝官과 班族이 1,200여호, 內奴·寺奴·校院奴·驛奴·私奴 등이 600여호, 忠義·業武·校生·三班官屬·席匠 등호가 300여호 등이며 그 나머지 약 500여호가 良丁의 應役戶로서 本邑의 軍額은 京司上納의 騎步兵이 705명, 砲保·禁衛營保의 합이 280명, 水軍·武學이 271명, 사옹원 匠人保 81명, 균역청 選武 60명, 禁軍保 기타가 38명 등으로 收布都數는 1,435명이고 禁御營의 上番軍과 資裝保가 150명, 束伍步軍과 그 保人이 1,130명으로 그 중 半良半賤의 良軍이 565명, 馬隊元軍·保人이 194명, 烽燧軍이 204명, 醫生保人이 150명, 鄉校假屬이 40명, 기타 45명 등으로 이들에게는 收布도 하고 立役도 시켰는데 良人의 都數는 1,348명이며 따라서 이들 수포군 총수는 2,783명인데 이를 500호의 良丁이 부담하게 되니 비록 戶당 5丁을 낸다고 하여도 布數를 채울 수가 없어서 白骨이나 黃口에게도 數三之役을 부담시켜야 하였다는 것과 그로인한 族徵·隣徵으로 境內가 텅 빌 지경이라 하였다(《승정원일기》 1,702책, 정조 16년 4월 14일). 이 史料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명목의

兵種과 正兵·保人 등으로 형식상 나누어졌지만 그들 대부분은 收布軍으로서 18세기 말경부터는 均역 부담자의 개별과악방식이 운용되지 못하고 마을 단위의 均역부담자 과악방식이 채택되어 里徵法으로 變轉되어 갔다(김갑주, 〈앞의 글〉 p.199 및 安秉旭, 〈19세기 賦稅의 都結化와 封建的 收取體制의 해체〉, 《國史館論叢》 7, 1989).

25. 坊民

坊民은 도성내에 거주하는 백성들로서 서울 五部民을 말하는데 그들은 氷庫之役(《현종개수실록》 권23-17, 현종 11년 10월 무신)이나 收屍之役(위의 책, 권24-26, 현종 12년 7월 임자) 또는 도랑이나 개천을 치는 일(《숙종실록》 권49-12, 숙종 36년 9월 병신) 기타 임금의 사냥이나 閱武時에 打圍軍으로 동원(《성종실록》 권90-1, 성종 9년 3월 갑자)하는 등으로 이른바 坊役이 過多·過重하였으므로 氷庫의 일이나 收屍 등 일부 坊役에 있어서는 給價雇立의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고 다른 지방의 良役과는 달리 漢城五部 坊民의 坊役에는 形式的으로는 士夫와 常漢을 막론하고 一體 輪回하도록 하였다(《경종실록》 권14-7·8, 경종 4년 2월 갑자). 그러나 영조 3년 12월 한성판윤 金東弼이 말하기를 坊役變通에 관한 절목이 이미 만들어졌으며 京中五部の 戶數가 모두 3만 7천여 호이므로 위로는 公卿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또 밖으로는 軍兵으로부터 안으로 掖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坊役을 지게 된다면 1년에 불과 2 일役인데 先朝 때에 끝내 변통하지 못한 것은 均兵과 掖隸를 구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하였고 이 때도 방역변통에 관한 新法은 영의정 李光佐의 연기주장으로 역시 그 시행이 보류되었으므로(《영조실록》 권14-20, 영조 3년 12월 병오) 여전히 坊役은 일부 양민만의 부담이 되었다. 그때 特進官 李森이 上奏하기를 各軍門 소속 軍官 및 各司工匠 등 많은 사람들이 방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위의 책, 권22-20, 영조 5년 5월 경술) 그 후에도 관민을 막론하고 방역을 고르게 하자는 주장이 있었다(《위의 책》 권68-19, 영조 24년 9월 을해). 그 후 방역은 1疋之役으로 되었지만 이를 면하려고 하는 자들로 인하여 시끄러웠다(《위의 책》 권95-20, 영조 36년 6월 갑술). 정조 10년 4월 서울 서부 어느 마을에 화재로 340호가 타버렸으므로 화재를 당한 백성들에게

는 3년간 방역을 면제하였다(《정조실록》 권21-33, 정조 10년 4월 갑술). 그리고 그 무렵 坊民(서울시민)에게 代價를 주고 고용하여 도성내 각처의 把守軍으로 삼기도 하였다.

第4章 軍令・標信・軍船 기타

26. 警守所

警守所는 순라군들이 야간에 머물러 순찰을 돌면서 도적을 방비하거나 화재를 예방하던 곳으로 伏處라고도 하였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258, p.748 및 p.616). 경수소의 설치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세종 14년 9월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으며(《세종실록》 권57-31, 세종 14년 9월 계해) 세종 18년 3월 도성 안팎의 경수소를 정비하여 窮谷深處에 13곳만 남겨두고 每1所에 五員(司直·司果·司正·司猛·司勇) 2인, 別軍 5인 및 侍衛番上의 때에는 侍衛牌 3인을 더 差定하여 숙직하도록 하였고 巡官이 종전대로 檢察하게 하였다. 또 종전에는 서울 안을 두 길로 나누어 行巡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四道로 나누어 內禁衛·別侍衛·甲士·防牌 등을 3運으로 나누어 初更 3점에서 2更까지를 1運, 3更(오후 11시~오전 1시)에 또 1運, 4경(오전 2시 전후시간)과 5경(4시 전후)에 또 1運이 行巡하게 하였다(위의 책, 권71-9, 세종 18년 3월 무진). 그러나 13개 경수소만으로는 捕盜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서 문종 즉위년 6월에는 5家마다 1警守所를 두어 각소에 건설한 장정 5·6인을 두고 숙직하게 하되 윤번으로 夜警을 돌게 하였다(《문종실록》 권2-6, 문종 즉위년 6월 기묘).

그리하여 세조 2년 5월 京城내외의 경수소는 모두 106개소가 되어 이로써 도적을 방비하도록 하였다(《세조실록》 권4-2, 세조 2년 5월 임신). 세조 8년 6월 병조에서 啓하기를 종래 깊은 산골에 있는 경수소에는 五員(司直 이하)과 正兵이 숙직하였고 기타 여염집이 있는 거리의 경수소 87개소에서는 모두 坊里

人으로 하여금 숙직하게 하였으나 도적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도리어 도적에게 피해를 당하므로 앞으로는 여염집이 있는 거리의 경수소에는 入直巡察하는 자 이외의 出番인 갑사·별시위·平虜衛·破敵衛·別軍 등을 騎兵·歩兵을 막론하고 경수소마다 2인씩 分定하여 3일간씩 운번으로 坊里人을 데리고 숙직하도록 하자고 하였고 임금이 이에 따랐다(위의 책, 권28-31, 세조 8년 6월 경진). 그러나 경국대전에서는 기병은 빠지고 보병인 2인이 坊里人 5인을 거느리고 숙직하도록 하였다.

27. 軍令

軍令은 군사상의 명령으로 그 명령위반자는 軍律로 무겁게 처벌(주로 사형)하도록 되어 있었다. 문종 원년 6월 임금이 新陣法을 親撰하여 首陽大君 및 金宗瑞·鄭麟趾 등에게 명령하여 校定하도록 해서 완성시켰다. 거기에는 分數·形名·結陣式·合陣·五衛連陣·章標·大閱儀·軍令 등이 있는데 군령에는 進退左右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제멋대로 진퇴좌우한 자는 모두 斬刑(사형)에 처하고 章標를 망실한 자도 참형에 처하며 軍事(기밀)를 누설한 자·적과 私通한 자·金鼓와 旗角을 망실한 자·이유없이 軍을 놀라게한 자·將吏로서 不平하거나 容私한 자·야간통행금지를 위반(犯夜)하거나 암호를 잃은 자(失號)·다른 宿舎에 머문 자·主將의 一時의 명령에 위반한 자 등에게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 적에게 항복한 자에 대해서는 그 家를 籍沒하고 자신이 속한 伍를 잊거나 장수를 잊은 자 등에게도 처벌하도록 하였다(《문종실록》 권8-18·19, 문종 원년 6월 병술). 그러나 실제로는 군령 위반자가 그렇게 무겁게 처벌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듯 하였다. 중종 23년 정월 병조에서 啓하기를 常時에는 군령을 범하여 死罪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杖60에 처하고 더구나 收贖之律(경국대전, 형전, 用刑)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임금은 근래 軍律이 해이해졌다는 것과 군령위반자를 처벌할 때에는 收贖之律을 인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다만 죄의 경중에 따라 收贖여부를 왕명으로 결정함이 좋겠다는 것이었다(《중종실록》 권60-17, 중종 23년 정월 정유).

군령이 해이해졌다는 기사는 《중종실록》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예, 권67-26, 권70-63, 권71-24, 권77-55, 권78-3, 권81-4, 권82-8, 권82-56, 권

89-30, 권91-50, 권93-72, 권99-45), 중종 28년 9월 경신(권76-8)의 기사에서도 상시에 군령이 해이하다는 것과 갑사나 정병과 같은 무식한 사람이 군령에 위반하는 것도 안되는데 유식한 士子인 내금위도 100여명이나 군령을 어겼으니 의금부에서 推鞠하라고 하였다. 군령해이문제는 명종대로 이어져서(《명종실록》 권19-15, 명종 10년 8월 정축) 결국 다음 선조대에 임진왜란을 맞게 되는데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겨우 지휘관에게 가혹한 군율집행권(杖刑)을 주어서 부하를 엄하게 다스리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선조 27년 2월의 비변사의 啓에 의하면 근래 10여년 이래 武官이 지방의 군사지휘관(出外奉使者)이 되면 오로지 威暴을 위주로 하여 큰 막대기(몽둥이)를 軍令杖이라 하고 밑의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應對失誤, 支供不豐 등) 그 큰 막대기(몽둥이)로 치는데 한 두번 때리면 대개 맞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 끌려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장군들(이여송 등)도 우리 나라의 형벌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했다는 것이다(《선조실록》 권48-17, 선조 27년 2월 계해).

28. 標信

標信은 임금이 將臣·將官을 부를 때나 문무관원들이 入直 또는 순찰할 때, 眞僞識別, 출입통제 및 기밀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만든 符信의 일종으로서(《세조실록》 권2-42, 세조 원년 11월 갑신 및 권7-18, 세조 3년 3월 정해, 권4-7, 세조 2년 5월 기축, 권7-20, 세조 3년 4월 갑오) 태조 6년에 처음으로 虎符를 만들었으며, 예종 원년 5월에 비로소 象牙標信을 만들어 앞면에는 선전이라 새기고 뒷면에는 임금의 手決을 새겼다. 표신에는 이러한 宣傳標信(주 580) 이외에 왕비의 內旨標信, 왕세자의 徽旨標信, 大妃의 懿旨標信 그리고 宮城門의 개폐시에 쓰는 開門標信이 있다(《增補文獻備考》 권112, 兵考4, 附符信). 세조 3년 3월 병조의 啓에 따라 병조의 순찰 이외에 의금부와 형조의 낭관들이 令史·杖首 등을 거느리고 수시로 行巡할 때, 標信과 軍號가 없어서 巡官을 사칭할 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通行標信과 軍호를 만들어 주도록 하였다(《세조실록》 권7-14·15, 세조 3년 3월 계미). 세조 5년 8월 병조의 啓에 따라 비록 賤隸일지라도 宣傳標信을 받고 간다면 병졸이나 伍長 이상은 장수에게 곱하지 않고 奉命하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17-12, 세조 5년 8월 갑자).

성종 24년 6월 任元濬은 도성문 개폐에는 開門符를 쓰고 궁내문 개폐에는 표신을 쓰는 것은 良法이라 하였다. 또 이 때 愼承善은 표신이 임금으로부터 出納되는 물건이므로 중대한 것이라고 하였고 姜子順은 수문장의 소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표신없이 招致할 수는 없으며, 물어볼 일이 있으면 出番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柳洵은 수문장이 잘못하면 都摠府에서 선전표신 없이도 불러서 糾察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임금은 앞으로 수문장이나 部將, 守鍾將, 入直兼司僕 및 外城守門護軍을 부를 때에는 선전표신으로 하며, 제멋대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만약 물을 일이 있으면 出番後에 招問하라고 했다(《성종실록》 권 279-11·12, 성종 24년 6월 정축). 연산군 3년 2월 承旨 愼守勤의 건의에 따라 開門標信으로 선전관이나 겸사복을 부르던 전례를 고쳐서 앞으로는 그들을 선전표신으로 부르게 하고 개문표신은 개문에만(폐문포함) 쓰도록 하였다(《연산군일기》 권21-29, 연산군 3년 2월 병자).

중종 3년 10월 초저녁에 柳木으로 표신을 假作하여 선전관으로 하여금 갖고 가서 衛將을 불러서 거느리고 있는 군사를 모으게 하였던 바 그 가짜 표신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였으므로 임금은 무릇 표신에는 御押(임금의 수결)과 宣傳字號가 새겨져 있고 또 信字를 낙인하였는데 그것을 살펴보지 않은 衛將들의 과실이 크다고 하였다(《중종실록》 권7-7, 중종 3년 10월 기묘). 병력동원은 密符標信으로 하되 두쪽이 合符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위의 책, 권 63-48, 중종 23년 10월 갑인). 정조 5년 2월 임금이 하교하기를 侍衛線內에는 표신없이 들어갈 수가 없으나 규장각의 諸臣은 御押牙牌를 갖고 있으므로 牙牌吏의 前導로 표신없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였다(《정조실록》 권11-19, 정조 5년 2월 병진). 정조 14년 정월 우의정 金鍾秀가 동소문의 護軍과 部將을 잡아간(縛去) 일이 있었는데 임금이 大怒하여 말하기를 임금(朝家)도 근무중인 그들을 잡아오는 데는 반드시 표신을 보내어 탄사람으로 임무를 교대케한 후라야 하거늘 대신이 제멋대로 城門守直將을 잡아갔으므로 우의정을 삭탈관작하고 병조판서를 유배하라고 하였다(위의 책, 권29-3·4, 정조 14년 정월 갑오·기해). 각 표신의 형태와 용도는 《대전회통》 병전, 行巡 및 符信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29. 密符

密符는 임금이 관찰사·통제사·수어사·총융사·各都留守·절도사·방어사 등에게 授與하는 兵符로서 變亂時, 發兵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이것을 사용한다. 그 모양은 둥글고 일면에 「第幾符」라 썼으며 다른 일면에 임금의 手決이 있다. 이것을 가운데로 쪼개어 오른쪽 한 조각을 위 관찰사 등에게 주고 왼쪽 한 조각을 궁중에 두었으며 發兵時에는 선전관이 갖고 가서 짝을 맞추어 부합되면 위 관찰사 등 지방군 사령관은 비로소 動兵에 응하는 것이다(조선총독부, 《校註大典會通》, 앞의 책, p.605).

세조 6년 정월 임금은 황해도 관찰사에게 親押(임금의 수결)이 있는 제24의 密符를 주면서 「卿과 더불어 獨斷으로 일을 처리하자면 密符가 없이는 안된다」고 諭示하였다(《세조실록》 권19-2, 세조 6년 정월 을유). 세조 8년 9월에도 임금은 황해도 관찰사에게 親押 제11 密符를 주면서 같은 내용으로 諭示하였다(《위의 책》 권29-11, 세조 8년 9월 계묘). 밀부의 칭호를 제1, 제2라 한 것은 중국例를 따른 것이다(《예종실록》 권7-20, 예종 원년 9월 병신). 중종 23년 10월 선전관이 표신을 갖고 와서 衛將에게 병력동원에 관한 것을 말하였는데 이 때 임금은 用軍을 하자면 밀부와 표신의 두 짝이 각각 合符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중종실록》 권63-48, 중종 23년 10월 갑인). 중종 29년 8월 황해도로 선전관이 갖고 간 밀부가 第23符인 것이나 감사가 갖고 있는 것은 第10符이므로 잘못 보낸 책임을 추궁하여 色(담당)承旨와 注書를 推考하고 都承旨는 行公推之(공무를 수행시키면서 推問)하였다(《위의 책》 권77-58, 중종 29년 8월 임자).

선조 23년 2월 임금은 새로이 밀부를 세조각으로 만들게 하여 한 조각은 대신에게 주고 두 조각은 궁궐내에 보관하였다가 비상소집시에 “合符爲驗(밀부의 짝을 맞추어 진위를 분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병조판서와 8도의 監司·兵使·水使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선조실록》 권24-3, 선조 23년 2월 갑신). 병력을 거느리는 장수는 단 하루도 밀부가 없어서는 안되는데도 경상좌도 수사가 임명된지 오래되었음에도 승정원에서 諭書와 밀부를 보내지 않았으므로 未便하니 色承旨(담당승지)에게 推考를 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위의 책》 권74-24, 선조 29년 4월 병오).

30. 諸船(戰船·防船·兵船)

조선전기의 戰船·防船·兵船은 軍用船을 말하며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조선초기의 軍船은 모두 13종 829척이라 한다(민현구 외 4인, 앞의 책, p.650). 세조 7년 신숙주의 건의에 따라 세조 7년 11월 병선과 漕船을 겸한 兵漕船이 만들어졌다(《세조실록》 권26-2, 세조 7년 10월 무진, 권26-20, 세조 7년 11월 갑자). 이 兵漕船은 大船·中船·小船의 구별이 있었고 船軍은 각각 80·50·30명씩이었다(金在瑾, 《조선왕조 軍船연구》, 한국문화연구소, 1976).

諸道·諸浦의 병선의 망실·훼손시의 추정가액에 관해서는 정해진 법이 없었으므로 단종 즉위년 7월에 이를 정하였다. 그 내용은 훼손 당시의 배의 年數에 따라 大船은 최고로 造船材木 每 2條당 綿布 1필로 하여 면포 117필과 正布 1필에서 최하 면포 80필과 정포 1필, 中船은 최고로 면포 105필과 정포 1필, 小船은 최고로 면포 57필을 각각 추정하였다. 또 小船보다 훨씬 작은 거룻배는 면포 12필에서 9필 정도를 추정하였다. 한편 배를 망실한 경우에는 倍徵을 하여(造船材木 每1條당 면포 1필) 大船은 235필, 中船은 211필, 小船은 114필, 거룻배는 24필을 각각 추정하도록 하였다(《단종실록》 권2-3, 단종 즉위년 7월 을미).

세종·단종 연간의 大·中·小船은 그 후 大猛船·中猛船·小猛船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등재되었고 조선후기의 《속대전》에서는 다시 防船·兵船·龜船·伺侯船 등으로 개칭되었다. 대맹선을 유실하였을 때에는 면포 230필, 중맹선을 유실하였을 때에는 220필, 소맹선을 유실하였을 때에는 210필을 각각 추정하였으며 또한 병선을 불태웠을 때에도 유실례에 따라 면포를 징수하였다(《성종실록》 권127-2, 성종 12년 3월 신사). 《경국대전》에서는 이를 약간 수정하여 중맹선의 경우 210필로 정하였다.

《續大典》상의 戰船·防船·兵船 등 諸船은 대맹선·중맹선·소맹선 등이 모두 輕快하지 못하여 實戰에 무용지물이 됨으로 庚午倭變(1510년의 三浦倭亂) 이후 10여인 혹은 7·8인이 탑승하는 小型輕快船으로 병선을 개조하면서부터 생겨났다(《중종실록》 권48-42, 중종 18년 6월 을축 및 권64-47, 중종 23년 12월 정축). 중종 24년 5월 領事 沈貞이 朝講에서 말하기를 왜구를 잡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큰 배로는 안되기 때문에 倭船만큼 빠른 속도의 작은 병선이 필요하여 李安世가 절도사로 있으면서 병선 150여척을 혁파하고 6·7인 용의 작은 병선인 경쾌선을 두 배로 만들었다고 하였다(《중종실록》 권65-46, 중종 24년 5월 을묘). 그 때 特進官 申公濟가 말하기를 漕運時에 私船을 이용하여 폐단이 많으므로 병선인 大船을 漕船으로 쓰고 싸울 필요가 있을 때에는 戰船으로 쓰자고 하였다(同上). 전선은 바다 뿐만 아니라 京江(한강)에도 있어서 외적을 막도록 하였다(《명종실록》 권32-57, 명종 21년 4월 무인).

그런데 戰船은 특정형태의 싸움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병선을 의미한 듯한 용례가 있다. 선조 32년 3월 중국관원(通判)이 「貴國 戰船 其制 甚好」(《선조실록》 권110-3, 선조 32년 3월 병술)라든지, 선조 35년 윤2월에 領事 尹承勳이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는 매우 넓은데 전선 70척만이 배열되어 있다」는(《위의 책》 권147-2, 선조 35년 윤2월 을미)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속대전》에서는 戰船을 防船·兵船·龜船 기타 선박과 구별하여 규정하였고, 숙종 42년 8월 前年冬에 閔鎭厚가 전선 1척으로 병선 2척을 만들자고 하였으며(《숙종실록》 권58-28, 숙종 42년 8월 신해), 영조 10년 5월에 「소위 전선이란 것은 매우 높고 커서 싸움배로서 부적당하니 魚腹形體로 개조할 것」을 논의하였고, 영조 26년 11월의 경상감사 閔百祥의 보고에 의하면 전선 한 척 減額하는데 수군이 근 천명이나 절감될 수 있다고(《영조실록》 권72-23, 영조 26년 11월 임술) 한 점에 비추어 전선은 대형 선박이고 조선후기의 병선은 소형의 쾌속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防船은 정조 17년 9월 海西御史 洪太協이 「水營所管 防船 軍糧米192石」이라 한 점에(《정조실록》 권38-25, 정조 17년 9월 기미) 비추어 방선은 전선보다는 작은 배(黃海水營의 防船은 3척)로서 그 크기에 있어서는 조선전기의 中猛船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31. 龜船

龜船(거북선)은 《속대전》에 처음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쓰여있으나, 《태종실록》 권25-7, 태종 13년 2월 갑인에 「임금이 임진나루를 지나면서 龜船이 倭船과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는 기사가 있는 점에 비추어 조선국초부터 있었다고 하겠다. 또 위의 책, 권30-5, 태종

15년 7월 신해에서도 거북선은 여러 敵船 속에 충돌하면서 들어가도 적이 그것을 뺏기지 못할 정도로 견고하고 교묘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물론 그 眞價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 의하여 발휘되었다. 《선조실록》 권27-13, 선조 25년 6월 기유에 「이순신이 전선 80척으로 옥포에서 敵船(왜선) 30척을 포위하여 격멸할 때 龜船으로 하여금 돌진하게 하여 大小銃筒을 先放하여 그 배(적선)들을 모두 태웠다」고 한 기사가 그것이다. 선조 28년 10월 비변사에서 임금에게 啓하기를 거북선이 해전에서 승리하여 적이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부족하면 밤낮으로 더 만들고 대포·佛狼機·火箭 등 兵器를 많이 실어야 한다고 했다(《선조실록》 권68-36, 선조 28년 10월 병인).

선조 29년 11월 임금이 거북선이 어떤 배냐고 묻자 南以恭이 대답하기를 사면이 板屋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 모양이 거북이 등과 같으며 鐵釘을 머리에 삽입하여 왜선과 만나면 접촉하는 대로 모두 破船시킬 수가 있어서 水戰의 機具로서 가장 좋은 것이라 하였다. 임금은 어찌하여 거북선을 많이 만들지 않는가라고 다시 묻자 남이공은 전함은 가볍고 민첩한 것이 상책이라고 하고 水兵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거북선이 그렇게 민첩한 배는 아니라는 점이다(위의 책, 권82-16, 선조 29년 11월 기해). 그러나 광해군 14년 7월 비변사의 啓에 따라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을 다시 만들도록 하였고(《광해군일기》 권179, 광해군 14년 7월 22일), 또 인조 17년 7월 영의정 崔鳴吉의 건의에 따라 경기水使로 하여금 이순신이 창제한 바 있는 거북선을 만들도록 하였다(《인조실록》 권39-5, 인조 17년 7월 기사).

숙종 2년 정월 武臣 李枝遠이 말하기를 거북선은 비록 逆風을 만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防牌船을 개조하여 거북선을 만들어 선봉을 삼자고 하여 임금의 동의를 얻었다(《숙종실록》 권5-5, 숙종 2년 정월 정미). 또 숙종 42년 8월 신해의 실록기사(《위의 책》 권58-28)에 의하면 前年冬에 閔鎭厚가 말하기를 戰船 중 남은 것이 121척이고 거북선은 5척이며 전선을 방패선으로 改作한 것이 호남 2척, 호서 4척, 경기와 해서 각 3척, 모두 12척이라 하였다. 영조 27년 2월 嶺南均稅使 朴文秀가 上奏하기를 거북선은 위에 두꺼운 板을 덮어서 矢石을 피한다는 것과 이순신의 거북선은 左右에 각각 6銃穴을 두고 있으나 지금(영조 때)의 것은 각각 8穴이니 옛날의 거북선에 비하여 지금의 거북선이 크므로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영조실록》 권73-8, 영조 27년 2월 기축). 정

조 15년 11월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崔東岳이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樓船이 거북선보다 빠르지 않은데도 樓船이 많고 거북선이 적으므로 樓船 6척을 거북선으로 개작하자고 하였고 비변사의 啓言에 따라 10척 중 3척을 거북선으로 개작하게 하였다(《정조실록》 권33-70, 정조 15년 11월 임진).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九

將及提調罷職中軍以下以失律論

陸戶軍雖有罪犯勿為除案亦

勿定配從
重決棍

○六鎮三甲人上來京中者武士則係名

本曹試才給料○濟州武科式年初試人因風高未

及來赴會試者當前庭試亦許赴○邊將規避者充

軍○邊將邊帥父母七十五歲者許遮

獨子無兄弟則七十歲為

限補承重及有兄弟而出繼者同

增經宿陵幸因山遷陵時諸道道

臣境上待候○未付司果特教外毋得稟請**補**新除

統制使兵水使防禦使邊地僉使營將及新資外職

歷辭時原任大臣將臣六卿本曹堂郎

閩帥歷
辨臺官

大典會通卷之四

官別將千總禁軍將左右巡廳營將兼營將虞候中
軍邊地守令邊將四山參軍軍務使星三品以下用
之小棍軍門把總哨官僉使別將萬戶權管用之治
盜棍捕盜廳畱守監司統制使兵使水使討捕使兼
討捕使邊地守令邊將治盜
及關係邊政松政外勿用

雜令續各衙門收布色目充定時必關由本道本官

京衙門直定者啓聞論罪 ○京各司不得直關於外邑雖有新定

式而若係軍兵逃亡受由等事不拘此例 捕廳賊人

外毋得直關外邑 增三軍門逃亡軍跟捕上番軍疊
役勿侵在喪及物故軍代定立番將校軍兵之受由

在外催促事守摠兩營管下邑及軍兵屯田所在邑
申飭知委事左右捕廳賊情讖捕事戶曹之義州東

萊兩處事大交隣時急舉行事司僕寺之陵幸時各驛添
魚蘇魚兩所時急舉行事司僕寺之陵幸時各驛添

補馬知委事及兼監牧邑鎮 ○軍門軍士私役使者大
申飭知委事并許直關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九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八

行在時外常時犯軍令死罪者諸將杖六十軍士杖

九十

常時闕夜直者外雜犯用律

續軍民犯罪者從輕重用軍律

沿海邊民交通唐船者瞞報邊情者宿衛軍兵越城出入者入番軍兵處受賂者與受並用軍律

逃亡初犯決棍五十再犯八十三犯梟示○邊將被打彼人時軍官棄而不顧者直用軍律

東伍軍兵者只犯者梟示○軍門將領擅用軍兵郊外經宿者從重決棍邊遠充軍闕門下人勿論

衙門高下本曹捉入棍治**增**武藝別監逃亡者習陣日沙場回示後決棍五十度絕島充軍厭避者嚴刑

海島**增**軍務事及闕門闌入人外毋得用棍棍制一

典則施行皆以柳木為之長廣厚薄用營造尺刻誌其上違者重勘○重棍本曹判書軍門大將雷守監

司統制使兵使水使用之而非死罪勿用大棍三軍門都提調本曹判書軍門大將禁軍別將捕盜廳軍

門中軍雷守監司統制使兵使水使討捕使及軍務使星二品以上用之中棍內兵曹都摠府軍門從事

閑丁充給無閑丁雖本官日守軍士亦抄定○平安道黃海道永定館軍毋定他役子孫無痕咎者許赴文武科生員進士試○正軍及保人等水夫漁夫有關處毋得移定○司僕寺諸員闕代以同居子婿弟姪充

增輦輿軍毋得以私奴充定

用刑原都摠管以下一應職帶軍務者所犯本曹啓

聞舉劾行在時則堂上官議親功臣及軍士外杖八

十以下直斷○都摠府大將亦於所管啓聞舉劾行

在時則都摠府大將衛將部將各於所管答以下直

斷杖以上啓聞統將部將及游軍將領將衛將○將

帥受命在外者堂上官議親功臣外杖以下直斷諸

鎮將答以下直斷杖以上傳報主鎮將臨敵則不在此限○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八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七

家三間以上草家五間以上失火者自人定至罷漏

登時書啓

人物致傷則雖一問亦為書啓

雜類原雜類人差定有差守陵軍先王先后各七十

墓軍先后及王妃父母各二人親盡則勿定○高麗太祖守陵軍三人顯宗文宗忠敬王陵各二人箕子

墓一人○胎室看守軍先王先后各四人親盡則二人大殷王妃殷各八人王世子四人諸壇諸堂直各

一人○津夫大路十人漢江路渡三田渡則加十人中路六人小路四人○水夫每船二隻三人水夫東

水庫十人西水庫四十人○藥夫牧以上五人都護府四人郡三人縣二人○漁夫二百人勿論良賤○

雜色軍無定數以錄事書吏諸員畫員道流書題僕隸各邑人吏日守書員醫生律生守陵軍守墓軍看

守軍壇直堂直藥夫津夫水夫續雜類人勿許移

改有闕者代充諸驛日守聽驛吏狀告以近驛有實

番別監各差備人俱詣闕門外待令移御所同○諸司分

屬五部給救火牌部內失火本曹義禁府刑曹漢城

府修城禁火司官員率部屬各人奔救坊里人則每

板率統人奔救 ○義禁府定望火人本府羅將司僕寺常登

鐘樓看望離宮若公廨失火則擊鐘私家連都摠府

即啓令部將率八直步兵奔救 ○風亂則修城禁火

司坊里各戶搖鐸巡警備火 ○公私各處並開貯水

坎置防火土架救火器械 ○宗廟永寧殿文昭殿官

員巡行禁火風亂則提調入番宗親巡察廢 ○宮

城宮墻四面百尺內禁人造家庫廩則限三十續瓦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七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六

山咸原新恩平浦五川居山施利谷口基原麻谷嶺
東臨溟雄平古站明原輸城朱村要站吾村石堡懷

綏豐山櫟山撫安 ○諸道使客以下分路往來全羅
鹿野德明餘小路

右道則由衿川水原忠清慶尙左道則由果川
廣州利川全羅左道慶尙右道則由果川 違者觀察

使糾舉啓聞

改火原 本曹每四時入節日季夏土旺日鑽木改火

春榆柳夏棗杏季夏檀諸邑亦依此例增各殿具單子
桑柘秋柞櫛冬槐檀入啓頒賜朝臣

禁火原 本曹義禁府刑曹漢城府修城禁火司五部

直宿官員巡行禁火 ○闕內有火災擊大鐘增代在

闕者奔救將率不離直所出番將率各其本衛諸司

官員各其朝房聚會諸司諸員匠人五部坊里人出

○守令及家屬往還時人馬以鄉吏日守官奴抄定

守令則依本品馬數家屬則府大都護府牧官各二
十匹都護府十七匹郡以下十五匹人隨馬數春分

後秋分增赴京使臣騎馱馬騎用驛馬馱用刷馬
前勿迎

路引原凡軍士告假歸鄉者本曹給路引

驛路續驛路分大中小路大路京畿良才樂生駒興
迎曙碧蹄馬山東坡青郊

後川靑好平安奇梁文中路京畿金嶺佐贊分行無極
加狹靑好平安奇梁文中路京畿金嶺佐贊分行無極

樹德雷增若嘉和土波會同新興成歡新恩金蹄廣
程日新敬天平川連原用安丹月黃江水山長林安

富慶尙道聊城幽谷德通洛陽洛源全羅道參禮半
石醫谷良才江原道豐田生昌直木昌道新安銀溪

黃海道金丹郊興義金巖寶山安城龍泉劔水同仙所
申敬天丹林平安道生陽大同安定肅寧安興嘉平

新安雲興林畔車輦良策所串義順咸鏡道高山南
山奉龍朔安鐵關良驥通達和原草原蓬臺平原德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六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五

積芻原

諸邑歲積馬芻以備緩急

大官十萬束中八萬束小六萬束沿

路則各加

增

不許民結收聚皆以分糶後空石隨多

少逐年積置違令取民者守令論罪

護船原

諸道漕轉船水軍節度使僉節制使萬戶各

其境內領兵船護送○商船所過諸鎮將點檢

考路點

軍器禁

報主鎮

迎送原

赴京使臣迎送軍以平安道正兵騎馱馬以

各官鄉戶馬輪次定送

江界滑原楚山碧潼昌城朔州義州龍川鐵山則毋定○

迎送軍每行送四隊迎二隊單使無方物則送迎并

二隊赴遼東官三五騎馱馬本道觀察使據禮曹移
文依數分定往還時不謹護養以致斃損者團練使
科罪三匹以上觀察使啓聞使副使書狀官並科罪

一百徒三年 **增**內寺每朔行官私調馬初一日行官

調馬初五日初十日十五日二十日二十五日三十日行後苑調馬初七日初十日初十三日初十七日行私調馬若值有故則退日

舉行一朔毋失十二次外寺官調馬日與內寺同初五日初十日十五日二十日二十五日三十日行私調馬 **試射頒**

賞時馬帖從自願以木布代給兒馬木一匹布二匹

匹熟馬純木三匹代給只親臨試射時遵用其他勿論給代木布各其受賞人所屬衙門移送十分之

九於太僕自太僕補其一分不足之數待其納帖照例上下 **動駕時及奉命時**

閣臣許乘內廐馬三軍門馬軍受官馬有頃者報

司僕寺代給分養馬八年内致斃者使之自備改立

補隨駕國舅宗親儀賓承史玉堂承傳宣傳官別軍

職許乘內廐馬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五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四

馬匹生徵○故失瘦瘠應降二資則堂上降資堂下
越祿○該邑守令與兼官俱有故而雷鄉所當該則

徵其故失價瘦瘠則移他官刑推○濟州上來貢馬
中路病雷該邑守令不善救療徑斃者過年不即上

送者依分養故失例論○換
納守令自本寺入啓拿處 ○國馬監守自盜者依

律論初犯杖一百絕島定配再犯絕島為奴三犯斬
常人初犯杖一百定配再犯杖一百絕島定配

三犯斬○屠殺者與盜者同○遺失馬十匹以上
監牧官罷黜五匹以上降資四匹推考三匹勿論 ○

私馬之可合御乘者厭憚被執割耳剪鬃故令作凶

者杖一百馬屬公○牧子子枝勿定他役
定役者頃下當該監

色推治○厭避牧子投屬歇處者刷還本役不為舉
行監牧官罷黜色吏刑推並勿揀赦前良民投屬牧

案者罷定最苦 ○牧場內私牛馬船隻往來者嚴禁
役牧官罷職

犯者決杖一百徒三年牛馬船隻屬公監牧官罷職
兼監牧同色吏刑推○土豪之冒占田地葬山者杖

監牧杖一百兵馬節度使杖九十

每歲抄本曹考點馬之籍其遺矢故

失致殺最多者孽息數三年通考連等未滿三十匹者監牧罷黜

○凡乘官馬者致

令折傷或病者杖七十死者杖八十追徵

驛馬同○若落馬者

勿論續濟州旌義大靜各牧場體大馴良有才色馬作

駟調養遞來官進上

合牧使判官各三匹縣監二匹不御乘則以制書有違律論

○牧場馬澁烙使無用奸

或有奸情現發者則監牧官罷黜羣頭牧子杖一百

徒三

○諸道點馬以文官擇差

慶尚左道以本寺正自辟差送點馬

違錯者監牧官罷黜

兼監牧同

牧子等嚴刑現推

各牧場故失馬

價上等木十六匹中等十二匹下等八匹○濟州各牧場則以馬匹數代徵

○分養馬故

失瘦瘠不馴守令論罪

一匹重推二匹降一資三匹降二資四匹罷職故失者以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四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二

階特異者加階授職

監牧則孳息數三年通考連等滿五十匹以上者論賞

○

羣頭羣副牧子遺失馬牛一匹答五十監牧減每一

匹加一等罪止杖一百津數追徵無人海島牧場馬

每三匹故失馬三匹給一匹徵一匹牛二首給一首

徵一首末常看養牧場馬則四匹給二匹徵一匹牛

則濟州外並以綿布徵上等八匹中等六匹下等四

匹○上項遺失故失馬若等第不同則從多數徵三

匹內二匹上等一匹中等則從上等之類○一歲及

並勿徵馬兼監牧差減徵遺失馬牛十匹故失馬牛

○牧場內有虎豹不即捕獲致殺馬牛五匹以上者

場遺失十五匹故失二十五匹以上無人海島牧場遺

失二十匹故失二十五匹以上無人海島牧場遺

名各一百二十名分作二十四番每番五名立○烽

臺設標定界毋論偽烽放火等事在百步內者本曹

句管百步外者該營當之○烽臺近處禁淫祀祈禱

犯者地方官施以制書有違律

廐牧原司僕寺祿官兼官及馬醫養馬等不勤喂養

馬牛生病或死者比犧牲主司喂養不如法律加一

等論諸邑分養馬牛同○駟馬三七日內死遺失者

準數追徵○諸道牧場以雌馬一百匹雄馬十五匹

為一羣牛同每一羣定羣頭一人牧子內良人羣副二

人牧子四人看養每年息八十五匹以上者羣頭加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二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二

慶尚道來廣州穿川嶺烽燧第三津平安道黃海道海路來母岳

西峯烽燧第五津忠清道全羅道來陽川開花山烽燧本曹定人候望翌日早晨告承政院以啓若有變

則雖夜即告○木覓山每所軍四人伍長二人沿邊則每所軍十人伍長二人內地則每所軍六人伍長

二人軍及伍長並以烽燧近處居人差定○或續烽雲暗或風亂煙火不通之時烽燧軍次次馳報

燧煙臺所在烽軍等毋定他役專為候望勤幹品官各四人別

定監考分二番相遞晝夜檢舉或有絕火處守令決杖八十監考杖一百色吏烽軍杖一百極邊充軍並

除收贖決杖賊到處不報火烽卒依法處斬後啓聞○偽舉烽火者勿論煙臺與他處並用一律○無事

時闕點者勿論軍官監考烽軍各別從重決棍增木舉偽烽者不待時斬近處放火者待時斬

覓山烽燧將忠順衛革罷之代以禁軍中祿厚者輪

回守直○木覓母岳兩山烽軍戶保並戶三十戶每戶各給保三

三十朔改造七年六朔一改防船三十六朔改造九年一初改
又三十六朔再改製又三十朔改製十二年一改○黃海道○平安道

船則又加三六年朔三改製十二年一改○黃海道○平安道
大小船每間三年改製十年改造○京畿大小船無定限

每間二年改製十二年改造○京畿大小船無定限
隨其所傷擲奸改製○兩湖諸船限前腐傷不可不

改製改造者水軍節度使親自看審報備局府政許
施雖過限而船體完固則又添木改製○守令邊將

戰船不謹監造未滿限 ○戰兵船毋得出送外洋者
傷動退者杖一百

依縱放軍人出百里外空歇軍役律杖一
百充軍○替放戰船漂失者以一律論 ○兵船勿

許他用江華府禦邊船諸司毋得執捉

烽燧原烽燧平時一炬賊現形則二炬近境則三炬

犯境則四炬接戰則五炬京則五員曾今守告本曹

外則伍長告鎮將木覓山烽燧東第一津永安道江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二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一

己○弓矢進上時差出知弓品堂上弓房內官呈手本於政院自本

曹望單啓下尚方別造弓矢時自尚方移文本曹差出舉行

兵船原諸浦兵船及什物水軍節度使每歲抄具數

報本曹本曹啓聞造作八年仍修又六年更修又六

左道江原道永安道則十年仍修又十年改造除煙

者大猛船一艘綿布二百三十五匹中猛船二百一十匹

年而止若致朽敗燒毀者依上年續各道戰兵船滿

年限則腐傷與否水軍節度使親審啓聞慶尚道戰

則八十朔而退限二十朔改造左道則六十朔而退

戰防兵船三年後初改製又三年再改製又三年改

造○忠清道戰船三十朔改製又三年再改製又

致有奸弊者節度使○各邑鎮軍器別備者論賞鳥銃

守令依犯越例照斷○則并九弓則并箭備納然後以別備施行○舊軍器

並修改無頃然後新備者論賞圖各營邑不修舊件

只為新備則件數雖多○入直軍士軍裝雜物渝破

不許加資以錫馬論賞圖○執頃者論罪滿四件者笞五

稟身示捕捉者論賞弓子三十張鳥銃三柄以下者

重科罪圖火藥未滿百斤者回示後減死重棍鳥配

環刀旗槍五柄鉦鼓五坐以下依鳥銃三柄以下律

論圖軍器私造與都庫者斷以一律私相賣買者限

死嚴刑極邊勿限年遠配物件屬公○火藥私製賣

買者依律重繩圖動駕時御前信箭鏃刻令字懸各色緞小

標旗旗面書黃色信字以令各營○東宮聽政後駕

前巡視令旗質以黑緞字以紅緞前排着黑號衣英宗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一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

上下緣挾輿燭籠黑紗挾輿軍服色黑號衣

軍門燭籠青質

紅緣京外同

○世孫宮燭籠青紗為質紅紗上下緣雙挾

輿軍二燭籠青紗挾輿軍服色青號衣○駕前別軍

職鞭棍自本曹造給○內入直禁軍所住處軍器造

置

弓箒筒箭一百部弓子一百張片箭一百部筒兒一百箇要鈎鞭一百箇環刀一百柄

○三

南海西銃藥九月課米自常平廳句管窵設月課契

貢物

鳥銃軍器寺受價製造藥丸本年則三軍門與貢人分半受價製造間年則貢人全受價製造

三軍門製造者仍置該軍門貢人製造者分送三南海西會今則自守摠兩廳句管分送各邑補守禦廳

出鎮後摠戎廳專管分送

○各邑軍器節度使不時抽柱擲奸執

頃守令論罪

巡點時隨其執頃之多寡當該守令從輕重決棍論列狀聞○銃藥不藏官庫

限五步城外限十步斫去○城上聚積石子

軍器原京軍器寺外各鎮依橫看精緻製造前造者

亦常修整軍士私賚軍器京則兵曹外則守令及節

度使常加檢察毋得濫惡各官各鎮篆烙州鎮號○每歲送箭

竹子兩界永安道則慶尚道二萬五千箇江原道一萬一千五百箇平安道則全羅道一萬五

千箇忠清道五千箇節度使分給屬鎮具錄所造箭數及將士

所給數以啓續動駕時御前巡視令旗質以紅緞字

以青緞諸軍門則質以青緞字以紅緞京外同御前前排着紅號衣外京

前排服色仍前御前燭籠紅紗為質青紗上下緣挾輦燭籠

紅紗挾輦軍服色紅號衣東宮燭籠黑紗為質紅紗

大典會通

卷之四

九十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九

忠贊衛忠順衛
族親衛則削仕

救恤原水陸赴防軍有病者各其將責付親管人救

護病重則授所在官治療歿者草葬立標知會本家

報本曹**增**三軍門置藥房各一救療有病軍卒

城堡原宮城都城每年春秋本曹同工曹漢城府修

城禁火司巡審啓聞城旁內外並開溝渠草木生長處隨即剪去牛馬故放踏損覆

莎觸破弓家者磚石偷取者修城禁火諸鎮邑城山

司每月巡行檢舉各面山直兼行考察

城行城兵馬節度使巡審頽圯後修築處開坐每歲

抄啓聞如有頽圯而未即修築者修築而不堅牢者
該官罷黜**增**都城內外松木鬱密有妨城堞處城內

廢疾冒出公文容隱閑丁者雖一名守令罷職監色杖一百充軍○物故經年逃亡過限未代定者雖代定而假名虛錄者守令五名以上罷職監色營門刑推十名以上削職監色徒配二十名以上徒配監色

杖流 ○一家內多人應役及一人疊役者除減束伍軍

三人編伍者除其父兄弟四人編伍者除其兄官定其代○四父子以上良役勿論同居與否從自願一

人除減使之自代○一身 ○違法除軍者論罪以上人

疊役者減其後入之役 ○違法除軍者論罪以上人守令罷職杖一百徒三年○富實軍丁換定衙前者案

付軍丁以鄉吏雇工施行者依違法除軍例論

給假原軍士告病者本曹覈實給假入直軍士則都

本曹親病則在京者告本部在外者告本邑守令之

子則告鄰邑覈實傳報並移文本曹○有祿軍士無

故滿二十日有故滿五十日不仕者並杖八十削仕忠義衛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九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八

肢折也癢疾痴啞侏儒腰折一
肢癢也痴病行貌侏儒短貌
並免役者凡有役 ○有

篤疾癢疾或年七十以上親者一子九十以上者諸

子免役子亡者孫一人無親孫則外孫免役○居京軍士雷防軍士及忠順衛正兵獨子外勿免

續有蔭人限代免役大王孫勿限代新定式○戰亡子孫見屬忠衛者限三代○戰

親衛及功臣正勲子孫忠義限九代○四王孫及先賢支裔相當良役外七般賤役皂隸羅將日守漕水

軍烽軍驛保並勿定○諸冒頃人毋得許免義影職向化人入軍籍者許免

受帖冒屬鄉校鄉所任校生衙前等收布案中毋得懸頃○納粟堂上有軍役者勿頃無役者充定○

軍士物故者年滿六十而應役四十五年者逃亾過

十年者並代定物故老除者勿論歲首末即為代定物故立案過三朔不為成給者守令

罷職色吏嚴刑○逃亾過限而有一族者使之自得代定未代定前勿頃○以生為死以存為逃虛稱篤

○大小人年八十以上率丁十口或田十結以下者

復戶平民及公私賤則率丁五口或田五結以下者亦復九十以上則不論田

丁多少復戶○宗姓袒免外姓及王妃同姓總麻以

上親田十五結以下復戶先王先后親同從仕者及六品以上從仕者之子孫

身犯重罪未蒙赦宥者犯不忠不孝者之子孫○實並勿復二品以上則雖閑散者之子孫亦勿復

行二品職事年七十以上退居田里者復戶○因公

身死者限三年復戶戰亡者則限五年○向化新來人限十

年復戶○凡寺刹貢賦外復役增南漢山城將校軍

兵等特許給復田一百八十結

免役原軍士年滿六十者篤疾癈疾者篤疾惡疾癈狂兩目盲二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八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七

隊長嚴刑定配守令
隨多少草記論罪

軍士還屬原

犯罪軍士非盜及係干綱常者削仕還

屬續軍士及保人

厭憚逃避他戶者還屬本役者杖接

管領里正以制書有違律論

○冒年老除者退年還

屬

厭其還定代身現納者當

○已入軍役者陞屬有

廳則使之自代否則仍屬前役

冒稱原從子孫者查

以忠義侵頃則勿
施該吏從重決杖

增冒錄忠義衛者杖配

復戶原

內禁衛別侍衛率丁十口或田十結以下諸

色軍士率丁五口或田五結以下並復戶

凡復戶只復元居○

內弓矢人司僕諸員守陵軍守墓軍驛吏驛日守助
役宦官津夫水夫冰夫漁夫同上下番者每上番復

使磨勘啓聞

軍保子枝混入於校院生及武廳者查
出汰定○贖良人未出補充隊前入屬

良役納布二匹者仍存一匹者屬之餘丁○東伍勿
論公私賤充定○自他邑移來無公文者勿論有役

無役良人充相當
役私賤充束伍

○館軍生產子枝各察訪每式年

成籍分送本曹本道○各鎮軍及募軍各邊將每歲

抄時成籍送于巡兵營

觀察使節度使取考募案如
有募軍年滿而不補鎮軍闕

類以他良民代定鎮軍者啓聞各別論
罪良民之冒入鎮軍者一并汰定良役

下兒弱限十四歲以下

充定守令從輕重論罪

黃口十名以
上守令五年

禁錮監色刑配二十名以上守令十年禁錮監色嚴
刑島配兒弱十名以上守令施以制書有違律監色

杖八十徒二年二十名以上守令徒配監色刑配○
歲抄不及限守令推考降資鄉所徒一年色吏徒二

年定
○守摠兩營軍兵自各其邑隨關代定置有闕掩
者旗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七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六

丁為一保○宦官長番則四保出入番則三保小宦則一保○內弓房弓人矢人繕工監木匠掌樂院樂生并一保○京驛卒三保又助役二名以同居族親定給外驛卒一保一丁○管領元有保人因給一保無保人率丁一人毋定他役無率丁給戶別一人○漢蒙倭女真學忠贊衛忠順衛忠義衛族親衛各陵守護軍則同居族親中二人各司苦役○正軍戶首匠人則同居族親中一人毋定他役

故闕者之保移給無保戶首違者守令論罷

成籍原

京外軍丁每六年成籍京則五部外則各其節制使

成籍送本曹歲之觀察使道主鎮巨

鎮諸鎮亦歲一件

本曹摠數啓

聞○每三年各牧場牧子則兵馬節度使諸邑吏驛

吏則觀察使成籍並各歲之

青坡蘆原兩驛

續軍士

有頃歲抄代定成籍考還都合一年充定之數節度

留聚協守本府

給保原京外軍士給保有差二丁為一保甲士給二保長番宦官同○兩界

甲士則加一丁騎正兵吹螺赤大平蕭水軍並一保

一丁出入番宦官騎雜色軍留京濟州子弟同步正

兵壯勇衛破敵衛隊卒彭排破陣軍漕卒烽燧軍差

簡軍並一保漁夫步雜色軍濟州騎步正兵水軍同

○奴子淳保者減半給保保人取才中格者許屬軍士

○軍士及漕卒同居子婿弟雖過保數二丁毋定他

役水軍若三人同居者則一人不入保數別給一丁

○濫收保人雜物者過梅朔違法役使者并切

隣以軍令論當身降為保○司譯院典醫監觀象監

官員生徒惠民署官員筭員律員生徒道流生徒弓

人矢人畫員生徒諸員馬醫皂隸羅將醫生律生書

員日守牧子津夫冰夫進獻席匠則同居族親中一

人書吏樂生良人樂工水夫則二人院主則三人母

定他役○書吏樂生司僕諸員水夫無同居人則定

戶別續諸色人給保有差別騎兵烽燧軍每烽臺二

一人十五戶並給一保一丁二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六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五

有無薦並除赴防 **咸鏡道**土兵貢賦外勿定雜役專

委防戍 北道節度使營屬軍六百內鎮撫每一番三

二十定額毋 **邊將**侵漁剝割以致逃散者觀察使啓

聞拿處 入防軍士關防代身者論罪連防 一年內

關防四十日代身者充軍一年六十日關防七十日

代身者充軍二年九十日關防百日代身者充軍三

年不檢舉官吏二次重論三次守令罷黜色吏杖一

百流三千里正兵旅內有代替而不告旅帥論罪後

替一年連防代替及 **統水營**各鎮水軍分番入防 **增**

關東嶺隘加設防守 淮陽府使兼防守使伊川平康

守將令防守使統領有警急則領率東伍馬步軍防

守於信地平時則屬之鐵原防營每年鍊習於各其

信地 **義州馬步軍**雖屬兵營有警則勿為領付全數

時幻名起送身手不合者該道臣罷職守令先罷後
拿監色刑配補陞戶每邑只存一名其餘收納資裝

增兩營上番軍減保以旅需錢給代元軍每名一兩
馬軍每名二

兩 ○有廳軍停番收布一匹以錢代捧

留防原各道緊要諸鎮置留防兵以備不虞忠清道

旅庇仁藍浦泰安等鎮各二旅慶尚道主鎮四旅東
萊熊川等鎮各三旅寧海金海泗川延日等鎮各二

旅南海巨濟等鎮各一旅全羅道主鎮三旅沃溝茂
長扶安順天等鎮各二旅興陽珍島等鎮各一旅黃

海道康翎長洲等鎮各二旅黃州遂安豐川瓮津等
鎮各一旅江原道江陵三陟等鎮各一旅○兩界甲

士正兵並留防本道開**續**武科出身皆令赴防西

城府正兵並留本府巡綽

北邊邑年過六十者勿論親年八十者特除○限內
不即發即其地充軍○除防者納米兩班子

枝勿許除防○南漢城內出身除防○廣州江華東
萊出身若許納米則納于本鎮增兩班子枝外毋論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五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四

上保人及牙兵未上番收身米布

御營禁衛軍士上番者為正軍各給

資保一丁以備資裝又有保二丁官納米各十二斗各該營收儲以供上番軍料○訓鍊都監軍餉保納

米同上砲手保納布二匹○補保米六斗減六斗換作結作米保布減一匹○騎兵上番前

月二十五日各道觀察使定差員當番騎步價布一

體領納正軍為戶戶各有保人兩朔為一當番每當

每丁各二匹為資其未上番者戶保皆收布二匹自

本曹雇坊民代番○當番未及限者未收滿一同者

守令並營門決杖○當番代立者當身代身並限

一年邊遠充軍本曹吏若自受其債使人代立者不

州徒三年○每式年各邑陞戶砲手抄上若有冒占及

察使推考守令罷職監色定配○逢點分抄後十年

內逃△而不為現捉者使各該邑代定上送

人以上守令罷職十人以上以上守令罷職十人以上
 監色五人以上杖一百徒三年以上杖一百徒三年
 定守令三人以上姓罷職二人以上杖一百徒三年
 一百徒三年以上杖一百徒三年
 上守令監色杖八十三人以上杖一百徒三年
 上杖六十二人以上杖一百徒三年

番上原一應番上軍士京五部外兵馬節度使點閱

移文本曹本曹都摠府又點考諸員皂隸羅將同外軍士則虞候軍官中

準一人押來番上不續各道徵番關文各軍門將校傳

于巡營使巡營裨將直傳兵營○上番軍有廳旅帥

等牌外定色吏領付二名以上懸○當番在喪軍人

某年月日某親在喪小名開錄啓聞過百日後起送

立番百日畢後番限餘日只○各營軍士定番次輪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四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二

子外
勿定

名簿

原軍士名簿各其將逐日着押經印藏之

成二件每

番終分藏于本曹長番則每節季藏之
遺失增減則行首掌務治罪削仕

續訓局禁御

三軍門中軍將校軍兵摠數作為官案每四季朔啓

請付標

同守摠兩營龍虎營
補守禦廳出鎮

○軍簿脫漏加減移定

差錯者并從輕重論罪

歲抄脫漏十人以上資二人以下
職三人以上降資二人以下

杖八十監色一人以上杖三十一百徒三年草案付連梯
脫漏連梯付草案脫漏三十一百徒三年草案付連梯

杖一百二人以下守令杖六十監色杖八十○加年
二十人減年二十五人以上守令罷職監色杖一百

徒三年加年十人減年十五人以上守令降資監色
杖八十徒二年加年九人減年十四人以下守令杖

人雜類移定及漕水軍子枝移定陸軍及官屬二十
八十色吏杖一百○擅優移定十五人作散軍士保

察使兵使營將習操時色吏侵漁軍兵者
用一律巡兵使罷職該營將拿問定罪
○年凶停

操時各邑軍兵聚會官門輪回練習
限三日春秋兩
朔設行○號令

砲火藥以元會付會減○官門習操時軍兵出斂官
成貼守令徒年定配出物軍兵從重決棍○北道守

令五家軍點考不能嚴飭者拿處
聚點後即報有無頃於兵營守摠兩營輪操巡點並

停則亦自本
邑聚點論報
增新舊番軍兵點考賞試射時內外營

入直軍兵請出標信舉行○闕內外宿衛軍兵該營

習陣時毋得出用○訓局軍每哨各抄三人教習火

砲

屬衛原大閱時則雜色軍各品伴倘皆屬五衛○水

軍烽燧軍不在常徵續常出身子枝許屬忠順衛父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二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二

衛營則初十日二十日三十日御營廳則初一日十日二十日而新舊番交連月則御營廳以二十

八日先行○訓局禁營習操時出番宣傳官進參○禁衛營習障時入直禁軍一番則勿為出用○新舊

番合操外若值極寒盛暑則啓稟姑停○新舊番合操大將有故則都提調代行○雖非合操亦代行六

七月十一日○南漢城三營及左右部各以信地春二月頃稟

秋輪操後合為大操城外方各邑各鎮堡有城處春秋營輪回操鍊補水原陞營後三營輪操

度使巡歷時各邑束伍軍歲抄軍一體點閱試射有春秋長湍坡州及南陽水原分南北各二○兵馬節

無頃查啓闕點代點百名以上守令奪告身三等五十名以上削職二十名以上罷職十名以

上從重有故則營將代巡點閱試射等事依例為之而畿輔三鎮則邊將賞木

推考自本曹給下○各邑吏奴保人作隊每年一體點閱

試才論賞○屬邑軍兵私自點閱者參酌充軍○巡

上官各二員補各一員於郊外或訓練院點考兼司僕內

禁衛補忠義衛族親衛各品伴倘壯勇衛補忠義

今廢戎器節度使不定時處巡視諸鎮習陣習放○本

曹都摠府堂上官各一員於郊外不定時點閱番上

軍士騎馱馬闕點者借點者瘦弱者論罪○出直軍

士助番巡綽外三日內一日就訓練院習陣用磨兒或

射侯破敵衛彭排隊卒所管部將同本院堂下官點

試給別仕一中侯者每一矢加給仕一正者二闕到

者答一十續親臨閱武時宣傳官教鍊官一體參謁

○每月三次三軍門郊外習陣訓練都監則初九日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二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一

外毋得任意棍治○信符刻誌司名役各填墨以給而若佩無刻誌之符或仍佩舊符者互相借佩者當該下隸嚴治不飭官員論罪

教閱原每月初二日十六日習陣停親閱則本曹受

點諸將聚出直將士習陣郊外錄諸將能否啓聞歲

抄通考黜陟諸鎮則每月十六日各自習陣除

裏一日二日或至十餘日○每季月本曹都摠府堂

上官軍器寺提調各一員出郊外習放火炮擇壯勇

衛各二十外則諸鎮將習放水陸軍每十人各擇一

主將開具支用○二月九月二十日本曹都摠府堂

火藥之數啓聞

使左二隻藏于大內凡有發兵應機等事合符防奸

一依所受諭書舉行○大將牌體圓一面書左邊捕盜大將○木馬牌體圓一面書左邊捕盜大將

押傳令牌體直一面書左邊捕盜大將○衛將體圓一面書左邊捕盜大將

牌體圓一面書衛巡將牌體圓一面書巡將○木馬牌體圓一面書馬字烙印後面自

一馬至五馬用於司僕寺馱馬○通符體圓一面書

上又書年號月日○將臣密符命召雖待命之時遞

職奪符前毋敢任自納符○守禦使之往南漢摠戎

使之往鍊戎臺乃其本鎮密符勿為啓請仍佩往來

各營將臣以該營事出往城外當日○將臣差祭陵

回還則亦勿來納言送政院啓稟

所都提調兼察命召仍佩往來○佩通符者該大將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一

大典會通

卷之四

則即為傳授兼官

面看交代

增大妃殿慈旨

體銳一
面書慈

旨一面

御押 嬪宮內令

體方一面
御押書內

王世孫懿旨

體直
一面

書懿旨一面御押若值行幸有軍國重事未及稟達於行在所則先取東宮徽旨舉行或東宮隨駕則以

內旨舉行慈旨
以下隨時取稟

○問安標信

體圓上刻蓮葉一面書
問安烙印後面書某宮

用於各殿
宮問安

擲奸標信

體圓一面書摘奸後面
御押用於各處擲奸

○命召

體圓一面書命召某職傍書
年號月日一面御押中分

右一隻頒于三大臣左

右捕將三軍門大將兵曹判書兼兵曹判書左二隻

藏于大內若有機密重事昏夜命召則合符舉行○

密符

體圓一面書第幾
符一面御押中分

右一隻頒于觀察使統制使

守摠兩使

補守禦使今
為廣州留守

兩都

補四 畱守節度使防禦

八補四十八景慕宮四儲慶宮毓祥宮廷祐宮義烈
 宮懿昭廟各一典牲署豐儲倉貢物各一狗皮契貢
 物二補毓祥宮二十一義烈宮今宣禧宮二十一禧
 源殿六文禧廟一建禮堂二後苑二內東山六藏書
 閣農園各二明禮宮壽進宮龍洞宮於義宮各六十
 景祐宮二十一恩彥君房十五恩信君房三恩全君
 房八雲峴宮三十四安洞宮二十二宜嬪宮十九順
 和宮十五慶壽宮五寧嬪房三清衍郡主房清璿郡
 主房清瑾縣主房各二淑善翁主房明溫公主房各
 十五福溫公主房八德溫公主房十五朴貴人房趙
 貴人房方淑儀房各
 十七兩倉貢物二 ○舉動時駕後禁軍及駕前別

抄若有分付之事以標信信箭奉行○將臣藩臣帥

臣逋歸密符命召必親納政院或無職或有故者親

宰重推通政禁推○身帶將任者無論佩召佩符毋

得處城外受由下鄉者密符非有○守令兵符罷職

大典會通 卷之四 八十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九

減武兼廳守門將廳各六補守門將廳四敦寧府五
 增六補十漢城府京畿監營各五補漢城府四京畿
 監營八鷹師五增八部將廳四各衛軍士廳四增五
 補廢尚瑞院四通禮院四增六香室四增五忠勳府
 四增二補四別軍職廳四增七禁漏四增六補九紫
 門監四增三廣興倉軍資監典獄署局別將廳各三
 補廣興倉軍資監各二左右巡廳各三增合三司憲
 府司諫院各二掌諫院二增減儀賓府二增七訓鍊
 都監禁衛營御營廳尾署平市署典醫監忠義衛忠
 壯衛忠翊衛廳各二軍職廳二增四訓鍊院排設房
 各二扈衛廳三廳各二增一廳六補四宗廟署社稷
 署永禧殿講學廳景福宮各一昌慶宮一增減二
 慶熙宮一昭顯廟洗心宮者老所各一增並減義禁
 府一補減宣惠廳一增五補四校書館觀象監軍器
 寺掌樂院成均館各一四學一增減司譯院宗簿寺
 造紙署各一補宗簿寺減惠民署一增二禮賓寺五
 部各一典涓司一增減司贍寺一守禦廳摠戎廳各
 一增各二補守禦廳減左右捕盜廳禁軍別將廳能
 麼兒廳習讀廳各一儀仗庫一增三內農圃一增二
 補八生鮮貢物五補八其人貢物四增奎章閣五十

入信符一百七十五 **增** 四百六十五 漢符二百三十
 五 **增** 五百六十五 各殿差備四十七 **增** 八十二 **補** 七
 十三 各色掌八 **增** 十一 **補** 八 各殿照羅赤十五 **增** 二
 十四 **補** 十九 各色房直二十六 **增** 三十 **補** 三十四 供
 上進排各司司宰監五司圍署四 **增** 六 掌苑署四 **增**
 三 義盈庫三 **增** 四 長興庫三 **增** 八 內資寺內贍寺各
 二 **增** 各五 司導寺二 奉常寺二 **增** 四 濟用監二 繕工
 監一 **增** 四 內冰庫東冰庫西冰庫各一 **補** 西冰庫二
 內冰庫減闕內出入各司差備本曹六十八 **增** 八 十
 四 **補** 八十五 承政院四十四 **增** 七十二 **補** 十七 司僕
 寺三十二 **增** 九十 **補** 八十八 內需司二十一 **增** 四十
 四 **補** 九十 各衛將廳十七 侍講院十六 **增** 三十二 典
 設司十六 **增** 十二 **補** 十 承文院十五 弘文館十五 **增**
 二十 七 **補** 八 都摠府十五 **增** 二十一 吏曹十四 朔衛
 司十四 **增** 二十四 司饗院十四 **增** 二十三 **補** 二十九
 內醫院十三 **增** 十九 中樞府十三 **增** 十四 宣傳官廳
 十三 **增** 減尚衣院十二 **增** 十九 **補** 二十四 議政府十
 一 **增** 二十二 **補** 十九 宗親府十一 藝文館十 內侍府
 十 **增** 七 內三廳八 **補** 七 戶曹七 **增** 六 工曹七 **增** 五 **補**
 七 禮曹六 刑曹六 **增** 五 **補** 四 備邊司六 **增** 二十四 **補**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九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八

修聞○若應變捕盜及惡獸害人畜諸邑常廣設檻

則不待符先發後聞使臣迎送亦不待符赴如畋獵

守護漕船藏冰營繕等事本曹受教行移後發兵○

凡于軍國緊急事用宣傳標信體圓一面書宣傳一

用行在時王妃王世子並留宮則王世子用徽旨標

信體直一面書徽王妃留宮則用內旨標信體銳一

旨一面○入闕門用信符體方圓曲直銳逐年而改

紗帽角帶者不佩續信漢符每歲首入直堂上官依常定數

親監烙印內入外頒信符長二寸九分廣二寸五分

寸三分圓則徑四寸三分直則長四寸五分廣四寸三分○後面軍士則屬處官屬人則司名并刻○內

今為廣州雷守左符藏於大內若徵兵則降左符及教書合

驗然後應徵○觀察使節度使亦各受諸鎮左符承

教書則送左符于諸鎮發兵○習陣時大閱講武巡幸等應徵處

停習不待符而徵兵○諸鎮將出使則常佩符若因

公務出使二日程或在喪或在告告休或身死則判

官若口傳軍官傳受詣巨鎮交付無判官巨鎮將受

之報節度使交付節度使有故則付虞候虞候有故

事○巨鎮將有故則判節度使具由啓聞還付諸鎮

將後亦啓聞○節度使有故則虞候傳受藏之啓聞

虞候有故則附近守令口傳軍官藏之還受後亦自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八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七

標信出入若大駕出門則不考

吹螺增

今吹天鵝聲以代鑿鐘只

警急時用

百官各於朝房來會各營軍兵隨信地扈衛

大將率中軍以下旗鼓敦化門把守步軍自金虎門南邊至東營西邊馬兵把子橋前路結陣禁衛大將

率中軍以下旗鼓金虎門把守步軍自金虎門北邊至廣智營西邊騎士自曜金門至拱北門結陣御營

大將率中軍以下旗鼓弘化門把守步軍自東營北邊至廣智營東邊騎士館峴結陣守禦使率中軍以

下旗鼓備邊司西門外結陣總戎使率中軍以下旗

鼓禁衛營東門外結陣扈衛別將率軍官自金虎門北邊至拱北門外結陣龍虎將率禁旅駕後敦寧府

前路結陣駕前別抄宣仁門外結陣

符信原

發兵符

體圓一面書發兵一面書某道觀

右

符頒于觀察使節度使及諸鎮

增

四都留守○守禦使○守禦使

出鎮後廢

若上御勤政殿及諸門則隨其所御聚會其庭五衛

立於光化門前路乃至鐘樓興仁之門義興衛左部立於光化門

前後部次立中部次立前部次立右部次立龍驤衛虎賁衛忠佐衛忠武衛以次立而部次同上衛

將以下受命往領百官留本司一員外宗廟社稷官員皆守本司

客館員人不離其館着甲冑備戎器各會朝房待命宗親府議政府儀賓

府堂上官闕內諸司及都城外諸司各於本司待命

未及出門者會於朝房未及入門者會於門外侍臣會于建春迎秋門外待

命出直本曹都摠府衛將部將宣傳官司僕內禁衛

及訓練院軍器寺留本司員外會于光化門前待命

軍器寺則二員待命餘員守本司及直宿所○宮城四門及都城諸門考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七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六

疊鼓原

大內疊擊大鼓則各門把直外入直諸衛聚

會勤政殿庭各占其方而列本曹立於東閣門之外

都摠府次之上大護軍護軍次之內禁衛立於西閣

門之外

間門思政殿南門左右挾門

司僕立於其前

嚴鼓

增嚴鼓今用

以代

初嚴百官就外位侍衛將士列立信地甲士把

守各門

正門訓局甲士十二人左挾門禁衛甲士十人右挾門御營甲士十二人先範門崇範

門訓局甲士各八人

二嚴百官入殿庭就位

東班就左西班就右

三嚴大

駕御正殿侍衛依班次圖○動駕時初嚴隨駕軍兵

聚待信地二嚴結陣三嚴行陣

疊鐘原

疊擊大鐘即大

則入直諸衛聚會如疊鼓例

限外加入者官員重推跟隨人以闌入例治禮別抄

依駕後禁軍例以五十定額動駕時城內則挾輦侍

衛郊外則與駕後禁軍分前後侍衛○馬兵中抄選

一哨作為攔後別隊以其將領分前後領率侍衛○

兼內吹與元內吹動駕殿座一體侍衛用黃內吹黑內吹舊例

○槍劍軍全屬禁衛營依訓局例把總哨官各一員

分領侍衛○文臣兼宣傳官雖有實職以侍衛進參

○將臣毋敢以令箭指揮闕內軍兵○動駕時路上

無標信勿許出入衛內該房承旨本曹判書及內閣諸臣牙牌前導者勿禁道中

行幕及下輦時只承史許入駐輦時待標信許入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六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五

待信箭標信俱到請出慈旨符驗許開

侍衛原凡大閱講武巡幸打圍及親行祭祀應行條

件本曹受旨行移王世子舉動時應其親行祭祀形

名止於壇外廟陵則止門外若大小朝賀宴享衛將各率其

軍庭列本曹都摠府以下職帶軍務者及司僕侍御

側內禁衛別侍衛列階上○常參只令入直將士侍

衛先入庭各占其方入東所**續**仁政殿親臨時別軍

職立於殿外親臨陳賀時親臨受誓戒時○山陵展

謁及郊外經宿動駕時挾輦砲手二百人衛從日傘

令京畿驛卒奉持○行幸時闕內侍衛跟隨定

輦砲手名數臨時稟旨

於行在郊外動駕時則闕門城門開閉俱請慈旨內

旨徽旨中舉行而東宮不為隨駕則直請徽旨增闕

門仍留時政院啟請標信未下前只閉勿鎖雖有下

教毋得出入待標信下始許出入○動駕時開門祇

受標信後啟請徽旨宣傳官持標信到闕門外兵曹

政院則留院承旨啟請徽旨陵幸時○都城門留門

守宮大將亦令從事官門隙祇受

用宣傳標信四大門則宣傳官賚宣傳標信禁軍賚

標信先以開門標信闕門後賚宣傳標信及符驗

者借到城門啟鑰間門則但用開門標信仍留則以

宣傳標信舉行○宣傳官持標信留待眼同部將還

閉後復命祈晴祭時開○經宿陵幸時城門留門必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五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四

舖 郊外動駕時行在所啓
下經宿時則預為啓下

增 各司有單官處許令假

官交替省記一朔無過二十日

門開閉原 宮城門初昏閉平明開都城門人定閉罷

漏開 宮城門則注書與都總府堂下官傳司鑰開閉受納鑰匙於承旨都城門則護軍五員開閉

通代時受納於本曹○行在 及期啓達事至則護軍

若五員從門隙而受急詣闕門啓○非時開都城門

大內降開門左符體圓一符一面圖篆書信符一面印篆

代時受納於本曹 宮城門用標信開閉開門標信體方一面

門標信同但一面書開門 **續** 城內動駕時闕門開閉緊急時通用於都城門

請慈旨內旨徽旨中舉行城門開閉則循例請標信

步兵把守興仁崇禮敦義東小門則差護軍其餘門則差五員領之五員非軍士而司直以下之稱每大

守所直宿人本曹入直堂上官初昏并軍號署名封

進闕內入直諸將宣傳官兼司僕上大護軍○行在護軍各司官員及巡將巡官外並錄摠數

時則畱都本曹堂上官封進承政院還宮後啓達○

行在內陣軍士則都摠管外陣軍士則大將各署名

封進○行軍下營後軍士到未到捍後無事與否大

將啓達續時御慶熙宮時春塘臺設科則試官人員

別省記○月食時救食所別省記○凡省記郊外動

駕時啓于慈殿或內殿東宮不為隨駕則達于東宮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四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三

人皆受軍號闕內人及墻外人遇他軍人信地輒相
 應循環不已至罷漏而止城內外行巡牌將軍士或
 相遇問軍號不通者則以犯夜人捕治墻外三營北
 營及新營東營入直中以元巡邏外將官每夜罷漏
 後發遣限天明審察各該營字內宮城○掖隸之不
 着紅衣犯夜禁者直為棍治補金虎門弘化門入直
 軍各六名銅龍門入直軍二名自罷漏至天明各其
 字內輪回巡察

啓省記

原

凡宿衛行巡人

諸將各具入直將士之數報本曹

各門把

守人

宮城門本曹差正兵甲士分屬諸所把守又差隊卒十人守光化門宗廟門都城門則以出直

都城內外逐夜行巡訓練都監禁衛營御營廳三軍

門分日輪回

訓鍊都監則初日禁衛營則終日

定牌將

訓鍊都監

則九員禁衛營則七員御營廳則九員

軍士

訓鍊都監則九十人禁衛

營則九十四人御營廳則七十七人

訓鍊都監則八十三人禁衛營則八十四人御營廳則六十七人

都城內外夜巡又各軍門以其外營入直將校一員

率入直軍士宮城外分夏夜巡

訓鍊都監則初夏三夏四夏禁衛營則二

夏御營廳則五夏四夏五夏御營廳

又各軍門各定將校一員率入

直軍士五人宮墻外逐夜行巡皆自日晡限天明

別 造給牌犯禁夜行人捕付鄰近警守所翌日各其營決

棍治罪

初夏棍十度二夏二十度三夏三度四夏二十度五夏十度分等

○凡行巡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三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二

巡則都總管以下諸將中本曹啓聞受點率軍士五人無時行巡後巡將直啓外陣行巡及別巡則大將定衛將若部將率軍士十人行巡續都總府郎官二員本曹內入直郎官無時夜巡啓稟乃行間間晝巡檢外直郎官受軍號率入番所屬無時夜巡○軍號

入直堂上官親書封押每日申時使郎官親呈政院

本曹無行公堂上則摠府首堂上舉行如例摠府俱空則兵房承旨舉行○私傳軍號於同伍軍士者本

曹決 郊外動駕時東宮不為隨駕則達于東宮東宮

若隨駕則排日預為啓下置本曹補郊外動駕時行

則預為啓下 ○兩捕盜廳各定牌將八員軍士六十四人

曹若詐稱犯禁或受贈故放者以軍令論○建通宵

旗於巡廳則雖無標信終夜無禁廢○都城內外

行巡軍士巡將初昏照名點考罷漏後又點考罷遣

○有失火者巡官奔救察盜賊○軍士闕到各夏無

事與否巡將報本曹啓達○本曹刑曹義禁府漢城

府修城禁火司五部直宿員受通行標信體圓一面

面篆烙通行○夜于承政院還納軍號于本曹各

率其司衙前使令無時行巡行在時同標信今為

廢巡今○行在時則留都三大將各出軍士三十人送

本曹本曹分所差定又差巡將巡官○行在內陣行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二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一

守所及各門次次傳授循環不已至罷漏而止巡官

領各運每夏循宮城就四面警守所及各門收夏籤

至明納本曹諸處警守所巡將差巡官出其不意收籤納曹巡將亦無時親

到考驗○二夏後五夏前大小員人毋得出行若因

急速公務疾病死喪生產等不得已之事而行者親

告巡官若警守所將大小員人遇巡將巡官皆下馬巡

下巡官若警守所使人持夏籤押去保授所至之家

巡官則用旁近翌日告本曹覈實巡官及警守所捕

無故行者付隣近警守所以次遞授囚於巡廳三品以下

直囚堂上官及司憲府司諫院官員則囚翌日報本

跟隨都城外則囚於警守所曉告巡將

軍士忠義衛忠賢衛忠順衛族親分二所差定行巡

又受點巡將及監軍巡將則以中樞府知事以下僉

上官望差各運領官則以上大護軍護軍差之不足

則以別侍衛六品以上差之○監軍則以宣傳官本

曹都總府堂出入番將詣闕肅拜納牌受牌於大內

各運領官所受牌行在時則受納於承政院○本曹

巡將都受分授差定宮城四門外直宿各上大護軍護軍中一人

則以行職正兵五人都城內外諸警守所步兵二人

人差之持弓劔杖等受夏籤直宿唯老疾寡婦無侍養者免

直○籤削木為之書某警守籤○山谷警守所則正

兵五號同軍號人定後令正兵二人搖鐸巡宮城四面警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一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

擲奸原

凡人直將士本曹及都摠府擲奸并點戎器

夜則先啓乃行

續

空闕宮城守直部將循環擲奸逐日有無

事報本曹

犯夜人杖一百徒三年

一 ○每年春秋本曹堂上官與

工曹漢城府堂上官郎官宮城都城巡審擲奸後有

頃處啓聞

都城則分授軍門修改

曹

都城城堞三軍

門大將春秋看審每朔定將校擲奸 ○宮城修築依

都城例三軍門分掌 ○景慕宮宮牆本曹判書與本

宮提調春秋巡審

軍門舉行 ○含春苑同

行巡原

闕內則衛將若部將率軍士十人以分更行

巡後無事與否直啓 ○都城內外行巡本曹以出直

大將啓差從事官一員文臣侍從巡察宮牆內又大臣一

員時原任中三軍門大將一員留都大臣則領率扈守摠

兩營輪回留陣於弘化門外守禦廳出鎮○闕內

舉動經宿時入直本曹摠府堂郎宣傳官武兼各一

員勿為隨駕仍直本所○宗廟社稷永禋殿景慕宮

守直軍永罷雇軍以鄉軍擇定不謹定送則分軍衛

將施以重律不察本署官同罪○本曹摠府入直人員勿論

移職被罪毋得徑出曠直面看交代違法者以軍法

從事補禁軍將守門將各營將官入直不為受點循

次啓下

大典會通

卷之四

七十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九

摠二員

摠減一員

哨官一員

受點率砲手二百人加一員率二百四十人

禁衛

營哨官一員

受點率軍士一百十四人摠減一員

局別將

一員

受點率局出

分直各所

○凡宿衛守衛人

闕內諸處

及城門必以禁御兩營及禁軍廳元軍分把各處把定軍以坊民雇立

在直而逃者杖

一百

哨官以上各加一年

○城門守直有闕者論罪

禁軍

兩人俱闕則杖六十徒一年一人闕則杖八十受符驗護軍闕夜直者與兩人並闕之罪同

摠壯

勇衛十二人入直于明政殿西月廊銅龍門內入直

軍兵中除出五名使壯勇衛二人領率勿論晝夜把

守建陽門

補壯勇衛入直明政殿月廊今廢訓局別武士二人除出建陽軍十名入直建陽門

○城外經宿動駕時本曹啓差守宮大將直宿闕內

則雷都三大將分屯三處日日換處小事先行後啓

用刑依行在時例同本曹續五衛將四員部將四員分

直東西南北四所東所衛將率忠義衛三四人或五

贊衛二人亦隨直續忠義衛五人忠順衛忠贊衛各一人○本曹堂上官郎官各

一員都摠府堂上官郎官各二員直中所本曹近仗

直補加五人○宣傳官四員武兼六員直大內近側吹螺

九人或十人隨直續十二人○禁軍將一員受點率禁軍百

扈衛別將一員率軍官三十人忠壯將一員率衛三人忠翊將一

員率衛六七人或十人續四一人別軍職三員各直本所續減○守

門將九員受點分直各門移御時則隨○訓練都監把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九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八

官中軍外考講殿最

宣傳官則本曹判書受各操笏記講為等第南行部將則受班

次圖講為等第○內外入直將官以入直懸頃不參

○京外職三十朔窠兩次

居中人依吏曹例罷職

津限後草記蕩滌

入直原凡將士直宿者三日而遞

本曹日遞

○五衛各一

部入直前夕本曹分所分受取旨

衛將受點分領兼司僕將內禁衛將

守門將亦受點時品淵以望差

移關都摠府以次移文

○本曹堂上

官一員都摠府堂上官二員直中所各設衙門

諸衛直所

外別置中所司僕內禁衛亦各直中所之側

衛分三番禁內上大護軍護軍翻五入直護軍廳 遞直

日諸將肅拜受牌納牌於大內

本曹都摠府恒受擲奸牌

○宣傳

官二人以形名直大內近側

吹螺赤二人亦隨入直

○行在時

司憲府司諫院檢覈滿二朔不納前受告身者收其

告身并徵其祿彭排隊卒徵月俸○凡無祿者司憲府司諫院檢覈後成給○兩界軍士

告身送于其道觀察使考前受告身分給受祿後滿二百日不納前受告身于司諫院者亦收告身徵祿

續凡軍士告身定限受出諸道限一年兩界限三年過限者勿用

○軍士及雜職人員加資下批未出告身以前資薦

狀者出告身考準後依其資授應授階

褒貶原外官節度使等第啓聞守令外陸鎮將旅帥隊正士官西班則兵

馬節度使水鎮將則水軍節度使並與觀察使同議虞候評事則各其節度使等第濟州三邑則節制使

等第報主鎮**續**節度使邊將褒貶無下考者承政院察推

江原道邊將只有一人雖無居下者勿推增各營將○中下考未開拆前以將領陞資者還收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八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七

備官求勿除職

增科場用奸者邊遠充軍用情差備官嚴刑三次後限己身絕島水軍充

定監的所尺量書吏嚴刑三次絕島限己身為奴

○時任邊將之應赴殿試

者通赴

軍兵賞格直赴會試者許赴無講經科

○凡舉子停舉訓練院

參外時任三員會議明書罪目移送入門所

如有因私嫌構

罪者以誣入律論

增

初試雖不滿額只從入格數出榜

○殿

試直赴人無分者依文科例退付後殿試補殿試狀

元以原榜中取○直赴殿試無緣過三式年者勿施

作故人付之榜末成給紅牌

告身

原軍士五品以下受遞兒職者即成告身各其

入直日本曹入直堂上官考前受告身分給受祿後

鎮

武科原武科依文科例除授分差別侍衛及訓練院

權知續舉子保舉主皆以有職人懸錄違者諸賤人

不許冒赴羅將漕卒日守公私賤冒赴並水軍充定

補充隊公文則內侍赴舉者以冒入科場論試官

科場用奸者從輕重論罪濫入者水軍充定保舉主

疊單者名不入於戶籍而循情虛錄者兩所疊單者

舉子錄名官並以科場用情律論兄弟各字者用制

書有違律兄弟各所者保舉偽著者用詐不以實律

○舉子試砲一放兩丸者徒三年定配○變名再射

者依借射代射律論○借射代射未成者用奸未成

律○賊科者絕島為奴○紅牌買賣者與受並用賊

科律○咸鏡道科場犯律應重者舉子亦勿赴舉差

定水軍者其道內極邊充軍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七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六

倉津助泥浦各一隻別小船一隻山登追捕船二千三隻主鎮十隻

金沙寺五隻倉津許沙浦各二隻
海州豐川長洲助泥浦各一隻

永安道原中猛船二隻道安浦○小猛船十二隻
浪城浦八隻造山浦道安浦各二隻○

無軍小猛船九隻浪城浦道
安浦各四隻造山浦一隻

平安道原大猛船四隻廣梁二隻老江宣沙浦各
一隻○中猛船十五隻廣梁宣沙浦老

江各五隻○小猛船四隻老江二隻廣梁宣沙浦
各一隻○無軍大猛船一隻無軍中猛船三隻並

老江○無軍小猛船十六隻宣續防船六隻宣沙
沙浦七隻廣梁五隻老江四隻

梁鎮各二隻宣川兵船五隻廣梁鎮二隻宣川老
老江鎮各一隻江鎮宣沙浦各一隻

伺候船十二隻宣沙浦六隻宣川三隻彌船船
串鎮二隻老江鎮一隻

一隻彌串汲水船四隻廣梁鎮三隻挾船一隻彌串

黃海道原

天猛船七隻 所江龍媒茄乙浦吾義浦
阿郎浦許沙浦廣巖梁各一隻○中猛

解十二隻

所江龍媒茄乙浦吾義浦廣巖梁各二
隻阿郎浦許沙浦各一隻○小猛船十隻所江茄

乙浦五隻

所江龍媒廣巖梁各二隻○無軍小猛
阿郎浦許沙浦各二隻○

船七隻

所江龍媒廣巖梁各二隻 茄乙浦吾義浦
阿郎浦許沙浦各一隻

阿郎浦許沙浦各一隻

續戰船二隻 主鎮一隻 白防船三十
續戰船二隻 主鎮一隻 白防船三十

六隻

主鎮三隻 海州豐川許沙浦吾義浦登山龍
煤梁各二隻 安岳白川延安長連長淵殷栗

康翎白翎鎮板島倉
津助泥浦各一隻

兵船九隻

主鎮一隻 白翎鎮
板島各二隻 龍媒

梁登山許沙浦
吾義浦各一隻

伺候船五隻

板島四隻 助
泥浦一隻

一隻

主鎮五隻 白翎鎮四隻
鎮船船二十一隻 主鎮五隻 白翎鎮四隻

三隻 龍媒梁二隻
康翎一隻

汲水船六隻

倉津二隻 海州豐川
長淵金沙寺各一隻

挾船十七隻

主鎮二隻 長淵豐川海州各二隻
安白川安岳長連殷栗龍媒梁板島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六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五

里浦各一隻

兵船五十一隻

左道主鎮五隻右道主鎮四隻羅州蛇渡鎮防踏加

里浦各二隻順天樂安光陽興陽寶城長興珍島咸平海南務安靈巖靈光臨淄島鉢浦南桃浦鹿

島馬島金甲島法聖浦羣山浦呂島會寧浦於蘭浦木浦古突山多慶浦黔毛浦古羣山蛸島古今

島薪智島智島荏子島梨津各一隻

龜船三隻

左右道主鎮加

海龍

船一隻

右道主鎮

伺候船一百一隻

左道主鎮十一隻右道主鎮八隻蛇

渡鎮防踏加里浦各四隻靈光珍島咸平海南務安羅州靈巖順天樂安光陽興陽寶城長興於蘭

浦金甲島馬島南桃浦黔毛浦羣山浦臨淄島木浦多慶浦法聖浦鉢浦會寧浦呂島鹿島古突山

古羣山梨津蛸島古今島薪智島智島荏子島各二隻

江原道原

小猛船十四隻

三陟浦四隻蔚珍浦高城浦各三隻越松浦安仁浦各二隻

無軍小猛船

蔚珍浦

猛船四十三隻左道主鎮六隻右道主鎮蛇渡四

隻臨淄島鉢浦南桃浦各三隻突山浦鹿島馬島

達梁金甲島法聖浦羣山浦各二隻呂島會寧浦

於蘭浦木浦多慶浦黔毛浦各三隻○小猛船三

十三隻右道主鎮臨淄島呂島會寧浦於蘭浦蛇

渡黔毛浦各二隻南桃浦四隻鉢浦鹿島各三隻

左道主鎮突山浦馬島達梁金甲島木浦多慶浦

法聖浦羣山浦各一隻○無軍小猛船八十六隻

右道主鎮九隻於蘭浦金甲島蛇渡八隻左道主

鎮七隻鉢浦會寧浦馬島南桃浦黔毛浦羣山浦

各四隻臨淄島突山浦呂島鹿島達梁續戰船四

木浦各三隻多慶浦法聖浦各二隻

十七隻左右道主鎮各三隻羅州蛇渡鎮防踏各

長興珍島咸平海南務安臨淄島呂島鉢浦鹿島

會寧浦馬島於蘭浦金甲島南桃浦木浦多慶浦

法聖浦黔毛浦羣山浦古突山梨津加里浦古防

羣山蝟島智島薪智島古今島荏子島各一隻

船十一隻右道主鎮臨淄島於蘭浦黔毛浦南桃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五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四

浦助羅浦蛇梁西生浦包伊浦彌助項鎮天城浦
龜山浦加背梁所非浦栗浦尚州浦曲浦舊所非

浦南村豐德浦新門晴川長木浦甘浦開
雲浦漆浦丑山浦西平浦三千浦各一隻
龍船九

隻 右道主鎮統營三隻左道主鎮一隻巨
濟晉州加德鎮釜山浦多大浦各一隻
徇候船

一百四十三隻 右道主鎮統營二十一隻左道主
鎮十二隻巨濟晉州加德鎮釜山

浦多大浦各四隻昌原熊川泗川昆陽鎮海南海
固城河東金海蔚山機張甘浦丑山浦包伊浦知

世浦驚浦西生浦漆浦玉浦蛇梁豆毛浦安骨浦
永登浦助羅浦唐浦赤梁平山浦彌助項鎮天城

浦龜山浦加背梁所非浦栗浦三千浦尚州浦舊
所非浦曲浦南村豐德浦新門晴川長木浦開雲

浦西平浦蟾 援船二隻 右道
津各二隻 主鎮

全羅道 原 天猛船二十二隻 右道主鎮三隻左道
主鎮二隻臨淄島突山浦呂島鉢浦鹿

島會寧浦馬島達梁於蘭浦金山甲島南桃浦蛇渡
木浦多慶浦法聖浦黔毛浦羣山浦各一隻

濟浦各五隻海雲浦西生浦漆浦烏浦玉浦蛇梁
各四隻豆毛浦安骨浦永登浦助羅浦唐浦赤梁

平山浦各三隻○**無軍小猛船七十五隻**左道主
鎮鹽浦各二隻右道主鎮十隻永登浦玉浦赤梁

平山浦各六隻齊浦知世浦唐浦蛇梁各五隻安
骨浦四隻助羅浦三隻多大浦釜山浦海雲浦豆

毛浦西生浦甘浦包伊浦**續戰船五十五隻**左道主
漆浦烏浦丑山浦各一隻

鎮各三隻晉州昌原金海河東巨濟熊川泗川昆
陽鎮海南海固城蔚山機張多大浦釜山浦豆毛

浦西生浦安骨浦齊浦永登浦玉浦知世浦助羅
浦唐浦蛇梁平山浦赤梁加德鎮彌助項鎮天城

浦龜山浦加背梁所非浦栗浦三千浦尚州浦曲
浦舊所非浦南村豐德浦新門晴川長木浦甘浦

開雲浦包伊浦漆浦丑**防船二隻**兵船六十六
山浦西平浦各一隻

隻左道主鎮五隻右道主鎮統營七隻釜山浦多
大浦加德鎮晉州巨濟各二隻昌原熊川泗川

昆陽鎮海南海固城河東金海蔚山機張齊浦玉
浦知世浦唐浦豆毛浦永登浦赤梁平山浦安骨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四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三

主鎮一雙平薪鎮舒川浦韓山林川各二隻安興
鎮洪州瑞山海美結城沔川保寧藍浦庇仁唐津

所斤浦馬梁 **兵船二十隻** 主鎮二隻洪州泰安瑞
鎮各一隻

庇仁舒川韓山林川沔川唐津所斤浦 **龜船一隻**
馬梁鎮安興鎮平薪鎮舒川浦各一隻

主 **伺候船四十一隻** 主鎮七隻洪州瑞山安興鎮
鎮所斤馬梁鎮各三隻泰安舒

川韓山林川平薪鎮舒川浦各二隻唐津
海美結城沔川保寧藍浦庇仁各一隻

慶尚道原 大浦釜山浦海雲浦豆毛浦西生浦鹽
浦安骨浦薺浦永登浦玉浦知世浦助羅浦唐浦

蛇梁赤梁平山浦各一隻 **中猛船六十六隻** 左
道主鎮七隻右道主鎮十一隻釜山浦豆毛浦永登浦

鹽浦知世浦唐浦各四隻釜山浦豆毛浦永登浦
赤梁平山浦各三隻大浦安骨浦助羅浦蛇梁

各二隻海雲浦西生浦包伊浦各一隻 **小猛船**
各六隻右道主鎮八隻知世浦甘浦包伊浦丑山浦

一百五隻 左道主鎮多浦甘浦包伊浦丑山浦
各六隻右道主鎮八隻知世浦甘浦包伊浦丑山浦

船十隻
主鎮一 隻長峯島三 隻永宗鎮德
兵船十

隻
主鎮四 隻永宗鎮德積鎮各
龜船一隻 主鎮○

亂時制 伺候船十六隻
主鎮八 隻德浦鎮三 隻注

積鎮各 一艘船三隻
永宗鎮注 文島

主鎮三 隻永宗鎮注 文島各
二隻花梁長峯島各 一隻

忠清道
原 浦各二 隻波知島馬梁舒川浦各 一隻

浦馬梁各六 隻舒川浦四 隻波知島三 隻○

船二十四隻 主鎮十 隻馬梁四 隻所斤浦波知島

唐津浦各三 隻舒川浦一 隻○
無軍小猛船四十

川主鎮五 隻唐津浦四 隻波知島三 隻
續戰船九 隻

主鎮二 隻洪州泰安瑞山安興鎮
防船二十一 隻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三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二

下**正兵鍊才** 一 等別仕五十二
吹螺赤太平蕭鍊

才 諸鎮軍中擇能吹者常令鍊習 ○ **水軍鍊才** 一
等別仕一十二等七三等四

別仕三十二等
二十三等一十

諸道兵船原 大猛船每一隻水軍八十人小猛船每一隻水軍
三十一人並下同續原典大中小猛諸船之名變為

今戰防兵等諸船而名目既改且多牾廢移易故

○咸鏡江原道諸船並減

京畿原 大猛船十六隻主鎮六隻永宗浦一隻月
串三隻草芝梁濟物梁井浦各二隻 ○ 中

猛船二十隻主鎮七隻月串六隻井浦三隻永宗
浦二隻草芝梁濟物梁各一隻 ○ 小猛船十四隻

主鎮四隻草芝梁三隻永宗浦月串井浦各二隻
濟物梁一隻 ○ 無軍小猛船七隻井浦二隻主鎮

永宗浦草芝梁濟續戰船四隻主鎮二隻注文防
物梁月串各一隻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二

十五又次中者三十五又次中者四十○中虎先中箭槍者別仕四

槍者別仕三十次中者二十五又次中者十五又次中者二十○

豹先中箭槍者別仕二十次中者十五又次中者十五又次中者

十○或檻機或射槍自捕者各依次中箭槍例從願給仕或布所捕虎豹並給鄉吏一年自捕五口

者免身役續見原典而計箭數給仕之法今廢○連頭骨五頭以上者加資凡民同守令邊將勿論

○三四頭以活人凡民同○各營軍官拯活事狀下米布量給

非明白者都試一等加階階窮者及願受仕者並毋得上聞給仕外則只給仕減半二等三等

同○一等別仕一百內禁衛鍊才凡應罷者許再二等八十三等五十

削仕還屬○赴防者不必鍊才他軍士同○十六矢別仕一十每加一矢加五十四矢削一十每減

一矢削五十別待衛鍊才七矢別仕七每加一矢以下罷

甲士鍊才

別待衛鍊才

內禁衛鍊才

六矢別仕六每加一矢以下罷

七矢別仕七每加一矢以下罷

四矢削六三矢削九二矢加三

凡應罷者許再

減半二等三等

各營軍官拯活事狀

凡民同守令邊將勿論

一年自捕五口

依次中箭槍例從

願給仕或布所捕虎豹並給鄉吏一年自捕五口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一

磨鍊報節度使節度使磨勘
每都目前朔初十日內啓聞

入直

一元仕

行巡

一元仕

侍衛

一別仕

習陣

一別仕

習射

直入

○別仕中
候一正二

赴防

一別仕

赴役

二別仕

捕盜

別仕一
外則加一
○都

私捕竊盜及殺牛馬者一人一十每加一人加一
至五十而止強盜一人五十每加一人加一
百而止告者給捕者三分之二告捕者雖多都給

續見原典而計入數給仕之法今廢○正法賊五
名同時捉得者指示捕捉各一人
加資非本土人則勿許○凡民同人

越境迎送

二別仕

越境斥候

四別仕

虎

守令一年捕十口以上加階○捕五口皆先中
箭槍者超二階鄉驛吏賤人給綿布六十匹此

下每等各減二匹
一階一二口先中三四口次中者加階
階窮者津

職○大虎先中箭槍者別仕五十
綿布六匹此下每等各減半匹○次中者別仕四

給

禁衛營軍士續番次
宿衛騎士十五番逐朔相遶
步軍二十五番兩朔相遶農

月四朔則逐朔相遶
曾農月亦兩朔相遶
都目 兩正月
遶兒 從六品一

軍步

御營軍士續番次
宿衛騎士十五番逐朔相遶
步軍二十五番兩朔相遶

騎兵續番次
八番兩朔相遶
二番減

軍士給仕原
每一日○仕他衙門者當入直日則一
出直日則每二日一事歇處三日一非

軍士者亦同○行香傳香員入事後觀察使開
具日月移文本曹本曹計程途給仕過限者依無
故不仕例論○凡別仕置簿所領將着押經印藏
之○非長番軍士則成二件番終二日內分藏于
本曹○凡無祿軍士入直行巡侍衛外別仕每以
三準一續見原典而傳香以下京外給別仕之法
今廢○禁軍加資及實職兼司僕仕外他衙門仕
並勿通用○凡外方軍官軍士等仕日各其鎮將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一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

千戶則海運判官擇報戶曹差定漕轉時不謹行
船敗沒者領船初度杖一百削仕二度全家入居

漕卒各杖一百削仕千戶則五船杖一百削仕十
船全家入居統領則二船杖一百削仕五船全家

入居若遇風變非人力所及則不在此限○非漕
轉時則每船遞定二人看守○漕轉始載日至京

江每一日給別仕十柴山倉二十九日法聖浦倉
十八日德城倉十九日貢稅串倉十三日○備什

物畱京江及還歸時則每一日給仕一備什物三
十日畱京江二十日○守船時則三日給仕一○

漕卒有故則以保內人告官代送勿給仕私自
代替及替之者並論罪不能檢察官吏亦論罪

次二番一**都目**月一**正加階**仕滿三百六十○去官
年相滿**都目**仍仕者四百五十正三

止品而**去官**從四品
影職

訓鍊都監軍士續番次番都目兩正月**遞完**從四
品

從五品四從六
品六從七品六

破陣軍原 一百八 **番次** 六番一 **都目** 四月正月四月七月十月

通兒 雜職從七品二從九品三 **加階** 仕滿九百九〇

水軍原 四萬八千八百員 **加階** 常佩圓牌徑三寸用

一面書年月日兩面並篆烙水軍二字 **世傳** 其

任勿差他役其中有能射者水軍節度使巡行時

試取置簿每歲抄優等者 **啓** 聞授散官職京畿忠

清道黃海道江原道各二人 **慶** 尚左右道全羅左

右道各三人永安道平安道各一人 **啓** 隨才敎用

異者觀察使同水軍節度使具列以 **啓** 隨才敎用

勸 **番次** 二番一 **都目** 一月正 **加階** 仕滿三百六十〇

五十正三 **去官** 從四品 品而止 **漕卒原** 五千九百六十員 **所佩牌制與水軍同**

大典會通

卷之四

六十

任勿差他役每船有領船統領十船有統領一人

二十船有千戶一人領船統領則海運判官差定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九

仍仕者二百九
十從六品而止
去官 從八品
實職

伴徭 原 散職從八品
子君尚公主尉功臣伴倘相遞除授 **都目**

兩正月
七月

童蒙訓導 原 **都目** 四正月四月
七月十月 **遞兒** 從九品
加階 滿仕

四百五十
用受職時仕

羅將皂隸 原 **番次** 朔三番一
朔相遞 **都目** 兩正月
加階 仕滿

六 **去官** 從九品
百 雜職

補充隊 原 年滿六十者未去官身死
者仕並許子孫繼役通計 **番次** 朔四番
朔相遞

都目 七兩正月 **加階** 百仕滿一千
七兩正月 **加階** 百仕滿一千
○原從功臣賤妻妾子

承重者
減半 **去官** 從九品
雜職

破敵衛

原

二千五百員

番次

五番四朔相違

都目

三月四月七月十月

加

階

仕滿一百六〇去官願仍止
仕者五十八正三品而止

去官

從五品影職

管領

原番次

長番

都目

一月一正

加階

仕滿一千五百四
〇去官願仍

仕者三百八十
五正三品而止

去官

從六品影職

壯勇衛

原

六百員

番次

五番六朔相違

都目

四月十月四月

滿

兒

從六品一從七品二
從八品二從九品十二

加階

仕滿六十二〇去官
願仍仕者七十二正

三品而止
去官

從六品實職

隊卒

三千員

彭排

五千員

原番次

五番四朔相違

都目

七月十月

月滿兒

從八品三十一十一
正九品一百二十一十六
四十六隊卒二十彭排雜職

排從九品一千四百七十四

百五十四隊卒九百二十彭排

加階

仕滿一千八
〇去官願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九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八

亦三百二十七
正三品而止
去官 從五品而止

諸員 原承文院則事大文書鍊紙時每一日給
別仕二○大事則十日小事則五日

次 三番六朔相遞
承文院則長番
都目 兩正月七月
承文院則四
遞兒 從七品

一承文院一司饗院七司僕寺一尚衣院二司饗院十五司僕寺一典
設司饗院二十九品三十二一尚衣院二
加階 仕滿五百

院則一千五百四十二○去官願仍仕者一百
二十八承文院則三百八十五並正三品而止
去

官 從六
品

濟州子弟 原三十員○濟州牧使於三邑居入內
擇從仕可當者報觀察使以啓本曹

錄簿每**都目** 兩正月
親着**遞兒** 從六品一從七品一
日

階 仕滿四百五十○用受
職時仕及本曹親着仕

加

月八月十月十二
○雷防一肚
加階仕滿六十四去官仍仕者
三十五○雷防二百四十

五仍仕者一百三十五
○仍仕並正三品而止
去官從五品
影職

吹螺赤六百四十員
太平簫六十員
原番次五番四
都目

三四月七
通兒從六品二一內吹螺赤大平簫從八
月十月七
七品三一內吹螺赤大平簫從九

品七十一內吹螺赤大平簫從九
品二十一內吹螺赤大平簫
加階仕滿三十九
去官願仍仕

者二十一○內吹螺赤大平簫一百七十
願仍仕者一百八○仍仕並正三品而止
去官從五

品

尚衣院軍器寺弓人矢人原
尚衣院軍器寺和會薦狀番次番

六朔**都日**兩正月
通兒從七品二一弓人一矢人
相通七月
從八品六二內弓人一內

矢人一弓人一矢人從
九品六三弓人三矢人
加階仕滿三百二十七內
弓矢人去官仍仕者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八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七

品六從
五品五

御營將官續審次番都目四正月四月 遶兒從四

補

七

摠戎廳將官續審次番都目四正月四月 遶兒從四

三品

守禦廳將官續審次番都目四正月四月 遶兒從四

品五補
今廢

捕盜廳軍官續都目四正月四月 遶兒從四品五

二從六品十八
從七品十二

正兵原審次八番二朔一朔相遶 都目六二月

制述官續番次長都目四正月四月
七月十月
遮兒正三品
一從八

八品二補從

畫員續番次長都目四正月四月
七月十月
遮兒從六品二
一從七品一

從八品一

補字官續番次長都目四正月四月
七月十月
遮兒從九品一

校書館唱渚續番次長都目四正月四月
七月十月
遮兒從九品一

十一品四補

訓練都監將官續番次長都目四正月四月
七月十月
遮兒

從四品八
從五品六

禁衛營將官續番次長都目四正月四月
七月十月
遮兒從四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七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六

守門將續

二十三員

番次長都目

兩正月七月
四正月四月七

月十通兒

從六品一員
九品十一員
從七品三員
補從九品七員

訓鍊院權知

續員
參軍八員
奉事三十六員

番次長都

目

四月四月

通兒

從七品四員
補從七品八員
二品二員
從八品二員

兼假引儀

續番次長

都目

七月四月

通兒

從六品

從六品

速文學官

續番次長都目

七月四月

通兒

從四品

從六品一員

補從四品一員
從七品一員
今減從

寫字官

續番次長

都目

七月四月

通兒

正三品

五品一員
從四品一員
從六品一員
從

品十二 七 訓鍊院 一 典醫監 四 觀象監 從七品七
 二 司譯院 三 觀象監 一 訓鍊院 一 典醫監 從八品七
 十二 八 司譯院 四 觀象監 從九品四 十四
 十八 司譯院 四 觀象監 二十二 訓鍊院 十四
 九百七品以下
 四百五品以下

醫員 原 議政府 六 曹 各 三 員 宗親府 忠 勳府 都 摠
 府 各 二 員 續 見 原 典 而 加 內 局 惠 民 署 耆

老 所 中
樞府 審 次 續 長 都 目 四 正 月 四 月 肅 宗 從 八 品
 七 月 十 月 肅 宗 七 一 宗

親 府 二 議 政 府 二 六 曹 一 忠 勳 府 一 都 摠 府 從 九
 品 二 一 宗 親 府 一 忠 勳 府 續 從 四 品 四 從 五 品 五

內 局 從 六 品 三 一 內 局 二 惠 民 署 從 七 品 二 內 局
 從 八 品 六 宗 親 府 議 政 府 六 曹 忠 勳 府 耆 老 所 中

樞 府 各 一 從 九 品 二 一 惠 民 署 一 宗 親 府 備 如 階
 從 五 品 六 內 局 從 六 品 四 二 內 局 二 惠 民 署 如 階

仕 滿 九 百 七 十 品
 以 下 四 百 五 十 品

內 弓 房 司 鑰 續 番 次 長 通 兒 品 從 九 二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六

目 十兩四月 **通完** 二從十四品五二兩界從六品六十五品五十九

界從七品一百兩界從九品一千五百界從八品二百八

兩界〇〇兩界則節度使磨勘仕日以啓本曹受覈

除授〇〇分內外地十分為率內地人四分外地人

六分〇從四品通兒永安道則南道一度輪次除授 **加階**

仕滿六十二〇兩界則一百八十四正三品而止 **去**

仍仕者七十二兩界則一百八十四正三品而止 **去**

官 實職 四品 **忠贊衛原** 原從功臣及子孫屬焉 **番次** 五番四朔

二番 **都目** 三四月七月十月 **通完** 從六品三從七

從九加階 仕滿三十九〇去官願仍 **去官** 從五

忠順衛原 異姓總麻外六寸以上親王妃總麻外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五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四

親同○宗姓則宗簿寺異姓及王妃世子嬪親則
敦寧府磨勘以啓後本曹啓差忠順衛同○妾子

孫亦 **番次** 長 **都目** 四正月四月 **遞兒** 從五品二從
屬 **番次** 番 **都目** 七月十月 **遞兒** 六品三從七

品四從八品 **加階** 仕滿一百四十四○去官願仍
六從九品八品 **加階** 仕者一百八十正三品而止

去官 從四

忠義衛 原 功臣子孫屬焉妻子孫承重者 **番次** 長
亦屬 **遞兒** 見原典而減 **遞兒** 數

都目 四正月四月 **遞兒** 從四品一從五品三從六
七月十月 **遞兒** 品八從七品十從八品十

三從九品十八 **續** 從 **加階** 仕滿一百四十四○去
六品二從八品三 **加階** 官願仍仕者一百八十

正三品 **去官** 從三
而止

甲士 原 一萬四千八百員○捉虎四百四十兩界
各三千四百在額內兩界預差甲士各四

百八十甲士有闕以仕多者充差 **番次** 五番六 **都**
○番次都目加階同留防正兵 **番次** 朔相 **遞** **都**

番次 長 **都目** 兩正月七月七月十月 **正** **通兒** 從三品二

從五品七從六品十從七品十七從八品三十八

從九品六十三 **續** 從三品二從四品二從五品七

從六品七從七品 **加階** 在滿一 **去官** 正三品

六從九品二十 **親軍衛** 原 四十員 **永安道** 人 **番次** 二番一 **都目**

兩正月 **通兒** 從四品一從五品二從六品三 **加階**

七月 仕滿五十六 者二百七十一 正三品而止 **去官** 從三

別侍衛 原 百員 **番次** 朔相 **都目** 兩四月 **通兒**

從四品四從五品十二從六品二十二從七品三十三

階 仕滿四十八 者二百十六 正三品而止 **去官** 從三

族親衛 原 麻宗姓 以上親世子 總麻以上親及王妃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四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二

目 四月正月四月七月十月十月預差則十
月都目無預差十月都目加
通兒 正三內

禁衛一羽林衛一兼司僕從五品三十一十二內禁衛

五羽林衛四兼司僕從五品三十一十二內禁衛

十羽林衛九兼司僕從六品八十二三十五內禁

衛二十四羽林衛二十二兼司僕從七品一百十

五六十六內禁衛二十四羽林衛二十五兼司僕

從八品一百三十二五十九內禁衛三十七羽林

衛三十六兼司僕從九品三百二十四一一百二十

三內禁衛九十九羽林衛一百二兼司僕**補**正三

品三一內禁衛一羽林衛一兼司僕從四品十三

四內禁衛五羽林衛四兼司僕從五品三十三

一內禁衛九羽林衛九兼司僕從六品八十三三十

一內禁衛二羽林衛二兼司僕從六品八十三三十

司僕從八品一百三十二四十八內禁衛三十七兼

羽林衛四十三兼司僕從九品二百二十四

六十六內禁衛七十八羽林衛八十兼司僕

功臣嫡長原 隨員數無定額而皆受遞兒其遞兒數

一 宣傳官從七品十二 一 宣傳官十一 武兼從
八 品十二 四 宣傳官八 武兼從九品十九 武兼從
階 仕滿九百七十品

兼司僕原 五十員十員永安道平安道平安道二節度使擇有

才行者啓聞本曹依內禁衛試取例受試八矢以
上者啓差 ○ 內乘三員並以他官兼一司僕寺正

番次 長都目 兩正月 通兒 正三品一從三品二從
番長 七月 正三品五從五品六從六

品九從七品六從八 加階 仕滿一 去官 正三品
品九從九品十四 加階 仕滿一 去官 而止

內禁衛原 一百九 番次 長都目 兩正月 通兒 正三
從三品四從四品七從五品十八從六品二十四

從七品四從九從八品三十九從九品四十四

加階 仕滿一 去官 正三

禁軍 續 內禁衛三百員兼司僕羽林衛 番次 長都

各二百員 內禁衛減一百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三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二

箭 **復銃**

番次都目 **原** 都目凡軍士所管將計仕日 **通兒** 元別

計除授下同錄用餘仕於薦狀并錄以啓 **加階**

移屬者前屬處仕一度用則雖有餘仕不用 **加階**

別計元仕忠順衛正兵破敵衛隊卒彭排則並計 **宣傳官武兼原** 宣傳官八員仕滿七百二十乃 **通**

衛功臣嫡長親軍衛別侍衛甲士同考勤慢陞降 **除授** **續** 宣傳官武兼合七十一員 **壇** 哈賜為正

兼職入於原 **通兒** **番次** **都目** 兩正月四月七月 **續** 四月

月 **通兒** 正三品一從三品一從四品一從五品一

續 正三品一從三品一從四品一從五品一從六品一

八品一宣傳官從七品十四從四品一宣傳官十五品一從六品一

傳官二十六七武兼 **通** 正三品一從四品一從五品一從六品一

牌官若是開良則一體許赴○初抄則各其邑守
令每年九月內試取三技中一技入格者修報該

廳及該道守摠兩營設行於京廳而行操時則行
操處設行慶尚左右道咸鏡南北關各其兵使忠

清右道監營左道兵營全羅道則蘆嶺以北監營
蘆嶺以南兵營平安道則清南監營清北兵營黃

海道兵營江原道監營主管試取三技中二技入
格者始許計畫取三人狀聞優等一人直赴殿試

之次一人直赴會試後並仍差相當軍任又之次
一人陞差軍任如無二技入格者則其中居首人

陞付軍任補北關馬兵沒技人直赴殿
試○守禦廳出鎮摠戎廳馬兵今廢柳葉箭一

二矢片箭一巡以上騎芻中一次上

訓練都監馬兵都補技大將每年一次試取居首沒
之次該鐵箭一百五柳葉箭一

營施賞鐵箭十步柳葉箭一
濟州馬兵都補牧使每年試取狀聞柳葉箭片

濟州馬兵都補牧使每年試取狀聞柳葉箭片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二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一

之次直赴會試

鐵箭百步

柳葉箭

片箭

騎芻

鞭芻

鳥銃

南陽坡州長湍別驍士

都試補

每年九月初抄以鐵箭騎芻鞭

芻試取報于摠戎廳則摠戎使人直赴殿試其餘片箭更試狀聞居首者每邑一人直赴殿試其餘

使該邑論賞

鐵箭百步

柳葉箭

片箭

騎芻

鞭芻

次一

○五中計一矢六中計二矢四中以下勿論

禁御兩營騎士

都試補

技大將每年一次試取居首沒

之次各其營施賞

鐵箭一百二十步

柳葉箭

片箭

騎芻

鞭芻

鞭芻

諸道馬兵

增

畿內守摠兩廳馬兵及各道監兵營所屬馬兵○馬兵別將哨官

箭 片箭 騎芻 鳥銃 鞭芻

南漢軍官才試增守禦使每年春秋巡審時試取狀聞居首者沒技者直赴殿試鐵

箭百柳葉箭 片箭 鳥銃

永宗防營軍官都試補防禦使每年試取狀聞居首一人直赴殿試 鐵箭

步 柳葉箭 片箭 鳥銃

水原坡州別驍騎士才試增每年二月八月自兩邑各設初秋以鐵箭騎芻

鞭芻試取報于摠戎廳則摠戎使於京廳以柳葉箭片箭更試合以計畫狀聞居首者閑良直赴殿

試出實補水原設營後該營試取坡州今為別驍士都試取坡州今為別驍士都差送屯監其餘使該邑論

水原別驍士列校都試補留守每年春秋試取狀聞居首者沒技者直赴殿試

大典會通 卷之四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

江華壯義旅

續

各十八哨。留守每年春秋試取狀聞沒技者居首者直赴殿

試增別抄武旅舟師

鐵箭

柳葉箭

片箭

鳥銃

銃

松都選武

續

留守每年春秋試取狀聞沒技者居首者閑良直赴殿試出身邊將

除授補出資

鐵箭

柳葉箭

片箭

騎劄

鳥銃

鞭劄

統營將士

續

每年水操後試取狀聞居首一人閑良直赴殿試出身邊將除授補

沒技閑良直赴殿試

柳葉箭

片箭

鳥銃

東萊別騎衛

續

各鎮將校限三百人抄選名爲別騎衛慶尚左兵使每年試取

狀聞居首者沒技者直赴殿試之次

鐵箭

柳葉

直赴會試補府使試取報巡營狀聞

鐵箭

柳葉

步

柳葉

三鎖居首者一人直赴殿試

慶尚道別武士都增試道內出身屬左別武士無定額每年監司設四等都試通計畫數居首者左右各一人狀聞出身則三軍門哨官填差閑良則

直赴殿試之次四人自本道弓箭米布施賞補左別居首人沒技人加資右別之次人直赴會試

哨官填**鐵箭**百步**柳葉箭**片箭**騎芻****鳥銃**

京畿水營別武士都補居首一人直赴殿試

百步**柳葉箭**片箭**鳥銃**

京畿忠清黃海全羅慶尚道選武軍官都增每年

各該邑守令先試柳葉箭一巡取一中以上報監管監司秋巡時從附近定都會更試狀聞居首一人直赴殿試之次五人免當年身直赴會

柳葉箭巡

試又之次五人免當年身直赴會

大典會通 卷之四 五十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九

今黃拓坡

鐵箭

百步○咸鏡道則否

柳葉箭

片箭

騎箭

鳥

銃

鞭笞

黃海道平安道則否

平安道別武士

都試

續

觀察使節度使每年四次試取狀聞閑良沒技者居首者

直赴殿試出身沒技者兩營各二人狀聞軍門調用差通計四巡優等者

○義州及四防營各其試取報兵營狀聞○監營振義州及四防營各其試取報兵營狀聞○監營振

武士別親衛士試取同

黃海道別武士

都試

續

水營追捕武士同○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每年四次

試取狀聞沒技者居首者閑良直赴殿試出身居首者與閑良出身之次者監營則本營屯別將輪

差兵水營則邊將除授增禁御兩營鄉騎士同

江原道別武士

都試

續

監察使依兩西例試取狀聞通

射講增

五軍門同每月兩次設行於各其營而自
十月至正月五月至七月則以隆冬盛

暑只一次設行使中軍監試中軍有故則堂上將
官中差出兼中軍舉行又或大將監試每試後書

單子入啓講陣連五次俱通柳葉箭五巡全布片
箭連三次一巡全布者別單書入各營射講計畫

通一年居首者歲末別單書啓此外賞罰各營有
節目○堂上年滿五十除講六十除射堂下勿論

柳葉箭

十片箭三巡○訓禁御三營自二月至四
月八月至十月減二巡代以騎芻

一騎芻

否補守禦廳出鎮講書○陣圖背誦
守摠兩營則兵學指南臨文

咸鏡道親騎衛

都續觀察使節度使每年四次試
取狀聞沒技者居首者閑良

直赴殿試出身邊將除授官寺奴免賤其次本營
論賞增黃土岐伊寶化堡權管兵營自辟中嶺赴

戰嶺別將監營自辟出身優等沒技者輪差已經
邊將者依關西例加資補監營南兵營別砲衛每

年四次試取左右別人居首各一人直赴殿試南兵
營左右別之次各一人直赴會試○黃土岐伊草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九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八

武經講

續

試官講所及賞罰同賓講書

臨文

經七書中一書從自願粗以上增除吳子

能

摩兒講

朔六次試年五十以下官一員郎廳四員每

報本曹連三次不通者罷職二次不通推考一次不通罰直病不進與不通同增堂下宣傳官勿參

○自一次至三次不通者從重推考五次越俸六次汰去○親臨則試官與專經殿講同堂上三員

進講書

臨文○兵學指南粗以上

各營將官

射試

本曹判書每月武臣堂下朔試射時並試三軍門領軍將官二十五

中者賜馬二十六中以上者邊將除授連三次居首者入啓別賞不滿四矢者汰去各營無軍將官

則又自各該營試射賞罰同○騎芻倍畫同

鐵箭

一身則九十步

弓箭

柳葉箭

巡七

騎芻

次一

葉箭三箭三騎芻一

專經殿講增曹每年六月十二月內三廳報薦後本

十三日取稟十八日設行自本曹以武臣東西班

正職及時帶軍門人員在京無故者列書入啓二

十員受點○試官大臣一員二品以上文武各一

員堂上官文武各一員堂下官文二員自政院擬

入○若隨時待下教舉行則講官無定數隨點下

應講○連三次居首資窮者加資參外官陞六品

一賜給不通人**紀馬講書**臨文○武經七書

賓廳講續音一員都摠府堂上官本曹入直堂上

郎官間一朔會賓廳試講連五次純通者加資不
通者推考會二十一日講官列書入啓○若親臨
殿講則試官與**講書**自願粗以上書三鑑中一書從
專經殿講同
只試通
鑑將鑑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八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七

步○日長十五巡三十五分以
上日短十巡二十五分以上

武臣堂上

射試續

每月十七日差二品以上文武各
一員試堂上有職及閑散人員有

故則當月內退行四季朔計劃閑散人則十五矢
以上限五十窠付祿連三次居首及騎芻片箭沒

技則加資未滿四矢病不進者並罷職增自十五
日至晦日前推移設行○堂上別軍職勿為參射

而若有實職或軍門兼帶
則應射補三十六窠付祿

柳葉箭

八

箭前
一騎芻

次一

武臣堂下

射試續

每月二十二日本曹判書試堂下
實職人員有故則參判試又有故

則退行六月十二月兩朔勿行單巡沒技者則別
單書入累巡勿論○不滿四矢者汰去騎芻倍畫

充四矢補十巡未滿四矢罰直連五次無分汰去
居首論賞優等參下直除六品參上超授四品四

品三品令吏曹直除守令之次參
下陞六時隨窠付職參上陞叙

鐵箭

一百步

柳

殺手

日中續

超等者兼司僕付料

藝

一藝○月刀雙劍提督劍平劍拳法

旗隊長

日中續

該軍門中軍試取沒技者出身加資閑良直赴殿試

柳葉箭

巡一

片箭

巡一

宿衛騎士

日中續

該軍門別將試取沒技者同旗隊長初以海西騎士上番今革屬

本道禁營騎士付監營御營騎士付兵營每年本道別武士都試同為試取施賞

柳葉箭

巡一

騎射

次一

砲手

中軍試取及沒技者同旗隊長

傷銃

放三

文臣堂下

射試續

每月二十日差二品以上文武各一員試年五十以下堂下官除臺

諫監察及闕內入直因公出使受由下鄉未肅拜外勿許懸頓稱病不進者禁推○津分居首者初

次兒馬賞給二次三次弓子四次又兒馬歲抄通計優等滿五百分以上加資

貫章

一百二十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七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六

矢中者給一分。侯長五尺六寸廣四尺二寸

片箭

隊率彭排原走

以上走力

增今廢

吹螺赤

太平簫原

等以上取

吹角

吹簫

以上

馬醫原

本曹同司僕

講書

安驥集。臨寺提調講

軍傳官

武兼部將

守門將

禁軍

扈衛軍官

忠翊衛

中續

都總府入直堂上

官郎廳本曹入直

堂上官請標信合坐試取沒技者閑良直赴殿試出

身論賞

若值殿座動駕齋戒

減膳直宿及雨雪

之時則頃啓。內外中日柳葉箭片箭沒技者加

資閑良則

柳葉箭

一

武藝砲手

中續

砲手良人一次

三中者兼司僕付

日續

間連三次

直赴之規

武藝別監同

鳥銃

放

一矢以八十步 **弓箭** **騎射**以上中 **騎槍**以上中 **走**以上三走

力以上三力

正兵旅帥隊正原京本曹外兵馬節度使試取一

差定滿三十朔并考褒貶加階遞 **木箭**一百八十

差濟州三色則節制使試取啓聞 **木箭**步一矢以

上 **弓箭** **騎射**以上中 **騎槍**以上中

正兵當番鍊才原以上十分以上為一等二十五分

等○外則各 **木箭**一百八十步一矢以上○每一百

其鎮將試才 **木箭**三十步一矢以上○每一矢中

者給一分○候長五 **弓箭** **騎射**以上中

尺六寸廣四尺二寸 **弓箭** **騎射**以上中

水軍當番鍊才原水軍節度使每年巡行試取三

為二等一十分 **木箭**一百二十步一矢以上○每一

以上為三等 **木箭**一百二十步一矢以上○每一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六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五

破敵衛原

取三才入者

木箭

二百百四步一矢以上

片箭

走

分容水八升自壺口至上水孔六寸七

分出水下上端圓徑二分自水渴間走及二百七

十步為一五十二步為三十步為一力五十斤能行各持

六十步為一力一百步為三力

壯勇衛原

三才入者取壺間廢還置詳見訓練都

木箭

二百四十步

走

力

增

柳葉箭

一矢以上講

書

兵學指南講陣

捉虎甲士原

二口者除取才許屬外方捉虎人

願抄定無自願人則擇定壯勇者今廢 **木箭**

丙三廳南行

續

同出身薦宣薦三技滿四矢部
薦三技滿五矢後許講入格者

取補
今廢

鐵箭

一百步一巡

片箭

一巡

騎芻

一巡

講書

武藝原

五矢以上及講書入者
取兼取身言書

今廢

木箭

一百八十步

片箭

騎射

講書

兵政陣法兵將說武經七書
兵要中自願一書略以上

堂上軍官

續

本曹判書試取有故
則禁軍別將代行

片箭

一巡 **柳葉**

箭

一巡

騎芻

一巡

哨官

續

該營大將試取有故
則中軍別將會同

鐵箭

一百步

柳葉

箭

一巡

騎芻

一巡

教鍊官

續

同哨官射講陣
三枝居首者取

柳葉箭

一巡

講書

背誦○兵
學指南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五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四

一巡一中以上
遷轉取才則否
騎芻 甲一次上
講書 臨文武經七書
中除吳子自願

一書粗
以上

甲士原 五矢以上者取當番鍊
才則三矢以上
木箭 一百八十步
矢以上

每一矢及者給五分
左右標相距十五步
片箭
騎射
騎槍

都總府堂下匠部將宣傳官原 四矢以上及講書
者取見任內

禁衛只取講書
武藝同
木箭 二百四十步
一矢以上只取講書

片箭
騎射
講書 兵攻陣法兵將說中一書通
武經七書兵要中自願一書

略以上
除吳子

內三廳出身 才取
續 本曹都總府訓練院合坐試被
薦人兩技具入者取
補 今廢

鐵箭 九十步
三矢俱入
講書 七書三鑑
願粗以上
中 一書從自
除吳子

別侍衛親軍衛原 六矢以上者取當番鍊才則四

外則兵馬節度使每春秋聚巨鎮試取中者錄其

身長容貌及矢數報本曹憑考夏試初試後過一

凡軍士同親軍衛則節度使隨闕**木箭**二百四

試取錄名啓間後本曹啓差**增**今廢**木箭**十步一

上**鐵箭**則侍衛**片箭****騎射****騎槍**

禁御兩營騎士增 海西宿衛騎士罷上番之規兩

番則以守部薦人自本營以五技取才每都目望

者填差津六朔後久勤及取才優等入每都目望

報本曹遷轉其餘以各軍門行伍出身閑散前銜

及堂上以上入填差而出身則本營哨官三窠取

才陞差堂上以上入則每都政兩營各一人依自

辟例報本曹空闕衛將擬差**補**守部薦久勤及遷

轉今**鐵箭**九十步三矢俱入**柳葉箭**中以上**片箭**

廢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四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三

馬者各減二十步

巡

開良終制西北人戰凶承傷中禁則三矢俱入出身三矢取二矢邊

將遞來則二矢取二矢

宣 宣薦一窠守部薦

柳葉箭

每年六月十二日本曹判書試取從矢數

宣薦一窠守部薦

柳葉箭

騎芻

次

箭

果

取補取五年六月十二日本曹判書試

柳葉

宣

宣薦內禁衛領外內禁衛

補

每年六月十二日本曹判書試取從

矢數都政初仕一窠擬望規

矩與宣薦內禁衛取才同

補

每年六月十二日本曹判書試取從

西北

道出身

取補每年六月十二日本曹判書試取從矢數西北各一窠六

道一窠都政

柳葉箭

初仕擬望

初仕擬望

柳葉箭

三

填差○在喪終制及侍丁者減一矢改木箭二百
試凡軍士同行百日喪者否○今廢

步一矢 鐵箭 八以上步一 弓箭 騎射 騎槍

宣薦內禁衛 增 本曹判書同都總府訓鍊院堂上
取母論出身閑良五技中取

三技 鐵箭 九十步三 柳葉箭 一以巡二 弓箭 一以巡一

騎場 中以上講書 自武願臨文粗以上者取

守部薦將鬼薦 才取補 內禁衛同 宣薦

禁軍 才取續 本曹判書同都總府訓鍊院堂上官試
長八尺以上者其能射木箭元標

外一百步 六兩一百三十步者雖未準長亦取○
平安咸鏡道武士可合者清北北關各三人清南

南關各二人 令觀察 鐵箭 開良則一百二十五步
使節度使 試才抄上 鐵箭 納馬者減二十五步出

身則一百二十步 邊將遮來西北人戰以承傳中
禁則一百二十步 終制則一百十步 出身以下納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三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二

觀武才覆試續

親臨試射差參試官二品以上文
一員武二員以四技試取又於外

處以議政一員為命官試鳥銃鞭芻參試官與親
臨同又於御座左右各差二品試官二員以劍槍

等技試殺手○武臣嘉善以上禁軍別將扈衛別
將禁軍將五衛將內乘別軍職本曹堂上軍官五

軍門中軍以下諸將校宣傳官武兼都摠府郎廳
西北付料軍官濟州付料子弟並除初試許赴具

試四技初試入格人只以其入格之技覆試○閑
良則入格者直赴殿試具龍虎榜則即日放榜其

次論賞出身以上則柳葉箭三中四分者守令邊
將除授入格優等者加資其次論賞鞭芻及殺手

技藝無賜第○親臨殿試差參試官二品以上文
武各一員三品以下參考官堂上武一員堂下文

一員武
二員

內禁衛原

本曹同都摠府訓練院堂上官各一員
試取凡軍士試取同但正兵鍊才則訓

鍊院試取○十矢以上者取槍中準矢一春秋鍊
才則十矢以上騎射騎槍各二次○隨闕試才

軍官西北未付料軍官北漢守堞付料軍官軍器
 寺別破陣以一技取○禁軍則本曹判書試取加
 鞭芻及騎槍交戰合六技以各技取各軍門軍兵
 自各其營以鳥銃及各技各藝取曾參試官二員
 下堂加差監察監試○訓鍊奉事習讀官守摠兩
 營南北漢將校三營守門軍許赴○馬軍以上則
 加三技受點步軍則以二十一步軍則以書入啓技數
 矢數依受點試取守摠兩營步軍則以鳥銃一技
 試取補守鐵箭柳葉箭片箭騎芻增騎槍
 禦廳出鎮

交戰 鞭芻 馬上偃月刀已上將校 鳥銃 柳

葉箭 片箭 用劍 雙劍 提督劍 偃月刀

倭劍 交戰 本國劍 銳刀 木長槍 旗

槍 鏡鉞 狼筈 藤牌 拳法 步鞭棍 拔

刀 棒 竹長槍已上步軍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二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一

重試

續十年一次同文臣試○堂下官至出身無職人員並赴○初試殿試諸法同庭試○

初試兩所額數同謁聖

勸武科

增試無初會試因特教或親臨入格直赴殿試三營勸武軍官赴試試官大臣一員

二品以上文武各一員親臨時或以軍門都提調大將千

把總武從事官差出○以十一技稟旨受點同別試

外方別科

續旨平安道咸鏡道江華濟州等地有特

一試即其地放榜或別遣御史則直赴殿試○以十技稟旨同增觀武才則以四技取才因特教別

試才則以二技取才

觀武才初試

續員分兩所各差二品以上文武各一員試取○以十一技稟旨同諸科

而以四技依例受點五軍門扈衛軍官有廳時前

任朝官出身閑良以二技取五軍門扈衛廳付料

○別試鐵箭一百五十步以上者與沒技者同

別試續重試對舉或因邦慶設行○初試分兩所

一員武二員試取兩司官各一員武二員堂下官文

以議政一員為命官○以十一技稟旨受點或取

而初試額數稟旨殿試隨入格多少○咸聚京師

不柳葉箭片箭騎芻木箭鐵箭及三矢並

鳥銃鞭芻講書

庭試續因邦慶設行○初試

謁聖試續親臨文廟酌獻禮後設行○初試殿試

人殿試親臨試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一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

東西班從三品以下若閑良人武科及內禁衛外
從自願騎射騎槍各二次○一百九十分以上

鳥一等一百六十分以上鳥二等一百二十分以
上鳥三等○外則兵馬節度使依京中例試取啓

聞其道守令虞候萬戶及其子弟並勿試續見原
典而諸色人應試今廢只試禁軍初場鐵箭三箭

不及者汰去畢試未滿六矢者加試鳥銃三放以
一中充一矢猶未滿六矢者更為鍊才如都試之

規又未滿六矢者汰去閑良降屬定虜衛鞭芻外
各技中沒技者元畫滿一百十分以上則閑良直

赴殿試出身邊將除授元畫未滿者雖沒木箭一
技熟馬賜給補禁軍都試以祿試射代行

以上鐵箭以上矢
片箭騎射貫革騎槍擊毬

柳葉箭
身銃鞭芻講書原自願講書者
論孟中一書五

經中一經通鑑將鑑博議兵
要孫子中一書續講書今減

禁軍射補數每年五月十一月本曹判書試取從矢
技閑良直赴殿試出身加資

大典會通

卷之四

四十

則用騎步擊毬第其高下○甲科三人乙科五人
丙科二十人續增廣同○初覆試錄名試取額數

見原典大增廣則初覆試皆倍取○初試兩所各
差二品以上一員堂下官文一員武二員試取監

察監試○覆試則差二品以上文一員武二員堂
下官文一員武二員試取兩司官各一員監試○

殿試試官同覆試○又以議政一員為命官或以原
任及一品官代之○以十技列書受點或出一

技或出二技○京則以鐘樓分左右付一所右
付二所忠清全羅慶尚左道付一所右道付二所

咸鏡黃海道付一所平安江原道付二所○先武
技後講經增殿試試官大臣一員二品以上文武

各一員三品以下文武各二員○凡試官初會
試則自本曹擬入殿試及親試自政院擬入

箭

鐵箭

片箭

騎射

貫革

騎槍

擊

毬

柳葉箭續新

身銃續新

鞭笏續新

講書

都試原

每年春秋本曹訓鍊院堂上官同議政府
諸曹都摠府堂上官各一員試取軍士及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九

尖細者禁斷○武科初覆試則否習用五矢

烏銃續一百步○每一中給七分半貫則續倍給○的長七尺廣二尺續三分放

鞭芻續出馬後以右手執鞭向後舉又以兩手向前舉因向左右各一揮每一擊後輒左右一

揮○橫走者不及漏水者同騎芻○六芻相距各二十八步左右相距自馬路三步

講書原臨文通七分略五分粗三分○覆試四書

鑑博議武經小學中一書並從自願經國大典續式年覆試同原典增廣覆試則只武經七書四書

五經中一書從自願續武經七書中除吳子下同

武科式年原初試院試則訓鍊院錄名試取七十人鄉試則兵馬節度使定差使員錄

名試取慶尚道三十人忠清道全羅道各二十五人江原道黃海道永安道平安道各十人○鄉

吏講武經七書粗以上者許赴○覆試則本曹同訓鍊院七品以下官錄名試取二十八人○殿試

擊毬

原擊出毬門者給十五分橫過者給十分用勢具者○自出馬旗下以杖橫置馬頸趨至

引毬旗下以排至動毬以持彼回之以杖之外面推引毬而擲

之謂之持彼排至持彼之時必以杖當馬之胷謂

之行毬則或四或五回亦不妨行毬之初不縱擊執

杖橫直與馬耳齊謂之比耳或二度或三度比耳

之後舉手縱擊手高抗而杖下垂揚揚謂之垂揚

手垂揚手無定數以毬出門為度垂揚之時側身

作卧以杖擬諸馬尾謂之防尾毬出門之後雖不

打毬虛垂揚手又以杖橫置馬頸馳還出馬旗下

或比耳之時未及垂揚手毬若已出門則於毬門

之內虛垂揚手又於毬門之外亦虛垂揚手或毬

柳葉箭

續一百二十步○的長六尺六寸廣四尺六寸貫長廣各三分之一○箭重八錢鏃

○出於馬標距置毬標五十步置毬標距毬門亦不妨

步毬門內相距五步○杖匙長九寸廣三寸柄長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九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八

尺二寸長二尺四寸用布帛尺營造尺下並同

騎射 原每中給五分四發四中的相準發三中

步○的圓徑一尺棚高一尺五寸續今騎芻○五

迎射及不畢射後仰身舉手翻弓○橫

貫革 續一百五十五步○的長十尺八寸廣八尺三

試則

騎槍 原每一中給五分用勢具者○出馬後以兩

一芻刺之正中掖到第三芻刺之刺訖翻身左顧以

槍指後右亦如之曳槍馳還出馬處○二芻人相

斤長十五尺五寸
○橫走者同騎芻

一私持 **路文增** 自本曹刻板印出從人名色隨品
補今廢 **路文增** 書填大小別星一遵路文舉行白

文先文一切嚴禁
犯者以濫騎律論

試取原

凡借者代者并杖一百身充水軍 **續** 武科則
今加別試謁聖庭試觀武才等科內禁衛以

下諸法今變為中日試射取才等諸
法 **增** 代射者比借射者加二等勘律

木箭

原二百四十步凡步射用三分過五步則雖
給七分過則每五步加一分過五步則雖

標外給分前標左右相距五十步後標左右相距
七十步前後標相距五十步 ○ 初試一矢以上覆

同試

鐵箭

原八十步重六兩每初試一矢及者給七分過
每五步加一分 ○ 初試一矢以上覆試同 **續**

八十步則至百步則內標左右各距十五步過
百步則否中防牌者退十步給分 **增** 用三矢

片箭

原一百三十步每三寸長十尺八寸貫廣二
倍給 ○ 侯廣八尺三寸長十尺八寸貫廣二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八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七

下等乘 正二品以上 三匹 續減一匹 赴京從人 一匹 御史 續

上 一匹 續減 六品以下

馬 天君議政 三匹 續減一匹 從二品以上 二匹 續減 一匹 赴京使

副使 二匹 書狀官 一匹 從事官 及從人 各二人 并

製造 定以下 續 一匹 御史 續 一匹 通信使 續 二匹 從事官 續 一匹

草料原 軍官宦官未挈家鎮將平安道博川以西永

貢物 押領人濟州子弟及押貢人同 續 戰船烽燧

松田 擲奸進上陪去褒貶通議及狀聞領去將校

及自各營出使至京者 從人 二品以上 六三品以下 無

草料本曹及畿營反貼 從人 下四品以上 六三品以下 無

職人 一 續 各營將校 二 馬 二品以下 大 二品以下 小 各一 都

護府以上守令則加大 一 續 各營將校 小 一 赴防出身 大

小各一 無職人 小 一 續 各營將校 小 一 赴防出身

秩高下該驛察訪直狀聞參外察訪報觀奸中使不
 考馬牌給馬驛官依私與律論○奉命擲奸中使
 及承旨給馬時○只許別監書吏○城外動駕時承
 旨史官並給馬○時原任閣臣受出皆令給馬
 而提學直提學視重宰之行直閣待教各視本品
 原任直閣待教之官至重宰者依原任提學直提
 學例抄啓文臣受由行只給一驛馬二驛夫○各
 陵祭物載持馬匹奉常寺如數濫報者施以濫騎
 律○大小使星下屬受賂於驛人則大君王子以
 下皆用濫騎律○非因公而行者雖大君王子大
 臣無給馬之命則不給○英陵寧陵獻官以守令
 差定後給馬之規今廢○宗正卿受由行從資級
 給馬時原任副提學典翰與閣臣同應教以下與
 抄啓文臣同○城外動駕時承旨史官給馬今廢

上等乘 天君議政以下 堂上三品以上 赴京使

中等乘 堂下官六品以上 九品以上 赴京書狀官

下各 從事官各一匹 續通信從事官 製述官以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七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六

面書字號年月又有尚瑞院印四字篆印○驛官
 開具職名日時每節季報本曹○觀察使節度使
 并受發馬牌凡有啓聞事及進上則發馬有迴還
 文者考承政院帖並給下等馬○濟州子弟及押
 貢人迴還時每二人給馱馬一匹○鎮將驛官及
 沿邊未挈家守令求安道洪原以北平安道博川
 以西教官并給馬馱來時雖屬散亦給○非因公
 而西行者各於本品減一匹○朝士及番上軍士居
 外方者屍體傳驛下送○軍情緊急用雙馬○馱
 載重每一馱一百斤○行幸時香醞載持隨馱數
 題給○大小奉使人員應騎者及觀察使節度使
 皆受牌復命還歸即還納一應外方給馬人員到
 任觀察使節度使監封上送到付尚瑞院限內不
 送則受去人員重推馬牌閭失者本罪外加罪無
 牌者同濫乘○英陵寧陵獻官備邊司承文院郎
 廳田公時各軍徵召關文賫持將校並給馬○觀
 察使節度使急速發送時則定數外加給急時奉
 使人員以軍營馬入把至畿驛初站遞把○陵幸
 時朝士借乘驛馬者並以濫乘律論○無馬牌只以本道
 草料乘驛馬者並以濫乘律論○無馬牌者毋論職

軍官原

考以武科及下番別侍衛甲士鎮將各薦兵曹

界節度使則內禁衛亦差數則臨時取旨兩界及

推考○曾經閩帥人觀察使毋得以軍官啓請

送○曾經釜山僉使人**主鎮**加五永安道平安道各

不得為通信使軍官**巨鎮**則無軍官

女真通事一人於數內差送**巨鎮**則無軍官

富寧慶源會寧鍾城穩城慶興甲山江界義州麟

山滿浦濟州等鎮則各加二○北青外有判官處

則又加二○義州渭原楚山碧潼昌城滿浦等鎮

女真通事各一人濟州鎮則倭通事一人並於數

內差送**諸鎮**端川外無軍鎮則無軍官

候永安道

驛馬原

凡奉使員人本曹依等數給帖尙瑞院啓聞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一

大典會通

卷之

三十五

則妻存仍給有故勿充宦官無品伴倘

大君十五續

王子君十二續

一品九續

二品六續

三品堂上官三續

一等功臣一續

十續

二等功臣八續

三等功臣六續

四等功臣四續

外衙前原

書員府四

大都護府牧格三

都護府三十

郡二十

郡二十

郡二十

日守府四十

大都護府牧格四

都護府三十

郡三十

郡三十

郡三十

驛大路二十中路十

羅將主鎮巨鎮十

諸鎮十

差備軍主鎮巨鎮十

諸鎮十

諸鎮十

諸鎮十

諸鎮十

持平各二監察
各一〇四十三
司諫院
言各司諫一〇十四
司諫獻納正
各一〇四十三

市署 十
典獄署 三十
續五

諸員 續原典額數今皆增自該衙門承文院 三續
當番收布減數立書吏或書員

尚衣院 四十續一
司饗院 七十續八
司僕寺 六百續三

千四百
典設司 五百續

烏杖差備 忠贊
轎子陪引路 諸丙命婦 續出入時
衛贊

員所着青衣青頭巾各續
三十件自司僕寺永上
續烏杖差備六
貴人 烏杖差備

四轎子 昭儀 淑儀 十轎子陪二
良娣 昭容 昭媛 淑媛
陪二十

轎子陪十
良媛 承徽 昭訓 八轎子陪二
引路三

伴倫原
本曹啓差黃海平安永安等道居人則勿差
〇身沒則三年後定他役宗親功臣尉副尉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五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四

吏曹

工曹同○判書二參判參議各一堂下官各一○十一

戶曹

禮曹同○判書二參

判參議各一堂下官各一○十五

兵曹

判書二參判參議各一堂下官各一

刑曹

判書二參判參議各一堂下官各一

漢城府

判尹左尹右尹各一庶尹判官兼參軍各一○

十四 **司憲府**

大司憲一

開城府

畱守一○三堂下官

忠翊府

四

承政院

承旨各一

掌隸院

判決事一堂下官各一○二十

司諫院

大司諫一

經筵

檢討官以

成均館

大成一

訓練院

都正尚

瑞院

八 **宗簿寺**

正僉正主簿各一○補今屬宗親府

羅將

續今司憲府稱所由本曹刑曹都摠府典獄署稱使令司諫院稱喝導並自本曹給價

義禁府

判事知事同知事各二堂下官

兵曹

十二 **刑**

曹

續四十五

五衛都摠府

二十四

續

司憲府

大司憲二執義掌令

三員副勵
勇五員
江界都護府 鎮浦衛
副勵正各一員副勵果副勵正

猛各二員勵勇三員副勵勇五員

京衙前 原 一番數續原額數
○原典皂隸自外方選
大廳設行時盡罷為步兵而自京給

價雇立今各司通稱使令
○無米布衙門一年內
八朔宣惠廳給價四朔戶曹給價有米布衙門則

皆自該衙門給價

皂隸 宗親府 大君各四
一品公主各一王子君各三翁
主各一

各一○十五 **議政府** 議政各四贊成各二參贊各
一舍人檢詳各一○二十
使令下同

忠勳府 正一品君各二
二品已行議政者四從
一品君各一○十 **中樞府**

領事二已行議政者四判事各二
○十 **儀賓府** 各一品尉
知事同知事僉知事各一

品尉副尉 **敦寧府** 領事二已行議政者四判事二
各一○四尉知事同知事都正各一○六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四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三

尉副九品猛正九品
力徒尉副勵勇

咸興府 原永興府 鎮北衛 勵直副勵直各一員
勵副勵正各二員 勵猛副勵

猛勵勇各三員 **平壤府** 鎮西衛 勵直副勵直各一員
勵副勵正各二員 勵猛副勵

正副勵正各三員 勵猛副勵 勵勇各五員 **寧邊大都護府** 邊鎮
各四員 勵勇副勵 勵勇各五員

衛勵直副勵直各一員 勵果副勵果勵正副勵
各二員 勵猛副勵 勵猛各三員 勵勇四員 勵副勵勇五員

員 **鏡城都護府** 鎮封衛 勵直副勵直各一員 勵果
副勵果勵正副勵正各二員 勵副勵猛

副勵猛各三員 勵勇 勵副勵勇 勵副勵勇 勵副勵勇
四員 勵副勵勇五員 **義州牧** 鎮江衛 勵正副勵正各一員

勵勇二員 勵副勵勇三員 **會寧** 慶源都護府 懷遠衛
勵勇四員 勵副勵勇五員 勵副勵果副

勵果勵正副勵正各一員 勵副勵勇五員 **鍾城** 穩城富
副勵猛三員 勵副勵勇四員 勵副勵勇

寧慶興都護府 柔遠衛 勵副勵猛副勵副勵正副勵
各一員 勵副勵猛副勵副勵猛各二員 勵副勵勇

寧邊府 使兼

權管十八員

從九品 甲巖

續增置

雲頭里 乾川

於汀灘 廣平

大吉號

廟洞

里 小吉號里 坡兒 小吉號里

馬 軒洞 馬海

里 靛洞 大坡兒

小

萬戶 忿怪 續萬戶

平南 續萬戶

萬戶 續萬戶

從浦 續

降

監牧官一員

從六品 宣沙浦

續鐵山 劍使兼

別將七員

從九品 龍山城

續增置 保山 林土

白馬山城 慈母山城

續加 劍山

黃

補加 德池 西城 補加 減

土官職原

永興府 平壤府 驍依京中隊 卒 例仕滿加階去官亦授土官職

正五品 健忠隊 尉勵直從五品 勵信隊

正六品 健信隊 尉勵果從六品 勵信隊

正七品 敦義徒 尉勵正從七品 守義徒

正八品 奮勇徒 尉勵猛從八品 効勇徒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三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二

節制都尉十一員

從六品順安 ○ 平壤鎮管龍岡 甌

泰川 ○ 安州鎮管永柔 ○ 成川鎮管陽德 孟山

三登 江東 殷山 ○ 平壤寧邊安州義州江

續 並減州

水軍節度使一員

正三品 觀察使兼 ○ 原二

防禦使二員

從二品 宣川府使兼

僉節制使六員

從三品 ○ 宣沙浦鎮 老江鎮

宣川鎮 同僉 增 陸

巡營中軍一員

正三品 增置

鎮營將九員

正三品 增置 ○ 前肅川府使兼 右順

川郡守兼 別左龜城府使兼 從府使兼 別右嘉山郡守兼 別前龍川府使兼 別後

龍川鎮原同僉補陞 郭山鎮原同僉補陞○
 滿浦麟山方山碧團昌州高山里則以京職兼增
 今廢彌串鎮續加補改稱薪
 島屬水軍寧城鎮續加補革

同僉節制使二十員從四品○平壤鎮庶尹平壤續

陞○寧邊鎮管雲山熙川○安州鎮管肅川續

古城續加○成川鎮管德川价川慈山順

川續祥原○龜城鎮管安義續加補陞 西林續清江續

加增改○江界鎮管上土原萬戶續陞 柔院續

加○朔州鎮管天摩續加○楚山鎮管車嶺續加

○昌城鎮管恃寨續加○嘉山鎮管博川原屬寧

邊增補移○天水續加補革

萬戶十員從四品○江界鎮管伐登續加○朔州

江續加方山原僉節制續降加○義州鎮管玉

口續加○楚山鎮管山羊會續加○渭原鎮管吾

老梁續加○龜城鎮管植

松續加○楊下續加補革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二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一

別將二員

從九品 **續**增置。中嶺赴戰嶺。

平安道

兵馬節度使二員

從二品 觀察使兼

虞候一員

正三品 堂上 **原**從三品

評事

正六品 **原**一員 **續**減

防禦使二員

從二品 兼 **續**增置。昌城

江界府使兼

節制使一員

正三品 **原**義州鎮 **續**

僉節制使二十六員

從三品 渭原鎮

成川鎮

楚山鎮

江界鎮 碧潼 朔

鎮 寧遠鎮

麟山鎮

滿浦鎮 龜城鎮

安州鎮

碧團鎮

昌城鎮

昌洲鎮

朔

高山鎮

清城鎮

續加

阿耳鎮

委曲鎮

萬戶

屬碧潼

鎮 **續**加

牛峴鎮

都尉 **續**加

鐵山鎮

嘉山鎮

萬戶

屬碧潼

定州鎮

寧邊鎮

同僉 **續**加

鐵山鎮

嘉山鎮

同僉

同僉 **續**加

巡營中軍一員正三品增置

鎮營將六員正三品增置
甲山府使兼
右三水府
中永興府使兼
別中左

端川府使兼
後德源府使兼

衛將十員正三品增置
左鏡城判官兼
中茂山府使兼
右明

川府使兼
左鍾城府使兼
中使兼
右慶源

慶興府使兼

監牧官三員從六品增置
從九品
增置
小農堡
同仁
舊

權管十四員
從九品
增置
小農堡
同仁
舊

萬戶補降
仁遮外
雲龍原
萬戶補降
羅暖
鎮東
舊

原黃拓坡
安原
西水羅屬北道
伊補並革
增革自作仇非廟坡江口雙青黃土岐伊補並革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一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

三水鎮管知波知續加屬南道○鏡城鎮管明川原都尉
原萬戶屬鏡城續陞移○續陞屬

萬戶十二員原從四品○慶興鎮管撫夷阿吾地

鏡城鎮管朱乙溫續森森坡續加慶源鎮管阿山○
會寧鎮管豐山古豐山續加鍾城鎮管防垣○

○穩城鎮管永達○富寧鎮管廢茂山續加端
川鎮管梨洞續加○斜个洞斜下北玉連茂山續

並革神方仇非
魚面續並革

節制都尉四員原從六品○北青鎮管利原洪原

加原永興鎮慶源鎮會寧鎮鍾
城鎮穩城鎮北青鎮續並減

水軍節度使三員原正三品二南道北道兵馬

萬戶一員原從四品○北道管造山浦○南
道管浪城浦道安浦續並革

兵馬節度使三員從二品二南道北虞候二員正三品堂

上原一員北道續加評事一員正六品

防禦使一員從二品續增置○吉州牧

僉節制使二十五員從三品○甲山鎮安邊鎮

鎮原都尉曾陞北青鎮原都尉厚州鎮補加屬

南道○慶源鎮會寧鎮訓戎鎮鍾城鎮穩城鎮

慶興鎮富寧鎮訓戎鎮潼關鎮高嶺鎮

柔遠鎮美錢鎮吉州鎮都尉續陞加魚

津鎮續加茂山鎮續加屬北道○訓戎潼關高

同僉節制使七員從四品○永興鎮管定平高

大典會通 卷之四 三十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九

節制都尉十二員

從六品。原州鎮判官原州鎮管蔚珍。欵

蹄

橫城

原

洪川

○

鐵原

鎮管

楊口

原

屬

淮

陽

○

移

平康

原

屬

淮

移

安

原

屬

淮

陽

○

移

金化

原

屬

淮

陽

○

移

江陵

原

屬

淮

陽

水軍節度使一員

正三品。觀察使兼

僉節制使一員

從三品。浦鎮營將兼

萬戶一員

從四品。安仁浦高城浦蔚珍浦。並革

巡營中軍一員

正三品。增置

鎮營將三員

正三品。原府使兼。左春川府使兼。鐵

州牧使兼

右三陟

咸鏡道

安道

山府使兼後平山府
使兼○別中蘇山

監牧官三員

從六品○
川椒島會使兼海州登山會使兼豐

別將五員

從九品續增置○首陽山城九月山城
長壽山城增置○首陽山城大峴山城

兵馬節度使

一員從二品觀
察使兼

防禦使一員

從二品續增置○鐵原府
使兼續春川府使兼移

僉節制使三員

從三品○江陵鎮鐵原鎮同
僉增陞春川鎮同僉增陞○

原州鎮淮陽

同僉節制使十一員

從四品襄陽○江陵鎮管三陟
平海杆城高城

通川○原州鎮管旌善
鎮管淮陽原僉節制降

寧越平昌○鐵原
伊川原都尉續陞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九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八

節制都尉九員

從六品。黃州鎮管新溪。免山。文化。長連。海州鎮判官海。

州鎮管松禾

殷栗。康翎。長洲。都尉。江陰牛峯。並革黃州。

水軍節度使二員

正三品。一觀察使兼一。虞候一員。增置兼。倉津府使。

正四品 補增置

僉節制使二員

從三品。白翎鎮。所江鎮。板島鎮。同僉。所江鎮。水使。

同僉節制使四員

從四品。許沙浦。白翎鎮。所江。萬戶屬所江。

移。龍煤梁。吾義浦。萬戶屬所江。移。龍煤梁。吾義浦。萬戶屬所江。

萬戶一員

從四品。廣巖梁阿郎浦。泥浦。加。白翎鎮管助。泥浦。加。

巡營中軍一員

正三品。增置。堂。

鎮營將五員

正三品。增置。前鳳山郡守兼。右谷。豐川府使兼。中安岳郡守兼。

監牧官五員

從六品。○補興陽。順天。羅州。珍。島。○補濟州。荏子島。僉使兼補革。

別將七員

從九品。○補增置。○黑山島。古突山。威。鳳山。城。笠巖山城。金城山城。南固。

山城補加。格浦補革。所安島。

黃海道

兵馬節度使二員

從二品。一補觀察。虞候一員。從三品。補

僉節制使一員

從三品。○黃州鎮。○海州鎮。補減。○補蘇山鎮。補減。

同僉節制使十六員

從四品。○鳳山鎮。管平山。瑞興。○黃州鎮。管平山。載寧。

遂安。東里補加。谷山。信川。文城。補加。善積補加。○海州鎮。管。

延安。白川。豐川。金川。補移屬開城府。

萬戶三員。從四品。補增置。○黃州鎮。管文山。所已。位羅鎮。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八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七

屬臨淄島續陞同僉屬續蝟島續僉節制續降屬古羣山補陞屬右道補陞

同僉節制使三員從四品續增置○蛇渡鎮管防

里浦鎮管
古今島

萬戶十五員從四品○鹿島續加
蛇渡鎮管會寧浦呂島

浦木浦智島續加
於蘭浦原屬臨淄島續移馬島

源屬蛇渡續移金甲島原屬臨淄島續移梨

津續加○蝟島鎮管毛浦原屬臨淄島續移屬古

羣山補移○濟州鎮管明月浦

巡營中軍一員正三品續增置

鎮營將五員正三品續增置○前順天補府使兼

後礪山
府使兼

萬頃

沃溝

山

泰仁

羅州

鎮管咸平

龍安

高敞

茂長

高南

平

務安

南

鎮管任實

昌平

長水

谷城

鎮安

鎮管

龍

津

海

順

鎮管光陽

珍原

求禮

興

鎮管

康

州

並減

水軍節度使三員

正三品二左道右
觀察使兼

虞候二員

正四品左

道右

防禦使一員

從二品增置
濟州牧使兼

節制使一員

正三品
濟州鎮

僉節制使七員

從三品
島鎮加里浦鎮屬左道
臨淄

鎮同僉

法聖浦鎮萬戶屬臨淄
萬戶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七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六

架山山城補加 金井山城補加 豐德
浦增 草浦項新門舊所非浦晴川補 並革

全羅道

兵馬節度使二員

從二品一 觀察使兼

虞候一員

從三

節制使一員

正三品 濟州鎮減

僉節制使四員

從三品 羅州鎮 順天鎮

長興

同僉節制使十九員

從四品 古阜

全州鎮

益山 珍山

原 礪山

補 羅州鎮

光州 靈巖

淳昌

靈光

長城

都尉 順天鎮

管樂安

寶城

綾州

靜州

茂朱

原 都尉

補 旌義

節制都尉三十三員

從六品 全州鎮

判官

全州 扶安

浦續加○加德鎮管天城浦續加安骨浦原屬
薺浦增移薺浦原僉節制續降屬彌助項增移

助羅浦原屬薺浦增移玉浦原屬薺浦增移
知世浦原屬薺浦增移加背梁續加○彌助

項鎮管平山浦原屬薺浦增移
增移唐浦原屬薺浦增移永登浦原屬薺浦增移

丑山浦增並革薺浦京職兼今廢
增移○烏浦鹽浦續並革甘浦叅浦

巡營中軍一員正三品增置

鎮營將六員正三品增置○前安東左尚州
中大丘續增置○金海府使兼右晉州

慶州後

監牧官三員從六品○續晉州蔚山
東萊多大浦僉使兼

權管二員從九品增置○栗浦三千浦
○所非浦續尚州浦曲浦增並革

別將八員從九品增置○長木浦南村金烏
山城續增置○鳥嶺山城續鑿津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六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五

並減

水軍統制使一員

從二品
續增置

中軍一員

從二品
續增置

虞候三

品堂上
續增置
補革

節度使三員

正三品
○二左道右道
一兼右道
統制使兼

觀虞候一

員

正四品
○左道右道
續右道
統虞候兼
補陞中軍

僉節制使四員

從三品
○釜山浦鎮
續陞同僉
增陞屬左道

○多
大浦鎮

加德鎮
續加
彌助
項鎮
續加屬右道

同僉節制使二員

從四品
西生浦

續增置

○釜山浦鎮
管
續陞
○加德鎮

管龜山浦
○彌助
項鎮
管
赤梁
原萬戶
續陞
補革

萬戶十五員

從四品
雲浦

原

釜山浦鎮
改

管豆毛浦
西平

開

鎮州鎮金海鎮善山鎮原同僉增鎮原星

同僉節制使二十四員從四品慶州鎮原管蔚山

管寧海青松醴泉原榮川原豐基原順興續

加尚州鎮管金山晉州鎮原管原陞原都尉原陞原巨濟原都尉原

陞大丘鎮管密陽清道原仁同原都尉原漆谷增加東萊鎮管梁山屬慶州補移陞

節制都尉三十九員從六品慶州鎮原管清河

鎮管義城奉化真寶原軍威原比安原禮安

知禮高靈聞慶原咸昌原晉州鎮原管泗川

南海三嘉宜寧原山清原安義原丹城原金

官鎮管漆原鎮海固城原熊川原大丘鎮原判

新寧靈山昌寧原慈仁原加東萊鎮管機張原屬慶州補移慶州安東尚州晉州星州續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五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四

萬戶一員

從四品

唐津浦波知島

舒川浦

巡營中軍一員

正三品

增置

鎮營將五員

正三品

增置

前洪州右公州

左海美縣

監牧官

從六品

平薪僉使兼

瑞山

別將一員

從九品

置元山



兵馬節度使三員

從二品 二左道右

虞候二員 從三品

道右

節制使一員

正三品 慶州鎮屬左道

僉節制使七員

從三品 安東鎮屬左道

東萊鎮 原都 晉州

安沃川 報恩 都尉 陞 公州鎮管 林川
韓山 洪州鎮管 舒川 陞 公州鎮管 汜川
溫陽 大興 都尉 陞 瑞山 泰安 汜川

陞 德山 都尉 陞 續

節制都尉三十六員 從六品 忠州鎮管 延豐
陰城 永春 堤川 清州

鎮管 稷山 木川 文義 懷仁 清安 鎮川
永同 黃澗 青山 公州鎮判官 公州鎮管

全義 定山 恩津 懷德 洪州鎮管 連山 魯
城 扶餘 石城 燕岐 洪州鎮管 平澤 鴻

山 青陽 庇仁 結城 藍浦 保寧 牙山
新昌 禮山 海美 唐津 忠州 清州 洪州

減 並

水軍節度使二員 正三品 觀察使 兼 一 虞候一員 正四品

僉節制使四員 從三品 平薪鎮 所斤浦鎮 馬梁鎮 革
平薪鎮 加 安興鎮 加 革

屬水營 補 還 置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四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三

鎮營將四員

正三品續增置○前廣州府尹兼續減
左南陽府使兼中楊州牧使兼

別中水原府使兼續減右長
湍府使兼後竹山府使兼

監牧官五員

從六品續原續有牧場守令兼諸道同○續
江華續草芝僉使兼水原南陽

仁川永宗僉使兼
長峯島萬戶兼

別將八員

從九品續增置○文殊山城臨津渡
三田渡楊花渡露梁渡漢江渡

長山續加
船頭堡續加



兵馬節度使二員

從二品一續虞候一員從三
觀察使兼

僉節制使三員

從三品○忠州鎮清州鎮
洪州鎮○公州鎮續減

同僉節制使十五員

從四品○忠州鎮清州鎮管風
丹陽品○槐山○清州鎮管天

南陽鎮管振威原屬水原補移陽川原屬水原

龍仁原屬水原補移始興原屬水原

陽城原屬水原補移長湍鎮

廣州原屬水原補移並減

水軍統禦使一員從二品罷水使江華畱守兼補水軍節度使兼

節度使二員正三品觀察使兼原二員一觀察

防禦使一員從二品增置永宗兼僉

僉節制使三員從三品積鎮德浦鎮增置永宗

同僉節制使二員從四品管花梁注文島增置德浦

萬戶一員從四品德浦鎮管長峯島續加永

巡營中軍一員正三品堂增置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三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二

同僉節制使十六員

從四品原
驪州鎮管利川原屬廣州

補移 楊根原屬廣州
鎮管富平原屬水原補移

屬廣州補移 南陽鎮管富平原屬水原補移

仁川原屬水原補移 通津原都尉補移屬水原補移

城原屬水原補移 陞屬水原補移○楊州鎮管

移 金浦原都尉補陞屬水原補移○都尉補陞

高陽 交河原都尉補陞屬水原補移○都尉補陞

永平原都尉補陞○長湍鎮管朔寧麻田○月

串鎮管草芝梁原水軍萬戶補移兵馬增陞○豐

德補 草 增置○月串鎮管濟物梁原

萬戶六員 從四品補 增置○月串鎮管濟物梁原

德津續加 昇天堡補加

井浦原水軍續革補還置移

節制都尉十二員 從六品原 並守令帶諸道同○

陰竹原屬廣州補移 驪州鎮管砥平原屬廣州補移

果川原屬廣州補移 楊州鎮管抱川積城○

將一體施行○外職相換勿為通計前仕邊將則通計

○兵水使未肅拜而逝者勿許履歷

京畿

兵馬節度使一員從二品 觀察使兼

防禦使一員從二品 兼增置○坡州牧使兼續長

使續兼 補並減

節制使正三品 增置○廣州節制 增置 陞 補 革

僉節制使十員從三品 原 並守令 帶諸道同 楊

月串鎮原水軍 續移 坡州鎮 同僉 增 陞 南陽

鎮原同 僉 補 陞 白 峙 鎮 屬

黃州補 移 陞 長 串 鎮 補 加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二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一

禦使為統禦營左右海防將

正宗己亥置水使兼統禦使

○邊地及營將瓜前謀逋者履歷勿施

遭故未準

邊地滿十五朔而逋者許用履歷貶下及邑鎮事罪罷雖瓜勿施○特教除拜往逋者履歷稟旨

施行○諸道中軍並自本曹差出而京畿大興江華

咸興平壤中軍履歷與營將一體施行○堂上虞

候雖陞嘉善勿逋通統制使依摠戎使例以外登

壇施行當宁乙丑○統虞候改稱統制中軍以曾經兵

使人擬差統禦營置中軍○北道邊地必以曾經

訓正或將家子弟差送○江原黃海中軍平安兵

虞候咸鏡南北虞候上土加里浦僉使履歷與營

資級以他罪見十朔前則雖病逝亦收資資營將

未準朔亦收資開○營將邊將雖罪罷面看交

代兼營○營將十五朔以前毋得遷轉新資營

以除拜日子計之舊陞資營將十朔前勿許遷轉

遷補新資營將十朔後許擬邊地二十朔前毋得內○邊地僉使周年內勿擬他職○江界三水甲

山邊將以宣薦人差除待準朔陞遷京職曾西北

外諸道兵使以已經水使人備擬南兵使則以曾

經兵使人擬差黃海○武臣經承旨則雖未經

防禦使直通閩望未經邊地則以邊地履○罷京

畿水使以江華鎮撫使兼統禦使以喬桐永宗防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一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

節制使僉節制使稱巨鎮同僉節制使萬戶都尉

稱諸鎮○僉節制使萬戶以試武藝者差之武科兼司

僕內禁衛不在此限○已行僉節制使萬戶者雖未經守令

加階續宣祖朝慶尚道置統制使統慶尚忠清全

羅舟師黃海道置兵馬節度使○仁祖朝諸道置

鎮營將兼討捕使京畿江原咸鏡平安道置防禦

使以守令邊將兼京畿置統禦使統京畿黃海忠

清舟師○節度使以曾經邊地守令及防禦使者

通擬○節度使統制使各其境內交龜○陞資拜

營將者瓜滿前以不職逋罷勿計朔數多少還收

雜職階原 正六品奉任校尉修任校尉從六品顯

功校尉迪 功校尉正七品騰勇副尉從七品宣勇

副尉正八品致力副尉從九品勤力副尉

破陣軍原 勤事從七品從事從八品廢 **隊率彭排** 隊長

品隊副從九品 **軍** 從九品 **補** 正十一從八品領六十三

各營軍士 續旗摠正八品隊長 **騎步兵** 續旅帥從

從九品 **承文院諸員** **校書館唱準** **圖書署書員** 續領

品

外官職原 節度使虞候評事仕滿七百二十未挈家

僉節制使萬戶則九百乃述 **評事** 周年營將中

別將烏嶺別將權管二十四朔 **節度使稱主鎮**

大典會通 卷之四 二十

大典會通

卷之四

十九

忠壯衛將

續

三員從二品或正三品差出分番入直

忠翊衛將

續

三員同忠壯衛

空闕衛將

續

景福宮慶德宮昌慶宮假將各三員同各衛入直空闕

○空闕假衛將除假字作為速兒以觀象監司譯院寫字官畫員堂上以上人通融擬差

儀仗庫

續

掌各殿儀仗郎廳二員部將例兼

四山參軍

增

九品從掌四山禁松都城監役官四員分掌

道蔭官初仕受遞兒軍職祿仕滿九百陞六品
罷監役官為參軍以宣薦出身擇差東西南北各
一員分掌都城內外山西道屬訓局東道屬御營
南道屬禁營北道則屬摠廳而以本廳哨官中宣

薦人兼差專管外山並
仕滿三十朔陞六品

雜職

續

承文院諸員三人領職除授校書館唱
澤印書時畫員詣闕別畫時領職除授

大典會通

卷之四

十九

主簿以上隨品例付參外加設部將例付依元部
 將例仕滿陞六品○經閫帥則減下○**增**經亞將則
 減下○登科則陞六付訓鍊主簿○士夫隨品至
 知事中庶毋過同僉樞罷散則自本曹移文戶曹
 付散料解由勿拘**補**參外仕滿不待大政陞六品
 ○新除例兼職口傳單付○久勤西銓遷轉今廢
內司僕寺**續**掌內殿御乘九品通兼一司僕寺正例
 兼原典見於番次都目兼司僕下註今員數無加
 減而別作內寺○慶熙宮移御時加出一員○參
 外仕滿六百陞六品
補堂下實職施行
能**慶****覓****聽****續**掌諸將官兵書考講勸課一堂上三員內
 正例兼郎廳四員內二員訓鍊習讀例兼參外仕
 滿一千三百五十考講陞六品**增**英宗朝乙酉合
 付於訓鍊院三軍門中軍例兼堂上郎廳二員以
 中庶中年滿三十人差出**補**例兼郎廳一員作六
 品窠以參外
 前銜人甄付

大典會通 卷之四

十八

十二教鍊官八旗牌官三十六堂上軍官五十軍官二百五十

鎮撫營

續

江華府增肅宗朝庚辰置正宗朝己亥合統禦營補己酉統禦營還屬水營

使一員

從二品留守兼

中軍一員

正三品兼修城將

鎮營將五員

正三品前富平府使左通津府使中本府中軍右豐德府使後延安府使兼補豐德革今仁川府使

增

從事官一員

兼經歷

千總四把總十哨官六十三

教鍊官十旗牌官七十一軍官十五

散職

別軍職廳

續

自堂上至九品。孝宗朝以潛邸軍官陪往瀋陽者八人區處設廳世稱八壯

士其後漸增無定額。每都日久參兩銓各一人遷轉。○堂上以上加設僉知例付參上加設訓鍊

正三品城機別將正三品續一員增減哨官五員
從九品教鍊官十旗牌官六十軍官四十三勸武
軍官五十增以境內士夫勸入移屬軍官二百五
十續二百九增十增減四十付料軍官二十七續三
百三十六增
減三百九

使一員正二品兼補中軍一員正三品鎮營將三員正三品

品前本府判官中楊州別將二員驪州牧使兼把
牧使後竹山府使兼

摠二哨官二十六教鍊官十七旗牌官十九別軍

官九守堞軍官六十一

管理營續開城府增肅宗朝辛卯置

使一員從二品兼中軍一員正三品留鎮增從事官

一員兼別將一千摠三百摠四把摠六哨官三

大典會通 卷之四 十八

大典會通

卷之四

十七

別軍官一百守堞軍官十二別驍士二百

守禦廳續

仁祖朝丙寅改築南漢山城仍設廳節制廣州等鎮軍務

號以留守出鎮南漢庚午復設京營還稱守禦使號以府尹兼副使乙亥革副使號依前稱府尹英

宗朝庚午又罷京營出鎮南漢稱留守罷府尹置經歷已卯還置京營復稱使府尹亦還置

守乙卯罷京營出鎮南漢稱留守

使一員從二品中軍一員從二品別將二員正三品千總一員正三品

從四品從事官從六品續二員續減一員把總三員從九品續十六員三宣薦人二西北人一禁軍一

山城人續減四員一宣薦禁軍一西北人一禁軍

五前銜開散四山城人教鍊官七續十○一禁軍

軍一行伍陞差三出身五前銜開散續減三○一禁軍
十五守城將一員廣州府尹例兼留營別將一員

中將一人自本曹稟旨權察擬差

各大將一員從二品各從事官三員從六品各一員

鍊院官兼增宣傳官亦各部將四無料部將二十

六加設部將十二分屬江門外禁軍

摠理營補水原府。正宗朝癸丑陞府使為留守兼

稱摠理使

使一員正二品中軍一員正三品兼華寧殿從事

官一員判官別驍將二員正三品把摠十二員從四品

振威龍仁安山果川始興等邑守令斥堠將一員

迎華道察訪兼哨官二十五員從九品教鍊官八知設官十

大典會通

卷之四

十七

大典會通

卷之四

十六

守門將十八員參軍三員分屬各番○內禁衛一
番將以防禦以上備擬各番將曾經守令及外將

勤擬○正領久
勤出六今廢

別將一員從二品將六員正三品兼司僕將二內禁

員補減內堂上軍官十六增一別付料兵房曾經

禁衛將一皆屬本曹教鍊官十四增四禁軍八閑

判書而五分屬別將增散二行伍陞差

監閑散減一別付料軍官一百二十增西北別付

身閑良分半各試取四十人各置付料十窠逐朔
試射從矢數付料非邊地混許入屬者本曹判書
及該帥臣施以制書有違律補清南

捕盜廳續掌緝捕盜賊奸細分夏夜巡左右兩廳原

大將兼帶總管則遞總管○軍官久勤遷轉增陵
幸時時任兩捕將隨駕則以時原任將臣在京人

官三堂上別付料軍官一

龍虎營

續

禁軍廳○原典後以兼司僕內禁衛羽林衛合七百為一廳分七番每番三正九領

掌陪扈入直本曹判書統領○宣傳官取才出身

四折衝嘉善不遞仍屬○七番內駕後禁軍五十

抄選動駕時侍衛增英宗朝乙亥改稱以龍虎營

別將依前稱禁軍別將○火砲禁軍二十七內十

本營標下出身五標下軍陞差六軍器寺別破陣

二訓局別破陣二禁衛營別破陣二御營廳別破

陣○正宗朝丁酉內禁衛一以宣薦人入屬

宣薦武弁中出身閑良取才充額過六朔後始許

擬職或因事見汰則除取才直為口傳重來者準

大典會通

卷之四

十六

領久勤三十朔出六補純祖朝癸巳減內禁衛一

百今為六番○宣傳官取才加五員部將取才加

十五員○火砲禁軍本營標下出身減二今為二

十五○宣傳官十四員武兼十二員部將十五員

大典會通 卷之四

十五

料軍官二十城門部將三已上自經

經理廳續肅宗朝辛卯築北漢山城壬辰設廳
句管山城事務增今革屬摠戎廳

都提調一員正一品領議政兼察提調一員從二
品以備局堂上兼差欽管城將一員正三品欽把

摠一員從四品郎廳一員從六品欽以備局郎廳兼
差欽哨官五員從九品軍官四欽旗牌官五軍官

十一料射軍官二十各
色軍官三城門部將三

扈衛廳續官各三人仕滿二十朔陞六品四十五朔
仁祖癸亥初設掌扈衛○所任軍

久勤每都日通三廳首久勤一人遷轉增正宗朝
丁酉合為一廳只抄軍官三百五十分番入直補

久勤遷轉
間二都日

大將一員正一品續三員時原任大臣國舅中別
兼增減二員雖大臣非勲戚勿兼

將三員正三品軍官三百五十增減七百所任軍

四員增哨官十員從九品續二十員三宣薦人二

減二員增哨官陞差增減十員一宣薦禁軍一扈衛軍

水原哨官陞差增哨官陞差一北漢鍊戎臺人五

官一禁軍一水原哨官陞差一北漢鍊戎臺人五

閑散增教鍊官十五續十二增一禁軍一水原坡州執事輪差

出身增教鍊官十五續十二增一禁軍一水原坡州執事輪差

銜閑散增加三增一禁軍一水原坡州執事輪差

一北漢鍊戎臺人二行伍陞差一壯勇衛九前銜

閑散補一武藝別旗牌官二續行伍軍官十續十

監補壯勇衛今廢旗牌官二續行伍軍官十續十

減一補本廳軍官三補別付料軍官二補監官二

減四補本廳軍官三補別付料軍官二補監官二

減五增水門部將一閑良軍官一百五十續三百

五續京一百五十水原補水增北管城將一員正

原增一百五十設營後移去增漢管城將一員正

品把摠一員從四哨官六員從九教鍊官四旗牌

官五守堞軍官摠二軍器監官一所任軍官三付

大典會通

卷之四

十五

大典會通

卷之四

十四

續二十二○十屬中軍增加八○四行伍出身八
行伍前銜十七行伍陞差一壯勇衛補一武藝別

監○壯勇軍官三十八續四十一○五屬都提別軍
衛今廢補調增加一補減三

官十勸武軍官五十駕前別抄五十二續五十動
駕時侍衛

增加騎士一百五十增罷宿衛
騎士增置

摠戎廳續仁祖朝甲子朔設節制水原等鎮軍務增
英宗朝丁卯罷經理廳以北漢管城將以

下屬之本廳庚午又兼京畿兵使出鎮于鍊戎臺
庚辰罷出鎮減兵使○管城將依南漢畱營別將

例毋論資級尊卑擇人自辟餉還未畢捧前勿許
遷轉以周年為限補水原設營後節制水原鎮軍

務今廢○憲宗朝丙午改
稱總衛營已酉復舊設廳

使一員從二品中軍一員從二品千摠二員正三品鎮營

將三員正三品補前南陽府使中把摠二員從四品續
坡州牧使後長湍府使兼

員從二品中軍一員從二品別將一員正三品員減一員千

摠五員正三品別後部千摠一員正三品宗僉使兼永騎士

將三員正三品把摠五員從四品外方兼把摠十員從四品

品軍威居昌清安藍浦鎮安古阜於川積城從事
長連伊川等邑守令例兼補於川今移陽智

官二員從六品文哨官四十一員從九品續四

一禁軍一別抄三扈衛軍官二西北人增減四員
七宣薦禁軍二禁軍三扈衛軍官三騎士二別抄

二西北人一嶺南左別武士都試居首人二十一
前銜閑散補二嶺南左別武士都試居首人二十一

士今教鍊官十二旗牌官十一續十○二屬千摠
廢禁軍一別抄四

行伍陞差六出身八前銜閑散增加一○二屬千
摠三禁軍二別抄五行伍陞差五出身一壯勇衛

一壯勇衛牌頭與禁營輪差四前銜別武士三十
閑散補二武藝別監○壯勇衛今廢

大典會通 卷之四 十四

大典會通

卷之四

十三

閑散增減二〇二屬千摠三禁軍四行伍陞差一壯勇衛一壯勇衛牌頭與御廳輪差十一前銜閑散以上續增分排之數並計教鍊官御營廳同補二武藝別監行伍加一閑散減一〇壯勇衛今廢

別武士三十續十五屬中軍增五別騎衛一壯勇衛補十行伍陞差十四前銜閑散補別

壯勇衛加一廢〇軍官五屬都別軍官十勸武軍官五

十騎士一百五十增罷宿衛別騎衛三十二增並

身出

御營廳續仁祖朝甲子始置御營使孝宗朝壬辰始設軍營肅宗朝丙戌改以一營五部之制

〇駕前別抄武士依駕後禁軍例久勤調用增別抄合計六朔矢數依禁軍例分兩等移文本曹受

祿遮兒

都提調一員正一提調一員正二品本曹大將一

大將如御
營廳例

都提調一員正一品 提調一員正二品 曹判書例兼 大將一員

員從二品 書例兼 別置 中軍一員從二品 別將一員正三品

品 千摠四員正三品 騎士將三員正三品 把摠五員從四品

品 外方兼把摠十二員從四品 實大興鎮川坡州龍山任

安金川金化金城等邑守從六品 從事官二員從六品 武各一

哨官四十一員從九品 禁軍四扈衛軍官二西北人 減

四員七宣薦禁軍四禁軍三騎士取才陞差一嶺南左別武士都試居首人四扈衛軍官二西北人

二十前衙閑散取 教鍊官十二正五品 十

七屬禁軍 旗牌官十正四品 行伍陞差七出身九前衛

大典會通 卷之四 十三

大典會通

卷之四

十二

從事官四員

從六品一員文二員陰三員戶曹別營色郎兵曹武備司郎本局把摠例

兼員減

哨官三十四員

從九品五宣薦人二西北其餘並以有履歷前銜

差出

漢人

知設

館

二宣部薦取才

馬軍別為一

知設官十旗牌官二十

行伍壯營移來

哨設置哨官

別監

別武士六十八

行伍陞差

屬左右別將四分屬左右千摠

軍官十七

屬

都提調

別軍官十勸武軍官五十局出身

百五十

別設一廳尋增二十廳號壯勇取才規矩

詳原典

補壯

禁衛營

肅宗朝壬戌減訓鍊軍摠以其中部別隊及本曹精抄軍合設

摠禁營槍劍把摠滿二十四朔加資挾輦槍劍哨
官御廳中哨官滿三十朔六品職遷轉○各營
把摠武從事官並作實職無瓜限○局別將
二周年遞○騎士將之禁軍將履歷今廢

訓練都監

續

宣祖朝壬辰後勅設○把摠以堂下三
品擇差每都目兩銓遷轉○哨官知穀

官旗牌官仕滿六百陞六品他軍門同○馬步軍
兵出身作隊稱以別騎隊屬於左前哨以曾經牧

府使者擇差哨官領率^增局別將勿論堂上與嘉
善以曾經邊地防禦使堂上宣傳官者通擬津朔

則右職調用^補右職調用今廢○^{糧餉廳}宣祖朝
癸巳勅置掌訓局軍兵服色器械造繕等事都提

調一員訓練都監都提調兼提調三員戶兵曹判
書訓練大將兼從事官一員戶曹別營色郎兼

都提調一員正一品 **提調二員**正二品戶兵
曹判書例兼 **大將一**

員從二品 **中軍一員**從二品 **別將二員**正三品
千摠二員

正三品 **局別將三員**正三品領率行 **把摠六員**從四
品伍出身作隊

大典會通

卷之四

十二

大典會通 卷之四

濬源殿守門將一員從九品

華寧殿守門將二員從九品

軍營衙門

續

增置

職人

諸將校差下勿拘貶下及罷

內勿許遷轉積仕人出身故防後復入該衙門

者通計前仕教鍊官旗牌官赴勿論出身前衙門

雖有出身射講陣三技並試選取而禁軍行伍額中

例兼東南關王廟堂上三營郎廳改稱從事官

○各軍門別將千總騎士將扈衛別將依內禁將

官及從事官皆自該營備三望移送本曹入啓將

○**補**填差履歷一體施行各營教鍊官毋得以白徒

○將官勿拘罷散擬差代給散料則經局挾輦把

左右長史各一員從六品左右從史各一員從七品

守門將廳 **增** 掌守衛闕門續原典無定官以西班四

正職置員設廳受點入直○五窠以中庶許通○

一窠每都目禁軍中薦取才者捷差○參外仕滿○

四百五十陞六品增參外二窠禁御兩營騎士

中有薦入從久勤擬差補參外仕滿七百二十

各殿守門將 **補** 肇慶廟慶基殿濬源殿守門將以本

望移送本曹入啓華寧殿守門將以水原哨

肇慶廟守門將一員從九品

慶基殿守門將一員從九品

大典會通 卷之四

十一

大典會通 卷之四

十

臣兼二員從六品續五員增減三 武臣兼五十員

參上三十八員從六品參下十二員
從九品補參上四十員參下十員

正五品衙門

世子翊衛司原掌陪衛東宮增入直一員隨參講對參下仕滿九百陞六

左右翊衛各一員正五品左右司禦各一員從五品左

右翊贊各一員正六品左右衛率各一員從六品左右

副率各一員正七品左右侍直各一員正八品左右洗

馬各一員正九品

從六品衙門

世孫衛從司續掌陪衛世孫增入直一員隨參講對參下仕滿與翊衛司同

宣傳官廳增掌形名啓螺侍衛傳命出納符信等事

續

原典番次都目只有八員後為正職增員設廳

○親功臣子除取才○有八員後為正職增員設廳

本品○參外二窠武臣兼參外一窠每都目禁軍

中薦取才者擬差○參外並仕滿七百二十陞六

品增無論堂上堂下四窠作為承傳岐六朔後遷

轉堂上則若未經邊地防禦使者津朔後即除邊

地防禦使已經防禦使者即擬水使參上則以六

品來者五品施行直擬四品每品皆加一階若已

經外三朔出六○或行首虞侯則即除堂上職參下則

津議副學已通人擬差將薦經聞任者亦擬補文

宣傳官二十五員

原八員續二十一員內一員正

員參從九品內南行二員增行首一員參上六

大典會通

卷之四

十

大典會通

卷之四

九



本曹備擬主簿而無薦人毋得混舉判官以已經
主簿人擬望僉正以已經判官人擬望每都目遮

減遮付僉正則非宣薦人毋得擬差○主簿三窠
內禁御兩營各每都目一窠訓局間都目一窠守

摠兩營各間三都目一窠既既有軍門元料祿不疊
受補知事文將臣通融備擬○都正曾經首亞將

兼都正將臣外毋得檢擬○正經守令或兵虞候
通擬未經宣傳官雖別薦勿擬關王廟親祭時文

各間都目○加設主簿一窠守禦廳出鎮訓摠兩營
知事一員他正二品以

都正二員以正三品一員正一
員正三品副正二員從三品僉正十二員從四品原二

員正三品副正二員從三品僉正十二員從四品原二
員加判官十八員從六品原二員續加十員主簿三十八

員從六品原二員續加二十員加參軍二員正七奉事二員
員從六品原二員續加二十員加參軍二員正七奉事二員

員從六品原二員續加二十員加參軍二員正七奉事二員
員從六品原二員續加二十員加參軍二員正七奉事二員

從八品

訓練院 **原** 掌軍士試才鍊藝武經習讀之事習讀官三十員

與祿官權知習讀兵要武經七書通鑑將鑑博議
陣法兵將說或習射御本院堂上官同兵曹都摠
府堂上官各一員每朔考講給分數歲抄通考優
等者毋過三人啓聞敘用○並用武官正陞堂上
官副正以下主簿以上一員文臣參軍以下又以
軍器寺直長以下四員兼次次遷轉與權知和會
一年兩都目三員去官正曾經內外三品後通
擬○參外官用其次第分屬軍器寺由參奉副奉
事奉事直長而陞六品又由參軍陞直長一年兩
都目每一人去官○權知病滿三十日及呈辭過
限者實官除授時越一次過一年者越二次過二
年以上者越三次○主簿一窠各軍門哨官宣薦
陞六品者擬差增知事正二品三望之人則以從
二品啓稟並擬○正雖未經內外三品別薦不次
之人勿拘○權知奉事四十六人計仕陞差每都
目兩銓各一人久勤遷轉本院首仕一人去官主
簿○加設僉正一窠判官一窠主簿三窠以各軍
門有薦哨官十二朔仕滿能通講陣者備三望報

大典會通

卷之四

九

大典會通

卷之四



一議政府醫員一
 中樞府醫員一
 忠勳府醫員一
 六曹醫員一
 製述官一
 觀象監習讀二
 命課學教
 授二
 禁漏官一
 禁軍一
 司勇二十四員
 正九品
 原百三十二
 忠義衛三

續減十八員
 副司勇四百六十員
 從九品
 原一
 並原祿
 遮兒

九員
 續減一千三百五十八員
 補減一百二十一
 員
 原祿
 遮兒一百五功臣
 嫡長二十
 武臣兼十

九未挈家守令邊將二十一
 司譯院譯官十八
 觀象監習讀四
 訓練院習讀二十二
 權知參軍四
 校

書館補字官一
 唱準十一
 惠民署治腫一
 守門將
 七宗親府醫員一
 弓房司鑰二
 禁軍二百二十四

兼司僕將

原

三員從二品
 以他官兼
 續正三品
 二員屬禁軍廳

內禁衛將

原

三員從二品
 以他官兼
 續正三品
 屬禁軍廳
 補二員

羽林衛將

續

二員正三品
 增不載於原典
 只見於續
 典小註與兼司僕內禁衛並稱內將同

屬禁軍廳

員二典醫監習讀一觀象監習讀一惠民署聰敏
一治腫一守門將一捕盜軍官十八禁軍八十三

忠義衛二禁漏官一律學一
永禧殿監一奎章閣監二
司正二十員正七品

續加十五員
副司正二百五十員從七品
並原祿通兒百九員
減

六十員補加一員
功臣嫡長六宣傳官一武臣兼十一訓鍊都監軍

兵六禁衛營軍兵一內醫院醫員二吏文學官一
司譯院譯官二觀象監習讀三禁漏官一訓鍊院

習讀一權知參軍二奉事二十六畫員一典醫監
醫員一守門將三通禮院兼假引儀六捕盜軍官

十二禁軍一百十五衛將三
訓鍊院僉正二判官四主簿六
司猛十五員正八品

十六員續減一員
副司猛二百八員從八品
並原祿通兒百八十三員

續減二百七十員補減五員
宣傳官四武臣兼八未挈家守令邊將四吏文學

官二司譯院譯官八訓鍊院權知參軍二畫員一
者老所藥房一通禮院兼假引儀六宗親府醫員

大典會通 卷之四

大典會通 卷之四

七

院醫員四寫字官一捕盜軍一司直十一員正五品

官五禁軍十三統制中軍一員原十員原十四員原減三員原○副司直一百二員從五品原一百員原並原祿遞兒

二十員補加二員原祿遞兒十七承襲君三功臣嫡長七未挈家守令三訓練都監將官六軍

兵四禁衛營將官五內醫院醫員六寫字官一司譯院譯官七觀象監述者一捕盜軍官十二禁軍

三司果二十一員正六品原十五員補加部將二員原並原祿遞兒

十五員從六品原二十五員內參外十四員南行參外一員○五衛罷後移付內三廳○參

外官受八品祿仕滿六百陞六品參外一員南行參目禁軍中薦取才者擬差補參外十一員南行參

外一員從九品仕滿副司果一百八十三員從六七百二十陞六品原

一百七十六員補加一員補加六員原祿遞兒三十五親功臣五承襲君二功臣嫡長七訓練都

監軍兵六禁衛營軍兵一內醫院醫員二寫字官一吏文學官一司譯院譯官一訓練院習讀七畫

續今五衛兵制盡罷獨存官名將及部將分番入直巡更護軍司直司果司正司猛司勇屬軍銜
通兒減其祿窠以待各色人員陞降來付者
增軍職通兒祿一年分四等以四季朔陞降祿都日啓
 下後具錄受祿人
 職姓名移文戶曹

將十五員 **原**從二品以他官兼 **續**正三品二員稱
 曹司 **增**曹司以文臣差 **補**一員文臣一

員文蔭武通差 **原**
 十二員 **補**加三員 **上護軍八員** **續**正三品 **原**九員
 祿通兒二宣傳官一寫字 **大護軍十二員** **原**從三品
 官一製述官一禁軍三

員 **續**減二員 **原**祿通兒二親功臣五功 **護軍四**
 臣嫡長二南虞候一宣傳官一寫字官一 **護軍四**
 員 **正**四品 **原**十二員 **續**減 **副護軍六十九員** **原**從四

員 **正**四品 **原**十二員 **續**減 **副護軍六十九員** **原**從四
 八員 **並**原祿通兒

五十四員 **續**加二十二員 **補**減七員 **原**親功臣五
 承襲君一功臣嫡長二禁軍別將一禁軍將六扈

衛別將三宣傳官一訓練都監將官八軍兵二禁
 衛營將官六御營廳將官七摠戎廳將官三內醫

衛別將三宣傳官一訓練都監將官八軍兵二禁
 衛營將官六御營廳將官七摠戎廳將官三內醫

大典會通

卷之四

七

大典會通

卷之四

六

清州鎮管軍士屬前部黃海道

龍驤衛

左衛○別侍衛隊卒

屬焉○京東部慶尚道大丘鎮管軍士屬中部慶

州鎮管軍士屬左部晉州鎮管軍士屬右部金海

鎮管軍士屬前部尚州

馬賓衛

右衛○族親衛親

安東鎮管軍士屬後部

京西部平安道安州鎮管軍士屬中部義州龜城

朔州鎮管軍士昌城昌洲方山麟山鎮軍士屬左

部成川鎮管軍士屬右部寧邊江界碧潼鎮管軍

士碧團滿浦高山里渭原楚山寧遠鎮軍士屬前

部平壤鎮管

忠佐衛

前衛○忠義衛忠贊衛破敵

軍士屬後部

州鎮管軍士屬中部順天鎮管軍士屬左部羅州

鎮管軍士屬右部長興濟州鎮管軍士屬前部南

原鎮管軍

忠武衛

後衛○忠順衛正兵壯勇衛屬

軍士屬中部甲山鎮管軍士三水惠山鎮軍士屬

左部穩城慶源慶興鎮管軍士柔遠美錢訓戎鎮

軍士屬右部鏡城富寧會寧鍾城鎮管軍士屬高嶺

潼關鎮軍士屬前部永興安邊鎮管軍士屬後部

西南三道
參軍兼

正三品衙門

五衛都總府原

掌治五衛軍務

都總管副總管共十員以他官兼周年相

遞諸將同○堂下官有吏才請練者除取才兼用部將同會將任不得兼總管補都總管副總管雖

陞降差出都總管毋得闕員○上輔國輔國特教外勿擬○堂下官以宣薦擇差

都總管五員

正二品

副總管五員

從二品

經歷六員

從四品

品原四員備加二員

都事六員

從五品原四員續加二員

正三品衙門

五衛原從二品衙門續降

五衛原義

中衛○甲士補充隊屬焉○京中部開城府京畿楊州廣州水原長端鎮

管軍士屬中部江原道江陵原州淮陽鎮管軍士屬左部忠清道公州洪州鎮管軍士屬右部忠州

大典會通

卷之四

六

大典會通 卷之四

五

補原係東班衙門
當宁乙丑移錄

都提調三員

正一品

提調三員

從二品

郎廳五員

從六品

品四員用蔭曾經四品以上而一員或以文臣差
○嶺南兼察湖南江原兼察湖西海西辯兼

察賑恤常平兼察**增**英宗朝庚午設
均役廳增置郎官一員兼管常賑廳

濬川司

增掌疏濬都城內川渠

英宗朝庚辰初都提
調時任議政兼提調

六員兵曹判書漢城判尹訓練大將禁衛大將御
營大將兼一員以備局堂上啓差**補**備局合屬議

政府○原係東班衙門當宁乙丑移錄○**舟橋司**
正宗朝庚戌初付本司掌舟橋及兩湖漕運等事

都提調提調都廳並本司例兼○行幸渡涉時
舟師大將以雷都將臣中備望差出專管舉行

都提調三員

正一品

提調六員

從二品

都廳一員

正三品

品堂上御營千摠兼**補**訓練都監
禁衛營御營廳別將千摠中兼

郎廳三員

正七品東

職送西領事判事員數雖已滿皆付判事○知事
 同知僉知事等窠醫譯以承傳見差者限三十朔
 遣○同知僉知事以老職陞資而除授者限三朔
 曾大臣外毋得付領事未經冢宰宗伯司馬之人
 毋得付判事○老職資憲無論文蔭武未經四品
 實職人勿付知事補百歲以上人同知事加設單
 付○知事同知僉知事加設者過一
 朔減下○雲臺官與醫譯一體舉擬

領事一員正一品 判事二員從一品 知事六員正二品 同

知事八員從二品 原七員 僉知事八員正三品 續三員

衛將 經歷一員從四品 都事三員從五品 原一員

宣惠廳 續掌出納大同米布錢 京畿廳宣祖朝戊申

子朔湖西廳孝宗朝壬辰朔湖南廳孝宗朝丁酉
 朔嶺南廳肅宗朝丁巳朔常平廳國初朔賑恤廳
 初自備局句管丙寅移屬本廳○都提調時任三
 公兼提調二員二品以上兼一員戶曹判書例兼

大典會通

卷之四

五

大典會通

卷之四

四

正六品

敦勇校尉

進勇校尉

從六品

勵節校尉

秉節校尉

正七品

迪順副尉

從七品

奮順副尉

正八品

承義副尉

從八品

修義副尉

正九品

効力副尉

從九品

展力副尉

正一品衙門

中樞府原無所掌待文武堂上官之無所任者

續議
政述

從一品

正二品

從二品

已上階同東班

正三品

折衝將軍

已上堂上官

正三品

禦侮將軍

從三品

建功將軍

保功將軍

正四品

振威將軍

昭威將軍

從四品

定略將軍

宣略將軍

正五品

果毅校尉

忠毅校尉

從五品

顯信校尉

彰信校尉

大典會通

卷之四

四

大典會通

卷之四

三

官輪回竹山哨官知穀官輪回與南陽將官輪回
 一人間間收用。義州騎撥將官每都目一人準
 次後人試取報來收用。○平安兵營攔後士每都
 目一入試取報來收用。○關西別薦每歲首試取
 狀聞調用。○東萊守設門將間二都目一人。○景
 慕宮植木牌將隨報收用。○舟橋監官隨報收用
 ○康世爵胡斗弼孫每都目各一人別為調用。○
 西北別付料軍官各一人清南別付料軍官南關
 別付料軍官輪回一人每都目試取西北不願窠
 邊將差送西別付料軍官北別付料軍官清南別
 付料軍官南關別付料軍官每都目擬差邊將
 目各一人情地可矜者隨窠差送擬差邊將

曹堂上及承旨除摠管則遞兵曹堂上及承旨摠
管除兵曹堂上及承旨則遞摠管

西班牙階原

正一品

大典會通

卷之四

三

官把	○目	將官	官與	知漢	一	目	人	間	軍	都	軍	間	用
知把	一	通	知	把	人	一	清	一	奉	目	官	收	別
穀揔	坡	融	穀	揔	南	人	南	都	事	一	間	用	軍
官哨	州	每	教	官哨	漢	南	別	目	通	人	二	○	官
官教	○	都	鍊	官教	南	漢	付	一	融	○	都	左	輪
官輪	楊	目	官	鍊	漢	守	料	人	每	訓	目	右	回
回鍊	州	一	通	官	御	官	軍	○	都	鍊	一	捕	每
一官	哨	都	融	通	廳	南北	官	西	目	院	人	盜	都
人通	官	目	每	融	哨	關	南	北	去	習	○	軍	目
間融	教	一	都	守	官	別	關	別	官	○	摠	官	一
間一	鍊	人	目	堞	通	付	付	付	主	讀	戎	每	○
收人	官	○	一	軍	融	料	料	料	簿	官	哨	都	事
間收	通	京	人	官	間	軍	軍	軍	每	每	官	目	知
○南	融	畿	○	一	一	官	官	官	都	都	教	各	禁
陽收	一	城	開	都	都	每	每	每	目	目	鍊	一	軍
哨官	人	府	○	目	目	通	通	通	抄	一	官	人	一
長教	間	把	江	一	一	融	融	融	上	人	各	○	人
官教	收	摠	華	人	人	每	每	每	禁	兼	間	○	扈
鍊哨	○	以	正	○	○	都	都	都	軍	習	一	扈	間
	永	下	領	水	北	目	目	目	通	讀	一	衛	
	宗	哨	輪	原					融				

○初仕人毋論出身閑良宣薦則經禁軍守部薦

則經騎士

才外方守部薦別取

津朔後

俱以六朔為限

騎士減罷後禁軍納馬六朔為限

始許擬望

○各營門久勤滿四

十五朔後始報勤仕

武兼擬職宣薦禁軍職京各

二人○駕前別抄駕後禁軍每都目三人通仕輪

回○別軍職壯勇衛內禁衛羽林衛兼司僕正領

禁軍訓練鍊都監禁衛營御營廳哨官左右捕盜軍

官訓練鍊院習讀官權知訓練鍊院奉事參軍去官京

畿監營江華府統禦營教鍊官哨官輪回義州騎

撥西北別付料平安兵營攔後士取才居首人訓

鍊院判官與主簿通仕部將與守門將通仕每都
目各一人○兵曹教鍊官堂上軍官訓練鍊都監知
一都目各二人一都目各一人○守禦廳教鍊官
旗牌官通仕三營都提調軍官通仕輪回三營別
軍官輪回每都目各一人○正領禁軍前仕通計

大典會通

卷之四

二

大典會通

卷之四

薦三人啓聞首薦人內三廳實職都政調用其下

兩人禁御兩營分授哨官○名武之以雜歧加資

者如活人捉虎之類勿許內外將觀武才別試射時若以善射更為陞資則洗滌

無碍○納粟帖加勿許實職帖同○參上武兼守

門將補部未經六品實職前毋得直擬於都事判

官等職不次別薦○訓練正勿拘朔數陞擬堂上

未經守令者先除守令後始擬雖未經守令若經虞候則勿碍陞資

○副正以已經參上宣傳官經歷僉正四品人通

擬補經參下宣傳官監察亦擬○禁軍將忠翊將忠壯將五衛

將等職勿拘解由擬望補摠管宣傳官文兼武兼守門將內乘營將中軍同

大典會通卷之四

仁政殿編輯

兵典

原屬衙門五衛訓鍊院司僕寺軍器寺
典設司世子翊衛司續世孫衛從司

京官職原遷官加階與吏曹同中樞府一員訓鍊院

正及主簿以上一員都摠府部將外並不待滿仕

遷官○凡受遞兒職者稱所屬衛部不屬衛者亦

稱衛部非遞兒職者只稱衛**續原典**兼司僕內禁

衛衙門今合禁軍廳○議政兼兵曹判書則雖不

參政重任緊窠問議○以封君授西班牙職者并封

君下批

補宗正鄉同

增江邊七邑出身每歲首道臣擇

大典會通

卷之四

一

大典會通

卷之四

二

給假

救恤

城堡

軍器

兵船

烽燧

廢牧

積芻

護船

迎送

路引

驛路

續

改火

禁火

雜類

用刑

雜令

續

大典會通

卷之四

目錄

二

大典會通

卷之四

一

褒貶

入直

擲奸

行巡

啓省記

門開閉

侍衛

疊鼓

疊鐘

符信

教閱

屬衛

名簿

番上

畱防

給保

成籍

軍士還屬

復戶

免役

大典會通卷之四

兵典目錄

京官職

雜職

外官職

土官職

京衙前

伴尙

外衙前

軍官

驛馬

草料

試取

番次都目

軍士給仕

諸道兵船

武科

告身

大典會通

卷之四

目錄

一

疊鐘	一六〇
符信	一六二
教閱	一七〇
屬衛	一七三
名簿	一七四
番上	一七五
留防	一七七
給保	一七九
成籍	一八〇
軍士還屬	一八二
復戶	一八二
免役	一八三
給假	一八五
救恤	一八六
城堡	一八六

軍器	一八七
兵船	一九〇
烽燧	一九一
廐牧	一九三
積芻	一九八
護船	一九八
迎送	一九八
路引	一九九
驛路	一九九
改火	二〇〇
禁火	二〇〇
雜類	二〇二
用刑	二〇三
雜令	二〇五

大典會通目次

卷之四 兵典

兵典目錄	五	番次都目	一一二
京官職	九	軍士給仕	一二九
雜職	四六	諸道兵船	一三二
外官職	四七	武科	一四一
土官職	七三	告身	一四二
京衙前	七五	褒貶	一四三
伴尙	七七	入直	一四四
外衙前	七八	擲奸	一四八
軍官	七九	行巡	一四八
驛馬	七九	啓省記	一五四
草料	八二	門開閉	一五六
試取	八三	侍衛	一五八
		疊鼓	一六〇

尚

中

御

筆

乙丑補輯

大典會通

中外印領

兵典

大典會通

한글서체영문원

연구보고 95-5 大典會通 研究 - 兵典編 -

1995년 12월 31일 초 판 발행
1996년 12월 31일 정정판 발행

發行人 朴 松 圭

發行人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남일문화인쇄(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5

FAX : 722-2900

등록번호 : 1981. 8.11 제1-190호

값 20,000원

